

中 共 概 要



國 土 統 一 院



目 次

| | |
|---------------------|----|
| I. 概 況 | 9 |
| 1. 自然環境 | 9 |
| 2. 天然資源 | 10 |
| 3. 人口 및 種族 | 12 |
| 4. 行政區域 | 14 |
| II. 政 治 | 21 |
| 1. 中共政治變化過程 | 21 |
| 가. 改造期 | 21 |
| 나. 猛進期 | 22 |
| 다. 調整期 | 22 |
| 라. 文革期 | 23 |
| 마. 轉換期 | 24 |
| 바. 實用主義體制 確立期 | 24 |
| 2. 中國共產黨 | 29 |
| 가. 黨의 發展過程 | 29 |
| 나. 黨의 性格 | 29 |
| 다. 黨의 組織 | 30 |
| 라. 黨 主要會議 | 35 |
| 3. 國家機構 | 52 |
| 가. 概 觀 | 52 |
| 나. 立法機關 | 54 |

| | |
|-------------------------|----|
| 다. 行政機關 | 61 |
| 라. 司法·警察機關 | 66 |
| 4. 主要 政治團體 | 71 |
| 가.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 71 |
| 나. 民主諸黨派 | 72 |
| 다. 其他 主要團體 | 73 |
| Ⅲ. 外 交 | 74 |
| 1. 外交政策의 基本要素 | 74 |
| 2. 外交政策의 基本性格과 目標 | 76 |
| 3. 外交政策의 變遷過程 | 81 |
| 가. 蘇聯一邊倒 時期 | 81 |
| 나. 反美·反蘇時期 | 82 |
| 다. 聯美·反蘇時期 | 84 |
| 라. 自主獨立路線 | 85 |
| 4. 最近 中共의 對外關係 | 87 |
| 가. 對蘇關係 | 87 |
| 나. 對美關係 | 89 |
| 다. 對日關係 | 90 |
| 라. 對北韓關係 | 92 |
| 마. 對韓國關係 | 94 |
| 바. 對東南亞關係 | 95 |
| 사. 第3世界와의 關係 | 95 |
| 아. 對歐洲關係 | 96 |
| 5. 外交關聯機構 | 97 |

| | |
|-----------------------|-----|
| 가. 外交關係 指揮系統 | 97 |
| 나. 外交部 機構 | 98 |
| 6. 修交國 現況比較 | 100 |
| | |
| IV. 經 濟 | 102 |
| 1. 中共經濟의 發展過程 | 102 |
| 2. 中共의 經濟改革 | 111 |
| 가. 改革의 背景 | 111 |
| 나. 改革措置의 經緯 | 111 |
| 다. 改革의 基本原則 | 114 |
| 라. 主要改革 現況 | 115 |
| 마. 問題點 및 展望 | 127 |
| 3. 最近 經濟動向 | 132 |
| 가. 農水産業 | 134 |
| 나. 工 業 | 135 |
| 다. 에너지 部門 | 136 |
| 라. 商 業 | 137 |
| 마. 財 政 | 138 |
| 4. 對外經濟活動 | 139 |
| 가. 對外貿易 | 139 |
| 나. 資本 및 技術導入 | 145 |
| 다. 經濟特區의 設置 | 156 |
| 라. 沿海地方 港灣都市 開放 | 169 |

| | |
|-----------------------|-----|
| V. 軍 事 | 180 |
| 1. 沿 革 | 180 |
| 2. 中共軍의 戰略戰術 | 180 |
| 3. 中共軍 現代化 推進動向 | 182 |
| 가. 目 標 | 184 |
| 나. 現代化 推進內容 | 184 |
| 다. 現代化의 問題點 | 185 |
| 라. 現代化의 展望 | 192 |
| 4. 軍事組織 및 指揮體制 | 194 |
| 가. 軍政機構 및 統帥權 | 195 |
| 나. 軍事組織體系 | 196 |
| 5. 兵力現況 | 200 |
| 가. 兵役制度 | 200 |
| 나. 兵力現況 | 200 |
| 다. 中共 軍事力의 脆弱點 | 202 |
| VI. 社會文化 | 203 |
| 1. 教 育 | 203 |
| 가. 教育政策 變遷過程 | 203 |
| 나. 教育現況 | 206 |
| 2. 科學技術 | 208 |
| 가. 科學技術政策 | 208 |
| 나. 科學技術關係 主要機關 | 209 |
| 3. 言論·出版 | 212 |
| 가. 言論·出版政策 | 212 |

| | |
|--------------------|-----|
| 나. 新聞·雜誌 | 212 |
| 다. 放送·報道 | 214 |
| 4. 宗 教 | 216 |
| 가. 宗教政策 | 216 |
| 나. 教勢現況 | 217 |
| 5. 文學藝術 | 218 |
| 가. 文化藝術政策 | 218 |
| 나. 文藝活動 現況 | 220 |
| 6. 體 育 | 221 |
| 가. 體育機構 및 活動 | 221 |
| 나. 體育團體 現況 | 222 |
| 7. 住民生活 | 224 |
| 가. 物 價 | 224 |
| 나. 賃 金 | 225 |
| 다. 國民生活水準 | 226 |
| 라. 醫療·衛生 | 227 |
| 8. 社會問題 | 231 |
| 가. 概 觀 | 231 |
| 나. 人口問題 | 232 |
| 다. 犯 罪 | 233 |
| 라. 勞動問題 | 234 |
| 9. 交通通信 | 235 |
| 가. 交 通 | 235 |
| 나. 通 信 | 236 |

| | |
|---------------------------|------------|
| 다. 外國人の 旅行 | 237 |
| VII. 統一戰略 | 238 |
| 1. 中國統一問題의 特性 | 238 |
| 2. 中共統一戰線戰略의 本質 | 239 |
| 가. 大衆路線 | 240 |
| 나. 過渡期的인 階級聯合 | 241 |
| 다. 持久的인 階級鬭爭 | 241 |
| 라. 3段階 階級 戰術 | 242 |
| 마. 合作戰術 | 243 |
| 3. 中共 統一戰線戰略의 展開過程 | 244 |
| 가. 第1次 國共合作 | 245 |
| 나. 第2次 國共合作 | 250 |
| 다. 第3次 國共合作 | 255 |
| 4. 最近 中共의 統一戰略展開 實態 | 265 |
| 가. 統一戰線 對象의 多邊化 | 265 |
| 나. 平和的 「解放」口號 提唱 | 266 |
| 다. 「最低綱領」의 運用 | 272 |
| 라. 多方面的 統戰 攻勢 | 273 |
| 5. 「1國家 2制度」論의 擡頭 | 275 |
| 가. 提議 經過 概要 | 275 |
| 나. 「1國 2制度」의 內容 | 277 |
| 다. 自由中國의 立場 | 282 |

<附 錄>

| | |
|-------------------------|-----|
| ○ 中共的 小數民族 現況 | 285 |
| ○ 中共居住 僑胞 實態 | 292 |
| ○ 中共的 主要人物 | 309 |
| ○ 合資經營企業 設立 節次 | 368 |
| ○ 中共的 主要 法令 | 386 |
| •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 386 |
| • 中國共產黨 規約 | 421 |
| • 民族區域 自治法 | 453 |
| • 中外合資 經營企業法 | 470 |
| • 中外合資 經營企業法 實施條例 | 475 |
| • 經濟契約法 | 504 |
| • 經濟契約 仲裁條例 | 528 |

I. 概 況

1. 自然環境

中共은 國土面積이 約 960 萬 *km*² (아시아面積의 1/4, 韓半島의 44 倍)로 蘇聯, 캐나다에 이어 世界 第3 位이며 南北으로는 南沙群島 (23°N)에서 黑龍江(53°32'N)에 이르기까지 5,500 *km*, 東西로는 夸미르高原(73°E)에서 黑龍江과 우수리江(135°E)에 걸쳐 5,200 *km*나 뻗어있어 時差가 4 時間以上 생기는 아시아 中心大陸國家이다.

中共은 東北部에서 蘇聯, 蒙古, 北韓과 접하고 南西部에서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시킴, 부탄, 印度, 버마, 라오스, 베트남 등 都合 12 個國과 國境을 접하고 있어 總國境線은 約 28,000 *km*나 된다. 中共의 領海는 12 海里로 宣布되어 있다(1958 年 9 月 中共政府의 領海聲明). 中共의 地形은 西高東低 形態를 보이는데 서쪽의 티베트, 夸미르高原으로부터 많은 山脈과 河川들이 뻗어져 나오면서 동쪽에서는 河川流域에 넓은 沖積平野를 이루고 있으며, 中共大陸의 地形 自體가 대단히 複雜하고 多樣하기 때문에 곳곳에 山地(33%), 高原(26%), 盆地(19%), 平原(12%), 丘陵(10%), 河川을 이루고 있다. 中國 土地 總面積은 約 144 億畝로 그중 耕地面積은 約 15 億畝, 林野面積 18 億畝, 草原 43 億畝이며 그밖에 利用可能한 面積은 33.6 億畝에 달한다.

中共의 氣候는 國土가 넓은 만큼 매우 複雜多樣하며, 全國土의 95% 以上이 溫帶, 亞熱帶圈에 들어있으나 溫度指標別로 보면 남쪽으로부터 赤道帶, 熱帶, 亞熱帶, 暖帶, 溫帶, 寒帶의 6 가지 氣候帶가 골고루 分布되어 있으며, 降雨量(年平均降雨量 630 *mm*)을 基準으로 볼

때 東部 沿海地方에서 西北 內陸地方까지 濕潤地區(總面積의 32%), 半濕潤地區(15%), 半乾燥地區(22%), 乾燥地區(31%)로 나누어지며, 亞熱帶몬순, 大陸性氣候 등 各 地域別로 多樣한 氣候가 나타나는 것이 特徵이다.

2. 天然資源

<地下資源>

中共은 世界에서 生産되는 거의 모든 鑛物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量도 대체로 豊富하다. 지금까지의 探查에 의하면 總 132種의 鑛物이 埋藏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텅스텐, 朱錫, 안티몬, 亞鉛, 티타늄, 탄탈, 리튬 등은 世界 第1이며 납, 니켈, 水銀, 몰리브덴 등은 第2位, 그리고 銅은 第3位, 알루미늄은 第5位이다.

石炭은 지금까지 確認된 埋藏量만도 7,000億톤에 달하는데 이중 山西省과 內蒙古自治區가 各各 2,000億톤, 1,900億톤을 保有하고 있다. 鐵鑛石은 주로 北部地域에 埋藏되어 있는데 基礎探查結果 440億톤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石油은 推定埋藏量이 約 300~600億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새로운 油田이 繼續 發見되고 있어 正確한 統計를 내는 것이 不可能하다. 특히 南支那海와 黃海南部 海域에서는 海底石油 探查作業이 한창 進行中인데 이미 상당한 量이 묻혀있는 것이 確認되었으나 經濟性 與否를 判斷하는 데는 좀더 時日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天然가스도 상당히 豊富한데 中共의 거의 全域에 골고루 分布되어 있다.

<農産資源>

中共은 國土가 넓은 반면 丕毛地와 山地가 많아 耕地面積은 全國土의 11% 밖에 안된다. 그러나 大部分의 地域이 溫帶와 亞熱帶에 속해 日照 및 溫度條件이 比較的 良好한 關係로 單位面積當 生産量은 대단히 높아 食糧自給率은 97%에 이르고 있다.

<林産資源>

中共의 森林面積은 約 1億2,200萬ha로 全國土의 10%를 占하고 있다. 이중 東北地方에 있는 黑龍江省이 28%를 차지해 最大의 木材供給源이 되고 있다.

中共은 傳統的으로 水災 및 旱魃이 農業生産에 커다란 影響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 對策의 하나로 造林事業에 注力함으로써 現在 相當한 面積의 人工林이 造成되고 있다.

<水産資源>

中共은 世界에서 海岸線이 가장 긴 나라중의 하나로 鴨綠江入口로부터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總延長이 18,000 km에 달하며 大小 約 5,000個의 섬이 있어 漁業에 매우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

水深이 200 m以下인 海洋漁場의 面積은 81.8萬平方海里이며 淡水漁場의 面積도 20.1萬ha나 된다. 특히 海域은 寒流와 暖流가 合流되고 河川과 湖水는 有機物이 豊富하여 棲息하고 있는 魚族이 매우 多樣하며 養殖에도 適當하다. 現在 海洋魚類는 約 1,500種, 淡水魚類는 800種 程度가 있으나 이중 經濟性이 있는 것은 各各 100種, 40種 内外이다.

3. 人口 및 種族

1982년에 實施된 第3次 人口센서스의 結果에 의하면 中共의 人口는 10億3,100萬名으로 集計되어 있는데 그중 男子가 51.58%, 女子가 48.42%이다.

1949年以來 人口增加率は 平均 2%를 나타냈으며 1966~1970年에 最高 2.63%를 記錄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 強力한 人口抑制施策을 편 結果 1976年부터는 1.2% 水準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도 繼續 될 것으로 보인다.

標本調査를 통해 推計한 年齡別 人口分布는 30歲以下가 全體人口의 65%를 占하고 있으며 그중 15歲以下만도 全體人口의 38.6%나 된다. 31歲以上은 35%인데 65歲以上の 老年人口는 全體人口의 5%가량 된다.

人口의 都市·農村 分布를 보면 1949년에는 全體人口의 約 90%가 農村에 集中되어 있었으나 그후 都市의 人口比重이 약간 높아져 1982년에는 都市人口가 約 20%를 占하고 있으며 勞動人口 5億2,137萬名(總人口의 50.5%)中 就業人口는 4億6千萬名(44.6%)에 달하고 있다.

中共政府는 오는 2000年の 人口를 12億 水準으로 잡고 現在 各 夫婦가 1子女만을 갖도록 하는 등 積極的인 人口抑制政策을 펴나가고 있다.

中共의 人口密度는 約 107名/km²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나 人口分布가 매우 고르지 못해 사실상 人口問題는 매우 심각하다. 黑龍江省의 愛琿에서 雲南省의 騰冲까지 線을 그어 全國을 東南部와 西北部로 나누어 보면 全國面積의 40%인 東南部가 全人口의 90%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人口密度는 200名을 넘고 있다. 그중에서 揚子

中共의 人口

(單位: 萬名)

| 年度 | | 1953 | 1964 | 1982 |
|-------|------|--------|--------|---------|
| 區分 | | | | |
| 總人口 | | 60,193 | 72,307 | 103,188 |
| 都市人口 | 人口 | 7,526 | 13,046 | 20,659 |
| | 比率 | 13.3 | 18.7 | 20.6 |
| 農村人口 | 人口 | 50,534 | 56,412 | 79,734 |
| | 比率 | 86.7 | 81.3 | 79.4 |
| 文盲者 | 人口 | | 23,327 | 23,582 |
| | 比率 | | 32.3 | 23.5 |
| 年增加人口 | 人口 | 1,337 | 1,927 | 1,440 |
| | 增加率% | 2.30 | 2.78 | 1.46 |
| 大學生 | 數 | | 287 | 602 |
| | 比率 | | 0.4 | 0.6 |
| 中小學生 | 數 | | 23,728 | 59,990 |
| | 比率 | | 32.8 | 58.1 |

資料: 中國百科年鑑(1983).

江三角洲, 成都平原, 珠江三角洲는 600名을 넘어 超過密地域을 이루고 있으며 華北平原도 400~500名에 달한다. 그러나 南北에 있는 山間地帶는 100名以下이며 東南部地區도 部分的인 差異가 있다.

여기에 반해 西北部의 平均人口密度는 10名以下를 보이고 있는데 灌溉가 可能한 오아시스 등 一部地域은 50~100名에 이르기기도 한다. 그러나 廣大한 고비砂漠地區, 荒蕪地, 高山地區는 1名以下이다.

中共은 總 56個 民族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중 漢民族을 除外한 少數民族의 總人口는 6,723萬名으로 全人口의 約 6.7%에 불과하다. 各 少數民族間의 人口數는 差異가 심한데 가장 많은 것은 壯族으로 1,338萬名이 넘는 반면 赫哲族과 白러시아族은 1,000名 未滿이며, 朝鮮族은 1,763,870名으로 少數民族中 11位를 차지하고

있다.

少數民族의 人口는 적지만 居住地區는 매우 廣範圍해서 全國總面積의 50~60%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內蒙古, 新疆위구르, 티벳, 廣西, 寧夏, 黑龍江, 吉林, 遼寧, 甘肅, 青海, 四川, 雲南, 貴州, 廣東, 湖南, 湖北, 河北, 福建, 台灣 등의 省·自治區에 居住하고 있다. 특히 雲南省은 20餘 少數民族이 있어 中共에서 民族數가 가장 많다.

대체로 1,000萬名 가량의 少數民族은 全國 各地의 大都市와 農村에서 漢民族과 섞여 살고 있다. 現在 全國 各省의 70%以上の 縣에 少數民族이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少數民族이 集中되어 있는 地區에도 漢民族이 많이 살고 있어 內蒙古, 寧夏, 廣西같은 少數民族自治區에도 漢民族이 多數를 占하고 있다.

全世界에 흩어져 있는 華僑는 約 1,800萬名(홍콩 550萬, 마카오 40萬名은 除外)에 달하고 있다.

4. 行政區域

中共의 行政區域은 北京, 天津, 上海 등 3個 直轄市와 內蒙古, 廣西壯族, 寧夏, 西藏, 新疆위구르 등 5個 自治區 그리고 21個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行政區域은 地域分類의 편의상 크게 6個地區로 나눈다.

<華北區>

여기에는 北京, 天津 등 2個 直轄市와 河北, 山西 등 2個省과 內蒙古自治區의 西部가 包含된다. 이 地區는 工業이 發達해 있고 鑛物 資源도 豊富하다. 특히 石炭埋藏量은 全國의 60%以上이며 產出量

도 25% 이상으로 全國 最大의 燃料動力工業基地이다. 또한 大同, 開灤, 陽泉 등의 大型鑛區와 大港, 任丘 등의 石油產地가 있다. 北京, 包頭, 太原, 天津, 唐山을 中心으로 形成된 華北鐵鋼센터는 鐵鑛石 埋藏量과 鐵鋼生産量이 全國 第2位이다. 이밖에 機械, 化學, 紡織 工業이 매우 發達해 있다.

<西 北 區>

陝西, 甘肅, 青海 등 3個省과 寧夏回族自治區, 新疆위구르自治區를 包含하는 地域이다. 이곳의 面積은 全國土의 32%를 차지하나 人口는 7%에 불과하며 經濟發展水準도 매우 낮다. 工業은 주로 石油 化學工業, 水力發電, 石炭, 非鐵金屬의 採掘, 冶金, 機器製造工業과 紡織工業 등이 약간 두드러질 뿐이다. 關中平原은 重要的 食糧, 綿 花生産基地이며 다른 地域은 黃土高原에 있는 砂漠地帶이다. 따라서 農業보다는 牧畜業이 성하나 大部分이 放牧을 하며 家畜飼育條件이 그 다지 좋지는 않다.

<東 北 區>

遼寧, 吉林, 黑龍江 등 3個省과 內蒙古自治區의 東部를 包含하는 地域이다. 森林資源이 매우 豊富하고 開發規模面에서 全國 最大의 油田을 保有하고 있으며 穀物食糧 및 森林伐採基地가 되고 있다. 또한 重工業基地로도 매우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어 鐵鋼生産量은 全國의 1/4, 冶金設備과 自動車生産量은 全國의 1/2, 鑛山 및 發電設備은 1/3, 石油와 木材는 1/2 이상을 占有하고 있다. 특히 이 地域은 交通運輸網이 發達되어 있어 産業發展에 크게 有利하나 輕工業은 比較的 發達이 더딘 편이고 石炭도 華北의 支援이 必要的 實情이다.

<華東區>

直轄市인 上海市와 江蘇, 浙江, 安徽, 江西, 福建, 山東 등 6個省을 包含하는 地域이다. 中共에서 加工工業이 가장 發達하여 機械, 電氣, 紡織 및 輕工業, 化學工業 등의 製造工業은 全國에서 매우 重要的 位置를 占하고 있다. 技術水準이 상당히 높아 各種 機械와 高級消費物資의 生産基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源이 不足해 北部로부터 石炭과 石油를 大量으로 輸送해 올 必要가 있다. 單位面積當 收穫量은 全國 最高이며 穀物食糧, 綿花, 땅콩, 茶 등의 生産量도 全國 1位이다.

上海는 中國 最大의 工業基地로 貨物出入量이 가장 많은 都市이며 科學技術文化의 中心地이다. 또한 全國에서 가장 人口가 많은 都市의 하나로 郊外를 除外한 都市人口만도 600萬名을 넘는다.

<中 南 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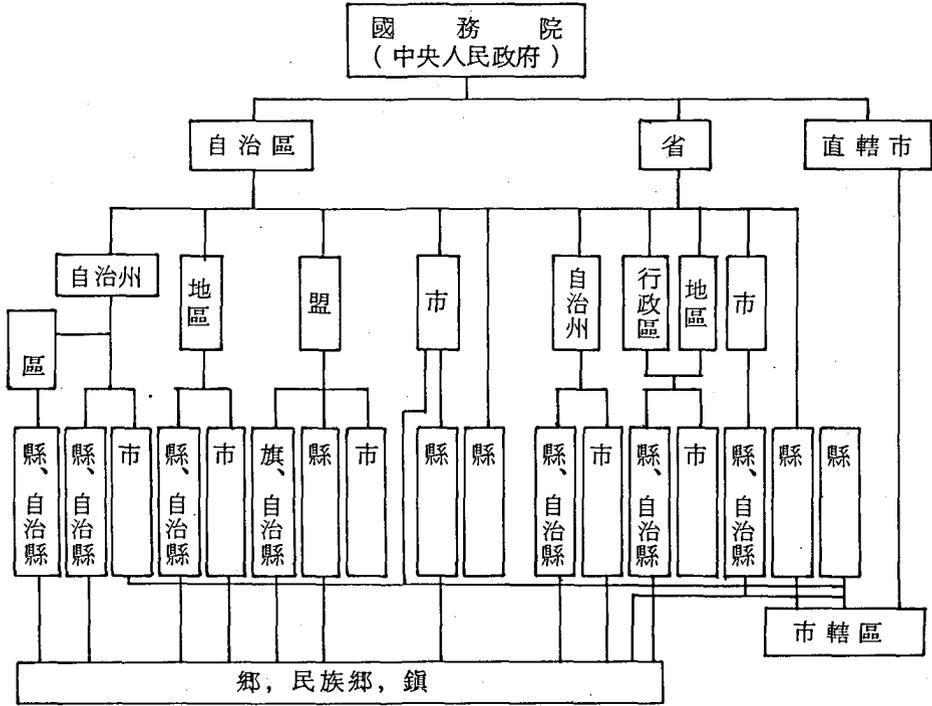
河南, 湖北, 湖南, 廣東의 4個省과 廣西壯族自治區로 이루어진 地域이다. 이곳은 交通이 便利하고 工業과 農業이 發達해 있다. 武漢製鐵工場을 中心으로 한 鐵鋼工業과 湘中, 南嶺地區를 中心으로 한 非鐵金屬은 全國에서도 매우 重要的 位置를 占하고 있다. 武漢, 鄭州, 洛陽, 湘潭, 株州, 廣州 等地에는 重要的 機器製造工場들이 많이 分布되어 있다. 現在 建設中인 葛州댐은 中國 最大規模이다. 또한 이 地域에 있는 江漢平原, 洞庭湖平原, 珠江三角州는 全國的인 食糧生産基地이다.

<西 南 區>

四川, 雲南, 貴州의 3個省과 西藏自治區를 包含하는 地域이다. 이 地域에 있는 工業施設은 大部分이 中共의 大陸占領以後에 建設된

것이어서 重工業이 發達해 있다. 그중에서도 四川省은 工業水準이 가장 높은 省으로 動力資源과 鑛物資源의 埋藏量이 豊富하다. 특히 水力資源은 全國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利用度는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四川盆地는 天然가스 埋藏量이 全國 最大로서 化學肥料도 가장 많이 生産하고 있다. 鐵鋼工業, 機械製造工業, 化學工業과 朱錫·銅·亞鉛·알루미늄·水銀 등 非鐵金屬의 採掘과 冶金은 全國的으로도 가장 發達해 있다. 이 地域은 森林資源도 豊富하여 木材保有量은 全國의 41%를 차지한다. 또한 農業, 林業, 牧畜業도 매우 盛해 特産品の 種類가 많기로는 全國 第1이다.

中共 行政區域體系



縣級以上 行政區劃

(1983.12 現在)

| 省 級 | | 地 級 | | 市 | | | 縣 級 | | (市轄區) |
|-----|------------------------|-----|----------------------------------|-----|-----|-----|-------|--|-------|
| 合計 | 行政單位 | 合計 | 行政單位 | 合計 | 地級 | 縣級 | 合計 | 行政單位 | |
| 30 | 3 直轄市 22 省 5 自治區 | 178 | 138 地區 31 自治州 1 行政區 8 盟 | 286 | 145 | 141 | 2,080 | 1,942 縣 75 自治縣 51 旗 3 自治旗 4 特區 3 工農區 1 林區 1 鎮 | 527 |

資料：中國年鑑，1984

省·自治區·直轄市一覽表

| 區劃單位 | 名稱 | 略稱 | 地方政府所在地 | 面積(萬) | 人口(萬名) |
|--------------|-----------------|-------|---------|---------|----------|
| 直轄市 (3) | 北 京 市 | 京 | 石 家 莊 | 16,807 | 923.0 |
| | 天 津 市 | 津 | 太 原 | 11,305 | 776.4 |
| | 上 海 市 | 滬 | 瀋 陽 | 6,185 | 1,186.0 |
| 省 (22) | 河 北 省 | 冀 | 石 家 莊 | 18萬 | 5,300.5 |
| | 山 西 省 | 晉 | 太 原 | 15.6萬 | 2,529.1 |
| | 遼 寧 省 | 遼 | 瀋 陽 | 14.57萬 | 3,572.2 |
| | 吉 林 省 | 吉 | 長 春 | 18萬 | 2,256.0 |
| | 黑 龍 江 省 | 黑 | 哈 爾 濱 | 46.9萬 | 3,266.0 |
| | 江 蘇 省 | 蘇 | 南 京 | 10萬 | 6,052.1 |
| | 浙 江 省 | 浙 | 杭 州 | 10萬 | 3,888.5 |
| | 安 徽 省 | 皖 | 合 肥 | 13萬 | 4,966.6 |
| | 福 建 省 | 閩 | 福 州 | 12萬 | 2,593.1 |
| | 江 西 省 | 贛 | 南 昌 | 16.66萬 | 3,318.5 |
| | 山 東 省 | 魯 | 濟 南 | 15萬 | 7,441.9 |
| | 河 南 省 | 豫 | 鄭 州 | 16.7萬 | 7,442.3 |
| | 湖 北 省 | 鄂 | 武 漢 | 18萬 | 4,780.4 |
| | 湖 南 省 | 湘 | 長 沙 | 21萬 | 5,400.9 |
| | 廣 東 省 | 粵 | 廣 州 | 21.2萬 | 5,929.9 |
| | 四 川 省 | 川 | 成 都 | 57萬 | 9,971.3 |
| | 貴 州 省 | 黔 | 貴 陽 | 17萬 | 2,855.3 |
| | 雲 南 省 | 滇 | 昆 明 | 39萬 | 3,255.4 |
| | 陝 西 省 | 陝 | 西 安 | 20萬 | 2,890.4 |
| 甘 肅 省 | 甘 | 蘭 州 | 45萬 | 1,956.9 | |
| 青 海 省 | 青 | 西 寧 | 72.15萬 | 3,895.7 | |
| 台 灣 省 | 台 | 台 北 | 3.59萬 | 1,827.1 | |
| 自 治 區 (5) | 內 蒙 古 自 治 區 | 內 蒙 古 | 呼 和 浩 特 | 120萬 | 1,927.4 |
| | 廣 西 壯 族 自 治 區 | 桂 | 南 寧 | 23萬 | 3,642.1 |
| | 西 藏 自 治 區 | 藏 | 拉 薩 | 120萬 | 189.2 |
| | 寧 夏 回 族 自 治 區 | 寧 | 銀 川 | 6萬 | 389.6 |
| | 新 疆 維 吾 爾 自 治 區 | 新 | 烏 魯 木 齊 | 160萬 | 1,308.2 |
| 計 | | | | 960萬 | 10,318.8 |

註：人口是 1982 年 統計。

資 料：「中國年鑑」 1984 年版，香港，長青出版社，1984。

重要數值

面積：960萬 km²，境界線 20,000 km

資源：쌀, 콩, 綿花 등 農産物, 畜産物, 鐵鑛石, 石油, 石炭

人口：103,188萬名('82年)

首都：北京(人口 933萬名, '82年)

主要都市：上海(1,194萬名), 天津(785萬名), 重慶(651萬名), 廣州(684萬名), 瀋陽(514萬名), 武漢(418萬名), 南京(456萬名), 大連(477萬名), 西安(294萬名)

住民：漢族 등 56族의 多民族國家, 漢族 9億367萬名으로 全人口의 93.3%, 55個 少數民族 6,723萬名('82.7)

言語：中國語(漢語)가 共用, 그외 少數民族語

宗教：憲法에서 信仰의 自由保障, 文革後 佛教, 回教, 基督教 등 宗教活動 復活

政體：人民民主主義獨裁의 社會主義國家, 人民共和國(1949年10月1日 建國)

憲法：1982年12月4日 改正

元首：國家主席 李先念('83.6.18 選出)

議會：1院制(全國人民代表大會), 第6期 代表 2,978名(그중 2名 死亡) 任期5年

主要政黨：中國共產黨, 그외 國民黨 革命委員會 등 8個 民主黨派

國民總生產：3,417億弗('83年)

國民1人當GNP：335弗('83年)

國民總生產：9,894億元('82年), 產業別 比率, 農·林·漁業 28.1%, 工業 55.6%, 建設業 8.8%, 商業 4.9%, 運輸業 2.6%(國家統計局)

貨幣單位：元, 1元 = 10각

換率：1弗：2,8097元('85.1)

國家豫算：歲入 1,232億元, 歲出 1,262億元('83年)

金·外貨準備：金保有高, 1,267로이드온스
外貨準備 111億2,500萬弗('82年末)

貿易：輸出 244.4億弗(原油, 石油製品, 醫料品, 綿布, 農産物)('84年) 輸入 255.3億弗(食糧, 鋼材, 化學肥料, 프랜트 設備)

重要工業製品：石油, 石炭, 鋼材, 시멘트, 木材, 綿布, 絹, 化學製品, 肥料, 機械, 트랙타, 時計, 自轉車

主要農産物：쌀, 밀, 옥수수, 콩, 綿花, 땅콩, 食用油, 茶, 담배

就業者數：4億6,004萬名('82年末 國家統計)

公休日：新正(1.1), 春節(陰曆 1.1~3), 勞動節(5.1), 國慶節(10.1~2)

II. 政 治

1. 中共政治變化過程

1949年中共政權이 樹立된지 36년이 지난 오늘날, 政治的 變化를 간단히 分析할 수는 없겠으나 그간 中國共產黨의 政策目標와 中國社會라는 現實과의 끊임없는 葛藤의 連續이었고, 이런 過程에서 發生한 指導層 內部的 '專과 紅' 혹은 '穩健과 急進'을 둘러싸고 일어난 黨權鬭爭이 中國社會 全體에 衝擊的인 變動을 招來해 왔다.

특히 1950年代 後盤부터 急進的인 社會主義 建設이 開始되어 60年代 後盤의 文化革命期를 거쳐 헤아릴 수 없는 混亂과 分裂을 가져왔기 때문에 鄧小平體制의 登場以後 實用主義路線에 의한 現代化 推進으로 꽤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 中共의 政治體系를 組織的으로 分析한다거나 政治過程의 變化를 綜合的으로 抽出한다는 것은 中共의 複雜多樣한 地形을 把握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며 斷片的인 것 밖에 알지 못할 可能性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政權 樹立以後 現在까지의 政治變化를 概略的으로 整理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 改 造 期 (1949.10 ~ 1955. 7)

政權樹立後 中共이 우선적으로 推進한 國家社會的 課題는 革命과 內戰으로 破壞된 經濟를 復興시켜 「新民主主義」革命을 完成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中共은 國營經濟를 指導理念으로 하여 私的 資本主義 및 國家 資本主義經濟를 調整해 나갈 수 있도록 土地改革과 地主 財産沒收를 實施한데 이어, 反革命鎮壓運動, 思想改造運動, 3反5反運動 등을 통해 大規模 肅清과 知識人 抑壓을 斷行하고 ‘抗美援朝’를 구실로 社會的 葛藤을 解決하려고 努力하였다. 同時에 1953年 後半 基層選舉를 통해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代表를 選出하여 1954年 9月 中共憲法을 制定하였고 長期에 걸친「漸進的 社會主義 建設」을 基本路線으로 採擇하였다.

나. 猛 進 期 (1955. 7 ~ 1959. 9)

中共은 資本主義와 個人經濟 要素를 抹殺하기 위해 農業集團化(高級合作社), 手工業의 協同化, 商工業의 公社合營化 등을 急激히 推進하여 急進的인 社會主義 建設로의 路線轉換을 試圖하였다. 특히 1958年以後 「社會主義總路線」, 「生産大躍進」, 「人民公社化」運動 등 「3面紅旗」政策을 展開하여 集團所有制, 自力更生 등을 推進하였으나, 自然災害, 大躍進運動의 失敗 등으로 深刻한 經濟的 困難에 直面하였다.

다. 調 整 期 (1959. 9 ~ 1965. 11)

이와 같이 1950年代 後盤의 時期에 벌어진 中國 內部的 政治, 社會, 農村의 龜裂을 治癒하기 위한 經濟調整政策이 推進되었으며, 이를 위해 農業을 基礎로 하여 工業發展을 誘導해 나가는 3自1包政策, 3級所有制, 人民公社制度 修正 등을 實施, 中共의 國力이 서서히 回復되었다. 그러나 中·蘇紛爭은 더욱 深化되어 蘇聯이 中共에의 技

術援助를 中止한데 이어, 技術者를 全面 撤收시켰으며, 黨 內部的
으로는 繼續 革命을 主張하는 毛澤東과 劉少奇, 鄧小平, 彭眞, 陳雲
등 實權派間의 暗鬪가 서서히 일어나기 始作하였다.

라. 文 革 期 (1965.11 ~ 1971. 9)

1965年11月 毛澤東側近의 젊은 文藝批評家 姚文元이 北京市 副
市長 吳晗에 대해 全面的인 批判을 展開함으로써 始作된 文化革命은
毛澤東, 林彪의 主流派가 劉少奇, 鄧小平, 彭眞 등 實權派를 肅清하
는 3年間의 熾烈한 鬪爭을 거쳐, 毛澤東의 絶對的인 指導體制 確立
과 林彪의 後繼者 指名으로 歸着되었다. 中共은 文化革命을 “意識
形態 領域에서의 階級鬪爭” (紅旗 66年 8號)이라 規定하였지만, 大
躍進, 人民公社運動 등 3面紅旗政策의 失敗에 대한 責任을 둘러싸
고 毛澤東 批判이 일게되자, 毛澤東 自身이 群衆路線과 紅衛兵을 動
員하여 奪權鬪爭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文化革命을 통해 毛澤東을 政治的 危機에서 구해준 軍部勢
力이 急伸張하여 中共社會 全體가 兵營體制化 하게 되고, 中·蘇 國
境에서의 武力衝突로 對蘇 強硬路線이 擡頭된데다 1971年 닉슨 美
大統領의 中共 訪問計劃을 軍部勢力이 沮止하려 하자, 毛澤東, 周恩
來 등 黨·行政官僚들은 林彪 쿠데타事件을 造作하여 軍部에 대한 大
大的인 肅清을 展開하였다.

林彪事件은 文化革命 自體가 內部的인 權力鬪爭이라는 深刻한 矛
盾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一例에 不過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 轉 換 期 (1971. 9 ~ 1978. 12)

文化革命의 後遺症이 深刻했기 때문에 中共指導層은 毛澤東 主導下의 妥協的인 集團指導體制(黨副主席 5名)를 形成하여 脫文革를 指向하게 되었으며, 1972年2月 닉슨 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美·中關係 改善, 日·中 國交再開('72.9) 등 對外政策의 變化를 試圖하였다.

그러나 周恩來, 鄧小平 등 走資派들이 '4個現代化'를 提起, 文革路線에서의 轉換을 摸索하게 되자 文革派들과의 主導權 鬭爭이 일어났다.

天安門事件('76.4)을 契機로 毛澤東 政治體制에 대한 人民大衆의 集團抗議가 일어난데다 毛澤東마저 死亡('78.9)하게 되자, 華國鋒, 汪東興 등 文革右派는 葉劍英이 指導하는 軍部の 힘을 빌어 이른바 4人幫(王洪文, 張春嬌, 江青, 姚文元)을 逮捕하여 自身들의 體制 構築에 나섰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毛澤東의 後繼者로서 毛思想과 階級鬭爭論을 肯定·繼承한 華國鋒의 改革은 限界를 露呈하지 않을 수 없었고, 反文革勢力과 鄧小平 支持勢力의 反對에 逢着하게 되어 '先紅後專'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을 둘러싸고 華國鋒과 鄧小平間 權力鬭爭이 벌어지게 되었다.

바. 實用主義體制 確立期 (1978. 12 ~ 現在)

마침내 1978年12月 第11期 黨中央委 3次會議에서 4個現代化路線의 積極推進, 毛澤東思想의 再評價, 黨의 重點活動을 階級鬭爭보다는 社會主義 近代化를 主張한 鄧小平派가 勝利하게 되자, 毛

澤東에 의해 肅清된 彭德懷 등 黨元老들이 復權되었으며, 毛澤東 追從勢力(汎是派)은 權力構造의 中心部에서 밀리기 始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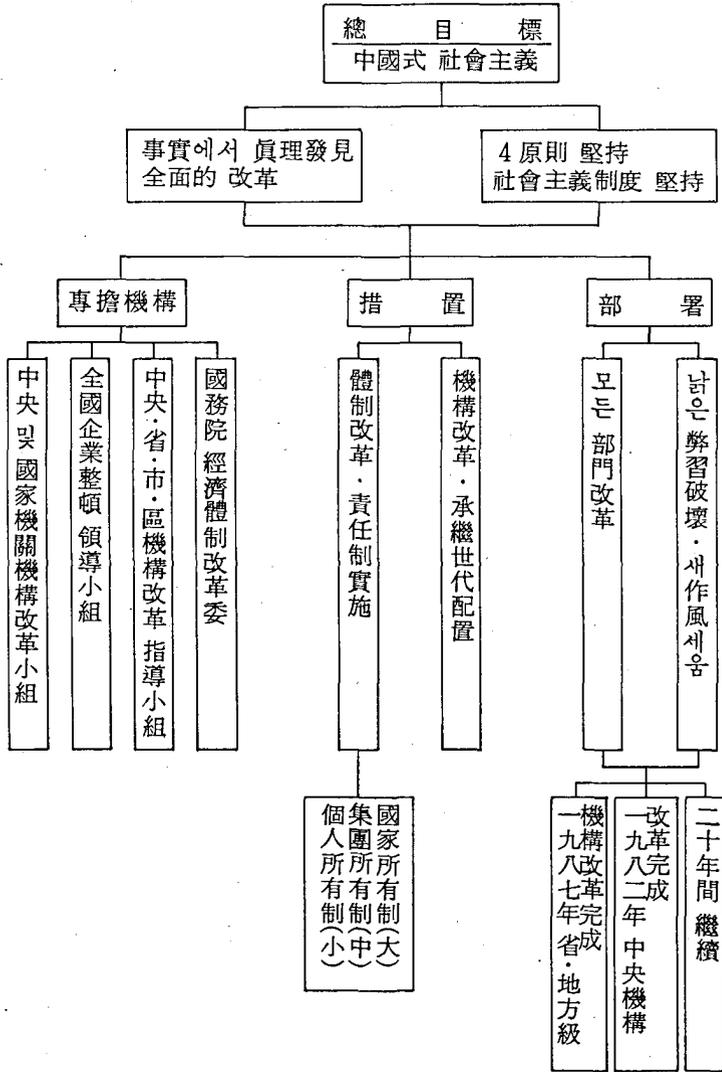
1980 年에 접어들면서 汪東興 등 文革勢力과 華國鋒이 차례로 除去되었고 胡耀邦, 趙紫陽 등 鄧小平 支持勢力이 權力構造를 掌握하게 됨으로써 實用主義體制를 確立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中共黨 第 12 期 全國大會('82.9)에서는 (1) 1 人統治禁止, 集團指導制 導入, (2) 個人崇拜 禁止, (3) 黨主席 廢止, 總書記制 採擇, (4) 黨中央顧問委 新設, (5) 黨中央規律檢查委員會의 權限強化 등을 骨子로 하는 黨規約을 採擇하여 文化革命동안 毛澤東에 의해 지나치게 強化되었던 黨優位體制의 不合理性을 是正하고 毛澤東時代의 1 人統治를 制度的으로 封鎖했다.

또한 第 5 期 全人大 第 5 次 全體會議('82.12)에서는 新憲法을 採擇, 國家主席制 復活, 國家高位職의 連任禁止 등 國家體制를 보다 民主化하였고 4 個現代化를 위한 實用主義路線을 憲法에 名文化하는 한편, 國家中央軍事委를 新設하여 國家가 軍部를 掌握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第 6 期 全人大 1 次會議('83.6)에서는 國家要職 改編을 斷行하여 國家主席에 李先念, 國家副主席 烏蘭夫, 國家中央軍事委 主席兼 中央顧問委 主任 鄧小平, 人民政治協商會議 主席 鄧穎超, 全人大 常務委員長에 彭眞 등을 選出함으로써 黨總書記 胡耀邦, 國務院總理 趙紫陽 등과 함께 實用主義路線 推進에 必要한 權力體系를 確立하였다.

體制改革 構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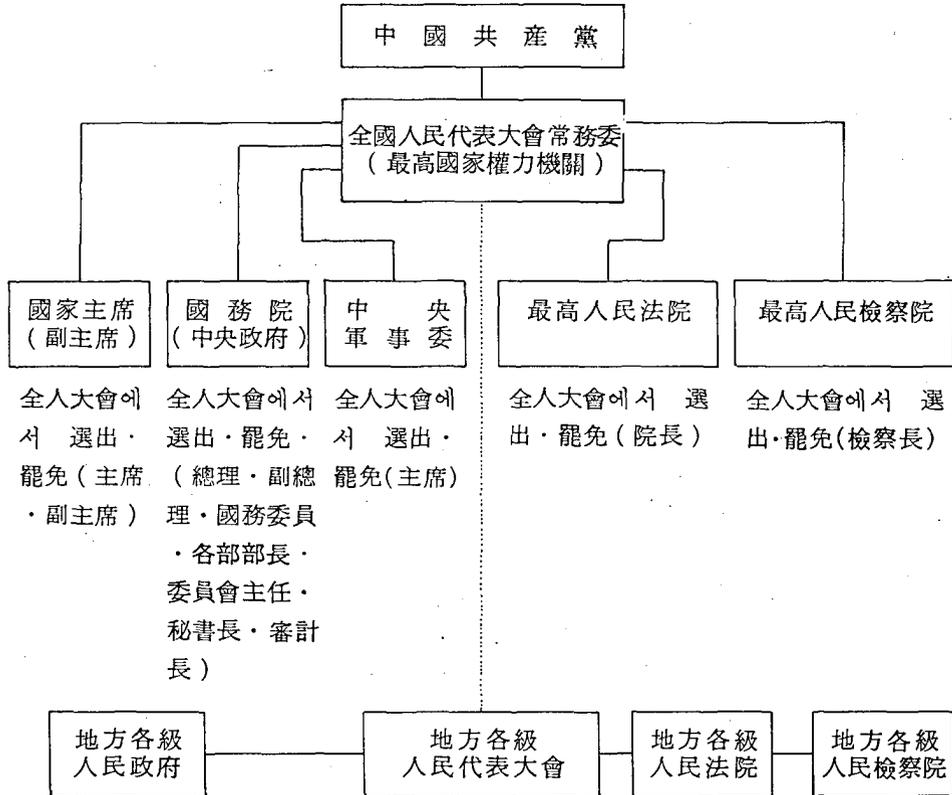


4 原則

- 1) 社會主義
- 2) 人民民主獨裁
(黨獨裁)
- 3) 共產黨領導
- 4) 마르크스主義
· 레닌主義 ·
毛澤東思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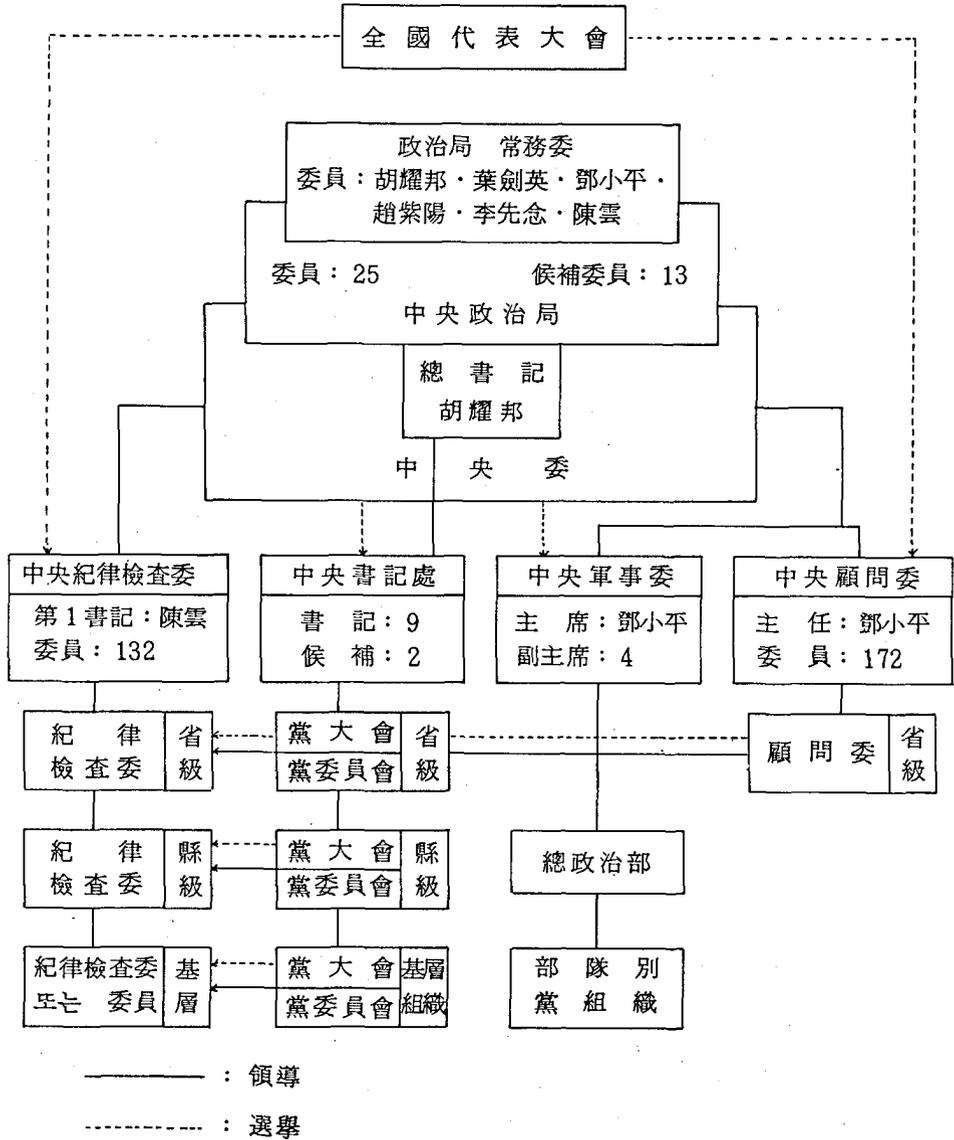
出 處： 匪情月報， 第二十五卷, 第十二期 (台北：國際關係研究中心：1983.6)

새 憲法에서 본 政治體制



出 處： 匪情月報，第二十五卷，第十二期（台北：國際關係研究中心；1983.6），

新黨規約에서 본 領導體制



出處：匪情月報，第二十五卷，第十二期（台北：國際關係研究中心；1983.6），

2. 中國共產黨

가. 黨의 發展過程

1921年7月1日 陳獨秀,李大釗,毛澤東,董必武 등 13名의 代表가 上海에서 創黨한 以來 (1) 第1次 國內革命戰爭(第1次 國共合作), (2) 第2次 國內革命戰爭(西金소비에트), (3) 抗日戰爭(第2次 國共合作), (4) 第3次 國內革命戰爭(人民解放戰爭) 등 4段階의 戰爭時期를 克服하고 1949年10月1日 中華人民共和國를 樹立하였다.

나. 黨의 性格

1982年9月 中國共產黨 第12期 全國代表大會에서 採擇한 新黨規約 總綱을 보면, “中國共產黨은 中國 勞動階級の 先鋒隊이며, 各民族 人民의 利益을 反映하는 充實한 代表이며, 中國 社會主義事業의 指導의 中核이다. 黨의 最終目標은 共產主義의 社會制度를 實現하는데 있고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을 自己行動의 指針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現段階에 있어서 中國共產黨의 總任務는 全國의 各民族 人民을 結集시키고 自力更生, 刻苦奮闘하여, 工業·農業·國防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점차 實現하고 中國을 高度의 文明과 高度의 民主를 갖춘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는 것”이고 “中國共產黨의 活動重點은 社會主義 現代化의 經濟建設을 推進하는데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4個 現代化路線을 黨의 基本方針으로 闡明하고 있다.

그러나 “黨의 指導는 주로 政治, 思想 및 組織面에서의 指導”이

며, 黨은 “반드시 立法, 司法, 行政機關, 經濟, 文化組織 및 人民團體의 積極的인 活動을 保障해야 한다”고 하면서, 同時에 “黨이 반드시 憲法과 法律의 範圍內에서 活動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黨 活動의 限界를 嚴格하게 設定하고 있다.

다. 黨의 組織

中共黨도 다른 共產主義國家와 마찬가지로 人民民主主義獨裁와 民主的 集中制(下級組織의 上級組織에의 服從)에 따라 組織되고, 各級 委員會는 集團指導와 個人 分擔責任制의 原則에 의해 運營되며, 黨은 “어떠한 形態의 個人崇拜도 禁止한다”고 規定하고 있다(黨規約 第 10 條). 黨의 組織은 크게 나누어 中央, 地方, 基層 組織으로 나눌 수 있는데 詳細한 組織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中央組織

(黨全國 代表大會)

| | |
|-----|---|
| 性 格 | 黨의 中央組織이며, 最高指導機關임. |
| 會 議 | 5年마다 中央委員會에서 召集 開催, 但 中央委員會나 省級 組織 1/3 以上の 要求가 있으면 早期開催 可能.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委員會, 中央顧問委員會, 中央紀律檢查委員會의 報告 聽取 및 審査 ○ 黨의 重大問題 討議 및 決定 ○ 黨規約 改正 ○ 中央委員會, 中央顧問委員會, 中央紀律檢查委員會의 選出 |

(中 央 委 員 會)

| | |
|-------------|---|
| 性 格 | 黨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 黨의 活動 指導, 決議, 實行, 對外的으로 黨을 代表 |
| 任 期 | 5 年 (全國代表大會의 早期 또는 延期時에는 그에 따라 變更) |
| 委員의資格 및 選 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은 黨 生活經歷 5 年以上된 者中 ‘ 全國代表大會 ’ 에서 選出. ○ 中央委員會 委員에 缺員이 發生時 候補委員中 最多得票 者로 補充함. |
| 會 議 |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은 中央政治局에서 每年 1 回以上 召集.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政治局,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 中央書記處 및 中央委員會 總書記는 中央委 全體會議에서 選出. - 中央委 總書記 및 中央軍事委 主席은 政治局 常務委員中에서 選出. ○ 黨의 中央軍事委員會 構成員 決定 |
|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委員會 全體會議 閉會期間中 中央政治局과 常務委員會가 職權을 行使함. ○ 中央書記處는 中央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의 指導下에 中央의 日常活動 處理 ○ 中央委員會 總書記는 中央政治局 및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의 會議召集과 中央書記處의 活動을 主宰 |

(中央顧問委員會)

| | |
|--------------|---|
| 性 格 | 中央委員會 政治活動 支援 (助手 및 參謀) |
| 任 期 | 5 年 (中央委員會와 同一) |
| 委員의資格 選 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顧問委員은 40 年以上의 黨歷을 가진 者로서 - 貢獻을 한바 있고, 比較的 豊富한 指導經驗과 黨內外의 信望이 있어야 함. ○ 顧問委員은 黨代表大會에서 選出하되, 그 常務委員會 및 主任, 副主任은 中央顧問委 全體會議에서 選出하여 中央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함. - 但 中央顧問委 主任은 政治局 常務委員中에서 選出 ○ 顧問委員은 中央委 全體會議에 參席 (投票權 無) 할 수 있으며 - 副主任은 中央政治局 全體會議에 參席할 수 있고 - 常務委員도 中央政治局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에 是 中央政治局 全體會議에 參席할 수 있음.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顧問委는 中央委員會의 指導下에 活動하며, 黨의 方針, 政策의 制定과 實行에 대한 建議를 提出하고 諮問에 應함. ○ 中央委에서 調査, 處理할 重大問題에 대해 協助 ○ 黨內外 黨의 重大方針과 政策宣傳 ○ 其他 中央委에서 委任한 業務擔當 |

(中央軍事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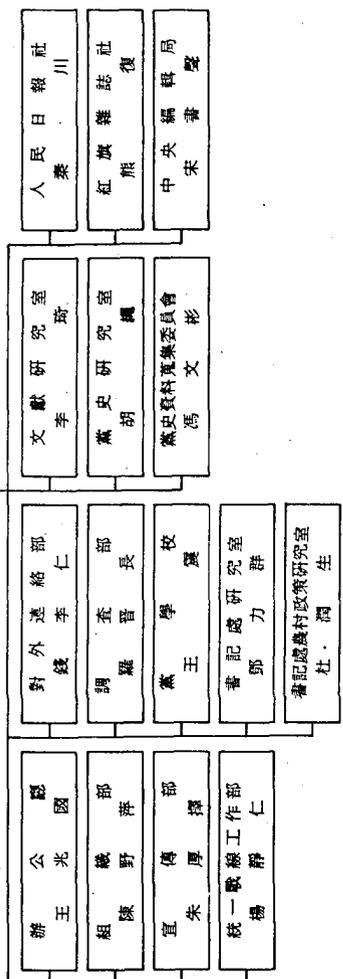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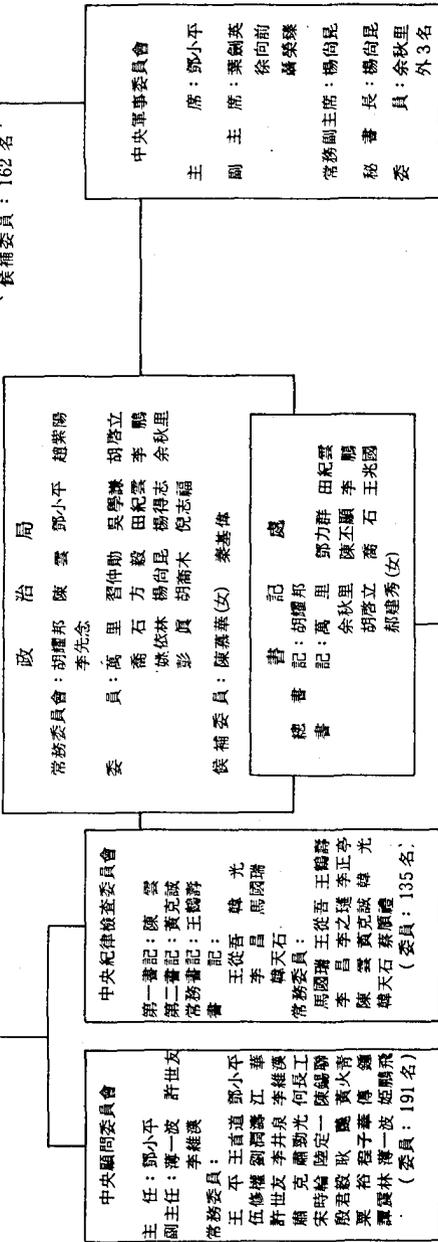
| | |
|-------|--|
| 委員會構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委員會에 의해 決定 - 但 中央軍事委 主席은 政治局 常務委員中에서 選出 |
|-------|--|

黨中央組織體系

1985. 9. 30 現在

中央委員會

(正委員：212名)
(候補委員：162名)



| | |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解放軍의 黨組織은 中央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活動 ○ 人民解放軍 總政治部는 中央軍事委의 政治活動機關이며, 黨의 活動과 政治活動의 管理에 責任을 짐. ○ 軍隊內의 黨組織體制 및 機構는 中央軍事委가 規定함. |
|-----|--|

(2) 地方組織

| | |
|-----|---|
| 組 織 | 各級 行政組織別로 構成되어 있음 (3 直轄市, 22 省, 5 自治區 등) |
| 任 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年: 省, 自治區, 直轄市, 市 (區設置), 自治州 ○ 3 年: 縣 (旗), 自治縣, 市 (區未設置), 市管轄區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級黨委員會의 報告聽取 및 審議 ○ 同級黨規律檢事委의 報告聽取 및 審議 ○ 當該地區內의 重大問題 討議決定 ○ 同級 黨委員會와 同級黨 規律檢查委員會 選出 및 上級 黨 代表大會에 參席할 代表選出 |
| 會 議 | 地方 各級 委員會의 全體會議는 每年 1 回以上 開催 |
|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 各級 委員會는 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 當該地方의 活動指導 및 上級黨 委員會에 活動報告 ○ 地方 各級 委員會의 全體會議는 常務委員會, 書記, 副書記를 選出 |

(3) 基層組織

| | |
|-----|---------------------------------|
| 性 格 | 黨의 基層組織은 社會基層 組織에 있어서 黨의 戰鬥的 堡壘 |
|-----|---------------------------------|

| | |
|-----|---|
| 構 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場, 商店, 學校, 機關, 居住區, 人民公社, 合作社, 農場, 鄉, 鎮, 人民解放軍 中隊 등 基層單位는 正式黨員 3名以上으로 構成. ○ 黨의 基層組織은 活動의 必要와 黨員數에 따라 上級黨組織의 承認을 얻어 黨의 基層委員會, 總支部委員會, 支部委員會를 設立. |
| 會 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會를 두고 있는 基層組織의 黨員大會 또는 代表大會는 每年 1回 開催. - 總支部의 黨員大會는 普通 每年 2回 開催 - 支部의 黨員大會는 普通 每 3個月마다 開催 |
| 任 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年: 基層委員會 ○ 2年: 總支部委員會 및 支部委員會 |
| 任 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의 路線, 方針, 政策의 選定, 實行 ○ 黨內外的 幹部와 大衆의 結集 組織 ○ 黨員을 組織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學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의 基本知識과 黨의 路線, 方針, 政策學習 - 科學, 文化와 業務學習 ○ 大衆에 대한 思想, 政治工作 등 |

라. 黨主要會議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第 1 期 全 國 代 表 大 會 | 1921. 7.23 ~ 7.31 (上 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討議豫定事項: 國民黨政府 官憲의 追跡으로 全議題를 討議함. (1) 中國共產黨宣言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2) 中國共產黨章程</p> <p>(3) 勞動運動問題</p> <p>○ 決議事項</p> <p>(1) 黨名稱은 中國共產黨으로 한다.</p> <p>(2) 黨의 活動은 共產主義 原則에 따른다.</p> <p>(3) 窮極的인 目標을 ‘프롤레타리아’의 組織 및 黨의 指導下에서의 政權掌握에 둔다.</p> <p>(4) 孫文이 指導하는 進步的 革命運動에 援助的 態度를 취한다.</p> <p>(5) 陳獨秀를 中央指導者로 選出</p> <p>* 參席者： 13名(黨員 53名)</p> |
| <p>第 2 期 全 國 代表大會</p> | <p>1922. 7.16 ~ 7.23 (杭 州)</p> | <p>○ 코민테른 加入決定</p> <p>○ 大會宣言을 制定(黨綱領)</p> <p>(1) 內亂을 終熄시키고, 軍閥을 打倒하며 國內 平和를 樹立한다.</p> <p>(2) 國際帝國主義를 몰아내고 中華民族의 完全獨立을 達成한다.</p> <p>(3) 中國本部(東3省包含)를 統一하여 眞正한 民主共和國으로 한다.</p> <p>(4) 蒙古, 西藏, 回藏(新疆省의 少數民族居住地區)의 自治制를 행하며 民主自治國으로 한다.</p> <p>(5) 自由聯邦制에 의하여 中國本부와 蒙古, 西藏, 回藏을 統一하여 ‘中華聯邦共和國’을 樹立한다.</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6) 勞働者, 農民은 男女를 不問하고 各級 會議, 市議會에 있어서 無制限의 選舉 權을 가지며, 言論·出版·集會·結社· '스트라이크'의 絶對自由를 갖는다.</p> <p>(7) 勞働者·農民·婦女子를 위한 法律을 制定한다.</p> <p>* 參席者: 12名(黨員 195名)</p> |
| <p>第 3 期 全 國 代表大會</p> | <p>1923. 6.12 ~ 6.20 (廣 州)</p> | <p>(1) 黨內的 右傾機會主義와 左傾閉鎖主義를 批判</p> <p>(2) 國民黨과의 合作, 共產黨員이 國民黨에 加入하여 國民黨을 民主革命의 同盟者로 改造할 것과 同時에 共產黨은 組織上 및 政治上的 獨立을 保持</p> <p>○ 大會宣言要旨</p> <p>(1) 中國人民은 外國과 軍閥이란 2重의 暴力的인 壓迫을 받아 國民 生命과 自由는 共히 危機에 逢着하고 있다.</p> <p>(2) 國民黨은 國民革命의 中心勢力領袖의 位置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黨은 2個의 誤算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는 '中國革命의 外國援助 希望'이고 다른 하나는 '軍事行動에 全力을 集中하여 大衆에 대한 宣傳을 等한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p> <p>(3) 中國共產黨은 한 나라의 革命을 熱望한다. 우리의 任務는 勞働者·農民을 指導</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하여 國民革命에 參加하게끔 하는 것이며, 우리의 使命은 被壓迫中國民族을 解放하고 나아가 世界革命을 꾀하여 全世界의 被壓迫民族과 被壓迫階級을 解放하는 것이다.</p> <p>* 參席者: 30名(黨員 420名)</p> |
| <p>第 4 期 全 國 代表大會</p> | <p>1925. 1.11 ~ 1.22 (上 海)</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戰線과 大衆運動 強化問題를 討議한의에 國民會議 召集 등에 관한 具體的인 方針에 대하여 詳細히 討論하고 運動의 指導를 強化함. ○ 大會宣言要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直系派, 反直系派 軍閥은 勢力 다툼만을 일삼고 있다. 英, 美는 軍閥을 利用하여 侵略政策을 達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沿岸, 內海에 軍艦을 派遣하고 있다. 日本은 中國의 保護者를 假裝하면서 英, 美에 讓步시키려 하고 있다. (2) 그렇지만 資本主義帝國의 勞動者·農民이 武器를 갖고 自國의 壓迫者에 反對하고 東邦의 被壓迫人民이 일어나서 軍閥에 反對하며, 外國 帝國主義에 反擊한다면 世界 帝國主義者의 破壞力은 변하여 帝國主義에 反對하는 道具로 변할 수가 있다. (3) 中國 各 都市의 大衆은 지금 ‘國民會議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促進會'를 組織하고 있다. 中國共產黨은 勞動大衆에 대하여 段祺瑞가 召集하고자 하고 있는 欺瞞的인 '善後會議'를 沮止할 것을 呼訴하고 있다.</p> <p>이 會議가 欺瞞이란 것은 國民이 自己의 代表 參加를 要求해 보면 안다.</p> <p>(4) 勞動者·農民·學生·手工業者는 '善後會議'에 參加를 要求하라. 外國軍艦의 中國內地 航海에 反對하고 外國軍의 撤收, 領事裁判權의 取消을 要求하라</p> <p>* 參席者: 20 名 (黨員 950 名)</p> |
| <p>第 5 期 全 國 代表大會</p> | <p>1927. 4.27 ~ 5. 9 (武 漢)</p> | <p>○ 同 大會는 '코민테른'의 中國革命에 關한 指示를 받음.</p> <p>○ 機會主義 排斥決議를 採擇</p> <p>○ 土地改革 實現에 關한 決議를 採擇</p> <p>○ 農民政綱 決議書</p> <p>(1) 一切의 公有財産, 祠堂, 寺廟, 教會, 學校의 土地를 沒收하며, 이것을 耕作하는 農民에게 交付한다.</p> <p>沒收한 土地의 管理는 이것을 土地委員會에 맡긴다. 이러한 土地改革의 形式이 公有制를 취하든가 分配制를 취하든가는 土地委員會가 決定한다.</p> <p>(2) 無償으로 農民에게 貸與하고 있는 地主의 土地를 沒收하여 土地委員會를 經由,</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耕作하는 農民에게 준다.</p> <p>小地主의 土地는 沒收하지 않는다. 革命軍 兵士로서 土地가 없는 者에게는 戰爭이 終了된 후 土地를 준다.</p> <p>(3) 沒收된 土地의 農民은 累進田稅를 政府에 納付하는 外에는 負擔을 지지 않는다. 아직 沒收치 않은 土地의 租率은 累進田稅의 程度에 따르지 않는다. 耕地가 아직 沒收되지 않은 土地의 農民은 一定한 田植 以外의 負擔을 지지 않으며, 또 永久賃貸小作權을 갖는다.</p> <p>(4) 地主, 神祠가 所有하고 있는 一切의 政權權利를 取消한다. 農民은 鄉村自治政府를 建立하고 農村의 被壓迫階級이 組織하는 鄉民會議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p> <p>(5) 鄉村의 反動勢力의 武裝을 解除한다. 農民自衛軍을 組織하여 鄉村自治政府 및 革命의 勝利를 保證한다.</p> <p>(6) 國家의 農業銀行 및 消費, 生産, 信用 組를 設立하고 水利를 改良한다.</p> <p>* 參席者: 80名(黨員 57,900名)</p> |
| 第 6 期 全 國 代表大會 | 1928. 6.18 ~ 7.11 (모스크바) | <p>(1) 이 大會에서는 陳獨秀의 投降主義와 左翼의 妄動主義를 批判</p> <p>(2) 黨이 當面한 基本的 任務는 大衆의 支持 獲得임을 指摘함.</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 10大綱領을 決定</p> <p>(1) 帝國主義의 支配를 쳐부순다.</p> <p>(2) 外國資本의 企業 및 銀行을 沒收한다.</p> <p>(3) 中國의 統一, 民族 自決權의 承認</p> <p>(4) 軍閥, 國民黨 政府를 顛覆한다.</p> <p>(5) 勞動者, 農民, 兵士의 代表會議에 의한 政府를 樹立</p> <p>(6) 8時間勞動制, 賃金引上, 失業救濟, 社會保障의 實施</p> <p>(7) 地主階級の 土地를 沒收하여 耕地를 農民의 것으로 한다.</p> <p>(8) 兵士의 生活을 改善하며 兵士에 土地와 일자리를 준다.</p> <p>(9) 苛酷한 諸課稅를 廢止하고 統一的 累進稅를 實施한다.</p> <p>(10) 世界의 ‘ 프롤레타리아 ’ 및 蘇聯과 聯合한다.</p> <p>* 參席者: 正式代表 84 名, 候補代表 34 名 (黨員 4 名餘名)</p> |
| 第 7 期 全 國 代表大會 | 1945. 4.23 ~ 6.11 (延 安) | <p>(1) 毛澤東의 ‘ 聯合政府를 論함 ’ 의 政治報告를 採擇</p> <p>(2) 朱德의 ‘ 解放軍 戰場을 論함 ’ 의 軍事報告를 採擇</p> <p>(3) 劉少奇의 ‘ 黨을 論함 ’ 의 報告를 聽取</p> <p>(4) 新黨規約을 採擇</p> <p>(5) 第 7 期 中央委員會 委員을 選出 (正式 中央委員 44 名, 中央委員候補 33 名)</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 正式代表 547名, 候補代表 208名(黨員 121萬名) |
| 第 7 期 中央委員會 第 2 次 全體會議 | 1949. 3 (河北省 平山縣) | <p>(1) 黨工作의 中心을 農村으로부터 都市로 옮긴다.</p> <p>(2) 都市에 있어서의 工作은 勞動者階級을 基本勢力으로 하여 知識分子를 獲得하고, 小 ' 부르조아 ', 民族 ' 부르조아 ' 를 統一戰線에 吸收, 帝國主義·國民黨 反動派 및 官僚 ' 부르조아 ' 를 打倒한다.</p> <p>(3) 都市의 管理와 建設은 우선 工業生産의 回復發展을 中心課題로 함.</p> <p>(4) 以上の 諸工作을 통하여 中國을 可能한限 조용한 農業國으로부터 工業國으로, 新民主主義國으로부터 社會主義國으로 移行시키기 위한 條件을 準備한다.</p> <p>* 中央委員 34 名과 中央委員候補 19 名이 參席</p> |
| 第 7 期 中央委員會 第 3 次 全體會議 | 1950. 6. 6 ~ 6. 9 (北 京) | <p>(1) ' 國家財政, 經濟狀況의 基本的 好轉을 爭取하기 위한 鬪爭 ' 이란 毛澤東의 報告를 聽取</p> <p>(2) 財政, 經濟好轉을 위한 3가지 條件으로 1) 土地改革의 完成, 2) 工·商業의 合理的 調整, 3) 國家財政의 大幅節減이란 3條件을 내세워 이것을 3年內로 達成키 위한 必要措置로써 다음과 같은 8項目을 採擇함.</p>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土地改革을 推進, 貧農에 融資하여 富農經濟를 保障하며 中農을 保護하여 地主를 孤立化시킨다. 2) 財政經濟業務의 統一管理, 統一指導, 財政收支의 均衡과 物價의 安定, 人員負擔의 輕減, 政府와 民間, 勞動者와 資本家의 關係整理 3) 軍隊의 一部 復元 4) 學校教育 및 社會·文化事業의 改革 5) 失業者 및 災民의 救濟 6) 統一戰線工作에서 閉鎖主義 排擊, 廣範圍한 各界人士에 人民代表會議를 結成시키고 여기에 政府의 主要施策을 討議시킨다. 7) 土匪, 特務, 惡質 '보스', 反革命分子의 肅清 8) 投降分子의 入黨沮止, 勞動者黨員의 吸收, 舊 解放區 農村에서의 黨員吸收 停止 |
| <p>全 國 代表大會 (臨時)</p> | <p>1955. 2.21 ~ 2.31 (北 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民經濟發展을 위한 第1次5個年計劃草案에 관한 決議' (2) 高崗·饒漱石·反黨聯盟에 관한 決議'를 採擇 (3) '黨의 中央과 地方 監察委員會 成立에 관한 決議'를 採擇 (4) 董必武를 書記로 하는 中央監察委員會를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選出 * 參席者：中央委員·候補委員 62名, 全 國 黨組織選出代表 257名 |
| 第 7 期 中央委員會 第 5 次 全體會議 | 1955. 4. 4 (北 京) | (1) 中共黨 全國代表會議 ('55.3.21 ~ 6.31) 에서 採擇한 3個決議와 中央監察委員會의 人選을 承認 (2) 林彪, 鄧小平을 中央委員會 政治局 委員에 補選 |
| 第 7 期 中央委員會 第 6 次 全體會議 | 1955.10. 4 ~ 10.11 (北 京) | (1) '農業 合作化問題에 관한 決議'를 採擇 (2) '黨의 第8期 全國代表大會 召集에 관한 決議'를 採擇 (3) '黨의 第8期 全國代表大會 代表 數와 選舉方法에 관한 決定'을 採擇 (4) 數次 修正한 '農業生産合作社 示範章程草 案'을 國務院 및 全國 人民代表大會 常務 委員會에 交付할 것을 決定 * 參席者：中央委員 238名, 中央委員候 補 25名 등 388名 |
| 第 8 期 全 國 代表大會 第 1 次 全體會議 | 1956. 9.15 ~ 9.27 準備會議 8.29 ~ 9.13 (北 京) | (1) 新 黨規約 採擇(鄧小平) (2) 第8期 中央委員會 委員을 選出(中央委員 97名, 中央委員候補 73名) (3) '政治報告에 관한 決議'를 採擇(劉少奇) (4) '國民 經濟發展을 위한 第2次5個年計劃 에 관한 提案'을 採擇(周恩來) * 參席者：代表 1,026名, 候補代表 107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名(黨員 1,073 萬名)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2 次 全體會議 | 1956.11.10 ~ 11.15 (北 京) | (1) '항가리' 革命後의 時局을 討議 (2) 1957 年度 經濟計劃 및 財政統計 數字를 討議 (3) 食糧과 主要 副食品問題를 討議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3 次 全體會議 | 1957. 9.20 ~ 10. 9 (北 京) | (1) 1956~67 年 全國 農業發展要綱(修正草案)을 基本的으로 採擇 (2) 工業管理體制 改善에 관한 規程(草案), 商業管理體制에 관한 規程(草案), 財政體制 改善 및 中央과 地方의 財政管理에 대한 區分에 관한 規程(草案), 勞動者, 職員의 勞動賃金과 勞動保障, 福祉問題에 관한 規程(草案)을 基本的으로 採擇 (3) 鄧小平 總書記의 '整風運動에 관한 報告'를 聽取 |
| 第 8 期 全 國 代表大會 第 4 次會議 | 1958. 5. 5 ~ 5.23 (北 京) | (1) '中央委員會의 活動報告에 관한 決議'를 採擇 (2) '各國 共產黨과 勞動者黨의 모스크바會議에 관한 決議'를 採擇 (3) '全國 農業發展要綱'(第 2 次 修正草案)을 採擇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6 次 全體會議 | 1958.11.28 ~ 12.10 (武 漢) | (1) '人民公社의 약간의 問題에 관한 決議'를 採擇 (2) 1959 年度 經濟發展의 약간의 指標를 確定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3) 毛澤東이 次期 國家主席 候補者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同意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7 次 全體會議 | 1959. 4. 2 ~ 4. 5 (上 海) | (1) 1959 年度 國民經濟計劃 草案을 討議 採擇 (2) 人民公社의 整備狀況을 檢討 (3) 政府機構의 主要人選을 決定 (4) 毛澤東의 ‘活動方法의 問題에 관한 講話’ 를 聽取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8 次 全體會議 | 1959. 8. 2 ~ 8. 16 (江西省 廬山) | (1) 1958 年의 生産量 統制의 잘못을 認定하고 1959 年의 計劃指標을 調整 (2) 右傾 機會主義 反對運動의 展開를 決定 (3) ‘增産·節約運動에 관한 決議’를 採擇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9 次 全體會議 | 1961. 1. 14 ~ 1. 18 (北 京) | (1) 各國 共產黨과 勞動者黨 代表者會議 (‘모 스크바’會議)에 관한 決議 採擇 (2) 1960 年度 國民經濟計劃 執行狀況과 1961 年度 經濟計劃 主要目標에 관한 報告를 聽 取 (3) 整風運動 展開를 決定 (4) 中央直轄의 6 局 (東北局, 華東局, 西南局, 中南局, 西北局, 華北局)을 設置하도록 決定 * 參席者 : 中央委員 83 名, 中央委員候補 87 名, 其他 23 名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10 次 全體會議 | 1962. 9. 24 ~ 9. 27 (北 京) | (1) 人民公社의 集團經濟의 加一層 強化, 農業 生産의 發展問題에 따른 討議를 하고, 決 定을 採擇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2) 商業活動의 問題에 따른 討議를 하고, 決定을 採擇 (3) 各級の 黨·政府의 主要幹部를 交流시킬 것 에 대한 決定을 採擇 (4) 修正主義 反對鬪爭의 貫徹을 確認, 全國的 社會主義 教育運動 展開를 呼訴 |
| 黨中央委員 會(中央政 治局擴大會 議) | 1965.9~10 (北 京) | 毛澤東, 吳晗에 대한 批判을 包含한 부르조 아 思想 批判展開를 指示 |
| 黨中央會議 | 1966. 5.16 以 前 (場所未詳) | (1) 彭眞 '5人組'의 '2月체제'의 無效를 決定 (2) 政治局 常務委員會 아래 文化革命 小組의 設置를 決定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11 次 全體會議 | 1966. 8. 1 ~ 8.12 (北 京) | (1) 「 부르조아 文化大革命에 대한 決定」 (16 個條)을 採擇 (2) 10 中全會 以後의 國內, 國際問題에 대한 政策을 承認 (3) 政治局 常委의 改編, 林彪를 第 2 人者로 決定 * 參席者: 中央委 委員· 候補委員, 各 中 央局과 各省·市·自治區 黨委 中央革命 小組의 成員, 北京의 大學 및 高專의 革 命的 教師, 學生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第 8 期 中央委員會 第 12 次 全體會議 | 1968.10.13 ~ 10.31 (北 京) | 林彪의 後繼者 地位를 承認 |
| 第 9 期 全 國 代表大會 | 1969. 4. 1 ~ 4.24 (北 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規約 修正案 討議採擇 - 毛澤東의 獨裁體制 強化 ○ 中央委員會 政治報告 聽取 및 審查 ○ 中央委員 70 名, 候補 中央委員 109 名 選出 ○ 林彪가 毛澤東의 後繼者임을 明記, 劉少奇 批判 ○ 中央書記處, 監察委員會 廢棄 ○ 中共軍의 共產黨에의 忠誠要求 <p>* 參席者: 1,512 名 (黨員: 2,200 萬名)</p> |
| 第 10 期 全 國 代表大會 | 1973. 8.24 ~ 8.28 (北 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周恩來의 政治報告 ○ 林彪, 진백달의 黨籍 永久剝奪 <p>* 參席者: 1,249 名 (黨員: 2,800 萬名)</p> |
| 第 10 期 3 次中央委 全體會議 | 1976.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鄧小平 復權 - 黨副主席, 軍事委 副主席, 國務院 副總理, 軍總參謀長 ○ 「4 人幫」逮捕와 華國鋒의 黨主席, 軍事委主席職의 合法性 追認 |
| 第 11 期 全 國 代表大會 | 1977. 8.12 ~ 8.18 (北 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華國鋒의 政治報告 (報告中 '政變'은 中共 黨內의 11 次 路線鬭爭 이며 文化革命은 「4 人幫」의 投獄으로 끝났음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을 '宣布함) 採擇 * 參席者: 1,510名(黨員: 3,500萬名) |
| 第 11 期 3 中全會 | 1978.12 (北 京) | ○ 鄧小平派가 得勢하고 華國鋒派는 本大會 以後 失脚 始作됨. ○ 1979年부터 全黨의 重點事業이 '4個現 代化'임을 公開的으로 宣布함. |
| 第 11 期 4 中全會 | 1979. 9.25 ~ 9.29 (北 京) | ○ 鄧小平派인 彭眞, 楊尙昆, 陸定一 등 12 名이 中央委 委員으로 增員 補充 ○ 趙紫陽, 彭眞을 中央政治局 委員으로 補 選 ○ 鄧小平이 提出한 '後繼者 3條件'을 黨 組織路線의 重要部分으로 採擇. |
| 第 11 期 5 中全會 | 1980. 2 | ○ 中央書記處를 復活 하고 胡耀邦을 總書 記로, 그외의 모든 書記는 鄧小平派로 選 任함. ○ 中央顧問委員會 新設, 整黨運動을 展開했으 나 얼마후 곧 失敗 |
| 第 11 期 6 中全會 | 1981. 6 (北 京) | ○ 華國鋒이 中共 黨主席, 中央軍事委 主席 을 辭任하고 黨副主席으로 降等됨. ○ 中共 黨主席은 胡耀邦이, 中央軍事委 主席 을 鄧小平이 各各 擔當, ○ 趙紫陽이 黨副主席으로 昇進됨 |
| 第 12 期 全 國 代表大會 | 1982. 9. 1 ~ 9.11 (北 京) | ○ 黨主席制 廢止 決定 ○ 鄧小平이 中央顧問委 主任, 中央軍事委 主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p>席 兼 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胡耀邦이 黨總書記 - 陳雲이 中央紀律檢查委 第1書記 - 華國鋒은 中央委 委員으로 降等됨으로써 鄧小平派 一色の 黨出現 <p>* 1983年 下半期부터 3年間的 期間 동안 黨의 氣風과 黨의 組織에 대한 全面整頓을 위한 ‘整黨運動을 開始할 것을 決定’ 함 (現在 進行中)</p> <p>* 參席者： 正式代表 1,600名, 10萬名) 候補代表 149名 (黨員：3,900萬名)</p> |
| <p>第 12 期 2 中全會</p> | <p>1983.10.11 ~ 10.12 (北 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 中央의 整黨에 관한 決定’ 採擇 ○ 胡耀邦을 主任으로 하는 ‘中央整黨工作委員會’ 成立 ○ ‘整黨에 관한 決定’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重人과 3不純의 整頓 (3重人：林彪·4人幫을 追從한 者, 造反起家分子, 打 險分子) (3不純：思想不純, 作風不純, 組織不純) - 組織의 任務：統一思想, 整輕作風, 規律強化, 純潔組織 |
| <p>第 12 期 3 中全會</p> | <p>1984.10.20 (北 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決定’ 採擇 - 中共이 産業의 生産性과 效率性을 위해 새로운 經濟政策을 採擇했음을 明示하였으나, 資本主義的 弊病들에 대한 나쁜 影響과 鬭爭해야 함을 警告 |

| 名 稱 | 時期및場所 | 主 要 內 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이 '計劃統制經濟'로 社會主義가 繼續 存續할 것임을 強調하면서도 '改革'은 歷史의 必할 수 없는 傾向임을 強調 -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差異는 '市場體系'에 있는 것이 아니라 '所有'와 '搾取階級 有無與否에 있다고 主張 * 주로 都市 經濟改革을 다루기 위해 열린 것이나, 금반 採擇된 經濟改革은 産業構造 全般에 미치고 있음. |
| <p>第 12 期 4 中全會</p> | <p>1985. 9.13 ~¹⁶ (北 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中央委員 65 名등 131 名の 黨職者 辭職 處理 ○ 黨政治局員中 葉劍英等 10 名 辭退 |
| <p>臨 時 全國代表 大 會</p> | <p>1985. 9.18 ~²³</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指導層 改編 ○ 「第 7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1986 ~ 90)에 관한 黨中央의 提案」 討議 * 參席者： 992 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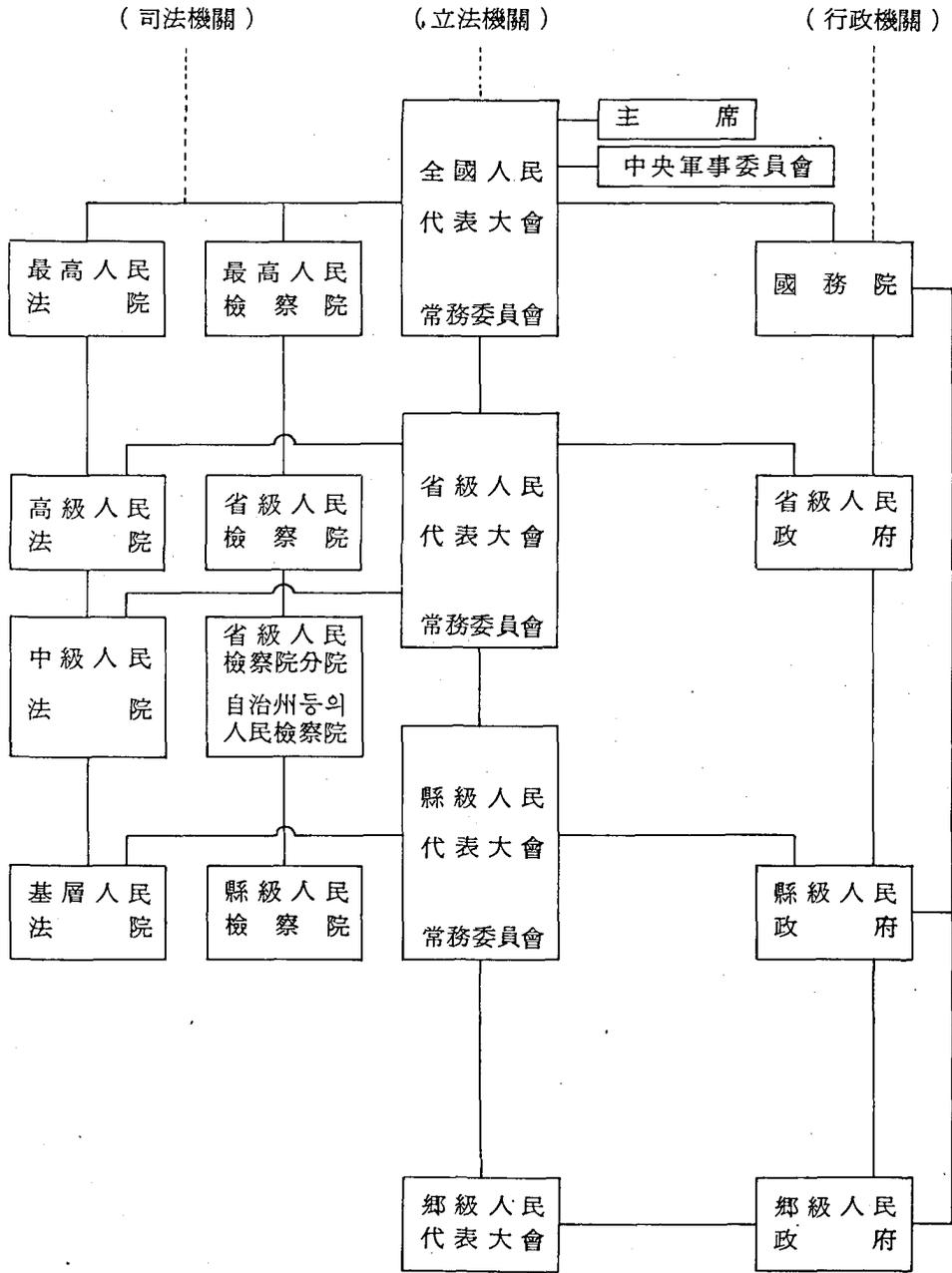
3. 國家機構

가. 概 觀

中共의 國家機構는 3 權分立의 形式을 갖추고 있다. 立法機關으로는 全國人民代表大會가, 行政機關으로는 國務院이 있다. 司法機關은 2 院化되어 있는데 하나는 裁判機能을 擔當하는 人民法院이고 다른 하나는 檢察機能을 擔當하는 人民檢察院이다. 以上の 네 機關가운데 立法機關인 全國人民代表大會가 最高의 國家權力機關이다.

中共의 國家機構는 行政單位에 따라 4 段階로 構成되어 있다. 最上層部는 中央機關이고 그 다음이 省, 自治區, 直轄市이다. 第3 段階는 縣, 自治縣, 市이고 맨아래가 鄉과 鎮인데 鄉은 農村의 單位이고 鎮은 都市의 單位이다.

國家機構體系



나. 立法機關

(1) 全國人民代表大會

| | |
|-----|--|
| 性 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權力の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임. ○ 그 常設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며, 全人大와 常務委가 立法權을 行使함. |
| 構 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省, 自治區, 直轄市 및 軍代表로 構成 ○ 各 少數民族은 모두 適當數의 代表를 가짐. |
| 任 期 | 5 年 |
| 會 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每年 1 回 常務委에 의해 召集됨. ○ 常務委나 全代表의 1/5 以上이 提議하면 臨時召集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の 改正 : 常務委 혹은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 1/5 以上의 提議에 의해 全國人民代表大會 全體代表의 2/3 以上 의 贊成으로 通過됨. ○ 刑事·民事·國家機構에 관한 基本法律 및 其他 法律의 改正 및 制定 : 全國人民代表大會 全體代表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通過됨 ○ 中華人民共和國의 ‘主席’, ‘副主席’ 選舉權 및 罷免權 ○ 主席의 提請에 따른 ‘國務院總理’의 決定權 및 罷免權 ○ 國務院總理의 提請에 따른 國務院 ‘副總理’, ‘國務委員’, 各部 ‘部長’, 各委員會 ‘主任’, ‘審計長’, 國務院 ‘秘書長’의 決定權 및 罷免權 ○ ‘中央軍事委’ 主席選舉 및 同 主席의 提請에 따른 中央軍事委의 余他 組織人員의 人選 決定權 및 罷免權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人民法院長’, ‘最高人民檢察院檢察長’의 選舉權 및 罷免權 ○ 國家豫算과 豫算執行에 대한 審査 및 承認 ○ 省, 自治區, 直轄市 設置의 承認 ○ 特別行政區의 設立 및 그 制度의 決定 ○ 戰爭과 平和의 問題에 관한 決定 ○ 最高國家權力機關으로서 應당 必要하다고 보는 件에 대한 職權行使 |
|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民族委員會, 法律委員會, 財政經濟委員會, 教育·科學·衛生委員會, 外務委員會, 華僑委員會 등 必要한 專門委員會를 設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人大 閉會中 各 專門委員會는 常務委 指導를 받음. - 各 專門委는 全人大 및 常務委 指導下에 關係議案을 檢討, 審議, 起草 ○ 全人大와 全人大 常務委는 必要時 特定問題에 관한 調查委員會를 構成하고, 調查委의 報告에 依據하여 相應한 決議 決定 |

(2)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 | |
|-----|--|
| 組 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 1人, 副委員長 若干名 ○ 秘書長, 委員 若干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數民族代表도 應당 人員 割當 ○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常務委 構成員에 대한 選出 및 罷免權 保有 |
| 任 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任期와 同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次期 常務委 選出時까지 그의 職權行使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副委員長은 1回만 連任可能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の 解釋과 憲法の 實施 監督 ○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制定한 法律 以外의 其他 法律의 制定 및 改正 ○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全國人民代表大會가 制定한 基本法律에 대해 部分的 修正 및 補充 ○ 法律과 命令의 解釋 ○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國民經濟 및 社會發展計劃을 審査, 批准 ○ 國務院, 中央軍事委, 最高人民法院 및 檢察院의 監督 ○ 駐外國全權代表의 任免 決定 ○ 國家勳章 및 榮譽稱呼의 規定 및 決定 ○ 特赦決定 ○ 全國人民代表大會가 授與한 其他 職權行使 등 ○ ‘常務委 委員長’: 常務委 會議召集 및 主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副委員長, 秘書長은 委員長의 일을 協助 - 委員長, 副委員長, 秘書長은 常務委의 日常事業 處理 ○ ‘常務委員會’: 全國人民代表大會에 責任을 지며 同時에 事業에 관한 報告를 함. |

(3)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

| | |
|-----|--|
| 性 格 | 該當地方의 國家權力機關 |
| 組 織 | 省, 直轄市, 縣, 市, 市管轄區, 鄉, 鎮, 民族鄉에 設立 - 縣級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에는 常務委員會 設置 |

| | |
|-----|---|
| 選 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省, 直轄市, 市(區設置) 人民代表는 次下級 人民代表大會에서 選出 ○ 그외의 人民代表는 選舉民에 의해 直接 選出 |
| 任 期 | <p>5年: 省, 直轄市, 市(區設置)</p> <p>3年: 上記 人民代表大會외의 地方</p>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當該 行政區域內의 憲法, 法律, 行政法規의 遵守와 執行保障 ○ 法律에 따른 決議 議決 및 公布 ○ 同級 人民政府 및 法院, 檢察長 選出 ○ 地方의 經濟, 文化建設 및 公共事業 建設計劃 審査, 決定 ○ 民族鄉의 人民代表大會는 民族의 特徵에 適合한 措置採擇 |

(4) 全國人民代表大會 主要會議內容

| 歷 次 | 年 度 | 主 要 內 容 |
|---------------|-------------------|--|
| 第 1 期 1次會議 | '54. 9.15 ~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憲法 制定 公布 ※ 代表人數: 1,226名(任期4年) |
| 第 1 期 2次會議 | '55. 7. 5 ~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經濟發展 第1次5個年計劃, 國家豫算, 決算, 黃河水害의 措置와 黃河水利綜合計劃 및 兵役法 등 採擇 * '58.2 第5次 會議에서 國務院機構의 調整決議 등의 通過를 끝으로 第1期 任期滿了 |

| 歷次 | 年度 | 主要內容 |
|----------------|------------------------|--|
| 第 2 期 1 次會議 | '59. 4.18 ~ 28 | ○ 政府事業 工作報告, 經濟計劃, 國家豫·決算 및 西藏問題에 관한 決議 등 採擇 - 國家 領導人員 選舉 ※ 代表人數: 1,226 名 (任期 4 年) |
| 第 2 期 2 次會議 | '60. 3.30 ~ 4.10 | ○ 1956 年부터 1967 年까지의 全國農業發展 要綱 採擇 * '63.11 第 4 次 會議에서 第 3 期 '全 人大代表' 定員과 選舉問題의 決議 등 通過를 끝으로 任期滿了 |
| 第 3 期 1 次會議 | '64.12.21 ~ '65.1.3 | ○ 政府事業 工作報告, 經濟計劃, 國家豫算의 採擇 - 國家領導 工作人員選舉 '65 의 文化大革命以後 그 機能停止 ※ 代表人數: 3,040 名 (任期 4 年) |
| 第 4 期 1 次會議 | '75. 1.13 ~ 17 | ○ 周恩來, '政府事業報告 및 "今世紀內에 農業, 工業, 國防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 全面實現" 위해 糾合할 것' 을提起 - 憲法修正案 通過 ※ 代表人數: 2,885 名 (任期 5 年) |
| 第 5 期 1 次會議 | '78. 2.26 ~ 3. 5 | ○ 政府事業報告,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國歌 採擇 - 國家領導 工作人員選舉 - 常務委 委員長의 地位를 名實相符한 國家元首로 높임.(葉劍英이 委員長에 選出 됨) |

| 歷次 | 年度 | 主要內容 |
|----------------|----------------------|--|
| 第 5 期 2 次會議 | '79. 6.19 ~ 7. 1 | <p>※ 代表人數： 3,497 名 (任期 5 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 若干의 規定修正에 관한 決議, 地方의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의 各級 人民政府組織法, 選舉法, 刑法, 刑訴法 등 採擇 * 특히 中外合資經營企業法 採擇 |
| 第 5 期 3 次會議 | '80. 8.30 ~ 9.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計劃의 安配 및 國籍法, 婚姻法, 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등의 採擇 * 특히 華國鋒 이 國務院總理 辭任하고 趙紫陽이 國務院總理에 選出됨. |
| 第 5 期 4 次會議 | '81.11.30 ~ 12.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改正된 憲法草案에 관한 決議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合同法, 外國企業所得稅法 採擇 - 全人民의 植樹運動 展開法 採擇 ○ 改正憲法案 採擇 ○ 第 5 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職權에 관한 決議 採擇 ○ '義勇軍行進曲'을 國歌로 回復할데 대한 決議 採擇 ○ 趙紫陽總理의 '第 6 次 5 個年計劃에 관한 報告' 採擇 및 '中共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第 6 次 5 個年計劃'의 承認 ○ 全國人民代表大會組織法, 國務院組織法 등 採擇 |

| 歷次 | 時期 | 主要內容 |
|----------------|-------------------|---|
| 第 6 期 1 次會議 | '83. 6. 6 ~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理 趙紫陽 '政府事業 報告' ○ 副總理兼 國家計劃委 主任 姚依林 '1983 年 國民經濟와 社會發展計劃에 관한 報告' ○ 財政部長 王丙乾 '1982 年 豫·決算에 관한 報告' <p>* 特徵： 非共產黨員의 代表進出 增加 (代表中 37.5%)</p> <p>- 이는 '第 5 期 全人大'에 비해 10% 增加임.</p> <p>※ 代表人數： 2,978 名 (任期 5 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中 軍人의 數 減少 (5 期： 14.4%, 6 期： 0.9%) ○ 幹部 및 知識分子의 數 增加 (이는 '4 個 現代化'를 促進키 위해 '革命化, 年少化, 知識化, 專門化'의 幹部政策의 貫徹을 立證) ○ 國家安全部 設立 (部長： 凌雲) ○ 中央領導人員 選出 (國家主席： 李先念, 副主席： 烏蘭夫) ○ 常務委員長： 彭眞, 副委員長： 20 名 |
| 第 6 期 2 次會議 | '84. 5.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理 趙紫陽 政府事業 報告 - '經濟體制改革' 과 '對外開放' (14 個 沿海都市 開放)에 關해 報告. |
| 第 6 期 3 次會議 | '85. 3.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彭眞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의 開幕演說을 통해 '規律問題', '政策과 法律關係問題', '經濟體制 改革問題' 및 今般 會議의 意義에 言及 |

| 歷次 | 時期 | 主要內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趙紫陽總理는 政府事業報告에서 ‘1985年의 經濟體制 改革의 重點을 勞賃制度, 價格體系 安定’ 등에 들 것임을 強調 |

다. 行政機關

(1) 中華人民共和國 主席

| | |
|-----------|---|
| 選出方法 및 任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있는 45歲以上の 中華人民共和國 公民中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選出 ○ 主席(副主席包含)의 每期 任期는 5年으로 하고 1回 連任可能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人大’의 決定과 ‘全人大常務委’의 決定에 根據하여 法律을 公布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院總理, 副總理, 審計長, 國務委員, 各部 部長, 委員會 主任, 秘書長의 任免權 - 國家勳章 및 榮譽稱號 授與權 - 特赦令, 戒嚴令 發布權 - 戰爭狀態 動員令 宣布權 ○ 對內外的으로 國家를 代表, 外國使節을 接受하고, ‘全人大常務委’의 決定에 根據하여 駐外國全權代表의 派遣 또는 召喚權을 갖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과 締結한 條約 및 重要協定을 批准 또는 廢棄할 權限을 가짐. |
| 職位繼承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席의 闕位時: 副主席이 主席의 職位를 繼承함. ○ 副主席 闕位時: ‘全人大’의 補選에 依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席, 副主席 모두 關位時: ‘全人大’의 補選에 의하 나, 補選以前은 ‘全人大常務委 委員長’이 臨時主席의 職을 代理함. |
|--|--|

(2) 國務院 (中央人民政府)

| | |
|---------|---|
| 性 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最高權力機關의 執行機關이며 最高의 國家行政機關 임. |
| 組 織 構 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理 1名, 副總理 若干名, 國務委員 若干名, 各部 部 長, 各 委員會 主任, 審計長, 秘書長으로 構成됨. ○ 國務院은 總理責任制, 各部·各 委員會는 部長·主任責 任制임. ○ 國務院의 組織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 * 總理, 副總理, 國務委員, 秘書長은 ‘國務院 常務會 議’를 組織하고 ‘總理’가 國務院 常務會議 및 國 務院 全體會議을 召集 및 主宰함. |
| 任 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院의 每期 任期는 全人大 每期 任期와 같음. ○ 總理·副總理·國務委員은 1回 連任可能.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 法律 및 法令에 根據하여 行政措置의 規定, 行政 法規의 制定 및 批准, 決議와 命令을 發表함. ○ 各部 및 各委員會의 任務와 職責을 規定하며, 各部 및 各委員會의 事業 및 全國 地方 各級 國家行政機關의 事 業을 領導함. ○ 國民經濟와 社會發展計劃 및 國家豫算을 編成, 執行함. ○ 民族事務를 領導 및 管理하며, 少數民族의 平等權利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權利를 保障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部 部長, 各委員會 主任이 發表한 不適當한 行政法規, 命令, 指示의 改正 또는 撤回 등 |
| 義 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人大 혹은 全人大 常務委에 다음 事項을 提出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經濟, 社會發展計劃과 計劃의 執行狀況 - 國家豫算 및 豫算執行狀況 - 全人大 常務委에 의해 批准 또는 廢棄된 外國과의 條約 또는 重要協定 - 全人大 또는 全人大 常務委에 의해 決定된 任免事項 - 其他 全人大 또는 全人大 常務委에 의해 法律 또는 法令으로 規定된 事項을 提出함. - 全人大에 責任지며 同時에 事業報告함. - 全人大 閉會期間中에는 全人大 常務委에 責任지며 事業報告함. |

(3) 國家中央軍事委員會

| | |
|-----|--|
| 任 期 | 全人大 任期와 同一 |
| 構 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 席 (主席責任制) ○ 副主席 若干名 ○ 委員 若干名 |
| 權 限 | ○ 全國의 武裝力 指導 |
| 義 務 | ○ 中央軍事委 主席은 全人大 常務委에 責任 |

(4) 地方 各級 人民政府

| | |
|-----|---|
| 性 格 | 地方의 各級 行政 및 執行機關 |
| 組 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省, 直轄市, 縣, 市, 市管轄區, 鄉, 民族鄉, 鎮에 設立 - 省長, 縣長, 區長, 鄉長, 鎮長 責任制 實施 ○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에는 自治機關 設立 |
| 任 期 | 同級 地方人民代表大會와 同一 |
| 權 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縣級以上의 地方人民政府는 當該 行政區域內의 經濟, 教育, 科學, 文化, 衛生·體育事業, 都市, 農村의 建設事業 및 財政, 民政, 公安, 民族事務, 司法行政, 監察 등의 行政業務 處理 ○ 鄉, 民族鄉, 鎮의 人民政府는 上級 國家機關의 命令執行 및 當該 行政區域內의 行政業務 處理 |
| 義 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級 人民代表大會 및 次上級 國家行政機關에 責任을 지며 業務報告 ○ 國務院의 統一的인 指導에 服從 |
|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와 農村은 住民의 居住地域에 따라 住民委員會, 村民委員會 등 末端의 大衆自治組織 設置 - 同 委員會는 人民調整, 治安保衛, 公共衛生業務 등을 處理 |

國家機構與人物 ('85.9.30 現在)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彭真
 副委員長：陳丕顯 韋國清
 耿飭 胡厥文
 許德珩 彭真 冲良
 玉任重 史 史
 朱學範 阿浦 阿旺 哲美
 班禪額爾德尼 却吉 聖贊
 賽福鼎 周谷城
 嚴濟慈 胡愈之
 榮毅仁 葉 飛
 韓先楚
 鄧漢生
 秘書長：王漢斌
 委員：(155 人)

國家主席：李先念
 國家副主席：烏蘭夫

國務院
 總理：趙紫陽
 副總理：萬里 姚依林 李鵬 田紀雲
 國務委員：方毅 谷牧 康世恩
 張慕華(女) 姬鵬飛 張勁夫
 張愛萍 吳學謙 王丙乾 宋平
 秘書長：田紀雲

國家中央軍事委員會
 主席：鄧小平
 副主席：葉劍英 徐向前
 蘇秉璋 楊尚昆
 秘書長：楊尚昆
 委員：4名

最高人民法院
 鄧天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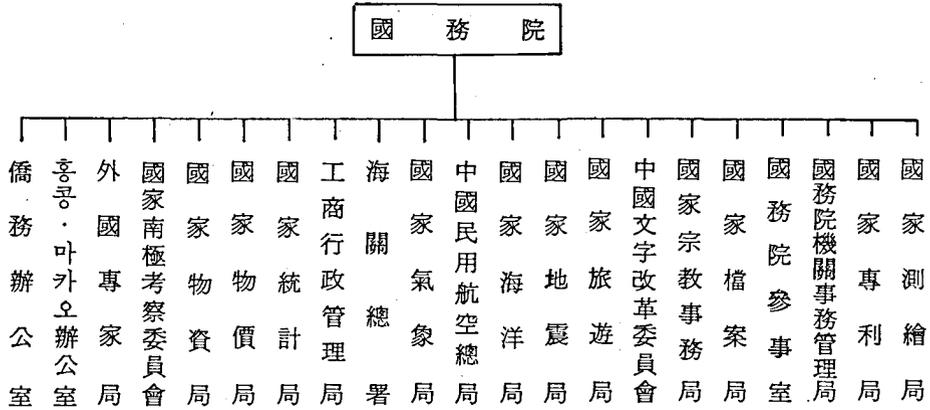
最高人民檢察院
 楊易辰

法律委員會
 主任：彭冲
 民族委員會
 主任：阿浦·阿旺 哲美
 財政委員會
 主任：王任重
 外務委員會
 主任：耿飭
 教育、科學、文化、保健委員會
 主任：周谷城
 華僑委員會
 主任：葉飛

| | | | |
|--------------------|------------------|-----------------|------------------|
| 外交部 吳學謙 | 司法部 鄧瑜 | 冶金工業部 戚元靖 | 輕工業部 楊波 |
| 國防部 張愛萍 | 財政部 王丙乾 | 機械工業部 周建南 | 鐵道部 丁關根 |
| 國家計劃委員會 宋平 | 審計署 呂培俊 | 核工業部 蔣心雄 | 交通部 錢水昌 |
| 國家經濟委員會 呂東 | 中國人民銀行 陳慕華(女) | 航空工業部 莫文祥 | 郵電部 楊泰芳 |
|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趙紫陽 | 商業部 劉毅 | 電子工業部 李鐵映 | 勞動人事部 趙東宛 |
|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方毅 | 對外經濟貿易部 鄭拓彬 | 兵器工業部 鄧家華 | 文化部 朱德之 |
|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丁衡高 | 農牧漁業部 何康 | 航天工業部 李緒鄂 | 廣播電視部 艾知生 |
| 國家民族事務委員會 楊靜仁 | 林業部 楊種 | 煤炭工業部 李洪思 | 國家教育委員會 李鵬 |
| 公安部 阮崇武 | 水利電力部 錢正英(女) | 石油工業部 王壽森 | 衛生部 崔月波 |
| 國家安全部 賈春旺 | 城鎮建設環境保護部 芮杏文 | 化學工業部 秦仲達 | 國家體育運動委員會 李夢華 |
| 民政部 崔乃夫 | 地質礦產部 孫朱訓 | 紡織工業部 吳文英(女) | 國家計生委 王偉 |
| 新華通信社 程青 | 中國科學院 盧嘉錫 | 中國社會科學院 馬洪 | |

| | | | | |
|------------|------------|----------------|---------------------|----------------|
| 北京市 陳希同 | 天津市 李瑞環 | 河北省 張譽光 | 山西省 王森浩 | 內蒙古自治區 布赫 |
| 遼寧省 全樹仁 | 吉林省 趙修 | 黑龍江省 陳雷 | 上海市 江澤民 | 江蘇省 顧秀蓮(女) |
| 浙江省 薛駒 | 安徽省 王郁昭 | 福建省 胡平 | 江西省 趙增益 | 山東省 梁步庭 |
| 河南省 何竹康 | 湖北省 黃知真 | 湖南省 劉正 | 廣東省 葉選平 | 廣西壯族自治區 韋純東 |
| 四川省 麴民寬 | 貴州省 王朝文 | 雲南省 普朝柱 | 西藏自治區 多杰才旦 | 陝西省 李慶偉 |
| 甘肅省 陳光毅 | 青海省 宋瑞祥 | 寧夏回族自治區 黑伯理 | 新疆維吾爾自治區 司馬義·艾買提 | |

※ 國務院 直屬機構



라. 司法·警察機關

(1) 司法, 警察制度의 特色 및 任務

| 區 分 | 內 容 |
|-----|---|
| 特 色 | <p>國家의 法秩序 維持, 社會公共의 安寧維持, 人民의 合法的 權利 및 財產保護, 中共政權의 內部統治, 프롤레타리아獨裁 強化, 革命의 防衛와 反革命의 鎮壓 등을 위한 重要한 武器이며 道具임.</p> |
| 任 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秩序 및 治安維持 ○ 公安, 檢察, 法院의 3 部門이 3 位一體로 連繫되어 폭넓은 '政治, 思想工作' 을 擔當 ○ 上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反共, 反革命分子를 적발하고 그 破壞活動을 防止함은 물론, 積極的으로 黨員이나 人民大衆을 動員, 懲罰, 訓練, 改造運動을 통하여 革命隊列을 純潔化하고, 革命意志를 高揚시켜 階級鬭爭을 強化하는데 있음. |

(2) 人民法院

○ 法院의 種類

| 種 類 | 設置單位 | 監 督 機 關 | 備 考 |
|--|------------------|-------------------------|--|
| 最高人民法院 | 中 央 | 全國人民代表大會 同 常務委員會 | ○ 最高 裁判機關 ○ 院長 任期는 全人大 任期와 同一, 1 回 連任可能 |
| 高級人民法院 | 省, 直轄市, 自治區 | ○ 最高人民法院 ○ 同級 國家權力機關 | |
| 中級人民法院 | 省, 直轄市, 自治區, 自治州 | ○ 高級人民法院 ○ 同級 國家權力機關 | |
| 基層 (末端) 人 民 法 院 | 縣, 市, 自治縣, 市管轄區 | ○ 中級人民法院 ○ 同級 國家權力機關 | |
| 特別人民法院 ○ 軍事法院 ○ 鐵道運輸法院 ○ 水上運輸法院 ○ 森林法院 | 必要基準에 依據 設置 | ○ 最高人民法院 | 特別人民法院의 組織과 職權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別途로 定함. |

○ 裁判上の特徴

| 區 分 | 內 容 |
|-----------|---|
| 合議制構成 | 簡単な民事事件, 輕微한 刑事事件이나 法律이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合議部를 構成 |
| 公開原則 | 人民法院의 事件審理는 國家의 機密이나 個人의 秘密 및 未成年者의 犯罪事件을 除外하고는 모두 公開 |
| 民主集中制 實 施 | 各級 人民法院에는 院長의 提請에 의해 同級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任命한 委員들이 裁判委員會를 構成하여 裁判事務에 關係있는 問題를 討議함. (事實上的 裁判關與) |
| 2 審終審制 | 中·高級 人民法院 및 最高人民法院에서 2 審判決 擔當 |

(3) 人民檢察院

○ 檢察院의 種類

| 種 類 | 設置單位 | 監 督 機 關 | 備 考 |
|---------|---|--------------------------------|--|
| 最高人民檢察院 | 中 央 | 全國人民代表大會 및 同 常務委員會 | ○ 最高法律監督機關 ○ 檢察長의 任期는 全人大 任期와 同一, 1 回만 連任可能 |
| 人民檢察院 | 省, 直轄市, 自治區, 自治州, 省管轄市, 縣, 市, 自治縣, 市管轄區 | ○ 上級人民檢察院 ○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 |

| 種 類 | 設置單位 | 監 督 機 關 | 備 考 |
|------------------------------------|-------------------------------------|-------------------------|--|
| 人民檢察院 分 院 | 省, 自治區 直轄市 | 省, 自治區, 直轄市級 人民檢察院 | |
| 人民檢察院 事 務 所 | 工業, 鑛業 地區, 農業 開墾地區, 林業地區 등 | 省級 人民檢察院 및 縣 級 人民檢察院 | 省級的 人民檢察院 및 縣級的 人民檢察院은 事務上의 必要에 따라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 務委員會의 承認을 얻 어 設置 |
| 特 別 人 民 檢 察 院 軍 事 檢 察 院 等 | 特 殊 事 項 取 扱 | 最高人民檢察院 | 特別人民檢察의 設置, 組織, 職權은 全國人 民代表大會 常務委員 會가 別途로 정함. |

- 監察事務의 施行 : 各級 人民監察院은 監察委員會를 設置하여 民主集中制를 實行하고, 大衆路線을 堅持 (人民裁判) 하여 大衆의 意見聽取 및 監督을 받아들여야 함.

(4) 公安 (警察) 機關

- 特 色

公安機關은 刑事事件을 處理함에 있어 人民法院, 人民檢察院과 責任을 分擔하고 相互 協力하며 相互 制約을 받도록 되어 있다. (中共憲法 第 135 條) 또한 公安組織은 黨과 政府의 政治部 門에서도 가장 組織이 크고, 重要한 地位를 占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破壞活動, 叛亂鎮壓, 黨內肅清 등 統治權力 가운데 重要한 部署中의 하나이다.

○ 任 務

- ① 殺人, 放火, 強奪, 竊盜, 間諜行爲, 各種 破壞活動을 한 現行 反革命分子的 處罰
- ② 叫라撒布, 反動슬로건 流布, 反革命에 관한 匿名書信 發送, 反動標語 附着 등 反革命行爲者 處罰
- ③ 革命大衆과 革命大衆 組織의 襲擊行爲 處罰 등을 들 수 있다.

○ 組 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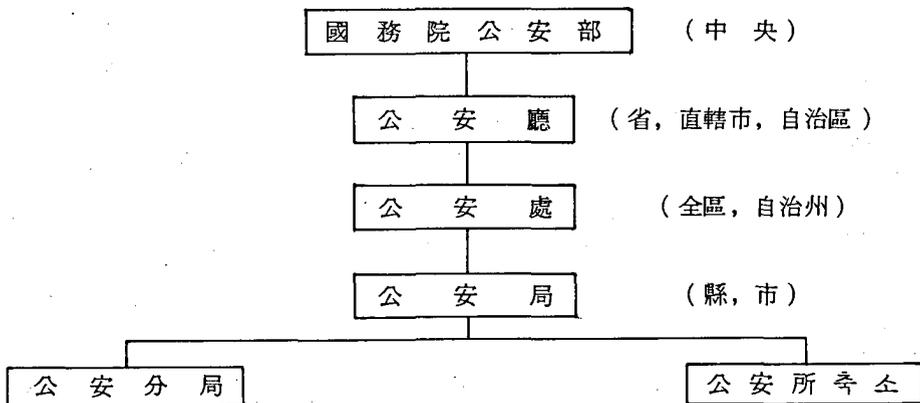
中共의 公安組織은 一般組織과 人民武裝部隊로 構成된다.

一般組織은 國內 治安維持部署이며 人民武裝部隊는 1955 年부터 公安部 傘下에 公安部隊가 있어 邊境警備를 擔當하여 오던 중 1958 年 公安部로부터 軍에 移管되었다.

1983 年에 지금까지 國內警備를 擔當했던 部隊中 國境 警備를 擔當했던 部隊가 軍에서 分離되어 公安部 傘下에 人民武裝警察 部隊를 創設하였다.

人民武裝警察部隊는 國境警備, 國內 治安維持, 黨·政府, 外國

一 般 組 織



公館 등 主要機關 警護任務를 擔當하며 直轄市, 省 등 1級行政區域 및 總司令部(北京) 隸下에 設置되어 있다.

4. 主要政治團體

가. 中國 人民政治協商會議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中共의 이른바 ‘人民民主統一戰線’ 組織形態로서 1949年9月 共產黨의 提議로 成立되었으며, 共產黨과 民主諸 黨派外에 人民團體, 少數民族, 華僑, 愛國分子 代表들이 參加하고 있다.

특히 ‘人民政協’은 建國初期에는 臨時憲法 役割을 한 ‘人民政協共同綱領’을 制定하여 中央人民政府를 誕生시켰으며, 그후에도 ‘人民政協 全國委員會’는 政府에 相當한 役割을 해왔다.

그러나 1954年9월에 이르러 全國人民代表大會가 成立함으로써 ‘人民政協’은 本來의 ‘人民民主統一戰線’組織形態로서의 機能과 任務를 갖게 되었고, ’64年 第4期 全國委員會 開催以後 活動이 中斷狀態에 있었으나, ’78年 2~3月 北京에서 第5期 全國委 第1次 會議를 開催하여 鄧小平을 主席으로 選出하고 ‘人民政協’의 性格을 中國共產黨이 指導하는 革命的 統一組織이라고 規定하는 新規約를 採擇하였다.

그후 全人大와 時期를 같이하여 每年 1回 全國委員會를 開催하고 있으며, 全國委 委員들은 반드시 全人大에 參席하고 있다.

1983年6月4日~22日 第6期 第1次 會議가 開催되어 鄧穎超를 主席으로 選出하고 楊靜仁(國家民族事務委員會 主任), 巴金(作家)

등 29 名의 副主席을 選出했다.

第 6 期 全國委의 特徵은 共產黨員의 比率을 줄여 統一戰線機構로서의 色彩를 強化한 점으로서 297 名의 常務委員中 共產黨員 比率이 70 %에서 36 %로 되고 25 %였던 8 個 民主黨派가 123 名으로서 42 %를 차지하였다.

나. 民主諸黨派

中共에는 中國國民黨 革命委員會 등 8 個 諸黨派가 있으나 形式上의 組織일 뿐, 現在는 存在意義마저 稀薄해져가고 있으며, 특히 文化革命의 被害를 보아 아직까지 活動을 再開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들 各 黨派에 加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中國共產黨의 承認을 받고 있으며 共產黨과의 사이에 “長期共存, 相互監督”의 方針이 정해져 있고, 실제 中國共產黨 青年團員들이 1~2 割程度 加入되어 있다는 점을 考慮해 볼 때, 이들 諸黨派는 부르조아 知識分子나 其他 民族主義者 등에 대한 思想改造, 精神改造를 主任務로 하

民主諸黨派

| 黨 派 名 | 主 席 | 設立年度 | 備 考 |
|-----------|-------|------|------------|
| 國民黨革命委員會 | 王 昆 倫 | 1948 | |
| 民 主 同 盟 | 史 良 | 1941 | |
| 民 主 建 國 會 | 胡 厥 文 | 1945 | |
| 民 主 促 進 會 | | 1945 | 周建人 死亡後 空席 |
| 農 工 民 主 黨 | 季 方 | 1930 | |
| 致 公 黨 | 黃 鼎 臣 | 1925 | |
| 九 三 學 社 | 許 德 珩 | 1944 | |
| 臺灣民主自治同盟 | 蘇 子 蘅 | 1947 | |

는 中國共產黨의 御用團體에 不過하다

다. 其他 主要團體

| 團體名 | 責任者 | 設立年度 | 備考 |
|-----------------|-----|---------|--|
| 中國共產主義 青年團 | 胡錦濤 | 1922. 5 | 中國共產黨의 青年組織 |
| 中國少年先鋒隊 | | | 中國共產黨의 少年, 兒童組織 |
| 中華全國 青年聯合會 | 劉維明 | 1949. 5 | 青年團體의 聯合組織 - 中國 共產主義青年團의 核心 勢力 - 中華基督教青年會 全國協會 - 中華基督教女性會 全國協會 등 |
| 中華全國總工會 | 倪志福 | 1922. 5 | 勞動組合 |
| 中華全國 婦女聯合會 | 康克清 | 1949. 4 | 婦女組織 |
| 中華全國 學生聯合會 | 李克強 | 1949. 3 | |
| 中國紅十字會 | 錢信忠 | 1904 | 赤十字組織 |
| 中國人民 救濟總會 | | 1953.10 | 宋慶齡以後 空席 |
| 中華全國 歸國華僑聯合會 | 張國基 | 1956.10 | |
| 中國人民對外 友好協會 | 王炳南 | | 民間外交團體 |
| 中華全國工商 聯合會 | 胡子昂 | 1950. 4 | |

資料：中國手冊，大公報，1984.

Ⅲ. 外 交

中共의 實用主義體制는 內政뿐만 아니라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과감한 轉換을 試圖하고 있다.

당초 鄧小平集團은 美·中共 外交關係 樹立(79.1)과 日·中共 平和友好條約 締結(1978.8) 등으로 反蘇·親西方의 方向으로 나아갔으나, 中共의 對美·日 接近이 限界에 達着하게 되자 이제는 美·蘇 等距離外交를 主軸으로 「自主獨立外交」路線을 堅持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外交政策은 「平和共存 5個原則」을 背景으로 하여 第3世界와의 關係改善을 追求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고, 中共은 民航機 被拉事件과 漁雷艇救助事件, 戰鬥機 이리 불시착 등을 契機로 韓國과의 關係增進을 계속 摸索해오고 있다.

1. 外交政策의 基本要素

中共의 國際情勢에 대한 認識은 첫째, 마르크스·레닌 및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世界革命論에 그 基礎를 두고 있으며, 특히 스탈린에 의해 戰略戰術화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1921年 中國共產黨이 創黨된 이래 中共指導者들의 指導理念과 外交政策의 基本骨格을 이루어오고 있다.

1935年 毛澤東은 黨權을 掌握한 이후 獨自의인 共產革命 遂行方法을 摸索하면서도 國際問題에 관한 스탈린의 解釋과 觀點을 매우 尊重하여 中國共產黨의 幹部들에게 教育시켰다.

이것은 中國共產黨이 1949年 政權을 樹立할 때까지 蘇聯 共產黨과의 關係를 除外하고는 거의 孤立된 狀況下에서 抗日鬪爭과 對國

民黨鬭爭을 展開하는 데 注力했기 때문에 對外的인 問題에 깊은 關心을 들릴 수 없었고, 단지 蘇聯과의 關係強化만이 國際 共產組織에서의 指導的 地位를 認定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毛澤東思想을 들 수 있는 데, 毛澤東의 對外觀은 「中間地帶論」이라 要約할 수 있다.

中間地帶論은 毛澤東을 비롯한 中國 共產黨 指導者들이 그들의 오랜 反帝鬭爭의 經驗을 통해 集約한 對外戰略이라 할 수 있는데, 2次大戰後에 새로이 改編된 美·蘇 兩大陣營 사이에 나름대로의 中國 位置 設定을 위해 提示된 戰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立場은 國共鬭爭을 위해 對蘇一邊倒政策을 취하고 있었던 中共이 蘇聯의 世界觀인 帝國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間的 對決이라는 基本認識을 背景으로 提起한 立場이라는데 그 特徵이 있다.

毛澤東은 1946年 最初로 美·蘇 中間에 여러 부류의 國家들이 存在한다고 言及함으로써 中間地帶에 관한 概念을 얘기했으나, 國共鬭爭期에는 兩大陣營論을 支持했다가 1960年代初 中·蘇紛爭이 야기되어 積極的으로 「中間地帶論」을 내세웠다.

따라서 毛澤東의 中間地帶論은 國際 共產主義 陣營과 資本主義 및 帝國主義 陣營을 兩極으로 設定하고 이들 集團에 속하지 않는 第3 世界들을 中間集團으로 想定하고 있지만, 中共立場에서는 國家利益에 따라 現實的인 適用對象을 달리하여 왔다.

특히 毛澤東은 國內政治와 國際政治를 密接하게 連結시켜 가면서 그의 理論을 發展시켰다고 볼 수 있다. 毛澤東은 對內的인 社會 發展과 對外的인 反帝國主義 鬭爭을 항상 連結시켰는데, 이는 부분과 全體에 대한 分析을 同時에 追求하면서 唯物辨證法的 思考를 통해 그 關係를 糾明해 나가는 共產主義的인 思考方式으로써 中國의 現

實과 國際的 狀況을 항상 連結지어 戰略을 樹立해야 했기 때문이다.

毛澤東은 안으로는 장개석과 싸우면서 日本을 상대로 이른바 「反封建 反帝國主義 鬭爭」을 해야 했다.

毛澤東集團이 「抗日救國民主統一戰線」이라는 名分下에 비록 抗日보다는 反장개석工作에 더 많은 力量을 集中시키고 自體 軍事力 強化에 注力했지만, 이는 兩面戰爭을 同時에 遂行해 나가야만 하는 狀況에 처했기 때문에 兩者의 連繫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革命期の 狀況이 二重鬭爭을 要求하였듯이 執權後에도 毛澤東은 二重的인 問題에 逢着했던 것이다.

본래 落後한 中國을 共產化시켰기 때문에 「社會主義建設」에 따르는 여러가지 問題를 解決해야 함과 同時에 帝國主義의 安保의 威脅에도 對處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對內外 鬭爭을 同時에 展開함으로써 새로운 情勢를 만들고 中共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2. 外交政策의 基本性格과 目標

外交政策은 한 國家의 政治的 目的이나 利益을 達成하기 위하여 他國에 대하여 自國의 國家的 利益이나 主張을 내세워 그 目標를 實現시키려고 採擇, 推進하는 政策이라 할 수 있다.

中共의 外交目標가 形成되는 要因을 일반적으로 斷定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첫째), 天下觀에 의해 이루어진 傳統的 中華思想을 들 수 있다.

中國 歷史는 中共 指導者들에게 그들의 世界觀 確立에 가장 큰 要素로 作用하고 있으며, 定立되어야 할 中共의 現代史의 位置에 대한

情勢觀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中華思想은 傳統意識에 根據하여 過去의 天下中心國의 權威를 回復하자, 大漢族 優越主義를 通해 周邊國에 대해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것을 주된 特性으로 하고 있다.

둘째, 中國民族主義를 들 수 있다. 19世紀 歐美列強과 帝國主義勢力의 中國侵略때문에 中國人들은 一時的으로 主權과 中華帝國의 優越性을 포기하였으나, 中國 民族主義는 傳統的 中華思想과 結合되어 植民地隸屬 封建狀態로부터 中國을 解放시키기 위하여 黨派와 階級을 超越하여 異民族支配에 대한 抵抗, 帝國主義 侵略에 대한 抗戰, 그리고 中國民族의 自負心 回復運動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民族主義에 대해 舊憲法 前文에는 “中國내의 모든 民族은 自由롭고 平等한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뭉친다. 統合된 中國民族은 相互間의 영원한 友誼와 相扶相助에 의하여 強化될 것이며, 帝國主義와 民族內部的 共同的 敵, 그리고 列強의 大國主義 및 局地的 民族主義와의 鬭爭에 의해 伸張될 것이다”고 規定하였다.

中共이 이처럼 民族團結을 強調한 것은 당시 新生國으로서 革命의 未完成段階에서 잡다한 少數民族의 統合을 위해 이를 戰略的으로 利用하려는 意圖外에도 對外的으로 安保를 堅持하고, 對內的으로 體制安定을 위한 名分을 獲得함으로써 國民의 精神的 支持基盤을 構築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民族主義的 要素는 對決해야 할 他民族에 대한 對抗的 要素로 作用하는 한편, 國家 또는 民族間의 團結이 必要한 때에는 友誼와 傳統的 紐帶關係를 強調하면서 和合의 名分要因으로 作用했다는 점이 特異하다.

셋째,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나타나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中共은 政權樹立期를 前後하여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毛澤東思想을 對外政策의 目標樹立, 決定, 그리고 政策推進의 具體的 實踐理念으로 하였다.

이들 理念은 性格의 本質上 對外指向的이며, 國際主義的이었으며, 革命을 對外에 輸出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名分을 提供해 주었다. 특히 毛澤東은 共產主義 世界戰略으로서 스탈린式의 暴力革命을 信奉하였으며, 他國의 國內情勢를 利用함에 있어서 단순한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先入觀을 통해 觀察하였기 때문에 共產革命力量을 過大評價하는 傾向을 띠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主義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調和的인 要素보다 相衝되는 要素가 더 많았으며, 특히 共產國家間의 歷史·文化的 差異와 政權樹立 過程에서 나타난 제각기 다른 國家的 立場때문에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로써만 調和시킬 수 없는 共產諸國間의 葛藤이 派生되었다.

또한 이러한 結果로서 나타난 共產圈內的 多元主義 傾向에 따라 毛澤東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를 標榜하는 毛澤東思想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外交政策의 基本認識에 따라 中共이 追求하려고 하는 外交目標은 ① 安全, ② 統一, ③ 獨立의 保全, ④ 影響力 擴大라 할 수 있다.

첫째, 安全保障은 敵對的인 外部勢力의 威脅에 대하여 對處하는 제 1 차적인 目標다.

中共은 청조말기 反植民地的 狀況下에서의 屈辱과 分割占領등의 恥辱을 겪은 歷史的 經驗, 즉 中國國境에 強力한 敵對勢力이 形成되어 本土에 壓力을 가한 것에 대해 敏感한 反應을 나타냈다.

中共이 蘇聯의 아시아 軍事力 增強에 의한 包圍戰略에 對處하기 위해 美國과 關係改善을 促進한 것이 라든지 中·越戰爭을 감행한 것은 이런 立場을 잘 代辯해 주고 있다.

둘째, 統一의 達成은 실제 安保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中共은 失地回復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中共은 臺灣問題를 「革命的 未完成」으로 看做하고 있다.

中共은 「두개의 中國」이라는 現狀의 固定化를 排除하려는 意圖外에도 世界의 中心이라는 歷史的 中華意識에서 臺灣을 包含한 最小限의 傳統的 舊領土만이라도 回復시켜야 한다는 義務感을 갖고 있으며, 中國의 正統繼承者로서 世界的 規模에서 그 指導力을 再確立하려 하고 있다.

셋째, 獨立의 確保는 하나의 民族이 外國의 勢力을 利用하거나 또는 排除함으로써 그 民族의 獨自의 政治를 具體的으로 遂行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볼 때, 中共은 建國過程에서 蘇聯의 支援을 불가피하게 받으면서 國民黨과의 鬭爭을 遂行했기 때문에 그 影響力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느 國家든 他國을 支援할 때에는 國家의 勢力을 誇示 또는 擴大하려고 努力하기 때문에 支援을 받은 國家가 完全 獨立性을 回復하기란 힘든 것이다. 더우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라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他國, 他民族의 國際性을 強調함으로써 強大國의 影響力 擴大에 必要한 名分으로 作用하기에 適合한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獨自의인 自體力量 確保만이 安保 및 獨立을 維持하는 데 必要하다는 判斷아래, 經濟的 自力更生政策과 獨自의 核開發政策을 推進하였다.

넷째, 影響力의 擴大에 대하여 中共은 武力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 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를 利用하였다.

中共은 強大國인 蘇聯에 대해서는 修正主義라는 것을 내세워 攻擊하는 한편, 여타 周邊國들에 대해서는 中共이 正統宗主國으로 자처함으로써 中共 中心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體制를 構築하려는 名分으로 삼았다.

이러한 基本目標에 의해 中共은 中間地帶論을 提唱, 第3世界에 浸透하려 들고 있으며, 이는 中共이 中國의 正統的 繼承者로서 中華思想에 따라 過去와 같은 中國 中心의 天朝體制의 再確立을 試圖하려는 意志라 評價할 수도 있다.

3. 外交政策의 變遷過程

가. 蘇聯一邊倒時期 (1949 ~ 1960)

1949.6.30, 毛澤東은 蘇聯 및 國際共產黨의 支持를 얻기 위해 ‘蘇聯一邊倒政策’을 宣言하였는 바, “中國人民은 帝國主義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로지 社會主義一邊倒로 기울 것이며 절대 예외는 없다”고 表明함으로써, 中共政權 設立初期의 中共外交政策은 蘇聯外交政策을 옮겨놓은 翻譯版임과 동시에 延長線이었으나,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格下運動을 展開함에 따라 처음으로 中共은 불만을 表示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反美 親蘇’ 政策을 계속 堅持하였다. (1956. 9 中共黨 第8次 黨大會에서 통과된 政治工作 報告에 관한 決議등)

1957.11, 毛澤東은 두번째 모스크바 訪問中 “우리 社會主義 陣營은 필히 우두머리(頭)가 있어야 하며, 이는 바로 蘇聯이며, 各國의 共產黨과 勞動者黨도 역시 필히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며, 이 우두머리는 바로 蘇聯共產黨인데 우두머리가 없으면, 力量이 쇠약해진다”고 宣言하였다.

또한 1959年에 개최된 第5期 人民代表大會때까지 여전히 蘇聯을 우두머리로 한 共產主義國家의 團結을 공고히 해야함을 強調하였다.

이렇게 볼 때 60年代初까지 中共의 外交政策은 소위 ‘無產階級 國際主義’ 原則下에서 蘇聯을 頂點으로 한 社會主義 國家와의 相互協調關係의 發展과 ‘平和共存 5個原則’에 基礎하여 社會制度가 다른 國家와 平和共存 및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을 反對하며,

全世界 被壓迫人民과 被壓迫民族의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의 革命鬭爭을 支持함으로써, 蘇聯을 頂點으로한 社會主義陣營의 團結을 공고히 함은 물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國家와의 關係를 發展시켜 ‘反美’를 中心으로한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廣範圍하게 展開하였다.

나. 反美·反蘇時期 (1961 ~ 1971)

中共은 共產政權 樹立과 韓國參戰을 통해 蘇聯을 頂點으로한 國際 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을 誇示하여 왔으며 表面的으로는 共產黨 모스크바宣言 (57.11) 과 모스크바聲明 (60.11) 을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綱領으로 삼아왔으나, 1956年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있었던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格下運動과 美國에 대한 戰略的 對處問題를 契機로 中蘇理念紛爭이 發生하였다.

1958年 中共이 蘇聯의 「聯合艦隊」 構成要求를 거절하게 되자, 蘇聯은 1959年, 中共과 締結한 「國防에 관한 新技術協定」을 廢棄하여 原子武器 製造技術 提供을 拒否하는 등 理念紛爭은 國家關係 惡化로 확대되었다.

1960年 4月 레닌誕生 90周年 記念 人民日報 論說을 통해, 中共이 蘇聯의 對中共關係에 대해 批判한 이후 中蘇間에는 “戰爭과 平和의 問題”, “革命의 平和的 移行的 問題” 등의 理念問題로 인한 對立이 表面化되었으며, 큐바事態에서 蘇聯의 對美굴복 (1962.10) 과 中·印 國境紛爭 (1962.11) 中 蘇聯의 印度支持는 雙方關係를 더욱 惡化시켰으며 이후 中共은 蘇聯의 修正主義 路線批判을 일관함으로써 中蘇關係는 國家關係, 理念對立, 武力對決로 격화되어 왔다.

中共은 60年代에 들어와 反美 統一戰線政策과 反蘇 修正主義路線

을 추진,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기 위해 亞·阿 地域에 影響力을 확대하여 왔으며 外交政策을 理論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中間地帶論 ” 을 구상하여 對 亞·阿 浸透工作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中共黨 第 8 期 11 中全會議 (1966.8) 에서는 「 文化大革命 」 을 발동할 것을 決議함과 동시에, 새로운 外交政策을 採擇하였다. 즉, “ 帝國主義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現代修正主義를 反對하는 것으로 절대로 中間의 길은 없으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各國 人民의 革命鬪爭을 지지하고, 越南人民이 抗美救國運動을 끝까지 進行할 것을 支持함과 동시에, 反美 國際統一戰線을 形成하여 美帝國主義에 最大의 孤立과 打擊을 줄 것 ” 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체코侵攻 (1968.8) 및 中·蘇間의 珍寶島 武力衝突 事件의 발발 (1969.3) 로 인해 中共은 蘇聯을 「 社會帝國主義 」 로 낙인찍고 격렬한 反蘇鬪爭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中共黨 第 9 次大會 (1969.4) 에서 林彪國防相은 ‘ 政治工作報告 ’ 중 ‘ 4 大矛盾 ’ 에 대해 언급하였는 바,

- (1) 被壓迫民族과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의 矛盾을 第 1 로 하며
- (2)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와 資本主義를 동등한 유형으로 하고
- (3) 社會主義 國家는 帝國主義 國家와 矛盾이 있을 뿐 아니라
- (4) 社會主義 國家間에도 역시 矛盾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中共의 60 年代 後半 및 70 年代 初까지의 外交政策은 「 無產階級 國際主義 」 의 原則下에서 社會主義國家間의 友好協力 合

* 中間地帶論: 自由世界를 分化·離間시키는 指導原則이며, 동시에 對外政策을 세우는 理論的 기초임.

第 1 中間地帶: 아세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이미 獨立된 獨立國家

第 2 中間地帶: 全西歐·大洋洲·카나다 및 日本등 資本主義 國家

作關係를 發展시켜 나가며, 모든 被壓迫人民과 被壓迫民族의 革命鬭爭을 支援하는 한편, ‘平和共存 5個原則’에 기초하여 社會制度가 다른 國家와의 平和共存을 도모하며,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을 반대하고 “全世界의 진정한 맑스·레닌主義 政黨·社會團體가 단결하여 美國을 頂點으로한 帝國主義를 타도하고, 現代 修正主義의 蘇聯을 타도하자”는 反美·反蘇의 「3 反外交政策」을 추진하였다.

다. 聯美·反蘇時期 (1971 ~ 1981)

「3 反外交」의 결과 中共이 國際政治에서 고립된데다, 珍寶島 사건 이후 蘇聯의 百萬大軍이 中共國境地帶에 배치되어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中共은 ‘핑퐁外交’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즉 中共은 美國 卓球團의 北京訪問 (1971.4)을 요청한데 이어 ‘키신저-주은래’ 간 닉슨의 中共訪問 問題에 관한 協商 (1971.7)을 계기로 對美接觸의 길을 트게 되고, 유엔에 가입 ('71.9)한 후 日本과 國交를 再開 ('72.9)하는 등 國際外交에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60年代의 ‘第2 中間地帶論’을 일보 발전시켜 3개 世界論을 제기하였는 바, “現在의 世界는 실제 相互連繫되어 존재하고 또한 相互矛盾된 3개 방면 즉 3개 세계가 있으며, 제 1 세계는 美國·蘇聯이고 제 3 세계는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및 기타지역에서의 發展중에 있는 國家이며, 제 2 세계는 제 1 세계와 제 3 세계 사이에서 발달한 國家”로서 中共을 제 3 세계로 분류하여 제 3 세계 浸透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中共의 第 11 期 黨大會 (1977.8)에서 華國鋒 黨主席은 政治報告中, “無產階級 國際主義原則을 堅持하고, 毛澤東의 革命外交路線을

계속 관철해야 하며, 全世界의 모든 진정한 맑스·레닌主義 政黨·組織들과 團結을 강화하여 蘇聯이 중심이 된 現代修正主義 集團에 反對鬭爭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70年代 後半 中共의 國際鬭爭의 中心任務와 主要目標을 反蘇主義로 잡았다.

그리고 1979.1.1 對美外交關係가 樹立되고 美國이 臺灣과 斷交한데 이어, 越南과 蘇聯이 캄보디아와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게 되자 中共은 “蘇聯이 中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포위하는 것”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0年代 後半 中共의 對外政策上 特徵은 「霸權主義」 反對 즉 ‘反蘇’ 政策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中共은 美國과의 關係를 “아세아·太平洋地域의 聯合을 통해 反霸權主義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는 것이며, 또한 全地球의 反霸權主義 戰略의 重要부분”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즉 “中·美關係의 前進 혹은 後退는 앞으로 亞·太地域에 엄중한 影響을 미칠뿐 아니라 反霸權主義 勢力에 좌급된다”고 강조하였다.
(1981.7.3 字 人民日報)

라. 自主獨立路線 (對美·蘇 等距離外交, 1981 - 現在)

中共外交의 基本路線은 平和5原則을 遵守하며, 第3世界의 團結을 강화하고, 被壓迫民族과 被壓迫人民의 反帝, 反植民, 反霸權鬭爭을 支持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共外交政策은 1982年 12月에 채택된 新憲法 前文에 명기가 되어 있는 바, “中國은 自主獨立의 對外政策을 堅持하고 主權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涉, 互惠平等, 平和共存의 5個原則을 견지하고, 各國과의 外交關係 및 經濟·文化 交

流를 발전시키며, 帝國主義, 霸權主義, 植民主義를 反對하고, 世界各國 人民과의 團結을 강화하며 被壓迫民族과 開發途上國의 民族獨立을 爭取, 守護하며 民族經濟를 발전시키려는 正義의 鬭爭을 支持한다”고 宣言하였다.

이처럼 中共 外交政策이 美·蘇 等距離 外交政策을 뜻하는 自主獨立路線으로 바뀌게 된 것은 現代化推進을 위한 周邊情勢의 安定을 바라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中共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1982.9)에서 中共 主要指導者가 밝힌 發言內容을 보면 명확해진다.

즉 鄧小平 軍事委 主席은 開幕演說에서 “어떠한 國家도 中國을 그들의 종속으로 하거나 지배할 수 없으며, 中國은 自主獨立의 對外政策을 견지하여 어떤 大國 혹은 國家集團에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大國의 壓力에도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고 表明하는 한편, 中共의 對外政策이 “마르크스, 레닌, 毛澤東 思想의 科學理論을 기초로 하여 愛國主義와 國際主義의 結合을 根本 出發點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胡耀邦 黨總書記는 政治報告에서 “中國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駐屯시킨 軍대가 없고 어느 나라의 영토도 침범하지 않았으며, 外國의 主權을 침범하거나 어느 外國과도 不平等關係를 강요하지 않았고, 中國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영원히 패권다툼을 하지 않을 것임”을 宣言함으로써 平和共存 5個原則을 강조한데 이어, 美·蘇를 다같이 양대패권 勢力으로 糾彈함으로써 對美 友好的 자세를 탈피하고, 中·蘇和解를 摸索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4. 最近 中共의 對外關係

가. 對蘇關係

中·蘇關係의 正常化를 위한 兩國의 外務次官級會談은 1979年12月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중단되었고 中共側은 1979年4月로 時限滿了된 「中·蘇友好協調 相互援助 條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兩國關係는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82年3月 브레즈네프 蘇聯共產黨 書記長은 다시젠트 演說에서 對中共全面和解를 제의했고, 이어 7月 바쿠 會議 및 10月 蘇聯軍 最高指揮官會議에서 中蘇和解의 重要性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中共도 '82年10月 外務省 蘇聯·東歐局長을 모스크바에 파견하는 등 호의를 표시했고 '82年10月5日부터 22日까지 중단된지 3年만에 第1次 中·蘇外務次官會談이 再開되었다.

그러나 이 會談에서 中共側 錢其琛 外交部 副部長은 蘇聯側에 中·蘇和解의 前提條件으로서 5개 항목을 제시하였는 바,

- ① 蘇聯의 베트남 支持中止 및 베트남軍의 캄보디아 撤收促進
- ② 撤收期間은 長期間을 인정할 수 없음.
- ③ 撤收가 실현되면 對베트남 關係뿐만 아니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進진적 자세를 취함.
- ④ 撤收後의 캄보디아 政治體制, 社會體制는 캄보디아 자신의 民族自決權에 맡김.
- ⑤ 캄보디아에 關係하는 나라는 ㉠ 內政不干涉, ㉡ 自主獨立·非同盟中立의 立場 尊重, ㉢ 유엔監視下의 選舉結果 尊重, ㉣ 캄보디아를 侵略의 對象으로 하지 않으며, ㉤ 이와 같은 保障은 國際的으로 인정하되, 특히 中共·蘇聯 및 베트남은 이 保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胡耀邦 黨總書記는 12 期黨代表大會 ('82.9) 에서 “蘇聯과의 關係가 나쁜 것은 蘇聯이 霸權主義 政策을 실시하고 中·蘇國境에 軍隊를 배치한데다 월남의 캄보디아 侵攻을 支持하며, 아프가니스탄을 武裝占領하여 아시아의 平和와 中共의 安全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면서도 蘇聯指導者가 中·蘇關係改善을 바라는 점에 유의하는 한편 蘇聯이 中共의 安全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없애면 雙方關係를 正常化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비쳤다.

이러한 兩國間의 關係改善 움직임에 따라 第2次 外務次官會議 ('83. 3.1 ~ 21) 가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으나, 中共側은 ① 中·蘇國境 및 中·蒙古國境의 蘇聯軍 減縮, ② 아프가니스탄내 蘇聯軍 撤收, ③ 캄보디아 問題에 있어서 베트남 支持中止 등 3 個條件을 다시금 제시하였고 蘇聯은 兩國國境 兵力의 相互減縮 등 2 國間 問題에 한할 것을 主張하는 등 異見이 調整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協力關係는 상당히 進전을 보아 '83 年度 兩國 貿易量을 '82 年보다 2.7 배 (약 8 억불) 늘리기로 合意하였고, '83 年 11 月부터 蘇聯의 키르기즈共和國과 中共의 신강위구르 自治區의 接境地帶에서 中·蘇國境貿易이 재개되었으며, 留學生 交換도 속개되었다.

특히 최근 中·蘇關係 正常化會談이 자주 개최됨에 따라 兩國은 共同貿易委員會 設置, 科學 및 技術交流, 長期貿易協力 등 4 個 經濟協力 協定을 締結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렇지만 “中·蘇國境에의 軍事力 配置,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問題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貿易, 人的交流의 增加는 別다른 意義가 없다” ('83.9 吳學謙 外交部長) 는 식으로

中共의 對蘇認識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中國人들의 역사적인 對蘇 敵對感때문에 中·蘇關係가 正常化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中·蘇關係 正常化會談 概要

| 期 間 | 回 數 | 場 所 | 備 考 |
|-----------------|-----|------|------------------|
| '82.10. 5-22 | 1 次 | 北 京 | 아프카니스탄 侵攻이후 첫시도 |
| '83. 3. 1-21 | 2 次 | 모스크바 | |
| '83.10. 6 | 3 次 | 北 京 | |
| '84. 3. | 4 次 | 모스크바 | |
| '84.10. | 5 次 | 北 京 | |
| '85. 4. 9-22 | 6 次 | 모스크바 | 고르바초프體制 出帆이후 첫회담 |
| '85.10. (豫定) | 7 次 | 北 京 | |

나. 對美 關係

1979年 1月 1日을 기해 美·中共間의 正式國交가 수립된데 이어 美國이 臺灣과의 防衛條約을 1979年末로 폐기하였고,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 侵攻('79.12)을 계기로 美國이 中共에 대해 非殺傷武器와 軍需品을 수출하기로 認定하는 등 軍事協力을 강화함으로써 兩國關係는 밀월시대를 맞는 듯 하였다.

그러나 '81年 1月 對共強硬論者이며 臺灣과의 復交를 내세운 레이건 大統領이 就任하면서 臺灣에 新武器를 공급하려는 政策을 취하자 美·中共關係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82年에 들어서 계속되는 中共의 反撥에 부닥친 美國政府는 존 홀드리지 國務省 동아시아·太平洋擔當次官補를 北京에 보내 臺灣에 最

新型武器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美國側의 意思를 전달했고 이어 5 月에는 부시副統領이 北京을 訪問, '두개의 中國' 政策을 부인, 兩國間의 모든 協商을 遵守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趙紫陽 中共總理가 美國을 訪問('84.1)하여 産業技術 協力協定, 科學技術協定에 調印하는 등 經濟技術 및 軍事 協力關係를 이루었으나 臺灣問題 등에서 兩國間 見解差異는 해소하지 못하였다.

최근 美·中共間에는 리건財務長官('84.3), 레이건大統領('84.4), 陳慕華 對外經濟貿易部長('84.5), 張愛萍 國防部長('84.6), 레만 海軍長官('84.8), 베시슨參議長('85.1), 볼드리지 商務長官('85.5) 등 兩國高位層이 交換訪問함으로써 經濟, 軍事的 協력이 強化되고 있으나, 美國艦艇의 상해기항('85.5 豫定)이 無期延期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 兩國關係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美國立場에서 볼 때 東北亞의 平和維持와 蘇聯의 膨脹政策을 牽制하기 위해서는 中共과의 關係增進이 필요한 實情이며, 中共은 증대되는 蘇聯의 위협을 배제하고 國防現代化와 先進科學 技術과 資本導入등을 위해서는 美國의 協力이 필요하기 때문에 兩國間 經濟, 軍事, 科學 등 各種分野에서의 紐帶關係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李先念 中共國家主席의 訪美('85.7) 때 兩國間 核協力 協定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 對日 關係

1972年 國交가 再開된 이래 兩國關係는 급속도로 進展되었으며, 日·中共 平和友好條約이 체결된 이후 經濟協力關係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雙方的 '貿易額'은 1972年 11억\$이었으나, 1981년에는 104억\$로 증가되었고, 雙方間 往來人員은 國交正常化初期 9천명에서

1981年에는 12만 7천명으로 늘었으며, 姉妹結緣을 맺은 省·市는 1982年 現在 42개 도시로 증가하였음.)

'81年 들어 中共側이 經濟政策의 調整에 따라 大型 프로젝트 契約을 파기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81年 9月 趙紫陽 中共總理의 訪日로 일단락되었으며, 日本의 中共關係 教科書 問題도 '82年 9月 스즈키首相이 中共을 訪問하여 650억엔 借款을 제공키로 署名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83年 9月 北京에서 개최된 第3次 中·日閣僚會議에 日本側은 아베 外相, 다케시다 藏相, 기네코 農水産相, 우노 通産相, 하세가와 運輸相, 사오사키 經濟計劃廳 長官등이, 中共側은 谷牧 國務委員, 陳慕華 對外經濟貿易部長, 吳學謙 外交部長등이 參席하였다.

이때 日本側은 “아시아 安定에 中·日의 적극 協力이 필요하다”고 표명하는데 이어, 제2차 엔차관총액 60억불을 84년부터 提供하기로 合意하였으며, 中共側은 海南島 開發에 日本의 協力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모두 蘇聯의 SS-20 極東配置 增強에 우려를 表明하였다.

이처럼 日·中共關係의 安保·經濟協力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兩國의 高位層間 交換訪問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胡耀邦 總書記('83.11), 나카소네 首相('84.3)의 相互交換 訪問에 이어 '84年 4~7月 사이에는 王震 中日友好協會名譽會長, 方毅 國家科學技術委主任, 姬鵬飛 國務委員, 張愛萍 國防部長, 張勁夫 國家經濟委主任등 中共側 要人이 日本을 訪問했다.

中共은 日本을 4個現代化와 對外貿易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反霸權 統一戰線의 중요지주로 삼으려하고 있으나, 日本

은 安保軍事協力보다는 經濟的 利益追求에 주력하고 있어 日·中 協力關係는 限界를 노정하고 있다.

라. 對北韓關係

中共의 鄧小平體制가 定着하면서부터 양국간에는 빈번한 訪問外交가 전개되고 있는 바, 이는 中共이 對外開放政策을 추진하기 위해 周邊情勢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장에서 北韓의 對南挑發을 자제토록 하는 등 雙方間의 政策調整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評價된다.

北韓·中共間 閣僚級 相互訪問 現況

| 中 共 側 | 北 韓 側 |
|-----------------------------------|------------------------|
| '81.12 趙紫陽 總理 | '81.11 김영남 黨國際部長 |
| '82. 4 鄧小平 副主席, 胡耀邦 黨總書記 (非公式 訪問) | '82. 9 金日成 |
| '82. 6 景표 國防部長 | |
| '83. 5 吳學謙 外交部長 | '83. 6 金正日 (非公式 訪問) |
| '83. 9 彭眞 全人大常務委員長 | '83. 7 양형섭 最高人民會議 議長 |
| '84. 5 胡耀邦 黨總書記 | '84. 2 김영남 外交部長 |
| '84. 6 劉復之 公安部長 | '84. 5 명태호 化學工業部長 |
| '84. 9 劉 毅 商業部長 | '84. 6 정송남 對外經濟 事業部長 |
| '85. 5 胡耀邦 黨總書記 (非公式 訪問) | '84. 8 강성산 總理 |
| | '84.10 이철봉 社會安全部長 |
| | '84.11 金日成 (非公式 訪問) |
| | '84.12 조철준 建設部長 |
| | '85. 1 공진태 副總理兼 貿易委委員長 |

이러한 相互訪問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中共이 金日成, 金正日, 강성산 등 高位層의 訪中時 經濟特區를 비롯한 中共 經濟建設 現場에 集中案内 ('84年中 北韓의 23개 代表團 50여명이 中共 經濟現場 視察) 하는 한편, 胡耀邦이 北韓을 訪問하여 咸興·清津 등 主要産業施設을 視察하고 상호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강성산 總理는 中共訪問에서 “中國에서 人民經濟改革을 통해 …… 社會主義 文明建設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커다란 感動과 鼓舞를 받았다”고 표명하고 中共과의 “經濟 技術的 協調와 交流를 폭넓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雙方間의 社會主義 建設에 크게 寄與할 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당면한 經濟建設에 中共의 經驗과 支援協力이 필요함을 示唆하였다.

또한 中共은 北韓의 버마 暗殺爆破事件을 간접 비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곤란하다” (1983.11 胡耀邦 中共總理의 日本 訪問中)고 言及, 北韓의 戰爭挑發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中共은 北韓側의 ‘3者會談’ 등 統一方案을 지지하였고 北韓의 對美接觸을 적극 주선하고 있으며 南北韓 關係의 진전에 따라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促進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금번 胡耀邦 中共 黨總書記의 北韓訪問 ('85.5)에서 보듯이 韓·中共關係 發展이 北韓의 對蘇偏向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中共은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적극 행사하여 南北對話 促進 등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北韓·中共간에는 「中·朝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61.7) 및 「中共의 對北韓 無賞 軍事援助提供에 관한 協定」('71.9)에 따라 中共은 미그 21기 등 전투기 40대를 北韓에 提供하고 있으며, 對空

미사일 및 航空機 生産에 관한 技術協力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經濟合作協定」('71.8)과 「長期貿易協定」('77.3) 및 「鐵道輸送議定書」('77.9)에 따라 中共은 年 1억불상당의 借款을 提供하고 있으며 ('84 年末까지 中共의 對北韓 債權額은 약 5억불임), 原油供給은 年 100 만톤 규모이고, 82 年度 中共의 對北韓 輸出은 2억 8천만불, 輸入 3억불 규모였다.

마. 對韓國關係

中共은 現代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經濟開發 모델로서 韓國을 研究하는 한편, 周邊情勢 變化를 이용하여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추진할것을 신중히 觀望하던중 1983 年 5月 中共民航機 事件 妥結過程에서 韓國의 友好的인 態度와 中共과의 交流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中共은 韓國에 대한 종래의 消極的인 態度에서 탈피하여 스포츠, 學術 등 非政治分野에서의 交流接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中共은 北韓을 韓半島의 唯一合法 政府로 인정하던 태도를 止揚하고 韓半島의 分斷現實과 韓國의 存在를 긍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北韓의 부당한 태도(버마事件 등)에 대해서는 牽制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中共은 어뢰정救助事件('85.3)을 계기로 香港駐在 韓國 總領事館을 통해 사건을 수습하는 등 '韓·中共間 對話窓口의 常設化'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고, 沈沒船舶 被害補償問題를 놓고 香港에서 民間끼리 직접 協商('85.6)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參加할 것을 公式發表('85.4.11 中共官營 中央 TV)하였다.

더우기 中共機의 이리不時着事件이 比較的 원만하게 收拾되었다는 사실은 韓·中共關係가 非政治分野에서 政治關係分野로까지 發展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바. 對東南亞關係

1978年 봄 베트남居住 화교의 大量 歸國問題를 둘러싸고 中·越關係가 惡化一路에 있던중 '79年 2月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侵攻, 폴포트政權을 무너뜨리고 헝삼린政權을 樹立하자, 中共은 膺懲戰爭이라는 制限戰爭을 벌였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그후 中共은 兩國問題 解決을 위한 副外相會談을 提議, 모스크바와 北京에서 2次에 걸친 會談을 가졌으나 合意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중단, 中·印支 國境地帶의 緊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共은 '82年 6月 18日 成立된 反베트남·캄보디아 聯立政府(大統領 노르돔 시아누크)에 대한 支援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中共은 東南亞國家聯合(ASEAN) 諸國중 中共과 國交가 없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의 關係強化에 역점을 두는 한편,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서 폴포트政權을 지지하는 ASEAN의 立場에 동조, 베트남의 霸權主義를 沮止하기 위한 統一戰線形成을 提唱하고 있다.

사. 第3世界와의 關係

中共은 蘇聯·美國과 더불어 아프리카 進出을 競爭, '54년부터 '77년까지 30억달러를 援助했고, 그 援助는 借款에 대한 利子를 要求하지 않는 점이 특색이었다. 이 때문에 對아프리카 關係는 매우 좋은 편이다. '79年 對美修交後 對아프리카關係가 다소 疏遠해졌으나, 이를 메우기 위해 趙紫陽 中共總理는 '82年 12月 20日부터 이집트, 알제리,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10個國을 巡訪, 經濟協力을 약속하는 한편 美·蘇의 霸權主義를 糾彈, 아프리카國家들의 反霸權鬭爭과 第3世界의 結束을 강조하면서 中共의 第3世界에

대한 影響力을 강화했다. 第3世界의 일원임을 자처하는 中共은 아프리카를 그들의 第3世界 主導權을 굳히기 위한 발판으로 간주하고 있고, 많은 地域國家들의 呼應을 얻고 있다.

또한 中共은 反帝國主義와 反霸權主義 鬭爭을 解放神學理論등과 결부시켜 中南美國家에 積極的으로 浸透하고 있다.

(趙紫陽總理는 '83年4月 吳學謙 外交部長과 南美巡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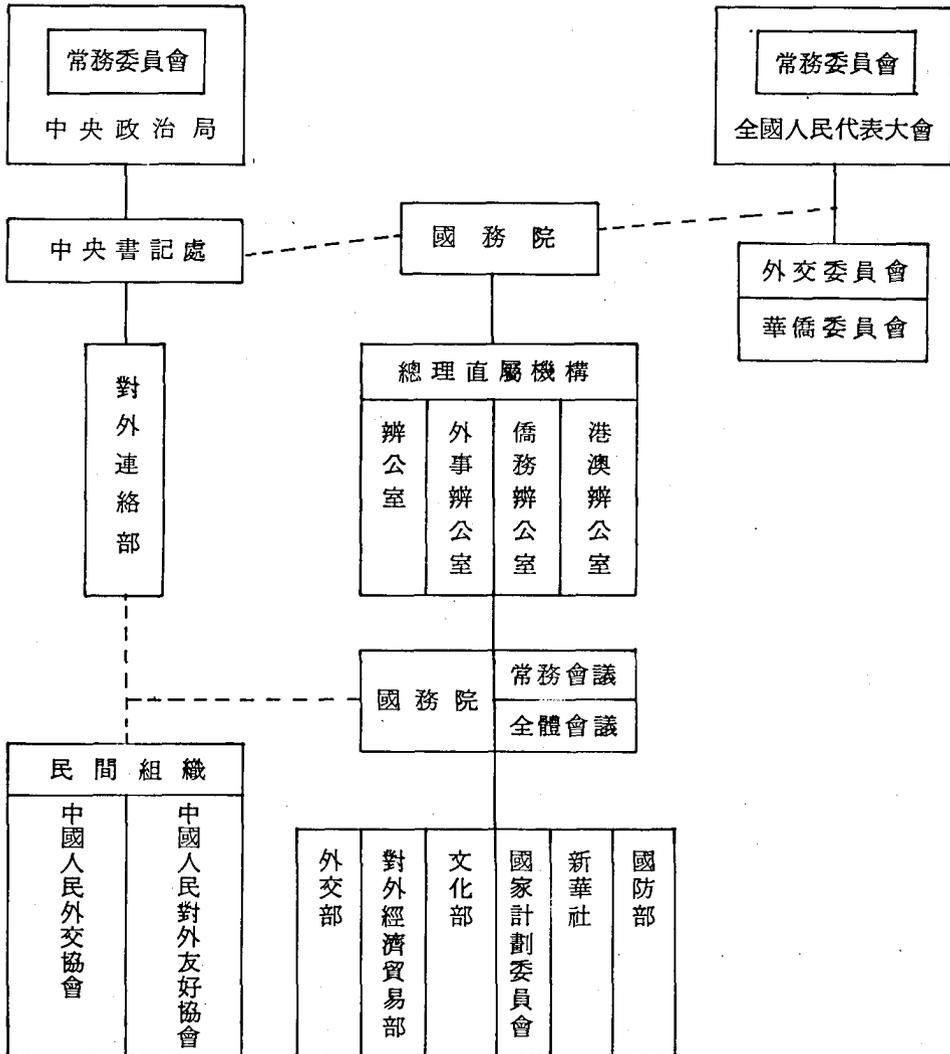
아. 對歐洲關係

中共은 趙紫陽總理의 西歐 6個國 巡訪('85.5) 등을 통해 유럽의 先進諸國을 中共의 反霸權聯合勢力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특히 影響力이 擴大되고 있는 이탈리아 共產黨·프랑스 社會黨 등 對蘇 獨自路線을 추구하는 左派政黨들과의 紐帶強化를 모색하는 한편, 東歐國家중 中共과 친한 유고, 루마니아와는 既存의 關係強化에 힘쓰고 있다. 또한 그밖의 東歐國家들과도 中·蘇解冰에 발맞춰 '82年末부터 留學生交流, 交易擴大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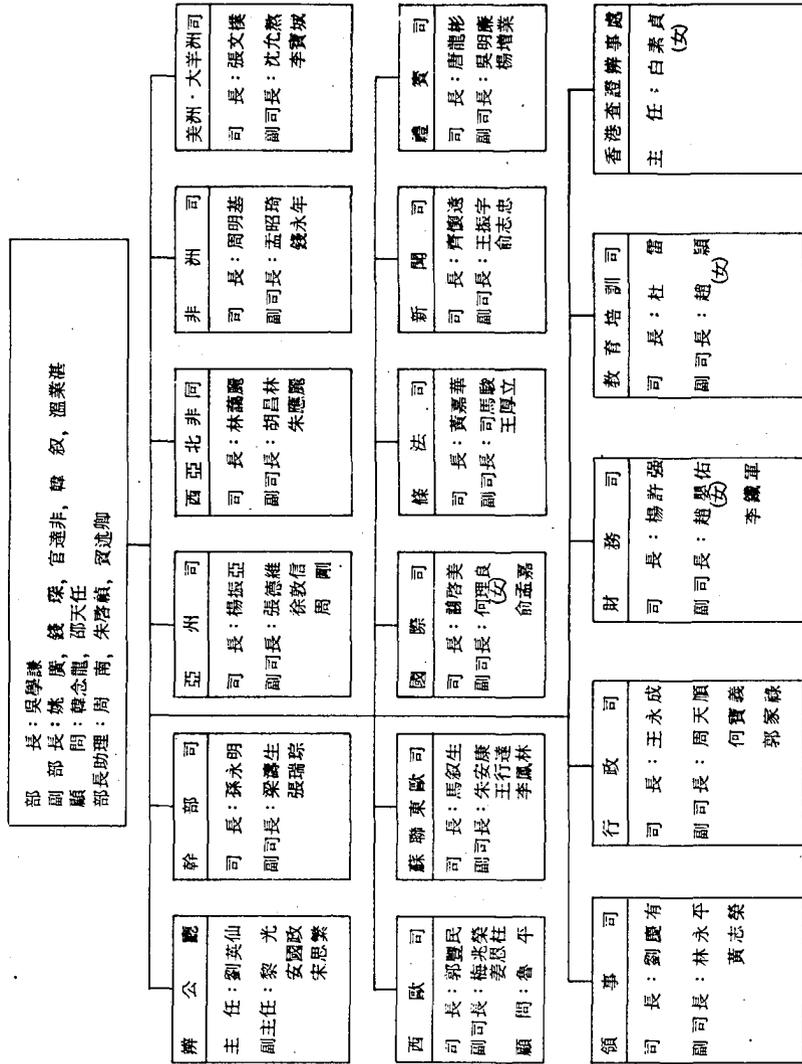
특히 中共은 毛澤東이 제기했던 修正主義 論爭問題를 제기시키지 않음과 동시에 各國共產黨과의 關係에 있어서 自主獨立, 完全平等, 相互尊重, 相互內政不干渉의 4原則을 강조함으로써 유럽 共產黨 혹은 社會黨과의 紐帶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外交關聯機構

가. 外交關係 指揮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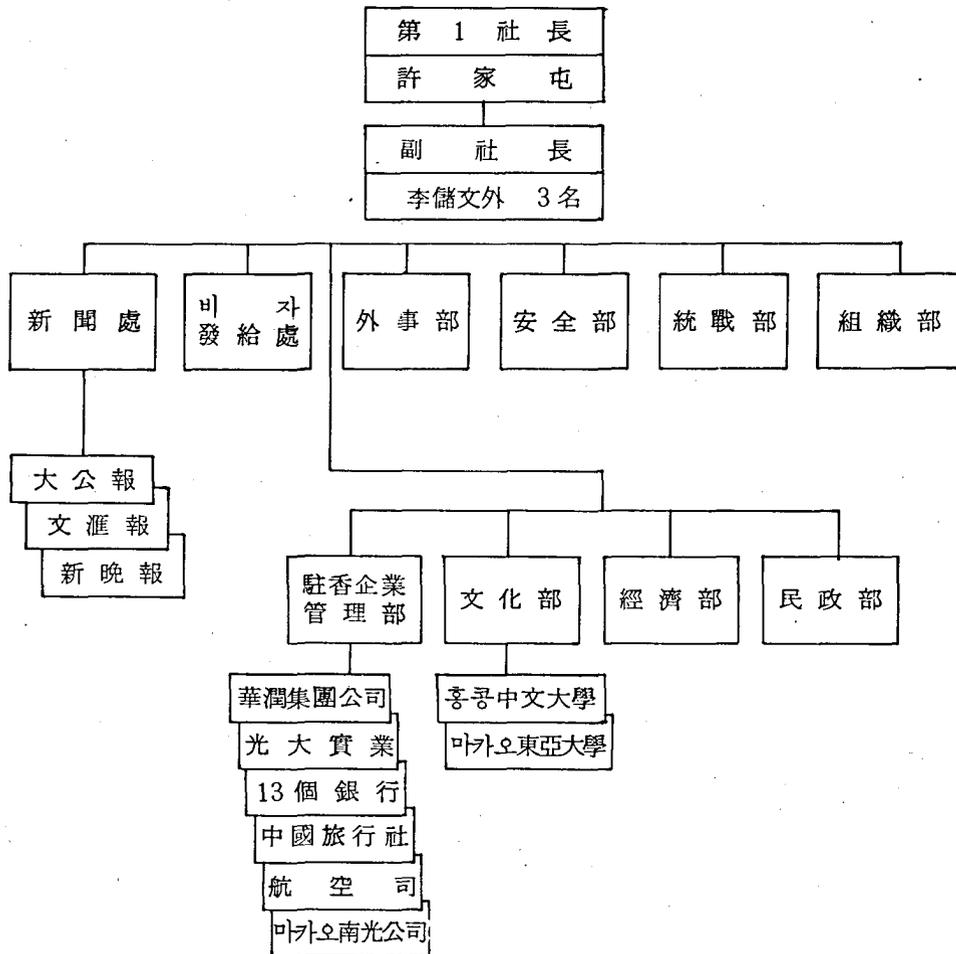


4. 外交部 機構 (1984.6 現在)



資料：中國手冊，1984。

※ 香港 新華社 機構圖



○ 設 立：1953 年

○ 人 員：400~500 名

○ 任 務

- 香港·마카오地域 業務를 總括하는 中共의 國家行政機關
- 言論, 交易, 外交業務 遂行

6. 修交國 現況比較

(1985.6 現在)

| 區分 地域別 | 中 共 | | 自 由 中 國 | |
|-----------|-----|--|---------|----------------------|
| | 計 | 修 交 國 | 計 | 修 交 國 |
| 總 計 | 130 | | 24 | |
| 아 시 아 | 16 | 일본, 몽고, 북한, 필리핀, 월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말디브 | 1 | 한 국 |
| 中 東 | 12 | 터키, 키프러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남예멘, 북예멘, 오만 | 1 | 사우디아라비아 |
| 大 洋 洲 | 7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사모아,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키리바티, 바누아트 | 4 | 통가,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 |
| 아 프 리 카 | 49 | 수단,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지브랄티,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리, 니제르, 차드, 세네갈, 기니아, 아피볼타, 토고, 적도기니아, 브리키, 나파소, 앙골라, 아이보리코스트, 레소토 | 3 |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스와질랜드 |

| 區分 地域別 | 中 共 | | 自 由 中 國 | |
|-----------|-----|--|---------|--|
| | 計 | 修 交 國 | 計 | 修 交 國 |
| 아프리카 | | 베닝, 카메룬, 콩고, 모리셔스, 가봉, 중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리베리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케이프베르데, 루안다, 사오토메프린시페, 자이레, 부룬디,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마다가스칼, 마우리티우스, 코모로, 세이셸 | | |
| 蘇聯및東歐 | 9 | 소련, 유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 | |
| 西 歐 | 20 |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에이레, 덴마크, 필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말타, 영국, 프랑스, 서독, 노르웨이 | 1 | 바티칸 |
| 美 洲 | 17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자마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도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구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안티구아 바부다 | 14 | 파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아이티, 온두라스,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 도미니카,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

IV. 經 濟

1. 中共經濟의 發展過程

○. 國民經濟復興期 (1949 ~ 1952)

이 期間의 政策目標은 破壞된 國民經濟를 戰前의 最高水準으로 回復시키고 社會主義國家로서의 發展을 위한 經濟的 基礎를 다지는데 있었다.

1949 年의 水準을 戰前의 最高水準과 比較해 보면 工業總生産은 50 %, 石炭生産量은 48 %, 鐵鋼生産量은 80 %, 穀物食糧生産量은 25 %, 綿花生産量은 48 %에 불과했다. 이렇듯 生産이 疲弊한 가운데 通貨膨脹으로 物價는 暴騰하고 失業이 增加하는 등 經濟與件은 극도로 惡化되어 있었다.

이러한 難局을 打開하기 위해 中共政府는 既存의 經濟體制를 一新하는 大幅的인 經濟改革을 斷行했다.

제일 먼저 着手한 것이 官僚資本의 沒收였다. 1949 年末까지 沒收된 工業企業은 모두 2,858 個로 여기에 근무하는 生産從事者는 75 萬名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農業部門에서는 土地改革이 實施되었는데 官僚資本의 沒收가 比較的 빠른 期間內에 끝난데 반해 그 對象範圍가 넓고 地主들의 反撥도 심하여 1952 年 8 월에 가서야 겨우 마무리 되었다. 이 때까지 全國에서 約 4,600 萬 ha의 土地가 3 億명의 農民들에게 再分配되어 農業協同化가 進行됨으로써 農業生産이 다시 回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財政部門에서는 各地區에 分散되어 있던 財政管理를 國家가 統一的으로 맡게했다. 즉 全國의 財政收支를 中央이 集中管理하고 重要物資의 供給系統을 一貫시키는 한편 中國人民銀行이 現金을 集中管理토록 함으로써 財政收支의 均衡과 物價安定을 이룩하였다.

經濟改革政策의 實施와 더불어 思想的으로는 「3反5反運動」이 벌어져 經濟復興을 促進하고 私營工商業의 社會主義改造를 推進하는데 커다란 役割을 했다.

○ 第1次5個年計劃(1953~1957)

國民經濟復興의 目標를 達成한 中共은 1953년부터 本格的인 經濟開發에 着手하였다.

第1次5個年計劃의 主要目標는 蘇聯의 援助를 받는 156個의 建設프로젝트를 中心으로 한 總 649個의 建設프로젝트를 完成하여 社會主義工業化의 基礎를 確立하며, 또한 集團所有制下的 農業生産合作社와 手工業生産合作社를 發展시키고 資本主義工商業을 社會主義體制에 맞도록 改造시킴으로써 經濟體制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있었다.

이 期間에 이루어진 主要 成果를 보면, 各地區에 새로운 工業基地를 建設하여 工業基盤을 強化하고 鐵道를 中心으로 各種 輸送施設을 擴充하여 輸送能力을 크게 增大시키는 한편 工業技術開發을 促進하여 消費物資 및 機械設備의 自給率을 大幅 높였다. 이와 함께 個人 農業과 手工業의 集團所有制化에도 힘을 기울여 1956年末에는 全國 農家 96%가 農業生産合作社에 參與하게 되어 個人經營農業에 대한 社會主義改造作業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한편 같은 作業이 私營工商業에도 進行되어 零細한 私營工業에 대해서는 國家에 의한 委託

加工, 計劃發注, 統一買上 및 請負販賣와 같은 方法이, 私營商業에 대해서는 契約販賣, 代理販賣와 같은 方法이 實施되었고 規模가 큰 私營工商業은 公私合營形態로 社會主義化 되었다.

○ 大躍進運動 및 經濟調整期 (1958 ~ 1965)

第2次 5個年計劃은 1958年부터 1962년까지 實施될 豫定이었으나 그 첫해인 1958年 5월에 開催된 中國共產黨第8期 全國代表大會 第2次全體會議에서 採擇한 「社會主義建設의 總路線」에 따라 소위 「大躍進運動」이 시작됨으로써 中斷되었다.

「大躍進運動」이란 從來의 蘇聯型 經濟開發政策에서 벗어나 工業과 農業, 重工業과 輕工業, 近代的 部門과 傳統的 部門을 同時에 發展시키되 豊富한 勞動力을 活用하여 短期間에 工業化를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全分野에 걸쳐 生産目標은 2倍以上으로 調整되었고 基本建設에의 投資規模도 2倍로 膨脹했으며 投資에 充當되는 國內資本蓄積率도 24.9%에서 33.9%로 急上昇했다.

그러나 國家의 負擔possible한 資本과 物的資源의 範圍를 넘어선 무모한 計劃의 推進으로 經濟秩序는 混亂에 빠졌고 數千萬名의 農民이 都市로 流入되어 農業生産力이 弱화되는 등 部門間의 不均衡도 深化되었다.

이와 同時에 農村에서는 農業生産合作社를 合併하여 人民公社를 發足시키고 自留地와 自由市場去來를 中止시켜 現物支給制 내지는 半現物支給制를 實施함으로써 農民들의 生産意慾은 크게 低下되었다.

이러한 現實을 무시한 經濟政策으로 經濟效率이 떨어진데다 1959년부터 3年間 계속된 自然災害, 그리고 蘇聯의 갑작스런 技術支援

中止로 타격을 입어 결국 「大躍進運動」은 失敗로 돌아갔다.

「大躍進運動」의 失敗로 經濟危機가 加重되자 中共은 經濟政策의 調整을 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調整된 經濟政策은 「調整, 強化, 充實, 向上」으로 代辯되는데 投資規模의 縮小, 既存工場設備의 補完, 生産品의 質的인 向上 등을 그 骨子로 하고 있다.

投資規模의 縮小에 따라 産業部門間的 優先順位도 바뀌어 農業이 가장 重視되고 그 다음이 消費財를 生産하는 輕工業이며 莫大한 財源을 要하는 重工業은 그 投資規模가 크게 減縮되었다.

農業生産體制는 다시 變更되어 農村人民公社는 生産隊를 基本採算單位로 해서 生産隊, 生産大隊, 公社의 三級所有制를 確立하고 自留地返還, 農民의 各種 副業經營의 獎勵, 農村의 自由市場의 復活 등 從前의 體制를 回復시키는 同時에 穀物, 食用油, 계란, 家畜 등의 農産物收買價格을 大幅引上함으로써 農民들의 增産意慾을 북돋우고 農村을 安定시켰다.

工業部門에서는 企業의 閉鎖, 停止, 合併, 轉業등의 措置가 속속 斷行되어 全國의 工業企業數는 1959年의 31萬 8,000個에서 1962년에는 19萬 7,000個로 減少되었다. 이에 따라 「大躍進運動」期間中에 都市로 流入되었던 勞動者들의 상당數가 農村으로 復歸했다.

또한 重工業部門에 대한 投資도 크게 줄어 1962年의 重工業總生産은 1960年보다 무려 58.6%나 減少되어 工業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66.7%에서 53.5%로 낮아졌다.

○ 文化大革命期 (1966~1975)

1966年부터 1975년까지는 第3次 및 第4次 5個年計劃의 時期였으나 中共全域이 文化大革命이라는 政治突風に 휩싸임으로써 經濟

建設도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文化大革命이 시작되자 經濟管理機關을 비롯한 各級行政機構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고 多數의 經濟專門家, 技術者들이 迫害를 받아 많은 工場들이 操業中斷狀態에 빠지고 生産秩序가 攪亂되어 모든 生産·建設活動이 커다란 打擊을 입었다. 이러한 狀況은 初期에 더욱 심해 1967年과 1968年の 工·農業總生産額은 連續해서 前年對比 9.6%, 4.2% 減少했다.

1970年부터는 第4次 5個年計劃이 시작되었으나 林彪事件, 四人組의 專橫, 批林批孔運動 등 政治風波가 그치지 않아 經濟全體는 여전히 混迷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經濟建設努力은 꾸준히 繼續되었다. 第3次 및 第4次 5個年計劃期에 全國의 基本建設投資總額은 2,595億元으로 竣工을 보거나 操業을 開始한 大·中型프로젝트數는 1,485個에 달해 새로이 增加한 固定資產額도 1,576億元이나 되었다. 石油·石炭·電力·鐵鋼·세멘트·암모니아·綿絲 등 重要製品의 生産能力도 모두 擴大되었으며 交通, 郵便, 電信, 科學技術 같은 分野에도 어느정도 進歩가 있었다. 10年間 工·農業 總生産額은 年平均 8.7% 成長했으며 農業은 4%, 工業은 10.4% 成長했다.

1975年末까지 全國鐵道總延長은 4萬 8,400 km로 1965年보다 1萬 1,000 km나 늘어났고 郵便路總延長도 480萬km로 1965年보다 130萬 km나 增加했다. 또한 이 期間中에 中共最初의 水爆開發에 成功했고, 人工衛星을 發射했으며, 인슈린의 人工合成을 이루는 등의 괄목할 만한 發展이 있었다.

文化大革命의 渦中에서 推進된 第3次 및 第4次 5個年計劃은 「大躍進運動」以後 調整이 進行되고 있던 中共經濟의 基調를 다시 變化

시켰다. 즉 鐵鋼生産의 大幅增大를 비롯한 高指標政策이 다시 提起되어 1970年 以後부터 基本建設投資規模는 다시 擴大되고 工場勞動者의 大量動員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工場勞動者數의 計劃值 大幅超過, 食糧供給의 不足 등 새로운 問題가 야기되었다. 또한 重工業發展이 다시 強調되어 農業·輕工業과 重工業間의 均衡이 깨지고 消費物資의 生産이 위축되어 長期間 深刻한 商品供給不足狀態가 계속되었다. 農村에서는 人民公社와 生産隊의 規模를 擴大시키는데만 급급해 農民들의 多角的인 經營과 副業活動이 批判받았고 都市에서도 集團所有制企業을 일거에 全人民所有制企業으로 바꾸고 能力給賃金制 및 獎勵金制가 폐지되는 등 勞動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져 産業生産도 不振을 면치 못했다.

○ 第 5 次 5 個年計劃 (1976 ~ 1980)

1976年 10月에 江靑을 비롯한 四人組의 追放으로 文化大革命이 完全히 終熄되자 中共當局者들은 沈滯되어 있는 國民經濟를 回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라 보고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을 近代化시켜 中共을 社會主義強國으로 만들겠다는 소위 四大近代化計劃을 發表했다. 이計劃에 따라 各種建設活動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工·農業生産은 比較的 빨리 回復되었다. 이에 고무된 中共은 1978年에 1976年부터 1985年까지의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을 構想하게 되었다. 즉 向後 8年間에 過去 28年間의 基本建設投資總額에 相當하는 資金을 投入해 120個의 大型프로젝트를 新規로 建設하는 것을 主內容으로 하는 야심에 찬 計劃이었다. 그러나 當時의 中共經濟는 農業과 工業, 輕工業과 重工業의 不均衡이 매우 深刻해진 狀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重工業一邊倒의 새로운 經濟計劃은 얼마안

가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農業과 輕工業을 주축으로 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에 注力하면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達成한다는 調整計劃이 다시 提起되었는데 이것이 「調整」, 「改革」, 「整頓」, 「提高」로 要約되는 소위 「8字方針」이다.

「調整」이란 重工業 및 基本建設部門을 縮小하고 農業, 輕工業發展에 注力하며 에너지,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한다는 것이고 「改革」이란 專門經營人 中心의 企業管理體制를 確立하고 均等分配原則을 勞動成果에 따른 能率分配原則으로 轉換시킨다는 것이며 「整頓」은 不實企業을 과감히 整理하고 企業의 擴張 또는 新設을 抑制한다는 것이고 「提高」란 量보다는 質의 向上에 注力하고 技術人力을 養成하여 技術水準을 높인다는 것이다.

「8字方針」에 따라 調整이 進行되면서 所有制形式, 計劃管理形式, 工·農業企業經營管理形式, 分配形式 등의 方面에서도 若干의 改革이 實施되었다. 그 具體적인 예를 들면 農村에서는 多様な 形態의 生産責任制가 實施되고 工業分野에서는 生産決定, 製品販賣, 資金使用, 勞動管理 등에 대한 企業의 自主權을 서서히 擴大하는 試圖가 行해졌다.

10 個年計劃과 뒤이은 調整計劃으로 사실상 第5次 5 個年計劃은 實施되지 못했지만 이 期間中에 國民經濟는 各部門間에 調和를 이루면서 着實한 成長을 이루었다. 1975~1980 年の 5 年間 全國國營工業의 固定資産額은 1,300 億元이나 增加했는데 이는 지난 文革期の 實績과 맞먹는 것이다. 工業總生産額은 年平均 9.2%, 農業總生産額은 年平均 4.8% 成長했고 都市와 農村의 平均消費水準도 5 年間 26.8% 上昇하여 以前 10 年間의 24.1%에 비해 매우 好轉되었다.

○ 第 6 次 5 個年計劃 (1981 ~ 1985)

中共에서의 5 個年計劃은 一種의 政策指針의 役割을 할 뿐이며 實質的인 目標의 策定과 이의 實行은 年度計劃이 中心이 된다.

1981 ~ 1985 年の 第 6 次 5 個年計劃도 1982 年 12 月에 가서야 最終 確定되었는데 이는 1978 年부터 시작된 國民經濟의 全面再調整 作業이 1980 年代에 들어서도 계속 進行되었기 때문이다.

第 6 次 5 個年計劃의 特徵은 高度成長보다는 經濟效率을 重視하고 重工業보다 輕工業에 注力하며 對外貿易의 擴大와 技術開發에 重點을 둔다는 것인데 이는 5 年안에 效果的인 措置를 취하여 經濟의 安定과 一定한 成長速度를 유지하는 同時에 向後 經濟와 社會를 加一層 發展시키기 위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한 것이다.

第 6 次 5 個年計劃의 基本任務는 調整, 改革, 整頓, 提高의 方針을 계속 貫철하고 나아가 過去로부터 남겨진 經濟發展을 가로막는 各種 問題를 解決하며 財政·經濟狀況의 根本的인 好轉을 實現하고, 아울러 第 7 次 5 個年計劃期間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하여 더 나은 條件을 만드는 것이다. 그 具體的인 內容으로는,

① 經濟效率을 提高시킨다는 前提下에 農工業生産의 每年成長率을 4 %로 計劃하고 實施過程에서 5 %에 달하도록 한다.

② 生活에 必要한 農產品, 輕·紡織製品, 기타 日用工產品의 生産을 大幅 增加시키고, 供給되는 消費財의 量과 質을 社會購買力의 增加 및 消費構造의 變化와 대체로 符合되게 하며, 市場物價의 基本的인 安定을 維持한다.

③ 重工業이 기여해야 할 方向과 生産品構造를 調整하고 物資消耗 특히 에너지 消耗를 크게 줄이며 生産財生産과 消費財生産의 發展이 대체로 均衡을 이루도록 한다.

④ 計劃的이고 또 重點的으로 既存企業의 技術을 改造하도록 하고 에너지節約을 主要目標로 하는 技術革新運動을 널리 展開하며 同時에 必要的 資金을 調達하고 에너지, 交通 등의 重點建設을 強化하여 第7次 5個年計劃의 發展과 서로 連結되도록 한다.

⑤ 全國의 科學技術力量을 統一的으로 組織하고 科學技術의 業績과 成果를 普及應用하며, 教育·科學 및 文化事業을 發展시키도록 努力하고 社會主義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結實을 促進한다.

⑥ 國防建設과 國防工業建設을 強化하고 新型 常用武器와 戰略武器를 研究, 發展시키며 軍事裝備의 現代化水準을 높인다.

⑦ 生産을 發展시키고 經濟效率을 높이며 資金을 적절히 集中하여 減少되었던 國家財政收入을 增加시키며, 經濟建設과 文化建設을 위한 經營을 점차 增加시키고 財政收支와 信用貸出收支의 基本的 均衡을 維持한다.

⑧ 對外貿易을 大幅擴大하여 國外資金을 有效하게 利用하고 國內需要에 適合한 先進技術을 積極的으로 導入하여 國內經濟의 技術發展을 促進한다.

⑨ 人口增加를 嚴格히 統制하고 都市勞動力의 就業을 적절히 按配하여 生産發展과 勞動生産率을 높이는 基礎위에서 都市·農村人民의 物質과 文化生活를 계속 改善한다.

⑩ 環境保護를 強化하며 環境汚染의 계속적인 惡化를 막고 一部 重點地域의 環境狀態를 改善한다.

2. 中共의 經濟改革

가. 改革의 背景

文化革命으로 인한 社會的混亂과 經濟的 損失이 극심한데다 國民들의 不滿이 高潮되자, 새로 執權한 鄧小平 集團은 劃期的인 改革方案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美·日과의 關係正常化에 따라 對外 開放政策이 推進된데 이어, 유고·蘇聯·헝가리 등 共產國家들이 經濟體制 改革을 試圖하고, 韓國·홍콩·臺灣등 周邊國들이 劃期的인 經濟發展을 이루자 中共指導層은 經濟改革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毛澤東이 죽고 4人幫이 逐出된 후 急速한 發展을 위해 樹立된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1976-85)이 中共産業構造의 脆弱性을 考慮하지 않은 채, 과도한 目標를 策定함에 따라 實施過程에서 많은 副作用이 發生, 全面的인 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中共은 從來의 中央統制式 計劃經濟에 部分的으로 資本主義 市場經濟原理를 導入하는 새로운 經濟路線을 實驗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改革措置의 經緯

| 年 月 | 措 置 內 容 | 備 考 |
|----------|---|-----------|
| 1975. 1. | ○ 周恩來首相,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 4個 現代化라는 用語를 제일 처음 使用 | 第 4 期 全人代 |
| 1977. 8. | ○ ‘自力更生’ 原則拋棄와 積極的 | 黨 11 次 大會 |

| 年 月 | 措 置 內 容 | 備 考 |
|----------|---|--------------------|
| 1978. 2. | <p>인 對外貿易 開放政策 採擇</p> <p>○ ‘ 4 個現代化 ’ 를 公式的인 政府의 立場으로 採擇하고, 中共 2000 年の 青寫眞 提示.</p> | 第 5 期 全人代 1 次會議 |
| 1978. 3. | <p>○ ‘ 中共人民銀行 ’ 을 國務院直屬機構로부터 政府 部處級으로 昇格 措置.</p> | |
| 1978.12. | <p>○ 農業生産請負制, 人民公社改編始作.</p> | 第 11 期 3 中全會 |
| 1979. 4. | <p>○ 外資導入 및 利用에 관한 基本原則 確定.</p> <p>○ ‘ 中國銀行 ’ (外換銀行格) 設置 * 中國銀行의 海外支店은 7 個國에 26 個 支店이 있음. (外國銀行은 22 個)</p> | |
| 1979. 6. | <p>○ 經濟構造의 調整과 效率向上을 指向하는 ‘ 調整計劃 ’ 實施.</p> | |
| 1979. 7. | <p>○ ‘ 國際信託投資公司 ’ 設立 - 外國資本의 誘致와 先進技術 및 裝備導入의 窓口役割</p> <p>○ ‘ 中外合作企業 經營法 ’ 및 ‘ 經濟特區設置法 ’ 發表.</p> <p>○ 人民公社 改編과 農業改革案發表.</p> | |

| 年 月 | 措 置 內 容 | 備 考 |
|----------|--|--------------------|
| 1979.12. | ○ 利潤上納制을 所得稅制로 轉換. | |
| 1980. 9. | ○ 合資企業에 관한 企業登錄法, 勞動法, 法人稅法, 所得稅法等을 採擇. | 第 5 期 全人代 3 次會議 |
| 1981. 7. | ○ 國務院에 ‘經濟法 研究所’ 設立. | |
| 1981.12. | ○ 中國投資銀行’ 設立. | |
| 1982. 9. | ○ 經濟體制 改革의 基本方向 提示. - 主要都市에서 2 年以上 實驗計 劃 發表. | |
| 1982.12. | ○ 新憲法採擇 - 人民公社 改編, 農民의 自留地 認定等 | 第 5 期 全人代 5 次會議 |
| 1983. 3. | ○ 國際化趨勢에 副應한 新商標法 發 效. ○ 外國企業의 中共內 合作 및 單獨 投資 許容. | |
| 1983. 6. | ○ 外國人에 最初로 株式公開 ○ 納稅制의 全面實施 | |
| 1984. 1. | ○ ‘中國工商銀行’ 設置. | |
| 1984. 3. | ○ 外國人 投資促進을 위한 特許法 制定. | |
| 1984. 4. | ○ 14 個 港灣都市를 ‘經濟開發區’ 로 選定, 追加 開放措置. | |

| 年 月 | 措 置 內 容 | 備 考 |
|----------|--|------------------|
| 1984. 6. | ○ 國際通貨基金 및 世界銀行 加入. ○ 武漢市를 經濟改革 示範地域으로 選定. | |
| 1984. 8. | ○ 株式發行에 의한 資本形成 措置 ○ ‘株式發行 暫定管理規定’ 採擇. | |
| 1984. 9. | ○ ‘科學技術成果獎勵條例’ 發表. | |
| 1984.10. | ○ ‘經濟體制 改革’ 案 發表. - 資本主義市場經濟原理 導入 | 黨 12 期 3 次會 議 |
| 1985. 3. | ○ ‘涉外經濟契約法’ 公布. - 政府傘下 個人企業 및 經濟機構 들이 外國의 私企業과 經濟機構 들과 直接 去來할 수 있도록 規 定. | |
| 1985. 4. | ○ 國務院 傘下에 經濟調整 機構設置. | |
| 5. | ○ 廣東, 福建省에 地方銀行 設立許 可. | |
| 6. | ○ 10 個 港口開放措置 取消 | |

다. 改革의 基本原則

中共의 經濟體制 改革은 計劃經濟의 基礎위에 資本主義 先進國을 包含한 世界 各國의 現代的 經濟管理 方法이나 市場經濟의 利點을 最大한 活用하여 ‘中國의 特色을 갖춘 社會主義 經濟體制’ 를 구축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中共은 改革의 基本原則으로서

- ① 個人的 創意와 利潤追求를 許容, 生産意慾을 鼓吹하고, 經濟的 效率性を 提高,
- ② 企業의 自主的 經營權을 保障하여 黨과 政府의 不必要한 干涉이나 支援을 排除하며, 個別企業의 生産·價格·賃金에 관한 決定權을 國家에서 企業으로 移讓,
- ③ 經濟管理에서 政府와 企業·個人에 대한 基本的인 役割을 定立,
- ④ 經濟關係와 經濟活動의 準則을 法律로 制度化,
- ⑤ 經濟開發을 위한 先進技術과 資本導入을 위해 대내적 興件을 造成하며, 對外開放政策 推進등을 樹立·實行하고 있다.

라. 主要改革 現況

(1) 生産請負制 實施

生産請負制은 農業方式을 人民公社·生産大隊·生産隊의 3級所有制에 의한 集團農業에서 農土를 小集團, 各農家, 各農民에 割當, 耕作케하는 農業으로 바꾸고, 이들 生産者들은 割當된 生産量을 公定價格으로 政府에 팔고 초과분은 自由市場에서 팔 수 있는 制度이다.

生産請負制은 1979年부터 實施하여 5年間 暫定請負期間을 두었으나 1984年에 다시 그 期間을 15年 延長하는 請負權에 대한 讓渡와 保障을 規定함으로써 事實上 社會主義的인 土地公有制 概念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

農民經濟에 대한 本格的인 改革이 始作되기 전인 1978年의 農民

1人當 平均 年間所得이 133.6元에 불과했으나 1983년에는 309.8元으로 5年동안 2.3배나 增加하였다.

現在 生産請負制를 採用하고 있는 農家數는 全體農家の 98%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包幹到戶'라 불리는 家口單位의 生産高運動 生産請負制가 80%以上을 占하고 있다.

1982年 人民公社改編과 더불어 급속히 普及되기 始作한 '包幹到戶'는 土地, 農器具等 生産手段의 集團所有制를 그대로 둔 채 生産器具, 家畜등의 管理 및 使用을 各農家에 委託하거나 有償讓渡하여 農地經營을 일임하는 制度이다.

좀더 發展된 制度로 '農業轉嫁'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과수재배, 양식, 農業副産物加工等 各 專門分野에서 技術과 經驗을 가진 農民에게 獨自의인 經營을 認定하는 方式이다.

그러나 生産請負制의 導入으로 農家の 所得이 크게 늘고 農村이 활기에 차 있지만, 所得隔差의 擴大, 人口增加 選好傾向(勞動力에 따라 土地分配), 公有制概念 瓦解등 많은 問題點이 대두되고 있다.

(2) 企業管理制度 改善

過去 毛擇東式의 經濟體制는 高度의 中央集權的 計劃 經濟制度였기 때문에 企業은 行政機關의 指令에 따르는 附屬物에 지나지 않았고, 自主的인 生産方式을 運營하지 못함에 따라 生産性이 극도로 低下되었다. 中共은 1979年 7月 '國營企業의 經營管理 自主權 擴大에 관한 약간의 規定'을 發表하여 一部企業('79年 4,000餘個)에 自主權을 擴大하는 實驗을 實施하고, 1981年부터는 經濟責任制라 불리는 本格的인 企業改革에 着手하였다.

1984年末 現在 中共의 各種 都市企業數는 100萬餘個에 달하고 勞働者數도 8,000餘萬名에 이르며, 이들 企業이 納付하는 各種 租

稅와 利潤은 國家財政의 80%以上을 占有하고 있다.

이처럼 都市企業이 中共經濟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기 때문에 企業管理制度的 改革은 中共 經濟改革의 成敗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라 할 것이다.

中共企業管理制度的 基本方向은 分權的 管理制의 實行이라 할 수 있는데 主要한 內容을 들면,

- ① 工場長 및 從業員의 選拔에 있어서 專門知識과 經驗을 重視하며, 公開募集을 擴大하며, 企業과 從業員間에도 契約締結 獎勵(勞動規律 強化)
- ② 生産과 販賣計劃에 있어서 企業自體 決定 擴大, 超過生産된 製品價格(國家許容 範圍內)과 物資購入의 自由決定.
- ③ 企業의 獨立採算制 및 工場長 責任制 實施.
- ④ 利潤의 社內留保를 許容하고, 利潤上納制를 法人稅制로 代替, 留保資金에 根據한 基金의 設定과 自主的 使用 許容.
- ⑤ 企業에 分配에 관한 決定權을 부여함으로써 能率給 實施(賃金隔差 認定), 保障給 支給, 賃金形態의 自主的 選擇.
- ⑥ 投資基金의 調達을 國家의 無상공여에서 銀行融資로 轉換擴大.
- ⑦ 剩餘固定資産의 貸貸, 讓渡許容.
- ⑧ 人員配置 및 機構設置의 自主的 決定.
- ⑨ 部門地域을 초월하는 聯合經濟에의 參與
- ⑩ 이러한 企業의 自主權 擴大를 支援하기 위해 1984年 10月以後 '利介稅' 制度를 全面 實施하고 있는 바,
 - ㉠ 現行 工業·商業稅를 그 性質에 따라 製品稅, 附加價值稅, 營業稅 및 營業稅의 4種으로 分類하고 製品稅는 品目別로 細分하여 稅率을 彈力的으로 運營하고

- ㉠ 一部 採掘企業에 대해서는 企業의 獨立採算을 強化하고, 資源과 그 開發條件에 따라 과세율을 調節하여 國家資源의 效率的인 管理와 利用을 促進하며
- ㉡ 不動産稅, 土地使用稅, 車輛·船舶 使用稅, 都市整備 建設稅 등 4 種의 地方稅를 復活시켜 土地, 建物の 合理的 使用과 都市整備建設을 圖謀하며
- ㉢ 國營企業으로부터 所得稅를 徵收하고 大·中型 企業으로부터는 調節稅를 徵收하여 價格體系에서 發生하는 不合理的 要因을 除去하는 등 各種 措置를 취하고 있다.

(3) 價格體系的 合理化

中共은 지난 30 餘年동안 價値效用과 市場機能을 度外視하고, 價格을 長期的으로 固定不變시켜야 한다는 立場에서 國家에서 價格을 策定, 凍結시켜 왔다.

즉 中共의 價格管理制度는 公有制의 基礎위에 計劃經濟를 實行하고 同時에 市場調節의 補助的 機能을 擔當하는 重要한 裝置役割을 하고 있으며, 國家의 統一價格制度, 工商企業의 去來價格, 自由市場價格 등 다양한 價格制度를 採用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國家의 統一價格制度로서 物價管理를 하는데 있어 重要한 機能을 遂行하기 때문에 國務院에서 價格에 관한 法規, 方針, 政策, 計劃등을 作成, 承認하며, 重要한 農·工產品價格, 交通·運輸價格 및 各種料金は 國家物價總局과 國務院의 主管部署에서 分割 管理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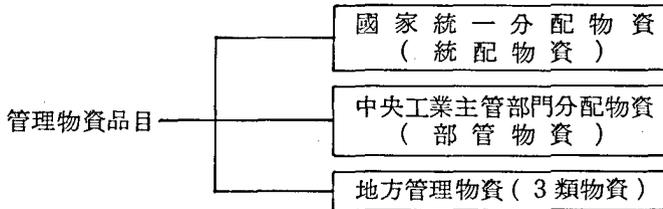
또한 中共은 物價安定을 위해 農·工生產品의 小賣公正 價格을 全國이 同一하도록 一률적으로 凍結한 대신에 ‘第3類 商品’에 속하는 各種協議 價格商品도 可及的 引上을 許容하지 않음으로써 價格統

제를 하고 있다.

中共의 商品分類 內容

| 種類別 | 商 品 別 | 備 考 |
|-----|---|--------------------------------|
| 1 類 | 穀物, 食糧, 食用油, 綿花, 綿絲, 綿布, 가솔린, 동염 등 38種 | 國務院에서 販賣, 調達, 輸出入, 在庫調查등 集中管理. |
| 2 類 | 황홍마, 모시, 肉類, 家畜, 茶, 계란, 모죽, 약재, 재봉틀, 자전거, 일부의 약품, 毛織物등 293種 | 國務院이 直管하거나 主管部에 管理를 위임. |
| 3 類 | 上記品目 外의 商品 | 協議에 의해 價格 決定 |

物資管理의 分類



이러한 中共의 價格原理은 效率的인 經濟運用에 커다란 障礙를 초래하여 需要와 供給間에 有機的인 連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計劃目標와 實際需要間에 괴리가 생겨 (社會的 需要가 빚나가) 無분별한 生産, 在庫累增, 必要한 部門에서의 資材不足등 不合理한 面이 계속 露出되었다.

또한 價格策定の 原則을 合理的인 原價概念을 基礎로 算出하지 않고 平均的으로 適用했기 때문에 農產品과 工產品, 國內價格과 國際

價格間에 非合理的인 價格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은 商品價格의 統一管理는 계속 견지하되, 價格管理體系를 計劃調節과 市場調節을 結合시키는 混合調節의 原則을 導入하고 있다. 그 主要한 內容을 보면,

- ①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지 않는 農·副產品, 日用雜貨, 飲食業, 서비스業등의 價格決定은 段階的으로 市場機能에 맡기며, 國家의 統一的 公示價格의 範圍를 縮小하는 등 單一價格體制를 複數價格體制로 轉換시켰다. (1985年부터 工產品 120個 品目中 60個 品目, 農產品 26個 品目中 19個 品目を 統制價格에서 解除시킴)
- ② 이에 따라 價格管理 權限을 地方政府와 企業에 適切히 下向委任하며, 國家가 認定하는 範圍內에서 企業이 價格을 決定(差別價格, 요금판매등)할 수 있도록 許容하였다.
- ③ 또한 財政赤字의 한 要因이었던 價格補助金을 大幅 削減하는 한편,
- ④ 租稅制度를 改善하고 財政體制와 金融體制를 改革하여 價格體系의 合理化 作業을 뒷받침하도록 試圖하였다.
- ⑤ 특히 需要·供給關係를 適切히 調整하여 不合理한 相對的 價格差를 解消하며, 經費節減과 租稅減免등을 통해 그 差額을 保全토록 하고, 農產品價格등을 適切히 調節함으로써 農民과 都市勤勞所得者의 利益을 最大한 保障토록 한다는 것등을 主要 骨子로 하였다.
- ⑥ 그리고 農村 및 都市郊外 또는 都市의 指定場所에 自由市場을 開設하여 農民들이 自留地에서 生産한 農産物이나 各種 企業에서 國家에 公출하고 남긴 剩餘商品 등을 去來케 함으로써

農·副業生産의 促進, 農民收入增大, 市場活性化, 다양한 欲求의 充足등을 도모하고 있다.

(4) 流通體系의 改革

中共에서 經濟改革을 推進하면서 市場經濟原理를 一部 導入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計劃經濟를 本位로 하고 市場調節機能을 중속된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多様な 經濟狀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流通體系의 不備로 生産과 消費의 連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生産地에서는 在庫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지에서는 品貴現象이 일어나는 등 많은 問題가 發生하였다.

특히 이런 현상은 農村地域에서 더욱 深刻하였는데, 農民所得이 增加하고 家電製品 등 消費財의 需要가 增加하게 되자, 都市의 工場들은 農村市場을 겨냥하여 輕工業製品 등을 增産하였으나 都市와 農村을 잇는 商品流通이 圓滑히 되지 못함에 따라 工場에 在庫가 쌓이고 감산하게 되는 기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農村에서 生産되는 剩餘農産物도 都市地域에 販賣할 수 있는 流通體系가 確立되지 못한 關係로 農産品의 現金化가 容易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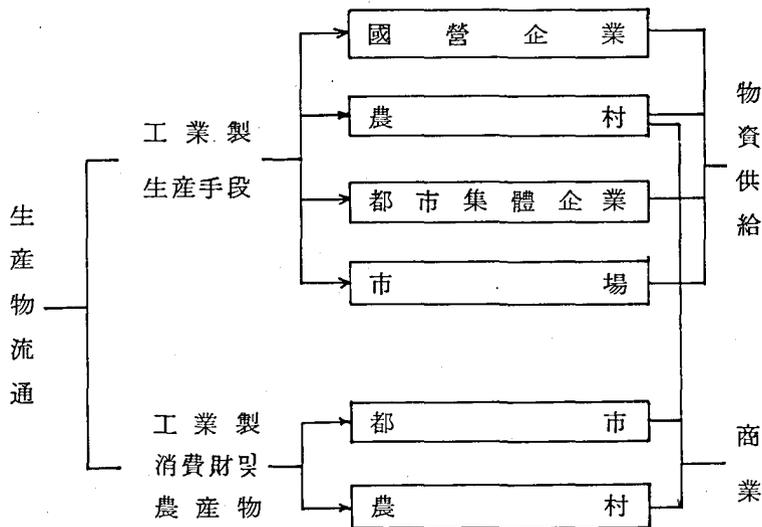
이러한 缺陷을 是正하기 위해 中共當局은 1983年부터 段階的으로 流通體系의 改革에 着手했는데 그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農村의 流通을 맡는 '全國供鎖總社'를 廢止, 都市地域의 流通을 管掌하는 商業部에 統合시켜 流通機能 管掌業務를 一원화시키는 한편,
- ② 農村地域 등 末端 流通機構의 機能을 強化하여 獨自的인 商品 買入과 小賣를 認定하는 同時에 集團經營 및 個人經營의 各種

商店을 늘렸다.

- ③ 都市地域의 流通體系도 整備하여 國營商業과 集團經營 商業以外에 個人所有 商業을 許容했으며
- ④ 農民들이 剩餘農産物을 直接 都市에 내다팔 수 있도록 長距離 輸送販賣를 認定하였다.
- ⑤ 農·副産品중 統一購買, 割當購買 對象品目 및 數量을 計劃的으로 減少시켜 自由販賣, 自由購買의 範圍를 擴大하고 있다.
- ⑥ 國營인 '供鎖合作社' (購·販賣協同組合)를 民營으로 轉換, 農民들에 의한 共同購買 및 販賣가 可能토록하여 農民들의 出資를 誘導함으로써 農民의 利益을 增進시킨다.

中共의 生産物 流通



- ⑦ 또한 流通構造와 物資供給體制를 單純化시켜 都市 및 農村에

各種 去來센터와 都賣市場을 建設하며 國家가 統制·供給하는 計劃對象 品目이 아닌 品目은 자유로이 去來되도록 許容한다.

⑧ 多様な 商業要素들을 合理的으로 配置하며 均衡있게 發展할 수 있도록 小型企業, 特히 料食業, 서비스業, 修理業 같은 零細業種을 더욱 開放하여 集團請負經營이나 個人經營으로 轉換시킨다.

⑨ 對外貿易體制를 漸進的으로 改革하여 地方의 對外交易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支援한다는 것등이다.

(5) 財政 및 金融制度 補完

中共의 財政收入은 주로 國營經濟와 集團經濟가 納付하는 稅金과 利潤에 依存한다.

現在 財政收入중 國營經濟가 集團經濟로부터의 收入이 財政收入總額의 99%以上을 占하며 그 가운데 國營經濟가 차지하는 比重은 85%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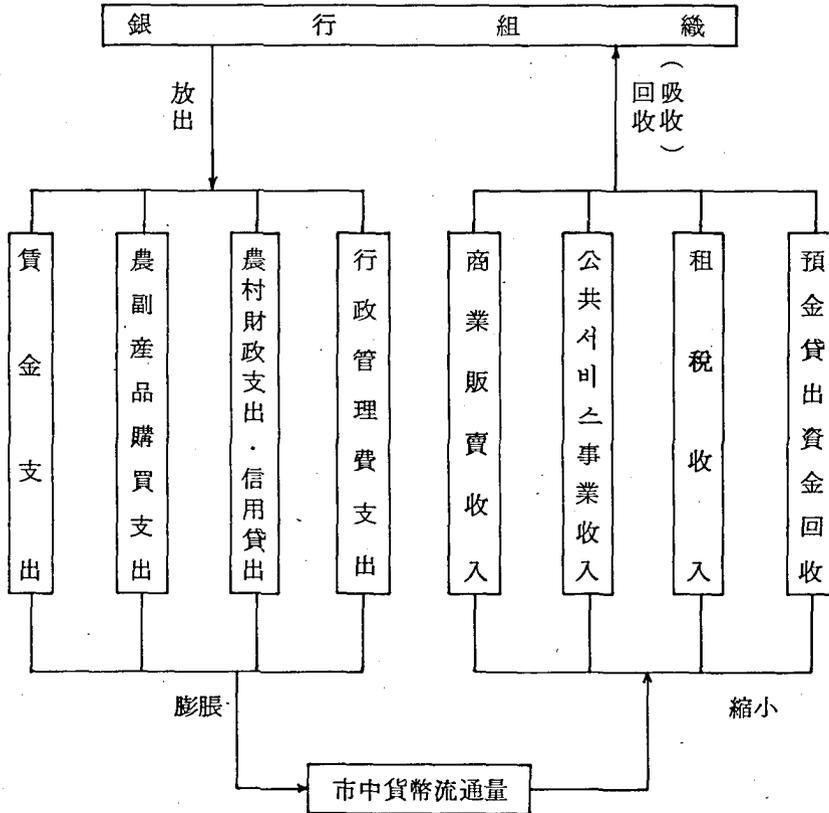
最近에 이르기까지 中共의 財政은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農產品 收買價格引上, 農村에 대한 減稅措置, 都市勞動者의 賃金引上和 保障金制度 實施등으로 인해 財政支出은 增加한 반면, 財政收入은 減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中共은 財政赤字 脫皮를 위해 積極的인 努力을 傾注하였는데, 農業과 輕工業의 發展, 消費物資 生産의 增大등을 통해 財政收入을 增大시키는 한편, 文教·衛生·科學關係事業을 除外한 基本建設投資등에 대해서는 財政支出을 大幅 抑制시킴으로써 1981년부터는 相當한 財政收支의 均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中國人民銀行등 各種銀行을 新設하여 金融體系를 整備하는 한편, 個人의 所得增大에 따른 貯蓄獎勵措置, 企業에 대한 貸出擴大

등을 통해 産業活性化를 도모하고 있다.

貨幣의 放出과 回收 (吸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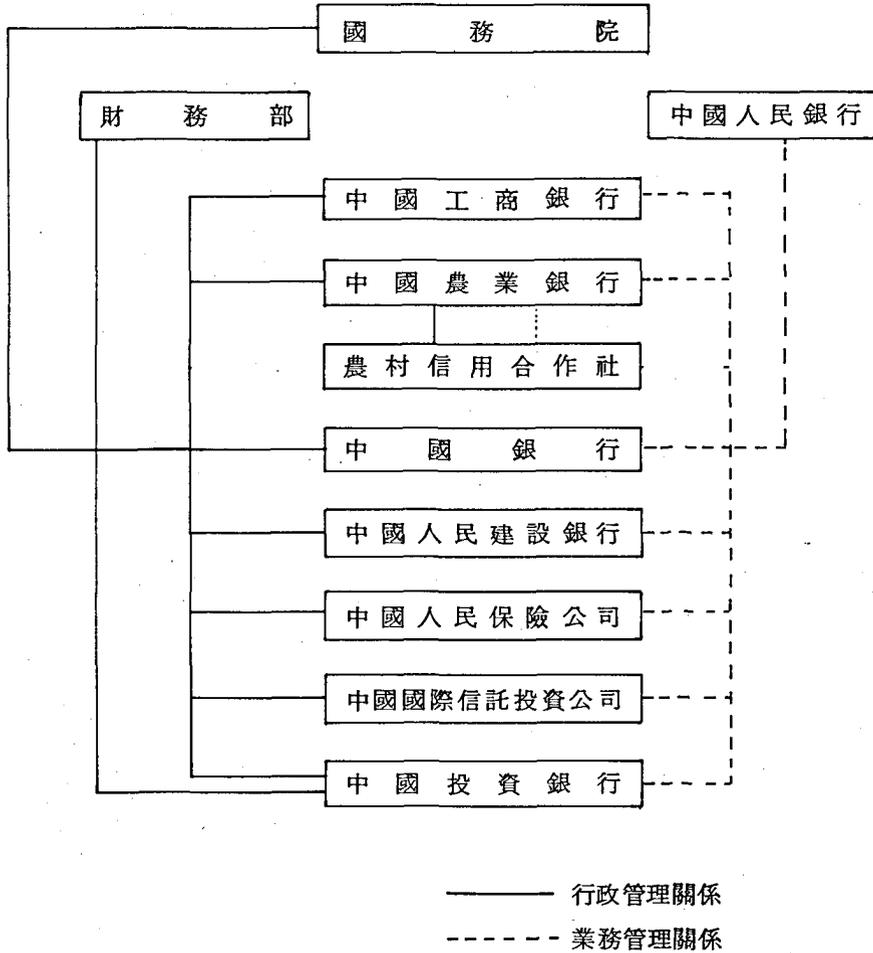


中國銀行現況

| 銀行名 | 設立年度 | 規模 | 備考 |
|--------|------|--|---|
| 中國人民銀行 | | 店舖數: 16,731 個 職員: 325,000 名 ('81 年末) | ○ 國家銀行으로서 中共全體에 대한 金融·通貨政策등을 管掌하는 中央銀行. |

| 銀行名 | 設立年度 | 規 模 | 備 考 |
|--------------------|---------|--|---|
| | | | ○ 各種銀行 統制·調整 |
| 中 國 工 商 銀 行 | 1984.1 | | ○ 工·商業 企業에 對한 支援 |
| 中 國 人 民 建 設 銀 行 | | 店舖數： 2,700 個 職 員： 40,000 名 ('80 年 末) | ○ 國家의 固定資產 投資 資 金 管 理 ○ 國務院 直屬機關으로 財政部 管轄. |
| 中 國 投 資 銀 行 | 1981.12 | 상해, 천진, 강소성에, 분 店設置 | ○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 長期資金借入, 國內企 業의 各種 프로젝트 및 合作企業에 대한 投資 金融 實施. |
| 中 國 銀 行 | 1912. | 店舖數：國內 114 個 海外 13 個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1980 年 末) | ○ 外國換의 集中管理의 經營. ○ 國際間的 貸借 決裁 등 國際金融業務 擔當. ○ 對外資金去來에 관한 契約調印 |
| 中 國 農 業 銀 行 | 1979.2 | 店舖數： 27,828 個 職 員： 284,000 名 (1980 年 末) | ○ 農村金融機關 ○ 中國人民銀行 農業貸 付處에서 獨立. |
| 農 村 信 用 合 作 社 | | 店舖數： 59,500 個 (그밖에도 下部組織인 信用中心이 35 萬個 나 있음) | ○ 農業銀行의 末端 組織 役割 ○ 集團農業, 集團企業 및 農民에 대한 貸出. |

金融機關組織圖



資料：「北京周報」 1984年 第15號 p.16.

(6) 對外開放의 促進

中共은 過去 '自力更生'을 내세워 閉鎖的인 自立經濟體制를 追求하였으나 現在는 外國과의 經濟合作 및 共同資源開發, 世界先進技術 및 設備의 導入, 外國人 投資許容, 外國借款導入, 對外貿易 擴

대등 對外開放政策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특히 對外開放政策은 體制改革과 더불어 中共 經濟改革推進에 있어서 2대지주를 형성하고 있다.

中共은 對外開放政策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 '中外合作 企業 經營法' 등 各種 經濟法令을 새로 制定하고, 深圳, 珠海 등 4個 經濟特區와 上海 등 14個港을 經濟開發區로 開放하였으며, 各國 政府 및 國際金融機關과의 協力을 強化하여 外資를 導入하는 한편, 世界 90餘個國과 貿易協定을 締結하는 등 交易增進과 技術協力を 積極 擴大해 나가고 있다.

또한 貿易管理體制의 地方 分權化를 도모하여 對外貿易의 活性化를 꾀하고 있다.

(7) 經濟管理幹部의 育成 및 黨의 指導 強化

中共은 現在 經濟改革에 消極的인 保守主義者들을 漸進的으로 除去하고 있으며, 現代化 推進에 必要한 經濟·技術官僚를 確保하기 위하여 海外留學 및 研修機會를 擴大하는 한편, 知識人·科學技術者를 優待, 이들에 대한 處遇를 大幅 改善하고 있다.

또한 共同生産을 통한 專門經營管理者의 育成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合作企業을 통해 先進經營技法을 吸收하도록 支援하고 있다. 그리고 現代化 改革의 強力한 推進을 위하여 黨幹部의 勸學수범과 認識을 強調하는 한편, 資本主義 文化流入에 따른 精神汚染을 막기 위해 黨의 指導路線을 더욱 強化하고 있다.

마. 問題點 및 展望

1978年 12月의 11期 3중전회 이래 繼續 推進되고 있는 中共의

經濟改革政策은 實施 7年째를 맞이하고 있는 現在까지 많은 問題點 發生에도 不拘하고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成果에 自信을 갖게된 中共指導層은 第 12期 3중전회(1984. 10.)를 契機로 지금까지 部分的으로만 導入, 實驗해 오던 市場經濟 要素들을 더욱 擴大 適用시키는 한편, 對外開放과 企業經營의 自主權 擴大등을 保障한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決定을 ‘85年 1月부터 實行에 옮기고 있다.

現在 推進되고 있는 經濟改革 作業의 長期計劃은 대체로 第 6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85年까지 經濟體制 整備를 마무리 짓고, 1986-1990年의 第 7次 5個年計劃 期間에는 보다 成長을 加速시킴으로써 1990年代의 高度成長 기틀을 마련하여 2,000년까지 4個 現代化의 基本的인 目標 (GNP의 4倍增進 등)를 達成하겠다는 것으로 集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長期的인 구상이 實現될 수 있으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런 점등을 簡略하게 살펴 보겠다.

(1) 政治的 側面

中共에서의 4個現代化 推進과 改革政策 採擇은 實際 ‘專紅’ 鬭爭에서 鄧小平등 實用主義派들이 華國鋒등 이데올로기 (毛澤東思想 등)파를 제압한 데에서부터 出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側面에서 볼 때 現代化 推進은 毛澤東思想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定立이라 할 수 있으며, 鄧小平등 改革派가 이러한 政治的 目標을 成功的으로 達成할 수 있어야만 支配體制의 正統性을 維持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改革措置가 失敗할 경우 實用主義者들의 政治生命을 弱화시킬 수도 있고, 現在까지는 鄧小平을 비롯한 改革派들이 政治權力을 掌握하고 있지만 아직도 黨·政·軍部內에는 毛澤東 追從勢力들이 殘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급격한 除去는 權力鬭爭으로 發展될 素地를 안고 있다. 그리고 鄧小平이 死亡한 후 호요방, 조자양등 改革派 第2世代들이 黨·政·軍部를 完全히 掌握하지 못하게 된다면 改革主導 勢力들도 急進派와 穩健派등으로 나뉘어 主導權 爭奪을 벌이게 될지 모른다.

다음으로 對外開放政策의 副作用인 인플레이·精神汚染·頹廢風潮등이 擴大되어 中共指導層이 이를 效果的으로 統制하지 못하게 된다면 開放의 逆效果를 구실로 保守主義者들이 改革派를 攻擊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단지 中共改革의 成功與否에도 不拘하고 國民들의 消費水準이나 政治意識이 向上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만큼, 中共指導層이 交替되더라도 舊政治體制로의 復歸(毛澤東의 文化革命과 같은)는 國民들의 반발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改革의 幅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經濟的 側面

中共에서 推進되고 있는 經濟改革은 資本主義的 要素들을 導入하여 社會主義 強國을 建設하겠다는데 그 目的이 있으므로 計劃經濟라는 그 基本的 限界를 脫皮하지 않는 한 限界에 부딪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短期的으로 보아 經濟改革으로 인한 經濟運營上의 效率性이 提高되고, 對外去來도 活潑해지며, 生産性이 向上되는 등 諸般 經濟活動이 活氣를 띄게 될 것이지만, 價格統制의 부분적 해제로 인플

레가 야기될 可能性이 있으며, 30 여년동안 計劃經濟에 익숙해진 10 億人口를 對象으로 새로운 改革을 推進하는데에는 여러가지 反발과 問題點이 提起될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中共의 農·工業生産性이 낮은데다, 만성적인 에너지 不足과 價格 및 流通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며, 人口增加에 따라 失業率이 增加하고 있으며, 國防費의 負擔이 過重하고, 所得隔差가 擴大되는 등 많은 난관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3) 社會的 側面

이런 많은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對內的 對策도 講究되겠지만 對外開放도 積極 推進할 것인바, 이로 인해 國民의 意識構造와 生活樣式이 現代化되고 西歐化될 것이고, 生活水準向上에 버금하여 精神汚染, 犯罪增加등 副作用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平等主義가 철제되고 所得隔差가 擴大됨에 따라 長期的으로 階級鬭爭등 社會不安要因이 增大될 것이다.

(4) 對外的 側面

相當한 水準으로 改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輸出入을 政府가 統制하는등 경직된 貿易管理體制를 維持하고 있음에 따라 國際市場의 變化에 기민하게 對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輸出商品을 제대로 納品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賃金上昇과 낮은 生産性, 法制의 未備, 政治的 不安등과 關聯하여 外資誘致가 目標대로 實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中共 經濟力의 增強과 豊富한 勞動力, 天然資源등을 背景으로 國際市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5) 展 望

위와 같은 적지않은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中共의 改革政策은 순조롭게 推進될 것으로 보이며, 實際 一般大衆이나 黨·政·軍部內에서도 改革의 成果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는 勢力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美國·日本을 비롯한 主要西方 先進國들도 中共의 改革作業을 積極支持하고 있으며, 合作企業 設立, 資本投資등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共의 經濟與件도 相當히 좋아지고 있으며 基本建設投資등도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다.

이상을 綜合해 볼 때 中共은 自體의 必要에 따라 實用主義 路線을 繼續 堅持할 것이며, 現代化計劃을 基本的으로 뒤바꾸는 政治的 變革도 쉽지 않을 것인바, 經濟改革의 成果가 目標대로는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現在와 같은 改革政策을 계속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3. 最近 經濟動向

中共의 第 6 次 5 個年計劃 (1981-85) 의 政策方向에 따라 經濟體制의 改革, 經濟의 活性化 圖謀, 生産性 向上 등에 總力을 기울인 結果 1982 年부터 中共經濟는 急速한 成長勢 (1983 年 9 % 成長) 를 보였으며, 그 結果 食糧 · 綿花 · 石炭 · 原油 · 鐵鋼 등 主要 33 個 品目에서 1985 年의 經濟達成 目標를 2 年이나 앞당겨 성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成長勢에도 불구하고 經濟效率은 여전히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며, 財政赤字가 擴大되는데다, 만성적인 에너지 不足과 原資材 供給不足, 輸送能力 不足, 景氣의 過熱現象등 많은 問題點이 露出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共政府는 이런 점들을 감안, 무리한 高度成長보다는 經濟與件의 整備와 經濟效率의 向上을 통한 安定成長을 追求하고 있으며, 1985 年까지는 各種 不合理한 要素除去와 各部門間 均衡的인 調整을 마무리짓고 第 7 次 5 個年計劃부터는 劃期的인 成長을 追求할 計劃이다.

中共의 主要經濟指標

| 區 分 | 單 位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
| G N P | 10 億달러 | 283.3 | 291.9 | 313.5 | 341.7 | |
| 1 人 當 G N P | 달 러 | 287 | 292 | 309 | 335 | |
| 國 民 收 入 | 億 元 | 3,688 | 3,940 | 4,261 | 4,673 | 5,485 |
| 國 民 收 入 成 長 率 | % | 6.1 | 4.8 | 7.4 | 9.0 | 12.0 |
| 社 會 總 生 產 額 | 億 元 | 8,531 | 9,071 | 9,963 | 11,052 | 12,835 |
| 工 農 業 總 生 產 額 | " | 7,077 | 7,580 | 8,291 | 9,209 | 10,627 |
| 工 業 總 生 產 額 | " | 4,897 | 5,120 | 5,506 | 6,088 | 7,015 |
| 重 工 業 生 產 額 | " | 2,588 | 2,483 | 2,740 | 3,134 | 3,641 |
| 輕 工 業 生 產 額 | " | 2,309 | 2,637 | 2,766 | 2,954 | 3,374 |
| 農 業 總 生 產 額 | " | 2,180 | 2,460 | 2,785 | 3,121 | 3,612 |
| 貯 蓄 率 | % | 31.6 | 28.5 | 29.0 | 30.0 | . |

| 區 分 | 單 位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
| 產 業 構 造 | | | | | | |
| 農 業 | % | 39.1 | 41.6 | 43.9 | 44.9 | . |
| 工 業 | % | 45.8 | 43.4 | 42.3 | 41.9 | . |
| 建 築 業 | % | 5.0 | 4.9 | 4.9 | 5.0 | . |
| 運 輸 業 | % | 3.4 | 3.3 | 3.5 | 3.5 | . |
| 商 業 | % | 6.7 | 6.8 | 5.4 | 4.7 | . |
| 成 長 率 | | | | | | |
| 工 農 業 總 生 產 | % | 7.5 | 4.5 | 8.7 | 10.2 | 14.2 |
| 工 業 生 產 | % | 8.7 | 4.1 | 7.7 | 10.5 | 13.9 |
| 農 業 生 產 | % | 3.9 | 5.7 | 11.0 | 9.5 | 14.5 |
| 輸 出 | 百萬달러 | 18,270 | 20,890 | 21,820 | 22,200 | 24,440 |
| 輸 入 | " | 19,550 | 19,480 | 17,480 | 18,530 | 25,530 |
| 貿 易 收 支 | " | -1,280 | 1,410 | 4,340 | 3,860 | -990 |
| 歲 入 | 億 元 | 1,085.2 | 1,064.3 | 1,112.4 | 1,249.0 | 1,465.0 |
| 歲 出 | " | 1,212.7 | 1,089.7 | 1,153.3 | 1,292.5 | 1,515.0 |
| 財 政 收 支 | " | -127.5 | -25.4 | -29.3 | -43.5 | -50.0 |
| 通 貨 (M ₁ : 年 末) | " | 346.2 | 396.3 | 439.1 | 529.8 | . |
| 外 貨 準 備 | 百萬달러 | 2,262 | 4,773 | 11,125 | 14,342 | 14,420 |
| 換 率 (年 平 均) | 1 달러當元 | 1.4984 | 1.7050 | 1.8887 | 1.9772 | 2.3200 |
| 消 費 者 物 價 上 升 率 | % | 6.0 | 2.4 | 1.9 | 1.5 | 2.8 |
| 勞 動 者 平 均 賃 金 上 升 率 | % | 14.1 | 1.3 | 3.4 | 3.5 | . |

資料：中共 國家統計局，「中國統計年鑑」，1984 年版，1984 年 國家統計局 公報。

註：1) GNP, 1人當GNP는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各年號.

2) 國民收入, 社會總生產額, 工農業總生產額은 當年價格임.

社會總生產額은 農業, 工業, 建築業, 交通運輸業, 商業 總生產額의 合計이며 國民收入은 위 5個 部門의 純生產額合計임.

3) 產業構造는 國民收入에 대한 比重

4) 輸出入은 對外經濟貿易部 統計.

5) 通貨, 外貨準備, 換率은 IMF, Financial Statistics, 85.4 月號.

가. 農水産業

中共의 農水産業 生産은 第6次 5個年計劃 期間동안 계속 豐作을 이루어 目標을 훨씬 超過하는 成長率('83年 9.5%)을 달성하였다. 農水産業 部門에서의 生産增大는 農村의 所得을 높여 農村의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킴과 同時에 工業原資材의 供給을 圓滑하게 하는등 工業生産에도 좋은 影響을 미쳤다.

이에 따라 1983年末 現在 全國 農業機械 總動力은 前年對比 8.5%가 增加한 2億 4,500萬마력에 달했으며, 이를 대수별로 보면 대·중형 트랙터는 84萬臺(3.5% 增加), 小型 및 수동 트랙터는 275萬臺(20.2% 增加), 트럭 27만 5천대(33.1% 增加) 등이었고 農業運輸의 機械化率도 60%以上에 달하고 있다.

農水産品の 去來總額은 1,265億元으로 1952年の 131.3億元에 비한다면 10배 가까이 伸張되었으며, 農民 1人當 平均所得도 1978年の 134元에 비해 1983년에는 310元으로 늘어나 2.3배에 달해,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5年동안 農民의 所得 增加率은 年平均 18.3%로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의 年平均 2.9%를 훨씬 上廻하고 있다.

所得增加와 함께 貯蓄額도 크게 增加하여 1983年の 農民貯蓄 總額은 320.3億元으로 1978年の 55.7億元보다 4倍以上 늘어났다. 中共當局은 中共人口의 76%이상(農村人口 7億 8천만명, 工業勞動者 3億 2千萬名)을 차지하는 農村이 發展되지 않고서는 中共의 現代化가 成功할 수 없다는 現實的인 認識下에 우선적으로 農村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積極的인 政策을 펴나가고 있다.

나. 工 業

1983年度 中共의 工業生産 總額은 6,088億元으로 前年보다 10.5% 增加하여 最近 數年間 가장 높은 伸張率을 보였으며 1985年度 目標인 6,050億元을 上廻하였다.

100種의 主要 工業製品 가운데 計劃을 達成한 것은 石炭·原油·發電·綿布·砂糖·염·자전거·텔레비존·粗鋼·강재·시멘트·판유리·化學肥料·發電設備·自動車·기관차등 93個 種目이며 計劃未達은 트랙터·재봉틀·라디오 등 7個種目に 不過하였다.

특히 重工業部門 成長은 前年에 비해 12.4%나 增加하였고, 그중 機械製造業은 21.1%, 建築材料 工業은 10.2%, 化學肥料 및 農藥은 11.7%나 增加함으로써 工業部門 成長을 主導하였다.

비록 期待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工業部門에서의 經濟效率이 꾸준히 成長하고 있으며, 重工業과 輕工業間 不均衡도 크게 完化되고 있다. (1960年代 輕工業과 重工業의 比率이 1:2였으나 1983년에는 49.6% : 50.4%로 나타나 거의 均衡을 回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企業의 自主權 擴大와 더불어 個人企業의 成長도 刮目할만하여 1983年末 現在 全國의 工業企業數는 約 40萬個인데, 그중 全人民 所有制企業(國營企業)이 8萬 7千個, 集團所有制企業이 30萬 5千個인데 비해, 나머지 8,000個는 個人所有制企業이고 從事者도 88萬名에 이르고 있다.

다. 에너지部門

1983年 石炭生産量은 7億 1,500萬톤으로 前年보다 7.4% 增加했으며, 原油生産量도 1億 500萬톤으로 3.9% 늘었고 發電量도 3,514億 KWH로 7.2% 增加하였으나, 工業成長에 따른 에너지 需要도 급증하여 平均 20% 가량의 生産施設이 電力 供給 不足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實情이며, 農村地域에서의 電力不足도 深刻한 實情이다.

中共의 에너지 生産比率을 보면 石炭 70%, 石油 21%이며 나머지는 水力發電과 天然가스로 構成되어 있다.

1950-1983年の 33年間 中共의 에너지 生産은 約 22倍로 增加하였으나 工業 總生産量은 約 38倍로 늘어나 만성적인 에너지 不足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1978年以來 每年 1,000萬톤 以上の 石油와 500萬톤 정도의 石炭을 輸出하고 있는데, 現代化 計劃 推進에 必要한 外貨의 調達을 위해서는 당분간 에너지資源의 出血輸出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中共은 今世紀末까지 年間 石炭 生産量을 12億톤으로 늘리기 위해 중가르 (年産 6,000萬톤), 伊敏河 (4,500萬톤) 등 대형탄광을 外資를 誘致, 新規開發하고 있으며 既存炭鑛의 技術開發과 地方小型炭鑛의 開發도 積極 推進하고 있다.

또한 발해만, 황해, 남지나해등 海洋石油 開發을 위해 美·日·佛등 西方諸國과의 共同探查 및 開發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발해만 地域에서의 原油生産이 1986 年부터 本格化되고, 中共의 大陸棚探查作業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韓·中共間에도 海洋開發에 관한 問題를 協議해야 할 것인바, 귀추가 주목된다.

中共의 原油生産量 및 輸出量

單位：百萬 噸

| 年 度 | 生 產 量 | 輸 出 量 |
|------|--------|-------|
| 1981 | 101.22 | 13.75 |
| 1982 | 102.12 | 15.20 |
| 1983 | 106.07 | 15.19 |
| 1984 | 114.53 | 20.75 |

中共에서의 水力發電은 開發可能性이 無限하지만 莫大한 費用과 오랜 時日이 所要되기 때문에 中共은 外國과의 協力을 통한 長期開發計劃을 세워놓고 있다. (中共의 84 年度 發電量은 3,746 億Kwh 인데 不足量이 500 億Kwh 나 됨)

中共의 原子力 發電이 全體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影響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1958 年 實驗用原子爐 가동이후 現在 10 基 以上の 원자로를 가동, 2000 年까지 1 千萬Kwh 의 發電設備 建設을 目標로 하고 있음) 앞으로 그 重要性和 比重은 相對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우라늄 埋藏量은 1,500 萬Kw 의 原子力 發電所를 30 年 以上 가동 가능)

라. 商 業

經濟改革으로 國民들의 所得이 높아지게 되자 中共의 流通體系도 많이 變化하고 있으며, 中國人の 生活水準과 消費性向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市場에서의 商品供給이 빠른 速度로 擴大되고 있으며, 1983 年の 商品小賣總額은 前年보다 10.9% 增加한 2,849 億 원이었다.

1982 年の 經營店舖數가 國家所有制 54 萬個 (21%), 集團所有制 76 萬個 (28%) 이며, 個人 所有商店이 134 萬個로 51% 以上을 차지하며 1983 年の 販賣額도 1.5 倍나 增加하였다는 점은 中共 商業構造가 變化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

主要消費財의 增加率을 보면 食糧 (5.4%), 食用油 (17.6%) 돼지고기 (6%), 계란 (13.6%), 모직 (13%), 絹織物 (15.2%), 등 農水産物의 消費가 小幅인데 비해, 텔레비전 (12.3%), 카세트 레코드 (78%), 冷蔵庫 (150%), 세탁기 (53%), 선풍기 (21.8%), 自動車 (18.4%), 카메라 (16%) 등 工産品의 消費는 急增하고 있다.

都市와 農村의 自由市場內 去來도 매우 活潑해지고 있어 年間 去來額이 15.8%나 增加하였으며, 이러한 消費性向의 變化와 去來의 多邊化를 통해 商業部門에서의 利潤率도 增加 (27.2%) 하고 있어 商業部門의 改編과 成長이 豫想된다.

市場物價는 全體的으로 安定勢를 보여 都·小賣 物價指數는 1 - 2% 上昇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品目の 價格만 上昇하고 있다.

마. 財 政

中共에서 調整과 改革이 本格的으로 시작된 1979 年이래 中共의 財政은 매년 赤字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原因은 農水産品의 收買價 引上, 勞動者들에 대한 保障給 支給, 過度한 基幹 産業投資, 地方政府와 企業의 財政權 擴大에 따른 資金分散과 稅收減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基本建設 增大에 따른 過剩 設備投資, 이와 關聯한 에너지, 原資材 및 機資材 등의 供給不足과 價格上昇, 輸送上의 缺損등에 따라 景氣過熱과 物價上昇이 우려되자, 中共當局은 1983 年末부터 強力한 基本建設 投資抑制와 調整政策을 펴나가고 있다.

그리고 1983 年 7 月부터 其他 經費 및 流動資金 支出을 轉換하여 財政支出을 縮小, 歲出入 均衡政策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4. 對外經濟活動

가. 對外貿易

(1) 對外貿易 構造

1979 年부터 中共이 對外開放政策을 積極 實施함에 따라 貿易規模는 持續적으로 增加(年平均 輸出 17.7%, 輸入 10.7%) 하고 있으며, 貿易收支黑字('81 年 14 億弗, '82 年 43 億弗, '83 年 39 億弗)도 늘고, 交易商品 및 對象地域이 多樣해지고 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1983 年度 中共의 輸出入 總額 401 億弗 가운데 日本이 100 億弗로 1 位(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香港 74 億弗(18.4%), 美國 44 億弗(11%), 西歐 56 億弗(14%)인데 반해 蘇聯 및 東歐는 24 億弗(6%)에 不過하여 中共의 對外貿易이 自由陣營側에 치우쳐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특히 美·中共間 交易은 1979 年 國交樹立 以後 急伸張하여 每年 60% 以上の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香港·日本을 통한 韓·中共間 間接交易도 漸次 增加('84 年 3 億 9 千萬弗)하고 있어 86 아

시안 게임등을 통해 兩國間 關係增進이 活潑해 진다면 韓國이 中共의 主要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할 것이다.

中共의 商品別 構造를 보면 農產品이 傳統的으로 輸出의 主宗을 (1952年 農產品 및 農産物 加工品이 80%以上 占有) 이루어 왔으나, 工業化가 進行되면서 輕工業 및 紡織工業製品의 輸出이 漸次 增加하고 있으며, 1973年부터는 石炭·原油등 에너지資源의 開發이 本格化되면서 關聯製品의 輸出이 늘고 있다.

1983年의 輸出商品內容을 보면 紡織工業製品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石油·石炭 등 鑛物性 燃料과 關聯製品, 農產品의 順位가 높아지고 있으나, 中共이 機械工業과 化學工業製品의 輸出에도 積極 努力하고 있어 韓國·臺灣등과의 輸出競爭은 더욱 加熱해 질 것이다. 또한 최근 中共의 輸入商品 構造를 보면 輕工業, 纖維工業用 原資材와 텔레비전, 카세트 레코드 등 내구소비재의 輸入이 增加되고 있다.

(2) 國際收支

中共은 1980年 國際通貨基金 (IMF)와 世界銀行 (IBRD)에 加入하게 됨에 따라 國際收支狀況을 對外的으로 公표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發表에 의하면, 中共은 1981年以後 大幅的인 貿易收支 黑字 (年間 30億弗 規模)를 記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983年末 現在 外換保有高는 143億 4千萬弗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同時에 觀光收入과 海外勤勞者 및 華僑들의 送金도 계속 호조를 보여 經常收支도 1981-83年間 130億弗이 넘는 黑字를 記錄하고 있다.

비록 中共이 資本收支面에서 약간의 赤字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나, 各種 借款을 選別·導入하고 있기 때문에 그 規模는 미미하며, 오히려 中共은 外換保有高 增加를 바탕으로 1981年 後半부터는 國際金

融市場에서 借款을 供與해 주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되는 바이다. 즉 中共은 國際金融機關과 外國政府로부터 長期低利의 借款을 導入하는 한편, 계속 增大되고 있는 保有外換을 다시 國際金融市場에서 活用함으로써 全體的인 國際收支를 圓滑하게 調整하고 있다.

最近 中共의 對外經濟活動 指標

(單位: 億弗)

| 年 度 別 | 輸 出 入 | | | 貿易外收 支(네트) | 資本收支 | 經常收支 | 外 貨 準備高 |
|-------|-------|-------|-------|---------------|------|------|------------|
| | 輸 出 | 輸 入 | 總 額 | | | | |
| 1978 | 97.5 | 108.9 | 206.4 | 0 | △ 10 | △ 7 | 16 |
| 1979 | 136.6 | 156.7 | 293.3 | △ 3 | 23 | △ 16 | 22 |
| 1980 | 182.7 | 195.5 | 378.2 | △ 1 | 19 | △ 22 | 23 |
| 1981 | 208.9 | 194.8 | 403.7 | 5 | △ 9 | 28 | .48 |
| 1982 | 218.2 | 174.8 | 393.0 | 7 | 0 | 60 | 111 |
| 1983 | 220.0 | 181.4 | 401.4 | 12 | △ 22 | 45 | 140 |

資料: 中國統計年鑑(1983年版)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ervatism (1978~1981) 등

(3) 貿易管理制度

中共은 建國以來 對外貿易 統制政策을 實施해 왔고, 最近까지 對外貿易部가 對外貿易을 統一·管理하는 한편, 對外貿易部에 所屬되어 있는 對外貿易專業總公司를 통해 對外貿易 活動 全般을 統制해 왔다.

이러한 體制에 따르면 國務院이 輸出入 計劃을 세우고, 對外貿易專業總公司가 國務院의 統制下에 輸出入을 擔當하기 때문에, 各省·直轄市·自治區 및 中央의 各部處는 對外輸出入 業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貿易量이 적었던 초기에는 이런 식의 管理體制가 效果를 거두었으나, 對外交易이 增加되고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各地方, 部門, 企業間 有機的인 連結이 안되어 있는데다 輸出增大를 促進할 인센티브가 保障되어 있지 않다는 積層構造的인 問題點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輸出商品의 生産部門이 對外經營에 參與하지 못해 海外市場의 狀況을 理解할 수 없는데다 輸出商品의 品質向上에 努力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輸出入에서의 損益을 國家가 統制하는 까닭에 個別關聯 企業들은 對外貿易에서의 損益에 關心이 없었고, 對外與件 變化에 따라 自己 企業의 經營管理를 刷新하거나 經濟效率을 높이려 하지 않았으며, 官僚主義 閉鎖政策 때문에 效率的인 貿易業務를 遂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中共은 1979年부터 貿易管理體制를 改革하여 지금까지 對外貿易專業總公司에 의해 統一 經營되던 貿易業務를 對外活動 與件을 갖춘 地方, 部門, 企業에 漸進的으로 分散·移讓함과 同時에 生産과 販賣, 輸出入, 工業과 貿易등을 相互 連繫시키는 多樣한 經營方式을 導入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對外貿易의 經營權을 下級機關에 서서히 委任하고 地方의 對外貿易 經營權을 擴大하여 國家가 統一的으로 管理하는 一部 商品을 除外한 나머지 商品은 各地方이 獨自的으로 輸出하며, 이를 위해 地域實情에 맞는 對外貿易 公司를 設立토록 許可한다.
- ② 國務院의 關係主管 部門은 各種 輸出入公司의 設立을 認可하

고 一定한 範圍內에서 輸出入業務의 經營權을 移管한다.

- ③ 多様な 形態의 工業·貿易을 相互 連繫시켜 이런 企業들이 生産管理와 輸出業務를 同時에 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
- ④ 對外貿易專業總公司의 現地 經營活動을 強化하여 世界各國의 主要都市에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獨立資産을 가진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輸出代行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商品別 또는 業種別로 輸出業者 團體나 協同組合을 設立케 하여, 이러한 團體들이 該當業界의 協助와 管理를 擔當케 한다.

中共의 이러한 對外貿易 管理體制에 대한 改革作業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向後 改革의 重點方向은 大略 ①國家의 方針·政策·計劃에 따른 統一指導 ②實質的인 對外貿易 活動은 個別企業·地方·各部門에 分權化시키되 相互協業을 誘導 ③行政은 管理機能을 專擔하고 企業의 對外貿易 活動을 監督하는 등 企業과의 業務領域을 區分 ④對外貿易 業務에 관한 獨立採算, 損益自己責任制의 實施를 擴大 ⑤工業과 貿易, 生産과 販賣의 일체화 도모 ⑥ 企業聯合이나 輸出組合 構成등을 통해 對外的인 統一性 견지 ⑦立法에 의한 對外貿易 管理擴大, 특히 銀行·稅關·商品檢查機關의 檢查와 監督機能 強化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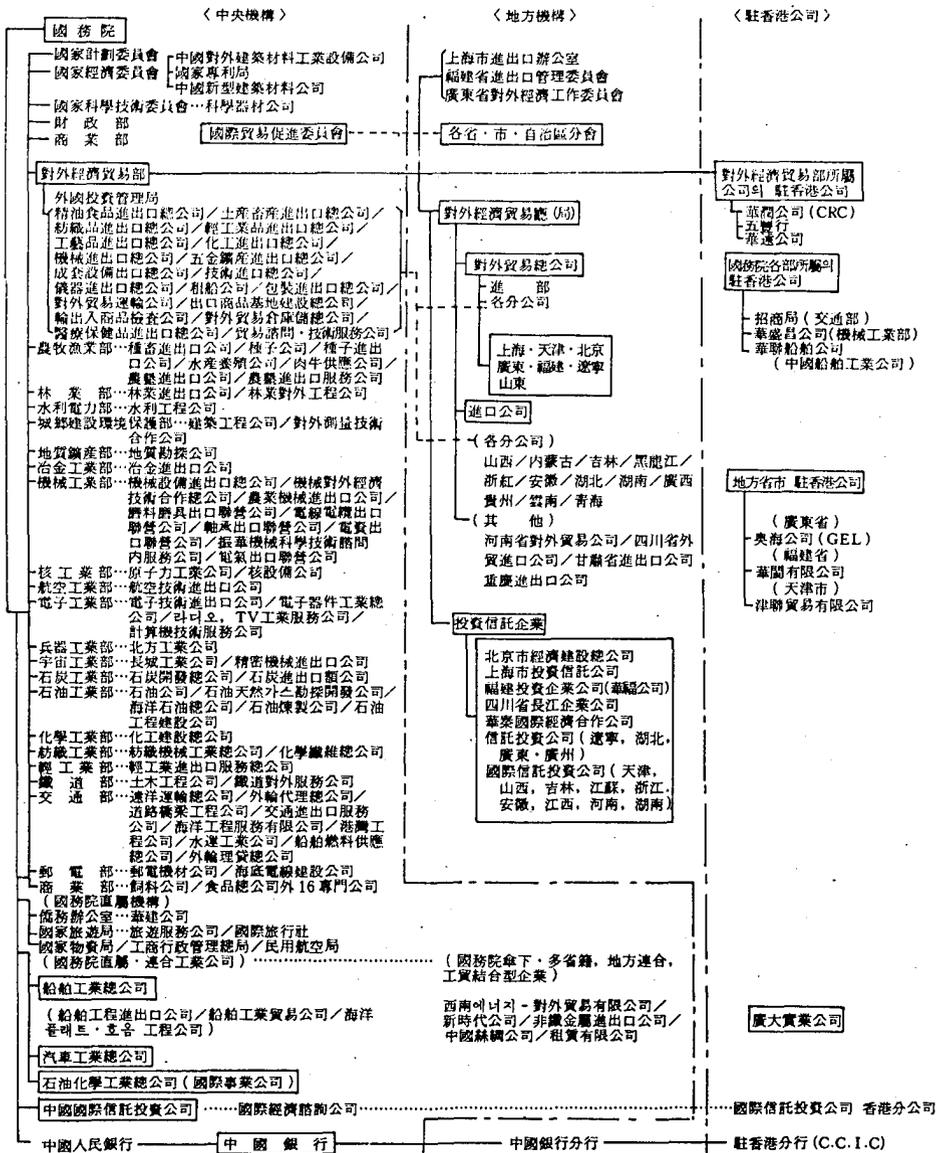
(4) 貿易管理機構

1952年以來 中共의 對外貿易은 對外貿易部가 管掌해 왔으나, 1982年 3月을 기해 國家 輸出入 管理委員會, 對外經濟連絡部, 國家外國投資管理委員會를 吸收·統合하여 새로이 對外經濟貿易部로 發足하였다.

對外經濟貿易部는 對外經濟貿易業務를 管理하며, 對外經濟政策을 責任지고, 各省·直轄市·自治區 및 中央 各部門의 對外貿易活動을

中共の對外貿易關係機構

(1984.2 現在)



調整한다.

또한 對外經濟貿易部는 對外援助, 合作投資, 外資利用, 技術導入, 海外入札, 勞働者 送出을 擔當하며, 對外貿易과 關聯된 法令·規則·制度등을 作成하며, 海外市場에 대한 調查 및 研究를 遂行하는 등 中共의 對外貿易을 總括하는 中樞的 機關이다.

그리고 輸出入品目과 商品에 따라 分離·經營되는 對外貿易專業 總公司가 있고, 1981年부터 새로 設立되기 始作한 中央政府 各部門의 輸出入機關으로서 中國原子力工業公司, 中國種畜輸出入公司等 32個 機關이 있다.

地方에도 1981年 광동 및 북건성, 北京, 上海, 천진 直轄市를 始作으로 地方의 輸出入 業務를 遂行하는 地方輸出入總公司가 設立되었다.

그밖에도 生産과 貿易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키기 위해 組織된 中國 실크공사, 對外貿易서비스公司등 各種 企業 聯合들이 있다.

中國輸出入 交易會는 1957年以來 每年 2回씩 廣州에서 開催되며, 금속광산, 化學工業등 11個 貿易團體가 合同으로 主催하고 있다.

中國國際貿易總進委員會는 1952年에 設立된 民間團體로서 北京 등 15個 地方에 分會를 設置하고 있고, 中共의 輸出入 商標登錄·證明書 發給등 對外貿易을 側面에서 支援하고 있다.

中共의 關稅政策은 保護關稅의 性格을 갖고 있으며, 輸入關稅는 모두 증가세를 原則으로 하며 CIF 價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資本 및 技術導入

淸朝末 帝國主義 列強이 中國大陸을 수탈하기 위해 資本支援을 미끼로 使用하던 역사적 前례가 있기 때문에 中共은 1970年代 초반

까지 外國으로부터의 援助·借款·直接投資등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保守的인 立場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72年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을 계기로 美·日·英·西獨 등 西方 先進國과의 關係가 好轉되기 시작하자, 中共은 兩國間 貿易協定締結을 통해 小規模이지만 中장기 貿易信用의 形式으로 資本去來를 漸進的으로 擴大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1978年 12月 第11期 3중전회를 계기로 對外開放政策을 表明하고 積極的으로 資本 및 先進技術을 導入할 것을 밝히면서 부터, 基本建設投資에 必要한 資金의 不足分을 海外에서 誘致하기 위해 多각적인 措置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979年 7月에는 ‘中外合作經營企業法’이 發表되었고, 同年 10월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가 發足되었으며, 1980年 9月에는 ‘合作經營企業所得稅法’이 公布되는 등 直接投資 誘致를 위한 諸般措置가 本格的으로 推進되었다.

事實 中共은 建國以來 自力更生原則에 立脚하여 國內資本을 動員하여 經濟開發을 推進해 왔으나, 經濟成長이 目標에 未達할 뿐만 아니라 農産物 凶作등으로 인해 오히려 工業部門 發展까지 잠식함에 따라 協商價格差(農産品과 工産品の 價格差를 利用한 國家財政 確保方案)와 國內貯蓄(1970年 以後 1978年까지 年平均 蓄積率은 33%로 비교적 높은 水準임)으로 確保하려던 國內投資資金이 計劃대로 調達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中共은 一部 特殊分野의 技術만큼은 先進水準(예: 國防産業의 유도탄 開發等)이지만, 대부분의 機械設備, 技術人力, 經營管理 技法 등이 先進國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認識하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 今世紀末까지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을 達成하기 위하여 中共當局은 西方先進國으로부터 資本·技術·經營 管理 方式을 앞으로 相當期間에 걸쳐 導入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놓여 있다.

그러나 對外開放政策의 實施以後 省政府 및 國家主要部處 혹은 國營企業體가 제각기 關聯分野의 資本 및 技術을 導入하게 됨에 따라, 重複導入, 非效率性, 規模의 무모한 擴大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露出되자, 中共當局은 1979年以後 이미 契約을 체결했던 플랜트의 導入을 一時 中止시키거나 연기조치를 취하는 등 調整政策을 斷行하였다.

특히 1982年 3月 國務院의 組織改編을 통해 經濟計劃委員會의 權限을 大幅 強化하는 한편, 國家經濟의 全體的 觀點에서 計劃·調整하게 함으로써 技術導入에 관한 政策決定機能을 中央政府 機關으로 相當部門 吸收하였다.

이러한 中共의 技術導入政策 變化에 따라 外貨收支(外債)惡化를 招來하는 대형플랜트 위주보다는 負擔을 피할 수 있고 中共實情에 맞는 소형플랜트와 直接投資에 의한 技術導入 方案이 重要視 되었다.

中共의 技術導入初期(1949-1960)에는 주로 蘇聯으로부터 約 13.5億弗을 導入하였으나 60年代에는 그 實績이 극히 微微(自力更生原則에 따라 對外技術導入忌避)하였고, 1972年以後 本格的인 技術導入이 始作되었다가 1979年以後에는 調整政策에 의해 選別 導入되고 있다.

다음圖表에서도 나타나듯이 中共은 1979年 봄부터 技術 및 設備 導入規模를 ‘實現可能的 輸出量 및 外貨支拂能力’과 合致되는 水準으로 調整하고, 導入하는 프로젝트와 國內의 建設, 設備能力 및

技 術 導 入 推 移

(單位：億弗)

| 年 度 | | 1973-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
| 區 分 | | | | | | | |
| 技術導入總額 (協議額基準) | | 39.6 | 77.7 | 18.0 | 21.4 | 29.8 | - |
| 플랜트契約 | 件數 | | 75 | 53 | 26 | 20 | 29 |
| | 總額 | 33.0 | 57.7 | 17.4 | 21.4 | 2.7 | 17.2 |
| 플랜트契約 과 | 件數 | | 14 | 2 | 5 | - | - |
| | 總額 | | 10.6 | 7.4 | 16.1 | - | - |

資料：中國研究所編：新中國年鑑(1982)

管理運營 能力에 맞춰 나가고 있다.

1979年 6月 第5期 全人代 2次會議에서 余秋里 副總理는 플랜트 導入에 관한 調整方針을 “投資規模는 적으면서도 效率性を 높일 수 있고, 많은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技術設備의 導入에 힘쓰며, 가능한 한 既存企業의 改造와 結付시킨다. 또한 外貨를 節約하고 中共의 設備 및 技術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製造技術의 導入을 擴大하고, 플랜트 導入은 가능한 한 減少시킨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谷牧 國家計劃委 副主任은 ‘베이징 리뷰’ 지와의 會見(1979. 7.27)에서 앞으로 中共의 技術導入은 農業·輕工業·紡織工業의 開發을 加速化하고 石炭·石油·電力 및 建築資材의 增産 및 通信·輸送設備의 擴張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 長期的인 觀點에서 야금 및 工作機械, 電子등 主要工業部門에 대한 選別導入으로 技術導入方向을 轉換해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이러한 技術導入政策과 關聯한 中共의 外資導入도 1979年 以後에는 直接投資 誘致에 重點을 두는등 신중한 選別導入을 하고 있다

는 점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借款導入現況 (協議額)

(單位：億弗)

| 年 度 區 分 | 1979 | 1980 | 1981 | 1982 | 合 計 |
|------------------|-------|------|------|-------|-------|
| 商 業 借 款 | 96.6 | 3.0 | 25.6 | 未 確 認 | 125.2 |
| 政 府 間 公 共 借 款 | 187.8 | 4.0 | 11.7 | 未 確 認 | 203.5 |
| 開 發 援 助 借 助 款 | | 5.1 | 18.0 | 5.2 | 28.3 |
| 國 際 通 貨 基 金 | | 2.8 | 11.2 | | 14.0 |
| 總 額 | 284.4 | 14.9 | 66.5 | 5.2 | 371.0 |

資料：新中國年鑑(1982)

즉 中共은 1979 年에 始作된 國際金融市場의 高金利 趨勢와 自國의 貿易赤字 및 플랜트 導入 抑制에 따라 1979 年 以後 借款導入을 自制하고 있으며, 實際 1979 年부터 1982 年 6 月末까지 確保한 借款資金은 總 23 億 4 千萬弗에 불과하며 그중 商業借款의 使用額은 3 億弗에 不過하였다.

中共이 調整期以後 重點을 두고 있는 直接投資 方案을 살펴보면,

- ① 株式投資 形態의 持分 所有制에 의한 合資經營 企業方式,
- ② 雙方間의 契約을 통한 合作生産方式,
- ③ 海外로부터 外資와 先進技術 및 設備등을 導入하고, 이를 사용하여 生産된 製品으로 一定期間 分割 償還하는 補償貿易 方式,
- ④ 外國 當事者가 提供하는 原資材를 使用하여 契約當事者의 注文대로 加工·生産하여 納品하는 委託加工 및 組立契約 方式.

- ⑤ 沿岸地域이나 해전유전, 炭鑛開發 등을 위한 合作開發 方式 등을 들 수 있다.

直接投資 誘致現況 (1979 - 1982)

(單位 : 億弗)

| 投資方式 | 合意된 프로젝트 수 | 合意額 | 實際導入額 | 備考 |
|--------|------------|------|-------|---|
| 合資企業 | 83 | 1.4 | 1.0 | 經濟특구의 合資企業包含 (광동성이 80% 占有) 해저油田探查 및 開發 |
| 合作生產 | 792 | 27.3 | 5.3 | |
| 合作開發 | 12 | 10.0 | 4.9 | |
| 補償貿易 | 872 | 7.2 | 4.1 | |
| 組立加工契約 | - | - | 1.9 | |
| 其他 | 34 | 3.7 | 0.4 | 經濟開發計劃內的 프로젝트 |
| 合計 | 1,792 | 49.6 | 17.6 | |

國家別 合資投資現況

(單位 : 百萬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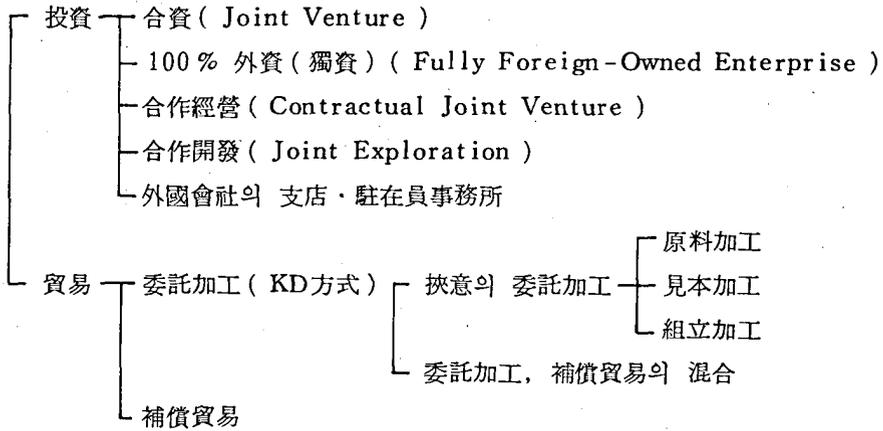
| 區分 國家別 | 累 計 (1979 ~ 82) | | | 合資企業 平均投資規模 |
|-----------|-------------------|-------|-------|----------------|
| | 件 數 | 總投資額 | 外資投資額 | |
| 總 計 | 48 | 232 | 108 | 2.3 |
| 홍 콩 | 23 | 67.1 | 31.0 | 1.3 |
| 日 本 | 4 | 12.9 | 6.5 | 1.6 |
| 필 리 핀 | 4 | 8.6 | 4.0 | 1.0 |
| 其他아시아國家 | 1 | 0.7 | 0.3 | 0.3 |
| 美 國 | 10 | 110.4 | 54.3 | 5.4 |
| 구주공동체國家 | 2 | 1.2 | 0.5 | 0.3 |
| 其他유럽國家 | 3 | 30.5 | 11.3 | 3.8 |
| 호 주 | 1 | 0.5 | 0.2 | 0.2 |

資料 : 中國經濟年鑑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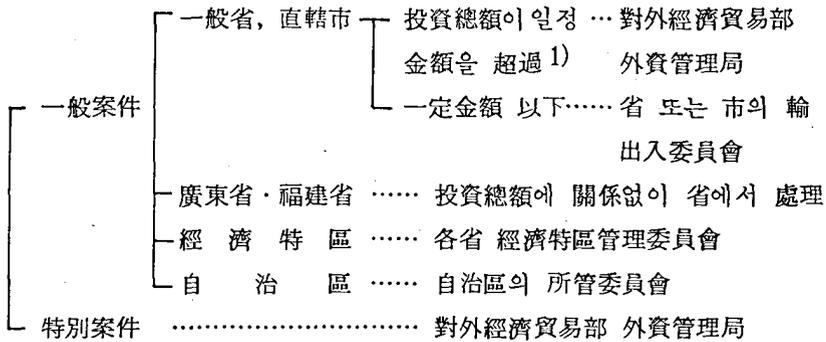
이러한 中共의 合資投資를 業種別로 보면, 機械工業·食品·化學·纖維·衣類·서비스業種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地域別로 광둥·북건성 및 상해·천진·北京의 3個直轄市에 集中되어 있다.

中共의 外資導入節次

○ 外資利用 形態



○ 外資案件의 處理



註: 1) 上海市·天津市는 3,000萬달러 이상, 北京市·大連市는 1,000萬달러 이상, 遼寧省, 瀋陽市는 500萬달러 이상, 기타 省은 300萬달러 이상을 말함.

○ 投資形態斗 內容

| 比較項目 | 投資方式 | 合資經營企業 | 合作經營 | 合作開發 | 補償貿易 |
|----------------------|---|---|--|---|------|
| <p>具備條件 組織體性</p> | <p>約定, 契約, 會社定款 法人體로서 株式會社 設立</p> | <p>約定, 契約, 會社定款 ① 法人體의 設立 ② 兩側 또는 自體 協 商에 의한 決定에 따 라, 法人은 設立치 않고 各自 獨立的인 責任과 義務를 갖는 其他 組織 形態가 可能</p> | <p>約定, 契約 合作 雙方이 法人을 設立</p> | <p>約定, 契約 合作 雙方이 法人을 設立</p> | |
| <p>權利 및 義務</p> | <p>合資 雙方이 共同 協 定한 投資 比率(特分) 에 의거 投資, 經營, 危 險 및 損益負擔이 決 定된다.</p> | <p>合作 雙方이 獨自的으 로 協商하여 契約書에 規定한다.</p> | <p>合作 雙方이 協商하여 契約書에 規定한다. 一 般的으로, 第1 段階는 探查段階로 探查活動 과 關聯된 諸經費, 危 險은 外國側 合作 當 事者 企業이 負擔한다. 第2 段階인 開發 段階 에서는, 共同 投資하</p> | <p>外國 企業側이 信用販 賣 또는 信用貸付 등 의 方式으로 設備 補 償을 提供하고 中共側은 生産製品을 契約當事者에게 販賣 하는 方式으로 提供받 은 設備, 技術 補償은 付金의 元利金을 分割</p> | |

| 投資方式 比較項目 | 合資經營企業 | 合作經營 | 合作開發 | 補償貿易 |
|--------------|---|---|--|---|
| | | | <p>어 生産이 시작되면, 操業費를 除한 다음, 中共側 高正유보분을 割하고, 나머지 分을 雙方의 投資資本 利益分과 外國人 企業側에 對한 契約한 一定量의 보수로 支給한다.</p> | <p>價還한다. 原料는 中共側이 提供하거나, 外國 企業側 契約 當事者에게 代理 購買를 委託할 수 있다.</p> |
| 契約期間 | | <p>參與하는 業種에 따라 決定된다. 通商 重工業分野는 20年, 輕工業分野는 10~15年, 서비스 및 레저 産業分野는 5~10年이다.</p> | <p>合作 雙方의 協商에 의해서 契約書에 規定한다.</p> | |
| 投資形式 | <p>雙方이 現金 投資 可能 (人民幣 혹은 外貨) 建設, 機器, 設備 등 實物과 無形의 場所使用權, 工業 使用權, 獨占權 技術 特許權 등 의 投資도 可能하다.</p> | <p>合資의 경우와 同一하다. 단, 中共側은 天然 資源, 勞動力 등의 形態로 投資할 수 있다. 또한, ②의 組織體 形態의 경우 雙方의 投資를 貨幣額으로 換算</p> | <p>雙方의 協商에 의해서 契約書에 規定한다.</p> | <p>各自 投資</p> |

| 投資方式 比較項目 | 合資經營企業 | 合作經營 | 合作開發 | 補償貿易 |
|--------------|--|--|---|----------|
| 利潤分配 | 合資法을 遵守하여, 合資企業의 總利潤에서 所得稅와 3가지 儲蓄金을 제한 것이 純利益이며, 投資比率에 따라 配分한다. | 한(持分에 대한) 株主權을 認定치 않는다. ①種의 組織體 形態는 合資法에 따른다. ②種의 組織體 形態는 製品, 輸入, 利潤의 世 가지 形態로 分配할 수 있다. | 中共側은 契約된 固定比率에 따라 尤보하고, 나머지는 雙方에 대한 元利金으로 償還하며, 外國人 企業에 대한 一定 報酬로 支給한다. | 各己 損益 處理 |
| 所得稅 | 合資法에 따라 所得稅를 納付한다. 즉, 總利潤의 30%를 所得稅로 納付하고, 地方消費稅로 消費稅의 10%를 納付하여, 總利潤에 대한 33%를 納付한다. | ①種의 組織形態는 合資經營企業 경우와 同一 ②種의 組織形態는 外國企業 所得稅法에 따라 納稅한다. 雙方은 各者所得分의 製品인 경우 人民幣換算) 20~40%의 累進稅率에 따라 納稅한다. | 外國人 企業 投資 所得稅法에 따라 所得稅를 納付하며 (現物의 경우는 人民幣로 換算) 20~40%의 累進稅率에 따라 納稅한다. | 없음. |

| 投資方式, 比較項目 | 合資經營企業 | 合作經營 | 合作開發 | 補償貿易 |
|----------------------|--|--|------|------|
| | | 稅하고, 이 稅額의 10%를 地方所得稅로 納付한다. | | |
| 外國企業側 利潤의 海外送金時의 所得稅 | 合資法에 의거, 外國企業側 合資 當事者가 利潤을 海外로 送金하는 경우, 送金額의 10%를 所得稅로 徵收한다. | ①種 組織形態는 合資經營企業과 同一 ②種 組織形態는 海外送金利潤額의 4%를 徵收한다. | 없음 | 없음 |

다. 經濟特區의 設置

앞에서 說明하였듯이 中共의 資本 및 技術導入政策이 外國의 直接投資를 誘致하는 方向으로 調整됨에 따라, 中共은 1979年 4月 外資導入 및 利用에 관한 基本政策을 確定한 데 이어, 同年 7月에는 外國人의 中國內 直接投資를 許容하는 ‘中外合資 企業經營法’을 制定 公布함과 아울러 示範적으로 沿海地方인 廣東省의 深圳·珠海·汕頭를 經濟特區로 指定하였으며 1980年 9月에는 福建省의 廈門에도 經濟特區를 設置하였다.

(1) 經濟特區 設置背景 및 特徵

이와 같은 經濟特區는 일정한 地域을 區劃하여 對外開放을 하면서도 中共主權의 管轄下에 있으며, 關稅免除등 各種 優待措置를 취하고 여러 外國 및 華僑企業의 技術과 資本을 끌어들이어 加工委託·補償貿易 등을 전제로 合資經營하는 ‘社會主義 國家內에 있는 國家資本主義 方式’을 採擇한 特殊地域이라 할 수 있다.

中共에서 經濟特區를 設置한 目的은 先進技術 및 資本導入, 輸出 擴大를 통한 外貨收入 增大, 效率적인 經營管理方式의 導入, 自國產 原資材 活用 및 雇傭機會의 擴充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實際 目的은 二重的이라 할 수 있는 바, 4개 經濟特區중 深圳·珠海 地域은 地理적으로 香港에 近接해 있는 데, 1997年을 기해 香港이 中共에 歸屬됨에 따라 惹起될 수 있는 ‘香港의 衝擊’을 緩和시킴과 동시에 窮極적으로는 香港을 中心으로 한 ‘華南 經濟圈’ 形成을 目標로 한 것으로 보이며, 臺灣 앞바다에 位置한 福建省의 廈門地域은 장차 臺灣과의 統一을 의중에 두고 ‘1國 2體制 方案’을 實驗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의 經濟特區는 다른 開發途上國家의 自由貿易地帶나 輸出加工地域과 대체로 類似하나 몇가지 特殊한 特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特區의 地理的 位置, 中共의 特殊한 社會主義 經濟制度, 具體的인 設立條件등이 다르기 때문이라 評價된다.

그 主要한 特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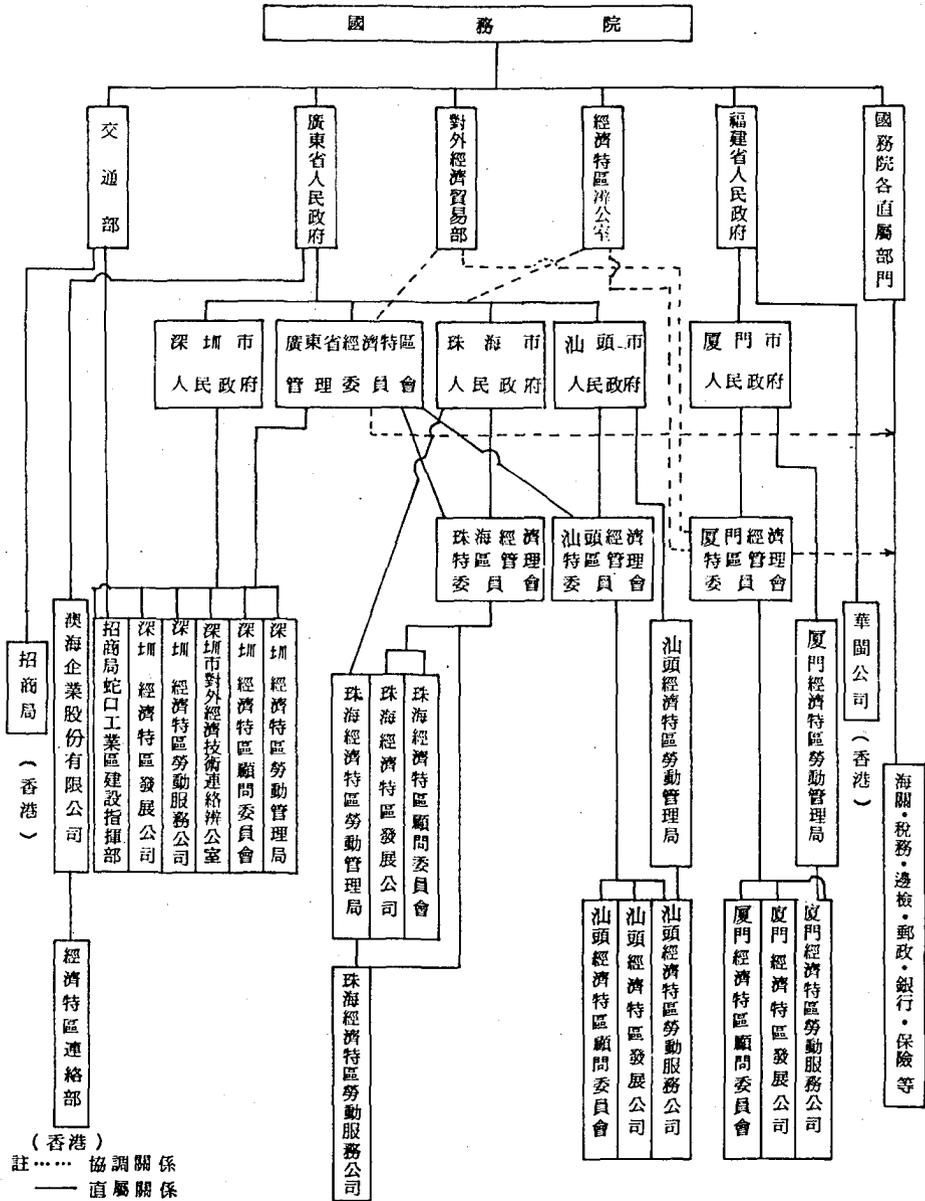
- ① 經濟特區는 中共 對外開放政策의 窓口役割을 하며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接木시키려는 經濟體制 改革의 實驗地域이다.
- ② 特區內에 住民居住를 認定하며, 特區內에서 生産한 商品을 住民들이 消費하는 것도 許容된다.
- ③ 特區內 合資企業의 經濟活動 範圍가 比較的 廣範圍하다.
- ④ 特區는 華僑들의 故鄉地域이며, 홍콩등 對外로 향하는 交通條件이 中共領內 他地域보다 良好하다.
- ⑤ 特區內 企業에서 支拂하는 勞動者의 賃金은 實際 勞動者의 收入과는 比較的 상당한 차이가 있다.
- ⑥ 特區設置 裏面에는 홍콩과 臺灣歸屬을 노리는 政治的 伏線이 內包되어 있다.

(2) 經濟特區의 管理組織

中共 經濟特區에 관한 法規는 1980年 8月 第5期 全人大 常務委員會에서 承認·公布한 ‘廣東省 經濟特區 條例’를 비롯하여, 中共에서 正식으로 公布한 것만 해도 ‘深圳 經濟特區 涉外 經濟契約規定’ 등 9件이 있으며, 이 밖에도 外資銀行 管理規定과 經濟仲裁 規定 등 諸規定이 곧 公布될 豫定이다.

이러한 諸規定과 一般的인 投資關聯 法規에 나타난 特區의 管理組織 및 그 附屬機構를 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特區的管理組織圖



機構表에서 보다시피 廣東省 人民政府가 深圳特區를 직접 管轄하며 珠海 및 汕頭特區는 각각의 市當局이 管轄한다.

그러나 特區業務에 대하여는 ‘廣東省 特區管理委員會’가 廣東省을 代表하여 各 特區를 統轄한다.

同委員會의 機能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特區의 開發計劃 樹立 및 組織의 構成
- ② 特區內 外國企業의 投資業種 審査 및 許可
- ③ 特區內 商工業 登記 및 土地割當
- ④ 特區內에 設置되는 銀行·保險·稅務·檢査·遞信 등의 業務機構들에 대한 業務協助
- ⑤ 特區內 企業이 必要로 하는 勞動者의 斡旋 및 權益保護
- ⑥ 特區內 教育·文化·衛生 및 各種 公益事業 實施
- ⑦ 特區內 人身 및 財產保護등 治安擔當
- ⑧ 特區內 企業의 生產品을 中共國內에 輸出할 경우, 이를 審査
- ⑨ 特區內 企業의 中途 停業申請 接受와 資產 讓渡 및 資金의 送金許可

이 밖에도 信託·投資業務등을 擔當하는 ‘廣東省 經濟特區 發展公司’, 勞動者 採用 및 權益保護를 위한 ‘特區勞動 服務公司’ 등이 있으며, 中國 國務院에는 ‘經濟特區 辦公室’이 있어 各 特區의 動向을 把握, 報告하고 主要投資項目을 審査하며 外國企業의 特區進出에 대해 國務院의 認可周旋 및 支援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고 있다.

(3) 投資條件

‘廣東省 經濟特區條例’에 따르면 外國人의 特區內 投資範圍는 工業·農業·畜産業·養殖業·觀光業·住宅 및 建築業 그리고 高級技術研究등 그 폭이 매우 넓다.

심지어 特區內 土地의 整地作業·給水·電力供給·道路·港灣設備·倉庫 등 基礎施設 分野에 대한 外國人 投資도 許容되고 있다.

投資方式에 있어서도 合資·獨資(外資 100% 投資), 合作등을 통한 補償貿易·委託加工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또한 經濟特區에 대한 外國投資에 대해서는 企業所得稅를 15%(中共 餘他地域은 33%)로 規定하고 있으며, 租稅減免 期間도 2~6 年을 認定하는 등 各種 優待措置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中共 經濟特區에 대한 投資環境을 다른 아시아 主要國家들과 比較해 보면 租稅上 優待措置로서 企業所得稅率이 相對적으로 낮으며 賃金水準은 韓國의 약 1/5, 日本의 1/15, 香港의 1/3 水準에 불과하여 外國들의 投資誘致에 좋은 條件을 갖고 있다.

1983 年末까지 4 개 經濟特區가 誘致한 海外投資는 總 3,000 여 건, 20 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合資經營企業은 97 件, 合作經營企業 245 件, 外資가 100% 出資된 企業도 53 件에 이르고 投資對象도 製造業, 建設業, 觀光業 등 매우 다양하다.

(4) 經濟特區 開發現況

現在 中共 經濟特區에 대한 外國의 投資는 대부분 香港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外國投資家들은 香港을 對中共 投資의 거점으로, 各種 原資材 및 部品の 供給基地 및 技術者 派遣基地로 活用하고 있다.

따라서 香港의 經濟變動이 特區開發에 미치는 影響은 지대하며, 中共當局도 이 점을 깊이 認識하고, 香港을 둘러싼 對英國協商에 있어서도 세심한 配慮를 하고 있다.

또한 外國資本중에는 香港資本과 共同으로 特區에 進出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中共系 香港인들의 中共內 人脈을 利用함으로써 投資 危險負擔을 輕減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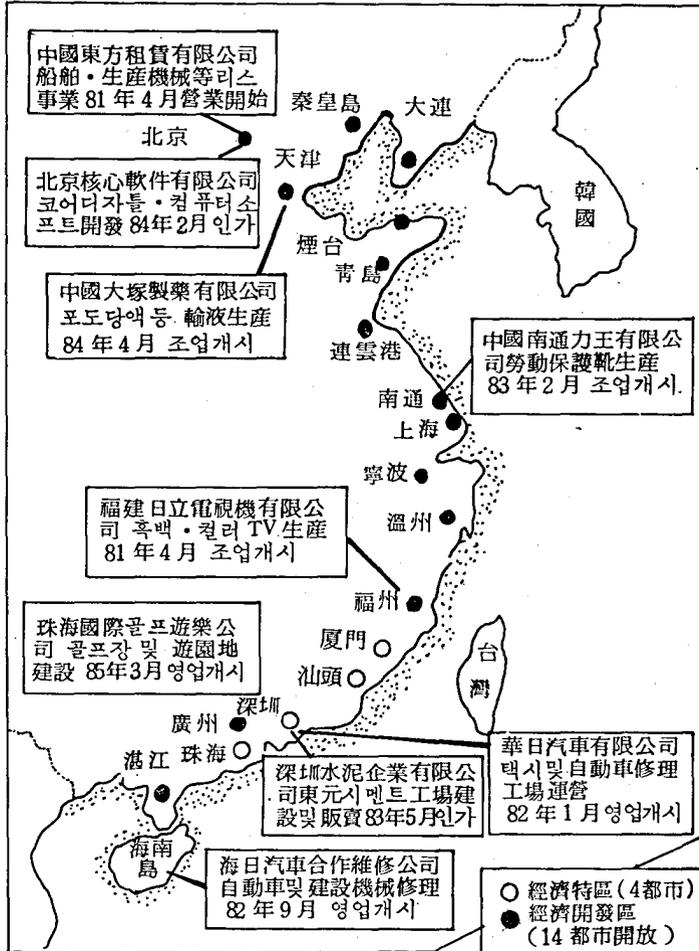
中共의 經濟特區와 「아시아」各國의 投資優待措置 比較

| 優待措置 | 國別 | | 香港 | 싱가포르 | 印 尼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 국 |
|------------|---|------------------------------------|-------|-------|-------------|-------|--------------|-------------|
| | 中 共 | 臺 灣 | | | | | | |
| 1. 企業所得稅 | 15% | 15~22% | 18.5% | 40% | 20~45% | 40% | 22~35% | 30~40% |
| | 2~6年 (投資500萬달러 후 經營期間이 10年 以上이면 5年 免除 可能) | 5年 | 無 | 5~10年 | 5年 | 2~5年 | 5年 (10%~50%) | 5~8年 |
| 3. 其他稅收 | 無 | 加工區內 貨物稅 免除 | 無 | 無 | 無 | 無 | 販賣稅 | 無 |
| 4. 關 稅 | 無 | 加工區內 貨物稅 免除 原料, 機器 設備導入時 輸入稅 免除 | 無 | 無 | 無 | 無 | 無 | 無 |
| 1. 國有化 與 否 | 合作이 되거나 合資期間이 滿了되 면 中共所有 | 外資 50%이하 出資者가 年내에 充 수하지 않 으면 國有化 | 無 | 無 | 國有化 免除 規定있음 | 無 | 無 | 國有化 免除 規定있음 |
| | 稅 制 部 門 | | | | | | | |
| | 非 稅 制 部 門 | | | | | | | |

| 優待措置 | 國別 | 中 共 | 臺 灣 | 韓 國 | 香 港 | 싱가포르 | 印 尼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 국 |
|-----------|---------|--|---|---|-----|------|--------------------|-------|---|-----------|
| 非 稅 制 部 門 | 2. 果實送金 | 이운자유 송금可(합 資期間이 滿了되거나 중지되면 資本회수可, 단 외국인 勞動者는 純收入의 50%만 송 금可) | 投資計劃完 成 2年 후 매년 20% 이운 자유 송금可 | 2年後 자 유 송금可 (자본은 2 年後면 회 수가능) | 송금可 | 송금可 | 이운, 자본 회수허 용 | 無 | 자유송금可 (利潤資 金) | 자유송금 可 |
| | 3. 其 他 | - | 工場建築物 購入하거나 지을 경우 70% 까지 銀行貸付 可能 | - | - | - | - | - | 1. 政府擔 保 外 國貸付 2. 投 資 10 萬 달러以 上인者 居留權 | - |

資料：「世界經濟導報」，1982.1.18 및 張榮豐，「中共合資經營企業之體制，問題與展望」，（台北：中華經濟研究
院，1982年6月），pp.39～40，그리고 기타 關聯資料 참조하여 作成.

中共의 經濟特區와 對外開放沿海都市



㉑ 深 圳

4 개의 經濟特區중 深圳은 홍콩에 隣接해 있고 그 規模가 가장 큰 (人口 32 萬名, 面積 327.5 km^2) 데다 投資環境이 제일 良好하였고 開發進陟도가 가장 빨라 다른 特區開發의 모델이 되고 있다.

深圳地域은 特區開發을 目標로 1979 年 2 月 直轄市로 昇格되었으며, 1980 年 10 月 ‘광동성 經濟特區 條例’에 依據 正式 設立되었다.

深圳特區의 1983 年末 現在 外資導入 總契約 件數는 2,512 件이며 契約額은 132 億 홍콩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1983 年 6 月 現在 26 個 企業이 操業을 시작했고 42 個 工場이 建設中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投資重點은 海底石油의 試錐에 있다는 점에서 注目을 끌고 있다.

그리고 主要 投資業種은 電子工業 · 石油化學工業 · 纖維工業 · 建築資材 觀光業 등이다.

經濟特區로 宣布된 1980 年부터 1983 年까지의 4 年동안 深圳의 工業總生産額은 14.1 億元으로 特區가 되기 以前의 30 年間의 工業總生産額의 67.8%나 된다. 電子工業을 例로들면 1979 年까지 深圳에는 오직 1 個의 라디오工場에 職工도 100 餘名에 불과했으나 1983 年末에는 61 個의 電子工場에 職工數도 1 萬名이 넘고 生産品目도 소형컴퓨터, 계산기, T.V, 錄音機 등 100 餘種에 이르고 있다.

新市街地建設作業도 曄목할만한 成長을 보여 1983 年까지 18 層 以下의 建物 100 餘棟이 完成되어 있고 18 層부터 51 層에 이르는 高層建物 60 餘棟이 施工中에 있는데 이중 32 棟은 거의 竣工段階에 있다. 이와함께 電力, 通信, 上下水道, 道路도 크게 改善되었는데 지

난 4年동안 이러한 基本建設에 投入된 費用만도 總 19.6 億元으로 國家投資額의 7%가량을 占有한다.

中共은 深圳을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綜合經濟開發地區로 發展시킬 計劃인데 「深圳經濟特區社會經濟發展大綱」과 「深圳經濟特區城市建設總體規劃」에 의하면 特區全體를 3個地域, 18個機能地區로 나누어 發展시킬 計劃으로 있다.

深圳特區的 建設과 外資導入 現況

(1979 ~ 1983 年)

| 區分 | | 年 | | | | | 合計 |
|--------------|--------------|--------|---------|---------|---------|---------|-----------|
| | | 79 | 80 | 81 | 82 | 83 | |
| 基本建設投資 (萬元) | | 4,988 | 12,487 | 27,039 | 63,265 | 88,593 | 196,372 |
| 工業生產總額 (萬元) | | 6,061 | 8,444 | 24,282 | 36,212 | 72,041 | 147,040 |
| 外資導入狀況 | 契約額 (萬HK달러) | 23,498 | 213,557 | 680,000 | 141,949 | 263,394 | 1,322,398 |
| | 既導入額 (萬HK달러) | 12,000 | 25,000 | 59,000 | 88,000 | 113,000 | 297,000 |
| | 契約件數 (件) | 170 | 303 | 578 | 583 | 878 | 2,512 |
| | (工業) | 112 | 243 | 321 | 457 | 714 | 1,847 |
| | (商業서비스) | 5 | 10 | 5 | 25 | 87 | 132 |
| | (交通運輸) | 3 | 4 | 5 | 1 | 15 | 28 |
| | (不動產) | 2 | 9 | 25 | 6 | 17 | 59 |
| | (觀光서비스) | 2 | 5 | 3 | 2 | 4 | 16 |
| (農牧, 漁業, 其他) | 46 | 32 | 219 | 92 | 41 | 430 | |
| 投資形態 | 合辦 (件) | 7 | 4 | 13 | 11 | 92 | 127 |
| | 合作 (件) | 30 | 24 | 39 | 47 | 149 | 289 |
| | 獨資 (件) | - | 5 | 18 | 8 | 13 | 44 |

註: 外資導入件數에는 委託加工, 補償貿易 등 포함. 契約件數中 農牧, 漁業, 其他 項의 82年 및 合計件數가 「人民日報」에 각각 86件, 423件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契約件數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92件, 430件으로 하였음.
資料: 「人民日報」(84.3.29).

(나) 珠 海

珠海特區는 人口 20 萬名인 珠海市의 一部分 (人口 12 萬名, 面積 14.1 畝) 인데 마카오와의 沿海地區에 境界하고 있으며, 電子·金屬 建築資材·觀光業 등에 投資重點을 두고 1980 年 10 月 設立되었다.

그간 珠海特區에 대한 投資는 深圳에 비해 不振하였으나, 1984 年 以後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으며,

1983 年 上半期까지 珠海經濟特區가 誘致하기로 協議를 마친 外資는 總 11.3 億달러인데 이중에서 投入된 金額은 2,100 萬달러이다. 特記할 것은 香港佳豪有限公司와 珠海經濟特區間에 珠海經濟特區銀灣 聯合開發公司를 設立하여 總 10 億달러를 投資하여 銀行地區에 綜合 觀光團地를 夏灣에는 工業地區를 開發한다는 것이다.

珠海經濟特區는 1984 年에 들어 대대적인 基本建設事業을 進行하고 있는데 '84 年 한해동안 過去 4 年間 合計의 4 倍나 되는 3 億 7,980 萬元을 投資할 豫定으로 있다. 또한 外資導入, 工場誘致도 順調로와 50 餘個國에서 投資家들이 찾아와 投資交涉을 벌였다. 最近에 着工된 工場으로는 年産 4 萬톤 規模의 맥주工場(外資導入額 2,200 萬달러), 유리병製造工場(外資導入額 1,500 萬달러), 冷凍工場(外資導入額 490 萬달러) 등 10 여개에 달한다.

그중에서 가장 注目할만한 프로젝트는 香港의 廣大實業公司가 開發하고 있는 廣大工業區이다. 이 새로운 工業區의 開發計劃面積은 4 畝로 外國으로부터 電子, 컴퓨터素子, 特殊유리, 新素材 등을 生産하는 技術集約型 工場을 誘致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있다.

한편 南支那海에서의 海底油田開發作業이 本格化됨에 따라 珠海를 油田開發에 必要한 物資와 生活用品의 供給을 위한 전진기지로 開發하는 事業도 推進되고 있다.

(다)汕 頭

汕頭特區는 人口 72 萬名인 汕頭市 (面積 246 *km*²) 의 一部 (面積 6*km*²) 로서 香港과 臺灣의 中間地點에 位置하고 있으며, 1980 年 10 月 設立되었으나, 1981 年 11 月에야 뒤늦게 開發되기 始作하였다.

汕頭經濟特區 當局은 汕頭的 實情에 맞추어 土地·工場建物の 賃貸, 勞働者들의 賃金, 水道 電力使用料 등의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하는등 外資誘致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기 시작했다. '83 年 한해에 11 個國으로부터 86 件의 商談이 進行되어 이중 23 件이 契約 또는 合意書調印이 이루어졌으나, 1984 年末 現在 總投資額은 約 7 億 弗에 이르고 있다.

汕頭는 앞으로 技術集約型的인 프로젝트를 많이 들여와 管理經驗을 쌓는데 注力할 計劃이다.

汕頭市內 375 個 企業에 대한 改造事業이 推進되고 있으며, 外資導入 實績은 미미한 편이지만 最近 50 億 弗 規模의 石油化學 콤비나트 建設을 推進하는 등 점차 活氣를 띠기 始作하고 있다.

또한 汕頭的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龍湖加工區의 서비스施設도 점차 完備되어가고 있다. 現在 龍湖賓館등 호텔과 加工區從業員들을 위한 大型食堂이 開場했고 汕頭와 香港間의 貨物·旅客運送을 위한 汕秦 船務公司도 設立되었다. 現在 建設中인 3000 噸級 부두가 完成되면 自動車貨物輸送과 觀光自動車の 營業이 可能하게 된다.

(라)厦 門

厦門은 福建省의 中心港口로서 人口가 約 100 萬名이며, 面積이 147 萬 *km*²인데 現在 770 餘個의 工業企業과 10 萬餘名의 勞働者가 居住하고 있으며, 厦門大學 등 6 個의 高等專門學校, 11 個의 中等專門學

校가 있어 勞動者의 質의水準은 比較的 높다.

廈門特區(面積 123.9 ㎞)는 1981年 5月에 設立되었지만 同年 10月부터 正式으로 開發되기 始作하였는데, 原來「湖里수출가공구」(面積 2.5 ㎞)로부터 出發하였으나, 1984年以後 大幅 擴張되었으며, 1984年 7月까지 外資誘致契約은 總 53件에 이르고 있다.

湖里工業區의 第1期工事は 設計基準用지가 100萬㎡, 建築着工面積이 13萬㎡인데 現在 事務用빌딩과 工場建物 5萬5,000㎡가 竣工되었다. 또한 交通·에너지·電信 등의 整備作業이 急速히 進行되고 있고 特別區 開發에 수반하여 東渡港과 國際空港이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

經濟特區에 資金과 서비스를 提供하는 廈門經濟特區聯合有限公司도 '83年 10月부터 營業을 開始하였고 現在 30萬㎡에 달하는 湖里工業區 第2期工事が 本格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1983年末까지 廈門經濟特區에 進出한 外國企業은 總 25個社인데 컬러 T·V, 비데오, IC, 電子部品 등 技術集約型 企業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既存企業의 技術改善을 위한 先進技術設備의 導入 契約件數도 19件에 달한다.

(5) 成果 및 開發

現在 中共特區에 대한 投資成果를 論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이나 華僑投資를 하나의 實驗對象으로 分析해 볼 때, 一般的인 評價는 大略 技術水準의 落後와 高度熟練工의 不足, 勤務態度의 解弛 등으로 勞動生産性이 떨어지고 있으나, 低賃金과 免稅措置등 인센티브가 많아 中共 政治體制의 安定이 保障된다면 投資가 繼續 增加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특히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經濟特區에 대한 投資는 將次 廣大한 中

共市場과 東南亞市場 進出을 위한 橋頭堡라는 점에서 그 價値가 增大되고 있으며, 홍콩과의 經濟的 連繫를 통해 經濟特區의 經濟開發이 더욱 促進될 것으로 본다.

라. 沿海地方 港灣都市 開放

(1) 開放 背景

1979年 對外 開放政策의 實行으로 海外의 直接投資를 吸收하여 이미 初步的인 經濟開發의 局面은 打開하고 있으나, 그 成果는 상당히 緩漫한 편이었으므로 中共當局은 沿海地域이 비록 '資源의 不足'이라는 弱點은 있으나, 經濟效果가 比較的 큰 곳이므로 우선 "沿海地域부터 富裕케 하자"는데 着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中共은 '14個港灣都市'를 追加 開放할 것을 決定(1984.4.6) 함으로써 外國企業에 대한 各種 特惠措置를 통해 '投資誘致' 및 '技術導入'에 積極 努力하고 있다.

이것은 中共의 大陸地方은 資源이 豊富하나, 交通이 不便하고 文化技術 水準이 比較的 低級하여 經濟效果가 相對的으로 떨어졌으므로 우선 沿海地區를 發展시킨 후, 發展에 附隨되는 '資金과 技術'로 同時에 內陸開發을 빠른속도로 推進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85年7月 中共當局은 上海, 天津, 大連, 廣州를 除外한 10個都市에 대하여 外國企業과의 各種契約을 漸進的으로 抑制할 方針이라고 밝히고 있어 歸趨가 注目되고 있다.

특히 谷牧副總理는 上海등 4個都市를 除外한 10個都市가 中共當局이 바라는 開發目標達成에 必要한 産業下部 構造나 天然資源 및 經營能力 등이 不足하다고 判斷, 比較的 與件이 좋은 4個都市만 集中的으로 開發해 나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西方外交官들은 10個 沿岸都市의 漸進的 閉鎖方針은 中共의 指導部가 約 6~8 個月에 걸친 對外開放政策의 成果에 失望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中共當局의 이 같은 發表는 最近들어 一部 中共都市의 投資 雰圍氣가 惡化되고 있다는 指摘과도 一致하고 있으며, 中共이 지난 84 年末까지 約 8 億 4 千萬 달러의 海外資本을 끌어들이었지만, 이 資本이 中共當局이 바라는 技術産業보다는 호텔建築 등 觀光分野에 치우쳐 있다는데 대한 反對措置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中共開放化가 繼續 推進된다면 원래의 計劃대로 14 個 港口를 開放할 것인바, 都市別 現況을 簡略히 살펴 보겠다.

(2) 都市別 概況

1) 上 海

上海는 中共 最大의 工業 및 港口都市로 3 個 ‘中央直轄市’ 中の 하나이며, 面積이 6,186 *km²*, 人口는 1,194 萬名이다. 일찍부터 工業이 發達해 8,500 餘個의 企業을 保有하고 있으며 ('82 現在), 1983 年度 工業總生産額이 678 億元으로 中共全體工業 總生産額의 11.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 機械工業의 比重이 가장 커 全體의 31%인 211 億元에 달했으며, 다음이 紡織, 化學, 冶金, 食品工業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上海는 重·輕工業의 各 部分이 比較的 高루 갖춰진 “종합섬유공업” 과 과학기술기지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上海港은 現代式裝備를 갖춘 全國最大의 天然港口로 96 個의 부두를 갖고 있으며, 이중 45 個는 1 萬噸급 以上이다. 年間荷役量은 9,190 萬噸으로 全國主要港口의 年間荷役量의 1/3 以上을 차지한다.

國內 37 個 主要都市에 航空路線이 連結되어 있으며, 7 個의 國際

航路도 開設되어 있다. 이처럼 上海는 大陸의 水陸交通의 中心地로서 南北航路의 中樞로서 現在 世界 各國 100 餘個의 港口와 貿易·往來하고 있다.

1983 年 上海市의 輸出額은 36 億 달러였다.

1979 年부터 1983 年까지 上海市가 誘致한 外資는 5 億달러로 그중 直接投資만도 2.2 億달러나 된다. 이를 內容別로 보면 合資經營이 11 件, 合作經營이 12 件, 리스業이 3 件, 補償貿易이 152 件이었다.

上海는 앞으로 더욱 많은 外資를 받아들이기 위해 閔行區와 虹橋區를 經濟開發地區로 策定하고 現在 具體적인 開發計劃을 作成하고 있다.

2) 大 連

大連은 中共에서 上海에 이어 두번째로 큰 港口로 遼寧省遼寧半島 남단에 위치하여 滿洲地方의 가장 重要한 輸出入港이며, 어업기지이다. 面積은 12,500 *km*², 人口는 476.7 萬名이다. 現在 48 個의 부두가 있으며, 이중 萬톤급以上만도 23 個이다. 1983 年의 貨物處理量은 3,500 萬톤으로 全國 第2位, 輸出總量은 39 億달러로 全國 第1位이다. 1990 年까지 貨物處理量을 4,200 萬톤으로 늘릴 計劃이다. 現在 計劃中인 大連 管轄地域內에 있는 金懸 境內의 大窩灣에 새로운 港灣施設이 完成되면 大連港의 貨物處理能力은 1 億톤에 이르게 된다.

交通도 매우 便利하여 7 個의 國內 海運航路가 있고 鐵道는 東北地區의 各 大都市와 잘 連結되며, 瀋陽, 北京, 青島, 上海와 民航機路線이 있다.

工業이 잘 發達되어 1900 餘個의 工業企業이 있으며, 1983 年의 工業總生産量은 84 億餘元에 이른다. 農水産資源도 豊富한데 1983

年の 과일生産量은 50 萬톤, 水産物은 42 萬톤이다.

外資利用도 활발해서 1983 年末까지 330 件, 7,000 餘台, 1 億餘 달러어치의 技術設備를 導入하였다. 大連市는 가까운 國際航路를 開設하기 위해 空港擴張事業을 進行하고 있으며, 通信能力도 大幅 增設하고 있다. 또한 和尚島부두가 今年안에 着工되는데 年間 石炭荷役能力은 500 萬톤에 달하며 60 萬KW 規模의 沿岸發電所도 같은 步調로 建設된다.

특히 新大連港으로부터 海內外에 大量의 原油를 供給할 수 있는 송유관 公사가 進行中이어서 歸趨가 注目된다.

3) 天 津

天津은 華北地方 最大의 港口로 3 個 '中央直轄市' 中的 하나이며 全國에서 上海 다음으로 商工業이 發達한 都市이다. 面積은 11,300 km², 人口는 776 萬名 ('82 現在) 이다. 北運河, 大清河, 子牙河, 南運河 등 內陸水路가 集結되는 곳으로 黃河流域 一帶 物資의 集散地이다.

특히 天津은 東쪽에 渤海만과 接하며 山東반도, 遼東반도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와 密接한 連結이 可能하다.

天津은 가장 重要한 工業基地中的 하나로 現在 約 4,400 個의 工業企業이 있으며, 重工業에서 輕工業까지 모든 産業分野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大陸의 "綜合性 工業基地" 中 하나로 海洋, 化工, 石油化學, 紡織工業으로 유명하며, 특히 渤海만에 最大의 油田이 있는데다 試錐作業이 활발하고 있어 歸趨가 注目된다. 同時에 傳統的인 對外貿易港口로 140 餘個國에서 2 萬餘名의 貿易商들이 往來하고 있어 對外貿易에 經驗이 豊富한 企業人들이 많다.

天津市가 지난 1979 년부터 1983 년까지 받아들인 外資는 合資經營·合作生産·補償貿易·리스業 등 直接投資가 5,343 萬달러, 技術

設備導入이 353 件에 2 億 7,767 萬달러, 加工輸出이 511 件에 加工手數料收入이 3,432 萬달러, 世界銀行 및 政府借款이 7 件에 1,182 萬달러 등이다.

天津市는 앞으로 港口 부근에 새로운 經濟開發區를 建設하고 各種 下部構造를 整備하며, 外國人投資家를 우대하는 政策을 實施함으로써 外資를 積極 誘致할 計劃으로 있다.

天津新港은 1952 年에 築港하였고, 1 萬톤급의 船舶이 碇泊할 수 있으며, 現在 擴張建設中에 있다.

4) 廣 州

廣州는 廣東省의 中心都市로 珠江 삼각주북부, 서강, 북강, 통강이 合流하는 곳에 位置하며, 京廣鐵路의 최남단에 位置하는데 面積 16,661 ㎞², 人口 687 萬名の 都市다.

廣州는 中共 最大의 貿易, 産業都市中の 하나이자 華南地方의 物資集産地이며, 綜合性工業의 都市로서 일찍부터 對外通商이 이루어져 南方地域의 對外貿易 窓口가 되어 왔다.

現在 廣州市에는 4,000 餘個의 企業에 78 萬名の 勤勞者가 일하고 있으며, 1983 年의 工業總生産額은 118.7 億元으로 輕工業과 紡織工業의 比重이 높다.

廣州市의 外港으로는 南方地域 最大港口인 黃埔港과 廣州港이 있는데 年間 荷役量은 2,600 萬톤으로 2 萬톤급의 컨테이너부두가 있다.

1983 年의 輸出額은 全國 主要港口中 第 4 位였다.

1979 年부터 1983 年까지 廣州가 誘致한 外資는 140 件에 4 億 465 萬달러였다. 特히 加工·包裝生産은 9,900 餘件에 5 億 7,200 萬달러에 달했다. 주로 香港資本이 參與하고 있으며, 纖維, 電子, 輕工業, 電器産業이 主를 이루고 있다.

특히 廣州는 1975年부터 봄·가을에 ‘輸出商品 交易會’를 開催하고 있어 유명하며, 沿海各地 및 世界各地로 往來할 수 있는 航路가 開設되어 있고 現在 黃埔新港을 建設中에 있다.

5) 青 島

青島는 山東半島 東部に 位置해 있으며 面積은 10,594 *km*², 人口는 613 萬名이다. 中共의 4大港의 하나로 交通運輸施設이 매우 發達해 있다.

港灣施設이 매우 良好해 中共의 東海艦隊基地이며, 9個의 大型부두와 49個의 부두가 있으며 그 중에서 1萬噸급以上만도 15個이다. 年間荷役量은 2,100 萬噸으로 世界 100餘個 港口와 통하고 있다. 鐵道 및 道路事情도 매우 좋다. 1983年에 青島港을 거쳐 나간 輸出商品은 58.7 億元이나 되는데 특히 青島麥酒가 有名하여 年間生産量의 70%인 60 萬리터를 輸出하고 있다. 또한 지난 5年間 利用한 外資도 7,000 萬달러에 달한다.

現在 青島는 黃島區에 新港을 開設하여 年間荷役能力을 4,000 萬噸으로 끌어올릴 計劃으로 있으며 아울러 膠縣과 黃島間에 鐵道도 부설할 豫定이다. 또한 景致가 좋은 薛家島一帶를 새로운 觀光레저 地區로 集中開發할 計劃도 갖고 있다.

또한 青島는 山東성 最大의 “綜合性工業都市”로 綿紡織, 機關車바퀴, 紡織機械 製造工業이 유명하다.

6) 連雲港

連雲港은 江蘇省에 所在하며 面積은 5,881 *km*², 人口는 293 萬名이다. 比較的 工業이 發達하여 總 1,250個의 工業企業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50餘個는 全國的으로도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農産物로는 大豆, 땅콩이 有名하며 蛇紋石과 大理石이 豊富하다.

連運港의 年間 荷役量은 800 餘萬톤인데 부두는 9 個로 이 중 1 萬톤급以上이 5 個이다. 1985 年末 現在 建設中인 廟嶺新港의 第 1 期工程이 完工되면 年間 荷役能力은 1,500 萬톤으로 늘어나고 1990 年에 第 2 期工程이 完工되면 2,000 萬톤에 달하게 된다.

또한 連運港은 漁業과 鹽業이 發達되어 있으며, 特히 海洋漁路 및 沿海養殖 生産基地의 하나로 유명하다.

7) 南 通

南通은 江蘇省 揚子江下流의 北岸에 位置하고 있으며 面積은 8,000 *km*², 人口는 740 萬名이다. 揚子江 最下流에 자리잡고 있어 일찍부터 物資交易이 활발했으며, 紡織, 食品工業이 比較的 發達되어 있다.

南通港에는 9 個의 부두가 있는데 1 萬톤급以上이 3 個이며, 揚子江을 通過하는 船舶들을 위해 設置한 부두가 11 個나 있어 綜合通過能力이 年間 623 萬톤에 달한다.

1980 年以來 輸出이 急增하고 있으며, 最近까지 約 6,000 萬 달러의 外資를 利用했다. 現在 市東部에 10 *km*²의 經濟開發區를 設置하고 여기에 1 萬톤급 부두 14 個를 建設할 豫定이다.

8) 秦皇島

秦皇島는 河北省 山海關 西南쪽에 돌출된 조그마한 半島上에 位置하여 14 個 開放都市中 最北端에 位置해 있다. 面積은 7,721.3 *km*², 人口는 223 萬名이다. 秦皇島市의 海岸線延長은 113 *km*이며, 水域面積은 1 萬 *km*²에 달할 程度로 피서 및 療養地로 有名하며, 海港, 山海關 북재하해빈의 3 個區로 構成되어 있다.

1983 年의 工業總生産額은 8.8 億元으로 유리工業, 食品, 輕工業이 主를 이룬다. 交通網이 發達하여 北京~秦皇島~瀋陽, 天津~秦皇島의 2 個 幹線道路와 20 個의 地方道路網, 北京~秦皇島~하얼빈

間의 京哈線, 大連~秦皇島間의 大秦線 등 2個의 中樞鐵道를 비롯하여 北部地域을 連結하는 地方鐵道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炭田과 大慶石油化學園地를 連結하는 鐵道輸送網이 借款資金으로 建設中에 있다. 特히 大慶으로부터 秦皇島에 이르는 송유관 (1,500 km) 이 있어 北京 및 海外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秦皇島는 港口條件이 良好한데 13個所의 부두가 있으며, 年間荷役量은 3,000 萬톤이다. 이중 雜貨荷役量은 720 萬이고 나머지는 大部分이 石炭이다. 荷役能力을 1985年까지 6,000 萬톤, 1992年에는 1億톤으로 늘릴 計劃이다.

9) 烟 台

烟台는 山東省 北岸에 位置해 있으며, 面積은 18,900 km², 人口는 810 萬名이다. 뒤로는 산을 덮고 앞쪽으로는 바다와 接해 있어 風光이 좋은 것으로 有名하며 주위에 天然資源도 豊富하다.

沿海에는 大小 13個의 港灣이 있으며 부두는 42個, 年間荷役能力은 1,220 餘萬톤이다. 그 중 烟台港이 가장 큰데 3 萬톤급 부두가 5個, 5,000 톤급 부두가 6個있으며 '83年의 荷役量은 650 萬톤이었다. 特히 공동·지울 두개의 섬이 창구 뒷쪽에 우뚝 솟아 天然의 防壁이 되고 있어 漁業基地로서도 重要하다.

1979年부터 1983年까지 23件의 外資를 誘致했는데, 向後의 發展戰略은 輕工業, 紡織業, 食品, 電子 등 既存 産業의 技術改良에 重點을 두고 있다.

烟台의 工業은 양조, 통조림, 시계工業이 比較的 有名하다.

10) 寧 波

寧波는 浙江省에 位置하며 面積은 9,400 km², 人口는 481 萬名이다. 浙江省의 中心都市로 1983年의 경우 農工業生産이 全省의 1/5 을 차지할 程度로 綿紡, 食品工業이 發達해 있다.

港口條件이 매우 良好하여 唐·宋이래 對外貿易港口로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였는데, 年間荷役量은 2,670 萬톤으로 1 萬톤급以上 6 個를 包含한 21 個의 부두施設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北侖港口는 水深이 20 m 以上으로 12 萬톤급의 船舶이 出入할 수 있다. 現在 建設하고 있는 雜貨專用부두 3 個, LNG 專用부두 1 個, 2.5 萬噸級 부두 1 個가 完成되면 寧波港의 年間荷役能力은 1 億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寧波는 重要的 鑛產物 積出港으로 寶山製鐵所製 品을 供給하고 있다.

現在 主要 港灣에 이르는 鐵路를 建設中이며 이것이 完成되면 全國 主要都市와 港灣이 바로 連結될 수 있다.

寧波는 中小企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할 方針인데 濱海工業區에 새로이 經濟開發地區를 開設하여 技術集約型 中小企業들을 多數 誘致할 計劃으로 있다.

11) 溫 州

溫州는 寧波와 마찬가지로 浙江省 南部의 最大都市로 面積은 11,000 km^2 이다. 1 百年以上의 開港歷史를 가지고 있으나, 港口施設은 빈약한 편이다. 現在 3 千噸級 부두 1 個所와 5 千噸級 부두 1 個所가 있으며 年間荷役量은 240 萬톤이다. 일찍부터 皮革工業이 發達했으며 特히 乳製品生産量이 全國 第1이다. 그 밖에도 機械, 도자기, 食品工業이 發達되어 있다. 주변에 名勝地가 많고 水質 좋은 溫泉도 있어 觀光地로 各광받고 있다.

12) 福 州

福建省의 북주평원에 位置하며 面積은 11,968 km^2 , 人口는 467 萬名이다. 氣候가 매우 溫和하며 降雨量도 많아 예로부터 農產物의 集產地로 有名하다. 海邊에 位置하지는 않으나, 湖水가 많으며, 마미

를 외향으로 옛날부터 對外貿易이 發達해 왔다.

交通도 매우 便利해 南昌, 上海, 北京, 廣州, 香港에 民航이 運航되고 있으며 廈門, 汕頭, 廣州, 湛江, 香港 등과 海運航路가 開設되어 있다. 現在 1萬噸級 2個를 포함 4個의 부두가 있으며 年間荷役量은 200萬噸이다. 最近 보잉 737이 就航할 수 있는 國際空港이 完工되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誘致한 外資는 2,560萬달러로 이중 合資經營이 7件, 合作經營이 13件, 補償貿易 23件, 加工·包裝生産이 230件이다. 가장 두드러진 合資經營企業으로는 福建日立 T·V社를 들 수 있다.

특히 機械, 化工, 製紙, 紡織工業이 發達되어 있다.

13) 湛 江

湛江은 廣東省 南部에 位置하며 面積은 12,471 ㎞². 人口는 456萬名이다. 雲南, 貴州, 廣西, 四川 등 西南地區의 物資가 主로 이곳을 通해 輸出된다.

특히 湛江港은 1950年 이후 設計, 建立한 港口라는 點이 特異하다.

湛江港의 年間 荷役能力은 1,139萬噸으로 5萬噸급 유조선전용부두 1個를 포함, 1萬噸級 부두가 9個 있다. 水深이 깊어 滿潮時에는 5萬噸級 船舶이 자유롭게 出入할 수 있다. 現在 香港과 航空路線이 開設되어 있으며 空港擴張工事が 1985年 上半期안에 完工될 豫定으로 있다.

1982年의 工業總生産은 5.08億元으로 1,032個의 工業企業이 組업하고 있다. 그 중 가장 比重이 높은 것은 製糖工業으로 全體의 17.9%를 차지한다.

湛江은 南海石油西部公司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 石油化學工業과 南海石油生産과 關聯된 物資를 供給하는 海運業 그리고 호텔業 등이 有望하다.

14) 北 海

北海는 廣西壯族自治區의 北部灣 南端에 位置해 있으며 面積은 271.49 km², 人口는 16.9 萬名이다. 3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西쪽에 높은 山地가 있는 天然의 良港으로 中共南部의 重要한 水路交通門戶의 하나이다.

北海港의 年間 荷役量은 80 萬톤에 불과하나 水深이 比較的 깊고 물이 잔잔해 1 萬噸級 船舶이 出入할 수 있다.

現在 開發中인 北部灣石油가 本格的으로 生産되면 北海는 매우 重要한 資源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北海는 자치구 最大의 漁業基地로 水産加工, 電力, 造船工業등이 發達해 있다.

15) 海南島

海南島는 沿岸 14 個都市와 함께 섬전체가 對外開發地區로 宣布되었다. 海南島는 亞熱帶氣候帶에 속해 있어 고무, 커피, 코코아, 코코넛, 사탕수수 등 農産資源이 豊富할 뿐만 아니라 鑛物資源도 未開發된 것이 많아 開發潛在力이 무진장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現在 68 件의 合作프로젝트가 導入되었는데 그 金額은 約 9,000 萬달러에 이른다. 現在 年産 50 萬톤 規模의 炭鑛開發, 水力發電所 建設, 主要幹線道路 建設, 電氣 및 通信施設 擴充, 5 萬噸級의 船舶이 出入할 수 있는 港灣 建設, 호텔建設 등 10 個項의 基本建設프로젝트가 中共當局에 의해서 推進되고 있다.

V. 軍 事

1. 沿 革

中國共產黨의 創立大會 開催 (1921.7.1) 當時는 武裝力이 없었으나, 1923年2月 中共黨이 指揮한 京漢鐵道 罷業이 大彈壓을 받아 失敗하자, 武裝力이 없이는 革命勝利를 기할 수 없음을 體驗·認識하게 되었다. 1924年 第1次 國共合作이 이루어져 周恩來가 黃埔軍官學校 政治主任이 되고, 葉劍英·聶榮臻이 教官에 任命됨을 機會로 學生 包攝과 國民黨 浸透工作을 推進하여 紅軍建設의 基盤構築과 함께 主役들을 育成하였다.

1927年8月1日 朱德·周恩來·賀龍揮下의 國民革命軍 3萬名이 南昌에서 武裝蜂起하였고 中共은 이날을 建軍記念日로 하여 國民革命軍의 組織強化에 注力하였다.

1927年8月 毛澤東은 黨의 指令下에 湖南, 江蘇 등 2個省에서 農民蜂起를 指揮하였으나 失敗하여 井崗山에 逃走, 最初의 革命根據地를 構築하였다.

1928年에 이르러 南昌蜂起에 失敗한 朱德이 井崗山에서 毛澤東과 合勢, 勞農紅軍 第4軍을 建設하여 軍長을 朱德이, 政治委員은 毛澤東이 各各 擔當함으로써 中共軍 最初의 2元指揮體制가 誕生되었다.

1920年代末 彭德懷, 鄧小平, 賀龍 등이 中共 南部 各地域에서 武裝暴動, 國民革命軍을 結成하게 되어 1930年末 紅軍兵力은 13個軍, 6~7萬名이 되었고 大小 15個所의 革命根據地를 保有하게 되었다.

1931년부터 始作된 國民政府軍의 攻擊에 따라 中共軍은 1934年 10月 西遷(黨·軍·政府 約 10萬名)을 始作하였고, 1935年1月

‘遵義會議’에 依據, 毛澤東 指導體制가 確立되었으며 同年 10 月에는 目的地인 陝西省 北部의 革命根據地에 到着하였다.

1936 年 12 月 ‘西安事變’으로 內戰이 停止되고 第 2 次 國共合作이 이루어짐에 따라 抗日聯合軍이 結成되었다.

그러나 1937 年 7 月 ‘蘆溝橋事件’으로 中·日戰爭이 擴大 勃發하게 되자, 中共軍은 國民政府軍이 抗日戰爭에 注力함을 機會로 삼아 자기들의 勢力擴張을 圖謀하였다.

특히 1945 年 蘇聯의 對日參戰을 契機로 中共軍은 急激한 勢力擴張을 피해 定規兵力이 80 餘萬名, 民兵 170 萬名 등 大軍으로 成長하였다.

第 2 次世界大戰 終結과 同時에 再開된 內戰을 통해 中共軍은 國府軍을 축출, 1949 年 10 月 1 日 ‘中華人民共和國’을 樹立하였으며, 1950 年 1 月까지는 티베트를 除外한 全中國大陸을 掌握하였다.

中共軍은 1950 年 10 月 韓國戰에 參戰하였으나 1958 年 10 月을 기해 北韓에서 撤收(總 15 個師團, 25 萬名)를 完了하였다.

또한 中共은 ‘反帝 民族解放鬭爭’의 旗幟下에 軍事力을 強化하여 1958 年 8 月에는 金門, 마조도 등에 砲擊을 開始하는 등 “臺灣解放”을 推進해 왔다. 1964 年 10 月에는 第 1 次 核實驗에 成功함으로써 軍事強國으로 成長하였다.

한편 1960 年代初부터 表面화된 中·蘇間의 理念紛爭은 國家關係 惡化로까지 發展하게 되었고, 특히 1969 年 3 月 珍寶島事件으로 蘇聯과 軍事衝突이 發生한 以後 中共은 蘇聯의 包圍戰略에 따른 政治, 軍事的 壓力을 認識하여 對蘇國境線(北京에서 500 km, 總延長 7,500 km)의 防禦에 注力하면서 軍事力을 強化해 왔다.

또한 毛澤東 死亡以後 對美關係 改善을 積極 推進하고 開放政策을

실시하는 한편, 4大現代化의 目標에 軍의 現代化計劃을 包含하여, 國防力 強化와 質的 向上을 圖謀하고 있다.

2. 中共軍의 戰略戰術

中共은 草創期 武裝鬭爭을 展開하기 위해서는 ‘人民戰爭’을 遂行해야 하며, 이 ‘人民戰爭’을 위해서는 ‘人民軍隊’를 組織해야 한다고 主張했는데, 이 ‘人民軍隊’란 반드시 戰鬥隊 또는 生産隊, 工作隊의 特質을 同時에 갖고 있으며, 黨의 絶對的인 指導와 強力한 政治工作을 받아 ‘軍·官·民’의 一致를 통해 ‘武裝政治集團’으로 結成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특히 毛澤東은 軍部隊를 指導함에는 반드시 「大衆路線」으로 하여야 하며, 大衆 스스로가 스스로를 解放한다는 確信下에 部隊指導工作에 協助하게끔 誘導하고, 이를 위해 階級路線에 의한 部隊教育을 強化하여 無産階級 革命鬭爭 意識을 鼓吹시켜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中共軍의 實際的인 戰略戰術은 毛澤東의 軍事思想을 基礎로 하여 整理된 것인데, 土地革命, 統一戰線, 기릴라戰, 持久戰 등을 통한 「人民戰爭戰略」이라 할 수 있다.

「人民戰爭戰略」은 政治·軍事·經濟·社會·文化 등 諸分野 全般의 總力戰 概念이며, 특히 政治에 우선을 두어 協商·鬭爭·宣傳·煽動 등을 통해 目標을 達成토록 하되,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共產獨裁 確立이라는 目標을 향해 모든 部門努力을 總集結시킨다는 戰略概念이다. 또한 毛澤東의 世界戰略은 第3世界 등을 包攝, ‘世界의 都市’ 地域에 該當하는 西方陣營을 赤化하겠다는 世界赤化戰略에서 부터 出發하여 1964~5年頃에는 ‘中間地帶論’으로 發展하였고,

美·蘇間 勢力競爭에서 中共 自體의 世界革命力量 強化에 重點을 두는 戰略으로 修正하였다.

이러한 世界戰略 變化에 따라 中共은 1964年 核武器를 開發하기 에 이르렀고, 軍事的 勢力을 이용하여 第3世界 등에 積極 파괴를 始作하였다. 現在 中共은 外形的으로 國防費支出 世界 第3位, 地上軍兵力 第1位, 海·空軍力 第3位라는 量的으로는 龍대한 通常戰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中共의 核戰力도 蘇聯의 우랄 以東地域을 加 격할 수 있을 程度의 最少限의 抑止力을 지니고 있다.

中共은 蘇聯에 비해 通常戰力이 뒤지기 때문에 中·蘇 國境에 總 200萬의 部隊를 配置하면서도 “社會帝國主義(蘇聯)가 아주 危險한 戰爭發源地”라는 認識下에 戰爭不可避論에서 벗어나 人民戰爭戰略 概念을 遂行하고 있으며, 總兵力 削減을 圖謀하는 한편, 戰略武器 開發, 通常武器, 軍事組織의 近代化에 注力하고 있다.

특히 1979年 봄, 中·越戰爭에서 越南軍의 反擊을 받은 中共軍은 武器, 裝備의 近代化와 近代的인 作戰能力의 必要性을 痛感하고 “近代化·正規化·革命化”를 推進하고 있다.

한편 對蘇關係 改善을 摸索하는 外交姿勢, 經濟建設에 最優先政策을 두는 內政을 反映하여 政策的으로는 ① 武器, 裝備의 國産化에 의한 國防의 近代化 實現, ② 一般兵力 削減으로 資金節約, 戰略核미사 일에 의한 “最少”核抑止力の 強化와 制限戰爭에 對處할 수 있는 少數精銳化 部隊整備, ③ 現在 保有하고 있는 武器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訓練強化와 戰術研究 등을 圖謀하고 있다.

또한 戰爭抑制와 經濟現代化에 有利한 國際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美·日과의 關係強化를 통해 國防現代化에 必要한 軍事裝備 및 技術을 導入함과 同時에, 美國의 對蘇 牽制戰略을 利用하여 蘇聯과의

戰爭을 回避하도록 關係改善을 誘導하고 있다. 이처럼 中共이 對蘇 緊張緩和를 摸索하고 있다는 事實은 蘇聯과의 戰爭 可能性을 減少시키는 한편, 中·蘇 戰爭時에 입게 될 潛在的 犧牲을 蘇聯이 認識토록 함과 同時에 對蘇協商을 통해 中共軍의 減縮과 國防費의 節減效果를 노린다고 하겠다.

따라서 中共은 對美·蘇 等距離政策과 勢力均衡政策을 利用하여 自國의 利益을 確保하는 한편, 東南亞 및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를 圖謀하려 하고 있다.

3. 中共運 現代化 推進動向

가. 目 標

上記와 같은 戰略戰術에 따라 中共은 長期的으로 現代戰 遂行能力 向上, 軍事施設 및 技術導入을 통한 自體研究開發과 生産性 向上에 注力하는 것이며, 最少限의 對蘇 抑制力(특히 核抑制戰力)을 確保토록 國防分野에 있어서의 現代化를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蘇聯의 限定的인 奇襲攻擊에 對處할 수 있는 少數精銳部隊를 育成함과 同時에, 軍의 現代化를 漸進的으로 推進하되 現在 逢着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考慮하여 武器 및 裝備의 現代化보다는 教育訓練 및 組織編成의 改善에 重點을 두고 있다.

또한 兵力中心主義로부터 火力(미사일包含)과 機動力(戰車)의 強化를 통한 戰力向上에 目標을 두고 있다.

나. 現代化 推進內容

(1) 兵力削減과 幹部의 精銳化

中共은 現在 ‘精兵簡政方針’에 依據하여 不要不急한 部隊는 地上軍으로 移管하고, 高齡者 및 現代戰에 관한 知識과 技術이 不足한 指揮官과 戰鬥要員을 淘汰시킴으로써 兵力削減과 軍의 精銳化를 圖謀하고 있다.

원래 中共軍은 文革前에는 218 萬名 밖에 되지 않았으나, 紅衛兵들의 武闘가 全國 各地로 擴大되자 毛澤東은 이의 收拾을 위해 軍의 出動을 命令하였고, 中共軍은 소위 三支兩軍(左派支援, 農業支援, 工業支援, 軍事管制, 軍事訓練)의 깃발을 내걸고 行政, 經濟的 各方面에 있어서의 指導的인 勢力으로 登場하면서부터 組織, 機構, 人員이 急激히 擴大되었다.

1980 年부터 始作된 兵力減縮은 1975 年에 創設된 基本建設工程兵을 첫 對象으로 하여 施行되었고, 이들 30~40 萬名の 基本建設工程兵은 1983 年 8 月 各 駐屯軍 地方의 建設關係部門으로 移管되어 都市農村建設部 및 域鄉建設 環境保護部에 隸屬되었다.

또한 1983 年 9 月 鐵道司令部가 撤廢되고 84 年 1 月을 기해 鐵道建設作業에 參與했던 모든 鐵道兵(15 萬名)들이 軍으로부터 分離, 鐵道部 所屬으로 再編되었다. 이와 함께 83 年初 國境地帶警備, 國內治安維持, 黨·政府 重要機關을 擔當하던 部隊가 軍으로부터 分離, 公安部所屬 武裝警察隊로 改編되었다.

1 月에 上海總隊가 設立된 것을 始作으로 하여 各省-市-自治區에 警察隊가 設立되었고 消防警察과 統合, 組織된데 이어 83 年 4 月에는 總司令部(司令官: 李剛, 政治委員: 劉復之)가 創設됨으로써 移管作業을 끝냈는데, 公安部로 넘어간 軍兵力은 50 萬名으로 推算

되고 있다.

이처럼 軍으로부터 他部處로 移管된 兵力은 基本建設工程兵, 鐵道兵, 警察隊를 합치면 1百萬名 規模이며, 國家全體로 보면 물론 단순한 所屬變更이라 할 수 있지만 軍의 立場에서 보면 엄청난 兵力削減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中共軍 總兵力의 變化推移

| 年度 區分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
| 總兵力 (萬名) | 436 | 445 | 475 | 423 | 410 | 323 |

※ 出處: IISS, Military Balance, 1984~1985.

1983年2月25日 人民日報는 鄧小平 黨中央軍事委 主席의 指示에 의하여 軍人은 軍事 뿐 아니라 社會主義建設에 有用한 人才로 기르는 運動을 大的으로 展開하고 있음을 전함으로써 兵力減縮에 對備하고 있음을 示唆하였다.

'83年3月 余秋里 總政治部 主任은 科學技術에 능한 젊은 幹部의 養成方針을 밝혔고, 6月10日 楊得志 總參謀長은 “解放軍의 指揮官을 젊게하는 事業을 完了했다”고 밝히면서, 師團級 司令官을 45歲 前後로, 聯隊級은 40歲 以下로 하였음을 公表했다.

이처럼 中共軍의 精銳化는 同時에 國防費의 節減과 現代化推進에 必要한 勞動力 提供과 科學技術의 開發 등 多目的을 띠고 있다는 점이 特異하다.

胡耀邦 中共黨總書記는 85年4月 南太平洋 5個國을 巡訪하면서 來年까지 1百萬名을 減縮하겠다고 宣言하였는데, 이는 이미 實現된 非戰鬥兵力의 減縮이 아닌 320萬 戰鬥部隊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또한 鄧小平은 85年6月10日 中共軍事委員會 主席資格으로 中共軍 指揮官會議를 主宰하고 現 3百萬名의 兵力을 앞으로 2年內에 2百萬名으로 減縮하겠다고 宣言함으로써 世界平和와 現代化 推進이라는 名分下에 大規模 肅軍이 不可避함을 豫告하였다.

또한 鄧小平은 中共의 至上目標가 經濟改革에 의한 社會主義 強國 建設에 있는 만큼 軍의 現代化와 精銳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經濟 建設이 不可能하다고 強調하였다. 이것은 減軍에 의한 農村勞動力 補充이라는 目的도 있지만 軍部라는 「聖域」에 도사리고 있는 文革 殘滓勢力들을 除去함으로써 中共改革에 反對하는 集團들을 制壓하기 위한 것이라 評價된다.

이러한 鄧小平의 指針에 따라 洪學智 總後勤部長은 “人民解放軍 減縮計劃에 依據, 첫段階로 總後勤部參謀 50%가 減縮될 것”이라 밝혔는데 (6.25 北京放送), 그는 “總後勤部の 本部參謀 뿐만아니라 同部 所屬의 工場, 研究所, 軍의 大學 및 病院에 配屬된 參謀들을 減縮함에 따라 남아도는 兵營, 軍用地, 各種 軍事施設 및 設備는 民間에 轉用시킬 豫定이며, 이것으로 農場, 호텔, 病院, 各種 工場, 建築會社, 運輸會社 등 民間企業을 設立하여 退役將兵들을 吸收할 計劃”이라고 言及하였다.

그밖에도 中共當局은 減軍과 世代交替를 推進하기 위해 階級制 復活, 階級停年制, 幹部의 退職制, 早期轉役에 대한 補償金 支給, 能力爲主昇進制度 등 各種 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軍階級制度인데 1965年以後 毛澤東式 平等概念 實現의 一環으로 廢止하였던 軍階級制度의 復活에 대하여, 1982年3月 楊得志 總參謀長은 1984年10月1日의 建國記念日을 기해 全面復

活할 計劃이라고 밝혔으나 現在까지도 施行되지 못하고 있다.

胡耀邦 黨總書記가 階級制를 復活한다고 하더라도 過去의 元帥나 大將階級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元老軍幹部들의 大幅退陣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階級復活에 抵抗하는 軍部勢力은 大長征, 抗日鬪爭, 國共內戰에 參加했던 軍元老들이므로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階級制度의 復活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또한 軍의 階級停年制度를 보면 軍團長은 49 歲에서 55 歲, 師團長은 41 歲에서 45 歲로 制限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減縮된 兵力에 대해서는 軍에서 民間으로 轉用되는 工場, 設備 등을 利用하여 職場을 斡旋해 주거나 住宅까지 提供하고 있다. 즉 中共當局은 83 年 11 月 國務院內에 「退役軍人和 軍隊離·退任幹部領導小組」(組長: 萬里 副總理, 副組長: 何正文 副總參謀長, 朱雲謙 總政治部 副主任, 吳慶彤 國務院 秘書長, 崔乃夫 民政部 長 등 總 17 名)를 設置하여 退職幹部에 대한 集中管理를 圖謀하고 있으며, 地方政府에도 各 地域에 「退役軍人職業報道所」를 組織하여 轉役 將士兵의 技術, 特技 등에 따라 就業을 斡旋하고 있다.

또한 지난 2 年間 退役한 幹部들을 위해 9 億元을 使用, 3 萬棟의 住宅을 新築·提供하였고, 85~86 年間 退役하게 될 100 萬名의 兵力에 대한 住居와 就業을 위해 10 億元을 投入할 豫定이며, 民政部와 勞動人事部에서 責任지고 就業시킬 計劃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中共軍의 精銳化 推進에 따라 高級將校中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者는 1982 年 42.5%에서 1983 年에는 67%로 增加하였으며, 軍幹部 가운데에서도 士官學校 出身이 64%에서 87%로 增加하였으며, 中共當局은 앞으로 全軍幹部를 士官學校出身으로 充當할 計劃이다.

그리고 小隊長以上の 初級將校中 約 70%가 各種 軍事學校에서 再教育을 받았다. 또한 '82 가을이후 大軍區의 司令官 및 政治委員에 대한 大幅的인 人事移動이 實施되었고, 다음에서 보듯이 鄧小平은 最近 北京 등 大軍區 司令官을 直系勢力으로 完全히 改編하였다.

이와 同時에 85年 4月부터 中共軍의 3大總部에 대한 人事改編과 機構縮小를 斷行하고, 各 總部의 新任 副責任者 全員을 40~50代의 젊고 有能한 幹部로 全面交替 (6.12 新華社通信) 하는 등 軍指導部에 대한 世代交替作業을 積極 展開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85年 7月 空軍指導部에 대한 人事改編까지 斷行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中共軍의 全般的인 世代交替가 繼續 될 것으로 보인다.

(2) 積極防衛·統合軍化

趙紫陽 總理는 全人大 第6期 第1次會議 ('83.6) 政治報告에서 “軍의 編成, 指揮는 統合軍으로 一步 前進하였다”고 發表하고, “近代戰爭 條件下의 聯合作戰 能力과 緊急對應能力을 提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強調했다.

이 統合軍은 ① 從來 步兵中心主義에서 火力 (미사일 등), 機動力 (戰車 등)을 強化하고 綜合戰力의 充實을 圖謀하며, ② 指揮體系의 簡素化로 2重指揮를 없애고 各 軍種·兵種을 聯合한 部隊를 構成하고 一線指揮官에게 많은 權限을 賦與하여 適應態勢를 갖추려는 것이다.

同年 7月 30日 新華社通信은 미사일, 戰車 등 各種 兵器를 連繫 시킨 統合軍 形式에 의한 軍事演習이 最近 北京部隊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전함으로써 軍의 一部에서 統合軍의 組織이 事實上 이루어지고 있음을 示唆하였다.

1 級軍區人事改編內容

| 軍 區 | 職 位 | 區 分 | 責 任 者 | | 備 考 |
|-------------|-----|-----|---------|-----------------|--------------------------|
| | | | 姓名(年齡) | 前 職 責 | |
| 北 京 | 司令官 | 留任 | 秦基偉(71) | 北京軍區副政委 | 前任：博崇碧(67) 前任：李德生(69) |
| | 政 委 | 新任 | 楊白泳 | | |
| 瀋 陽 | 司令官 | " | 劉精松 | " | " |
| | 政 委 | 留任 | 劉振華(67) | | |
| 廣 州 | 司令官 | " | 尤太忠(72) | " | " |
| | 政 委 | 新任 | 張仲先 | | |
| 西 部 (蘭州) | 司令官 | " | 趙先樹 | 우루무치軍區 政治部主任 | 우루무치·蘭州軍區統合 |
| | 政 委 | " | 李宣化 | | |
| 東南部 (成都) | 司令官 | 新任 | 傅全有 | 成都軍區政委 | 昆明·成都軍區統合 |
| | 政 委 | 留任 | 萬海峰(68) | | |
| 東 部 (南京) | 司令官 | " | 向守志(69) | 南京軍區司令官 | 福州·南京軍區統合 |
| | 政 委 | " | 傅奎清 | 福州軍區政委 | |
| 中 部 (濟南) | 司令官 | 新任 | 李九龍 | 副總參謀長 | 武漢·濟南軍區統合 |
| | 政 委 | " | 遲浩田 | | |

이런 意味에서 볼 때 85年 6月에 實施된 1級軍區에 대한 人事改編과 11個軍區를 7個로 統廢合한 것도 重大한 變化라 아니할 수 없다.

(3) 武器 및 裝備의 現代化

中共當局이 經濟建設에 重點을 두고 國防費 增額을 抑制함에 따라 劃期的인 國防現代化는 期待하기 어려우나, 部分的인 技術導入으로 現 保有武器를 改良하고 精銳武器는 라이선스 生産 혹은 導入을 통해 裝備의 現代化에 迫車를 가하고 있다.

특히 뒤떨어진 電子通信機器, 自動車分野를 革新하고 50年代의 蘇聯型 武器體系를 脫皮하기 위하여 歐美諸國으로부터 現代武器 導

入에 熱을 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中共은 車輛, 戰車, 제트機, 誘導彈, 레이다裝置 및 컴퓨터 등에 關心을 갖고 數次 軍事裝備 購賣團을 海外에 派遣하였으나 外貨不足으로 實際 導入한 것은 極少數에 不過하다. 外國에서 導入한 主要裝備를 들어보면 英國의 롤즈로이즈社로부터 航空엔진 (國內生産), 火砲, 火力統制裝置, 레이다 등을 購入했고, 프랑스의 다우링社로부터 헬機 (國內生産), 레이다, 베리트럭 등을 購入하였다.

美國과의 軍事協力은 美國의 臺灣에 대한 軍事販賣 關係로 不振하였으나, '83年 6月 美國이 對中共 高度技術 輸出制限을 大幅緩和(軍事目的으로 轉用可能한 高度技術의 80%以上 輸出可能)하였고, 와인버거, 張愛萍의 交換訪問을 통해 美國이 中共에 대한 核技術協力과 43個 品目の 高度技術 提供에 合意함으로써 中共의 軍現代化는 더욱 促進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張愛萍 國防部長은 「紅旗」論文('83. 3月初)을 통해 自力에 의한 武器體系의 近代化를 強調하고 國防豫算에서 戰略誘導 미사일 開發, 核燃料, 核彈頭生産 등 國防全體에 影響을 주는 主要部門에 集中投資할 것을 強調하였다.

(4) 教育 및 訓練의 強化

中共軍 指導層은 裝備의 現代化를 早期에 達成하기 어렵다고 判斷, 現 保有裝備의 最大活用을 통해 現代的인 作戰能力 向上을 위한 教育, 訓練의 強化에 注力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央軍事委員會는 85年 6月 中共軍 最高教育機關인 軍政大學을 復活하기로 決定하고, 同大學長에 前瀋陽軍區司令官인 李德生을 內定하였다. 특히 中·越戰爭의 經驗을 바탕으로 大規模 合同

作戰訓練을 實施하고 있으며, 政治學習時間을 減縮하여 戰略·戰術 研究에 보다 많은 時間을 割愛하고 있다.

다. 現代化의 問題點

(1) 老대한 財政所要와 國防費 削減

美國防省의 判斷에 의하면 中共이 蘇聯의 極東軍에 對抗할 수 있는 軍事力을 具備하기 위해서는 410 ~ 630 億달러의 追加的인 通常 武器의 購入이 必要하다고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財政赤字를 縮小하고 經濟改革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 國防費를 削減, 凍結하고 있어 中共軍의 裝備現代化는 不振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中共의 國防豫算에는 武器開發, 調達費 등이 軍事와 關聯된 各省에 配分되어 있기 때문에 西方側의 豫算과 單純比較한다는 것은 사실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實際 國防豫算은 發表額을 上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다음 表에서 나타나듯이 1979 年の 222.7 億元을 고비로 하여 國家豫算이 增大됨에도 不拘하고 國防費는 減少趨勢에 있

中共의 國家豫算과 國防費

(單位: 億元)

| 年度 |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區分 | | | | | | | | |
| 歲 | 入 | 1,103.3 | 1,085.2 | 1,064.3 | 1,123.9 | 1,249 | 1,338.5 | |
| 歲 | 出 | 1,273.9 | 1,212.7 | 1,089.7 | 1,153.3 | 1,292.5 | 1,368.5 | 1,500.8 |
| 財 | 政 赤 字 | - 170.6 | - 127.5 | - 25.4 | - 29.4 | - 43.5 | - 30 | |
| 國 防 費 | 總 額 | 202.0 | 193.8 | 168 | 176.4 | 177.1 | 178.7 | 180.1 |
| | 歲出에 대한 比率(%) | 15.9 | 16 | 15.4 | 15.3 | 13.7 | 13.1 | 12 |
| | 增加率 | | -4.1 | -13.4 | 5 | 0.4 | 0.9 | 0.8 |

※ 出處: Asian Security, 1984. , 中國手冊, 1984.

으며 1985년에는全體豫算의 12%에 不過하다.

또한 中共의 現代化 目標中 優先順位를 생각해 볼 때 軍現代化가 最下位로 格下되어 있어 國防豫算의 增加는 이러한 優先順位가 調整되지 않는 한 繼續 制約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2) 防衛産業의 落後

實用主義體制 登場以後 自力更生의 原則이 다소 緩和되었으나, 技術導入에 따른 自體生産을 통하여 裝備의 現代化를 達成하겠다는 基本原則은 변하지 않고 있어 技術活用度가 未洽하다. 또한 防衛産業 및 關聯工業部門의 下部構造가 脆弱하여 西方의 武器體系水準과 比較해 볼 때 最少限 20年以上 落後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것은 國共內戰以來 世界各國으로부터 多様な 武器體系와 設備를 물려받았거나 導入하였기 때문에 規格이 統一되어 있지 않은데다, 특히 中共의 防衛産業이 1950年代의 蘇聯 防衛産業을 模倣하여 發展하였기 때문에 研究水準 및 經營能力面에서 極히 落後되어 있다.

그리고 過去 毛澤東時代에 이데올로기를 重視하여 專門技術人力의 養成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文化革命때 肅清된 關係로 導入技術을 活用할 수 있는 科學技術要員이 不足한 實情이다.

(3) 軍現代化에 관한 認識의 不一致

各軍 및 兵種間 利害關係가 相反되어 軍現代化에 대한 優先順位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和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老齡層인 軍指導者들은 아직까지도 人民戰爭戰略을 固執하는 등 軍現代化에 反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實際 어떤 分野에, 어떤 武器를, 어떤 方法으로, 얼마만큼 導入하여, 어떻게 運用하느냐에 대한 意見一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現代化 推進狀態가 不振한 것으로 評價된다.

라. 現代化의 展望

中共軍의 現代化는 長期的으로 對內的인 政治安定, 經濟成長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外國과의 軍事的 衝突回避, 外國으로부터의 裝備 및 技術導入 등과 函數關係에 있다.

따라서 中共軍이 勞動集約的인 軍隊로부터 技術集約的인 現代의 軍隊로 탈바꿈하려면 2000 年代에 가서야 可能할지 모르지만, 局地戰에 對處할 수 있는 戰鬥能力은 漸進的으로 向上될 것이다.

그러나 國防豫算의 增額이 이루어지고 西方의 先進 軍事科學技術을 大幅 導入하지 않는 한 中共의 蘇聯과의 軍事力 隔差는 쉽사리 解消되지 않을 것이다.

最近 中共軍의 變身中の 하나가 軍施設의 民需用 轉換인데, 軍需工場의 30%를 消費財인 自轉車, 자봉틀, 텔레비전 生産에 轉換토록 措置하였으며, 軍兵力이 人民을 위한 勞力奉仕(空港, 港口의 建設 및 農事支援 등)에 動員되고 있다는 것을 勘案해 볼 때 中共當局이 實際 國防現代化보다는 經濟建設 등에 注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中共軍의 現代化 推進動向에서도 살펴보았지만 現在 中共에서는 兵力減縮 등으로 軍에 대한 人氣가 下落하고 있으며, 軍現代化에 反撥하는 老齡層이 健在하고 있어 國防現代化의 目標達成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軍事組織 및 指揮體制

가. 軍政機構 및 統帥權

中共軍은 大陸의 共產化鬭爭이라는 過程속에서 成長, 發展된 軍隊이기 때문에 中國共產黨의 指導를 받는 黨의 尖兵이자 武裝革命團體로서 40餘年이라는 長期間동안 革命工作에 從事해 왔으며, 黨의 積極的인 革命路線을 實踐해 왔다는 點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黨·軍 關係때문에 中共軍을 움직이는 一切의 指揮權은 黨에 의하여 左右되고 있으며, 毛澤東은 “우리의 原則은 黨이 銃을 指揮하는 것이지 銃이 黨을 支配함을 결코 許容하지 않는다”고 強調하였다.

現在 中共의 憲法에 따르면 “國家中央軍事委員會가 全國의 武裝力을 指導한다”고 規定(憲法 第93條)되어 있지만, 實際 黨中央軍事委員會 構成員(鄧小平, 葉劍英, 徐向前, 聶榮臻, 楊尙昆)들이 國家中央軍事委員會를 兼職하는 方法을 통해 黨이 人民解放軍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다.

黨의 軍에 대한 支配體制는 井岡山時代 軍隊內에 設置된 黨委員制度에서 비롯된 후, 이것이 軍의 集團指導體制로 發展, 確立된 것이다.

軍에 대한 黨의 指導性은 ① 黨中央軍事委員會의 統帥, 軍政面에 대한 內面指導, ② 軍內 政治委員制에 의한 直接指導, ③ 軍內 黨組織에 의한 將兵動向 把握이라는 形態로 나타나 強力히 推進되고 있다. 現在 黨의 軍에 대한 支配를 正當化 해주는 黨規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國 人民解放軍의 黨組織은 中央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活動한다.

中國人民解放軍總政治部는 中央軍事委員會의 政治活動機關이며, 軍隊에 있어서 黨의 活動과 政治活動의 管理에 責任을 진다. 軍隊에 있어서 黨의 組織體制와 機構에 대해서는 中央軍事委員會가 規定한다. (第 23 條)

- ② 人民解放軍의 中隊 및 其他 基層單位는 正式黨員 3 名以上이 있으면 모두 黨의 基層組織을 構成해야 한다. (第 30 條)

이렇게 볼 때 軍統帥權 및 最高幹部에 대한 人事權 등 實質的인 軍令, 軍政을 掌握하고 있는 者는 黨中央軍事委 主席 (現在 鄧小平) 이라 할 수 있다.

나. 軍事組織體系

(1) 黨中央軍事委員會

1983 年 6 月에 正式으로 發足된 國家中央軍事委는 實際 黨中央軍事委와 별다른 差異가 없으며 國家組織面에서 詳述했으므로 여기에서는 說明을 省略하겠다.

實質的인 統帥權을 掌握하고 있는 黨中央軍事委는 1927 年 4 月 上海에서 創設되었으며, 1931 年以後 繼續 毛澤東이 黨中央軍事委 主席職을 掌握하였고, 華國鋒이 잠깐 맡았다가 곧바로 鄧小平이 黨中央軍事委 主席과 國家中央軍事委 主席職을 掌握하였다는 事實을 考慮해 볼 때 實質的인 最高統治權者가 黨中央軍事委 主席職을 掌握해 왔다고 볼 수 있다.

黨中央軍事委員會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 ① 一切의 武裝力을 統帥하며 軍作戰을 指揮
- ② 戰略方針과 作戰擔當
- ③ 軍의 各種 條例, 編成, 教範 및 軍事制度의 制定

- ④ 軍의 現代化와 訓練에 관한 監督
- ⑤ 國防工業 및 運輸關係의 建設計劃 樹立
- ⑥ 軍에 대한 政治工作計劃
- ⑦ 軍首腦部에 대한 人事移動 擔當

(2) 國 防 部

中共憲法에 나타난 國務院의 權限(第 89 條)中 國防부와 關係되는 事項은 “國防建設事業의 指導 및 管理”로서 그 具體的인 內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지 他國 國防關係 管掌機關의 例로 보아 軍의 編成, 裝備의 改良이나 更新, 國防施設의 建設, 軍事關係 法令의 制定 및 施行, 兵器의 研究開發 등에 관한 各種 施策을 計劃·樹立하는 權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人民解放軍組織

中國 人民解放軍에는 3 個의 幕僚機構와 6 個 兵種이 있으며, 7 個 大軍區가 있고 7 個의 各種 學院이 있다.

그중 가장 重要한 것은 總政治部로서 人民解放軍에 대한 政治, 思想, 工作의 總本山이다. 黨規約에서도 나타나듯이 總政治部는 黨中央軍事委員會의 指導下에 軍隊에 대한 黨組織과 宣傳, 教育, 文化, 保安, 工作 등을 擔當하고 있다.

政治部는 總政治部の 下部組織으로서 大軍區로부터 師團級에 政治部를 設置한다. 聯隊는 政治處, 大隊는 政治教導員, 中隊는 政治指導員, 小隊는 政治戰士가 配置된다.

이러한 政治部の 任務를 遂行하는 者는 政治委員인데, 政治委員은 軍隊內에서의 黨代表로서 政治路線과 規律을 執行하는 責任을 진다. 政治委員과 指揮官間에 異見이 있을 경우, 作戰은 指揮官이 決定하

고 그 以外問題는 政治委員이 決定한다. 政治委員은 聯隊級 以上에 두도록 되어 있다.

總參謀部는 一般幕僚部의 役割을 擔當하며, 實質的인 軍事組織으로서 總參謀部의 長은 總參謀長이 된다. 總參謀部는 1954 年에 創設되었는데 陸·海·空軍의 作戰運用이나 教育, 訓練, 編成, 裝備, 動員, 兵力配置, 徵兵 등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總後勤部는 後方 兵站部門을 擔當하는 機構로서 兵器의 生産 및 監督, 軍需物資의 補給, 部隊의 食糧生産, 施設의 建設 및 補修, 輸送 業務, 人馬의 管理 및 豫算의 配分 등의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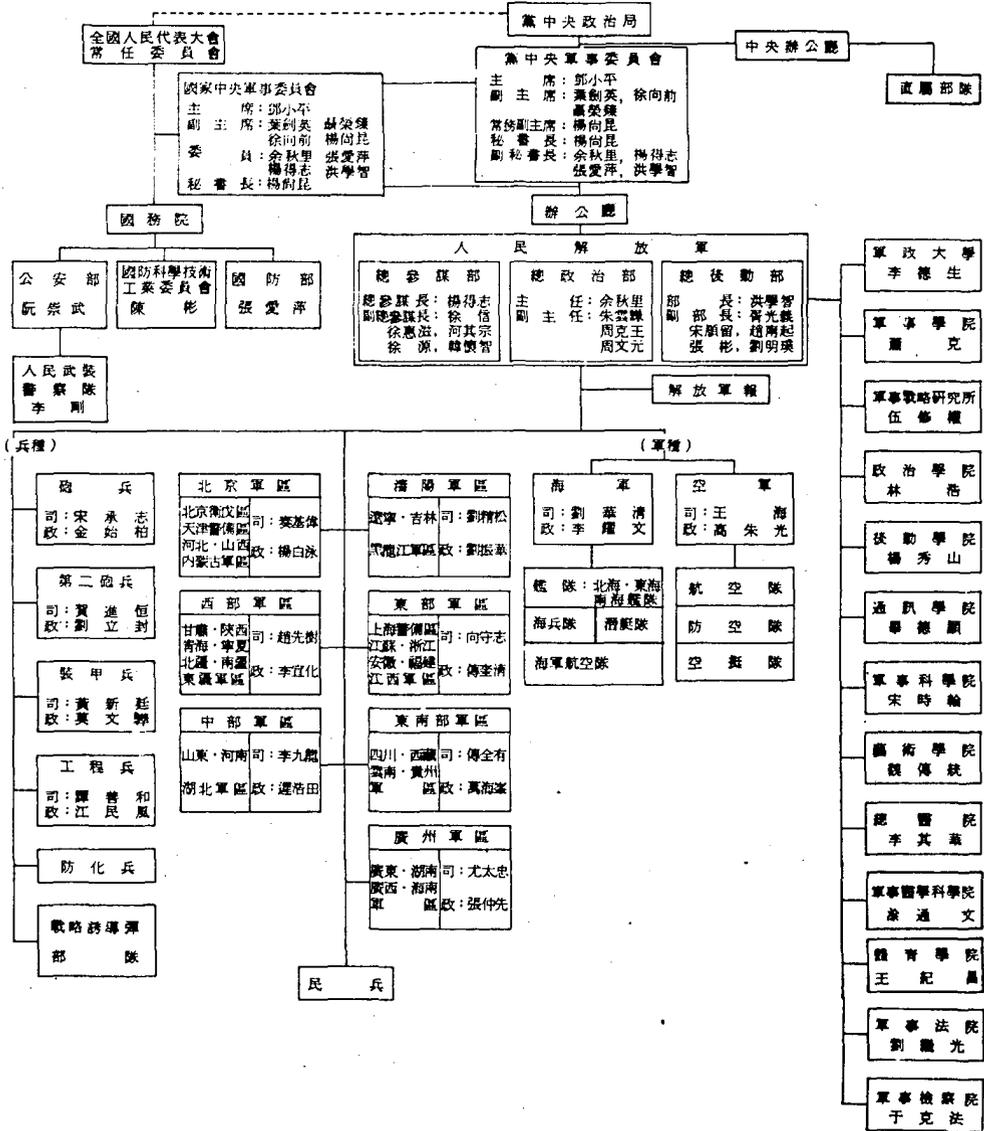
中共軍 制度中 特異한 것은 軍區制度인데, 이 制度는 8路軍 新 4軍이 指定된 防禦地域으로부터 遊擊根據地를 設立하기 위하여 各地에 많은 軍區를 建設함으로써 誕生되었다.

現在 中共에는 6個의 1級軍區와 1個의 直轄軍區가 있으며 그 隸下에 1個의 衛戍區, 2個의 警備區, 29個의 省級軍區가 있고 100餘個의 軍分區가 있다.

이러한 軍區는 平時에는 治安維持와 警備, 部隊訓練과 民兵組織教育, 物資備蓄 등을 주된 任務로 하며, 戰時에는 實際 作戰에 投入되고 있다.

各級 軍區의 任務는 大體的으로 同一하나 1級軍區는 統一的인 企劃 및 監督業務를 遂行하고, 省級軍區는 이것을 接受하여 各 分區에 對 任務를 賦與하며, 實際上的 職務執行單位는 軍分區가 된다.

軍事組織體系 (85.7 現在)



5. 兵力現況

가. 兵役制度

中共에서는 義務兵役制와 志願制를 併用('78. 3 決定) 하고 있으나 事實上 義務兵役制이며, 最近 軍의 威信低下와 農村의 生産請負制의 影響으로 靑年들의 軍忌避現象이 일어나 新兵役法에 의한 懲兵制 實施가 檢討되고 있다.

兵役期間은 陸軍 3年, 空軍·地上勤務海軍 및 特殊技術兵種 陸軍 4年, 海軍과 海上分遣隊 勤務陸軍은 5年이다.

나. 兵力現況

(1) 軍種·兵種

解放軍에는 陸軍에 대한 呼稱이 없으며 海軍·空軍의 2軍種, 砲兵, 第2砲兵, 裝甲兵, 工兵 등 6兵種이 있다. 改編前에는 鐵道兵 및 基本建設工程兵이 있었으나 그중 約 30萬名의 鐵道兵部隊는 84年 1月부터 鐵道部에 編入되었고 基本建設工程兵도 各地方 建設工事部門에 編入되었다. 現在 中共의 正規 總兵力은 320萬名이다.

(IISS, Military Balance 84~85年版에는 410萬名으로 集計)

(2) 陸軍

兵力 235萬名, 機甲 12個師團, 步兵 119個師團, 工程隊 3個師團, 砲兵 17個師團, 獨立聯隊 若干, 獨立部隊 100個, 戰車(蘇聯制 IS 2重戰車, T 34, T 54, T 59, T 60) 11,450臺, 裝甲兵力輸送車 4,800臺, 野戰砲 12,800문, 迫擊砲, 對空砲 등 35,200문

(3) 海 軍

兵力 36 萬名, 한級原子力潛水艦 2 隻, 潛水艦 115 隻, 旅大級驅逐艦 10 隻, 골데이級驅逐艦 4 隻, 프리키투艦 21 隻, 護衛哨戒艇 8 隻, 미사일積載 高速哨戒艇 215 隻, 高速哨戒艇 631 隻, 掃海艦 23 隻, 海軍航空隊兵力 38,000 名, 戰鬥機 約 800 臺(爆擊機師團 3, 戰鬥機師團 6 으로 編成), 其他 水上戰鬥機 1,194 臺

(4) 空 軍

兵力 49 萬名, 戰鬥用航空機 約 5,300 臺(TU 重型爆擊機 120, IL 20 輕爆擊機 550, F5, F6, F7, F8 戰鬥機 約 4,000 臺), 其他 航空機 327 臺, 地對空미사일 100 基, 對空砲 16,000 門.

(5) 戰略力

原·水爆 數百發 保有, 射程 1,100 km 的 準中距離彈道彈 40~50 基를 配置하고 있으나, 射程 2,600~5,600 km 的 中距離彈道彈으로 交替되고 있다. 射程 6,000~7,000 km 的 多彈式 大陸間彈道彈을 76 年에 實驗, 一部 配置하고 있다.

80 年 5 月 18 日, 22 日 ICBM 發射試驗에 成功한데 이어 ICBM 4 基를 保有하고 있으며 81 年 9 月 20 日 1 基의 로켓으로 3 個衛星을 軌道에 進入시키는데 成功했다. 82 年 10 月 潛水艦으로부터 運搬 로켓發射實驗에 成功했다.

(6) 民 兵

民兵은 人民解放軍의 補助組織으로 鄉, 民族鄉, 鎮 및 企業單位에 設置되어 있다. 全人民皆兵制가 實施되어 除隊軍人을 中心으로 16 歲~40 歲의 男子, 16 歲~35 歲까지의 女子를 基幹民兵으로 하여, 一定期間의 軍事訓練을 받고 있다. 都市, 農村, 工場, 學校 各機關

의 民兵은 班, 小隊, 師團으로 編成하고 約 430 萬名의 武裝된 基幹 民兵이 75 個師團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普通民兵은 約 600 萬名으로 推算되고 있다.

다. 中共 軍事力の 脆弱點

中共의 核戰力은 蘇聯의 우랄以東地域과 아시아의 大部分을 邀擊할 수 있으나 質的으로 正確도가 낮고 第2의 加擊力이 未備되어 있다. 陸軍은 規模面에서는 龐大하나 步兵中心이기 때문에 火力과 機動力이 不足하며 兵站支援能力이 制限되어 있다.

海軍은 沿岸海軍으로 大洋機動力이 없으며 大部分의 潛水艦은 디젤推進型이기 때문에 作戰能力이 制限되어 있으며, 對空 및 對潛能力이 未備되어 있다.

空軍은 全天候 戰鬥機가 거의 없으며 空對空미사일, 最新電子裝備가 落後되어 있고, 地對空미사일을 包含한 最新防空體制가 未備되어 있다.

이밖에도 中共軍이 副次的인 任務(大躍進期: 民間經濟 支援活動, 文化革命期: 政治活動 展開)에 動員되기 때문에 戰略戰術研磨나 教育訓練이 잘 되어있지 않아 應戰態勢가 低調하다고 指摘되고 있으며, 특히 軍種間, 軍區間의 大規模 合同軍事訓練을 實施하지 못했기 때문에 主要戰鬥部隊의 合同作戰 遂行能力이 未備되어 있다. 또한 道路網의 未備와 輸送能力이 不足하여 迅速한 部隊配置와 作戰展開가 困難할 뿐만 아니라 兵站支援이 制限을 받고 있다.

그리고 繼續된 世代交替에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中共軍 高位指導層은 老齡이기 때문에 最適의 戰略驅使와 合理的인 資源配分 決定에 障礙를 招來하고 있다.

VI. 社會文化

1. 教 育

가. 教育敎策 變遷過程

中共은 大陸을 占領한 후 ‘政治協商會議’의 綱領을 통해 “中國의 文化敎育은 新民主主義, 즉 民族的·科學的·大衆的인 文化敎育을 하며, 人民政府의 文化敎育事業은 人民文化의 水準을 提高시키고, 國家建設 人材를 養成시키며, 封建的·買辦的 狹隘主義的 思想을 肅清하며, 人民을 위해 服務하는 思想을 發展시키는 것을 主要任務로 한다”고 強調하였다.

이처럼 中共의 教育政策은 프로레타리아의 政治的 利益을 위한다는 데에서부터 出發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教育政策을 時期別로 대강 整理해보면, 草創期에는 蘇聯一邊倒 政策을 堅持하여 學制·敎育內容·敎授方法등 모든 敎育制度를 蘇聯式으로 改革하였다.

이에 따라 教育行政制度는 中央集權式이었으며, 黨이 學校行政까지 指導하였다.

그러나 1950年代末 中·蘇紛爭이 시작되자 中共은 蘇聯式의 敎育制度에서 脫皮하여 毛澤東式의 敎育制度로 轉換, ‘大躍進’, ‘總路綫’, ‘인민공사’ 즉 ‘3面紅旗運動’을 敎育에까지 適用시켜 “敎育은 프로레타리아 政治를 위해 服務하고, 敎育과 生産을 結合한다”는 基本方針下에 “全黨·全人民이 學校를 運營하고, 學校에서 工場과 農場을 運營하며, 인민공사와 工場이 學校를 運營” 하도

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黨에 의한 教育指導는 中共原來의 教育制度를 瓦解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여, 學生의 질이 低下되고 經濟破綻까지 겹쳐 急進的인 教育改革은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이어서 1960年初 中共當局은 ‘조정·공고·충실·제고’의 소위 ‘8字方針’을提起하여 “學校는 學生을 가르치고, 學生은 책을 읽는 것”을 위주로 하며, “教師는 主導的인 役割을 맡아야 한다”는 등 ‘人材輩出’과 ‘科學發展’에 重點을 두고 基礎學門과 專門科目의 教育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1962年 毛澤東이 ‘階級鬭爭의 重要性’을提起한 후 ‘社會主義 教育運動’을 展開하도록 指示한데 이어, 1964年 “現在의 學制, 教科過程, 教育方法, 教授方法, 入試制度 등 모든 教育事業을 改革해야 한다”고 指摘하게 됨에 따라 教育分野에서의 文革運動이 本格的으로 시작되었다.

1967年 1月 中共黨 中央委員會가 發表한 教育試案의 主要內容을 보면, ① 모든 考試制度의 廢止, ② 學制短縮, ③ 階級革命의 強調, ④ ‘半農(工)半讀’의 教育制度 加속실시, ⑤ 學校의 軍事化, ⑥ 政治에 의한 統率, ⑦ ‘毛澤東思想의 學習’ 強調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改革 推進運動이 격렬해지게 됨에 따라 1966年에는 홍위병運動으로 1年間 各級學校가 休校(大學은 4年間 休校)됐는가 하면, ‘勞動者선전대’와 軍隊가 學校에 진주하여 ‘鬭爭·批判·改革’을 主張하는 등 오히려 社會混亂만 加重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過去 中共의 教育政策은 社會主義 定着을 위한 이데올로기 教育과 文盲退治등 大衆의 教育과 平等教育에 重點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小學校나 中等學校가 급격히 늘어나 教育基盤은 擴充되었지만, 高等教育的 質的向上이 이루어지지 못해 現代化計劃을 推進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現中共當局은 大衆教育的인 成果보다는 學問이나 技術的으로 能力있는 엘리트養成教育에 重點을 두게 되어 教育의 方向과 內容을 전면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中共 教育改革의 主要內容을 간단히 살펴보면,

- ① 外國과의 빈번한 學問 및 留學生의 交流 擴大
- ② 正規 中等學校와 技術學校間의 均衡있는 發展
- ③ 技術 및 職業教育 強化
- ④ 大學의 知的向上 圖謀, 學位 및 稱號復活, 大學入試의 全國的 統一實施, 大學의 無償教育制를 獎學制로 轉換, 大學에 教員任命·豫算使用 등 裁量權 賦與
- ⑤ 國境地帶나 少數民族地域에 있어서의 教育強化와 成人層의 文盲退治
- ⑥ 9年制 義務教育 實施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中共이 資本主義 要素를 대폭 導入하게 되고 西方 先進國의 文物이 中共에 影響을 미치게 되면 中共의 學問 및 教育水準도 더욱 向上될 것이고 그에 따라 教育改革作業도 自由化 및 技術教育 重視의 方向으로 바뀔 것이다.

中共當局은 '85年 6月 중건의 教育部를 廢止하고 國家教育委員會를 新設한데 이어, 同委員會 主任에 제 3世대의 核心人物인 李鵬 副總理를 任命하는 등 大幅的인 教育體制 改革作業에 着手하고 있다.

나. 教育現況

(1) 教育機關 및 學生數現況 (1983 現在)

(單位：萬名)

| 區 分 | 學校數校 | 在學生數 | 專任教師數 | 備 考 |
|---------|---------|----------|-------|-------------------------------------|
| 大 學 院 | 600 | 2.4 | | |
| 大學·專門學校 | 805 | 120.7 | 30.3 | 綜合大學：32 個校，單科大學：683 個校，國立중첩大學：89 個校 |
| 中 等 學 校 | 3,090 | 114.3 | 15.6 | |
| 中等技術學校 | 2,229 | 63.2 | 11.6 | |
| 中等師範學校 | 861 | 45.5 | 4.0 | |
| 一 般 中 學 | 96,474 | 4,397.7 | 259.7 | |
| 高 級 中 學 | 18,876 | 629.0 | 45.1 | 大學進學率 4~5 % |
| 初 級 中 學 | 77,596 | 3,768.7 | 214.6 | |
| 農業職業中學 | 5,481 | 122.0 | 7.4 | |
| 技 工 學 校 | 3,443 | 52.5 | 8.1 | |
| 小 學 | 862,165 | 13,578.0 | 542.5 | 就學率 94 %， 中學校進學率 88 % |
| 盲聾啞學校 | 319 | 3.6 | 0.6 | |
| 幼 兒 園 | 136,306 | 1,140.3 | 43.3 | 幼兒師範學校 13 個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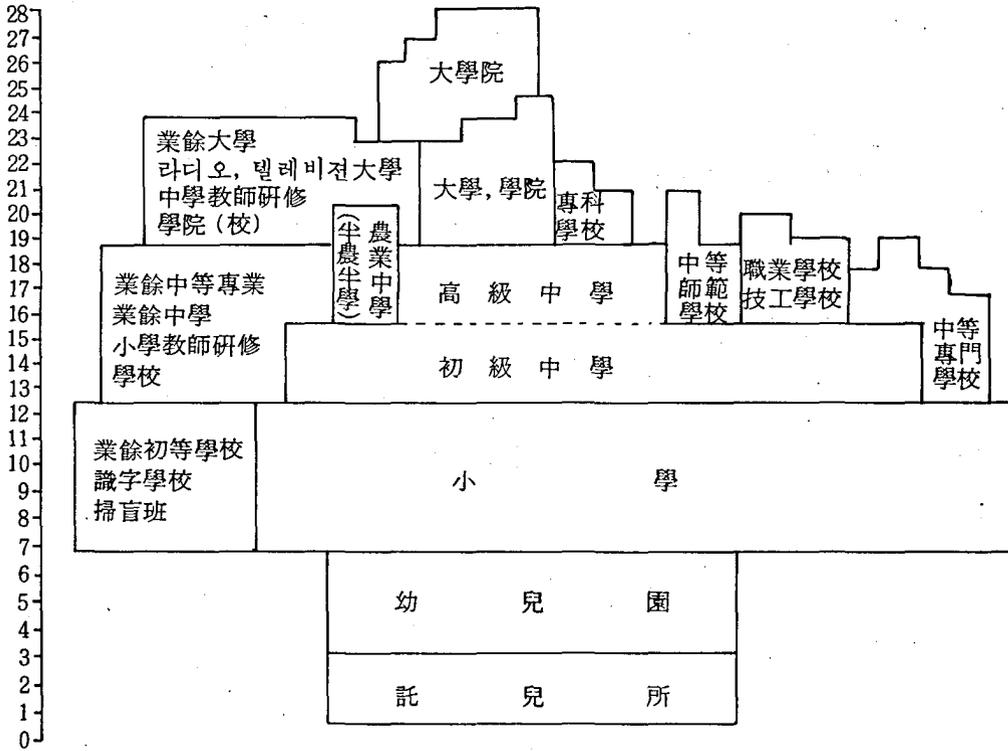
※ 大學에는 職場人을 위한 放送, TV大學, 夜間大學, 餘暇大學 등이 있음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最近 中共의 大學 및 大學生數 增加現況

| 年度 區分 | '78 | '79 | '80 | '81 | '82 | '83 |
|---------------|------|-----|-------|-------|-------|-------|
| 大學(校數) | 400 | 598 | 633 | 675 | 715 | 805 |
| 大學生 (萬名) | 85.6 | 102 | 114.4 | 127.9 | 115.4 | 120.7 |

(2) 教育制度



資料：「新中國年鑑」，1984年

- 註：1) 中等專門學校，農業·職業中學에서 大學·學院에 진학할 수 있음.
 2) 이 표에서 業餘는 成人教育을 뜻함.

(3) 中共人的 教育水準

1982年 國勢調查에 따르면 文盲者는 總人口의 23.5%에 달하는 2億3,582萬名으로 나타나 있으며, 大學教育 水準의 知識層은 601萬7千名 (0.6%), 初級中學 卒業以上者 1億367萬名 (17.8%), 小學校 卒業以上者 3億6,529萬名 (35.4%)으로 全般的인 教育水準은 아시아 諸國中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4) 海外留學生 派遣現況

中共은 中蘇紛爭 以前에는 科學技術研究와 經濟建設을 위하여 매년 1,400 餘名の 留學生을 蘇聯에 보냈으나, 그후 兩國의 關係惡化로 1965 年부터의 文革 10 年동안 留學生의 派遣은 사실상 정체되었다. 그러나 1972 年부터 留學生 派遣이 조금씩 許容되었으며 中共은 1978 年부터 美·日등 54 個國에 18,500 名の 國費留學生을 보냈으며, 1985 年까지 2 萬名을 보내기로 計劃을 세웠다.

이들 留學生들의 平均教育期間은 2~3 年이며, 年齡은 26~41 세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中共의 留學教育政策은 모두 國費留學이며, 科學·技術에 置重되어 있는데다 學位를 目的으로 하지않는 점등이 特異하다.

1978 年 1 月부터 1979 年 10 月까지의 留學 總人員은 2,230 名인데 그중 自然科學分野 研究者가 1,600 餘名, 語學分野가 400 名이었고, 對象國은 美國 500 名, 英國 300 名, 프랑스 200 名, 西獨 200 名, 日本 100 名 순이었다.

앞으로 中共이 現代化政策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留學開放政策을 더욱 擴大할 것으로 보인다.

2.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中共에서 科學·技術은 黨으로부터 “中國共產黨의 指導下에 經濟 및 生産發展과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指示를 받고 있다.

中共政權 初期의 科學者들은 대부분 부르조아 出身이고 資本主義 思想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社會主義 革命에 관한 再教育을 받는 등 심한 迫害를 받았으나 中·蘇紛爭으로 蘇聯科學者 및 技術者들이 撤收하게 되자, 이들 대신에 중요한 業務를 擔當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重視하고 專門的인 知識을 경시하는 文化大革命의 混亂을 겪으면서 科學技術 人員들도 知識分子라는 理由로 막대한 타격을 받아 科學技術研究 發展에 커다란 障礙를 초래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964年 최초의 核實驗에 成功한 이래 1978년까지 20 차례의 核實驗을 했으며, 1981年初 中共最初의 大型原子 爐가 稼動되었고, 1970年 4月 最初의 人工衛星을 발사한 이래 1984년까지 15회의 衛星實驗을 하였고, 1981年 9月 1基의 로켓트로 3개의 衛星을 발사하였으며, 1982年 10月에는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發射實驗에도 成功하였다.

특히 鄧小平體制 確立以後 科學現代化를 위해 海外頭腦誘致가 활발해지게 됨에 따라 科學技術者에 대한 待遇도 改善되고 있으며, 미사일, 원자탄, 電子, 精密機器 등 特定分野는 最尖端을 달리고 있다.

나. 科學技術關係 主要機關

(1) 國家科學技術委員會

1958年 11月 ‘國家技術委員會’와 ‘科學計劃委員會’가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統合되었는데 이 機構는 軍事科學分野를 除外한 科學事業의 方針·政策·計劃·決定등 重大한 措置를 管掌하고 있다.

특히 同委員會 主任인 方毅는 黨政治局 委員과 國務委員을 兼職하고 있어, 中共이 科學技術을 重視함을 알 수 있다.

(2)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同委員會는 國防分野의 科學業務를 管掌하며, 특히 軍事科學院에 관한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85年 6月 개각때 主任이 丁衡高로 바뀌었다.

(3) 中國科學院

1949年 11月 創設當時에는 '近代物理研究所', '應用物理研究所', '地球物理研究所', '物理化學研究所' 등 17개 研究所로 構成되었으나, 1984年末 現在 13個 分院, 133個 研究所로 되어 있으며 研究人員은 36,000餘名에 달하고 있다.

院長 盧嘉錫, 副院長은 錢三強 등 6名이다.

(4) 其他 研究機關

그밖에도 科學技術과 關係되는 研究機關으로는 農林科學院, 醫學科學院, 林業科學院 등 國務院 및 各省에서 直轄하는 研究機關이 있으며, 各大學(校)에서도 專門研究所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5) 學會組織

科學技術分野의 研究에 從事하는 자들이 모여 結成된 '科學技術協會'가 있으며, 各 專門分野別로 別途의 學會를 構成·運營하고 있으나 자세한 組織의 內容은 알 수 없다.

1982年 科學技術協會에 所屬된 專門學會는 物理學會 등 106여개에 이르고 있다.

中共의 人工衛星實驗內容

| 回數 | 發射日字 | 類 型 | 備 考 |
|------|------------|--------------|---------------------------|
| 1 | 1970. 4.24 | 人工地球衛星 | |
| 2 | 1971. 3. 3 | 科學實驗衛星 | |
| 3 | 1975. 7.26 | 人工地球衛星 | |
| 4 | 1975.11.26 | " | 지구궤도 3회 비행 |
| 5 | 1975.12.26 | " | |
| 6 | 1976. 8.30 | " | |
| 7 | 1976.12. 7 | " | |
| 8 | 1978. 1.26 | 科學實驗衛星 | 과학실험후 귀환 |
| 9~11 | 1981. 9.20 | 空間物理深測 衛星 | 우주공간에서 화력 실험 |
| 12 | 1982. 9. 9 | 科學實驗衛星 | 지구궤도 5회 비행후 四 川省 부근 귀환 |
| 13 | 1983. 8.19 | " | |
| 14 | 1984. 1.29 | 通信實驗衛星 | |
| 15 | 1984. 4. 8 | " | 125°E에서 赤道上空을 운행중임 |

資料：中國手冊，1984.

3. 言論·出版

가. 言論·出版政策

中共憲法 第 22 條를 보면 “國家는 人民과 社會主義를 위하여 奉仕하는 文學藝術事業·新聞·放送·TV事業·出版 發行事業·圖書館·博物館·文化館·其他 文化事業을 發展시키며 大衆的인 文化活動을 展開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처럼 中共은 大衆宣傳運動을 계속 중시해 왔으며,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道具로 活用해 왔다.

즉 中共에서의 言論·出版政策은 中共黨의 主要한 事業이며, 人民을 教育하고 그들의 方針을 선전함과 동시에 統治를 공고히 하며, 反對派 除去를 위한 方便등 政治煽動 手段으로써 利用되고 있다.

나. 新聞·雜誌

中共에서는 現在 人民日報등 전국지 33個·외에 성·시의 1級 行政區와 縣·市·自治區에도 日刊紙가 있으며 工場·인민공사 생산 대대에서도 新聞이 發行되고 있다.

1982 年度 全國紙 및 省級 地方紙의 總發行部數는 140 억부였으며, 外國通信社의 뉴스를 종합하여 “참고소식”이라 불리는 타브로이드 판 4 매로 編輯된 新聞도 550 만부나 發行하고 있다.

主要日刊紙（全國紙）現況

（1982年末 現在）

| 新聞名 | 發行地 | 創刊年度 | 發行部數 (萬部) | 社 長 | 備 考 |
|-----------------------|-----|------|--------------|-----|--|
| 人民日報 | 北 京 | 1948 | 520 | 秦 川 | 黨中央機關紙 |
| 光明日報 | 北 京 | 1949 | 120 | 두도정 | 원래 민주제 당과機關紙 였으나 '67年부터 共產 黨機關紙로 轉換, 科學· 教育·文化專門紙 |
| 羊城晚報 | 廣 州 | 1957 | 126 | | |
| 文 匯 報 | 상 해 | 1938 | 155 | | 文化革命의 旗手役割 擔 當, 教育·文藝·科學등 이 中心內容 |
| 新民晚報 | 上 海 | 1946 | 82 | 趙超構 | |
| 解放軍報 | 北 京 | 1956 | 156 | 劉宗卓 | 中共軍機關紙로서 總政 治部가 發行, 市販禁止 |
| China Daily (中國日報) | 北 京 | 1981 | 6.5 | 江牧岳 | 英文日刊紙로 外國人用 |
| 참고소식 | | | 550 | | 外國通信社의 뉴스綜合版 |
| 北京晚報 | 北 京 | 1958 | 95 | | |
| 經濟晚報 | 北 京 | 1983 | 94 | | 財政·商業分野의 國家 經濟委員會 機關紙 |
| 工人日報 | 北 京 | 1949 | 193 | | 中華全國總工會의 機關紙 |
| 中國青年報 | " | 1951 | 290 | 余世光 | 中國共產主義青年團 中 央委員會의 機關紙 |
| 體 育 報 | " | 1958 | 67 | 徐 才 | 體育專門紙, 國家體育委 發行 |
| 中國少年報 | " | 1951 | 835 | | 中國少年선봉대의 機關紙 |

資料：中國手冊，1984。

主 要 雜 誌 現 況

| 雜 誌 名 | 發 行 部 數 | 創 刊 年 度 | 社 長 | 備 考 |
|-----------------------------|---------|---------|-----|----------------|
| 紅 旗 북경주보 人民中國 중국화보 | | 1958 | | 黨理論誌 外國人 상대 |

다. 放 送 · 報 道

통신社는 國務院 直屬機關으로 모든 뉴스를 總體的으로 掌握하고 있는 新華社通信이 가장 큰 通信社 (1937年 創設)이며, 그밖에 中國通信社 (1952年 創設)가 있다.

新華社通信의 社長은 穆青으로 從業員 약 5,000名이며, 對外部·國際部·國內部·寫眞部·資料室이 있고, 全國의 特別市·自治區 등에 支社를 두고 있으며 각기관 공장에 通信員을 配置하고 있다. 또한 87個國에 海外特派員을 派遣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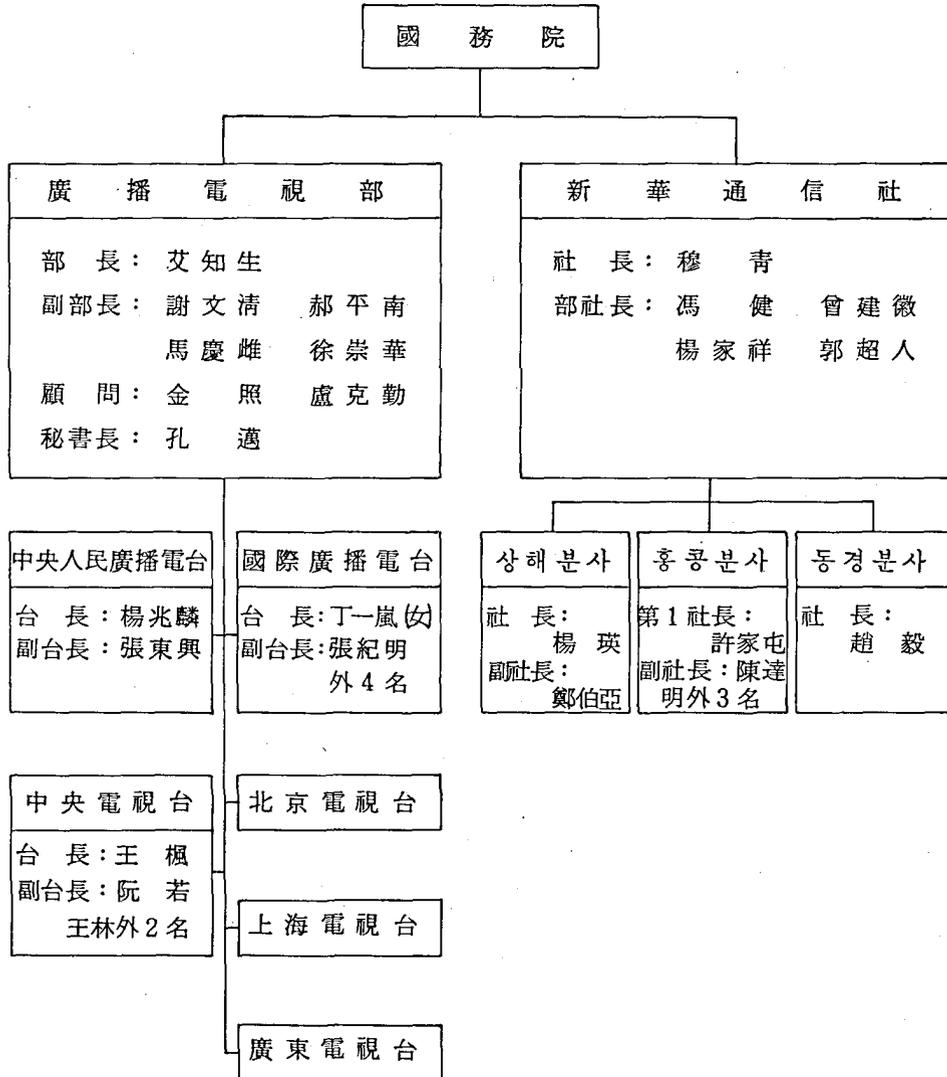
라디오放送은 廣播電視部の 指導를 받아 國內放送을 專擔하는 中央人民放送局 (1945年 創設) 밑에 各1級 行政區에 放送局이 있다. 그밖에 海外放送을 專擔하는 北京放送局 (1950年 創設)과 中央放送局 (1958年 創設)이 있다.

'81年末 現在 放送局 118個所, 送信 및 中繼所 482個所, 라디오 保有臺數는 1億 1,900萬臺를 突破하고 있다.

TV放送은 廣播電信部 傘下의 中央電視臺가 管掌하며, 1958年 大躍進運動때 發足한 中共 텔레비事業은 現在 텔레비局 47個, 中繼所 265局으로 發展하였다. 텔레비존의 普及도 繼續 擴大되고 있는데, '82年末 現在 1,650萬 家口에 普及되어 普及率 약 8%이다.

이밖에도 中共當局은 農漁村에 대한 有線放送網 施設을 擴充하여 施策弘報와 동시에 動員體制를 갖춰나가고 있다.

放送·通信 主管部署



4. 宗 教

가. 宗教政策

中共은 政權을 樹立한 후 ‘宗教·信仰의 自由’를 認定한다고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人民은 宗教와 信仰을 反對하는 自由가 있다”는 口號를 내걸고 信仰의 自由를 부정하였으며, 宗教를 人民의 精神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간주하는 등 唯物論에 立脚하여 모든 宗教를 迫害하였다.

특히 1950年 9月 基督教界는 ‘3自革新運動(自治·自養·自傳)’이라는 名目下에 帝國主義 國家와의 連繫를 끊고 各教會의 自體管理, 自體經費調達, 自體宣敎活動을 促求하는 한편, 國家施策에 적극 呼應하도록 強要하면서 外國宣敎師와 信徒들을 逮捕, 追放하는 등 宗教彈壓을 強行하였다. 더우기 文化革命中인 1966年에는 홍위병을 동원하여 宗教活動을 禁止케하고, 外國 ‘特務’에 대한 破壞活動을 名目으로 修女院을 閉鎖시키고 修女들을 強制 追放함과 동시에 寺刹의 佛像을 부수고 승려들을 還俗시키는 등 宗教抹殺政策을 強行하였다.

그러다가 鄧小平體制 登場以後 閉鎖되었던 “宗教研究協會”(’78. 3) 및 國務院傘下 宗教事務局(’79.1) 등 宗教活動과 關聯된 各種 團體와 機構를 復活시키고, 制度的으로 新憲法에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宗教信仰의 自由를 保有한다.”(第36條)고 規定하는 등 宗教에 대한 緩和政策을 취해오고 있다.

1979年 4月에는 그동안 外國人에게만 許容되었던 北京教會를 內國人에게도 開放하였고 “中國 基督教 三自愛國運動委員會” 常務委 擴大會議을 開催(’80.2.25 ~ 3.1, 上海)하여 聖經을 비롯한 宗

教書籍 發刊은 물론 同委員會 機關誌 “天風”을 發刊케하는 한편, 教職者 養成을 目的으로 南京神學院을 開設하고 地域單位 短期 神學 訓練班을 運營기로 決定한데 이어, “中國 基督教 第3次 全國會議” (’80.10.6 ~ 13, 南京)를 開催, 全國的 基督教業務 管掌機構로 “中國 基督教協會”를 新設하여 教牧業務, 傳導人의 養成, 聖經 및 宗教 書籍 出版, 教會 및 信徒間의 連絡業務를 專擔케 하였으며, 宗教에 관한 3自政策의 견지, 教會主權의 不侵害등 相互尊重의 前提下에 外國教會 및 信徒와의 友好的인 交流增進을 도모키로 하는 등 劃期的 措置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1年 2月 로마교황이 필리핀에서 對中共 關係改善意思를 表明했음에도 불구하고 答辯을 회피하다가 同年 6月, 22年만에 석방된 「도미니크 단」主敎가 바티칸에 가서 광동성 대주교로 任命받게 되자, 中共當局은 이를 적극 反對하면서 內政干涉이라고 로마교황청을 非難하였다.

아울러 1982年부터 實施된 宗教保護政策에 따라 中共 各地의 宗教活動은 서서히 回復되고 있다.

1985年 7月 8日字 人民日報는 中共當局이 정상적인 宗教活動을 許容하고 있으며, 寺刹과 教會등을 復元하고 있다고 報道하였다.

나. 教勢現況

(1985.6 現在)

| 宗教團體名 | 責任者 | 信徒數 | 비고 |
|----------|--------|--------|------------|
| 中國 佛敎協會 | 會長 趙樸初 | | |
| 中國 道敎協會 | “ 黎遇航 | | |
| 中國 이슬람協會 | “ 張傑 | 1,000萬 | |
| 中國天主教愛國會 | 主席 宗懷德 | 300萬 | 聖職者 3,000名 |
| 中國基督教協會 | 會長 丁光訓 | 200萬 | 聖職者 5,800名 |

5. 文學藝術

가. 文化藝術政策

中共에서는 建國初期부터 知識人들을 思想改造의 對象으로 삼아 統制하였으며, 특히 그들의 文章이나 作品을 통해 群衆路線을 이끌어 가는 한편, 反對派의 肅清을 위해서도 文學·藝術을 活用하였다.

특히 毛澤東은 中共革命鬭爭을 위한 思想改革을 위해 文藝人들이 앞장설 것을 要求하면서 “필과 창을 結合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文과 武의 統合活動을 主張하였다.

따라서 毛澤東은 知識人이란 “革命的 기질이 아주 크고 政治感覺이 풍부하여 改革에 있어서 先鋒的이기 때문에 橋梁의 役割을 맡아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이러한 毛澤東의 主張이 “知識人들은 文章이나 文學作品을 통해서 共產主義를 宣傳해야 하고 群衆을 동원하는데 寄與”하도록 知識人의 彈壓에 利用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毛澤東은 知識人에 대한 단순한 統制에 그치지 않고 감정의 개조까지도 要求하였으며, 이를 위해 強制手段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毛澤東이 作家들의 思想改造와 統制·文藝事業등을 모두 그의 革命鬭爭에 利用하려는 方式은 레닌의 ‘黨을 위한 文學藝術’ 主張을 模倣한 것이다.

毛澤東이 作家들에 대한 毛澤東思想의 學習과 實踐을 注入한데 이어, 群衆路線의 手段으로써 有效適切하게 活用한 事例는 역시 文化革命이라 할 수 있다.

毛澤東은 文革期間中 迂迴戰術을 驅使하여 文藝批判을 통해 思想鬭爭을 誘導하였고, 反對派를 肅清함으로써 文學藝術을 ‘權力爭奪

의 道具' 및 '政治權力的 시너'로 轉落시켜 버렸다.

이러한 毛澤東의 文藝政策에 의해 行政命令이 모든 文藝活動을 指導하게 됨에 따라 作家가 作品을 創作하는데 必要的 素材·樣式·完成時間 등이 規制되었고, 黨에 대한 批判禁止 등 많은 금제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1978年以後 鄧小平이 政治權力을 掌握하게 되자 毛澤東에 대한 過誤를 指摘하기 위해 文革前의 作品이나 作家들의 名譽를 回復시켰으며, 文藝活動에 대한 統制措置를 緩和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變化에 따라 過去에 지탄받던 作品의 出版이 許容되고 있으며, 특히 社會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暴露文學이나, 社會主義 悲劇을 그린 感傷적인 作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류의 作品들은 鄧小平勢力이 4人幫등 文革勢力을 攻擊하는데 좋은 宣傳資料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까지 받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시금 規制받기 시작하였다.

鄧小平은 第4次 文學藝術工作者 代表大會 (1979.10.30~11.15)에서 행한 演說을 통해 “文藝工作者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學習하는데 努力하고 自己生活에 대한 認識을 좀더 높여 實相을 分析하고, 現象을 투시하여 事物의 本質을 잡아내는 能力을 길러야 한다”고 指摘하면서 毛澤東의 文藝政策을 堅持하도록 主張하였다. 특히 胡耀邦은 ‘劇本創作座談會’ (1980.1.23~2.13)에서 文藝創作에 관한 基本原則을

- ① 마르크스主義의 文藝理論學習
- ② 毛澤東 讚揚·社會主義 優越性·共產黨信賴·危機意識 否定 등의 見解를 堅持
- ③ 暴露나 批判의 限界堅持 (官僚主義나 特權意識 批判禁止)

④ 作品素材를 毛澤東讚揚·4個現代化作業·中共革命史·中共歷史 등으로 擴大할 것을 希望하는 등

사실상 文藝活動을 統制하는 方針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실제 胡耀邦등 당권파는 또 다른 「문예정풍運動」이 發生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文藝活動의 基本原則에 어긋나는 경우, 出版禁止나 연금·公開批判 등 精神的 壓迫을 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中共에서의 文藝活動은 毛澤東執權 時節에 비해서는 상당히 緩和된 편이지만, 여전히 “文藝活動이 社會主義 建設에 寄與해야 한다”는 식의 政治宣傳의 道具에 불과할 뿐이며, 진정한 意味에서의 創作活動은 不可能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나. 文藝活動 現況

現在 中共에는 文藝關係 團體로 作家協會(주석: 파금), 劇作家協會(주석: 曹禺), 文化藝術聯合會(주석: 周揚) 등이 있으며, 1980년에는 國際펜클럽에 加入하여 中共펜센터(會長: 巴金, 會員 170名)를 創設하는 등 비교적 조용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1980年 胡耀邦의 文藝政策 指針發表以後 批判받는 作家와 作品의 例를 들어보면, 劉賓雁의 「人妖之間」, 諶容의 「人到中年」, 沙葉新的 「假如我是眞的」, 盧勇祥의 「黑玫瑰」(以上小說), 葉文福의 「葉軍, 不能這樣做」(詩), 白華의 「苦戀」, 「今夜月光燦爛」, 葉楠의 「巴山夜雨」, 雁翼의 「山城雪」, 대후영의 「사람」, 그밖에 「法廷內外」, 「瞬間」, 「越女哀歌」(以上映畫)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文藝人에 대한 批判의 例를 간단히 들어보면, 文化藝術聯合會 主席인 周揚이 1983年 3月 人民日報에 “마르크스主義의 몇 가지 理論問題에 관한 檢討”라는 論文을 게재하면서 ① 마르크스주

義的인 人道主義야말로 부르조아 人道主義를 克服할 수 있다. ② 문혁중의 人性論(人間性은 社會制度를 초월한다는 思考), 人道主義 批判의 過誤, ③ 社會主義 體制下에서도 소외는 있다. ④ 人民의 全面的 解放은 搾取制度 뿐만 아니라, 일체의 소외형식에서의 解放이다. 라고 갈파함으로써 自由主義的 理論을 展開하였으나 精神汚染 一消 運動으로 自我批判('83.11) 한바 있다.

또한 現職 人民解放軍의 群衆文藝工作者(무한군구 문화부 창작소 조 組長)인 白華는 1978年 이후 中共幹部 및 權力層의 腐敗를 暴露한 作品을 다수 發表하였으며, 1979年에는 '苦戀'을 發表하여 社會主義에 대한 知識人의 幻想과 苦難을 통해 人間의 本質이 自由에 있다고 證言하였다. 이 '苦戀'이 영화화되자 '해방군보('81. 4.17 ~ 20 字)는 "이 作品은 黨과 國家를 더럽히고, 愛國主義를 歪曲하고, 社會主義制度和 人民 民主主義에 대해 불만을 露出하였으며, 惡意的으로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을 비웃고 전반적으로 부정했다"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中共에서의 文藝活動은 社會主義 社會自體나 國家體制에 대한 挑戰은 용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作家들의 思想鬭爭에 대한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6. 體 育

가. 體育機構 및 活動

國務院傘下에 國家體育 運動委員會가 있으며, 下部組織으로 各省, 市委員會가 組織되어 體育活動을 적극 장려하는데 다른 共產國家와 같이 體育을 國民들의 健康뿐 아니라, 政治, 外交手段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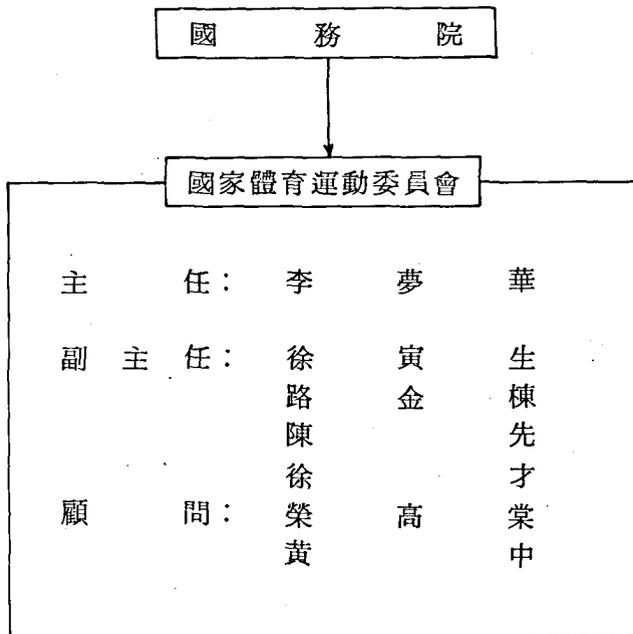
民間團體로는 中華全國體育總會가 있고, 그 傘下에 卓球協會등 34개 경기별 協會가 있다.

1979年 11月 國際올림픽委員會에 復歸하였으며, 1978年 第8次 아시안게임에 參加하였고, 1982年 12月 第9次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1개를 獲得, 1位를 하였다.

1980年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에 항의하여 不參하였으며 1984年 LA 올림픽大會에 처음 參加하였다. 1990年 第11次 아시안게임을 北京에 誘致하였다.

나. 體育團體 現況

○ 國家機構



○ 體育團體

| | |
|----------|--|
| 中華全國體育總會 | 主 席： 鍾 師 統 副 主 席： 杜前，榮高棠，黃中 外 20 名 秘 書 長： 宋 中 副秘書長： 何 振 梁 외 5 名 |
| 中國올림픽委員會 | 會 長： 鍾 師 統 副 會 長： 李夢華，路金棟，夏 翔 秘 書 長： 宋 中 副秘書長： 何 振 梁 |

○ 各種 運動協會

| | | |
|-----------|-----|-------|
| 中國籠球協會： | 主 席 | 牟 作 雲 |
| 中國蹴球協會： | " | 李 鳳 樓 |
| 中國排球協會： | " | 張 之 槐 |
| 中國卓球協會： | " | 徐 寅 生 |
| 中國배드민턴協會： | " | 朱 仄 |
| 中國테니스協會： | " | 呂 正 操 |
| 中國핸드볼協會： | " | 周 之 同 |
| 中國베이스볼協會： | " | 魏 明 |
| 中國陸上競技協會： | " | 李 文 耀 |
| 中國體操協會： | " | 蔣 佑 楨 |
| 中國水泳協會： | " | 張 希 浪 |
| 中國力道協會： | " | 陳 鐘 開 |
| 中國싸이클協會： | " | 劉 傑 |
| 아이스하키協會： | " | 董 念 黎 |
| 柔 道 協 會： | " | 李 凱 亭 |

※ 이외 19個協會가 있음(圍棋協會：主席 李夢華 包含)

7. 住民生活

가. 物 價

基本的으로 中國當局에서 價格統制를 하기 때문에 主要商品의 價格變動은 安定的이나, 최근 經濟改革措置등에 따라 약간의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各種 物價指數 變動推移

(1950 = 100)

| 區分 | 年度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
| 全 國 小 賣 物 價 指 數 | | 138.6 | 146.9 | 150.4 | 153.3 | 155.6 |
| 勞 動 者 (工 業) 生 活 費 價 格 指 數 | | 147.4 | 158.5 | 162.5 | 165.8 | 169.1 |
| 工 產 品 出 庫 價 格 指 數 | | 82.9 | 83.4 | 83.6 | 83.4 | 83.3 |
| 農 副 產 品 收 買 價 格 指 數 | | 265.5 | 284.4 | 301.2 | 307.8 | 321.3 |
| 農 村 工 產 品 小 賣 價 格 指 數 | | 109.9 | 110.8 | 111.9 | 113.7 | 114.8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主要商品 小賣平均價格

(單位：元)

| 品 目 | 單位 | 1982 | 1983 | 品 目 | 單位 | 1982 | 1983 |
|---------|--------|---------|---------|---------|----|------|------|
| 食 糧 | 噸 | 340.3 | 351.4 | 재 봉 틀 | 대 | 149 | 150 |
| 食用植物油 | 噸 | 1,969.1 | 1,929.8 | 손 목 시 계 | 개 | 89 | 86 |
| 돼 지 고 기 | 100 kg | 212.0 | 218.6 | 자 전 기 | 대 | 163 | 164 |
| 쇠 고 기 | 100 kg | 201.6 | 205.2 | 化 學 肥 料 | 噸 | 260 | 259 |
| 綿 織 物 | m | 1.60 | 1.80 | 石 炭 | 噸 | 35.8 | 34.1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나. 賃 金

中共은 賃金政策 改善을 위해 1977年以後 勞動報獎金, 現物給與 등 物質的 獎勵制度를 導入하여 段階的 賃金引上을 단행하는 한편, 1982年 4月 企業內의 賞罰을 規定한 企業職工賞罰制度를 實施하여 企業의 處分, 解雇權 등을 허용하였다.

또한 國務院은 超過生産 給與制 採擇을 決定하였다. 새로운 賃金制는 變動賃金制, 小그룹 超過生産 給與制 등 몇가지 種類가 있는데 變動制는 從末의 賃金中 大部分을 固定 基本給으로 하고 그 위에 報獎金, 利潤還元分, 諸手當을 合한 것을 企業經營 實績에 따라 分配하는 것이다.

1982年度 賃金總額은 882億元으로 全人民所有制 勞動者 職員分 709億元, 都市集團所有制 勞動者 職員分 173億元으로 1人當 年均 年俸은 798元이며, 全人民所有制 836元, 都市集團所有制 671元 이었다.

經濟 各部門別 1人當 平均賃金

(單位: 元)

| 內 容 | 全民所有制單位 | | 都市集團所有制單位 | |
|----------------|---------|------|-----------|------|
| | 1983 | 1982 | 1983 | 1982 |
| 全 國 平 均 | 865 | 836 | 698 | 671 |
| 工 業 | 878 | 864 | 684 | 659 |
| 建築業 및 資源探查 | 1,023 | 982 | 844 | 794 |
| 農林 · 水利 · 氣象 | 713 | 676 | 555 | 544 |
| 運 輸 · 遞 信 | 959 | 934 | 787 | 764 |
| 商 業 | 764 | 745 | 616 | 595 |
| 都 市 公 用 事 業 | 876 | 823 | 776 | 727 |
| 科 學 研 究 | 986 | 863 | 757 | 651 |
| 文教 · 衛生 및 社會福祉 | 861 | 835 | 685 | 648 |
| 金 融 保 險 | 820 | 797 | 688 | 679 |
| 機 關 團 體 | 927 | 827 | 696 | 641 |

資料: 中國統計年鑑, 1984.

이러한 賃金改善 措置에 따라 1977 ~ 1979 年間 勞動者 平均賃金은 15%, 農民平均所得은 各各 27.7%씩 上昇하였으며 1980 年以後에도 繼續 上昇趨勢이다.

다. 國民生活水準

| 項 目 | 單 位 | 1978 | 1983 |
|----------------------|----------------|-------|-------|
| 1. 城 鄉 住 民 收 入 | | | |
| 農 民 收 入 | | | |
| 1人當平均純收入(家計調査) | 元 | 134 | 310 |
| 勞 動 者 收 入 | | | |
| 平 均 賃 金 | 元 | 614 | 826 |
| 1人當每月可處分收入(家計調査) | 元 | 316 | 526 |
| 2. 消 費 (1人當/年) | | | |
| 食 糧 | 斤 | 391 | 465 |
| 食 用 植 物 油 | 斤 | 3.2 | 8.1 |
| 돼 지 고 기 | 斤 | 15.3 | 24.7 |
| 織 物 | 尺 | 24.1 | 31.0 |
| 日 用 消 費 品 | 元 | 28.8 | 53.6 |
| 3. 居 住 面 積 (1人當平均) | | | |
| 都 市 | m ² | 4.2 | 5.9 |
| 農 村 | m ² | 8.1 | 11.6 |
| 4. 交 通 | | | |
| 自 轉 車 (百人當) | 臺 | 7.7 | 15.4 |
| 都市의 公共車輛 (萬人當) | 臺 | 3.3 | 3.8 |
| 5. 貯 蓄 | | | |
| 城鄉住民貯蓄額 (年末基準) | 億元 | 210.6 | 892.5 |
| 1 人 當 平 均 貯 蓄 額 | 元 | 21.9 | 87.5 |

| 項 目 | 單 位 | 1978. | 1983 |
|-------------------------------------|-----|-------|------|
| 6. 文 化 | | | |
| T V (百人當) | 臺 | 0.3 | 3.5 |
| 라 디 오 (百人當) | 臺 | 7.8 | 20.9 |
| 新 聞 (百人當) | 部 | 3.2 | 4.2 |
| 圖 書 雜 誌 | 券 | 4.8 | 7.4 |
| 7. 教 育 | | | |
| 學 齡 兒 童 入 學 率 | % | 94 | 94 |
| 大 學 生 (萬名當) | 名 | 8.9 | 11.8 |
| 8. 衛 生 | | | |
| 病 床 (萬名當) | 個 | 19.4 | 20.7 |
| 醫 師 (萬名當) | 名 | 10.8 | 13.3 |
| 9. 就 業 | | | |
| 都市就業者扶養人口(1人當) (就 業 者 本 人 包 含) | 名 | 2.06 | 1.71 |
| 10. 小賣業, 飲食業, 서비스業 | | | |
| 店 鋪 (萬名當) | 個 | 13 | 64 |
| 從 業 員 (萬名當) | 名 | 63 | 163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라. 醫療·衛生

文化大革命以來 中國과 西洋醫藥의 長點을 結合하는 “中西結合” 醫藥普及에 注力하고 있다.

醫療衛生行政은 國務院 衛生部 소관이며, 計劃生育委員會가 設立되어 家族計劃을 推進하고 있고, 衛生部內에 藥政局, 醫藥管理局 등 이 設置되어 있다.

1983 年末 全國醫療衛生施設數는 196,017 個로, 省·地區(市) 縣의 行政區域 및 鐵道·交通·工鑛業企業을 單位로 設置되어 있다.

따라서 全國 2,000 個 縣에 最少 1 個의 綜合病院을 두고 5,000 곳의 人民公社에는 診療所를 設置하고 있다.

縣級以上の 施設은 소수의 漢方病院을 除外하고는 全民所有制이며 公社衛生院의 2/3 는 集團所有制 施設임이 特異하다.

1983 年末 全國病院은 66,662 個所, 總病床數는 234.2 萬個인데, 그중 病院의 病床數는 211 萬個로 人口 1,000 名當 病床數는 2.07 個이며, 病床不足對策의 하나로 家庭病床制度가 天津市 등에서 慢性疾患 患者에 實施되고 있다.

醫療衛生網은 省(省, 地區(市), 縣), 都市(市, 區, 街道), 農村(縣, 公社, 大隊) 3 級 醫療衛生網으로 大別된다.

患者는 1 次 醫療施設(都市→衛生站, 農村→大隊衛生所, 企業→醫務室 등)에서 診療를 받은 후 重症 또는 精密檢査 등이 必要한 경우 次上級 醫療機關에서 診療를 받는 分級醫療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醫療衛生從事者는 83 年末 現在 醫師 588,000 名, 漢方醫師 313,000 名, 看護員 596,000 名으로 人口 1,000 名當 1.33 名이다. 또한 衛生技術人員은 325.3 萬名으로 每年 增加하고 있으나, 半農半醫의 非專門要員은 減少趨勢에 있어 農村赤脚醫는 1983 年 127.9 萬名(1982 年: 134.9 萬名), 農村生産隊衛生員은 138.8 萬名('82: 164.8 萬名), 農村助産員은 54 萬名('82: 55 萬名)에 이르고 있다.

全國醫療衛生施設數 (1983年)

(單位：個)

| 區 分 | 施 設 面 |
|---------------|---------|
| 病 院 | 66,662 |
| (縣及縣以上病院) | 10,466 |
| 療 養 院 (所) | 606 |
| 外 來 診 療 所 | 115,826 |
| 專 科 防 治 所 (站) | 1,326 |
| 衛 生 防 疫 站 | 3,274 |
| 母 子 保 健 所 (站) | 2,649 |
| 藥 品 檢 查 所 (室) | 1,191 |
| 醫 學 研 究 機 構 | 301 |
| 其 他 | 4,182 |
| 合 計 | 196,017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年版。

全國病院・病床數 (1983年)

(單位：個)

| 區 分 | | 施 設 數 | 病 床 數 |
|--------------------------------------|-------------------|-----------|-----------|
| 縣 · 縣 級 以 上 病 院 | 綜 合 病 院 | 8,370 | 1,039,911 |
| | 漢 方 病 院 | 965 | 71,114 |
| | 醫 學 院 (校) 附 屬 病 院 | 157 | 71,612 |
| | 傳 染 病 院 | 125 | 21,580 |
| | 精 神 病 院 | 299 | 58,449 |
| | 結 核 病 院 | 114 | 26,802 |
| | 母 子 保 健 院 | 202 | 18,075 |
| | 兒 童 病 院 | 25 | 5,818 |
| | 其 他 專 門 病 院 | 209 | 33,190 |
| | 小 計 | 10,466 | 1,346,551 |
| 農 村 公 社 衛 生 院 | 55,559 | 746,169 | |
| 其 他 | 637 | 16,851 | |
| 合 計 | 66,662 | 2,019,571 |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全國醫療衛生施設 從事者數 (1983年)

| 區 分 | | 名 數 (萬 名) |
|------------------|-----------------|-------------|
| 技 術 人 員 | 漢 醫 | 31.3 |
| | 漢 方 藥 劑 士 | 14.4 |
| | 洋 醫 師 | 58.8 |
| | 中 西 醫 結 合 高 級 醫 | 0.2 |
| | 藥 劑 師 | 3.4 |
| | 檢 查 技 師 | 2.4 |
| | 其 他 技 師 | 2.0 |
| | 洋 醫 士 | 45.0 |
| | 看 護 員 | 59.6 |
| | 助 產 員 | 7.6 |
| | 藥 劑 士 | 8.6 |
| | 檢 查 技 士 | 6.9 |
| | 其 他 技 士 | 5.7 |
| | 初 級 衛 生 技 術 人 員 | 79.5 |
| 小 計 | 325.3 | |
| 非 技 術 人 員 | 83.7 | |
| 合 計 | 409.0 |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

中共에는 일찍부터 醫療保險制度가 發達했는데，

公費醫療의 경우，國家機關 幹部·職員，大學·專門學校 學生 등을 對象으로 醫療費는 本人負擔이 없고，家族은 50%를 負擔하며 1952年부터 實施하고 있다.

勞動保險醫療의 경우，全國의 工·鑛業企業의 勞動者，職員 등을 對象으로 醫療費는 本人負擔이 없고，家族은 50%負擔하는데 1951年부터 實施하고 있다.

農村地域에서는 協同醫療를 實施하고 있는데 人民公社社員을 對象으로 하는 集團所有制에 基礎를 둔 福祉事業이다. 公社大隊의 企業 副業收入 또는 公益金 등을 기금으로 하여 運營하며, 給付內容은 負擔能力에 따라 醫療費全額을 免除 또는 醫療費 一部 個人負擔, 醫療費 個人負擔 등으로 多樣하다.

平均壽命은 1949年 35歲에서 69歲('82)로 延長되었다.

8. 社會問題

가. 概 觀

中共은 實用主義路線에 依한 對外開放政策에 따라 西歐文物이 浸透하게 되자 現實에 不滿을 품은 靑年들이 航空機 拉致, 亡命事件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當局은 外國人과의 接觸을 制限하고 西方文化의 流入을 規制하는 한편, 幹部黨員의 經濟犯罪, 靑年들의 刑事犯罪, 摘發運動을 展開하면서 1983年末부터는 精神汚染 一掃에 注力하고 있다.

精神汚染 一掃運動 推進

1983年 10月 11日의 黨 第12期 2中全會에서 “整黨運動”을 決定(思想統一, 作品의 整頓, 規律強化, 組織의 醇化)한後 同 23日 王震 中央黨 學校長이 2中全會에서 “鄧小平同志가 우선 解決하여야 할 것은 右傾을 연약과 해이로 보는 傾向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는 중대연설을 했음을 밝힌이래, “資本主義의

腐敗한 思想에 依한 精神汚染” 一掃運動이 展開되었다.

이러한 運動은 經濟自由化와 對外開放政策에 따른 弊害를 除去하기 위하여 이미 그 以前부터 展開되어 物質文明과 同時에 精神文明 建設의 重要性이 強調되어 왔다.

1982年 1月부터 經濟分野에서의 重犯者摘發 運動이 展開되어 '83年 4月까지 192,000件 以上이 摘發되었으며, '83年 8月부터는 刑事犯罪者 一掃運動을 展開하여 2個月間에 10,000名 以上の 犯罪者가 處刑당했다하여 國際 人權協會에서 李先念 國家主席에게 集團處刑 中止를 要請(10.28)한바 있다.

나. 人口問題

中共에서는 人口抑制을 基本國策으로 定하고 있다.

趙紫陽은 '82年 8月(1) 遠대한 經濟·社會發展 計劃에 있어 人口對策計劃이 그 중 重要的 部分이며 (2) 人口統制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4大現代化 建設의 앞날에 重大한 影響을 끼칠 것이며, (3) 우리는 今世紀末까지 人口를 12億以內로 統制할 것임을 다짐한바 있다.

1982年 7月 第3次 全國人口調查에서 總人口는 10億 3,188萬 2,511名으로 集計되었으며, 自然增加率은 1.449%로 發表되었다.

政府는 만혼(男 27歲, 女 25歲)을 獎勵하며, 「한아이갓기 運動」을 展開하면서 세子女를 가진 夫婦에게는 그 아이가 16歲에 이르기까지 收入의 10%를 罰金으로 徵收하는 한편, 一部 農村에서는 産兒制限 以外的 아이들에게는 自留地를 配分하지 않고, 한 아이의 家庭에는 食糧, 獎勵金 配分에 特惠를 주며, 生産隊와 生産高의 請負契約時, 計劃出産에 關해서도 契約하는 2중請負制 實施 등의 措置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한 아이 政策에 의해 女兒를 出産하면 죽이는

事件이 빈발하고 教育에 있어서도 한아이와 한아이가 아닌자에 대한 差別등의 問題點이 일어나고 있다.

다. 犯 罪

文化革命 期間中에 農村과 變방에 配置되었던 知識青年 100萬名이 4人幫 실각후 都市로 돌아와 失業과 犯罪등의 社會不安이 增加되자, 刑務所 以外에, 有罪判決을 받은 者를 強制勞動에 從事시켜 更生을 圖謀하는 勞動改造所와, 刑法에는 抵觸되지 않으나 治安에 害를 미치는 者, 犯罪常習犯에게 行政措置로서 勞動教育을 시키는 勞動 교정소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1982年以來 治安維持, 外國公館 警備를 위해 軍·公安部·消防隊를 합친 “人民武裝 警備隊”를 1級 行政區域에 設置했다.

또한 4人幫 축출후 法治國家를 指向하는 法體系 整備를 서두르고 있다.

1979年 6月에는 新刑法, 刑事訴訟法이 制定되고, 司法部가 復活되었으며, 1982年 12月 制定된 新憲法에 의해 超法規的 處分, 逮捕가 횡행하던 문혁기를 反省하고 社會主義的 民主化를 強調하고 있다.

1982年 4月 全人大會議에서는 惡質的 經濟犯을 死刑에 處할 수 있도록 刑法을 改定했고, 1983年 9月에는 “社會治安을 威脅하는 犯罪者를 嚴罰에 處하는 決定”을 採擇, 強盜·人身買賣 賣春業者 등에 死刑을 包含한 重罰을 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80年度에 辯護士制度가 復活하여 '82年末 現在 5,500名의 專任辯護士가 활동하고 있다.

最近 中共社會의 開放措置에 따라 性的 犯罪가 增加하고 있어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라. 勞動問題

1983 年末 勞動者 數는 4 億 6 千萬名으로 全人民 所有制 經營體 8,771 萬名, 都市集團 所有經營體 2,744 萬名, 地方등 個人勞動者 3 億 4,489 萬名, 失業者 304 萬名이며 農村勞動人口 3 億 2,000 萬名이다.

部門別 勞動者數 (1983 年末)

(單位: 萬名)

| 部 門 | 合 計 | 全 民 所有制 | 都市集團 所 有 制 | 都市個團 勞 動 者 | 都市集團 및 個體勞動者 |
|---------------------|--------|------------|---------------|---------------|-----------------|
| 工 業 | 6,023 | 3,552 | 1,574 | 24 | 873 |
| 建築業 및 資源探查 | 1,481 | 695 | 302 | 1 | 483 |
| 農林·水利·氣象 | 32,310 | 803 | 62 | | 31,645 |
| 運 送 · 遞 信 | 906 | 526 | 215 | 4 | 161 |
| 商 業 | 2,012 | 1,201 | 405 | 200 | 206 |
| 科學研究·文教社 社 會 福 祉 | 1,700 | 1,199 | 112 | 1 | 388 |
| 機 關 團 體 | 646 | 576 | 15 | | 55 |
| 其 他 | 726 | 219 | 59 | 1 | 447 |
| 全 國 總 計 | 46,004 | 8,771 | 2,744 | 231 | 34,258 |

資料: 「中國統計年鑑」, 1984.

勞動者 雇傭政策을 보면,

從來에는 國家에 의하여 割當政策이 施行되었으나 最近에는 國家 勞動部門의 추천에 의한 就業紹介, 自由意思에 의한 集團的 就業, 個人營業의 세 가지를 結合하는 方針이 마련되어 商業 飲食業 서비스業 에도 힘쓰고 있다.

1983 年 2 月 勞動人事部는 從來의 固定勞動者制 (終身制) 를 改

定하여 業務內容, 期限, 報酬 등 勞働者와 採用者側의 權利 義務를 規定하는 勞働契約制를 導入하여 9 個省, 市, 自治區 工場勞働者 16 萬名에 示範的으로 實施하고 금후 全般的으로 實施할 計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中共全體가 低開發狀態이기 때문에 失業者가 많은 形편이며, 그 賃金도 낮기 때문에 不滿이 間或表出되고 있고, 潛在失業者까지 勘案한다면 中共에서의 勞働問題도 앞으로 社會問題로 대두될 可能性이 있다.

9. 交通·通信

가. 交通

輸送分野의 近代代는 아주 遲延되었다. 特히 鐵道, 自動車道, 港灣 등은 物質流通의 애로점으로 되고있어 第6次 5 個年 計劃에서 交通運輸, 通信建設에 298 億元을 投資하려 하고있다. 全國交通會議 (78年 大慶)에서 1985年까지 ① 5大 重點港인 上海, 天津, 黃埔, 連運, 秦皇島의 近代化, ② 北京 抗州大運河 建設, ③ 道路의 大幅增設을 決定했다.

解放當時 22,000 km였던 鐵道網은 1982年末로 50,500 km (1,700 km 電化), 旅客運送 10 億名, 貨物運送量 11 億屯이었다.

第6次 5 個年 計劃期間인 1985年까지 新設 2,000 km, 複線化 1,700 km, 電鐵化 2,500 km를 계획하고 있다.

自動車道路는 '82年에 90,693 km, 旅客運送 30 億名, 貨物運送 75,000 萬屯이며 '82年에 처음으로 高山道路인 天山道路 532 km가 開通되었다.

保有船舶은 '82 年末 現在 552 隻 1,000 萬屯이며, 100 個國과 425 個 定期航路가 있으며 輸送量 4,606 萬屯에 이르고 있다.

'82 年에 美國과 콘테이너航路를 開設하였으나 港灣設備가 落後되어 貿易을 遲延시키고 있기 때문에 上海港 天津新港 廣州港에 콘테이너 專用부두를 建設中에 있다.

內陸水運에서는 5 大水系 (揚子江, 珠江, 淮河, 黄河, 海河)를 中心으로 發達하여 內陸水路는 8,600 km에 達하며 '82 年度 內陸 貨物輸送量이 44,329 萬屯이었고 沿岸 港灣의 貨物取扱量은 23,764 萬屯이었다.

航空分野는 1949 年 11 月 非軍事目的의 航空事業을 擔當하는 中國民用航空局이 設立되어 1950 年 8 月 이래 航空輸送業務를 관장하고 있다. 現在 中共에는 中共航空社 (Air China)가 國內·國際線을 運航하고 있으며 國際線은 26 個 航路, 18 個國 21 個都市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19 個의 外國航空社가 中共에 취향하고, 中共의 國際空港도 北京, 廣州, 昆明, 上海, 瀋陽, 등 7 個 都市에 있다.

大慶-大連, 秦皇島間 2,000 km 등 全國에 6,790 km의 原油用 送油管이 있으며 天然가스用은 四川省에 1,650 km 있다.

나. 通 信

郵遞局 電話局 49,000 個所, 營業總額 20 億 4,000 萬元 (82 年)이며 電話保有臺數는 100 名當 0.43 臺 (82 年)로서 落後되어었으나 1985 年까지 都市電話 70 萬臺를 增設하여 270 萬臺로 하며 1級 行政區의 長距離電話를 自動化하며 北京, 上海, 廣州의 國際電話의 改善을 圖謀하고 있다.

다. 外國人의 旅行

中共은 從來 團體觀光만을 許容해오던 政策을 緩和, 1982年 10月 부터 一部地域에 대한 外國人의 자유로운 個人旅行을 許容하는 한편, 全國을 甲類(北京市, 延吉市 등 70個 都市), 乙類地區로 나누어 점진적인 開放措置를 취하고 있다.

1985年 2月에는 開放地域을 擴大하여 甲類地區가 100個 地域, 乙類地區가 159個 地域에 이르고 있으며, 甲類地區에서는 入國査證으로 旅行이 可能하지만 乙類地區는 旅行前에 旅行許可證을 발급 받아야 한다.

VII. 統一戰略

1. 中國統一問題의 特性

中國은 阿片戰爭(1840)以來 西歐列強의 侵略을 받아 各種 利權을 빼앗기고 不平等條約에 의해 領土마저 割讓하게 되자 國權回復을 위한 鬭爭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中共은 統一問題를 台灣解放 뿐만 아니라 蘇聯 등 帝國主義 國家에 빼앗긴 淸조씨의 領土까지 回復하는 問題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便宜上 中共, 台灣關係를 주로 다루겠다.

辛亥革命(1911)으로 建立된 中華民國은 北伐에 의해 各軍閥까지 打倒(1928)함으로써 統一國家의 基礎를 確立하였고 抗日戰爭도 中國의 勝利로 이끌어 거의 全國土를 收復하여 事實上的 完全統一을 이루었으나, 소련의 支援을 받은 中國 共產黨의 背信에 의해 오히려 中國大陸을 喪失하고 台灣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中共의 建國(1949.10.1)을 契機로 中國이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으로 分裂되었는데, 現在의 分裂은 過去歷史와 같이 單純한 統治權의 分合過程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複雜한 要素를 含蓄하고 있다. 즉, 統治權의 分散은 물론이고 思想的 對立, 制度的 相異, 형성되는 文化形態의 相反 등 단지 統治權의 分散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分裂의 特質은 第2次 세계대전 이후 分斷된 國家가 갖는 共通된 特質로서, 韓國·獨逸도 一定問題에 있어서는 共通的 性格을 갖는다. 이러한 現中國의 分裂特質을 理解하는 것이 바로 中國의 統一 問題를 論議하는 出發點이 된다고 하겠다.

2. 中共統一戰略의 本質

長期間에 걸쳐서 中共은 대만에 대하여 平和的 政治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의 획득이 바로 統一을 完成하는 것이요, 또한 「中國 問題」를 解決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中共의 統一戰線 운동은 公산당의 정권 이익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公산당의 理論과 그 活動 中에서 「정권 탈취」가 公산당 운동의 제일 重要的 中心 活動이었으며, 대만의 획득은 중국통일의 일부분일 뿐이고 共產主義者들의 窮極的 目的은 중국 내에서의 完全한 계급정권의 建立이라 할 수 있다. 만약 合理的 制度 問題에 대하여 會談이 되지 않으면 意識 形態上 全體 中國人의 要求에 適應할 수도 없으며, 「中國 問題」는 自然히 解決할 수 없게 된다. 또한 形式的 통일만 강조하다 보면 永久的 統一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觀念의 차이지만 中共의 平和的 政治 攻勢는 항상 「술수」의 段階에서 運用되었고, 中共이 公산정권의 利益과 安정만을 도모하였는바, 「中國 問題」의 진정한 解決段階라 할 수 있는 「공존」의 段階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中共의 統一戰略은 毛澤東 思想에 基礎한 統一戰線 戰略에 立脚한 것이다.

統一戰線이라는 用語는 1921年과 1922年에 開催되었던 第3次 및 第4次 코민테른 大會에서 쓰기 시작하였다.

當時 이 戰略은 유럽 특히 獨逸 革命의 失敗로 武裝暴動 戰術代身

에 大衆의 支持를 獲得함으로써 共產黨의 劣勢를 挽回 補完하며 敵의 勢力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레닌의 支配下에 있던 코민테른에서 採擇한 革命退潮期 戰術이다.

코민테른 第3次 大會에서는 “統一戰線 提제”를 採擇하고 社會民主黨과의 共同戰線 結成을 決議하였고, 第4次 大會에서는 “戰術에 관한 提제”를 採擇하고 처음에는 社會民主黨의 여러 指導者들과 行動統一을 期하는 “위로부터의 統一戰線”에 重點을 두었으나 이것이 失敗하게 되자 勤勞大衆을 對象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統一戰線 戰術”로 轉換하였다.

이와같은 코민테른의 戰略戰術을, 中國共產黨이 積極 利用하였는바, 2次에 걸친 國共合作이 바로 統一戰線의 具體的 表現이었다.

이렇듯 統一戰線 戰略은 劣勢한 共產黨이 自己들의 窮極的 目標을 隱蔽하고 時期와 環境에 맞는 融通성과 適應性 있는 綱領을 내세워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諸政派와 심지어는 政敵과도 一時的인 聯合戰線을 形成한 後 多數의 힘을 빌어 共同的 目標을 達成한 後에는 內部로부터 서서히 浸蝕하여 分裂을 助長하고 各개격과 함으로써 最後의 勝利를 爭取하려는 計略인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統一戰線 戰略은 毛澤東 思想에 基礎하여 展開되었는바, 毛澤東 思想에 立脚하여 그 本質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大衆路線

毛澤東 思想의 特徵의 하나는 大衆路線에 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中心路線을 毛澤東은 中國이 後進 農業國이므로 壓倒的 多數인 農民中心의 大衆路線으로 變形시켰다.

共産黨이 國民黨에 比하여 軍事的으로 劣勢하였고 그것을 政治的으로 挽回하기 爲하여 大衆의 支持와 統一戰線의 展開를 強調하였으며, 이 大衆路線이 軍事的으로는 게릴라전을 바탕으로 하는 人民戰爭論으로 나타났다. 毛澤東은 게릴라部隊와 大衆과의 關係를 “물과 고기”의 關係에 비유하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게릴라부대는 大衆의 支持없이 살 수 없다고 強調했다.

그는 農村에서 農民中心의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都市에 있는 有産階級(國民黨)을 包圍, 陷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農村에 의한 都市包圍戰略이다. 그리고 이러한 農民을 中心으로 한 大衆路線의 政府形態에서는 聯合政府論, 그리고 權力構造面에서는 聯合獨裁論으로 表現하였다.

나. 過渡期的인 階級聯合

毛澤東은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矛盾의 辯證法的 統一法則을 統一戰線戰略에 適用시켜 矛盾된 階級과의 聯合戰略으로 使用하였다.

中國社會의 特徵을 勞動者, 農民, 兵士와 軍閥, 官僚, 地主, 資本家와의 對立으로 보고 敵對勢力에 對한 友好勢力의 同盟을 強調하여 階級聯合의 戰略을 採擇하였다. 階級聯合에 의한 統一戰線이 政府形態에 있어서 聯合政府論으로 나타나고, 權力構造에 있어서는 民族資本家, 小市民, 勞動者, 農民의 聯合에 의한 聯合獨裁論으로 나타났다.

共産黨 獨裁에 이르는 過渡期에 있어서는 分離보다는 階級の 聯合에 의해 그들의 劣勢를 挽回하고자 하였다.

다. 持久的인 階級鬭爭

統一戰線戰略은 階級聯合의 性格을 띠고 있는 同時에 階級鬭爭의 性格도 가지고 있다. 毛澤東은 社會主義속에서 아직도 階級이 存在

하고 있음을 強調하면서 階級間的 矛盾과 階級鬭爭은 共產主義가 完全히 實現될 때만이 終식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階級間的 聯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階級鬭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矛盾·對立이 解消되어 統一되면 새로운 矛盾·對立이 發生하여 鬭爭하게 된다고 하여 對立鬭爭의 恒久性을 強調했다.

라. 3 段階 게릴라 戰術

毛澤東의 게릴라戰術은 1927-1935 年에 이르는 9 年間 井崗山鬭爭과 다섯 차례의 “反掃共鬭爭”, 그리고 長征을 통하여 實戰經驗에서 얻은 弱者의 戰法으로서 그는 軍事戰에서만 게릴라戰術을 利用한 것이 아니라 政治戰이나 心理戰, 平和協商에서까지 이를 活用하였다.

退却戰術은 劣勢한 自身을 隱蔽, 優勢한 敵이 對話協商에 이르기까지 이를 活用하였다.

退却戰術은 劣勢한 自身이 優勢한 敵에 對抗할 때, 自身을 옹호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敵의 追擊을 中止, 防禦하면서 自體整備와 武力의 強化로 蘇生發展할 수 있는 力量을 強化하는 것이다.

이 時期에 展開한 戰術의 대표적인 것은 自身の 孤立을 막을 수 있도록 外廓團體等 各種 機構들을 活用하여 反 孤立主義 戰術을 展開하여 國民輿論과 外勢支持를 獲得하려는 것으로서 그 實例는 第 1·2 次 國共合作時 蘇聯, 코민테른의 合作操縱, 抗日救國會 등의 外廓團體를 利用한 事實이다.

防禦戰術은 政治的 防禦手段이며, 戰略的으로는 防禦이지만 戰術的으로는 攻擊을 위한 反擊과 進擊의 防禦로서 이 時期에는 平和協商을 利用하여 本格的으로 敵陣을 攪亂하며 後方基地를 擴大하는 등 抗日戰爭, 그리고 1940 - 1944 年 사이에 展開된 第 1 - 3 次 國共協商을 들 수 있다.

· 攻擊戰術은 政治的 積極攻勢를 통해 外勢를 擴大包攝하여 中立化를 促進시키는 데 注力하고, 退却 防禦戰術로 自體力量을 充分히 養成하고 敵後方に 根據地를 擴充하여 敵·我的 優劣에 變化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攻擊과 協商의 2重戰術을 구사하여 敵을 孤立시키고 孤立된 敵에 대해 最後의 大攻勢를 敢行하여 敵을 打倒하기 위한 武裝暴動을 表面的으로 合理化시켜 外勢와 國民의 支持를 얻어 그들의 目的을 貫徹시키는 것이다.

마. 合作戰術

聯合, 合作, 聯立등의 提案은 共產國家들의 統一戰略에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中の 하나이다.

그런데 聯合合作의 意味는 西歐概念의 Federation이나 Confederation과는 다른 annexation의 意味에 가깝다.

레닌은 하나의 民族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가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過程에서 過渡的인 政府形態가 Federation이라고 했다. 中共의 境遇에는 中共이 確固한 프롤레타리아로서 支配的 地位에 오르기까지의 過程으로서 國共合作 形式을 취할 따름인 것이다.

3. 中共統一戰線戰略의 展開過程

蘇聯革命의 影響을 받아 1921年 7月 創黨된 中國共產黨은 第1次(1923-27), 第2次(1940-46) 國共合作을 통해 自己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는데 注力했다.

革命의 참모부로서 役割하는 中國共產黨을 組織·強化하는 한편, “政權은 총뿌리로 부터 나온다”는 毛澤東의 暴力革命論에 따라 革命의 武裝力量을 擴大시켰다.

또한 毛澤東의 矛盾論에 立脚하여 國民黨 內部葛藤을 調整, 國民黨의 反共體制를 弱화시키는 工作을 꾸준히 遂行하는 한편, 農民을 주축으로 各階各層을 反帝·反軍閥·抗日을 위한 統一戰線으로 규합, 國民黨 政府를 完全히 孤立시키는데 成功하여 1949年 毛澤東이 영도하는 中華人民共和國를 樹立하였다.

中共은 政府樹立 以後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政策中 統一政策에 最優先을 두고 있으며,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努力을 傾注하여 왔다.

最近 中共은 그동안 일관해 오던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이라는 統一戰略을 “中國統一”, “臺灣의 祖國復歸”라는 戰略으로 轉換하면서 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고 있다.

즉 中共은 武力에 의한 臺灣問題의 解決이라는 종래의 方式이 困難하게 되자 “平和的 方法”을 主要政策으로 採擇하는 한편, 香港 返還協定締結 以後에는 소위 “1國2體制論”을 提起하면서 平和統一攻勢를 積極 展開하고 있다.

가. 第1次 國共合作 (1923 - 27)

中國共產黨이 國民黨과의 合作을 正式 主張한 것은 코민테른 第4次大會(1922년 11월)에서였다.

그 전 해인 1921년 12월 모스크바의 遠東勞動者人民大會에서 極東 專門家 사파로프는 反封建 反植民國家인 中國은 革命運動의 第1段 階로 革命政黨인 國民黨과 合作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코민테른 4次大會에서 中國은 帝國主義 打倒를 위해 反帝國主義 統一戰線 確立이 必要하므로, 中國共產黨員은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加入하여 民族革命運動에 加담한 勞動者 農民을 煽動 包攝, 小브르조아階級과 聯合하여 反帝國主義 鬭爭을 展開하도록 強調하는 決議文을 採擇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1월 코민테른 執行委員會가 開催되었는데 이 會議에서 ① 國民革命의 主導勢力은 國民黨 뿐이라고 國民黨의 優越性을 強調하고 ② 中國現實은 孤立된 勞動運動勢力이 미약하며, 當面課題로서 帝國主義와 軍閥을 반대하는 民族運動 展開를 強調하고 ③ 中共黨은 統一戰線안에서 共產黨의 獨自性을 維持하며 ④ 國民黨에 加擔하여 勞動者를 包攝하여야 한다는 등 7個項에 合作指示를 하였다.

(1) 國民黨의 立場

國民黨을 領導하고 있던 孫文은 1921년 廣東政府의 總統이 되자, 奉天軍閥 張作霖과 段祺瑞와 3角同盟을 맺어 北京政權을 掌握한 오 패부를 打倒하려 하였으나 軍閥인 陳炯明과 많은 軍幹部들의 背反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背反한 陳炯明軍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孫文의 예하부대는 革命精神이

透徹치 못하였으며 눈앞의 利害關係에 左右되어 軍幹部들의 背反事態가 連發하였다.

當時 廣東일대를 中心으로 한 廣東政府는 그 勢力이 미약한 처지였으며 孫文은 陳炯明의 背反後 歐美諸國과 日本에 國民革命支援을 要請하였으나 列強들은 全國에 산재한 軍閥과 聯合하여 國土의 分割을 劃策했고, 孫文의 支援要請에 대해서 오히려 敵對的反應을 보였으나 유독 蘇聯만이 好意的 態度를 보였다.

이러한 어려운 興件下에서 孫文은 共產黨과 合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結果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첫째, 陳炯明의 背反으로 야기된 黨內 紊亂한 기풍을 바로잡고 黨과 軍의 改편을 통해 참신한 黨을 再建

둘째, 비교적 지방조직이 強하고 大衆包攝이 容易한 中共黨의 組織力을 活用하고 蘇聯共產黨의 大衆工作手段과 선전 및 啓蒙手段을 活用하여 勞働者 農民 青年運動을 強化함으로써 中共黨으로 하여금 三民主義에 基礎한 國民革命運動에 參加시켜 이를 동화코자 하였고,

셋째, 孫文路線을 支持해준 蘇聯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國內親蘇勢力과, 이로 인해 自然發生的으로 유행하는 社會主義 思想에 매력을 가진 知識層과 共產主義者를 包攝하여 大衆의 支持와 蘇聯의 援助를 얻어 反帝 反封建의 國民革命運動을 促進하여 軍閥을 打倒하여, 民族的인 國土統一의 念願을 實現시키겠다는 의도였다.

(2) 合作 經緯

國共合作이 이루어진 것은 孫文의 親蘇政策 때문인데 孫文이 公式的으로 親蘇政策을 밝힌 것은 1922年 1月 蘇聯特命全權大使 요페와 會談後 發表한 4個項 共同宣言이었다.

- ① 中國은 共產制度나 소비에트 制度를 實施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情勢가 아니다. 中國의 當面問題는 統一完成과 完全獨立 國家 樹立에 있다. 蘇聯은 이에 同情과 援助를 提供할 用意가 있으며, 또 中國은 蘇聯國民의 熱烈한 同情을 받아야 한다.
- ② 帝政 러시아시대에 締結된 中·蘇 不平等條約의 폐기에 關한 蘇聯의 誠意를 促求하고 별도로 中·蘇交涉을 開始할 것을 準備하고 또 希望한다.
- ③ 東支那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適當한 中·蘇會談에서 解決할 수 있다. 쌍방은 實際的인 利益과 權利를 고려하여 適當한 시기에 改善할 수 밖에 없다.
- ④ 蘇聯은 外蒙古에서 帝國主義 政策을 實施하여 그것을 中國과 分離시킬 의사와 目的이 없다. 또한 蘇聯軍隊는 外蒙古로부터 즉각 撤收할 必要가 없다.

이상과 같은 共同宣言은 國民黨의 親蘇路線을 밝힌 것으로서 國共合作의 契機가 되었다.

親蘇路線으로 轉換한 孫文은 1924年 1月 廣東에서 165名의 代表가 參加한 가운데 國民黨 第1次 大會를 開催하였다.

그런데 中共黨員으로서 代表로 選出된 사람은 湖南代表 사진, 임조함, 라데, 하회, 毛澤東, 浙江代表, 호공명, 直隸代表 우수덕,

한인부 山東代表 왕진의, 安徽代表 陳獨秀, 湖北代表 瞿대비, 廣東代表 鄧평산, 방서인, 北京代表 李大釗 등이 참가하였다.

同大會에서 中國共產黨은 國民黨에 加入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個人資格으로 加入하는 것이기 때문에 二重 黨籍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中國共產黨은 코민테른의 世界的 組織의 한지부가 되기 때문에 國民黨은 이러한 組織을 입당시킬 수 없다고 主張함으로써 二重 黨籍 規制問題로 論爭이 있었으나 결국 共產黨員의 入黨을 許可하였다.

同大會를 통한 國共合作은 表面上으로는 孫文이 提示한 共產黨吸收提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되나, 中共黨의 自發的인 意思에 의한 合作이 아니고 蘇聯과 코민테른의 操縱에 의해 二重 黨籍을 배제하는 原則에서 中共黨員이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吸收되는 合作이었다.

(3) 合作 決裂

第1次 國民黨大會를 契機로 中共黨員이 參加한 새로운 中央委員會가 構成되어 組織部, 勞動者部, 農民部는 共產黨이 掌握하였으며, 또한 中共黨員은 二重 黨籍을 가진채 各種 出版物을 통해, 맑스레닌主義를 宣傳하고 國民黨의 三民主義解釋을 反革命으로 비난하였다.

이와같은 害黨工作으로 國民黨 中央黨 宣傳部長 등이 광동을 떠나게 되고, 三民主義 기치하에 집결된 청년들이 共產黨側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國民黨은 國共合作으로 強化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弱화되고 共產黨勢力은 急激히 擴張되었다.

孫文에 의해 이루어진 國共合作은 그의 生存時에는 共產黨이 國民黨 內部에서 主動的 役割을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國共合作의 決裂危機는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孫文이 北閩을 떠난 후 共產黨에 의한 害黨工作은 活潑했졌고 1925年 3月 北閩中인 孫文의 急逝로 인하여 國民黨은 구심점을 잃게 되고 黨指導部는 合作 찬성파와 반대파로 대립되었는데 共產黨은 이러한 黨內分裂을 더욱 助長시켰던 것이다.

國民黨은 孫文逝去로 어수선하던 1926年 1月 第2次 黨大會를 開催, 새로운 指導部를 構成하였는데, 同大會에서 國民黨 左派인 王朝明이 政府 主席職과 軍事委員會 主席으로 選出되어 實權을 掌握함으로써 共產黨의 活動은 더욱 陽性化되었다.

蔣介石은 無原則하게 蘇聯에 追從하는 王朝明에게 蘇聯에 대한 보다 明確한 한계를 設定하고 자주성 견지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反應이 없을 뿐 아니라 共產黨이 蔣을 蘇聯으로 납치할 것을 計劃하게 되자 蔣은 1926年 3月 20日 중삼감을 습격, 陰謀主動者와 共產黨의 代表的 害黨分子 50餘名을 除去하고 實權을 掌握하였다.

蔣介石은 1926年 6月 5日 國民革命軍 總司令官으로 任命받았다. 장개석은 오패부를 追擊하면서 北進을 계속하여 1926年 10月에는 한양, 한구, 무창을 점령하고 11月에는 南창을 奪還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黨 좌파는 장개석과 사전협의도 없이 광둥에서 무한으로 옮겨 1927年 1月 1日 武漢政府를 發足시켰다. 이 武漢政府의 政策은 1926年 11月 코민테른 第7次 擴大 執行委員會에서 中國革命은 民族革命運動과 農民革命이 聯合하는 새로운 革命段階로 들어가야 한다는 決議에 따라서 共產黨의 活動을 積

極 조장하였다.

蔣介石軍은 1927年 3月, 奉天軍을 몰아내고 共産黨이 赤色根據地로 만들기 위해 勞働者軍隊를 組織하고 있던 上海에 進出하였고 同年 4月 1日 本格的인 共産黨 소탕작전에 나섰으며 4月 18日에는 共産黨과 國民黨 左派의 反對를 무릅쓰고 單獨으로 南京政府를 樹立함으로써 國共合作은 事實上 決裂되었다.

나. 第 2 次 國共合作 (1937 ~ 46)

第 1 次 國共合作을 통해 共産黨은 基盤構築에 成果를 거두었다. 즉, 1923年 30名도 안되던 共産黨員이 1927年 合作이 決裂되기 直前에는 57,000名으로 成長하였다.

紅軍(共産黨)은 1928年 - 30年 사이에 크게 擴張되었으며, 1931年 11月에는 中華 소비에트共和國 臨時政府를 樹立하여 毛澤東이 主席이 되고 瑞金을 首都를 定했다.

그후 共産黨勢力은 擴大되어 紅軍兵力은 約 30萬, 占領地域인 西安, 浙江, 安徽등에 15個 소비에트 政府를 樹立하고 土地改革을 實施하게 되자, 蔣介石은 1930年 11月 - 1933年 10月 사이에 5次의 掃共作戰을 展開하여 4次까지는 失敗했으나, 1933年 10月 始作된 第 5次 討伐에서는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에 共産黨은 瑞金을 拋棄하고 이른바 2萬 5千里 長征을 1935年 10月까지 계속하였으며, 延安에 도착할 때는 出發當時 50萬名이 겨우 3萬程度가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1) 共產黨의 舉國一致 抗日鬪爭路線

1931年7월에 일어난 만주사변은 급激히 擴大되어 1932年1월에는 上海市街戰이 일어나, 國民들의 抗日, 排日감정이 격증하자 共產黨은 日本侵略을 最大限 活用하여 黨의 危機를 모면하고 勢力擴張을 위한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展開하였다.

1932년에는 對日抗戰을 布告하고 1933년에는 紅軍名義로 內戰停止와 民衆武裝에 의한 全面 抗日戰에 나설것을 호소했고, 1936年4月25日에는 抗日 人民戰線創立을 호소하고 共同行動 綱領을 發表하였다. 계속해서 同年 5月5日 停戰講和에 대한 宣言을 發表하고 1個月 以內에 모든 抗日紅軍을 攻擊하는 武裝部隊와 정전강화를 實施하여 一致抗日的 目的을 達成하자고 호소하였다. 共產黨은 1936年8月25日 “國民黨에게 보내는 中國共產黨의 글”에서 正式으로 國民黨과의 合作을 提議하였다.

(2) 國民黨의 立場

國民黨은 掃共一邊倒의 強硬政策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즉 日本侵略이 擴大되는 趨勢에서 先共匪討伐 政策에 대해 國民들은 不滿, 反撥하게 되었고, 日本의 侵略이 심해지는 형편에 내전을 조장하는 것은 非愛國的이며, 심지어 日本에 만주지방을 讓步하면서까지 共產軍을 討伐한다는 것은 反國家的 처사라는 國民輿論이 비등해졌다.

이와같은 國民輿論은 國民軍 内部에까지 擴大되어 그들의 사기가 低下되고 命令不服, 反撥했으며, 特히 毛澤東의 抗日 民族 統一戰線 宣言(1935.8)은 知識層 學生 勞動者 農民등 各階層의 支持를 받게 되어 蔣介石은 수세에 몰려 더 이상 掃共作戰을 敢行할 수 없는 形

便에 놓이게 되었다.

共産黨의 主導下에 展開된 內戰中止, 一致抗日的 國民煽動은 罷業 시위 등으로 發展하였고, 蔣介石의 直屬部隊에까지 派及되어 結局 西安事件과 같은 항명사태가 頻發하였고, 中·日戰爭의 勃發은 第2次 國共合作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3) 西安事件과 國共合作

蔣介石은 背後에서 총을 쏠 것이 틀림없는 共産黨 問題를 優先解決하고 抗日運動 態勢를 整備코자 張學良에게 紅軍討伐 作戰 任務를 賦與하고 그 作戰을 督勵하기 위해 1936年 12月 張學良 司令部所在地인 西安으로 들어갔다.

國民黨 東北軍의 張學良과 第17路軍의 양호성은 紅軍과 人民의 抗日運動의 影響을 받아 抗日民族 統一戰線에 관한 共産黨의 主張에 同調하여 蔣介石에게 共産黨과 聯合하여 抗日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蔣介石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共産黨 討伐을 爲한 軍事的 配置를 推進하고 抗日青年을 학살하였다. 이에 激奮한 張學良과 양호성은 蔣介石을 監禁하고 모든 내전중지, 全國 政治犯 釋放等 8個項의 主張을 發表, 蔣介石에 最後로 간청하면서 그의 安全을 保障하고, 그의 反省을 促求하였다.

한편 共産黨은 國民政府 및 國民黨 首腦에게 電報를 보내 “國共兩軍의 內戰 停止와 항일궐기”를 條件으로 西安事件 解決方針을 表明하며, 抗日을 위해서 “第2次 國共合作”을 하자고 提議하였다.

蔣介石은 1937年 2月 22日 言論 開放, 人材集中, 政治犯 赦免에 關한 聲明을 發表하고, “國共兩黨의 第2次 合作에 關한 談話”를 發表(1937.9.27)하게 되었으며, 國民黨 軍事委員會는 國民軍 傘下에 紅軍을 接受 改編하였다.

(4) 合作後의 共產黨

國共合作은 共同抗日을 하자는 것이었으나 共產黨의 立場은 抗日을 하면서 自體力量을 強化하는 立場이었다. 毛澤東은 1937年 겨울 8路軍 幹部들에게 秘密訓話를 통해 “中日戰爭은 우리당 發展을 爲한 絶好의 機會이다. …… 이제 우리는 우리의 今後勢力의 70%를 自己發展에, 20%를 大국민당 妥協에, 10%를 抗日作戰에 傾注하는 것이다. 今後 黨의 中央部와 連繫가 끊어지더라도 여러동지들이 政策대로 前進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指示하고 이와같은 基本戰略에 따라 共產黨은 抗日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革命力量 強化에 注力하였고 8路軍은 國民革命軍에 編入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처음부터 指揮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蔣介石은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共產黨에 대한 討伐을 展開할 수는 없었다.

(5) 國共協商

第2次 國共合作은 表面上 國民黨과 共產黨이 聯合하여 國民黨政府의 總括的 指揮下에 抗日戰爭을 하기위한 力量團합이라고 볼 수 있으나, 共產黨은 7分發展, 2分對應, 1分抗日이라는 自體發展과나 아가서 3段階 戰略(1段階 妥協, 2段階 競爭 및 對立, 3段階 攻勢展開)에 따라 國民黨政府를 顛覆하고 共產政權을 樹立, 全中國을 赤化하는데 있었다.

第2次 國共合作期는 抗日戰爭이 終結될 때까지를 合作期間으로 볼 수 있으며, 第1次 合作時의 黨과 黨의 合作과는 달리 黨外의 合作(주로 軍隊)이었으므로 수많은 衝突과 利害關係의 相衝으로 因한 事件들이 頻發하였고 이러한 衝突과 事件이 있을때마다, 國共間에는 7次에 걸친 協商이 進行되었다.

2 次 國共合作協商概要

| 區 分 | 年 月 | 備 考 |
|-----------|--------------|-----|
| 第 1 次 協 商 | 1940. 7 | |
| 第 2 次 協 商 | 1943. 3 | |
| 第 3 次 協 商 | 1944. 5 - 6 | |
| 第 4 次 協 商 | 1944. 11 | |
| 第 5 次 協 商 | 1945. 1 | |
| 第 6 次 協 商 | 1945. 8 - 10 | |
| 第 7 次 協 商 | 1946. 1 | |

共産黨은 第 2 次 國共合作後 中央軍事委員會 命令에 不服하고 抗日鬪爭보다도, 國府軍 기릴라부대 攻擊으로 自己勢力擴張에 注力하면서 國共合作 原則을 全面的으로 破壞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第 1 次 協商에서 第 3 次 協商은 國共間의 軍事問題에 대한 協商이었고 第 4 次以後의 協商은 주로 美國의 仲裁에 의한 國共間의 平和建國을 圖謀하는 政治協商이었으나 이 過程을 통해 결국 國民黨政府는 敗하여 中國大陸에서 逐出되고 말았다.

다. 第3次 國共合作 (1979 ~ 現在)

中國共產黨은 1949年 中華人民共和國 樹立으로 國土가 分裂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統一問題를 國家政策中 最優先 課題로 採擇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中共은 政權樹立 初期에는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을 企圖하였고, 國民黨 政府가 統治하고 있는 金門도, 馬祖도, 澎湖도에 대한 軍事的 壓力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國內外的 狀況變化에 따라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認識한 후로는 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특히 毛澤東이 死亡하고 鄧小平體制가 構築되면서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게 되고 1979年 1月 1日附로 美國이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臺灣의 國民黨政府와 外交關係를 斷切하게 되자 中共은 이를 契機로 하여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政策을 平和的인 統一政策으로 戰術的 轉換을 시도하였다.

그 結果 1981年 9月 30日 全人大 常務委員長 葉劍英에 의하여, 平和統一 9個方案 즉, 第3次 國共合作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1) 第3次 國共合作의 提議內容

中共의 平和攻勢는 1979年 1月 1日 “臺灣同胞에게 告하는 글”로 始作하여, 1981年 5月 鄧小平이 밝힌 祖國統一 6個原則에 이어, 1981年 9月 30日 葉劍英이 平和統一 9個方案을 公式 提議하는 것으로 發展하였다.

臺灣同胞에게 告하는 글 (1979. 1. 1)

- ① 統一實現을 위해 臺灣의 現狀과 臺灣 各界人士의 意見을 尊重하고 合理的인 政策을 採擇, 臺灣人民에게 損失이 招來되지 않게 한다.
- ② 臺灣人民과 臺灣當局이 民族利益을 重視하여 統一課業에 貢獻할 것을 바란다.
- ③ 金문도 砲擊을 中斷한다.
- ④ 通信, 通航, 兩方面의 直接接觸과 相互交換, 親知訪問, 旅行, 觀光, 學術文化, 體育交流를 提議한다.

鄧小平의 祖國統一 6個原則 (1981. 5. 15)

- ① 臺灣의 現政權 認定
- ② 臺灣人の 現生活水準 維持保障
- ③ 臺灣에 대한 外國投資 保障
- ④ 臺灣의 軍事力 維持保障
- ⑤ 臺灣 地方政府的 人事決定權 認定
- ⑥ 臺灣의 對外關係 維持保障

平和統一 9個方案(1981. 9.30, 葉劍英)

- ① 中華民族이 分裂되어 있는 不幸한 局面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中國共產黨과 中國國民黨 두黨 사이에 對等한 會談을 進行하고 第3次 合作을 實現하여 祖國統一 偉業을 共同으로 完遂할 것을 提議한다.
雙方은 우선 사람을 派遣하여 接觸하며 意見을 充分히 交換할 수 있다.
- ② 臺灣海峽 양쪽의 各民族 人民들은 互相 消息을 전하며 親戚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貿易을 하면서 理解를 增進시킬 것을 切迫하게 바라고 있다.
우리는 雙方이 共同으로 郵便去來, 通商, 海上往來, 親戚訪問, 觀光事業 그리고 學術, 文化, 體育交流에 便宜를 提供하여 주기 위하여 該當한 合意를 보고자 提議한다.
- ③ 나라가 統一된 후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高度의 自治權을 享有할 수 있으며 軍隊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中央政府는 臺灣의 地方事業에 參與하지 않는다.
- ④ 臺灣의 現 社會, 經濟制度, 生活方式, 外國과의 經濟, 文化關係는 改變시키지 않을 수 있다. 個人財産과 住宅, 土地, 企業所有權, 合法的인 繼承權, 外國投資는 侵害되지 않는다.
- ⑤ 臺灣當局과 各界代表 人士들은 全國的인 政治機關의 指導的 職務를 맡을 수 있으며 國家機關에 參與할 수 있다.
- ⑥ 臺灣의 地方財政이 難關에 부닥칠 때에는 中央政府가 情況에 따라 도와줄 수 있다.
- ⑦ 祖國 本土에 돌아와 居住하려는 臺灣의 各民族 人民들과 各

界 人士들은 妥當한 配置를 擔保받으며 差別待遇를 받지않고 自由롭게 오갈 수 있다.

⑧ 臺灣 商工業界 人士들이 祖國 本土에 돌아와 投資하고 各種 經濟事業을 進行하는 것을 歡迎하며 그들의 合法的 權益과 利潤을 擔保한다.

⑨ 祖國을 統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義務이다.

우리는 臺灣 各民族 人民들과 各界 人士들, 大衆團體들이 各種 徑路와 各種 方法으로 意見을 提起하며 國事를 共同으로 議論하는 것을 熱烈히 歡迎한다.

(2) 自由中國의 態度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中共이 葉劍英의 이름으로 提議한 9個項目의 “平和統一提議”는 이제까지의 다른 提議보다 具體的이며 折衷的인 性格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自由中國에 대하여 보다 寬容的인 參與條件을 내걸었다.

이러한 9個項目의 提議도 共產黨과는 談判不應의 原則을 固守하는 臺灣指導者들의 拒否反應을 자아냈다.

특히 臺灣政府는 美國과의 斷交와 中共의 平和攻勢라는 兩面的인 衝擊을 받아 처음부터 中共의 接近에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79年 1月 12日 孫運璿 行政院長은 中共의 國共協商 提議에 대하여 그 前提條件으로서,

첫째, 中共은 마르크스·레닌思想을 排除하고 世界革命을 拋棄할 것 둘째, 共產獨裁를 廢棄하고 自由民權을 保障할 것.

셋째, 人民公社를 解體하고 人民財産을 返還하여 大陸人民이 臺灣

人民과 同等하게 豐饒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提示한 바 있으며, 80年 10月 10日 蔣經國 總統은 雙十節 記念 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國共不接觸·不協商·不妥協의 이른바 ‘3不原則’을 闡明하였고, 81年 4月 5日 國民黨 第12期 全國大會에서는 三民主義에 의한 ‘反共復國’만이 中國統一의 路徑을 決議하면서 國民黨의 ‘中國統一案’을 提示하였다.

- ① 三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中國의 建設
- ② 反共復國 行動綱領의 實踐
- ③ 臺灣建設의 經驗을 통한 統一以後의 大陸再建

이것은 蔣介石總統 以來 國民黨의 行動綱領과 統一目標을 그대로 再闡明한데 不過하며, 國民黨이 臺灣으로 移住해온 以來 對大陸政策이 조금도 變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強調한 것 뿐이었다. 결국 國·共 兩黨이 全面的으로 鬭爭狀態에 있으므로 政治協商이나 合作의 可能性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現實的인 面에서 본다면 大陸과 臺灣 사이의 極端的인 不均衡은 國民黨이 1940年代의 ‘三民主義·反共復國’이라는 原則을 固守해야만 生存의 名分을 찾을 수 있다는데 있다. 臺灣이 ‘하나의 省’에 不過하기 때문에 中共의 協商에 應해야 하며, 中共의 提議에 參加한다는 것부터가 國民黨의 屈辱과 敗北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臺灣政府는 ‘中共의 提議는 評價할 價値도 없으며 協商提議에 一切 應하지 않겠다’는 從來의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同時에 臺灣의 經濟建設이 模範的이고 中共보다는 몇 배나 豐饒롭고 安定的이라는 事實을 強調함으로써 中共의 平和攻勢가 國內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極小化시키는데 集中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臺灣政府의 立場을 보면 對中共協商關係面에서 中共側 協商提議에 應할 경우 中共의 對臺灣協商提議內容이 臺灣問題를 ‘內部問題’로 前提하고 있어 그간 主唱해 왔던 臺灣의 ‘正統中國政府’로서의 名分을 喪失하고, 臺灣의 一部 學者, 政治人들에 의해 提起되고 있는 中共人的 臺灣訪問 禁止緩和, 學術交流 등과 같은 對中共交流推進 要求輿論이 擴散되어 現 國民黨 政府의 指導理念 喪失과 함께 國論分裂을 刺戟할 可能性이 있으며, 最近 臺灣人이 政治參與 擴大와 臺灣의 獨立을 主張하는 등 反國民黨運動을 展開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를 加速化시킬 憂慮가 尙存하고 있다.

또한 歷史的 經驗에서도 過去 2次에 걸친 國共合作(1次: '24, 1~'27, 4, 2次: '37, 9~'45. 8)에서 國民黨側이 完全失敗한 先例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中共이 티베트에 대한 自治制 賦與 約束을 어기고 65年 9月 티베트를 強制併合한 中共의 統戰陰謀를 잘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拒否態度 表明으로 中共側 提議가 갖는 意味를 褪色化시키고 臺灣에의 波及影響을 沮止하려는 것이다.

中國 國民黨은 1981年 3月에 舉行된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을 貫徹하자」는 決議案을 採擇하면서 國內外的 全中國人이 一致團結하여 共同努力을 傾注하자고 呼訴하였다.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은 臺灣 統一政策의 基本立場으로서 다음과 같다.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은 다음의 意味를 包含한다. 즉 統一된 하나의 中國으로 眞正한 獨立國家, 眞正한 民主主義의 實現, 平等·自由의 實現, 眞正한 富의 分配, 開放社會, 平和로운 社會로서의 中國을 意味한다. 이 方案의 主要原則은 國家·政治·經濟의 自由·平等을 目標로 하고 있는데 자세히 說明하면 다음의 3個項의 原

則이다.

첫째, 倫理로서 國家의 自由平等 實現과 侵略戰爭을 反對한다.

둘째, 民主로서 政治의 自由平等 實現과 獨裁政治를 反對한다.

셋째, 科學으로서 經濟的 自由平等의 實現과 集體經濟를 反對한다.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方案은 臺灣의 建國理念이며 全 中國人の 目標로서 다음 內容을 갖고 있다.

- ① 自由, 民主的 富의 分配의 統一新中國을 建設한다.
- ② 民主的 憲政을 實行하여 憲法에 保障된 權利와 自由를 享有한다.
- ③ 中華文化를 復興시키고, 倫理·道德을 回復하며 家庭制度를 維持 保護하며 화기애애한 社會를 建設한다.
- ④ 民衆이 싫어하는 中共의 「社會主義路線」, 「프롤레타리아 獨裁」, 「共產黨의 國家領導」,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毛澤東思想」 등 4個 基本原則을 廢止한다.
- ⑤ 이웃나라의 侵略과 世界의 赤化 企圖를 없애고 仁愛로서 怨讐를 사랑하고, 鬭爭 대신에 相互協調를, 1黨獨裁 대신에 自由民主主義를 實現한다.
- ⑥ 「人民公社」를 廢止하고 全 耕作者에 고루 土地를 나누어 주고 土地所有權을 平等하게 하며 資本을 節約하고 民衆의 私有 財產權을 保障하며 生産品은 生産者가 享有하도록 保障한다.
- ⑦ 一切의 勞動搾取를 廢止하고 勞動者의 權益을 保護하며 勞動條件을 改善하고 勞動者의 待遇를 向上시킨다. 生産體制를 現代化하여 生産力을 向上시키고 經濟를 發展시키며 滿足한 民衆의 生活을 保障하고 國民의 基本需要를 生産의 첫째 順位로 한다. 國民所得을 높이어 絶對 貧困階層을 없앤다.

- ⑧ 一切의 經濟統制와 配給制度를 廢止하고 市場經濟를 回復시키고 自由企業精神을 發揮하게 하며 計劃的 自由經濟體制를 確立한다. 民衆의 企業經營을 保障하고 職業選擇의 自由를 保障한다. 下放(勞動을 통한 精神改造制度)運動과 政治成分에 따른 進學條件 및 共產黨 利益中心的 모든 制度를 廢止하고 靑少年의 進學·就業·婚姻의 自由를 保障한다. 知識人의 人格尊重 및 學術研究의 自由를 保障하고 創造와 發明의 活動을 獎勵한다.
- ⑨ 特權階級 利益制度를 廢止하고 社會福祉制度를 實施하여 富의 分配를 實現한다.

復興基地(臺灣을 칭함)에서의 三民主義의 實踐經驗과 國際資本 및 技術과 合作으로 共同 開發하여 三民主義의 新中國을 建設하고 世界人類의 正義·平和·福祉에 이바지 한다.”

以上の 要點은 孫文의 三民主義 理論 및 臺灣에서의 30餘年間 經濟發展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中國大陸에 擴大實施하므로써 共產主義 失策을 補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臺灣의 確固한 立場은 蔣經國 自由中國總統의 發言을 보면 알 수 있는 바, 蔣總統은 國家建設委員會 委員들을 接見하면서 中共과의 會談에 관한 問題를 特別히 言及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1982. 8. 1 臺北 中央日報)

“「會談」은 원래 自由世界에서는 問題를 解決하는 合理的 方式이나, 共產黨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戰爭」形式으로, 戰爭上 直接武力의 方法으로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때 平和的 會談의 方式을 採擇하게 된다. 바로 이 點에 의하여 우리가 지난 歷史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초는 뼈에 사무치는 것이다. 「平和的 會談」은 우리 內部の 분규를 造成하고, 우리로 하여금 敵과 自己의 區分을 흐리게 하

여 國家의 中心目標을 잃고 意志와 力量을 喪失하게 한다. 오늘날 中共이 主張하는 「平和會談」 소위 「9個項의 提議」, 「祖國으로 돌아오라」, 「하나의 中國임을 認識하자」 등의 상투적인 口號는 그 基本的 目標가 시종일관 不變한, 즉 臺灣을 奪取하여, 臺灣의 同胞를 그들의 赤色統治下에 두겠다는 意圖이다. 우리가 그들의 提議에 말려 會談을 開始한다면 우리의 軍과 民 및 海外同胞들이 우리 政府의 反共政策에 대하여 疑問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反共의 意志가 弱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大陸에 있는 10億의 同胞들도 다시 自由를 얻을 수 있다는 希望이 좌절되게 되니, 이것이 바로 中共이 바라는 統一戰線의 目標이다. 이것이 곧 우리가 會談을 試圖해 볼 수 없는 理由이다”

또한 1981年 10月 2日 孫運璿 自由中國 行政院長은 中國統一의 問題는 雙方이 相異한 體制를 維持하는 한 妥協이나 調和의 問題로 볼 수 없고 全國民이 公認하는 中華民國 憲法의 節次에 의해 解決될 問題임을 強調했다. 또한 9個項 建議는 中共 傳來의 統一戰線의 一環으로서 對外的으로는 平和雰圍氣를 假裝하여 美國의 臺灣에 대한 武器販賣를 沮止시키고 臺灣同胞를 離間시켜 그들의 浸透 顛覆活動을 強化할 뿐 아니라 對內的으로는 第3次 國共合作의 연막을 利用해서 大陸同胞의 不滿과 反抗을 緩和시키려는 陰凶한 術策이라고 反駁하였다.

自由中國의 基本立場은 두차례에 걸친 國共合作의 쓰라린 經驗과 티베트에 대한 中共의 強壓的 統合方式에 비추어 拒否的 態度로 일관하였다.

즉 ① 中國은 하나이며 自由中國이 正統政府이며, 하나의 中國의 代表로서 共產獨裁에 신음하는 本土를 救出할 使命을 지니며, ② 自

由中國이 3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中共은 共產獨裁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統一合作 提議에 앞서 共產主義 理念을 拋棄해야 하며 ③ 過去 두차례에 걸친 國共合作에 의하여 國民黨 政府가 背信당했기 때문에 이번 提議도 偽裝平和攻勢로 規定하였으며, 中共의 第3次 國共合作 提議를 티베트方式의 臺灣解放 方式이라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거둬들인 平和提議에 대하여 拒否反應으로 一貫할 경우 對內外的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統一問題에 대한 非合理的이며 抵抗的이라는 批判을 받을 수 있으며, 自由中國을 外交的으로 수세에 몰리게 할 뿐 아니라 海外에서 活動하는 臺灣獨立主義者들에 대한 中共 支持의 契機가 될 수 있을 것이며, 繼續的인 協商拒否는 中共으로 하여금 臺灣問題 解決을 軍事的으로 試圖할 口實을 提供할 수 있다. 國內的으로는 臺灣人들에게 國民黨政府의 統一方案이 實現 不可能한 것으로 批判받을 수 있을 것이다.

孫運璿 行政院長은 1982年 6月 美國의 中國問題 專門家들과의 모임에서 統一協商에 있어서의 立場은 “ 交渉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두려움 없이 交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힘의 立場에서만 交渉할 것이다. …… 中國의 再統一은 中國人民 全體의 自由意思에 基礎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만일 中國 本土와 自由中國 사이의 政治, 經濟, 社會的 間隔이 계속 좁혀진다면 平和的 再統一의 條件은 成熟될 것이다 ” 라고 밝힘으로써 中共의 平和交渉 提議에 折衷的 態度로 임할 可能性을 示唆한 바 있으나, 現在까지 中共의 모든 平和提議에 拒否的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4. 最近 中共의 統一戰略展開 實態

가. 統一戰線 對象의 多邊化

中共이 使用하는 現段階의 統一戰線 戰略의 對象은 여러 階層에 걸쳐 있다.

그 運用 過程에 있어서도 國際的으로 또는 國內的으로 相互협공과 分離의 전략을 운용을 하고 있다.

國際的으로는 美·蘇 等 距離政策을 堅持하고 親西方政策, 特別히 美·日과의 軍事的, 政治的 協力과 高度의 科學技術 交流를 希望하며, 國際的 地位를 높이고 軍事的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中共은 땅이 넓고 人口가 많은 양적인 방대함을 利用, 各國을 위협하여 臺灣과 外文關係 및 實質的 外交關係를 斷切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經濟의 部分的 開放으로 先進 外國의 資本과 技術 및 物資를 導入하여 오랫동안의 經濟的 궁핍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으며, 經濟利益을 미끼로 하여 西方諸國과 政治的 軍事的 關係를 強化하려고 한다.

社會의 部分的 開放을 通하여 政策上 過去 毛澤東 統治時期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므로써 過去 오랫동안 그들에 대한 普遍的 認識을 改善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國內的으로는 平和會談을 利用하여 臺灣에 대한 統一戰線攻勢를 發動하여 반공의식을 低下시키거나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새로운 화해 霧圍氣를 造成하여 國際的으로 臺灣에 대한 支持를 減少시키려 기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臺灣을 潰滅시켜 共產政權 수립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中共은 現在 「反霸權主義」, 「中國統一」, 「4개 現代化」 를 80年代 3大主要目標로 規定하면서, 또한 統一戰線의 運用에 包 含시키고 있다.

오늘날 中共 統一戰線의 對象은 여러 形態이지만 그 中 重點 的인 것은 두가지 方面으로써 하나는 對美 政策이고 다른 하나는 對 臺灣 政策이다. 中共은 脅박과 誘導戰術을 통해 美國의 對 臺灣 政 策을 牽制하고 있으며 또한 對美·蘇 等距離外交政策을 表明하는등 「소련 카드」를 活用하여 相當한 效果를 거두고 있다.

원래 統戰이란 統一戰線의 準말로 그 基本的 原則은 「矛盾을 利 用하여 다수를 爭取하고, 소수에 反對하여 하나씩 격파해 나간다. (利用矛盾·爭取多數·反對少數·各個擊破)」는 것으로서 심리전 과 선전전을 함께 活用하도록 되어 있다. 主要한 적에 대해서는 우 선 교란과 分裂을 助長하고, 이어 孤立시킨 後 타도하는 過程을 거 치게 된다. 2차 主要한 적에 대해서는 우선 잠시 同盟의 關係를 맺어 警戒心을 갖지 못하게 한 後 歡心을 사서 자기편에 有利하게 利 用한 後 主要 敵을 打倒한 다음, 2次 主要 敵을 다시 主要 敵의 위치 에 놓고 같은 方法으로 打倒해 나간다는 原理이다.

이러한 統一戰線의 原理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共同下에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近年에 들어 中共은 統一戰線 運用의 對象 과 程度 및 範圍를 擴大하고 있는 實情이다.

나. 平和的 「解放」 口號 提唱

中共이 臺灣에 대하여 統一戰線을 展開하면서 平和的 手段에 依하 여 臺灣을 獲得하려는 시도는 1954年부터 비롯되었다.

그동안 몇개의 다른 段階와 다른 方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1949年以後 中共은 「피로써 臺灣을 恢復하자」 或은 「무력해방」의 口號를 提唱하였으나 臺灣의 軍備態勢를 緩和시키고 臺灣人의 反共意志를 弱화시키기 爲하여 1954年 7月 周恩來 總理가 全國人民代表者會議 演說을 通해, “可能한 모든 條件아래서 平和的 方法으로 臺灣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具體的 협상을 提議한다” 고 平和的 口號를 내세웠다.

이는 中共이 平和的 方法에 依한 臺灣 問題解決의 政治的 攻勢의 始作이었고, 平和的 方法과 武力統一 策略의 교체 使用의 始發點이기도 하였다.

中共은 平和的 政治攻勢를 使用하는 同時에 항상 軍事的 性質의 위협을 병행하였으니, 「平和的 政治攻勢」는 사실상 將來에 있을 戰爭의 準備에 不過하였다. 예를 들면 1958年 8月 金門島에 대한 大規模의 포격을 들 수 있는데, 8月부터 同年 10月 5日까지 約 40餘日間 포격한 포탄이 45萬餘 발에 달하였는바, 이는 하루 平均 萬발이상 이었다.

그 後 李濟琛, 黃炎培 등을 利用하여 「臺灣과 大陸은 하나이다. 하나로 이루는 것이 곧 愛國이다.」 「일치 단결하자」 「平和的으로 解決하자」等의 口號를 提唱케 하였다.

中共은 1959年 중소 紛爭으로 蘇聯의 技術者가 撤收한 後 援助가 中斷되었고, 同時에 「三面紅旗」 運動의 展開와 大饑饉 및 「文化大革命」(1966~1976)의 大規模 内部 權力鬭爭으로 잠시 臺灣에 대한 統一戰線 攻勢가 弱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9年 1月 北京 政府와 美國의 修交 後 中共은 이 러한 情勢를 最大限 活用하여 臺灣에 대한 統一戰線 攻勢를 強化하고 있다.

그들의 統戰攻勢強化 動向은 다음과 같다.

① 中共의 第5期 인민대표대회 第5次 상무위원회에서 通過된 (1978年 12月) 「臺灣 同胞에 告하는 글」은 이러한 戰略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급적 빠른 時日內에 書信을 交換하고 航空機의 相互 往來를 實現하고 雙方의 同胞로 하여금 直接 접촉케하여 消息을 전하고 친척을 相互 訪問하게 하고 相互 旅行과 觀光을 實現하고 學術 體育·工藝 方面에 相互 交流를 實現하자. …… 相互間의 貿易을 마땅히 發展시키어 相互間에 있는 資源과 없는 것을 交換하고 經濟交流를 始作하자.”

이로부터 「三通」(通郵·通商·通航)과 「四流」(經濟·文化·體育·科學 相互交流)를 中心으로 한 平和的 政治攻勢가 본격적으로 展開되었다. 이러한 提議의 目的은 臺灣海峽에 「 화해 霧圍氣」를 造成하자는 것이다.

鄧小平은 中共을 訪問한 美國 上下兩院의 의원단에 대하여 臺灣問題에 言及하면서

“우리는 이제 「臺灣 解放」을 主張하지 않는다. 다만 臺灣이 祖國에 스스로 돌아와 주기를(回歸祖國) 바라면서, 또한 우리는 臺灣의 現實과 모든 制度를 尊重한다.” 고 言及하였다.

「臺灣 解放」의 口號에서 「祖國으로 스스로 돌아오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點이 注目되었다.

② 孫文의 부인 송경령(宋慶齡)이 서거하였을때 中共은 이를 最大限 統一戰線에 利用하였다.

宋慶齡은 1981年 5月 29日 北京에서 逝去하였다. 中共은 逝去 며칠 前인 5月 16日에 宋慶齡을 「中華人民共和國 名譽主席」으로

추대하고 그前 5月1日 宋女史를 中國 共產黨에 入黨하게 하였다. 宋慶齡女史가 逝去하자 新華社 通信을 통하여 臺灣에 있는 宋女史 친척이나 모든 친분關係가 있는 사람들은 北京으로 와서 葬禮式에 參席하는 것을 歡迎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經費는 中共 葬禮委員會에서 支給하겠다고 發表하였다.

中共이 宋慶齡女史를 利用한 것은 일찌기 廣州時期 (1923 ~ 1926年)에 이미 始作되었는데 宋慶齡女史는 끝내 形式上 共產黨에 入黨하지는 않았다. 宋慶齡女史가 逝去하였을 때 中共의 政治制度上 國家主席職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形態로서 宋女史에게 「國家 名譽主席」의 職責을 주었다. 그렇게 한 底意는 바로 中共이 孫文과의 상당한 聯關關係가 있는 것처럼 하여 「歷史的 正統性」을 獲得하는 것이다. 아울러 中華民國을 建立한 孫文의 功勳과 中國人들의 孫文에 대한 尊敬心을 利用하여 人民 大衆들의 關心을 獲得하자는 底意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辛亥革命 記念」도 統一戰線의 한 部分으로 利用되었다. 「三面紅旗」運動이 失敗하였을 때에 辛亥革命 紀念式을 舉行한 적이 있었고 1981년에 다시 대대적인 紀念式을 舉行하였다.

辛亥革命 (1911年)과 中國 共產黨은 아무런 關係가 없다. 辛亥革命의 本質은 共產主義 革命과 같은 것이 아니다. 辛亥革命은 「階級革命」도 아니며 또한 「段階的 革命」도 결코 아니다. 辛亥革命의 中華民國 建國 理想과 共產黨의 意識形態 및 制度와는 얼핏 보기에는 類似한 것 같으나 사실상 完全히 別個의 것이다. 中共은 70년이 지난 (1981)後에 새로이 辛亥革命 紀念式을 성대히 舉行함으로써, 辛亥革命의 意義를 「 부르조아 階級の 民主主義 革命」으로 規定짓는데 이어 「프로레타리아의 社會主義 革命」의 始

發點으로 解釋하여 역사무대상 必然性を 強調하였다. 또한 中共은 孫文을 「革命的 先驅者」로 指稱하고, 論理上 「프로레타리아 社會主義 革命」을 이룩한 共產黨이 바로 위대한 「革命的 先驅者」의 繼承者임을 자처하고 있다.

中共은 이러한 論理를 強調하여 中國의 「共產黨 領導」의 必然性を 強調하고 中國人の 호응을 얻으려고 努力하고 있다.

④ 1981年 9月 30日 葉劍英이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 資格으로 新華社를 通해 發表한 「9個項의 聲明」은 이제까지의 統一戰線 經驗을 總結하고 모든 方法을 총집결한 것으로 統一戰線의 運用이 최고도에 이르고 있다. 「三通」「四流」以外에 다시 9個項의 聲明을 發表하였는바 그 主要點은 다음과 같다.

中共은 臺灣이 地方政府이며 北京을 中央政府라 規定짓고 먼저 臺灣을 取得하기 위해서 臺灣의 現在 制度를 잠시 그대로 존속시켰다가, 천천히 社會制度를 變形시키는 이른바 「西藏方式」을 使用하려고 하고 있으며,

「三通」「四流」로서 돌파구를 삼아 臺灣海峽에 화해의 霧圍氣를 造成하여 國際的 統一戰線 策略과 배합시켜 美國의 臺灣에 대한 軍事 武器 販賣를 包含한 各種 具體的 支援을 차단하려 努力하고 있다.

⑤ 廖承志 名義로 된 「蔣經國 先生에게 보내는 글」이란 公開書翰이 北京發로 發表(1982.7.24)되었는데, 이 公開書翰은 「兩黨 合作 談判」의 요구가 거의 전내용이었다.

이 書翰의 注意할 點은 다음과 같다.

- 發表者의 格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趨勢이다. 全國 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委員長인 葉劍英에서 長官級인 廖承志로의 變化이다. 이는 統一戰線 運用의 새로운 趨勢이며,

- 이 書翰의 最大 目的은 臺灣을 分裂시키고 孤立시키려는 政策의 強化로 解釋되는데, 葉公曄의 聲明은 國民黨으로 하여금 一旦 會談을 拒絶하게 하고 廖承志의 書翰은 蔣經國「一人」이 會談을 拒絶하게 함으로써 分裂과 孤立을 助長하려 하고 있다.

廖承志의 書翰은 그 目的이 中國人의 共同 問題를 解決하자는 데 있지 않고 단지 中共의 利益에 目標을 두고 統一戰線의 한 手段으로 活用하고 있다.

⑥ 「臺灣의 獨立」 분자를 利用하는 것도 中共의 統一戰線 活動의 主要 分部을 차지한다. 郭兩新을 例로 들어 보자.

郭兩新은 海外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臺灣 民主 運動 海外 同盟會」를 組織하여 스스로 主席을 담당하고 있다. 中共의 駐美 大使 柴澤民은 郭兩新을 연회에 초청하여 郭兩新의 大陸訪問을 추진하여 주었다.

(1982.8.13 臺北 聯合報)

理論上으로 或은 基本 政策上으로 보아 中共은 「統一」을 主張하고, 「臺灣 獨立 分子」는 「分離」를 主張하므로 相互 主張이 相衝 對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臺灣 獨立 分子 中 소외된 政객들을 利用하여 聯合 統一戰線을 展開하고 있으니 「臺灣獨立分子」를 단지 「臨時的 同盟者」로 利用하여, 臺灣의 內紛을 助長, 促進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臺獨分子」들이 中共의 統一政策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지만 中共은 그들을 잘 利用하여 美國의 議會나 行政府에 대하여 軍事武器 販賣 反對聲明을 發表하고 臺灣內 選舉를 利用하여 內紛을 助長하게 함으로써 中共의 重要 臨時 同盟者로 活用하고 있다.

다. 「最低綱領」의 運用

葉劍英 名義로 發表된 「9個項 聲明」 및 3年間의 各種 統一 戰線 方式은 실제상 「最低綱領」에서 出發하였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共產主義 問題를 研究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最低綱領」은 運用하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變化될 수 있는 策略이며, 「最高綱領」은 不變의 原則과 目的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最高·最低綱領」의 策略은 원래 蘇聯의 政權奪取 活動을 通하여 設計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 「最高綱領」은 共產黨의 「最終目標」를 「社會主義 社會」建設에 두고 있는 것으로 不變의 것이며, 「最低綱領」은 共產黨의 「現段階의 任務」로서 狀況에 따라 彈力性을 가지고 變化하는 것이다. 「最低 및 最高綱領」은 1905年 蘇聯의 社會民主黨 第2次 大會에서 通過된 黨의 綱領으로 共產黨 戰略의 基本으로 採擇되고 있다.

『이 綱領은 두가지 部分으로 區分된다. 即 最高綱領과 最低綱領이 그것이다. 「最高綱領」이란 黨의 目標로서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으로 이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社會主義 革命과 「프로레타리아 獨裁政治」를 進行한다. 「最低綱領」이란 「黨의 現段階 任務로서 짜아르 황제를 무너뜨리는 부르조아 民主革命」을 일으켜 民主共和國을 建立하고, 하루 8시간 勞動制度和 多民族의 完全 平等과 民族自治權을 保障하며 農村의 農奴 制度를 廢止시키는 것이다』 鄧小平은 30餘年の 共產主義 體制로 인해 야기된 社會의 停滯現狀을 解消하기 위하여 「4대 現代化」를 最大 課題로 삼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最大의 努力을 「4대 現代化」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社會主義 路線」고수 등 「4個 原則」을 고수하고 있다.

「黨의 最終目標은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이고 이는 곧 不變의 最高綱領이다. 그렇다면 소위 「對等한 對話」 「共同領導」 「西藏方式」 등은 모두 可變的 最低綱領의 한 手段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中共 專門家들은 中共의 平和的 統一戰線 攻勢의 目的이 對外的으로 볼 때 첫째 美國의 臺灣에 대한 武器販賣 特히 高性能의 電子機器·武器의 販賣沮止 둘째 外國의 臺灣에 대한 友好關係의 實質的 破壞 셋째 國際적으로 臺灣의 孤立 誘導 等이라고 分析했다.

반면 臺灣의 目標은 中共과 接觸을 拒否하고, 對話를 하지 않으며 타협을 하지 않는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 것을 基本政策으로 하고 있다. (1982, 8 朱撫松 外交部長)

라. 多方面的 統戰攻勢

中共은 中華民族의 大團結과 ‘臺灣의 祖國復歸’를 조속히 實現하기 위하여 臺灣에 대한 政治·經濟 等 여러 面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統戰攻勢를 더욱 強化하였는데 이들을 綜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的인 面에서는

- 臺灣當局은 統一協商을 拒否함으로써 災難을 자초할 것이다.
- 平和提議를 繼續 拒否할 경우 武力을 使用할 수도 있다.
- 第3次 國共會議 開催를 촉구한다.
- 臺灣當局으로부터 조속한 答辯을 期待하지는 않는다.
- 統一協商을 위한 예비회담 開催를 提議한다.
- 屈武 政協常務委員 겸 國民黨 革命委 副主席이 蔣經國 總統과 統

一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臺灣을 訪問할 용의가 있다.

둘째, 經濟的인 面에서는

- ‘臺灣 農業經濟 및 科學技術研究所’의 設立
- ‘臺灣企業者 및 企業經營管理’誌의 발간
- 海運·航空路의 開設, 기상과 漁業 部門의 交流, 그리고 銀行業務의 제휴
- 석탄·석유·한약재의 특혜공급과 臺灣商品輸入의 簡素化 및 臺灣商人, 貿易代表의 中共訪問 許容 등을 들 수 있으며,

셋째, 社會·文化的인 面에서는

- 臺灣學術심포지엄의 開催
- 서신교환·臺北·北京間의 통신개통을 위한 會談開催
- 科學技術·文化·體育系 人士의 交流 및 人的交流를 위한 赤十字間의 業務交流
- 北京大學과 臺灣大學間의 學生代表 및 學術交流
- 法律界의 學術交流 等이며

넷째, 人道的 問題를 들 수 있는데, 崔月犁 中共赤十字社 總裁는 “時期와 場所에 구애됨이 없이 離散家族의 再會問題協議를 위한 會談을 開催하자”고 提議(85.6.1)하였고, 臺灣은 즉각 이 提議를 拒否하였지만 실제 臺灣國民中 年間 3~4 千名이 제 3 국을 通해 中共內 친척을 訪問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85.4.9 大公報)되고 있다.

5. 「1國家2制度」論의 擡頭

가. 提議 經過 概要

鄧小平은 1980年 11月 27日 美國記者에게 平和統一이 實現된 後에도 臺灣은 非共產主義的 經濟와 社會制度를 維持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1981年 1月 9日 美上院議員團에게 臺灣問題를 言及하는 가운데 臺灣이 繼續 協商을 拒否할 경우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臺灣은 中共에 歸屬된 後에도 軍隊를 보유할 수 있고 香港과 같은 지위를 繼續 유지할 수 있다고 言及하였다.

鄧小平이 제기한 香港방안은 自治權과 軍隊保有權限이 있는 準獨立國家案이다. 그러나 自由中國 政府로서는 香港방안이 臺灣을 반식민지화 할 뿐 아니라 그 自治權의 保障도 기할 수 없으며, 中國 본토에의 병합을 위한 전단계로 간주하였다.

1975年 4月 8日 福州軍區 司令官 피정균은 臺灣의 平和的 解放을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단계는 “비교적 長期間 동안 民主改革을 實行치 않는다.” 第2段階는 “制限的으로 民主改革을 實行한다”, 第3段階는 “底段階의 民主改革에서 高段階의 社會主義 개조를 이룬다.”고 밝힌바 있다.

1984年 2月 22日 鄧小平은 前美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에게 “中國統一 以後 臺灣은 資本主義를 維持할 수 있으며 大陸은 社會主義를 實行한다. 即 1個 中國에 2個制度를 維持할 수 있고 雙方은 서로 해치치 않는다.”고 言及, 「1國家 2制度」란 단어를 정식 使用하였다.

그리고 吳學謙 中共外交部長은 China Daily 지와의 회견 (84. 4.26) 을 통해 최초로 공식적인 제안을 하였다.

吳學謙은 “ 1 個國家에 2 個制度를 認定하는 方式, 即 臺灣, 香港 問題의 解決方案으로 韓半島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 ” 고 言及하면서 “ 南北韓 雙方이 서로를 認定하고 高유의 政治思想, 社會制度를 維持할 수 있는 연방제가 肯定的인 意味를 갖는다 ” 고 밝혀 “ 1 國 2 制度論 ” 과 “ 聯邦制 ” 와의 關係에 대해 言及하였다는 點에서 注目되고 있다.

또한 1984 年 5 月 15 日 趙紫陽總理는 第 6 期 全人大 第 2 次會議 ‘ 政府事業報告 ’ 에서 “ 歷史的 經驗과 臺灣의 現實에 비추어 우리 는 祖國統一 後 1 個國家에 2 個制度를 實行할 수 있다는 구상을 提示하는 바이다 ” 고 淸명함으로써 공식문서에 ‘ 1 國家 2 制度 ’ 를 提示하였는데 이로써 ‘ 1 國家 2 制度論 ’ 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鄧小平은 同年 6 月 25 日 香港반환협정 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訪問한 香港行政 입법위원들과의 대담에서 “ 香港에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二 制度가 허용될 것 ” 이라고 言及했고, 中共 시사주간지 “ 조망 ” 과의 회견에서 “ 中共과 臺灣은 서로 相對方을 삼킬 수 없을 것이며, 香港問題를 解決한 1 國 2 制度 方式이 臺灣과의 關係에서도 그대로 適用된다고 ” 言及함으로써 ‘ 1 國 2 制度論 ’ 이 香港반환협정에 根據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美國을 訪問中 (85.7.22 ~ 31) 인 李先念 中共 國家主席은 LA 에서 開催된 華僑團體의 歡迎宴會에서 “ 한나라에서 두가지 制度를 實施할 데 대한 구상은 臺灣의 祖國歸屬 問題를 解決하는 좋은 方法이며, 나라가 統一된 前提下에서 두가지 社會制度가 存在하게 되면 어느 一方이든지 相對側을 병담할 수 없습니다. 大陸에서는 臺灣에

사람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軍隊도 파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臺灣當局과 該當部門의 利益이 徹底한 保障을 받게 됩니다. 이 構想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해서 기울인 中國政府의 새로운 커다란 努力”이라고 強調하였다.

나. 「1國2制度」의 內容

「1國2制度」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中共이 과거 수年間 追求해온 臺灣問題 解決方案의 理論化 結果라고 볼 수 있으며 聯邦制에 대한 中共式 表現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鄧小平이 中共時事 週刊紙 “조망”과의 회견 ('84.6.30)에서 “ 中共과 臺灣은 서로 相對方을 삼킬 수 없을 것이며, 香港問題를 解決한 1國2制度 方式이 臺灣과의 關係에서도 그대로 適用된다.”고 言及한 事實에 비추어 볼 때 “1國2制度論”의 內容이 “ 香港 반환협정 ” (84.9.26 가조인, 84.12.19 정식조인)에 根據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香港 반환협정의 주요 내용

- 香港은 1997年 7月 1일을 기해 中共 中央政府에 직속되는 特別 行政區가 되며, 外交 國防 以外の 分野에서는 高度의 自治權을 保有함.
- 香港特區에는 獨自的인 行政, 立法, 司法權이 부여되며 現在의 司法制度는 그대로 유지함.
- 香港政府는 現地住民으로 構成되며 行政府의 수반은 選舉 或은 協議에 依해 香港에서 선출하고 中共이 임명함.

- 現行의 社會·經濟制度 및 生活樣式은 그대로 존속하며 사상, 言論, 집회, 파업, 종교, 인신의 자유는 法律로 保障되고 個人의 所有權, 財産承繼權, 外國資本은 法律의 保障받음.
- 홍콩은 자유항,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와 獨立된 관세 구역을 유지하며, 홍콩달러의 통용도 보장함
- 홍콩은 獨立財政을 樹立, 執行하며 中共은 홍콩에서 稅金을 徵收하지 않음.
- 홍콩은 '홍콩차이나'란 이름으로 世界各國 및 國際組織과 相互 호혜의 經濟·文化關係를 樹立하여 必要한 협정(여행증명서 발급등)을 締結할 수 있음.
- 홍콩自體의 치안은 홍콩에서 責任을 짐

사실「1國家 2制度」論은「티베트의 平和解放」時 이미 운용된 적이 있다. 當時에는 비록 理論은 없었지만 티베트의「平和解放協定」은 있었으며 또한 短期間이나마「1個國家, 2個制度」의 事實은 存在했다. 다만 얼마되지 않아 中共은 티베트에「民主改革」을 實行함으로써 티베트폭동을 야기시키고 달라이라마가 망명함으로써「1國家 2制度」의 국면은 종식되었다.

이로 볼때「1國家 2制度」의 策略은 毛澤東 시대에 이미 決定되었으며 다만 公開의으로 宣言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이를 鄧小平이 구체화시켜 統戰理論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上述한 바 있는 81年 9月 葉劍英 全人大常務委員長의 臺灣 祖國復歸 및 平和統一 實現을 위한 9個項 제의는「1國家 2制度」의 構想을 正식으로 提起한 것으로서 원래의 構想이었던 自治區를 特別行政區로

變更, 邊方民族의 自治區와는 별도로 特別行政區의 모델을 創出한 것이다.

이와같은 「1 國家 2 制度論」은 中共政權을 中國唯一의 政府로 하고 다만, 一部 地域에서 資本主義制度 즉, 經濟특구보다 조금 완화된 '特別行政區' 모델을 實行하도록 許容하는 것이며 資本主義制度를 維持시킨다는 것은 經濟制度에 한정된 것일뿐 資本主義社會의 政治制度를 許容하는 것이 아니다. 즉 政治적으로 고도의 自治權을 가질 뿐 「1 國 가운데 相互 대립되는 2 個의 獨立된 政治實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中共憲法 第 31 條에는 「特別行政區」의 規定을 두고 있으며 홍콩은 1997 年 7 月 1 日을 기해 中共 中央政府에 直屬되는 「特別行政區」로 되어, 外交 國防以外的 分野에서는 고도의 자치를 보유하고 規定하였으나, 憲法 第 1 條(如何한 사람도 社會主義 制度의 破壞를 禁止한다) 第 5 條(一般法規는 憲法에 抵觸될 수 없다.)와는 矛盾되고 있으며, 鄧小平은 홍콩에 軍隊를 駐屯할 權利가 있다고 言及('84.5.25)한 사실을 勘案할때 中共이 내세우는 「1 國 2 制度論」은 홍콩, 臺灣과의 關係에서 體制上 異質性으로 말미암아 즉각 解決할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 異質的인 體制를 相當期間 共存(홍콩의 경우 50 年)케 한 뒤 積極적인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過渡的 統一戰線 戰略인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이 “1 國家 2 制度는 중대한 戰略的 政策決定이며 결코 臨時 變通이 아니다”고 言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共產黨의 戰略이 바로 鬭爭策略임을 勘案해 볼 때 이 「1 國家 2 制度 構想」은 長期的인 것이라기 보다 臨時變通의 計略임에 틀림이 없다. 中共은 現在 홍콩問題에 「1 國家 2 制度」의 構想을 初步

的으로 實行에 옮기면서 이를 對臺灣統一戰略으로 積極 活用하려고 있다. 이처럼 鄧小平 등장 以後 中共은 平和統一을 口號로 多邊의인 外交를 合理化시켜 나가고 있으나 결코 武力統一을 拋棄한 것이 아니다.

鄧小平은 “當場 臺灣問題를 解決하기는 간단치 않으나 最後에 가서는 軍事行動을 通해 解決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10年, 20年 심지어 그보다 긴 時間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見解는 1954年 8月 周恩來가 政協常務委擴大會議에서 “臺灣解放을 위해 一定條件下에서는 平和解決方案을 취하되 同時에 武力使用도 拋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金門島 砲擊을 지시했던 當時의 戰略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1985年 6月 1日 香港의 半月刊誌인 “百姓”은 胡耀邦 中共黨總書記가 同誌 發行人 陸鏗과의 海峽에서 앞으로 10年 以內에 中共은 武力을 使用하여 臺灣을 統一할 可能性 이 있음을 시사하였는 바 그 具體的인 發言內容은 다음과 같다.

胡耀邦의 會見內容

- 우리가 臺灣을 攻擊할 軍事力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며 이같은 暫定期間은 4年에서부터 8年까지도 걸릴 것이다.
- 7~10年의 期間 內에 우리는 現代化된 國防力을 갖춘 強力한 經濟를 享有하게 될 것인 바 그때까지 대부분의 臺灣人들이 祖國에의 復歸를 바라고 단지 몇몇만이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武力을 使用할 것이다.

- 臺灣問題는 親臺灣로비활동이 있는 美國으로부터의 繼續되는 간섭이 解決되어야 하므로 中共은 美國의 간섭도 考慮할 것이다.
- 우리는 準備되지 않은 싸움은 勿論, 100% 勝利가 確信되지 않는 戰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胡耀邦의 發言은 對臺灣武力統一의 時期를 中共의 國家現代化 計劃의 마무리 段階인 9次 5個年 計劃(1996~2000年)의 始發 및 香港의 中共歸屬(1997年)과 때를 같이 하고 있으며, 中共의 現代化가 成功裡에 進行되면 臺灣國民의 祖國復歸希望에 따른 臺灣內部로부터 動搖가 惹起될 것임을 確信하면서 武力에 의한 除去對象을 國民黨 幹部들로 局限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10年 後에는 美·中共關係가 보다 긴밀화되면서 美國의 對臺灣 政策은 相對的으로 漸次 輕視됨에 따라 武力統一을 위한 障礙要因이 減少될 것임을 豫想하고 있는 點이 特徵的이며, 그 眞意가 武力行使에 있다기 보다는 香港·마카오 問題를 解決한 統戰攻勢의 餘勢로 中共의 ‘一國家 二制度’ 統一方案이 對內外로부터 좋은 反響을 받고 있는 데다가 臺灣側이 一切의 統一協商提議를 拒否하고 있는 點을 감안, 戰爭威脅을 通해 臺灣國民의 動搖를 誘發시킴으로써 中共側 協商에 應하도록 하는 輿論을 助長하려는 것이다. 時期的으로도 10年後쯤에는 中共의 經濟 및 軍事力이 臺灣을 능가하게 됨으로써 臺灣側 民心을 充分히 掌握할 수 있을 것이라고 判斷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自由中國의 立場

臺灣은 中共의 統一戰略이 1次的으로 臺灣内部的 暴動, 國際社會에서의 孤立 등으로 因해 “中華民國”이라는 稱號를 拋棄하도록 策動하며, 2次的으로 平和協商을 通해 臺灣의 現體制를 維持시켜 相當期間의 共存 以後 段階的으로 社會主義로 改造해 나가려는 것이라 評價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이 主張하는 「1國 2制度論」은 香港, 臺灣과의 體制上 異質性을 即刻 解決하기 어려우므로 異質的인 體制를 相當期間 共存 (香港의 境遇 50年間)케 하여 窮極的인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過渡期的 戰略으로 보고 있다.

또한, 中共이 自治를 保障한다는 美名下에 吸收해 버린 티베트, 신강, 내몽고 自治區가 中共政府의 絶對的 影響下에 있음을 想起해 볼 때 「香港特別行政區」도 中共 中央政府에 直屬된 機關으로써 外交, 國防, 主要官吏의 任命 등 一定分野에서 中共의 統制를 받을 것이므로 2個體制의 共存이라는 事實은 別意味가 없는 宣傳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中共이 臺灣을 武力으로 統一하겠다는 것은 中共 立場에서 相當히 큰 冒險이라 아니 할 수 없다.

臺灣은 中國 本土로부터 150마일 떨어진 海上에 位置하고 있고 섬의 中央은 高山峻嶺이 南北으로 떨어 있으며, 해발 1만피트 以上の 高山만 해도 62個나 된다. 그러므로 戰略的인 面에서 볼 때 臺灣海峽은 防禦軍에 비해 攻擊軍에게는 數倍에 該當하는 負擔을 줄 뿐 아니라 臺灣의 地形은 東西兩面에서의 협공이 事實上 어렵게 되어 있다.

이는 1949年·'54·'58 등 3次에 걸친 金門·馬祖島에 대한 中共

의 軍事的 시도가 큰 犧牲만을 支拂한 채 挫折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中共이 만일 臺灣에 대하여 軍事的인 行動을 取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첫째, 軍事上의 問題로서 中共이 만일 臺灣海峽을 건너 臺灣을 攻擊한다 할 때 中共은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海·空軍의 3/1에 相當하는 犧牲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同時에 中共은 蘇聯이 주는 軍事的인 威脅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둘째, 經濟上의 問題로서 中共이 만일 臺灣에 대하여 軍事的인 行動을 취한다면 中共의 經濟는 분명 큰 打擊을 받을 것이다. 더욱기 最近 몇年 동안 西方과 樹立하여 놓은 科學技術協力關係와 經濟關係에도 심각한 問題가 惹起될 것이다.

셋째, 道義上의 問題로서 만일 中共이 수백만의 그들 同胞를 殺傷하면서까지 臺灣의 大陸復歸를 達成한다면 道義上의 正當性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點이다. 더욱 軍事的인 衝突로 因해 臺灣의 經濟와 工業이 完全 破壞된다면 臺灣의 復歸가 어떤 意味를 가지느냐 하는 點 等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臺灣海峽에서의 武力에 의한 中國統一 可能性은 일단은 稀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臺灣이 國共會談에 應할 可能性은 現在로서는 稀薄하나 國際的 孤立化가 加速되어 修交國이 減少 狀態에 있고 이에 따라 輸出市場의 喪失로 經濟的 威脅에 直面하는 同時에 中共의 經濟力과 軍事力이 向上되어 武力에 依한 統一 可能性이 增大될 境遇 會談에 應할 可能性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하한 境遇라도 臺灣이 會談에 應한다면 中共의 資源 및

市場을 活用함으로써 自國의 經濟成長에 有利한 與件을 造成할 수도 있을 것이나 國民黨이 維持해 온 正統性은 崩壞되고 國民黨의 組織은 漸次 瓦解될 것이며, 中共이 臺灣社會의 下部構造로부터 混亂을 造成함으로써 臺灣의 '反共復國' 은 無用之物로 化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中共의 少數民族現況

1. 概 觀

| | |
|-------|---|
| 少數民族數 | ○ 55 個 民族 (漢族除外한 全民族 數) |
| 人 口 數 | ○ '82 年 現在 6,723 萬 名으로 總人口의 6.7% 中 約 5,000 萬 名이 自治區域에서 生活하고 있음. |
| 居住地域 | ○ 全國土의 63%를 占할정도로 廣闊한 地域에 分布되어 있음. |
| 行政區域 | ○ 自治區·自治州·自治縣으로 나뉘짐 (現在 自治區 5, 自治州 31, 自治縣 80) |

主要少數民族現況

(10 萬 名 以上)

(1982 年 現在)

| 人口 順位 | 民族名 | 系 統 | 人 口 (千名) | 語 文 | 主要分布地域 |
|----------|---------------|-----|-------------|---------------------|---------------------------------------|
| 1 | 壯 族 | 타이系 | 13,378 | 壯語, 文 주요漢文 사용 | 廣西壯族自治區, 雲南· 廣東·貴州省 |
| 2 | 回 族 | 突厥系 | 7,219 | 漢語, 文 | 寧夏回族自治區, 甘肅· 河南·青海省, 新疆 위 글 自治區 |
| 3 | 위글族 (維吾爾族) | " | 5,957 | 위글語, 文 | 新疆維吾爾 自治區 |
| 4 | 彝 族 | 藏緬系 | 5,453 | 彝語, 文 | 雲南·四川·貴州省 |

| 人口 順位 | 民族名 | 系 統 | 人 口 (千名) | 語 文 | 主 要 分 布 地 域 |
|----------|------------|------|-------------|----------------------|-----------------------------|
| 5 | 苗 族 | 苗瑤계 | 5,031 | 苗語, 文 | 貴州·湖南·雲南省, 廣西壯族自治區 |
| 6 | 滿 族 | 퉁구스系 | 4,299 | 漢語, 文 | 遼寧·黑龍江·吉林·河北省, 北京市 |
| 7 | 藏 族 | 藏緬系 | 3,870 | 藏語, 文 | 西藏自治區, 青海·四川·甘肅·雲南省 |
| 8 | 蒙古族 | 蒙古系 | 3,412 | 蒙古語, 文 | 內蒙古自治區, 遼寧·吉林·黑龍江省, 신강위글自治區 |
| 9 | 土家族 | 藏緬系 | 2,833 | 土家語, 漢文 | 湖南·湖北省 |
| 10 | 布依族 | 타이系 | 2,120 | 布依語, 文 주로漢文 使用 | 貴州省 |
| 11 | 朝鮮族 | 퉁구스系 | 1,764 | 韓國語, 文 | 吉林·黑龍江·遼寧省, 內蒙古自治區 |
| 12 | 侗 族 | 타이系 | 1,425 | 侗語文, 주 로漢文사용 | 貴州·湖南省, 廣西壯族自治區 |
| 13 | 瑤 族 | 苗瑤계 | 1,402 | 瑤語, 漢文 | 廣西壯族自治區, 湖南·雲南·廣東·貴州省 |
| 14 | 白 族 | 藏緬系 | 1,131 | 白語, 漢文 | 雲南省 |
| 15 | 哈尼族 | " | 1,059 | 哈尼語, 文 | 雲南省 |
| 16 | 哈 薩 克 族 | 突厥系 | 908 | 哈薩克語, 文 | 신강위글自治區, 青海省 |

| 人口 順位 | 民族名 | 系 統 | 人 口 (千 名) | 語 文 | 主 要 分 布 地 域 |
|----------|-------|-----|--------------|-----------------------|---------------|
| 17 | 傣 族 | 타이系 | 840 | 傣語, 文 | 雲南省 |
| 18 | 黎 族 | " | 818 | 黎語, 文 주로는 사용 漢文 | 廣東省(海南島) |
| 19 | 僳僳族 | 藏緬系 | 481 | 僳僳語, 文 | 雲南·四川省 |
| 20 | 畚 族 | 苗ㄩ系 | 369 | 漢語, 文 | 福建·浙江省 |
| 21 | 拉祜族 | 藏緬系 | 304 | 拉祜語, 文 | 雲南省 |
| 22 | 佧 族 | 南亞系 | 299 | 佧語, 文 | 雲南省 |
| 23 | 水 族 | 타이系 | 286 | 水語, 漢文 | 貴州省 |
| 24 | 東鄉族 | 突厥系 | 279 | 東鄉語, 漢文 | 甘肅省, 新疆 위글自治區 |
| 25 | 納西族 | 藏緬系 | 245 | 納西語, 漢文 | 雲南省 |
| 26 | 土 族 | 타이系 | 159 | 土族語, 漢文 | 青海·甘肅省 |
| 27 | 柯爾克孜族 | 突厥系 | 114 | 柯爾克孜語, 文 | 新疆 위글自治區 |
| 28 | 羌 族 | 藏緬系 | 103 | 羌語, 漢文 | 四川省 |

資料：中國年鑑，1984。

2. 少數民族政策

가. 少數民族政策 變遷過程

(1) 中共政權樹立 이전

中國共產黨은 草創期 民族問題를 내세워 國民黨의 反共예봉을 回避하고, 각 少數民族의 獨立을 怱동질하여 內部를 分裂시킴으로써 그들의 國家權力 爭取에 有利하도록 利用하는 한편, 大陸의 분할점거 方式으로 採擇하였다.

이에따라 中共의 少數民族政策은 革命階段에 따라 여러차례 變更되었는 바, 그 主要한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共政權 樹立前 少數民族政策 變化內容

| 時 代 | 內 容 | 備 考 |
|----------------------------------|-----------------------------|---------------------------------|
| “ 中華聯邦共和 國 ” 時代 (1922- 36) | ○ 民族自治區의 聯邦制度 提議 | 第 2 次 全國代表大會 (1922.7) |
| | ○ “ 中華聯邦共和國 ” 표방 | |
| | ○ 民族自決權 承認 | 中國共產黨 第 6 次 大會 (1928.8) |
| | ○ 完全分立權과 自由聯合權 認 定 | 中國 소비에트區域 會議 (1930.5) |
| | ○ 完全自決權 承認 | 소비에트 第 1 次 全國代表 大會 (1931.11) |
| | ○ 民族自決權 承認 ○ 分離 · 獨立權 認定 | 소비에트 第 2 次 代表大會 (1934.1) |
| | ○ 自治權은 부여하되, 分離權은 留保 | 延安政權樹立 이후 (1936) |

| 時 代 | 內 容 | 備 考 |
|-----------------------|--|---|
| 自決, 自治區時代 (1936-19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離權, 또는 獨立權否定 ○ “統一國家內”의 民族自治單位建立을 提議 ○ “自決”과 “自治政府” 등의 用語 驅使 保留 | 中國共產黨 第7次大會 (1945. 4) 에서 毛澤東은 “國民黨에 의한 차별대우는 국수주의의 結果”라고 非難하면서 中國人民의 解放과 少數民族의 平等 및 民族自決權의 認定을 宣言함. |

(2) 中共政權樹立後

中共政權 樹立前의 民族政策이 自由分화를 強調하였던데 비하여 政權樹立後에는 統一聯合을 強調하여 民族의 分離權이 否定되고 多民族國家政策이 實施되었다.

1949年 9 月에 採擇된 ‘中國人民 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서는 모든 民族의 同等한 權利義務를 規定하였고, 民族의 平等權에 의해 大漢族主義와 排他主義를 반대하였으며, 地域自治를 許容하여 自治機構의 代表選出, 固有言語, 傳統, 宗教의 自由등을 認定하였다.

또한 中共政權 樹立後 發表된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 自治實施 綱要’ (1952.2) 에 따라 現在와 같은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의 成立을 制度化 하였다. 이처럼 中共當局은 政權樹立以後 文化大革命期 까지는 주로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體制構築”에 注力하였기 때문에 諸民族의 團結 強化 및 大漢族主義 배제, 自治權行使의 許容, 傳統文化의 保存 및 發展등 同和政策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文化大革命期에는 林彪와 4 人幫이 民族問題보다 階級問題를 우선시하여 少數民族政策을 계급일변도 政策으로 變更하였다.

1975 年에 이르러 民族政策은 다시금 文革以前으로 환원되어 民

族平等과 自治權行使를 許容하게 되었다.

나. 少數民族 政策內容

中共憲法에 명기되어 있는 少數民族政策 內容을 보면,

- ① 自治地方의 長은 當該地域 民族 出身으로 함. (114條)
- ② 地方財政에 관한 自治權을 認定(117條)하며, 地方經濟 建設事業과 資源開發을 自主的으로 管理함. (118條)
- ③ 當該地方의 治安維持를 위해 公安部隊 組織을 許容함.(120條)
- ④ 各民族 公民이 自己民族 文字·言語로 訴訟할 權利를 認定(134條)하는등 少數民族 問題를 幅넓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第6期 全人代 2次會議(1984.5)에서 採擇된 '民族區域 自治法'의 內容을 보면,

- 첫째, 國家計劃의 주도아래 '地域特性·必要'에 따른 經濟建設
- 둘째, '地域特性'에 부응하는 經濟管理體制의 改革
- 셋째, 自主的 基本建設과 財政赤字에 대한 國家補助
- 네째, 自主的 對外貿易
- 다섯째, 民族教育發達과 自主教育의 장려 등을 規定하여 開放的·好意的 少數民族政策을 전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中共의 少數民族政策은 少數民族의 居住地가 대부분 邊境地域에 位置하고 있어 少數民族의 中央政府에 대한 적대감표시는 '統一達成'과 '安全團結'에 危害 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現代化政策과 關聯하여 볼때 少數民族의 居住地域이 全國土의 63%를 차지, 廣대한 '資源寶庫地帶'인데다 經濟現代化에는 大規模의 '資源開發과 使用'이 不可避하므로 이들 地域에 대한 政策的 고려가 現實

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少數民族의 自發的 參與가 배제되어 文化的 葛藤과 社會的 긴장이 造成된다면 社會主義 建設에도 부정적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少數民族問題를 中共의 對外政策과 反霸權主義 등과 關聯시켜 볼때, 第3世界에의 浸透를 기도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立場에 있다.

中共居住僑胞實態

1. 歷史的背景

韓人の 中國領土로의 移住는 17世紀에서부터 始作되었다고 하나, 실제 李朝末葉 (1869~75年頃) 韓半島 北部地域에 凶年이 들게되자 社會的 混亂과 經濟的 逼迫을 받아 주로 間島地方으로 移住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韓人들이 間島地方 뿐만 아니라 滿洲 全域과 中國 大陸으로 移住地域이 擴大되고 大規模의 移住를 한것은 日帝의 韓半島 侵奪을 契機로 促進되었다.

日本の 朝鮮農業政策으로 土地를 빼앗기거나 浮浪民이 된 零細農民들이 移住하기 始作한데 이어, 1910年 韓日合邦에 따라 많은 韓人들이 獨立運動 등 政治的 理由로 中國大陸으로 건너갔다.

1910년에 10萬名이던 中國 居住 韓人들이 1930年 以後 日本の 滿洲事變擴大와 強制移住로 60萬名으로 늘어났으며, 日帝의 끊임없는 政治的 壓迫과 經濟的 搾取를 피해 中國 各地에 흩어져 살았던 韓人들은 日帝末에는 130萬名 以上으로 急增하였다.

(1940年 滿洲國에서 實施한 第1回 國勢調查 報告는 在中韓人을 130萬名으로 集計).

이들 韓人의 定着類型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類型은 道門·연길 등 接境地域의 北間島地方에 咸鏡道 出身이 위주가 되어 開拓·定着한 地域으로서 現在는 延邊朝鮮族 自治州가 되어 있고 人口의 절대다수가 韓人이다.

둘째 類型은 日帝에 의해 強制로 集團 居住地域을 형성케 된 地域

으로서 現在의 遼寧省과 黑龍江省에 흩어져 있는 小規模 集團部落을 들 수 있다.

셋째 類型은 일단 심양·무순·장춘·길림 등 主要都市와 商工業地域에 居住하던 韓人들이 2次大戰을 前後하여 再次移住, 새로운 集團을 形成하고 中國人과 混合되어 있는 形態를 들 수 있다.

2. 人口 및 地域分布現況

1982 年에 實施된 國勢調查結果 朝鮮族으로 分類된 이들은 約 176 萬名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學者들은 約 230 萬名 程度로 推算하고 있으며, 55 個 小數民族中 11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海外 韓人 가운데서는 가장 큰 集團을 이루고 있다.

僑胞分布現況

| 地 域 | 人 口 (名) | 比 率 (%) | 備 考 |
|---------|-----------|---------|--------------------|
| 吉 林 省 | 1,103,402 | 62.8 | 延邊自治州에 77 萬名 |
| 黑 龍 江 省 | 431,140 | 24.5 | 居住 |
| 遼 寧 省 | 198,397 | 11.3 | |
| 內 蒙 古 | 17,564 | 1 | |
| 河 北 省 | 1,759 | 0.1 | |
| 北 京 市 | 3,909 | 0.2 | |
| 天 津 市 | 828 | 0.05 | |
| 上 海 市 | 461 | 0.03 | |
| 總 計 | 1,757,460 | 100 | 北韓出身 1/3, 南韓出身 2/3 |

* 1984. 4.12 延邊人民放送 發表
(第3次 人口補充調查 資料)

* 韓國·北朝鮮 總覽(1984, p.544)에는 1,763,870 名으로 되어 있음.

그중 吉林省에 110 萬名, 黑龍江省에 43 萬名, 遼寧省에 20 萬名이 居住하고 있어 東北 3 省에 대부분 散在해 있는 셈이며, 延邊自治州에는 韓人 全體의 約 44%인 77 萬名이 살고 있다.

3. 法的·政治的 地位

가. 法的 地位

1982 年 12 月에 採擇된 中共의 新憲法에 의하면

“國家는 各 少數民族의 合法的인 權利 및 利益을 保障하며 各民族의 平等, 團結, 相互援助關係를 維持 發展시킨다... (중략) ... 各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方에서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自治機關을 設立하여 自治權을 行使한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韓民族의 自治機關은 1952 年 9 月 3 日 成立된 延邊朝鮮族自治州 (圖門, 延吉 등 3 市, 5 縣으로 構成) 및 長白朝鮮族自治縣이 있다.

中共은 1950 年을 起點으로 그 以前에 居住한 모든 少數民族에게 中共國籍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大部分의 中共 居住 韓人들은 中共國籍을 取得하였으며, 1950 年 以後에 移住한 僑胞들은 지주 (地主: 永住權 所持者) 가 되었다.

特記事項으로, 中共은 中共國籍의 우리 僑胞들에 대한 北韓의 政治的 行政的 影響力을 一切 許容하지 않고 있으며, 北韓國籍의 僑民들에 대한 統制만 北韓大使館에서 擔當하도록 許容하고 있다.

나. 政治的 地位

少數民族의 人民代表들이 漢族과 同等하게 政治權利를 行使하게 되

어 있음에 따라 韓人僑胞들도 그 밖의 民族과 平等한 立場에서 政治的 地位를 누리고 있다. 實際 例를 들면,

- ① 中央의 全國人民代表大會에 韓民族 代表 14名 (女子 6名 包含) 이 參加하고 있으며, 그중 全人代常務委員 155名中 조용호, 黨中央委員會 委員 212名中 趙南起, 李德洙, 黨中央紀律 檢查委員會 委員 135名中 문정일이 각각 參與하고 있다.
- ② 自治州·縣의 行政機關에도 僑胞들이 半數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 ③ 軍部內에서도 頭角을 나타내어 中將級도 있다고 한다 (趙南起 自治州代表는 中共軍 總後勤部 副部長임).

延邊 朝鮮族 自治州에서의 朝鮮族 幹部比率

| 機 關 | 韓族 比率 (%) | 備 考 |
|--------------|-----------|---------------------------------|
| 自治州 人民代表 大會 | 50.8 | 自治州 人民政府主席, 吉林省 副省長, 延邊大學長 등 |
| 市·縣 人民代表 大會 | 52.8 | |
| 自治州 人民委員會 委員 | 58.6 | |
| 各級黨, 政權機關 幹部 | 60.0 | |
| 人民委員會 幹部 | 63.0 | |
| 各 縣, 市長 | 57.0 | |
| 人民公社 社長 | 63.0 | |

* 自治州 全體의 韓族幹部는 29,500名 (59%)라고 함 (85.8 홍콩 新 晚報).

中央과 各級 行政機構에는 “民族事務委員會”가 있어 그 民族地區의 特性을 監督하며, 現在 中央民族 事務委員會에도 韓人僑胞의 代表가 과전되어 있다.

中共 第 6 期 全人大代表中 韓族出身者

| 地 域 別 | 姓 名 | 備 考 |
|---------------------------------|---------|--------------|
| 北 京 市 | 安 太 庠 | 北京市 代表 70 名 |
| 遼 寧 省 | 嚴 載 順 女 | 遼寧省 代表 141 名 |
| | 李 玉 南 女 | |
| 吉 林 省 | 尹 明 淑 女 | 吉林省 代表 86 名 |
| | 朴 龍 浩 | |
| | 朴 文 一 | |
| | 李 宗 鐵 | |
| | 金 永 順 女 | |
| | 鄭 英 淑 女 | |
| | 趙 南 起 | 黨 12 期 中央委員 |
| | 曹 龍 浩 | |
| | 石 春 姬 女 | |
| | 金 再 明 | |
| | 康 蘭 泳 | |
| 총대표 2,978 名中 韓族 14 名 (0.47 %) | | |

資料：中共人命錄，國立 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1983.

4 . 生活實態

가. 職 業

延邊地方은 中共米作의 先進地方이며, 僑胞들중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으나 寒冷地帶에서의 벼栽培를 成功的으로 遂行하여 中共의 다른 地域보다 單位面積當 生産性이 높기 때문에 生活水準이 中國人에 比해서는 비교적 나은 형편이다. 이것은 土地의 所有權이 國家에 있고 個人이 耕作權을 가지고 있으나 收穫量의 20%만 國家에 바치고 80%는 自由市場을 통해 販賣하기 때문에 實際 시골 農夫들이 都市勤勞者보다 收入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延邊地方은 林業基地이며, 金·銀 등 地下資源이 풍부한 관계로 工場이나 鑛山勤勞者·藥材商·商人들도 상당수 있으며, 大學을 卒業한 僑胞들은 官吏·教師·科學者·技術職 등에 많이 進出하여 延邊大學教授 825名 中 韓國人은 635名으로서 77%나 차지하고 있다.

나. 言語生活

中共의 小數民族 優待政策에 따라 現在 中國語와 韓語가 共用語로 되어있어 看板이나 標語에서도 兩國語가 併記되며, 橫書의 境遇에는 韓語를 위에 적고 있으나 僑胞들의 日常用語에는 中國語가 相當數 섞여 있어 言語生活이 多少 中國化 되어가고 있다.

韓語는 發音이나 綴字法이 모두 北韓것과 同一하며, 漢字를 섞어 쓰지 않고 있는데, 이는 延邊自治州에 咸鏡道 出身이 많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以北말이 爲主가 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延邊自治州의 學校 教育에서는 韓語 爲主로 가르치고 있는데, 小學校의 경우, 韓語 爲主로 教育하며, 中國語는 2學年부터 가르치고 있으며 大學은 教授의 自由意思에 맡기지만 延邊大學에서는 大部分 韓語로 講義하고 있다.

또한 韓語問題를 研究하기 위한 機關으로 “朝鮮語文研究會”가 있

다는 점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다. 教 育

延邊은 中共에서 제일 먼저 完全就學을 實施하였는 바, 1952年 小學校가 完全 普及되었고 1957年에는 文盲이 解消되었다고 하며 1958年에는 初級 中學教育이 重點 普及되었다.

그런데 高級中學 卒業後에 大學에 進學하지 못하면 集團農場에 들어가 一定期間 農業에 從事하기 때문에 大學進學의 競爭은 치열하며 “民族教育研究所”는 韓民族 教育에 關係 研究하는 機關이다. 그러나 自治州 안의 各級 學校에서는 한글은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나 韓國史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教育機關現況

| 區 分 學 校 | 學 校 數 (個) | 學 生 數 (名) | 就 學 率 (%) | 備 考 |
|------------------|--------------|--------------|------------------|---------------------------------------|
| 幼 稚 園 | 881 | | 68 | 延邊自治州만 計算 |
| 小 學 校 | 1,379 | 275,000 | 98 | 6年制 (延邊自治州 1,184 個校) |
| 中 學 | 251 | 261,000 | 92 | 初級·高級을 합친 5年制 (延邊自治州 213 個校) |
| 大 學 | 5 | | 人口 1 萬名當 33 名 | 延邊綜合大學, 延邊醫學院, 延邊農學院, 延邊師範學校, 延邊藝術學校. |
| 專門學校 및 技術職業學校 | 28 | | | 衛生技術學校, 財務幹部學校 등 |

主 要 大 學 現 況

| 學 校 名 | 設 立 年 度 | 設 置 目 的 | 備 考 |
|----------|---------|--------------------|--|
| 延邊綜合大學 | 1949.4 | 主로 僑胞教育의 中(高)教師 養成 | 民族教育, 僑胞들간의 文化協力을 위한 機能을 하며 中國 最高의 韓語研究學部임. |
| 延邊醫學院 | 1949.9 | 醫療從事者 養成 및 僑胞醫療 | ○ 病床數: 500, 在學生 2,100名 ○ 1975年까지 3,000名 以上の 醫師 養成 |
| 延邊農業專科學院 | | 農業指導員 育成 | ○ 州內 各縣의 農業技術 指導員 養成所 附設. ○ 通信教育制度 實施 |

* 延邊大學卒業生은 84年末 8,300名임 (85.8. 香港 新晚報).

라. 文化生活

新聞은 한글로 된 延邊日報와 黑龍江省新聞(韓語版·5萬部), 遼寧省新聞(韓語版), 吉林日報(中國語版)가 있으며, 其他 參考消息報는 數種에 이르고 있다.

放送은 연길라디오 TV放送局(韓語·中國語 玆用), 할빈라디오放送, 장춘라디오放送이 있으며, 韓國放送과 北韓放送도 자유롭게 聽取할 수 있다. 또한 장춘에서 1週日에 2回, 延邊地域에서는 每日 2時間 程度 中繼放送하는 黑白텔레비도 視聽할 수 있다. 순한글판 文藝雜誌 “아리랑” 과 그 姊妹誌인 “少年兒童報”가 있으며, 그밖에 “延邊文藝”, “도라지”, “송화강” 등이 있다.

韓國語 圖書發行 取扱出版社로는 延邊人民出版社, 黑龍江 朝鮮民族出版社, 民族出版社(北京), 외문출판사, 遼寧人民出版社 등 41個社가 있으며 ('83. 8.11, 北京放送), 年間 圖書販賣量도 40餘

萬卷으로 계속 增加趨勢에 있다.

學者 및 語文關係者들로 構成된 “朝鮮語學會” 및 “朝鮮族文學協會”도 있고, “延吉藝術學校”를 비롯하여 專門的인 朝鮮民族藝術團으로서 “延邊歌舞團”, “延邊活劇團”, “延邊극단”이 있으며, 特히 “延邊歌舞團”은 우리의 傳統的인 唱·춤·民謠 素材로 中共 各地에서 巡廻公演을 하고 있다. 또한 延吉市에는 “延邊朝鮮族 民族博物館”('83年 開館)이 있으며, 그 內部에는 “延邊革命 鬪爭史 진열청”(抗日鬪爭史 展示)과 “성취전람실”(延邊自治州 發展史)이 있다.

5. 日 常 生 活

가. 給 料

職工은 見習工을 거쳐 1級부터 8級까지 있는데, 8級 職工의 月給料은 95 원(韓貨 38,500 원) 程度이며 40歲 程度이면 大部分 60 원 程度를 받고 大卒 初賃도 60 원(韓貨 24,000 원)이며, 年間 2回程度 手當을 받고 있다고 한다(中共僑胞 口述 證言).

심양시 동릉구 혼하인민공사 만용生産大隊은 584 家口 2,480 名 全員이 韓國人이며, 400 名은 工場에 다니고, 나머지는 農業에 從事하는데 村民 1人當 年間 平均 420 圓의 收入을 올리고, 個人能力에 따라 2,000 圓까지 버는 사람도 있고, 生産大隊 所有自動車가 13 台, 工場이 6 個나 있다고 한다(한국일보 '84.3.28).

延邊自治州 龍縣大興村의 경우 '84 年度 農家平均所得이 320 달러로 '79 年에 비해 1.6 배 增加했다고 한다.(85.8 香港 新晚報)

主 要 物 價

(換率: 1 \$: 1元 42錢)

| 品 名 | 單 位 | 價 格 | 備 考 |
|-------|-----|-------------------|--|
| 쌀 | 1근 | 6錢 | |
| 중 산 복 | 1벌 | 10元 | * 洋服은 15 ~ 20元 |
| 클 라 | 1명 | 1元 50錢 | |
| 청 바 지 | 1벌 | 15元 | |
| 칼라텔레비 | 1台 | 1,200 ~ 1,300元 | * 韓國産 三星, 金星의 黑白텔레비는 380 ~ 450元에 購入可能 |

(한국일보 '84.3.28)

나. 衣 服

평소의 服裝은 勞動服 (人民服 · 中産服) 이며, 外出服도 색깔이 다를뿐 디자인은 비슷한 것이나 結婚式과 같은 行事때는 韓服을 입으며, 老年層의 僑胞는 대체로 언제나 흰옷을 입는 편인데 普遍的으로 女子가 男子보다 韓服을 많이 着用한다. 洋服은 비싸서 結婚할 때 한 번 사입거나 빌려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中國 옷은 거의 입지 않는다.

다. 食 生 活

生活必須品은 配給制로 고기는 한달에 1人當 300g, 쌀은 勞動者의 경우 月 21kg, 隱退老人 16kg이 配給되고, 나물국 · 콩자반 · 생선요리 · 김치 · 시래기국 · 된장 · 찜 등이 주로 식탁에 오르며, 명절에는 식혜, 떡과 경단을 마련하지만, 간단한 中國飲食도 자주만 들어 먹는다.

中國飲食은 大都市 居住者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주 먹고 있으나,

全般的으로 韓國飲食이 많으며, 그 種類나 質에 있어서는 소찬에 가깝다.

특히 韓國飲食 가운데 김치와 불고기는 中國人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김치는 營養價가 많고 健康에도 좋다고 中國新聞에도 紹介가 되었다.

그밖에도 韓人들은 냉면, 갈비탕, 팔죽, 찰밥, 개고기 등 傳統飲食을 가끔씩 먹고 있다.

라. 住 居

住居는 대부분 木造家屋으로 鐵管·土管·시멘트 등을 사용한 濫突式으로 農村地域에서는 부엌과 2-3 個의 房 및 외양간이 딸린 小規模의 집이며, 都市에서는 일반아파트나 벽돌로 된 中國式 집으로 상당히 초라하다.

그러나 所得이 높은 一部 生産大隊에서는 일찍부터 새로운 聯立住宅을 新築하거나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燃料는 나무나 石炭을 사용하고 있다. 住宅은 個人所有가 많지 않고 國營住宅이거나 賃貸住宅(집세의 75%는 本人負擔)이다.

집에는 장롱·이불·요강·옹기단지과 독·책상·라디오·자전거·우마차·재봉틀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農村地域에서는 10 餘戶當 1 臺꼴로 흑백텔레비가 보급되어 있다.

자전거·시계·재봉틀·장롱 등은 結婚할때 꼭 장만하는 品目으로 되어 있다. 農村地域에는 機械化作業이 상당히 進行되고 있어 耕運機나 이앙기·추수기 등이 普及되고 있지만 生産大隊의 共同所有

로 되어있고 최근 일부 農機械들이 個人所有 形態로 移讓되고 있다.

마. 家族生活

結婚은 대개 同族끼리 하고, 中國人과의 結婚은 아주 忌避되고 있으며 (특히 中國男子와 韓人女子는 忌避), 結婚式은 일부 西洋式도 있지만 대부분 사모관대와 족두리를 쓰는 舊式婚禮를 치루고 있다.

學校生活이 男女共學이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짝을 결정 (연애 결혼) 하기도 하나 여전히 仲媒結婚이 많으며, 男尊女卑·女必從夫 등 傳統的인 倫理觀이 支配하고 있다.

子女는 1名만 낳는 趨勢이며 (소수민족에게는 2名까지 許容하고 있으나 1名만 낳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核家族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父母와 同居를 하고 있는 (大家族) 實情이다. 葬禮는 火葬·埋葬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火葬을 하면 保管所에 1年間 보관후 墓를 쓰며, 淸명·秋夕때 省墓를 하고 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醫療保險惠澤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無料이고, 직계가족은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韓人 대부분이 農業從事者이므로 保險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 宗教生活

일부이긴 하나 基督教·天主教·佛敎를 믿고 있는데, 대개 宗教家族 出身者들이 宗教를 믿고 있다.

현재 심양시에는 5個의 敎會가 있는데 그중 韓人村에 있는 서탑

교회 (信徒數 500 名) , 소가톨릭교회 (信徒數 200 名) 는 文化革命 때 閉鎖되었다가 '79 年에 다시 문을 열었고, 中共에서 宗教保護政策을 펴고 있어 教勢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 民俗놀이

재중한인들이 다른 海外居住 韓人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강인하게 傳統的인 生活樣式과 文化를 維持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음력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절기에 따른 名節을 지키며, 이때에는 男女 모두 傳統衣裝을 입고, 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뽕차기(축구)·씨름판을 벌이고 엿·떡·찰밥·팔죽·떡국 등을 준비하여 '한바탕 두들기고 먹고 노는' 것이다.

또한 용날에 우물물 길거나 그믐날 밤새우기등의 세시풍습도 여전히 지키며, 出産한 집에서 비록 금줄을 치지는 않지만 찾아올 동안은 外部人의 出入을 삼가하고, 백날, 뉘날·환갑날은 잔치를 벌이는 등 民族傳統儀禮를 비교적 잘 지켜나가고 있다.

아직도 女人들은 머리에 흰수건을 쓰거나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긴 담뱃대와 지게 및 밥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을이면 各級 學校의 運動會가 열리고 9月3日 '延邊朝鮮族 自治州' (自治州 州長: 黃載林, 黨 第1書記: 조남기)의 創立記念大會때에는 전한인들이 大의으로 參加하여 祝祭를 벌이고 있다. 이때에는 물동이를 이고 달리기도 하며, 장구와 팽파리를 치면서 노들강변과 아리랑 등 옛민요 가락속에 춤을 추기도 한다.

또한 傳統的인 民俗 歌舞團에서는 심청전·장화홍련전·춘향전 등 고전 판소리와 장구춤·농악·부채춤 등을 보여주고 있다.

6. 僑胞들의 祖國觀

僑胞들은 韓民族이라는 데에 대해 굉장한 自負心을 갖고 韓族의 傳統과 文化를 保存·繼承하려 努力하고 있으나, 僑胞 2世들의 增加에 따라 中國社會에로의 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言語生活의 中國化 傾向으로 僑胞 2世들이 韓國語를 배우는데 漸次 懷疑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中國系 學校에 가고 싶어하는 傾向이 增加하고 있다.

또한 韓人들이 지난 40年間 항상 “언젠가는 故國으로 돌아간다.”는 期待感속에서 살았으나, 北韓體制에 失望을 한데다 南北會談까지 결렬됨에 따라 中國에 定着하여 보다 有利한 位置에서 現實에 適應하려는 風潮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韓人들은 家屋도 새로짓고 자녀들에게 中國語教育도 積極 勸獎하는 한편 中國系 學校에의 入學을 許容하고 있다.

最近 緣故地가 南韓이라는 事實때문에 軍官學校와 北京大學 등에 入學하려는 韓人學生이 不合格 당했다는 이야기가 가끔들리고 있으며, 共產黨의 幹部나 軍幹部將校로의 進出은 事實上 禁止되고 있다.

이 때문에 高等教育을 받은 韓人들은 醫師·공정사·農業專門家·教育·研究分野등 一般專門職으로 進出하려 努力하고 있다.

특히 北京大學의 朝鮮語科는 中國人(漢族)에게만 入學이 許容되며, 이 學科出身은 韓國問題 擔當 및 朝鮮族 擔當의 高級人力으로 拔擢되고 있다.

1960年代 後半부터 일어난 文化革命때에는 社會主義에 立脚한 少數民族改革作業의 成功的 모델로 칭송받던 아립저大隊나 前進大隊와 같은 所謂 示範集團이 4人幫으로 부터 “自己利益만 追求하는 資本

主義根性の典型”이라고 酷評을 받았는가 하면, 韓人出身의 機關責任者, 行政要員, 團體의 指導者級 人士들이 資本主義者 或은 南韓諜者 및 앞잡이 등의 罪名으로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이때문에 在中韓人들은 內面的으로 反漢感情이 남아있으며, 역으로 韓半島問題에 대한 現實的 認識에 신경을 쓰고있지 않다.

즉, 韓半島를 單純하게 朝鮮으로만 알고있는 僑胞도 相當數 있고, 실사 南北分斷을 알고 있더라도 南北韓 어느 體制에 대해서도 批判이나 讚揚을 하지않는 점이 特徵이다. (一部 黑龍江省 일대 僑胞들은 北韓에 대해 批判的인 立場임)

이것은 僑胞들이 南北韓間 關係改善을 바라면서도 南北韓을 外國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統一問題에 別다른 關心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事實과도 關係가 있다.

또한 中共居住 僑胞들중 南韓地域 緣故者들이 北韓出身보다 많기 때문에 北韓의 一方的인 宣傳에 眩惑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韓·中共 關係改善에 따라 中共內 韓人들에 대한 相對的 地位도 격상되겠지만 中共內 少數民族이라는 自體限界를 克服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것은 韓人들이 居住하는 東北3省이 産業上·國防上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中共이 다른 少數民族에게 주어지는 政治的 配慮가 微弱한데에서 窺볼 수 있다. 즉 中共은 韓人들에게는 獨自的인 權限이 많은 自治區를 許容하지 않고 1個의 自治州와 1個의 自治縣만 認定하고 있다. 특히 韓人들과 關係가 있는 高句麗와 渤海의 歷史와 遺物등 古代史研究를 制限하고 있으며, 이들에 關한 歷史를 中國史의 一部로 編入시키려는 政策을 펴고 있다.

아 물론 韓國의 國際的 地位가 相對的으로 격상되고, 中共의 實

用主義와 開放政策이 더욱 擴大되어 韓·中共間 直接交流가 이루어진다면 在中韓人에 대한 中共의 政策的 配慮도 可能할 것으로 보며, 在中韓人들을 통한 經濟協力등도 可能할 것이다.

現在 延邊自治州는 國家로부터 外資導入에 관한 權限을 委任받고 있으며, 外國의 合作投資, 觀光開發등을 위해 이미 500 만 달러의 外資를 誘致한 것으로 報道(85.8 香港新晚報) 되고 있는 만큼 韓國과 中共間 經濟協力에 앞서 延邊自治州에의 合作投資 方案등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7. 僑胞의 歸國現況

1978年부터 許容되기 시작한 中共僑胞들의 母國訪問은 趙紫陽 中共總理가 이를 許容한다고 公式的으로 밝힌(84.3 나카소네 日本首相의 中共訪問時) 이래 急速히 늘어나고 있으며, 韓·中共 關係改善에 따라 앞으로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이며, 中共의 韓國系 僑胞에 대한 政策도 緩和될 것이다.

中共 居住僑胞 歸國希望接受，許可 與 歸國者 現況

(1984.12.31. 現在)

| 歸國 區分 年度 | 接 受 | | | 許 可 | | | 歸 國 者 | | | 備考 |
|----------------|-----|-----|-----|-----|-----|-----|-------|-----|-----|----|
| | 永住 | 一時 | 小計 | 永住 | 一時 | 小計 | 永住 | 一時 | 小計 | |
| 1975 | 10 | | 10 | 10 | | 10 | | | | |
| 1976 | 14 | | 14 | 14 | | 14 | | | | |
| 1977 | 4 | | 4 | 4 | | 4 | | | | |
| 1978 | | | | | | | 4 | | 4 | |
| 1979 | 78 | 19 | 97 | 28 | 18 | 46 | 9 | | 9 | |
| 1980 | 43 | 21 | 64 | 20 | 17 | 37 | 4 | 1 | 5 | |
| 1981 | 24 | 35 | 59 | 24 | 31 | 55 | 23 | 2 | 25 | |
| 1982 | 37 | 96 | 133 | 37 | 94 | 131 | 30 | 19 | 49 | |
| 1983 | 31 | 207 | 238 | 31 | 201 | 232 | 31 | 66 | 97 | |
| 1984 | 7 | 341 | 348 | 3 | 258 | 261 | 23 | 206 | 230 | |
| 計 | 248 | 719 | 967 | 171 | 619 | 790 | 124 | 294 | 419 | |

* 資料：大韓赤十字社 提供統計 (中共居住 僑胞統計資料, 1985.1.14)

中共의 主要人物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및 書記處幹部

(1985.9.30 현재)

| 區 分 | 姓 名 | 生 年 | 原 籍 | 主 要 職 策 |
|---------------------------|-------|------|-----|--------------------------------|
| 政治局 常 務 委 員 (5名) | 胡 耀 邦 | 1915 | 湖南省 | 黨中央委 總書記 |
| | 鄧 小 平 | 1904 | 四川省 | (國家 및 黨) 中央軍事委 主席, 中央顧問委 主席 |
| | 趙 紫 陽 | 1919 | 河南省 | 國務院 總理 |
| | 李 先 念 | 1906 | 湖北省 | 國家 主席 |
| | 陳 雲 | 1905 | 江蘇省 | 中央紀律檢查委 第1書記 |
| 政治局 委 員 (15名) | 萬 里 | 1916 | 山東省 | 副總理 |
| | 方 毅 | 1916 | 福建省 | 國務委員 國家科學技術委 主任 |
| | 習 仲 勛 | 1913 | 陝西省 | 書記處 書記 |
| | 姚 依 林 | 1911 | 安徽省 | 副總理, 國家計劃委 主任 |
| | 楊 尚 昆 | 1907 | 四川省 | 中央軍事委 副主席兼 秘書長 |
| | 楊 得 志 | 1904 | 湖南省 | 人民解放軍 總參謀長 |
| | 余 秋 里 | 1914 | 江西省 | 人民解放軍 總政治部 主任 |
| | 彭 眞 | 1902 | 山西省 | 全人代 常務委員長 |
| | 胡 喬 木 | 1905 | 江蘇省 | 社會科學院 名譽院長 |
| | 胡 啓 立 | 1929 | 陝西省 | 書記處 書記 |
| | 倪 志 福 | 1933 | 上海市 | 中華總工會 主席 |
| | 喬 石 | 1924 | 浙江省 | 書記處 書記 |
| | 李 鵬 | 1928 | 四川省 | 副總理, 國家教育委員會 主任 |
| | 田 紀 雲 | 1929 | 山東省 | 副總理, 國務院秘書長 |
| | 吳 學 謙 | 1922 | 上海市 | 國務委員, 外交部長 |

| 區分 | 姓名 | 生年 | 原籍 | 主要職策 |
|-------------------------|--------|------|-----|-----------------|
| 政治局 候補 委員 (2名) | 陳慕華(女) | 1919 | 山東省 | 中國人民銀行長 |
| | 秦基偉 | 1911 | 湖北省 | 北京軍區 司令官 |
| 書記處 書記 (11名) | 胡耀邦 | 1915 | 湖南省 | 總書記 |
| | 萬里 | 1916 | 山東省 | 副總理 |
| | 余秋里 | 1914 | 江西省 | 人民解放軍 總政治部 主任 |
| | 胡啓立 | 1929 | 陝西省 | |
| | 喬石 | 1924 | 浙江省 | |
| | 郝建秀(女) | 1935 | 山東省 | |
| | 陳丕顯 | 1916 | 福建省 |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 | 李鵬 | 1929 | 四川省 | 副總理, 國家教育委員會 主任 |
| | 田紀雲 | 1929 | 山東省 | 副總理, 國務院 秘書長 |
| | 鄧力群 | 1915 | 湖南省 | 書記處 研究室長 |
| | 王兆國 | 1941 | 湖北省 | 黨中央辦公廳 主任 |

主要人物 略歷事項

○ 胡耀邦

- 1915 湖南省 出生
- 1927 秋收暴動 加擔
- 1929 赤色根據地 入地
- 1930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3 中共黨 入黨，少年共產主義者 中央秘書長
- 1937 抗日軍政大學 第2期生
" 政治部 副主任
- 1941 第18集團軍 總政治部 組織部長
- 1948 華北 解放軍 第1兵團政治部 主任
- 1950 川北行政公署 主任，黨川北區委 書記
1952. 8 四川省 北部地區黨 書記 兼 行政專員公署 主任
1952. 9 新民主主義青年團 中央書記兼 黨中央青年工作委
第1書記
1954. 7 第1次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
1956. 9 黨中央委員
1959. 4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
1965. 2 黨中央西北區 第3書記 兼 陝西省黨委 第1書記
文革中 失脚
- 1975.11 科學院 副秘書長
- 1977.10 黨中央 黨學校副校長
- 1977.12 黨中央組織部 部長
1978. 3 全人代 常務委員會 委員

- 1978.12 黨中央政治局 委員，中央規律檢查委 第3書記
- 1979. 1 黨中央委員會 秘書長，宣傳部長
- 1980. 2 黨中央政治局 常務委員，黨總書記
- 1981. 6 黨中央委 主席
- 1982. 9 黨中央政治局 常務委員，黨總書記（黨主席職 廢止）

○ 葉劍英

- 1899 廣東省 梅縣 出生
- 1917 雲南 講武堂 卒業
- 1919 國民黨 入黨 陳炯明 부대 예하 참모
中山縣 및 梅縣 縣長
- 1924 黃埔軍官學校 教授部 副主任 中共黨 加入（秘密）
- 1926 北伐第1軍參謀，第2師 師長
- 1927 第4軍參謀長
- 1927. 8 南昌蜂起 失敗後 香港逃避
- 1928 모스크바 中山大學 留學
- 1931 歸 國
- 1932 中央軍事革命委 參謀長兼 紅軍學校長
- 1934 紅3軍團 參謀長
- 1937 八路軍 參謀長
- 1945. 4 黨中央委員
- 1949. 1 北京軍事管理委員會 主任，北京市長
- 1949. 9 廣東軍區 司令官
- 1949.10 中央人民革命軍事委 委員
- 1949.11 廣州軍管會 主任，廣州市長，廣州市 黨書記，廣東

- 省政府 主席
1950. 3 中南軍政委 副主席
- 1952 中南軍區 司令官, 黨中南局書記
1954. 2 中央人民革命軍事委 副主席
1954. 9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 國防委 副主席
1955. 9 元 帥
1958. 3 軍事科學院 院長
1966. 7 黨中委 書記
1967. 3 黨中央軍事委 副主席
1973. 8 黨政治局 常務委員 黨第 4 副主席
1975. 1 國防部長
1978. 3 全人代 常務委員長
1985. 9 黨政治局常務委員, 中央軍事委副主席에서 사퇴

○ 鄧小平

- 1904 四川省 嘉定縣 出生
- 1920 渡 佛
中國共產黨 旅佛支部 入黨
모스크바 中山大學 修學
1926. 9 歸 國
中山軍學校 政治部 副主任
- 1927 國共合作分裂로 축출
- 1929.12 廣西省 百色蜂起 指導
勞農紅軍 第 7 軍 및 右江소비에트 樹立
1930. 3 紅八軍 및 左江소비에트 樹立
- 1931 紅七軍을 인솔, 江西의 中央소비에트에 合流

- 江西省黨委 書記 (1933.1 脫權)
- 1934 第 1 軍團 政治部 宣傳部長
- 1938 八路軍 第 129 師團 政治委員
人民解放軍 第 2 野戰軍 政治委員
1945. 8 晋冀魯豫軍區 政治委員
- 1948 中原野戰軍 政治委員
- 1949 第 2 野戰軍 政治委員
- 1949 黨西南區 第 1 書記
- 1949 中央人民政府 委員
- 1949.10 人民革命軍事委員會 委員
1950. 7 西南軍政委 副主席兼 財經委 主任
1952. 8 政務院 副總理
- 1952.11 國家計劃委員會 委員
1953. 1 西南行政委員會 副主席
1954. 5 黨中央委 秘書長
1954. 9 國防委 副主席
1955. 3 黨 政治局 委員
1956. 2 黨政治局 常務委員, 中央總書記
- 1968.10 文革中 失脚
1973. 3 國務院 副總理
1974. 1 黨中央政治局 委員
1975. 1 黨中央 副主席, 政治局 常務委員, 國務院 第 1 副
總理, 軍總參謀長
1976. 4 天安門事件으로 失脚

1977. 7 復 權
 黨中央政治局 常務委員，黨 副主席，中央軍事委 副
 主席，國務院 副總理，總參謀長
1982. 9 中央軍事委 主席，中央顧問委員會 主任，政治協商
 會議 主席（'83 鄧穎超 交替）

○ 趙 紫 陽

- 1919 河南省 滑縣 出生（中學 卒業）
- 1932 共產主義青年團 入團（13 歲）
- 1938 共產黨 入黨
 抗日戰時期 縣黨 書記，地區黨委 書記，國共內戰中
 桐柏地區黨委 副書記
- 1950 黨中委 華南分局 常務委員
- 1951.12 廣東省 人民政府 土地改革委 副主任
 黨華南分局 秘書長
1953. 9 黨華南分局 農村工作 部長
- 1954 華南分局黨學校 主任教官
- 1955 廣東省黨委 副書記
- 1956 廣東省黨委 書記，廣東軍區 第 1 政治委員
- 1962 廣東省黨委 第 2 書記
- 1965 廣東省黨委 第 1 書記，黨中央 中南局 書記
 文革中 失腳
- 1971 內蒙古自治區黨委 書記，革命委 副主任
- 1972 廣東省黨委 書記
- 1973 黨中央委員

- 1974 廣東省黨 第1書記兼 革命委 主任
- 1975 四川省黨委 第1書記
- 1976 四川省 革命委 主任
- 1977. 8 黨政治局 候補 委員
- 1980. 2 黨政治局 常務委員
- 1980. 4 國務院 副總理
- 1980. 9 國務院 總理
- 1981. 6 黨中央委 副主席

○ 李先念

- 1906 湖北省 黃安縣 出生
木手修業
- 1927 秋收暴動 加擔
- 1928 中共黨 加入
- 1930 赤衛軍 教導員
- 1931 紅四方面軍 政治委員
- 1939 黨中原局 委員
- 1942 豫鄂挺進縱隊 司令官
新四軍 5縱隊 司令官，第5師 師長
- 1945. 4 黨中央委員
豫鄂軍區 司令官
中原軍區 司令官
- 1949. 3 湖北軍區 司令官兼 政治委員，
黨湖北省委 書記，湖北省 主席
- 1949.10 人民革命軍事委 委員

- 1949.12 中南軍政委員會 委員
- 1950. 9 湖北省人民政府 財經委員會 主任
- 1952. 3 武漢市長，武漢市黨委 書記
- 1952.10 中南軍政委員會 副主席
- 1953. 3 黨中央 中南局 第3 書記
- 1954. 6 政務院 財經委員會 副主任，政務院 財政部 部長
- 1954. 9 國務院 副總理兼 財政部長
國防委員會 委員
- 1956. 9 黨政治局 委員
- 1958. 5 黨中委 書記處 書記
- 1959. 9 國務院 財貿辦公室 主任
- 1979. 1 國務院 財政經濟委 副主任
- 1980. 9 副總理 辭任
- 1980.10 黨政治局委員，黨中央軍事委 常務委員
- 1982. 9 黨政治局 常務委員
- 1983. 6 國家主席

○ 陳 雲

- 1899 江蘇省 青浦縣 出生
- 1925 共產黨 入黨
- 1927~30 黨江蘇省委員會 委員兼 職工部長
- 1931 黨中央政治局 常務委員
- 1932 蘇區黨 政治局 常務委員，白區工作委 書記，白區工
作部 部長
- 1937 黨中央組織部 部長

- 1940 黨政治局 委員兼 黨西北財經處 主任
- 1945 黨政治局 委員，黨書記處 書記，黨南滿分局 書記，
東北行政委 委員 吳 財經處 處長，黨東北區 組織部
長，東北鐵道管理局 總局長
1948. 8 中華全國 總工會 主席
- 1949.10 政務院 副總理，財經委員會 主任，輕工業部 部長
1953. 9 副總理兼 政務院 第5辦公室 主任
1956. 9 黨副主席，黨政治局 常務委員
- 1956.11 國務院 商業部 部長
- 1958.11 國務院 基本建設委員會 主任
1966. 8 黨政治局 委員
1975. 1 全人代 常務委員會 副委員長
- 1978.12 黨副主席，黨政治局 常務委員
1979. 7 國務院 副總理，財經委員會 主任
1982. 9 黨中央紀律檢查委員會 第1書記

○ 萬 里

- 1916 山東省 東平縣 出生
- 1936 共產黨 入黨
縣黨委 書記，地區黨委 書記，冀魯豫地區黨委 秘
書長
1949. 4 南京市 人民政府 建設局長
1950. 7 西南軍政委 財經委員兼 工業部長
1955. 4 城市建設 總局長
1956. 5 國務院 城市 建設部長

- 1958. 2 黨北京市委 書記
- 1958. 8 北京市 副市長，
文革中 失腳
- 1974.12 北京市 革命委 副主任
- 1975. 1 鐵道部長
- 1976.10 交通部 副部長
- 1977. 6 黨 安徽省委 第1 書記，安徽省 革命委 主任，安徽
省 軍區 第1 政治委員
- 1977. 8 黨中央委員
- 1980. 2 黨中央書記
- 1980. 4 國務院 副總理
- 1980. 8 農業委員會 主任(兼)
- 1980. 9 黨政治局委員，黨中央書記

○ 習仲勛

- 1913 陝西省 富平縣 出生
- 1926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28 中共黨 入黨
紅 第26 軍 支隊 政治委員
- 1937 黨中央學校 訓育主任，甘寧人民委 主席，黨關中地
方委 書記，黨中央候補委員，黨組織部 副部長，黨
西北區 副書記
- 1947 陝北野戰軍政治委員
- 1949 第1 野戰軍政治委員
- 1949.10 中央人民政府委員，人民革命軍事委 委員
- 1952. 8 政務院 文化教育委 副主任，國家計劃委 委員

- 1954. 6 黨中央宣傳部長
- 1954. 9 國務院 秘書長
- 1959 國務院 副總理兼 秘書長
文革中 失脚
- 1978. 4 黨廣東省委 第2書記，廣東革命委 副主任
- 1979. 1 黨中央委員，黨廣東省委 第1書記
- 1979.12 廣東省 省長
- 1980. 9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1981. 6 黨中央委 書記
- 1982. 9 黨政治局 委員，書記

○ 王 震

- 1908 湖南省 出生
- 1927 共產黨 入黨
- 1928 黨瀏陽縣委 書記
- 1933 第8軍團 第22師 政治委員
- 1934 第8軍團 第17師 政治部 主任
- 1935 第6軍團 副政治委員
- 1937 第8路軍 第120師 第359旅長
- 1945. 6 黨中央候補委員，中原軍區 副司令官，參謀長
- 1947 教導第2旅長，西北軍 第1縱隊 司令官
- 1949 第1野戰軍 第1兵團 司令官
- 1949.10 黨新疆分區 書記，新疆軍區 副司令官
- 1950. 3 西北軍政委 財務委員
- 1953. 6 西北行政委 財務委員
- 1954. 2 鐵道兵團 司令官

-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 1955. 9 上將
- 1956. 5 國務院 農墾部 部長
- 1956. 6 黨中央委員
文革中 失脚
- 1973. 8 黨中央委員
- 1975. 1 國務院 副總理
- 1978.10 黨政治局 委員
- 1982. 5 中央黨 學校長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黨顧問委員

○ 韋國清

- 1906 廣西省 出生
- 1926 國民革命軍 第7軍으로 北伐 參加 (兵士)
- 1929 ~ 30 兩江 소비에트 建設, 反亂部隊로 紅7軍 紅8軍 建設에 貢獻
- 1931 紅3軍 隸下 聯隊長
- 1938 新四軍 支隊長
- 1941 新四軍 第3師團 第8旅 旅長
- 1944 第4師團長
- 1946 第4軍 第2師長
- 1948 華東野戰軍 第2縱隊 司令官
- 1949 第3野戰軍 第10兵團 政治委員
- 1950 福州市長, 福建軍區 副政治委員
- 1951 廣西省黨 副書記
-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 1954.11 黨廣西自治區委 書記處 書記

- 1955. 2 廣西省 省長
- 1956. 7 廣西省黨委 書記處 書記
- 1956. 9 黨中央委 候補委員
- 1958. 3 廣西壯族自治區 主席
- 1962. 4 黨 中南區 書記處 書記
- 1964 廣西軍區 第1 政治委員
- 1966. 9 黨 中南區 第2 書記
- 1968. 8 自治區 革命委 主任
- 1971. 3 廣西壯族自治區 第1 書記
- 1973. 8 黨 政治局 委員
- 1973.12 廣州軍區 第1 政治委員
- 1975. 1 全國人民代表大會常任委 副委員長
- 1975.10 廣東省黨 第1 書記 廣東省革命委 主任
- 1977. 9 軍總政治部 主任 (1982.9 解任)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 烏 蘭 夫

- 1904 內蒙古 自治區 出生
- 1925 共產黨 入黨, 모스크바 中山大學 留學, 國民學校 教師
- 1929 호른바이루 獨立運動 失敗
- 1937 騎兵旅 政治指導員, 綏蒙保安隊 政治顧問
- 1939 抗日 軍政大學 民族學院 教育長
- 1945 綏蒙政府主席
- 1945. 4 黨中委 候補委員, 少數民族委 副書記
- 1945.11 內蒙古自治運動 聯合會 主席

- 1947 內蒙古軍區 司令官兼 政治委員
- 1947. 5 內蒙古 自治政府 主席，黨內蒙古分局 書記
- 1949. 9 綏遠軍 政治委 副主席
- 1949.10 政治協商會議 全國委 常務委員，中央人民政府 委員，政務院 民族事務委 副主席，中央民族學院 院長
- 1952. 7 綏遠省人民政府 主席
- 1954. 8 全人代 代表
- 1954. 9 國務院 副總理，民族事務委 主任，國防委 委員
- 1955. 4 內蒙古自治區 人民委 主席，黨內蒙古自治區委，書記
- 1956. 9 黨中央委員，政治局 候補委員，黨內蒙古自治區委 第1 書記
- 1957. 2 內蒙古大學長
- 1965. 5 黨華北局 第2 書記
文革中 失脚
- 1973. 8 黨中央委員
- 1975. 1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1977. 7 黨中央 統戰部長
- 1977. 8 黨中央委員，政治局委員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 方 毅

- 1916 福建省 廈門 出生
- 1930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1 中共黨 入黨，黨 廈門市委 宣傳部長，書記
- 1937 湖北省黨 人民運動 部長
- 1944 淮南行署 主任

- 1945 蘇皖邊區 行政委 副主席，財經委 秘書長，財政廳長
- 1946 魯皖邊區 人民政府 財政廳長
1948. 8 華北人民政府委員兼 秘書長
1949. 3 山東省人民政府 副主席
1949. 8 黨福建省委 委員，福建人民政府 副主席兼 財經委主任，財政廳長
1950. 2 華東軍政委 委員，財經委 副主任
1951. 1 福建軍區 副司令官
1953. 1 上海市 副市長
1953. 9 政務院 財政部 第2 副部長
1958. 5 黨中央委 候補委員
- 1965 國家計劃委 副主任兼 對外經濟連絡委 主任
1973. 8 黨中央委員
1975. 1 對外經濟連絡部長
1977. 1 科學院 副院長
1977. 8 黨中央政治局 委員
1978. 3 國務院 副總理兼 國家科學 技術委 主任
1979. 7 科學院 院長
1980. 2 黨中央委 書記

○ 鄧 穎 超

- 1900 河南省 出生，天津女子師範大學卒，南開大學 修學
- 1925 周恩來 結婚
- 1926 國民黨 廣東省黨 婦女部 秘書
- 1931 共產黨 蘇區 中央部 婦女部長

- 1937 黨陝西省委 代表
- 1945. 4 黨中央委 候補委員
- 1947 黨中央 婦女工作委 副書記
- 1949. 4 全國婦女聯合會 副主席
- 1949. 9 政治協商會議 全國委 常務委員
- 1949.10 政務院 政治法律委員會 委員
- 1950. 2 全國婦女聯合會 秘書長
- 1956. 9 黨中央委員，黨婦女工作委 第2書記
- 1959. 4 全人代 常務委 委員
- 1969. 4 黨中央委員
- 1976 全人代常務委 副委員長
- 1978.12 黨政治局 委員，黨中央紀律檢查委 委員，第2書記
- 1982. 9 黨政治局委員
- 1983. 6 政治協商會議 主席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 李德生

- 1916 湖北省 黃岡縣 出生
- 1932 麻黃蜂起 殘存部隊 參加
- 1937 ~ 第129師團 中隊長 大隊長 聯隊長 旅團長
- 1949. 3 第3兵團 第35師團長
- 1951. 3 韓國戰 參戰
- 1955. 9 少 將
- 1958 第12軍 副軍長
- 1959 第12軍 軍長
- 1967.12 安徽省 軍區 司令官
- 1968. 4 安徽省 革命委員會 主任

- 1969. 4 黨政治局 候補委員
- 1970. 8 解放軍 總政治部 主任
- 1973. 8 黨副主席，黨政治局 常務委員
- 1973.12 瀋陽軍區 司令官
- 1985. 7 軍政大學長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顧問委員

○ 楊尙昆

- 1907 四川省 出生
- 1923~27 共產黨 地下活動
- 1925 上海大學 入學
- 1926 모스크바 中山大學
- 1931 黨江蘇省委 宣傳部長
- 1932 黨中央 宣傳部長
- 1933 第1方面軍 政治部 主任
- 1934.10 紅3軍團 政治委員
- 1937 黨北方局 書記
- 1943 黨華北局 書記兼 統一戰線工作部長
- 1945 黨中央辦公廳 主任兼 直屬機關委 書記
- 1955. 9 黨中央委 副秘書長
- 1956 黨中央委員 候補書記
文革中 失脚
- 1979. 4 黨廣東省委 第2書記兼 廣州市委 第1書記, 廣東省
革委 副主席, 廣州市革委 主席
- 1979.12 廣東省 副省長
- 1981. 7 黨中央軍委 秘書長
- 1982. 9 黨政治局委員, 中央軍事委 副主席

○ 楊得志

- 1904 湖南省 株州出生
- 1927 秋收暴動 加擔，中共黨 入黨
- 1928 紅 4 軍 士兵
- 1929 紅 4 軍 班長
- 1931 紅 1 軍團 營長
- 1934 紅 1 軍團 1 師 1 團長
1936. 5 紅 1 軍團 2 師長
- 1939 第 18 集團軍 115 師 第 7 旅長
- 1947 晉冀察區 第 1 縱隊 司令官
- 1948 人民解放軍 第 2 兵團 司令官
- 1949 第 19 兵團 司令官
- 1949.10 寧夏軍管會 主任，軍區 司令官
- 1950.10 韓國戰 參戰
- 1952.12 志願軍 副司令官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 1954.10 援朝志願軍 司令官
1967. 3 山東省 革命委 第 1 副主任
1969. 4 黨中央委員
1971. 4 山東省 革命委 主任
山東省黨 第 1 書記
- 1973.12 武漢軍區 司令官
1979. 2 昆明部隊 司令官兼 黨 第 1 書記
1979. 2 黨中央軍事委員會 常務委員
1980. 2 總參謀長，國防部 副部長，黨中央書記處 書記
1982. 9 黨政治局委員

○ 余秋里

- 1914 江西省 安縣 出生
- 1929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1 共產黨 入黨
- 1934 紅 6 軍團 參加
- 1942 8 路軍 120 師 358 旅 8 團 政治委員
- 1946 晉綏野戰軍 第 7 縱隊 旅團 政治委員
- 1947 第 7 縱隊 師團 政治委員
- 1948 第 7 縱隊 副政治委員
- 1949.10 青海軍區 第 2 副政治委員
- 1951 第 1 野戰軍 2 兵團 政治部 主任，西北軍區 政治部
副主任
1954. 9 蘭州軍區 政治部 主任
1955. 9 中 將
1956. 8 軍總財政部長
1958. 2 石油工業部長
- 1965 國家計劃委 副主任
文革中 失腳
- 1972.10 國家計劃委 主任
1973. 8 黨中央委員
1975. 1 國務院 副總理兼 國家計劃委 主任
1977. 8 黨中央政治局 委員，黨中央 書記
1982. 5 國務委員，國務能源委 主任
- 1982.10 軍總政治部 主任

○ 宋任窮

- 1904 湖南省瀏陽縣 出生
瀏陽中學 卒業
- 1926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26 中共黨 入黨
- 1927 秋收暴動 參加
1927. 7 農紅軍 第4軍 32團 2營黨 代表
- 1930 紅4軍 團級政治委員
- 1931 第5軍團師 政治委員
- 1937 第129師 政治部 副主任，東進縱隊 司令官
- 1938 冀南軍區 司令官
- 1939 黨晉冀魯豫邊區委 軍事部長
- 1940 冀南行政公署 副主任
1945. 4 黨中央委員
- 1947 冀南軍區政治委員，第2縱隊政治委員
1949. 4 第3野戰軍 第4兵團 政治委員
- 1950 南京軍事管制委 副主任，雲南軍事管制委 副主任，
黨雲南省委 書記，雲南軍區 政治委員
1950. 3 西南軍政委 委員，西南軍區 副政治委員
- 1952 黨西南局 第1副書記
1952. 12 西南行政委 副主席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黨中央委 副秘書長
- 1955 上 將
- 1956 第3機械工業部長
1957. 5 科學計劃委員會 委員
1958. 2 第2機械工業部長

- 1961. 1 黨東北局 第1書記
- 1963 瀋陽軍區 政治委員
- 1964 瀋陽軍區 第1政治委員
文革中 失脚
- 1978. 3 第7機械工業部長
- 1978.12 黨中央委員
- 1979. 1 黨中央組織部長
- 1980. 2 黨中央書記
- 1982. 9 黨政治局 委員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顧問委員

○ 張廷發

- 1910 () 出生
- 1955 空軍少將
- 1956.10 空軍副參謀長
- 1964. 2 軍事副司令官
文革中 失脚
- 1973. 6 空軍副司令官, 復歸
- 1976.10 空軍政治委員
- 1977. 4 空軍司令官
- 1977. 8 黨政治局 委員
- 1985. 6 空軍司令官 解職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顧問委員

○ 聶榮臻

- 1899 四川省 江津出生, 江津中學 卒業
- 1919 渡佛 勞動 豫備學校 入學

- 1921 벨기에 勞動者大學 入學(化學工程科 專攻), 中國
共產黨 벨기에支部 責任者
- 1923 파리 復歸, 모스크바 短期 軍事教育
1924. 6 黃埔軍官學校 教官
- 1927 廣州 參加 黨南方局軍委 書記
- 1931 紅一軍團 政治委員
- 1937 八路軍 第115師團 副師團長
- 1937.11 晉察冀 軍區 司令官, 華北野戰軍 司令官
1945. 4 黨中央委員
- 1947 晉察冀人民解放軍 司令官
1949. 2 華北軍區 司令官, 黨華北局 第2書記
- 1949.10 人民革命委 委員, 副總參謀長
- 1949.12 北京市長
1954. 8 國防委 副主席
- 1956.11 國務院 副總理
1957. 5 科學計劃委 主任
- 1959 科學技術委 主任, 國防委 副主席
- 1975 第4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 副委員長
- 1977 黨中央政治局 委員, 黨軍事委 副主席
1985. 9 黨 政治局委員 사퇴

○ 倪志福

- 1933 上海 出生, 工場 勞動者
- 1953 北京 永定機械工場 技術者
- 1958 共產黨 入黨
- 1964 勞動者 技師(中共 最初)

- 1969. 4 黨中央委員
- 1973. 8 黨政治局 候補委員
- 1973. 9 黨北京市委 書記
- 1976.10 黨上海市委 第2書記兼 上海革命委 第2副主席
- 1977. 7 黨北京市委 第2書記
- 1977. 8 黨政治局 委員
- 1977.12 北京市 革命委 副主席
- 1978.10 全國總工會 主任
- 1982. 9 黨政治局 委員

○ 徐向前

- 1902 山西省 五台縣 出生，太原師範 卒業，國民學校 教師
- 1924 黃埔軍官學校 入學（第1期）
- 1926 北伐參加，學生軍團 政治部 主任
- 1927 中央軍事學校 武漢分校 政治隊隊長（共產黨 加擔）
- 1929 第1師師長
- 1931 紅四方面軍 總指揮
- 1937 八路軍 第129師團 副師長
- 1938 冀南軍區 司令官
- 1939. 4 第1縱隊 司令官
- 1940 抗大 山東分校 校長
- 1945 黨中央委員
- 1947 晉冀豫軍區 副司令官
- 1948 中原解放軍 副司令官，華北解放軍 第1兵團 司令官
- 1949 第18兵團 司令官兼 政治委員

- 1949.10 中央人民政府委 委員，革命軍事委員會 委員，總參謀長
- 1954. 9 國防委員會 副主席
- 1955 元 帥
- 1975 全人代 常務委員會 副委員長
- 1977. 8 黨政治局 委員
- 1979. 3 國務院 副總理兼 國防部長
- 1982. 9 黨政治局 委員，中央軍事委員會 副主席
- 1985. 9 黨政治局委員 사퇴

○ 彭 真

- 1902 河北省 曲沃縣 出生，師範學校 卒業，國民學校 教師
- 1923 社會主義青年團 入團，中共黨 入黨
- 1935 黨北方局 組織部長
- 1941 中央黨 學校 副校長
- 1945 黨中央委員，東北局 書記
- 1948 黨組織部 副部長
- 1949. 6 黨中央政治局 委員
- 1949.10 政務院 政治法律委 副主任
- 1951. 3 北京市長
- 1951.11 北京市 建設委員會 主任
- 1954. 7 中央政治幹部學校 校長
- 1954. 8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兼 秘書長
- 1956. 7 黨北京市委 第1書記
- 1956. 9 黨政治局 委員，中央 書記，文革中 失腳
- 1979. 6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1979. 9 黨政治局 委員
1982. 9 黨中政治局 委員
1984. 全人代 常務委員長

○ 胡喬木

- 1912 江蘇省 鹽城縣 出生，清華大學 卒業
1930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1935 中共黨 入黨，左翼文化總同盟書記，黨上海臨時工作
委員
1937 黨中央青年會 委員
1941 毛澤東秘書，黨中央政治局 秘書
1948 新華社通信 副社長
1949 人民日報 社長
政務院文化委員會 秘書長兼 報道總署 署長
1950 黨中央 宣傳部 副部長
1954 黨中央委 副秘書長
1956 黨中央 書記處 候補書記
文革中 失腳
1978. 3 社會科學院 院長
1980. 2 黨中央書記處 書記
1982. 9 黨中央政治局 委員

○ 姚依林

- 1911 安徽省 貴池縣 出生
1934 清華大學 入學
1935 中共黨 入黨，北京市 學生 聯合會 黨書記，天津市
黨 宣傳部長，河北省黨 秘書長，宣傳部長，冀熱察
區黨委 宣傳部長，黨中央 晉察冀分局 秘書長

- 1948 華北人民政府 商工部長
- 1949.10 貿易部 副部長
- 1950. 9 貿易幹部學校 校長
- 1952. 8 商業部 副部長
- 1956 黨財政部 副部長
- 1958. 5 黨中央候補委員
- 1959. 9 財政辦公室 副主任
- 1964 黨財政部 政治部 主任
- 1965. 1 國務院 商業部 部長
文革中 失腳
- 1973. 8 黨中央候補委員
- 1973.10 對外貿易部 副部長
- 1977. 4 對外貿易部 第1 副部長
- 1977. 8 黨中央委員
- 1978. 8 商業部 部長
- 1979. 1 黨中央辦公室 主任
- 1979. 7 國務院 副總理兼 財政經濟委 秘書長
- 1980. 2 黨書記處 書記
- 1980. 8 國家計劃委 主任
- 1985. 9 黨政治局委員

○ 陳慕華 (女)

- 1921 浙江省 青田縣 出生
國家計劃委員會 交通局 副局長，對外經濟連絡委
3 局 副局長
- 1962 對外經濟連絡總局 프랜트 設備局 副局長

- 1964 對外經濟連絡委員會 프랜트 設備局 副部長
- 1970 " " 局長
- 1971 對外經濟連絡部 副部長
- 1973. 8 黨中央委員
- 1977. 1 對外經濟連絡部長
- 1977. 8 黨政治局 候補委員
- 1978. 3 副總理兼 對外經濟連絡部長
- 1981. 3 國家計劃委員會 主任
- 1982. 3 對外經濟貿易部 部長
- 1982. 5 國務委員
- 1985. 3 中國人民銀行長

○ 秦基偉

- 1911 湖北省 出生
- 1927 共產黨 入黨，秋收暴動 參加
- 1931.11 4 方面軍 第2 聯隊長
- 1936.10 四方面軍 總部 4 局科長
- 1939 太行軍區 第1 分區 政治委員，太行軍區 參謀長
- 1940 第129 師 新10 旅長
- 1946 太行軍區 司令官
- 1948 中原人民解放軍 第9 縱隊 司令官
- 1949 第15 軍 司令官
- 1950 川南軍區 司令官
- 1951. 3 韓國戰 參戰
- 1954 昆明軍區 副司令官

- 1958. 6 第2期全人代代表
- 1958.10 昆明軍區 司令官
- 1965. 1 國防委員會 委員，
文革中 失脚
- 1973 黨中央委員
- 1973 成都軍區 司令官
- 1978.11 北京部隊 第1政治委員
- 1979.10 北京部隊黨委 第2書記
- 1980. 1 北京軍區 司令官
- 1982. 9 黨政治局 候補委員

○ 谷 牧

- 1914 山東省 榮成縣 出生
- 1931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2 中共黨 入黨，北平左翼作家聯盟 書記，黨濱海地委
書記，黨魯中南區委 副書記，黨山東分局 辦公室
主任
- 1950 山東省 濟南市長
- 1951. 2 山東省人民政府 委員
- 1953 黨上海市委 第2副書記
- 1954.12 國務院 國家建設委 副主任
- 1955. 9 國務院 第3辦公室 副主任
- 1956. 3 國務院 科學計劃委 副秘書長
- 1956.11 國務院 國家經濟委 副主任
- 1958.11 全人代 代表
- 1964. 4 國家基本建設委 主任

- 1964.12 國務院 科學技術委 副秘書長
文革中 失脚
- 1973. 6 國家基本建設委 主任
- 1973. 8 黨中央委員
- 1975. 1 國務院 副總理兼 國家基本建設委 主任
- 1979. 7 出口管理委 主任
- 1980. 2 黨中央書記
- 1982. 5 國務委員
- 1985. 9 黨政治局委員 및 書記處 書記 사퇴

○ 鄧力群

- 1915 湖南省 出生，北京大學 卒業
- 1935 共產黨 加擔
- 1936 共青 入團，共產黨 入黨，黨古北地區委 宣傳部長，
馬列學院 教育處長
- 1950 黨新疆分局委員 秘書長，宣傳部長，出版委員會 副
主任
- 1960 劉少寄 政治秘書
- 1963. 7 紅旗 副總編輯
文革中 失脚
- 1978. 3 社會科學院 副院長
- 1980. 3 黨中央書記，書記處 政策研究室 主任
- 1981. 4 黨中央 辦公廳 副主任
- 1982. 4 黨宣傳部長
- 1982. 9 黨中央書記
- 1985. 8 黨宣傳部長 해직

○ 胡啓立

- 1929 陝西省 出生
北京大學 機械科 卒業
- 1948 共產黨 入黨
1954. 3 共青 北京大學委員會 書記
1957. 4 共青 中央委 候補委員，全國學生聯合會 主席
1964. 6 共青 中央委員，中央候補書記
- 1965 共青 副主席
文革中 失脚
- 1977 北京清華大學 副校長
- 1978.10 共青 中央委員，常務委員，書記處 書記
1979. 5 共青 中央委 主席
1980. 6 天津市長
1981. 5 天津市黨 書記
1982. 9 黨中央委 書記
1985. 9 黨政治局委員

○ 陳丕顯

- 1916 福建省 出生
- 1929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1 福建省委 兒童局 勤務
- 1933 中央兒童局 勤務
- 1936 黨 南區 特委 委員
- 1937 黨江蘇省委 青年部長，黨華東分局 青年部長
1949. 4 新民青 中央委員，黨蘇南區委 書記

- 1952. 8 黨上海市委 第4書記
- 1954 黨上海市委 副書記
- 1955. 5 黨上海市委 第2書記
- 1958.11 政協 上海市委 主席
- 1965. 5 黨上海市委 第1書記 代理
- 1965.11 黨上海市委 第1書記
文革中 失脚
- 1977. 2 黨雲南省委 書記，雲南革命委 副主任
- 1977. 7 黨湖北省委 第2書記，湖北革命委 第1副主任
- 1977. 8 黨中央委員
- 1978. 8 黨湖北省委 第1書記
- 1979. 6 武漢軍區 政治委員
- 1982. 9 黨中央委員，書記，政治局委員
- 1985. 9 黨政治局委員사퇴

○ 喬 石

- 1924 浙江省 出生
- 1940 共產黨 入黨，黨上海中學支部 書記，總支書記，新市區委 副書記
- 1949 杭州市青委 書記，黨華東局 青委 統戰部 副部長，鞍鋼基建 技術處長，酒泉鐵鋼公司院 研究院長
- 1964 黨中央外聯部 副組長，局長
- 1978. 3 黨對外連絡部 副部長
- 1982. 4 黨對外連絡部長
- 1982. 9 黨中央委員 候補書記
- 1985. 9 黨政治局委員，書記處 書記

○ 郝建秀 (女)

- 1935 山東省 青島 出生
1950 國營 第6 紡織工場 女工
1953. 4 民主婦女聯合會 執行委員
1953. 9 新民青 中央委員
1953 共產黨 入黨
1954. 8 全人代 代表
1965. 7 青島紡織 第8 廠 副廠長
1966 紡織 第8 廠 革命委 主任
1971. 7 青島市 革命委 副主任
1977. 2 紡織工業部 副部長
1977.10 婦女聯合會 副主席
1981. 3 紡織工業部長
1982. 9 黨中央委員, 候補書記
1985. 9 書記處 書記

○ 薄一波

- 1907 山西省 出生, 太原師範學校 卒業, 北京大學 卒業
1926 共產黨 入黨
1939 晉綏軍區 第23 旅長
1945. 6 黨中央委員, 黨晉冀魯分局 第2 書記
1948 華北人民政府 副主席
1949. 7 黨華北局 書記
1949.11 政務院 財政部長
1951 政府節約 檢查委 主任

- 1954. 9 國務院 國家建設委 主任
- 1954.10 國務院 第3辦公室 主任
- 1956. 5 國家經濟委 主任
- 1956. 9 黨中央 政治局 候補委員
- 1956.11 國務院 副總理
- 1961. 4 國務院 工業交通辦公室 主任
- 1962.10 國家計劃委 副主任，文革中 失脚
- 1979. 7 國務院 副總理，財政經濟委 委員
- 1979. 9 黨中央委員
- 1982. 5 國務委員，國家經濟體制 改革委員會 副主任
- 1982. 9 黨中央 顧問委員會 常務委員，副主任

○ 許世友

- 1907 湖北省 黃安縣 出生，吳佩孚 北伐軍 參加
- 1927 麻黃蜂起 參加
- 1931 徐向前師團斗 聯隊長
- 1933 第9軍 第25師長，第9軍 副軍長
- 1936. 8 第31軍 軍長
- 1940 渤海軍區 司令官，第7師長
- 1942 清河軍區 司令官
- 1944 渤海軍區 司令官
- 1946 膠東軍區 司令官
- 1949 第27軍 軍長
- 1950. 7 山東人民政府委員 公安廳 副廳長
- 1954 第3野戰軍 司令官

-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 1955. 9 上 將
- 1956 南京軍區 司令官
- 1956. 9 黨中央 候補委員
- 1959. 9 國防部 副部長
- 1966. 3 黨華東區 書記
- 1968. 3 江蘇省 革命委 主任
- 1969. 4 黨中央政治局 委員
- 1970.12 黨江蘇省委 第1書記
- 1973.12 廣州軍區 司令官
- 1980. 2 黨中央軍事委 常任委員
- 1982. 9 黨中央顧問委 常任委員 副主任

○ 譚 震 林

- 1905 湖南省 出生
- 1926 共產黨 入黨
- 1928 黨湘贛邊區 特委 書記
- 1928 紅4軍 第4縱隊 政治部 主任
- 1930. 5 閩西紅軍 學校長
- 1932 福建軍區 司令官
- 1937.12 新4軍 第6師 師長，華中軍區 政治部 主任
- 1945 黨中央委員
- 1946 黨政治局 委員
- 1947 華東野戰軍 副司令官，黨華東分局 社會部長
- 1948 華東野戰軍 山東兵團 司令官

- 1949 第3野戰軍 副政治委員
- 1949. 6 浙江省人民政府 主席，黨浙江省委 書記
- 1950. 2 華東軍政委 委員
- 1952. 2 黨華東局 第3書記
- 1952. 8 華東軍政委 副主席
- 1952.11 江蘇省人民政府 主席
- 1954.10 黨中央委 副秘書長
- 1956. 9 黨中央委員，政治局 委員，中央書記
- 1959. 4 國務院 副總理
- 1962.11 農林辦公室 主任，國家計劃委 副主任
文革中 失脚
- 1973. 8 黨中央委員
- 1975. 1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1982. 9 黨中央顧問委 常務委員，副主任

○ 李維漢

- 1897 湖南省 長沙 出生
長沙 第1師範 卒業
- 1921 社會主義少年團 組織
- 1923 共產黨 加入（上海）
- 1927. 7 黨政治局員
- 1928 黨中央書記
- 1932 黨中央組織部長
- 1934 黨中央組織局 書記
- 1934.10 黨總政治部 組織部長，中央黨 學校長，黨中央 西北
局 秘書長
- 1946 黨統一戰線 工作部長

- 1949 政治協商會議 籌備委 秘書長
- 1949.10 政務院 秘書長
- 1949.11 政務院 民族事務委 主任
- 1953. 9 政務院 財經委 副主任
- 1954. 8 全人代 代表，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1954.10 國務院 第8辦公室 主任
- 1956. 9 黨中央委員
文革中 失脚
- 1978. 2 政治協商會議 全國委 委員，常務委員
- 1979. 7 政協全國委 副主席
- 1982. 9 黨中央顧問委 常任委員，副主任

○ 王任重

- 1917 河北省 出生
- 1933 共產黨 入黨
- 1938 晉冀魯漁邊區 政府委員，黨冀南區 宣傳部長
- 1949 湖北人民政府 副主席
- 1950. 3 中南軍政委 委員
- 1950. 9 湖北人民政府 財經委 副主任，武漢市 副市長
- 1954. 3 黨武漢市委 第1書記，武漢市 市長，全人代 代表
- 1955 黨湖北省委 書記
- 1956. 7 黨湖北省委 第1書記
- 1959 武漢軍區 政治委員
- 1961 黨中央 中南局 第2書記
- 1963.10 武漢軍區 第1政治委員
- 1966. 7 黨中央書記，黨宣傳部長，黨中南局 第1書記，黨文

革小組 副組長

- 1978. 8 黨陝西省委 第2書記
- 1978.12 黨陝西省委 第1書記, 國務院 副總理
- 1980. 2 黨中央書記
- 1980. 3 黨中央 宣傳部長

○ 康世恩

- 1913 內蒙古 自治區 出生
清華大學 修業
- 1937 八路軍 參加
- 1950 東北軍政委員會 財政經濟委員
- 1952 東北石油局長
- 1953.11 政務院 燃料工業部 石油管理總局長
- 1955. 7 石油工業部長 代理
- 1956 石油工業部 副部長
文革中 失脚
- 1975. 1 石油工業 部長
- 1977. 8 黨中央委員
- 1978. 3 副總理兼 經濟委員會 主任
- 1981. 3 石油工業 部長

○ 張愛萍

- 1909 四川省 達縣 出生
達縣中學 卒業
- 1926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27 紅五軍 政治工作
- 1931 共青 中央書記

- 1934 紅軍大學 高級班 修了
- 1937 遊擊隊 旅長
- 1940 新4軍 第3支隊長
- 1941 新4軍 第3師 第9旅長
- 1945 新4軍 第4師長
- 1946 淮北軍區 司令官，華東解放區 司令官
- 1946. 7 第2解放軍 司令官
- 1947 華東野戰軍 副司令官
- 1948 華東軍區 副司令官
- 1950 華東軍區 海軍司令官，第1艦隊 司令官
- 1951. 9 第3野戰軍 第7兵團 司令官，浙江軍區 司令官
- 1953 華東軍區 參謀長
- 1954. 2 第3野戰軍 參謀長
-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 1955. 6 副總參謀長
- 1958. 5 黨中央委 候補委員
文革中 失脚
- 1975. 12 國防科學委 主任
- 1977. 8 黨中央委員
- 1977. 10 副總參謀長
- 1978. 3 全人代 常務委員會 委員
- 1980. 9 國務院 副總理
- 1982. 11 國務委員兼 國防部長

○ 彭 冲

- 1915 福建省 漳州 出生

- 1933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4 共產黨 入黨，漳州地區 學生工作委 組織部長，書記
聯隊 政治委員，師團 副政治委員
- 1938 新 4 軍 蘇中軍區 第 1 團 政治委員
- 1949 福建省 黨委員會 統一戰線 工作部長，黨華東局 統
一戰線工作部 副部長
1950. 3 黨福建省委 委員兼 臺灣委 書記
1950. 4 福建省委 統戰部 部長
- 1950.10 福建省委 政府委員，秘書長
1954. 8 黨南京市委 副書記兼 副市長
1955. 7 南京市長
- 1958.12 黨南京市委 第 1 書記
- 1960.10 黨江蘇省委 書記處 候補書記
1965. 8 黨江蘇省委 書記
1968. 3 江蘇省 革命委 副主任
1969. 4 黨中央 候補委員
- 1974.12 江蘇省 革命委 主任
1975. 2 黨江蘇省委 第 1 書記
1975. 3 南京軍區 第 2 政治委員（兼）
- 1976.10 黨上海市委 第 3 書記，上海市 革命委 第 2 副主任
1977. 8 黨中央政治局 委員
1978. 4 上海市委黨 學校長（兼）
1979. 1 黨上海市委 第 1 書記
- 1979.12 上海市長
1980. 2 黨中央書記處 書記

1980. 9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

○ 洪學智

1908 河南省 出生
紅4方面軍 從軍

1944 新4軍 第31師 副師長，遼寧軍區 副司令官

1949 第4野戰軍 15兵團 副司令官，第42軍長，廣州市
政府委員，廣東省 政府委員，廣東軍區 副司令官

1950 第16兵團 政治委員

1950.10 抗美援朝 後勤部 司令官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1955 總後勤部 副部長

1955. 9 上 將

1956. 9 黨中央 候補委員

1956.12 總後勤部長

1978. 2 全人代 代表

1978. 3 全人代 常務委員會 委員

1979. 9 黨中央委員

1980. 3 總後勤部長

○ 趙蒼璧

1912 陝西省 出生

1949. 4 南京市 公安局 副局長

1950. 7 西南軍政委 公安部 副部長

1956 四川省 公安廳長

- 1958 四川省 副省長,公安廳長
 1959 黨四川省委 書記,
 文革中 失脚
 1976.12 黨四川省委 書記
 1977. 8 黨中央委員
 1978. 3 公安部長 (後叫 解職)

○ 韓 先 楚

- 1913 湖北省 禮山縣 出生
 長沙中學 卒業
 1933 第4方面軍 第31軍 92師團長
 1936 92師 師長
 1937 8路軍 129師 386旅 771團 團長
 1939 渤海軍區 旅長
 1945 南滿軍區 師長
 1946.10 東北民主聯軍 第4縱隊 副司令官
 1947. 1 第4縱隊 司令官
 1947. 7 第3縱隊 司令官
 1949 12兵團 副司令官兼 40軍 軍長
 1951 韓國戰 參戰 (平壤聯合參謀部 副主席)
 1952 志願軍 第10兵團 司令官
 1953 志願司令部 參謀長 (停戰委 代表)
 1954. 9 國防委員會 委員
 1955. 9 上 將
 1958. 5 黨中央委 候補委員
 1960 福建前線部隊 司令官
 1965.11 副總參謀長兼 福州軍區 司令官

- 1968. 8 福建省 革命委 主任
- 1969. 4 黨中央委員
- 1971 黨福建省委 第1書記
- 1974. 1 南州軍區 司令官
- 1979. 2 黨中央軍事委 常務委員

○ 葉 飛

- 1914 마나라 出生 (福建出身의 華僑)
- 1919 廈門에서 中學 教育
- 1926 共產黨 入黨
- 1930 瑞金 紅軍學校 入學
- 1937 新四軍 第1支隊長, 第6團 團長
- 1941 新四軍 第1師 師長
- 1947 華東野戰軍 第1縱隊 司令官
- 1949 第3野戰軍 第10兵團 司令官
- 1949. 8 黨福建省委員會 委員, 福建軍區 司令官, 福建省 人民政府 副主席, 廈門市長
- 1950. 2 華東軍政委員會 委員
- 1951. 2 華東軍政大學 福建分校 校長
- 1955. 1 福建省黨 第1書記
- 1955. 3 福建省長, 福建省軍區 司令官
- 1956. 10 黨中央候補委員
- 1959. 2 福建省人民委員會 委員 兼任
- 1961 黨華東區 書記處 書記
- 1964 福建軍區 第1政治委員

- 1965. 1 國防委員會 委員
文革中 失脚
- 1973. 8 黨中央委 候補委員
- 1975. 1 交通部 部長
- 1977. 8 黨中央委員
- 1979. 8 海軍 第1 政治委員
- 1980. 2 海軍司令官 (82.10 解任)
- 1980 全人代 代表

○ 耿 飏

- 1909 湖南省 醴陵縣 出生
黃埔軍官學校 4 期生, 紅四軍 예하 營長
- 1934 紅 1 軍 第 2 師 第 4 團 團長
- 1936 紅軍大學 修業, 八路軍 第 115 師 예하 團長, 旅長,
縱隊 副司令官
- 1947.11 晋察冀軍區 參謀長
- 1948 華北 第 2 兵團 副司令官
- 1949 華北 第 19 兵團 副司令官
- 1950. 6 스웨덴 大使兼 덴마크 公使
- 1951. 3 핀란드 大使兼
- 1956. 2 파키스탄 大使
- 1960. 1 外交部 副部長
- 1963. 9 버마 大使
- 1969. 4 黨中央委員
- 1969. 5 알바니아 大使
- 1971. 2 黨對外連絡部 部長

- 1977. 8 黨政治局 委員
- 1978. 3 國務院 副總理
- 1980. 3 黨中央 軍事委 秘書長
- 1981. 3 國防部 部長
- 1982. 9 黨中央顧問委 委員
- 1981.11 國防部長 解任，國務委員

○ 楊 靜 仁

- 1918 甘肅省 出生，中央西北局 少數民族科長，陝甘寧邊區 政府 民族事務委 辦公廳 主任
- 1949 政務院 民族事務委員會 委員
- 1950. 3 西北區 民族委員會 委員
- 1954. 8 全人代 代表
- 1954 國務院 民族事務委員會 副主任
- 1960 寧夏自治區黨 第1書記，寧夏自治區 主席，寧夏軍區 政治委員
- 1965. 7 黨西北區 書記處 書記，文革中 失脚
- 1977. 8 黨中央委員
- 1978. 2 民族事務委員會 主任
- 1978. 5 黨統戰部 副部長
- 1980. 9 國務院 副總理
- 1981. 4 黨統戰部 部長

○ 黃 華

- 1915 江蘇省 出生
燕京大學 修業
- 1935 共產主義青年團 入團
- 1936 共產黨 入黨，國共和平交涉時 首席情報官
- 1948 黨中央宣傳部員
1949. 4 全國青年代表大會 籌備委 秘書長
- 1949.12 南京市 軍管會 外事處長
1951. 5 上海市 外僑事務處 處長
- 1953.10 外交部 參事
- 1953.12 韓國停戰委 中共側 首席代表
- 1954.10 西歐阿 局長
1960. 8 가나大使
1966. 1 애금大使
1971. 7 카나다大使
- 1971.10 駐UN代表 (副團長)
- 1976.12 外交部長 (1982.12 辭任)
1980. 9 副總理

○ 黃 鎮

- 1909 安徽省 出生
- 1931 紅3軍團 隸下 聯隊長
- 1944 晉冀魯豫邊區軍 政治部 副主任
- 1947 太岳軍區 第9縱隊 司令官
- 1950 第2野戰軍 政治部 主任

- 1950. 6 항가리 大使
- 1954. 9 印尼大使
- 1961. 4 外交部 副部長
- 1964. 9 佛蘭西 大使
- 1973. 5 駐美 連絡事務所 所長
- 1977. 8 黨中央委員
- 1977.12 黨中央宣傳部 副部長，國務院文化部 副部長
- 1978. 3 國務院 文化部長
- 1980. 5 文化部 黨學校長
- 1981. 3 對外文化連絡委 主任
- 1982. 5 黨中央顧問委員會 委員

○ 李 鵬

- 1929 四川省 出生
豐滿水電廠 副廠長，東北電力局 調度局長，北京
電管區 革命委 主任，局長
- 1980. 4 電力工業部 副部長
- 1981. 3 電力工業部 部長
- 1982. 3 水利電力部 部副長
- 1982. 9 黨中央委 委員
- 1985. 6 國家教育委員會 主任
- 1985. 9 黨政治局委員，서기처 서기

○ 姬 鵬 飛

- 1909 山西省 出生
永濟中學 卒業
- 1942 新1軍 第1師 第3旅 政治委員

- 1949. 1 第3野戰軍 第7兵團 副政治委員
- 1949. 5 浙江軍區 副政治委員，杭州市 警備部 副政治委員，
政治部 主任
- 1953.10 東獨 大使
- 1955. 1 外交部 副部長
- 1964. 9 全人代 代表
- 1971. 4 外交部 部長 代理
- 1972 外交部 部長
- 1973. 8 黨中央委員
- 1975. 1 全人代 常務委員，全人代 常務委 秘書長
- 1978. 3 全人代 常務委 副委員長兼 秘書長
- 1979. 3 黨對外連絡部 部長
- 1979. 9 國務院 副總理
- 1980. 2 國務院 秘書長
- 1982. 5 國務委員
- 1982. 9 黨中央顧問委 常務委員

○ 張勁夫

浙江省 出生

- 1949. 杭州市. 副市長
- 1951. 2 浙江省 人民政府委員兼 實業廳 廳長
- 1953. 華東軍管區 財經委員會 副主任
- 1954. 8 國務院 地方工業部 副部長
- 1956. 3 國務院 科學規劃委員 秘書長兼 委員
- 1958. 2 中國科學院 副院長兼 同黨委員會書記

- 1958. 5 黨 中央委員會 候補委員
- 1959. 3 全人代代表 (安徽省)
- 1959.12 政治協商會談 全國委員會委員 (科技協會)
- 1975. 1 國務院 財政部長

○ 田 紀 雲

- 1929 山東省 肥城縣出生
- 1945 共產黨加入
- 1947 土地改良 工作組組長
- 1949 貴陽人民革命大學班 主任
貴州省 財政幹部訓練班 主任
- 1953 貴州省 財政廳 秘書科長，計劃科長，辦公室 主任，
豫算處長，副廳長，中央西南局財辦財金處副處長
- 1969 四川省 財政局長，財政廳長 四川省黨書記
- 1981. 8 國務院副秘書長
- 1982. 9 黨 12 期 中央委員 國務院副總理，秘書長
- 1985. 9 黨政治局委員，書記處 書記

○ 吳 學 謙

- 1922 上海出生
- 1949 新民主主義青年團 國際連絡部 副部長
中華全國民主青年聯合總會 國際連絡局 局長
- 1953 中華全國民主青年聯合會 國際連絡部 部長，新民主
主義青年代表團 秘書長

- 1954 中國人民對外文化協會理事
- 1956 中國올림픽委員會委員
- 1957 共青中央常務委員
- 1958 全國民青年常務委員兼副主席
- 1963 中國非洲人民友好協會理事
- 1965 中國亞非團結委員會常務委員兼副主席
文革後失脚
- 1978 中央黨對外連絡部副部長
- 1982. 5 外交部副部長
- 1982. 9 黨12期中央委員
- 1982.11 外交部部長
- 1985. 9 黨政治局委員，書記處書記

○ 王丙乾

- 1925 河北省彖縣出生
文化程度 中學
- 1940 共產黨加入
- 1949 政協財政部工作處長，副司長等 역임
- 1963. 7 財政部預算司司長
- 1973 財政部副部長
- 1980. 1 中國會計學會會長
- 1980. 8 世界銀行 및 國際通貨基金次席理事
- 1982. 5 國務院精簡機構要員
財政部部長，國務委員
- 1982. 9 黨第12期中央委員

○ 宋 平

- 1917 山東省 莒縣出生
文化程度大學〈 1937 共產黨加入〉
- 1953 國家計劃委員會 勞動工資計劃局長
勞動部 副部長
- 1958 國家計劃委員會 副主任
文革中 失脚
- 1972 甘肅省黨 書記
甘肅省革命委 副主席
1977. 6 甘肅省黨 第 1 書記，甘肅省 革委主任 兼 蘭州軍區
第 2 次政治委員
1977. 8 黨 11 期 中央委員
1979. 12 甘肅省 人民政府主席
1981. 1 國家計劃委 第 1 副主任
1982. 9 黨 12 期 中央委員
- 1983 國家計劃委 主任
國務委員

○ 楊 易 辰

- 1914 遼寧省 法庫縣出生
- 1936 共產黨加入
- 1951 東北人民政府委員，遼西省人民，政府主席，遼西省
黨 書記
- 1954 黑龍江省人民政府 部主席 兼 黨龍江省黨 副書記

- 1955 黑龍江省 副省長
- 1965 第3期 全人大 黑龍江省 代表
文革中 失脚
- 1973 黑龍江省黨 書記
黑龍江省革委 副主任
- 1977 黨 11 期 中央委員
黑龍江省黨 第1 書記
黑龍江省革委 主任
- 1982 黨 12 期 中央委員
- 1983. 4 最高人民檢察院檢察長

○ 鄭天翔

- 1914 內蒙右自治區 涼城縣出生
- 1936 共產黨加入
- 1950 綏遠省 包頭市 市長
- 1955 北京市 人民委員會 委員
北京市黨 副書記
文革中失脚
- 1977 北京市 革委副主任
政協 北京市 副主席
- 1979 第7 機械工業部 部長
- 1982 黨 12 期 中央顧問委員會 委員
- 1983. 4 最高人民法院 院長

○ 王兆國

- 1941 河北省 豐潤縣出生
1966 哈爾濱 工科大學卒業
1968 第 2 汽車廠 技術員，同分廠 共青團書記，總廠團
書記
1975 分廠黨委 第 1 書記
1979 第 2 汽車製造廠 副廠長
1982 黨 第 12 期 中央委員，共青團 第 1 書記，
1984. 黨辦公廳主任
1985. 9 書記處 書記

○ 胡錦濤

- 1943 出生
清華大學卒
1982 黨 12 期 中央委 候補委員
甘肅省 建設委員會 副主任
共青團中央 第 1 書記

○ 毛澤東

- 1893.12 湖南省 湘潭縣 出生
- 1906 私塾卒業
- 1909 縣立 第1 高等小學校入學。 湘鄉中學轉學
- 1911.10 辛亥革命 湖軍入隊
1912. 2 除隊
- 1913 省立 第1 師範學校入學 (1918 卒業)
- 1917 新民學會組織
- 1918 北京大學 圖書館主任 李大釗師事
- 1919 湖南學生聯合會 設立
1920. 4 湖南 第1 師範學校教員
1921. 7 黨湖南省委 書記
- 1922 湖南省黨 團體聯合會 總幹事
1923. 6 黨 中央委員 (第3 次大會)
1924. 1 國民黨 執行委 候補委員
1924. 3 黨 中央局 勤務 (上海)
- 1925 長沙 農民協會設立
- 1925 國民黨 中央宣傳部長 代理
1926. 3 共產黨 中央農民運動會 書記
1927. 4 共產黨 中央委 候補委員 (第5 次 大會)
1927. 6 全國農民協會設立 主席
- 1928 紅 4 軍團結成 政治委員
- 1931 中華 소비에트 臨時政府樹立 主席

- 1934.10 長征
- 1935. 1 貴州省 遵議에서 政治局會議 開催
毛澤東 指導體制 確立
- 1945 黨 中央委 主席 (第 7 次 大會)
- 1934.10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國家主席
- 1959. 4 國家主席 辭任. 黨主席
- 1976. 9.9 死亡

○ 周恩來

- 1898 浙江省 紹興縣 出生
- 1913 日本에 留學 日本大學, 早稻田大 修學
- 1919 5.4 運動후 被逮 投獄
- 1920 프랑스.(2 年) 및 독일 (1 年) 유학
在佛中 中國共產黨 프랑스 支部 組織,
宣傳部長
- 1924 鄧穎超와 結婚
- 1925 共產黨 廣東省委 書記, 黃埔軍產學校 政治部 主
任 代理
- 1927. 8 南昌暴動參加. 共產黨 中央委員兼 軍事委 書記
- 1928. 共產黨 政治局委員. 書記 (모스크바 개최)
- 1931 江西 소비에트 地區黨 革命軍事委 主席
- 1932 紅 第 1 方面軍 政治委員
- 1934 中央革命軍事委 副主席
- 1945. 黨 政治局委員. 書記. 中央軍事委 副主席
- 1949. 9 全國政治協商會議 全國委 副主席

- 1949.10 政務院 總理兼 外交部長
- 1956. 9 黨 副主席. 政治局 常務委員
- 1965. 全國政治協商會議 全國委 主席
- 1969. 4 黨 秘書長
- 1975 死亡

○ 華 國 鋒

- 1921 山西省 出生
- 1945 黨 山西省 交城縣委 書記
- 1947 黨 山西省 陽谷縣委 書記
- 1951 湘潭縣委 書記兼 人民武力部 政治委員
- 1954 黨 湘潭地區委 書記
- 1957 黨 湖南省委 候補書記
- 1959. 9 黨 湖南省委 書記兼 副省長
- 1968. 4 湖南省革命委. 第2 副主席
- 1969. 4 黨 中央委員
- 1970.11 黨 湖南省委 第1 書記
- 1972.11 廣州軍區 政治委員
- 1973. 2 湖南省 軍區 第1 政治委員
- 1973. 8 黨 中央政治局委員
- 1975. 1 副總理兼 公安部長
- 1976. 1 總理代理
- 1976. 4 黨 第1 副主席 國務院 總理
- 1976.10 黨 主席. 軍事委主席
- 1980. 9 國務院 總理 辭任

1981. 6 黨 主席，軍事委主席 辭任，黨 副主席으로 降等
 1982. 9 黨 中央委員으로 降等

○ 彭 德 懷

- 1898 湖南省 湘潭縣 出生
 1917 湖南 新軍士兵，班長。 小隊長
 1922 湖南 第 2 師團 26 聯隊 1 大隊 中隊長
 1926 國民革命軍 第 2 軍團 2 師團中隊長으로 北伐參加
 1927 國民革命軍 第 35 軍團 大隊長
 1928 班立 第 5 師團 第 1 聯隊長
 1928. 4 共產黨入黨
 1928. 7 湖南 소비에트 政府樹立。 紅軍 5 軍團長
 1928.12 井崗山人山 紅第 4 軍 副師團長
 1934 黨 中央委員
 1936. 9 陝甘支隊 司令官
 1945. 黨中央委員，軍事委副主席
 1946. 西北野戰軍兼 西北軍區司令官
 1949. 2 第 1 野戰軍司令官兼 政治委員
 1949. 9 新疆軍區司令官兼 政治委員
 1950.10 韓國戰參加 志願軍司令官
 1954. 1 黨 政治局委員
 1954. 9 國務院 副總理， 國防部長， 國防委副主席
 1955. 9 元帥
 1959 毛澤東 批判。
 1958. 9 政府，軍，黨職 解任

○ 林 彪

- 1907 湖北省 黃崗縣 出生
- 1925 共進中學在學中 社會主義 青年團入團
- 1925.10 黃埔軍官學校入校
1926. 國民革命軍隸下 小隊長으로 北伐參加
1927. 8 南昌暴動參加, 第 11 軍團 特務中隊長
- 1928 工農革命員 第 1 師團 第 1 聯隊中隊長
1928. 2 第 1 聯隊 第 1 大隊長
1928. 4 紅 4 軍團 第 10 師團 第 28 聯隊 第 1 大隊長
- 1929 12 紅第 4 軍團 第 1 從隊司令官
- 1930 紅第 4 軍團 第 10 師團長
紅第 4 軍團長
- 1932 紅第 1 軍團長兼 東路軍司令官
1936. 4 抗日紅軍大學校長
- 1936.12 八路軍 第 115 師團長
1942. 1 共產黨學校 副校長
1945. 4 黨 中央委員
- 1945.10 東北民主聯合軍司令官
- 1948 平津前線司令部 司令官
1950. 4 中南軍事委主席 中南軍區司令官
- 1951 中央軍事委 副主席, 中南行政委 副主席
1954. 黨 中央軍事委 副主席兼 國防委 副主席
國務院 副總理
1955. 4 黨 政治局 委員
1955. 9 元帥

- 1958 黨 副主席，政治局 常務委員
- 1959. 9 黨 中央軍事委 第1 副主席，國防部長
- 1966. 8 黨 第1 副主席
- 1969. 4 黨 副主席，毛澤東 後繼者 指名
- 1974 死亡

○ 江 青 (女)

- 1913 山東省 出生
- 1930 中國共產黨 入黨
- 1939 毛澤東 結婚
延安魯迅藝術學院演劇藝術科 教授
- 1949.10 中·蘇友好 協會 理事
- 1964 全人代 代表 (山東省)
- 1966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小組 才1 副組長
- 1966.11 人民解放軍 文化革命 小組顧問
- 1976 肅清

合資經營企業 設立節次

中共內에서 合資經營企業을 設立하고 營業 活動을 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中共의 中央政府와 對外經濟貿易部の 審査와 承認을 거쳐야 한다.

中共에 直接投資 形態로 進出하여 企業을 運營하고자 하는 外國人 投資家는 中共의 各 地方이나 各 部門別 部處 혹은 個別企業 등과 直接 相談할 수 있다. 만일 적당한 中共側 合營對象者를 物색하지 못한 경우에는 計劃하고 있는 合營事業件에 관한 基礎的인 內容을 書面 혹은 電信으로 「中國國際投資信託公司」 또는 省, 市, 自治區의 信託 投資機關에 보내어 이들에게 合營對象者 物색을 委囑할 수도 있다.

外國 企業이 中共에 合營企業을 設立하기 위해서는 中共側 合營 當事者를 통하여 아래 節次에 따라 企業設立 承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1. 合營事業 建議書

中共側 合營 當事者의 所屬 關係에 따라 該當 省, 市, 自治區 등의 地方政府 主管部門이나 혹은 國務院의 主務部處에 外國 企業側과 設立하고자 하는 合營事業에 대한 建議書를 中共側 合營 當事者가 作成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그 內容에는 合營對象 業種, 資金에 관련된 信用狀況, 合營目的, 營業活動 範圍, 生産規模, 投資規模, 投資總額, 投資比率 및 方式, 製造技術의 水準, 原材料의 供給源, 燃料의 供給源, 動力과 生産設備의 供給源, 販賣市場, 經濟的 效果 및 合營의 基本條件 등에 관한 計劃 사항이 包含되어야 한다.

우선 이 建議書가 中共側 合營對象企業이 所屬되어 있는 관련 主管 部處의 審查와 同意를 거친후, 다시 對外經濟貿易部의 承認을 받아야만 비로소 妥當性調查를 비롯한 其他 合營企業設立을 위한 事前準備作業에 들어갈 수 있다.

2. 妥當性 調査

合營當事者인 雙方은 合營企業의 設立을 위해 對象業種에 관한 事業妥當性を 研究하여 報告해야 한다. 즉, 各 當事者側이 實施한 合營企業의 技術과 經濟的인 面에서의 妥當性調查內容과 그 實施方法等 이 (이에 關聯된 具體的인 內容과 要求事項은 別途로 規定) 關聯省, 市, 自治區 等の 地方政府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의 審查를 거쳐, 다시 對外經濟貿易部의 承認을 받은 후, 合營雙方은 비로소 協議, 契約 및 定款 制定 등의 정식 文건조인과 關聯된 相談에 着手할 수 있다.

3. 承認審查 要請

合營雙方은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및 定款 等の 정식 文건에 조인한 후, 다시 關聯省, 市, 自治區 等の 地方政府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를 통해 對外經濟貿易部에 이에 對한 承認審查를 要請해야 한다.

對外經濟貿易部에 合營企業設立을 申請하기 위해서는 아래 列舉한 正式文件을 添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 ① 合營企業 設立·運營申請書
- ② 該當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및 定款 等の 正式文件

③ 該當 合營企業의 妥當性調查結果 報告書

④ 該當 合營企業의 豫定된 (協商中인) 理事長, 副理事長, 理事, 社長 및 副社長의 名單

⑤ 合營企業의 所在地 省, 市, 自治區의 關聯 主管部門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의 意見書

對外經濟貿易部는 앞서 列舉한 申請書를 包含한 全體文件을 接受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設立에 對한 可否를 判定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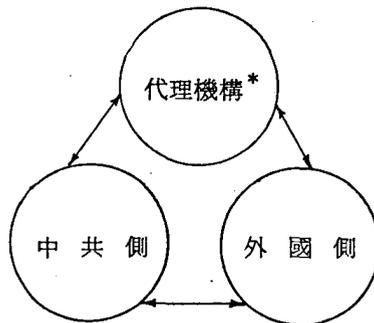
設立이 承認된 合營企業에 대해서는 「認證書」를 發給한다. 各 合營當事者는 認證書를 받은 후 1個月 以內에 「中外合營企業登記管理法」에 따라 中共 工商行政管理總局 혹은 그 委託을 받은 各省, 市, 自治區 工商行政管理局에 合營企業設立登錄을 마쳐야 한다.

登記證書發給日로부터 合營企業의 法的인 設立이 發效된다.

以上の 過程을 자세히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1 段階 : 中共側, 혹은 外國側企業은 어느 쪽이나 中共에 있는 「代理機構」를 통해서 合作投資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雙方이 연계

< 1 段階 >



* 「代理機構」란 中共의 諮詢公司 혹은 모든 國際信託投資公司 및 이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여타의 유사기관을 通稱하는 것이다.

우선 이 建議書가 中共側 合營對象企業이 所屬되어 있는 有關主管 部處의 審査와 同意를 거친후, 다시 對外經濟貿易部의 承認을 받아야만 비로소 妥當性調查를 비롯한 其他 合營企業設立을 위한 事前準備作業에 들어갈 수 있다.

2. 妥當性 調査

合營當事者인 雙方은 合營企業의 設立을 위해 對象業種에 관한 事業妥當性을 研究하여 報告해야 한다. 즉, 各 當事者側이 實施한 合營企業의 技術과 經濟的인 面에서의 妥當性調査內容과 그 實施方法等 이 (이에 關聯된 具體的인 內容과 要求事項은 別途로 規定) 關聯省, 市, 自治區 等の 地方政府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의 審査를 거쳐, 다시 對外經濟貿易部의 承認을 받은 후, 合營雙方은 비로소 協議, 契約 및 定款 制定 등의 정식 文건조인과 關聯된 相談에 着手할 수 있다.

3. 承認審査 要請

合營雙方은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및 定款 等の 정식 文건에 조인한 후, 다시 關聯省, 市, 自治區 等の 地方政府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를 통해 對外經濟貿易部에 이에 對한 承認審査를 要請해야 한다.

對外經濟貿易部에 合營企業設立을 申請하기 위해서는 아래 列舉한 正式文件을 添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① 合營企業 設立·運營申請書

② 該當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및 定款 等の 正式文件

③ 該當 合營企業의 妥當性調查結果 報告書

④ 該當 合營企業의 豫定된 (協商中인) 理事長, 副理事長, 理事, 社長 및 副社長の 名單

⑤ 合營企業의 所在地 省, 市, 自治區의 關聯 主管部門 혹은 國務院 主務部處의 意見書

對外經濟貿易部는 앞서 列舉한 申請書를 包含한 全體文件을 接受한 날로부터 3 個月 以內에 設立에 對한 可否를 判定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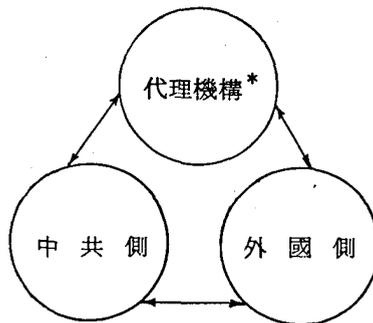
設立이 承認된 合營企業에 대해서는 「 認證書 」를 發給한다. 各 合營當事者는 認證書를 받은 후 1 個月 以內에 「 中外合營企業登記管理法 」에 따라 中共 工商行政管理總局 혹은 그 委託을 받은 各省, 市, 自治區 工商行政管理局에 合營企業設立登錄을 마쳐야 한다.

登記證書發給日로부터 合營企業의 法的인 設立이 發效된다.

以上の 過程을 자세히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1 段階 : 中共側, 혹은 外國側企業은 어느 쪽이나 中共에 있는 「 代理機構 」를 통해서 合作投資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雙方이 연계

< 1 段階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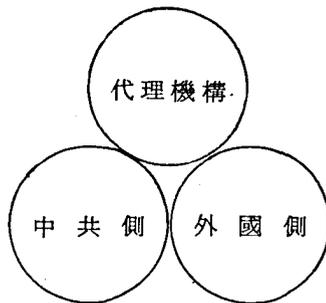


* 「 代理機構 」란 中共의 諮詢公司 혹은 모든 國際信託投資公司 및 이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여타의 유사기관을 通稱하는 것이다.

되면, 兩側은 代理機構의 協助로 雙方이 關心을 가지고 있는 合營事業에 關한 意見書와 建議書를 交換할 수 있다. 雙方이 合營對象事業에 對한 相互間 일정한 양해에 도달하여 兩側이 모두 具體的으로 合營企業 設立을 위한 相談을 希望하는 경우, 代理機構는 이들의 要求에 依據하여 外國側 合營希望者를 中共으로 招請한다.

2 段階：外國側 合營希望者가 入國하면, 代理機構는 當事者間的 面談을 周旋한다. 代理機構는 어느 한쪽의 要求에 의해 이 相談에 參與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의 委託를 받아 諮問 혹은 其他形式의 協助를 提供한다. 相談內容에는 對象事業의 事業展望, 相互利害事項, 事전에 確實히해야 할 問題 등이 包含된다. 相談期間中, 相談兩側은 代理機構에 委託하여 對外經濟貿易部의 意見을 諮問받을 수 있다. 對外經濟貿易部가 이 諮問에 應하여 該當事業이 事業性이 있고 中共側의 合營企業誘致條件에 부합된다고 通知하는 경우, 相談雙方은 相談이 끝나는 대로 各側이 自體的으로 代理機構에 委託하여 初步的인 妥當性調査를 한다. 이 段階에서 相互 同意하는 경우, 各側은 相對方側에 工場視察團을 派遣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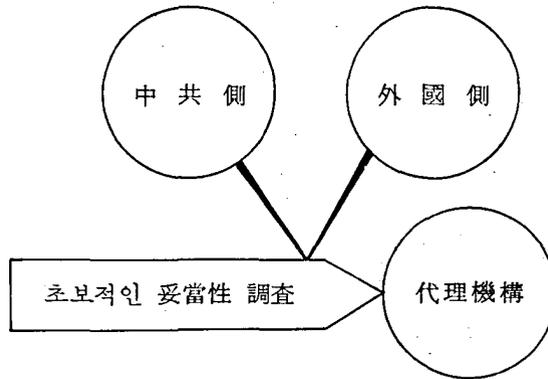
< 2 段階 >



3 段階：初步的인 妥當性調査完了後, 雙方은 各各 相對方에게 報告書를 送付한다. 또한 代理機構에도 寫本 1 부를 提出한다. 이는 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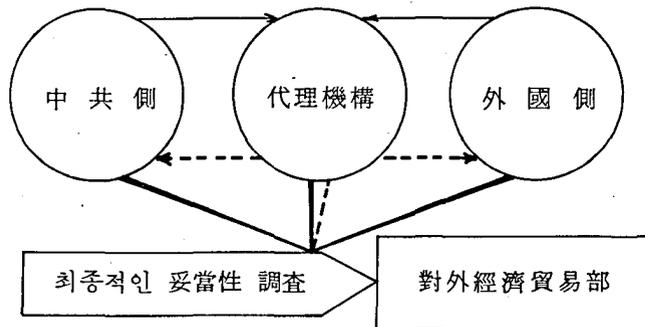
營事業의 當事者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對하여 該當合營事業에 對해 合營을 建議하는 意味를 갖는 것이다. 諮問을 맡은 代理機構는 兩側의 初步的 妥當性 調査內容을 면밀히 檢討하여, 雙方間의 見解差異를 發見하면 즉시 이 差異를 最小限으로 줄이도록 調整하고 仲裁한다.

< 3 段階 >



4 段階 : 雙方이 各各 相談을 進行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認定하면, 代理機構는 雙方의 要請에 따라 外國人(暫定投資家인) 當事者側을 招請한다. 代理機構는 對外經濟貿易部에 지난 몇차례의 相談內容 및 未決問題를 報告한다. 만일 雙方이 合營事業에 對한 基本的인 事項들에 모두 同意하는 경우, 어느 한쪽 또는 雙方이 聯合하거나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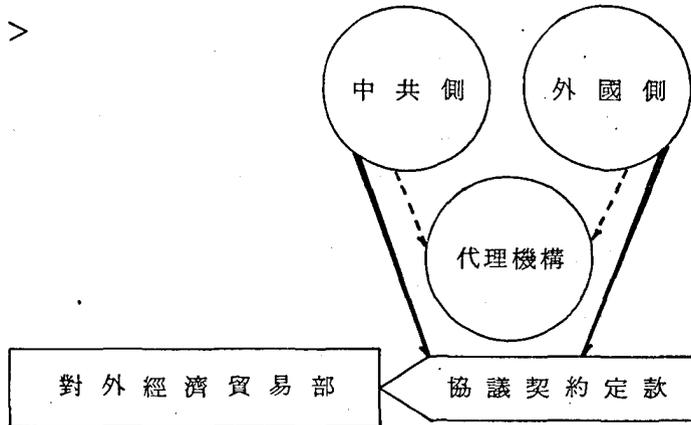
< 4 段階 >



代理機構에 委託하여 詳細한 妥當性調查를 實施하며, 最終段階에서는 雙方이 直接 妥當性調查를 맡는다. 相談은 雙方이 最後의 協議에 다다를 때까지 繼續한다. 最終的인 詳細한 妥當性 調查內容은 對外經濟貿易部에 報告審査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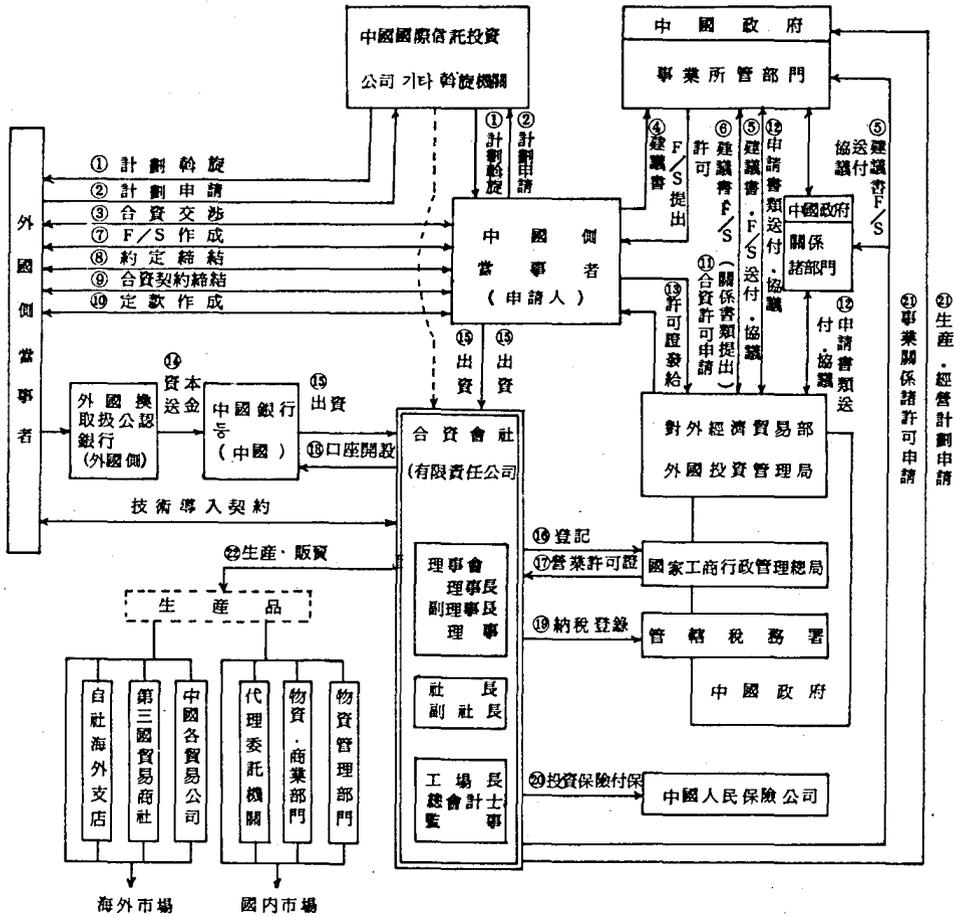
5 段階：代理機構는 對外經濟貿易部에 雙方의 相談結果를 送付한다. 最終的인 詳細한 妥當性 調查內容은 對外經濟貿易部の 同意를 얻은 후, 어느 한쪽 혹은 雙方聯合 또는 代理機構에 委託하여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定款의 초안을 作成한다. 中共側 當事者는 外國側 合營當事者에게 職工을 보내어 職務訓練을 시킨다. 協定, 契約, 定款의 초안은 雙方이 이에 署名하기 前에 對外經濟貿易部에 提出하여 審査를 받는다.

< 5 段階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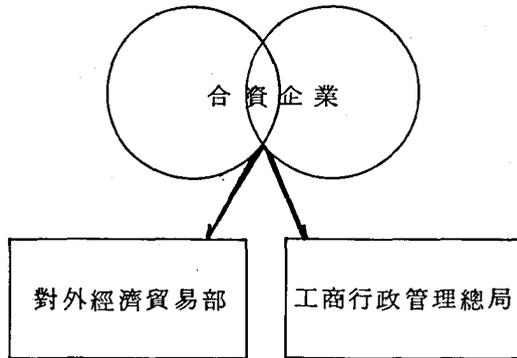
6 段階：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定款의 草案內容이 對外經濟貿易部の 承認을 얻으면, 相談 最終日에 雙方은 이들 文件에 署名한다. 署名을 마친 協定, 契約, 定款은 다시 對外經濟貿易部에 보내어져 정식 承認을 받아야 한다. 對外經濟貿易部の 承認을 얻은 후, 合營企業은 工商行政管理總局 (혹은 行政管理局)에 登錄하고, 營業證을 交

< 圖 1 > 中外合資企業的設立節次



資料：『中國經濟』，1983.11, PP.15 - 16

< 6 段階 >



付받는다. 合營企業은 納稅業務를 위해 該當地域 管轄 稅務署에 登錄해야 한다 (<圖 1>參照).

4. 合營企業 設立過程에 있어서의 主要事項

가. 出資比率 및 出資方式

中共의 「合資法 (中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는 合營企業의 登錄資本中 外國人 投資家의 出資比率이 通常 25%를 下廻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雙方의 具體的인 出資比率은 該當 合營企業의 設立過程에서 그 與件과 狀況에 따라 協商을 통해서 協定 (契約)속에 明示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合營當事者는 現金, 建築物, 機械·設備, 工業所有權 (新案 特許, 商標權, 特許權), 獨占的 技術 및 工場敷地使用權 等の 形態로 出資할 수 있다. 現金이 아닌 建築物, 機械·設備, 工業所有權, 獨占的 技術 等の 形態로 出資할 때는 그 價值評價 (資產評價)를 合營雙方이 國際市場價格을 토대로 公正하고 合理的인 原則에 따라 協商을 통해 確定하든가, 合營雙方이 同意한 제 3의 評價者에게 依賴한다.

外國人 投資家가 出資하는 工業所有權 및 獨占的 技術은 반드시 아래의 條件中 하나와 符合되어야 할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

① 中共에서 반드시 必要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製品의 生産과 直接 關聯이 있을 것.

② 現在 中共이 生産하고 있는 製品의 性能이나 品質을 현저히 向上, 改善시킴으로써,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을 向上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生産效率을 높이고, 材料 및 에너지의 節約效果가 있을 것.

外國人 投資家가 工業所有權 혹은 獨占的技術의 形態로 出資하는 경우, 該當工業所有權과 獨占的技術과 關聯된 詳細한 資料에는 그 技術의 特性, 使用價值, 價值評價額의 算出根據 및 中共側 投資家가 同意한 協商價額 等の 關聯文件이 包含되어야 하며, 이것은 合營企業 契約書의 附屬書類로서 對外經濟貿易部 혹은 그 委託을 받은 承認審查機構에 提出되어 함께 審査 및 認准을 받아야 한다.

合營當事者는 자기 合營企業契約書에 規定한 期限內에 各側의 出資額을 完納해야 한다.

나. 生産製品의 輸出과 內需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은 반드시 그 일부를 輸出해야하며, 輸出代金인 外貨로 原材料輸入代金, 外國投資家側의 配當金 및 外國國籍社員의 賃金 等を 支拂하여, 合營企業이 自體的으로 外換收支均衡을 도모해야 한다.

輸出獎勵 인센티브로서 合營企業이 輸出한 製品의 外貨代金은 위에 列舉한 各項目에 支出한 뒤, 그 殘餘分을 中國銀行에서 人民幣로 交換함으로써 「貿易內部決算價格(中共이 輸出外貨代金에 대해 決裁해 주는 우대환율)」에 의한 換差益을 누릴 수 있다.

原價가 比較的 高價인 輸出商品代金を 兌換할 경우, 該當地域의 稅務機關에 工商統一稅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合營企業은 獨自的으로 生産製品을 販賣할 수도 있고, 合營當事者인 外國側 母企業의 販賣組織 또는 中共의 關聯 進出口公司 等 對外 貿易活動機關에 代理販賣를 委託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定款에 規定한 比率에 根據하여 內수시장에 販賣되는 製品은 國家의 計劃分配에 속하는 物資인 경우, 關聯企業管理部門을 거쳐 該當物資管理部門의 分配計劃에 算入되며 이 物資에 대한 供給契約締結을 거쳐 消費者에게 販賣된다.

物資 혹은 商業 管理部門을 거쳐 販賣하여야 하는 物資는 各各 物資 혹은 商業 管理部門에서 優先的으로 注文 購買한다. 詳述한 二種類의 物資의 剩餘部分 혹은 이들 二種類의 物資에 속하지 않는 物資는 合營企業이 自體的으로 販賣하거나 혹은 관련 流通部門機關에 代理販賣를 委託할 수 있다. 內需用으로 販賣되는 製品은 國家의 價格政策에 따라 國內同種製品의 價格水準을 參照하여 合營企業側의 質的優秀性과 價格優待原則에 依據 製品價格을 산정한다. 通常 國內外價格差異가 顯著한 品目的 경우, 國內市場價格 및 注文購買 또는 委託販賣機關과의 協商內容을 參照하여 販賣價格을 定한다.

다. 企業管理權

合營企業은 中共의 國民經濟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要素로 看做되어, 社會主義의 國家計劃에 의해 指導를 받도록 되어 있다.

合營企業은 獨自的인 經濟單位로 看做되고 있으나, 企業主管部門이 合營企業을 指導한다. 中共側 企業主管部門은 法律, 法令과 관련 條例 내지 認准된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定款의 規定 等에 依據하여, 合營企業의 業務活動을 檢査, 監督한다.

合營企業과 관련된 重要한 政策決定은 董事會議(理事會)에서 討議, 決定한다. 이 가운데는 企業의 發展計劃, 生産販賣活動方案, 收支豫算, 利潤分配, 勞動·賃金計劃, 製品價格, 休業 및 社長, 副社長, 工場長, 總會計士, 監事の 任命 혹은 초빙 내지 그 職務와 待遇等에 관한 內容이 包含된다.

合營企業은 理事會의 指導下에 管理部門을 設置하여, 該當企業의 日常的인 管理業務를 責任지게 한다. 管理部門은 社長 1名, 副社長 1~2名을 둔다. 社長은 理事會에 대한 報告의 責任을 진다. 副社長은 社長の 業務를 補佐한다. 社長이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執行하고, 合營企業의 日常的인 經營管理活動을 擔當하여 指揮 監督하고, 理事會로부터 賦與받은 授權範圍에서 部下職員의 任免權을 갖고, 그밖에 賦與받은 其他 職能을 行使한다. 社長이 決裁한 文件은 副社長の 同意와 決裁도 받아야 한다.

中共의 各급 政府機關은 合營企業이 中共의 法律, 條例 및 政府가 承認한 該當企業의 契約, 定款 등을 토대로 生産, 購買, 販賣, 人事 및 物資管理 등 諸側面에서 갖고있는 自主權을 保障하고 支援하도록 되어있다.

라. 外換管理

中共은 國內 外貨資金을 國家에서 集中的으로 管理하고 있어 그 支出을 통일적으로 運營하는 方針을 實施하고 있다.

外貨로 分類되는 것은 外國 화폐, 外貨表示 有價證券(政府公債, 國庫債 및 公社債), 外貨表示支拂保證書(手票, 銀行預置金證明書, 遞信貯蓄證書), 利子 쿠폰과 株式 및 其他 外貨資金 等이다.

中共은 「中國外匯管理暫行條例」에 따라 外貨를 管理하고 있으며, 外國화폐의 國內流通 또는 使用이나 抵當禁止, 私的買賣禁止 등 여하

한 形態의 外貨逃避 및 流出 等の 活動을 禁止하고 있다.

合營企業의 모든 外貨收入은 반드시 中國銀行과 中國銀行이 外換管理業務를 許可한 銀行에 預置하여야 한다. 一切의 外換支出은 그 外貨預置計定에 預置된 金額 限度內에서만 可能하다. 合資企業과 中共國內企業 혹은 個人과의 去來에서 使用되는 決裁通貨는 國家外換管理總局이 承認하고, 去來 雙方이 同意할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두 人民幣를 使用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이 관련 所得稅法에 依據 納稅한 後의 純利益과 其他 正常收益은 去來銀行의 同 企業 外貨預置計定에 預置된 限度內에서 引出을 申請할 수 있다.

外國人 合營當事者가 合營企業이 滿期 혹은 營業中止되었을 때에 分配받게 되는 資金 내지 其他 合法的인 收入은 契約書 規定에 의한 貨幣로 外國換銀行을 통해 外換管理條例에 따라 海外로 送金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外國人 職員과 香港·마카오 地域居住職工은 關聯個人所得稅法에 따라 稅金을 納付한 後, 海外로 送金 혹은 直接搬出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限度額은 本人의 賃金(給料)等 正當한 純收益의 50%를 넘지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 勞動管理

合營企業職員의 雇傭, 解雇, 辭職, 賃金 및 福祉와 勞動保護, 勞動規律 等の 事項은 모두 契約의 締結을 통해 規定된다.

合營企業의 職員採用은 企業主管部門 혹은 勞動管理部門으로부터의 推薦에 의하거나, 혹은 勞動管理部門의 承認을 받아 合營企業이 自體의으로 募集, 選拔하며, 公히 合營企業의 銓衡過程을 거쳐 優秀한 人的資源을 選拔, 採用할 수 있다.

定款의 規定을 違反하거나 또는 企業에 損害를 끼친 職員에 대해서는 그 정황의 輕重에 따라서 必要한 處分을 내릴 수 있다. 解雇處分

은 반드시 企業主管部門에 報告하여 解雇申請을 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合營企業의 生産 또는 技術的인 變化로 因하여 剩餘勞動力이 發生하는 경우, 教育訓練을 통해 必要的 職務所要에 充當시켜야 하며, 이것이 不可能하거나 또는 다른 職務에 必要的 能力으로 改造시킬 수 없는 경우, 勞動契約에 따라 補償費用을 支給한 後 解雇할 수 있다. 원래의 推薦機關 혹은 勞動管理部門은 이러한 解雇職工을 다른 職場에 安排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合營企業의 給料待遇에 관해서는 合營契約上の 分配原則에 따라 各급 職員의 標準給料, 賃金形態, 보너스, 手當制度 등을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中共側 高級職員과 外國國籍의 高級職員의 給料水準은 原則적으로 同一職務水準에 대하여 同一給料을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合營企業의 一般職工의 給料水準은 所在地域 同種業種의 國營企業 職工의 實質賃金보다 20 ~ 50 % 높은 水準으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 中共側 職工의 勞動保險, 醫療 및 其他 福祉管理에 관련된 企業側의 負擔은 所在地域 同種業種의 國營企業을 基準으로 이보다 낮을 수는 없으며, 外國人 職員을 위한 社會保險 및 福祉는 雇傭契約書의 規定에 따른다.

合營企業은 中共이 宣布한 勞動保護制度를 遵守하여, 生産作業上の 安全을 保障해야 하며, 中共政府의 勞動管理部門은 監督, 檢査의 權限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合營企業에서 勞動爭議가 發生하는 경우, 우선 爭議 雙方이 協商을 통해 解決하고, 解決이 不可能한 경우 爭議 當事者中 한편 혹은 兩側이 所在地域의 勞動部門에 仲裁申請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仲裁內容에 承服하지 않는 경우, 法院에 訴訟을 提起하여 法에 따른

處理를 請求할 수 있다.

바. 土地使用料, 工場敷地, 建築物

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敷地는 合營企業이 所在地域 建設用地 管理部門에 이에 대한 申請書를 提出하여 國家가 規定한 節次에 따라 分配받으며, 契約書에 署名한 後 土地使用權을 取得하게 된다. 合營企業은 分配받은 使用承認土地에 대해서 반드시 그 土地使用料를 納付해야 한다. 그 基準은 該當敷地의 地理的, 經濟的 條件과 既存施設狀況을 根據로 各地域別로 確定한다. 土地使用料는 契約書에 規定한 敷地使用期限을 基準으로하여 年度別 納付形式으로 한다. 契約有效期間內에 土地使用料를 上向調整하는 경우, 上向調整한 年度로부터 始作하여 새로운 土地使用料標準에 따라 納付한다. 그러나, 土地가 이미 中共側 合營者에 의해 合營企業에 持分으로 投資된 形式을 취한 경우, 契約有效期限內에 그 使用料價額을 上向調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合營企業은 使用土地에 대해서 단지 使用權만을 가질 뿐 所有權은 없으며, 賣却處分이나 抵當等 其他 用途로 使用할 수 없다.

合營企業에 持分形式으로 出資된 建築物, 機器·設備 또는 土地使用權 등에 대한 價額評價는 雙方이 國際價格水準을 考慮하여 公平하고, 合理的인 原則에 따라 協商, 確定하거나, 第3者인 專門機關에 依賴하여 評價, 算定할 수 있다. 中共側이 持分으로 出資하여 合營企業이 使用하게 될 建築物과 機器·設備가 合營企業設立 以前에도 生産活動에 投入되어 利潤을 發生시켰으며, 合營後에도 繼續 生産活動에 投入될 경우, 이들 投資資産에 대한 評價價値는 實際使用價値 以外에도 該當企業의 最近 3年內의 平均利潤率을 勘案하여 다시 價値를 上向評價調整할 수 있다. 이때 上向調整率은 合營雙方의 協商에

의해서 決定한다.

마. 會計 및 會計監事

合營企業은 總會計士 1名을 두어야 하며, 大型企業의 경우 必要에 따라 監事 1名을 둘 수 있다. 總會計士와 監事는 모두 理事會에서 任命한다.

總會計士는 社長의 指揮下에 두며, 企業의 財務管理 및 會計業務에 대한 責任을 갖는다. 金額이 比較的 큰 非經常項目 支出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規定된 바에 따라 總會計士가 審査, 承認하거나, 審査後 意見書를 提出한 다음 社長에게 決裁를 申請하도록 되어 있다.

監事는 企業의 財務狀態, 會計, 帳簿 等に 대한 監事의 責任을 지며, 監事中에 發見한 問題들을 社長, 副社長 및 理事會에 수시로 報告한다.

合營企業의 會計制度는 中共 財政部의 關聯規定과 合營企業의 條件 등을 考慮하여 規定하도록 되어 있다.

合營企業은 世界 各國에서 通用되는 貸借方式의 複式簿記 會計記帳法을 採擇하고, 一切의 製造證明書, 帳簿 및 報告書 등은 반드시 中國語로 作成해야 하며, 동시에 外國 合營企業側 母國語로 된 書類를 追加로 使用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帳簿에 使用되는 表示貨幣單位는 原則적으로 人民幣로 하며, 其他 한가지 種類의 外貨를 追加로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帳簿에 使用되는 表示貨幣單位는 반드시 工商行政管理部門 登記簿에 登錄한 貨幣와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合營企業의 帳簿에 使用되는 貨幣와 다른 貨幣로 表示된 現金, 銀行預金, 各種 契約書, 債權, 債務, 收益 및 費用 등 實際收入이나 支出에 使用된 貨幣와 合營企業에 記帳된 貨幣單位가 一致하지 않는 경

우, 實際收入이나 支出에 使用된 貨幣로 別途 記帳해야 한다.

外國貨幣을 表示貨幣單位로 使用한 會計報告書는 人民幣로 記帳한 會計報告書를 別途로 作成해야 한다.

合營企業은 매 會計年度가 終了한 後, 2 個月以內에 對外經濟貿易部와 財政部에 同企業의 財務 및 經營管理狀態를 書面으로 報告해야 한다. 必要에 따라 對外經濟貿易部는 關聯部門과 合同으로 合營企業에 대한 監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 合營企業의 期限

合營企業의 營業活動期限은 반드시 合營雙方의 共同利益을 保障할 수 있는 期間이어야 하며, 業種의 特性이나 合營項目의 具體的인 實情에 따라 雙方이 協商을 통해 決定한다. 合營期限은 반드시 合營雙方間의 協定, 契約 및 定款속에 規定, 明示되어야 한다. 合營期限은 營業證書發給日로부터 起算한다.

合營期限 滿期以前에 合營雙方이 同意하는 경우, 合營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但, 該當企業의 理事會는 合營期限이 滿了되기 6 個月以前에 對外經濟貿易部 혹은 그 承認審查委託을 받은 機關에 合營期限 延長申請書를 提出해야 한다.

合營企業은 다음과 같은 狀況에서는 清算해야 한다.

① 合營有效 기한이 滿了되었을 때.

② 合營企業이 持續적으로 缺損을 보거나, 혹은 債務辨濟나 繼續經營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될때.

③ 合營雙方이 協定, 契約 및 定款의 規定事項을 遂行치 못하여 企業이 繼續 運營될 수 없는 狀況에 이른 경우 단, 이러한 경우 規定된 義務를 遂行하지 못한 側은 合營企業에 미친 損失에 대해 損害賠償 責任을 져야 한다.

④ 自然災害, 戰爭 等 不可抗力 (force majeure) 에 의해 심각한 損失을 입어 回復이 不可能한 경우.

⑤ 合營企業의 經營實績이 經營目標에 미달하였거나, 또는 發展可能性이 稀薄하다고 판단된 경우.

⑥ 合營企業이 公共利益을 해친다고 判斷되어 所在地域, 省, 市, 自治區 地方政府가 그 解散을 要求한 경우.

⑦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 및 定款에 規定된 其他 清算要因이 이미 發生한 경우.

자. 工業所有權

中共은 관계 法律公布 以前에 外國人 製造業者가 中共側 企業 혹은 合營者에게 이 전한 工業所有權에 대해서는 (商標權이나 獨占的技術 等) 國際慣例와 雙方間에 調印된 契約에 依據하여 合法的인 利益을 保護한다고 發表하였다 (1983 年과 84 年에 各各 商標法과 特許法을 制定公布하였음).

차. 銀行貸付

一般的으로 通常「合資法」의 規定에 따라 對外經濟貿易部の 承認을 얻고,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을 마쳐, 營業證을 發給받은 合營企業은 누구든지 銀行에 貸付申請을 할 수 있다.

合營企業은 營業活動이나 혹은 生産擴大를 위해 設備를 更新하는데 使用할 資金이 不足한 경우 中國銀行에 人民幣 혹은 外貨表示 資金貸出을 申請할 수 있다.

人民幣 표시의 貸出은 中國人民銀行이 고시한 利率로 執行되며, 外貨表示의 資金貸出은 中國銀行이 算定한 利率을 中國人民銀行이 다시 審査 決定한후 執行된다.

貸付는 信用擔保와 物品擔保貸付가 있다. 信用貸付는 반드시 銀行이 認定한 信用保證企業이 發付한 還拂保證書가 있어야 한다. 物品擔保貸付는 貸出銀行이 要求하는 抵當物로 還拂을 保證한다는 貸付 받는 企業이 作成提出한 證憑書類가 必要하다.

貸付金의 元利金은 모두 貸出當時의 表示貨幣로 償還해야 한다.

貸付의 其他條件은 貸付받는 企業과 中國銀行이 共同으로 協定調印할 貸付契約에 의한다.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憲 法

(1982年 12월 4日,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5次會議에서 採擇)

前 文

中國은 세계에서 가장 歷史가 悠久한 國家들 가운데 하나이다. 中國 各民族의 人民은 共同으로 燦爛한 民族文化를 創造하였으며, 榮光스런 革命의 傳統을 가지고 있다.

1840年 以後 封建的 中國은 漸次 半殖民地·半封建的 國家로 變하였다. 中國人民은 國家의 獨立, 民族의 解放 및 民主와 自由를 위하여 끊임없이 勇猛 奮鬪하였다.

20世紀에 들어 中國에서는 驚天動地할 偉대한 歷史的 變革이 일어났다.

1911年 孫中山先生이 領導한 辛亥革命은 封建君主制를 廢止하고 中華民國을 樹立하였다. 그러나 帝國主義와 封建主義에 反對하는 中國人民의 歷史的 任務은 아직 完了되지 않았었다.

1949年 毛澤東主席을 指導者로 한 中國共產黨은 中國의 各民族 人民을 指導하고 長期에 걸쳐 어렵고도 險難한 武力鬪爭과 其他 形態의 鬪爭을 거친 끝에 帝國主義, 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의 統治를 顛覆하고 新民主主義革命의 偉대한 勝利를 이룩하여 中華人民共和國을 創建하였다. 이때부터 中國人民은 國家權力을 掌握하여 國家의 主人公이 되었다.

中華人民共和國 樹立以後 우리나라 社會는 漸次 新民主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移行을 實現하였다. 生産手段私有制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了되어 사람이 사람을 搾取하는 制度는 이미 消滅되었으며 社會

主義制度가 確立되었다. 勞動者階級이 指導하고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人民民主主義獨裁는 實質的으로 「프롤레타리아」獨裁로서 鞏固化되고 發展되었다. 中國人民과 中國人民解放軍은 帝國主義·霸權主義의 侵略, 破壞 및 武裝挑發에 싸워 이김으로써 國家의 獨立과 安全을 守護하고 國防을 增大시켰다. 經濟建設은 눈부신 成果를 거두어 獨立的이며 比較的 잘 整備된 社會主義的 工業體系가 基本的으로 形成되었고 農業生産이 크게 向上되었다. 教育·科學·文化 等의 事業에는 長足の 發展이 있었으며 社會主義 思想教育은 顯著的 成果를 거두었다. 廣範한 人民의 生活은 比較的 크게 改善되었다.

中國의 新民主主義革命의 勝利와 社會主義事業의 成果는 모두가 中國共產黨이 中國의 各民族 人民을 指導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의 引導下에 眞理를 堅持하며, 過誤를 修正하고 수많은 難關과 危險에 싸워 이김으로써 獲得한 것이다. 今後 國家의 根本任務는 社會主義의 現代化建設에 總力を 傾注하는 것이다. 中國人民은 繼續 中國共產黨의 指導와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의 引導下에 人民民主主義獨裁와 社會主義路線을 堅持하고 社會主義의 各種 制度를 不斷히 整備하며,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發揚하고, 社會主義法制를 確立하여, 自力更生하고 奮鬥努力하여 漸次 工業·農業·國防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達成하고 우리나라를 高度로 文明化되고 民主的인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階級으로서의 搾取階級은 消滅되었으나 階級鬭爭이 여전히 一定範圍內에서 長期的으로 存續할 것이다. 中國人民은 우리나라의 社會主義制度를 敵對視하고 破壞하려는 國內外的 敵對勢力과 敵對分子에 대하여 鬭爭을 展開하여야 한다.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神聖한 領土의 一部이다. 祖國統一의 大

業을 完遂하는 것은 臺灣同胞를 包含한 全 中國人民의 神聖한 責任이다.

社會主義의 建設에 있어서는 반드시 勞動者·農民·知識人에 依據하여 結集possible한 모든 力量을 結集시켜야 한다. 長期에 걸친 革命과 建設의 過程에서 中國共產黨의 指導下에 民主諸黨派와 各 人民團體가 參加하고 社會主義의 全體勤勞者, 社會主義를 擁護하는 愛國者, 祖國의 統一을 擁護하는 愛國者를 包含한 廣範한 愛國統一戰線이 結成되었다. 統一戰線은 繼續 鞏固化되고 擴大될 것이다.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廣範한 代表性을 갖는 統一戰線組織으로서 過去에는 重要한 歷史的 役割을 發揮하였는데 今後에도 國家의 政治生活·社會生活 및 對外友好活動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現代化建設을 推進하고 國家의 統一과 團結을 守護하려는 鬭爭中에서 그 主要 役割을 加一層 發揮할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는 全國의 各民族 人民이 共同으로 創建한 統一된 多民族國家이다. 平等·團結·相互援助의 社會主義的 民族關係는 이미 確立되었으며 또한 繼續 強化될 것이다. 民族團結을 守護하려는 鬭爭中에서 大民族主義, 特히 大漢族主義에 反對하여야 하며 또한 地方民族主義에도 反對하여야 한다. 國家는 모든 努力을 다하여 全國 各民族의 共同繁榮을 促進하여야 한다.

中國革命과 建設의 成就是 世界人民의 支持와 分離될 수 없다. 中國의 前途는 世界의 前途와 緊密하게 連結되어 있다. 中國은 自主獨立의 對外政策을 堅持하고 主權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涉, 互惠平等, 平和共存의 5個原則을 堅持하고 各國과의 外交關係 및 經濟·文化交流를 發展시키며, 帝國主義·霸權主義·植民主義의 反對를 堅持하고 世界 各國 人民과의 團結을 強化하며,

被壓迫民族과 開發途上國의 民族獨立을 爭取·守護하고 民族經濟를 發展시키는 正義의 鬭爭을 支持하며, 世界平和를 守護하고 人類의 進歩的 事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努力한다.

本 憲法은 法律의 形式으로써 中國의 各民族 人民이 奮鬪한 成果를 確認하고 國家의 基本制度和 基本任務를 規定한 國家의 基本法으로서 最高의 法的 效力을 가진다. 全國의 各民族 人民, 모든 國家機關과 武裝力, 各 政黨과 各 社會團體, 各 企業과 事業體들은 憲法을 基本的인 活動準則으로 삼아야 하며 憲法의 尊嚴性을 守護하고 憲法의 施行을 保障할 責任을 진다.

第1章 總 綱

第1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은 勞動者階級이 指導하고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人民民主主義 獨裁의 社會主義國家이다.

② 社會主義制度는 中華人民共和國의 基本制度이다. 어떤 組織이나 個人도 社會主義制度를 破壞하는 것을 禁止한다.

第2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 屬한다.

② 人民이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이다.

③ 人民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各種 經路와 形式을 통하여 國家事務, 經濟·文化事業 및 社會業務를 管理할 權利를 가진다.

第3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家機構는 民主集中制의 實行을 原則으로 한다.

②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民主的 選舉를 통하여 構成되며 人民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人民의 監督을 받는다.

③ 國家의 行政機關·裁判機關·檢察機關은 모두 人民代表大會에 의하여 組織되며 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그 監督을 받는다.

④ 中央 및 地方國家機構의 職權區分은 中央의 統一的 指導下에 地方의 能動性·積極性을 充分히 發揮시킨다는 原則에 의한다.

第 4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各 民族은 一律적으로 平等하다. 國家는 各 少數民族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障하며 各 民族의 平等·團結·相互援助關係를 維持·發展시킨다. 어느 民族에 대한 差別과 彈壓도 禁止하며 民族의 團結을 破壞하고 民族의 分裂을 助長하는 行爲도 禁止한다.

② 國家는 各 少數民族의 特徵과 必要에 依據하여 各 少數民族地區가 經濟·文化의 發展을 加速하도록 協助한다.

③ 各 少數民族이 集居하고 있는 地方에서는 區域自治를 實施하며 自治機關을 設立하여 自治權을 行使하게 한다. 各 民族自治地方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의 部分이다.

④ 各 民族은 모두 自己의 言語·文字를 使用하고 發展시킬 自由와 自己의 風俗·習慣을 保持 또는 改革할 自由를 가진다.

第 5 條 ① 國家는 社會主義法制의 統一과 尊嚴을 守護한다.

② 모든 法律·行政法規 및 地方의 法規는 憲法에 抵觸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國家機關과 武裝力, 各 政黨과 各 社會團體, 各 企業과 事業體 등은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여야 하며 憲法과 法律에 違反하는 모든 行爲는 追窮을 받아야 한다.

④ 어느 組織이나 個人도 憲法과 法律을 超越하는 特權을 가지지 못한다.

第 6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社會主義의 經濟制度의 基礎는 生産手段의 社會主義의 公有制, 即 全人民所有制와 勤勞大衆의 集團所有制이다.

② 社會主義의 公有制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람을搾取하는 制度가 消滅되고, 『各自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勞動에 따라 分配받는다』는 原則이 實行된다.

第 7 條 國營經濟는 社會主義의 全人民所有制經濟이며 國民經濟의 主導力이다. 國家는 國營經濟를 鞏固히 하고 發展시킬 것을 保障한다.

第 8 條 ① 農村人民公社·農業生産合作社 其他 生産·供給·販賣·信用 消費 等 各種形態의 合作社(協同組合¹⁾) 經濟는 社會主義 勤勞大衆의 集團所有制經濟이다. 農村의 集團經濟組織에 從事하는 勤勞者는 法律로 定한 範圍內에서 自留地·自留山·家庭副業을 經營하고 自留家畜을 飼育할 權利를 가진다.

② 都市의 手工業·工業·建築業·運輸業·商業·「서어비스」業 等 業種의 各種 形態의 合作社經濟도 社會主義 勤勞大衆의 集團所有制經濟이다.

③ 國家는 都市·農村 集團經濟組織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고 集團經濟의 發展을 獎勵·指導·補助한다.

第 9 條 ① 鑛物資源·水域·山地·草原·荒蕪地·河川敷地 等 自然資源은 모두 國家所有, 即 全人民所有에 屬한다.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所有에 屬하는 森林·山地·草原·荒蕪地 및 河川敷地는 除外된다.

② 國家는 自然資源의 合理的인 利用을 保障하고 珍貴한 動物과 植

1) () 안은 追加 說明임. 以下 同一

물을 保護한다.

第 10 條 ① 都市의 土地는 國家所有에 屬한다.

② 農村 및 都市 郊外地域의 土地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 國有地를 除外하고는 集團所有에 屬하며, 宅地·自留地·自留山도 集團所有에 屬한다.

③ 國家는 公共利益을 위하여 必要할 경우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收用할 수 있다.

④ 어느 組織이나 個人도 土地를 侵佔, 賣買, 賃貸借하거나 其他 形式으로써 土地를 不法 讓渡할 수 없다.

⑤ 土地를 使用하는 모든 組織과 個人은 合理的으로 土地를 利用하여야 한다.

第 11 條 ① 法律로 定한 範圍內的 都市와 農村의 勤勞者에 의한 個體經濟(個人經營經濟)는 社會主義的 公有制經濟의 補充이다. 國家는 個體經濟의 合理的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② 國家는 行政管理를 통하여 個體經濟를 指導·補助·監督한다.

第 12 條 ① 社會主義의 公共財産은 神聖不可侵이다.

② 國家는 社會主義의 公共財産을 保護한다. 어느 組織 또는 個人이 如何한 手段으로 國家와 集團의 財産을 侵害하거나 破壞하는 것을 禁止한다.

第 13 條 ① 國家는 公民의 合法的 所得·貯蓄·家屋 其他 合法的 財産의 所有權을 保護한다.

② 國家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民의 私有財産 相續權을 保護한다.

第 14 條 ① 國家는 勤勞者의 積極性 高揚과 技術水準의 向上을 통하여 經濟의 管理體制와 企業의 經營管理制度를 完備하고 各種形

態의 社會主義責任制를 實施하며, 勞動組織을 改善함으로써 勞動生産性과 經濟效率을 不斷히 向上시키고 社會生産力을 發展시킨다.

② 國家는 節約에 힘쓰고 浪費를 反對한다.

③ 國家는 蓄積과 消費를 合理的으로 計劃하여 國家·集團 및 個人의 利益을 모두 考慮하고 生産을 發展시킨 基礎위에서 漸次 人民의 物質生活과 文化生活을 改善한다.

第 15 條 ① 國家는 社會主義的 公有制의 基礎위에서 計劃經濟를 實施한다. 國家는 經濟計劃의 綜合的 均衡과 市場調節의 補助機能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均衡發展을 保障한다.

② 國家는 어느 組織이나 個人이 如何한 手段으로 社會經濟秩序를 攪亂시키고 國家經濟計劃을 破壞하는 것을 禁止한다.

第 16 條 ① 國營企業은 國家의 統一의 指導에 服從하고 國家計劃을 全面的으로 完遂한다는 前提下에 法律로 定한 範圍內에서 經濟管理의 自主權을 가진다.

② 國營企業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從業員(職員·勞動者를 包含) 代表大會와 其他 形態를 통하여 民主的 管理를 實行한다.

第 17 條 ① 集團經濟組織은 國家計劃의 指導를 받고 關係法律을 遵守한다는 前提下에 獨立的으로 經濟活動에 從事할 自主權을 가진다.

② 集團經濟組織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民主的 管理를 實施한다. 管理者는 同 組織의 全體 勤勞者에 의하여 選出 또는 罷免되며 經營·管理의 重大問題를 決定한다.

第 18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은 外國의 企業과 其他 經濟組織 또는 個人이 中華人民共和國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中國에서 投資하고, 中國의 企業 또는 其他 經濟組織과 各種 形態의 經濟協力을 推進하는 것을 許可한다.

② 中國領內에 있는 外國의 企業과 其他 經濟組織 및 中外合資經營 企業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을 遵守하여야 한다. 그들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은 中華人民共和國 法律의 保護를 받는다.

第 19 條 ① 國家는 社會主義의 教育事業을 發展시키고 全國 人民의 科學·文化水準을 向上시킨다.

② 國家는 各種 學校를 設立하고 初等義務教育을 普及하며, 中等 教育·職業教育 및 高等教育을 發展시키고 學齡前教育을 發展시킨다.

③ 國家는 各種 教育施設을 發展시키고 文盲을 退治하며, 勞動者·農民·國家公務員²⁾ 및 其他 勤勞者에 대하여 政治·文化·科學·技術·業務教育을 實施하고 獨學에 의한 技能習得을 獎勵한다.

④ 國家는 集團經濟組織, 國家의 企業·事業體 및 其他 社會組織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各種 教育事業을 運營하는 것을 獎勵한다.

⑤ 國家는 全國에 通用되는 標準語를 널리 普及한다.

第 20 條 國家는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發展시키고 科學과 技術知識을 普及시키며, 科學研究와 技術의 開發 및 創造를 獎勵한다.

第 21 條 ① 國家는 醫療衛生事業을 發展시키고 現代醫藥과 우리나라의 傳統醫藥을 發展시키며 農村의 集團經濟組織, 國家의 企業·事業體 및 居住區組織³⁾이 各種 醫療衛生施設을 設置하는 것을 獎勵하고 大衆的인 衛生活動을 展開하며 人民의 健康을 保護한다.

② 國家는 體育事業을 發展시키고 大衆的인 體育活動을 展開하여 人民의 體位를 向上시킨다.

2) 原語는 國家工作人員, 國家機關, 國家의 企業·事業體 其他法律에 의하여 公務에 從事하는 者.

3) 都市 商工業地區의 自治組織.

第 22 條 ① 國家는 人民과 社會主義를 위하여 奉仕하는 文化藝術事業, 新聞·放送·TV 事業, 出版發行事業, 圖書館·博物館·文化館 其他 文化事業을 發展시키며 大衆的인 文化活動을 展開한다.

② 國家는 名勝古蹟, 貴重한 文物 其他 重要한 歷史的 文化遺産을 保護한다.

第 23 條 國家는 社會主義를 위하여 奉仕하는 여러分野의 專門人材를 養成하고 知識層을 擴大하여 社會主義의 現代化 建設에 있어서 그들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시킬 與件을 造成한다.

第 24 條 ① 國家는 理念教育·道德教育·文化教育·紀律教育 및 法制教育의 普及을 통하여 都市와 農村的 各分野의 大衆가운데 各種 守則·公約을 制定, 執行함으로써 社會主義的 精神文明의 建設을 強化한다.

② 國家는 祖國·人民·勞動·科學·社會主義를 사랑하는 道德을 提唱하고 人民에게 愛國主義·集團主義와 國際主義의 教育을 實施하며, 辨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의 教育을 實施하고, 資本主義思想·封建的 思想 其他 陳腐한 思想을 反對한다.

第 25 條 國家는 計劃出産을 推進하여 人口增加가 經濟·社會發展計劃과 相互 調和를 이루도록 한다.

第 26 條 ① 國家는 生活環境과 生態系環境을 保護·改善하고 汚染과 其他 公害를 豫防·處理한다.

② 國家는 植樹造林을 計劃·獎勵하고 林木을 保護한다.

第 27 條 ① 모든 國家機關은 精銳化·簡素化의 原則과 業務責任制를 實行하고 公務員의 訓練·審査制度를 實施하여 業務의 質과 執務能率을 提高시키고 官僚主義를 反對한다.

② 모든 國家機關과 國家公務員은 人民의 支持에 依據하여 恒常人

민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고 人民의 意見과 建議를 傾聽하며, 人民의 監督을 받고 人民을 위하여 奉仕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 28 條 國家는 社會秩序를 保持하고 反國家의 活動과 其他 反革命的 活動을 鎮壓하며 社會治安을 威脅하는 活動, 社會主義經濟를 破壞하는 活動 其他 犯罪活動에 대하여 制裁를 加하고 犯罪者를 處罰, 改造시킨다.

第 29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武裝力은 人民에 屬한다. 그 任務는 國防을 強化하고 侵略에 對抗하며, 祖國을 保衛하고 人民의 平和的 勞動을 保護하며, 國家建設事業에 參與하고 人民을 위하여 奉仕하는 것이다.

② 國家는 武裝力의 革命化·現代化·正規化 建設을 強化하고 國防力을 增強시킨다.

第 30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行政區劃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全國을 省·自治區·直轄市로 나눈다.
2. 省·自治區를 自治州·縣·自治縣·市로 나눈다.
3. 縣·自治縣을 鄉·民族鄉·鎮으로 나눈다.

② 直轄市와 比較的 큰 市는 區·縣으로 나눈다. 自治州는 縣·自治縣·市로 나눈다.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은 모두 民族自治地方이다.

第 31 條 國家는 必要한 경우 特別行政區를 設立할 수 있다. 特別行政區內에서 實施되는 制度는 具體的인 狀況에 따라 全國人民代表大會가 法律로 定한다.

第 32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은 中國領內에 있는 外國人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中國領內에 있는 外國人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을 遵守하여야 한다.

② 中華人民共和國는 政治的 理由로 避難을 要求하는 外國人에 對하여 保護받을 權利를 賦與한다.

第2章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第33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國籍을 가진 者는 모두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이다.

②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法律앞에 一律的으로 平等하다.

③ 公民은 누구나 憲法과 法律에 規定된 權利를 享有함과 同時에 憲法과 法律에 規定된 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第34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으로서 滿 18 歲에 達한 者는 民族·人種·性別·職業·家庭出身·宗教·教育程度·財産狀況·居住期間에 關係없이 누구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다만, 法律에 의하여 政治的 權利를 剝奪당한 者는 除外된다.

第35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言論·出版·集會·結社·行進·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第36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信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 어느 國家機關·社會團體·個人도 公民이 宗教를 믿거나 宗教를 믿지 못하도록 強要하지 못하며, 宗教를 믿는 公民과 宗教를 믿지 않는 公民을 差別하지 못한다.

③ 國家는 正常的인 宗教活動을 保護한다. 어떤 者도 宗教를 利用하여 社會秩序를 破壞하고 公民의 身體·健康에 害를 끼치며 國家의 教育制度를 妨害하는 活動을 하지 못한다.

④ 宗教團體와 宗教事務는 外國勢力의 支配를 받지 아니한다.

第 37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人身의 自由는 侵害받지 아니한다.

② 어떤 公民도 人民檢察院의 承認이나 決定, 또는 人民法院의 決定을 거쳐 公安機關의 執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되지 아니한다.

③ 不法拘禁이나 其他 方法에 의한 不法剝奪 또는 公民의 人身의 自由에 대한 制限 및 公民의 身體에 대한 不法搜查를 禁止한다.

第 38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人格의 尊嚴性은 侵害당하지 아니한다. 如何한 方法으로도 公民에 대하여 侮辱·誹謗 및 誣告·謀陷하는 것을 禁止한다.

第 39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住宅은 侵犯받지 아니한다. 公民의 住宅에 대한 不法搜查나 不法侵入을 禁止한다.

第 40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通信의 自由와 通信의 秘密은 法律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安全이나 刑事犯罪搜查상의 必要로 因하여 公安機關이나 檢察機關에서 法律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通信에 대한 檢查를 하는 경우 以外에는 어느 組織이나 個人도 어떠한 理由로든 公民의 通信의 自由와 通信의 秘密을 侵害하지 못한다.

第 41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어느 國家機關이나 國家公務員에 대하여도 批判하고 建議할 權利를 가지며 어느 國家機關이나 國家公務員의 違法·瀆職行爲에 대하여 關係國家機關에 請願·告訴 또는 告發을 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事實을 捏造하거나 歪曲하여 誣告·謀陷하지 못한다.

② 公民의 請願·告訴 또는 告發에 대하여 關係 國家機關은 事實을 調査하여 責任지고 處理하여야 한다. 어떤 者도 이를 抑壓하거

나 報復할 수 없다.

③ 國家機關과 國家公務員이 公民權을 侵害함으로써 損害를 받은 者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 42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勞動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② 國家는 各種 手段을 통하여 勞動就業條件을 造成하고 勞動保護를 強化하며 勞動條件을 改善하고 또한 生産을 發展시킨 基礎위에 勞動報酬를 引上하고 福祉와 待遇를 提高한다.

③ 勞動은 勞動能力을 가진 모든 公民의 榮光된 責任이다. 國營企業과 都市·農村의 集團經濟組織의 勤勞者는 國家의 主人公이라는 態度로 自身の 勞動에 臨하여야 한다. 國家는 社會主義的 勤勞競爭을 提唱하고 模範的인 勤勞者와 先進的인 活動者를 獎勵한다.

④ 國家는 就業前의 公民에 대하여 必要한 就業訓練을 實施한다.

第 43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勤勞者는 休息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勤勞者의 休息·休養施設을 擴充하고 從業員의 勞動時間과 休暇制度를 規定한다.

第 44 條 國家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事業體의 從業員과 國家機關 公務員의 停年制를 實施한다. 停年退職한 者의 生活은 國家와 社會로부터 保障을 받는다.

第 45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年老하거나 疾病에 걸리거나 勞動能力을 喪失한 경우, 國家와 社會로부터 物質的 援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公民이 이런 諸權利를 享有하는데 必要한 社會保險·社會救濟 및 醫療衛生事業을 發展시킨다.

② 國家와 社會는 傷痍軍人의 生活을 保障하고 烈士家族을 補助하며, 軍人家族을 優待한다.

③ 國家와 社會는 盲啞·聾啞와 其他 不具者에 대한 勞動·生活 및

교육을 保障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第 46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② 國家는 青年·少年·兒童이 德育·智育·體育 等 各方面에서 全面的으로 發展하도록 養成한다.

第 47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科學研究, 文學·藝術의 創作 其他 文化活動을 할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教育·科學·技術·文學·藝術 其他 文化事業에 從事하는 公民의, 人民에 有益하고 創造的인 活動을 獎勵하고 補助한다.

第 48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의 婦女는 政治·經濟·文化·社會 및 家庭生活 等의 모든 面에서 男子와 同等한 權利를 享有한다.

② 國家는 婦女의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고 男女의 同一勞動·同一報酬를 實行하며 婦女幹部를 養成·選拔한다.

第 49 條 ① 婚姻·家庭·母親·兒童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② 夫婦 雙方은 計劃出産을 實施할 義務를 진다.

③ 父母는 未成年의 子女에 대하여 養育 및 教育의 義務를 지며 成年의 子女는 父母를 扶養할 義務를 진다.

④ 婚姻의 自由를 破壞하는 것을 禁止하며 老人·婦女·兒童에 대한 虐待를 禁止한다.

第 50 條 中華人民共和國은 華僑의 正當한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며 歸國華僑와 그 眷屬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第 51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自由와 權利를 行使할 때 國家·社會·集團의 利益 및 다른 公民의 合法的인 自由와 權利를 侵害할 수 없다.

第 52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國家統一과 全國 各民族의 團結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第 53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國家機密을 嚴守하며, 公共財産을 아끼고 勞動法規를 遵守하며, 公共秩序를 지키고 社會의 公衆道德을 尊重하여야 한다.

第 54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祖國의 安全·榮譽 및 利益을 守護할 義務를 지며 祖國의 安全·榮譽 및 利益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55 條 ① 祖國을 保衛하고 侵略에 對抗하는 것은 모든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神聖한 職責이다.

② 法律에 의하여 軍에 服務하고 民兵組織에 參加하는 것은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榮光된 義務이다.

第 56 條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法律에 의하여 納稅할 義務를 진다.

第 3 章 國家機構

第 1 節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57 條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最高의 國家權力機關이다. 그 常設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다.

第 58 條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國家의 立法權을 行使한다.

第 59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는 省·自治區·直轄市 및 軍이 選出한 代表로 構成한다. 各 少數民族은 모두 適當數의 代表를 가져야 한다.

②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에서 主管한다.

③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代表定數와 代表選出方法은 選舉法으로 定한다.

第 60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任期는 1 期 5 年으로 한다.

②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任期가 滿了되기 2 個月前에 次期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를 完了하여야 한다. 만약 選舉를 實施할 수 없는 非常事態가 發生한 경우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全體委員의 3 分の 2 以上の 贊成을 얻어 選舉를 延期하고 同期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任期를 延長할 수 있다. 非常事態 終了後에는 1 年以內에 次期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를 完了하여야 한다.

第 61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會議는 每年 1 回 開催하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의하여 召集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5 分の 1 以上の 以表가 提議하면 全國人民代表大會 會議를 臨時 召集할 수 있다.

②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會議를 開催할 때 主席團(議長團)을 選出하여 會議를 主宰하게 한다.

第 62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다음 各號의 職權을 行使한다.

1. 憲法の 改正
2. 憲法の 施行에 대한 監督
3. 刑事·民事·國家機構에 관한 基本法律과 其他 基本法律의 制定 및 改正
4. 中華人民共和國 主席·副主席의 選舉
5.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의 指名에 의한 國務院總理의 人選 決定, 國務院總理의 指名에 의한 國務院의 副總理·國務委員·

- 各部 部長·各委員會 主任·審計長·秘書長의 人選 決定
6.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의 選舉,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의 指名에 의한 其他 中央軍事委員會 構成員의 人選 決定
 7. 最高人民法院 院長의 選舉
 8.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의 選舉
 9.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과 計劃執行 狀況에 관한 報告의 審查·承認
 10. 國家豫算 및 豫算執行 狀況에 관한 報告의 審查·承認
 11.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不適當한 決定에 대한 變更 또는 取消
 12. 省·自治區·直轄市 設置의 承認
 13. 特別行政區의 設置와 그 制度의 決定
 14. 戰爭 및 平和問題의 決定
 15. 最高의 國家權力機關으로서 行使하여야 할 其他 職權

第 63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다음 各號의 人員에 대한 罷免權을 가진다.

1. 中華人民共和國의 主席·副主席
2. 國務院의 總理·副總理·國務委員·各部 部長·各委員會 主任·審計長·秘書長
3. 中央軍事委員會 主席과 其他 構成員
4. 最高人民法院 院長
5.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

第 64 條 ① 憲法의 改正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나 5 分の 1 以上の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에 의하여 提議되고, 全國人民代表大會 全體代表의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通過된다.

② 法律 其他 議案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全體代表의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通過된다.

第 65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다음의 人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

副委員長 若干名

秘書長

委員 若干名

②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構成員에는 適當한 數의 多數民族 代表가 包含되어야 한다.

③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構成員을 選出하며, 또한 罷免할 權限을 가진다.

④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構成員은 國家의 行政機關·裁判機關 및 檢察機關의 職務를 兼任할 수 없다.

第 66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1 期의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의 任期와 同一하며 次期 全國人民代表大會가 常務委員會를 選出할때까지 職權을 行使한다.

② 委員長·副委員長の 連任은 1 회에 限한다.

第 67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職權을 行使한다.

1. 憲法の 解釋 및 憲法施行의 監督
2.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制定하여야 할 法律을 除外한 其他法律의 制定과 改正
3.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全國人民代表大會가 制定한 法律에 대한 一部 補完과 改正. 다만, 當該 法律의 基本原

則에 抵觸되어서는 아니된다.

4. 法律의 解釋
5.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과 國家豫算 執行過程中 必須的인 部分的 調整方案의 審査와 承認
6. 國務院·中央軍事委員會·最高人民法院 및 最高人民檢察院의 職務 監督
7. 憲法·法律과 相互 抵觸되는, 國務院이 制定한 行政法規·決定 및 命令의 取消
8. 憲法·法律·行政法規에 抵觸되는, 省·自治區·直轄市의 國家權力機關이 制定한 地方의 法規와 決定의 取消
9.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國務院 總理의 指名에 의한 各部 部長·各委員會 主任·審計長·國務院 秘書長의 人選 決定
10.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의 指名에 의한 中央軍事委員會 主席 以外的 其他 構成員의 人選 決定
11. 最高人民法院 院長의 提請에 의한 最高人民法院의 副院長·裁判員·裁判委員會 委員 및 軍事法院 院長의 任免 決定
12.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의 提請에 의한 最高人民檢察院의 副檢察長·檢察員·檢察委員會 委員 및 軍事檢察院 檢察長의 任免, 省·自治區·直轄市人民檢察院 檢察長의 任免 承認
13. 駐外國 全權代表의 任免 決定
14. 外國과 締結한 條約 및 重要協定의 批准과 廢棄 決定
15. 軍人과 外交官의 職級制度 其他 特別職級制度 規定

16. 國家의 勳章과 榮譽稱號 授與에 관한 規定과 決定

17. 特赦 決定

18.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國家가 武力侵略을 받거나 侵略에 대한 國際間的 共同防衛條約을 履行해야 할 경우의 戰爭狀態宣布의 決定

19. 全國의 總動員 또는 局部動員의 決定

20. 全國 또는 各省·自治區·直轄市の 戒嚴 決定

21. 全國人民代表大會가 賦與한 其他 職權

第 68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會務를 主宰하고,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會議를 召集한다. 副委員長과 秘書長은 委員長의 職務를 補佐한다.

② 委員長·副委員長·秘書長은 委員長會議를 構成하여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重要 日常業務를 處理한다.

第 69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第 70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民族委員會, 法律委員會, 財政經濟委員會, 教育·科學·文化·衛生委員會, 外務委員會, 華僑委員會 其他 必要한 專門委員會를 設置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各 專門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指導를 받는다.

② 各 專門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指導下에 關係議案을 檢討·審議·起草한다.

第 71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特定問題에 관한 調查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으며, 또한 調查委員會의 報告에 依據하여 相應한 決議를 할

수 있다.

② 調査委員會의 調査時 모든 關係 國家機關·社會團體 및 公民은 모두 同 委員會에 대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供할 義務를 진다.

第 72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은 法律에 定한 節次에 따라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職權의 範圍內에서 議案을 提出할 權利를 가진다.

第 73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는 全國人民代表大會 開會期間中,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은 常務委員會 開會期間中 法律에 定한 節次에 따라 國務院 또는 國務院 各部 및 各委員會에 대하여 質疑案을 提出할 權利를 가진다. 質疑를 받은 機關은 責任 지고 回答하여야 한다.

第 74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는 全國人民代表大會 主席團의 許可 없이는,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許可 없이는 逮捕되거나 刑事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第 75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諸會議 席上에서 行한 發言과 表決에 대하여는 法律의 責任을 묻지 아니한다.

第 76 條 ①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는 模範的으로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國家機密을 嚴守하며, 또한 自身이 參與한 生産·業務 및 社會活動에서 憲法과 法律의 施行에 協助한다.

②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는 原選舉單位 및 人民과 密接한 連繫를 維持하고 人民의 意見과 要求를 傾聽·反映하며, 人民에 奉仕하도록 努力한다.

第 77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는 原選舉單位의 監督을 받는다. 原選舉單位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따라 同 單位가 選出한 代表를 罷

免할 權限을 가진다.

第 78 條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組織과 業務節次는 法律로 定한다.

第 2 節 中華人民共和國 主席

第 79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主席과 副主席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選出한다.

②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 滿 45 歲에 達한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中華人民共和國 主席과 副主席으로 被選될 수 있다.

③ 中華人民共和國 主席과 副主席의 1 期の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の 任期와 同一하며 連任은 1 回에 限한다.

第 80 條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과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法律을 公布하고 國務院의 總理·副總理·國務委員·各部 部長·各委員會 主任·審計長·秘書長을 任免하며, 國家의 勳章과 榮譽稱號를 授與하고 特赦令과 戒嚴令을 布告하며, 戰爭狀態와 動員令을 宣布한다.

第 81 條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中華人民共和國을 代表하여 外國使節을 接受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海外 駐在 全權代表를 派遣 및 召還하며 外國과 締結한 條約 및 重要한 協定을 批准 및 廢棄한다.

第 82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副主席은 主席의 職務를 補佐한다.

② 中華人民共和國 副主席은 主席의 委任을 받아 主席의 一部 職權을 代行할 수 있다.

第 83 條 中華人民共和國 主席과 副主席은 次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選出된 主席과 副主席이 就任할때까지 職權을 行使한다.

第 84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主席職이 闕位된 때에는 副主席이 主席職을 繼承한다.

② 中華人民共和國 副主席職이 闕位된 때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補選한다.

③ 中華人民共和國 主席·副主席職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補選하며, 補選하기 前까지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이 臨時로 主席職을 代行한다.

第 3 節 國 務 院

第 85 條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即 中央人民政府는 最高國家權力 機關의 執行機關이며 最高의 國家行政機關이다.

第 86 條 ① 國務院은 다음의 人員으로 構成한다.

總理

副總理 若干名

國務委員 若干名

各部 部長

各委員會 主任

審計長

秘書長

② 國務院은 總理責任制를 實施한다. 各부와 各委員會는 部長·主任責任制를 實施한다.

③ 國務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第 87 條 ① 國務院의 1 期의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의 任期와 同一하다.

② 總理·副總理·國務委員의 連任은 1 回에 限한다.

第 88 條 ① 總理는 國務院의 院務를 指導한다. 副總理·國務委員은

總理의 職務를 補佐한다.

② 總理·副總理·國務委員·秘書長은 國務院 常務會議을 構成한다.

③ 總理는 國務院 常務會議와 國務院 全體會議을 召集 및 主宰한다.

第 89 條 國務院은 다음 各號의 職權을 行使한다.

1. 憲法·法律에 根據한 行政措置의 規定, 行政法規의 制定, 決定과 命令의 公布
2. 全國人民代表大會 또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對한 議案의 提出
3. 各部 및 各委員會의 任務와 職責의 規定, 各부와 各委員會 業務의 統一的인 指導 및 各부와 各委員會의 職權에 屬하지 아니하는 全國의 行政業務의 指導
4. 全國의 地方各級 國家行政機關의 業務에 對한 統一的인 指導, 中央과 省·自治區·直轄市의 國家行政機關의 權限에 對한 具體的인 區分 規定
5.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및 國家豫算의 編成과 執行
6. 經濟活動과 都市·農村建設의 指導 및 管理
7. 教育·科學·文化·衛生·體育活動 및 計劃出產業務의 指導와 管理
8. 民政·公安·司法行政 및 監察 等 業務의 指導와 管理
9. 對外事務, 外國과 締結한 條約 및 協定의 管理
10. 國防建設事業의 指導 및 管理
11. 民族事業의 指導와 管理, 少數民族의 平等한 權利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權 保障
12. 華僑의 正當한 權利·利益의 保護, 歸國華僑와 그 眷屬의 合法的인 權利·利益의 保護

13. 各部·各委員會가 公布한 不適當한 命令·指示 및 規則의 變更 또는 取消
14. 地方의 各級 國家行政機關의 不適當한 決定과 命令의 變更 또는 取消
15. 省·自治區·直轄市의 區域區分의 承認
16. 省·自治區·直轄市의 範圍內에서 一部 地區에 대한 戒嚴 決定
17. 行政機構의 編制에 대한 審査·決定, 法律의 規定에 依據한 行政要員의 任免·研修·考課 및 賞罰 實施
18.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賦與한 其他 職權

第 90 條 ① 國務院의 各部 部長·各委員會 主任은 當該 部署의 職務를 責任진다. 部務會議 또는 委員會會議·委務會議를 召集 및 主宰하며 當該 部署의 業務와 關聯된 重大問題를 討議·決定한다.

② 各部·各委員會는 法律과 國務院의 行政法規·決定·命令에 依據하여 當該 部署의 權限內에서 命令·指示 및 規則을 公布한다.

第 91 條 ① 國務院은 審計機關을 設立하여 國務院 各部署와 地方 各級政府의 財政收支, 國家의 財政金融機構와 企業·事業體의 財務收支에 대하여 審計·監督을 實施한다.

② 審計機關은 國務院 總理의 指導下에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審計監督權을 獨立하여 行使하며 其他 行政機關·社會團體 및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第 92 條 國務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院務를 報告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에는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院務를 報告한다.

第4節 中央軍事委員會

第93條 ① 中華人民共和國 中央軍事委員會는 全國의 武裝力을 指導한다.

② 中央軍事委員會는 다음의 人員으로 構成한다.

主席

副主席 若干名

委員 若干名

③ 中央軍事委員會는 主席責任制를 實施한다.

④ 中央軍事委員會의 1 期の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の 任期와 同一하다.

第94條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5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政府

第95條 ① 省·直轄市·縣·市·市管轄區·鄉·民族鄉·鎮에는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를 設立한다.

②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와 地方各級人民政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自治機關의 組織과 活動은 憲法 第3章 第5節 및 第6節에 規定된 基本原則에 따라 法律로 定한다.

第96條 ①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地方의 國家權力機關이다.

②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常務委員會를 設置한다.

第97條 ① 省·直轄市 및 區를 設置하고 있는 市의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次下級 人民代表大會에 의하여 選出된다. 縣·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市·直轄市區·鄉·民族鄉·鎮의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選舉民에 의하여 直接 選出된다.

②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의 代表定數와 代表選出方法은 法律로 定한다.

第 98 條 省·直轄市 및 區를 設置하고 있는 市의 人民代表大會의 任期는 1 期 5 年으로 한다. 縣·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市·市管轄區·鄉·民族鄉·鎮의 人民代表大會의 任期는 1 期 3 年으로 한다.

第 99 條 ①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當該 行政區域內에서의 憲法·法律·行政法規의 遵守와 執行을 保障한다. 法律에 定한 權限에 따라 決議를 議決 및 公布하며, 地方의 經濟建設·文化建設 및 公共事業建設計劃을 審査·決定한다.

②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當該 行政區域內의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豫算 및 그 執行狀況을 審査·承認한다. 또한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不適當한 決定을 變更 또는 取消할 權限을 가진다.

③ 民族鄉의 人民代表大會는 法律에 定한 權限에 따라 民族의 特徵에 適合한 具體的인 措置를 採擇할 수 있다.

第 100 條 省·直轄市의 人民代表大會 및 同 常務委員會는 憲法·法律 및 行政法規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地方의 法規를 制定·公布할 수 있으며, 이를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記錄에 保存하게 한다.

第 101 條 ①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同級 人民政府의 省長과 副省長, 市長과 副市長, 縣長과 副縣長, 區長과 副區長, 鄉長과 副鄉長, 鎮長과 副鎮長을 選出하고 또한 罷免할 權限을 가진다.

②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同級 人民法院의 院長과 同級 人民檢察院의 檢察長을 選出하고 또한 罷免할 權限을 가진다. 人民檢察院의 檢察長을 選出 또는 罷免할 때에는 반드시 上級 人民檢察院의 檢察長에게 報告하고 當該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02 條 ① 省·直轄市 및 區를 設置하고 있는 市의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原選舉單位의 監督을 받으며, 縣·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市·市管轄區·鄉·民族鄉·鎮의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選舉民의 監督을 받는다.

②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單位와 選舉民은 法律에 定한 節次에 따라 自己가 選出した 代表를 罷免할 權限을 가진다.

第 103 條 ①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主任, 副主任 若干名 및 委員 若干名으로 構成하며 同級 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會務를 報告한다.

②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는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構成員을 選出하고 또한 罷免할 權限을 가진다.

③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構成員은 國家行政機關·裁判機關 및 檢察機關의 職務를 擔任하지 못한다.

第 104 條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當該 行政區域內에서의 各 分野의 活動中 重要事項을 討議·決定한다. 또한 同級の 人民政府·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의 業務를 監督하고 同級 人民政府의 不適當한 決定과 命令을 取消하며, 次下級 人民代表大會의 不適當한 決議를 取消하고, 法律에 定한 權限에 따라 國家機關公務員의 任免을 決定한다. 또한 同級 人民代表大會 閉會 期間中에는 次上級 人民代表大會의 個別代表를 罷免·補選한다.

第 105 條 ① 地方各級人民政府는 地方의 各級國家權力機關의 執行機關이고 地方의 各級國家行政機關이다.

② 地方各級人民政府는 省長·縣長·區長·鄉長·鎮長責任制를 實施한다.

第 106 條 地方各級人民政府의 1 期의 任期는 同級 人民代表大會의 1 期의 任期와 同一하다.

第 107 條 ①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政府는 法律에 定한 權限에 따라 當該 行政區域內의 經濟·教育·科學·文化·衛生·體育事業, 都市·農村의 建設事業 및 財政·民政·公安·民族事務·司法行政·監察·計劃出產 等の 行政業務를 管理하고 決定과 命令을 公布하며 行政要員의 任免·研修·考課·賞罰을 實施한다.

② 鄉·民族鄉·鎮의 人民政府는 同級 人民代表大會의 決議와 上級 國家行政機關의 決定·命令을 執行하고 當該 行政區域內의 行政業務를 管理한다.

③ 省·直轄市의 人民政府는 鄉·民族鄉·鎮의 設置 및 區域區分을 決定한다.

第 108 條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政府는 傘下 各業務部署 및 下級人民政府의 業務를 指導하고, 傘下 業務部署 및 下級 人民政府의 不適當한 決定을 變更 또는 取消할 權限을 가진다.

第 109 條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政府는 審計機關을 設置한다.
地方의 各級 審計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獨立하여 審計監督權을 行使하고 同級 人民政府와 次上級 審計機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 110 條 ① 地方各級人民政府는 同級 人民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縣級 以上の 地方各級人民政府는

同級 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中,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② 地方各級人民政府는 次上級 國家行政機關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全國의 地方各級人民政府는 모두 國務院의 統一的인 指導下에 있는 國家行政機關으로서 國務院에 服從한다.

第 111 條 ① 都市와 農村은 住民의 居住地域에 따라 住民委員會 또는 村民委員會를 設置하여 末端의 大衆自治組織으로 한다. 住民委員會·村民委員會의 主任·副主任 및 委員은 住民이 選出한다. 住民委員會·村民委員會와 末端政權과의 相互關係는 法律로 定한다.

② 住民委員會와 村民委員會는 人民調停·治安保衛·公共衛生委員會 등을 設置하여 當該 居住地의 公共事務와 公益事業을 處理하며, 民間紛爭을 調停하고 社會治安의 維持에 協助케 하며, 人民政府에 대하여 大衆의 意見과 要求를 反映시키고 建議를 提出한다.

第 6 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

第 112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이다.

第 113 條 ①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人民代表大會는 地區自治를 實施하는 民族의 代表 外에도 當該 行政區域內에 居住하는 其他 民族의 適當數의 代表가 包含되어야 한다.

②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主任 또는 副主任은 區域自治를 實施하는 民族의 公民이 擔任하여야 한다.

第 114 條 自治區 主席·自治州 州長·自治縣 縣長은 區域自治를 實施하는 民族의 公民이 擔任한다.

第 115 條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自治機關은 憲法 第 3 章 第 5 節에 規定된 地方國家機關의 職權을 行使함과 同時에 憲法·民族 區域自治法 其他 法律에 定한 權限에 의하여 自治權을 行使하며, 當該 地方의 實際狀況에 따라 國家의 法律·政策을 貫徹·執行한다.

第 116 條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는 現地 民族의 政治·經濟·文化의 特性에 따라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를 制定할 權限을 가진다. 自治區의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은 後 效力을 發生한다. 自治州·自治縣의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는 省 또는 自治區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은 後 效力을 發生하며,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記錄에 保存하게 한다.

第 117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地方財政을 管理할 自治權을 가진다. 國家財政體制에 의하여 民族自治地方에 歸屬되는 財政收入에 대하여는 모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自主적으로 配定, 使用한다.

第 118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計劃의 指導下에 自主적으로 地方의 經濟建設事業을 計劃하고 管理한다.

② 國家는 民族自治地方에서의 資源의 開發 및 企業의 建設을 行함에 있어서 民族自治地方의 利益을 配慮하여야 한다.

第 119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自主적으로 當該 地方의 教

育·科學·文化·衛生·體育事業을 管理하고, 民族의 文化遺産을 保護·管理하며 民族文化를 發展·繁榮시킨다.

第 120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軍事制度和 現地의 實際的인 必要에 따라 國務院의 承認을 얻어 當該 地方의 社會治安을 維持하기 위한 公安部隊를 組織할 수 있다.

第 121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職務執行時 當該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現地의 民族에 通用되고 있는 一種 또는 數種의 言語·文字를 使用한다.

第 122 條 ① 國家는 財政·物資·技術 等 各分野에서 各 少數民族이 經濟建設 및 文化建設事業을 加速·發展시키는 것을 支援한다.
② 國家는 民族自治地方이 現地의 各 民族中에서 各級 幹部와 여러 分野의 專門人材 및 技術勞動者를 大量으로 養成하는 것을 支援한다.

第 7 節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

第 123 條 中華人民共和國 人民法院은 國家의 裁判機關이다.

第 124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은 最高人民法院·地方各級人民法院 및 軍事法院 等의 特別人民法院을 設立한다.

② 最高人民法院 院長의 1 期の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の 任期와 同一하며 連任은 1 회에 限한다.

③ 人民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第 125 條 人民法院은 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法律에 定한 特別한 狀況을 除外하고는 一律的으로 公開하여 進行한다. 被告人은 辯護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 126 條 人民法院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權을 獨立하여 行使하며, 行政機關·社會團體 및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第 127 條 ① 最高人民法院은 最高裁判機關이다.

② 最高人民法院은 地方各級人民法院과 特別人民法院의 裁判을 監督하고 上級 人民法院은 下級 人民法院의 裁判을 監督한다.

第 128 條 最高人民法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地方各級人民法院은 그를 組織한 國家權力機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 129 條 中華人民共和國 人民檢察院은 國家의 法律監督機關이다.

第 130 條 ① 中華人民共和國은 最高人民檢察院·地方各級檢察院 및 軍事檢察院 等の 特別人民檢察院을 設立한다.

②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의 1 期의 任期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1 期의 任期와 同一하며 連任은 1 회에 限한다.

③ 人民檢察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第 131 條 人民檢察院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檢察權을 獨立하여 行使하며, 行政機關·社會團體 및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第 132 條 ① 最高人民檢察院은 最高檢察機關이다.

② 最高人民檢察院은 地方各級人民檢察院과 特別人民檢察院의 業務를 指導하고, 上級 人民檢察院은 下級 人民檢察院의 業務를 指導한다.

第 133 條 最高人民檢察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地方各級人民檢察院은 그를 組織한 國家權力機關 및 上級 人民檢察院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 134 條 ① 各 民族의 公民은 모두 當該 民族의 言語·文字를 使用하여 訴訟을 提起할 權利를 가진다. 人民法院과 人民檢察院은

現地에서 通用되지 아니하는 言語·文字를 使用하는 訴訟關係人에 대하여 通譯 및 翻譯을 해 주어야 한다.

② 少數民族의 集居地區 또는 多民族의 共同居住地區에서는 現地에서 通用되는 言語로 審理를 進行하여야 한다. 起訴狀·判決文·布告 其他 文書는 實際的 必要에 의하여 現地에서 通用되는 一種 또는 數種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第 135 條 人民法院·人民檢察院 및 公安機關은 刑事事件을 處理함에 있어서 責任을 分擔하고 相互 協力하며 相互 制約함으로써 法律의 正確하고 有效한 執行을 保障하여야 한다.

第 4 章 國旗·國章·首都

第 136 條 中華人民共和國의 國旗는 五星紅旗이다.

第 137 條 中華人民共和國의 國章은 中央에 五星이 비추어 주는 天安門이 있으며 周圍에는 穀物의 이삭과 톱니바퀴가 있다.

第 138 條 中華人民共和國의 首都는 北京이다.

의 全過程에서, 특히 一部 國家에서 社會主義制度의 樹立과 發展
 獲得한 可能性이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 約 半世紀에 걸친 世界史
 며, 먼저 帝國主義 支配의 脆弱한 部分에서 社會主義革命의 勝利를
 放鬥爭은 必然的으로 全世界 被壓迫民族의 解放鬥爭과 聯合한 것이
 主義는 이미 帝國主義의 段階로 發展하였고 「프롤레타리아」의 解
 產主義社會로 發展한다. 20世紀에 들어선 以後 「레닌」은 “資本
 化의 巨大한 進歩를 통하여 窮極的으로는 必要에 따라 分配받는 共
 된다. 또한 社會主義社會는 生産力의 巨大한 發展과 思想·政治·文
 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勞動에 따라 分配받는 社會主義社會로 改造
 主義社會는 必然的으로 生産手段을 公有하고 擄取를 消滅시켜 各自
 르 조아」獨裁는 必然的으로 「프롤레타리아」獨裁로 代替되며, 資本
 그 理論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革命 鬥爭의 勝利를 통하여 「부

的 社會主義의 理論을 創造하였다.

史的 唯物論을 運用하여 資本主義社會의 發展法則을 分析하고 科學
 動指針으로 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辯證法的 唯物論과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二行
 다.

中國共產黨은 中國勞動者階級의 先鋒隊이며, 中國의 各民族 人民
 의 利益을 反映하는 充實한 代表이며, 中國社會主義事業의 指導的
 中核이다. 黨의 最終目的은 共產主義의 社會制度를 實現하는 데 이

總 綱

(1982年9月6日,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採擇)

中國共產黨規約

은 科學的 社會主義의 理論이 正確함을 立證하였다.

社會主義制度의 發展과 充實은 長期에 걸친 歷史的 過程이다. 根本的으로 社會主義制度는 資本主義制度 그 自體로서는 克服할 수 없는 固有한 矛盾을 除去하였고 資本主義制度와는 比較가 되지 않는 優位性을 가지고 있다. 社會主義에서는 人民이 眞正한 國家의 主人公이 되어 漸次 擄取制度와 生産手段의 私有制度에 의하여 形成된 舊思想·舊慣習으로부터 脫皮하고 共產主義的 自覺을 鞏固히 하며 共通의 思想, 共通의 道德 및 共通의 規律을 形成한다. 社會主義는 人民의 積極性과 創造性을 充分히 發揮시켜 計劃的으로, 均衡있게, 빠른 速度로 社會的 生産力을 發展시키며 社會 構成員의 量로 增大되는 物質·文化生活에 대한 需要를 充足시킨다. 社會主義事業은 發展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將次 各國의 人民이 自意로 選擇하고 自國의 特徵에 合致되는 길을 통하여 漸次 全世界에서 勝利를 獲得한 것이다.

毛澤東同志를 主要한 代表로 하는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 原理를 中國革命의 具體的 實踐에 結合시켜 毛澤東思想을 創造하였다.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에서 運用·發展시킨 것이고 實踐을 통하여 立證된, 中國의 革命과 建設에 대한 正確한 理論의 原則과 經驗의 總括이며, 中國共產黨의 集團의 智慧의 結晶이다.

中國共產黨은 全國의 各民族 人民을 指導하여 帝國主義·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에 反對하는 長期의 革命鬭爭을 통하여 新民主主義 革命의 勝利를 獲得하였고, 人民民主主義獨裁를 實行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을 建設하였다. 또한 建國 以後에도 社會主義的 改造를 順調하게 推進하고 新民主主義에서 社會主義으로의 移行을 達成하여 社會主義制度를 確立하였고 社會主義의 經濟·政治·文化를 發展시켰다.

階級으로서의 搾取階級이 消滅된 以後 우리나라의 社會에 存在했던 矛盾의 大部分은 階級鬭爭의 性格을 띠지 않게 되어 階級鬭爭은 이미 主要한 矛盾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國內的 要因과 國際的 影響으로 因하여 階級鬭爭은 여전히 一定한 範圍에서 長期에 걸쳐 存在할 것이며 어떤 條件下에서는 激化될 可能性마저 있다. 우리나라 社會의 主要한 矛盾은 날로 增大되는 人民의 物質·文化에 대한 需要와 落後된 社會的 生産間의 矛盾이다. 其他 矛盾은 이 主要한 矛盾을 解決함과 同時에 解決되어야 한다. 敵我的 矛盾과 人民內部的 矛盾이라는 性格이 다른 두 種類의 矛盾을 嚴格히 區分하고 正確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現段階에 있어서 中國共產黨의 總任務는 全國의 各民族 人民을 結集시키고 自力更生·刻苦奮闘하여, 工業·農業·國防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漸次 實現하고 우리나라를 高度의 文明과 高度의 民主를 갖춘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는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活動의 重點은 全國의 各民族 人民을 指導하여 社會主義現代化의 經濟建設을 推進하는 데 있다. 社會的 生産力을 크게 發展시키고 또한 生産力의 現實의 水準과 發展의 要求에 따라 社會主義의 生産關係를 漸次 完全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生産의 發展과 社會的 富의 增大를 基礎로 하여 都市·農村人民의 物質·文化面의 生活水準을 漸次 向上시켜야 한다.

中國共產黨은 人民을 指導하여 最高의 物質文明을 建設함과 同時에 高度의 社會主義的 精神文明을 建設한다. 教育·科學 및 文化事業을 積極 發展시키고 共產主義思想으로 黨員과 人民大衆을 教育하며 腐敗한 「부르조아」思想과 殘存하는 封建主義思想, 其他 非「프롤레타리아」思想을 排除, 克服하여 우리나라 人民이 理想·道德·

敎養·規律이 있는 人民이 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中國共產黨은 人民을 指導하여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發展시키고 社會主義法制를 完備하며 人民民主主義獨裁를 鞏固히 한다. 國政과 社會事務를 管理하고 經濟 및 文化事業을 管理하는 人民의 權利를 確實히 保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社會主義制度를 破壞하려는 敵對分子와 社會와 安全에 重大한 危害를 加하는 者를 斷乎히 打倒하여야 한다. 人民解放軍의 建設을 強化하여 國防을 鞏固히 하도록 努力하고, 항상 侵入하는 敵을 迎擊, 殲滅할 準備를 갖추어야 한다.

中國共產黨은 國內 各民族의 平等·團結 및 相互援助의 關係를 維持·發展시키고 民族區域自治政策의 實行을 堅持하며, 各 少數民族地區의 經濟·文化의 發展을 支援하고 少數民族 幹部를 積極 育成, 選拔하여야 한다.

中國共產黨은 全國 各民族의 勞動者·農民·知識人과 團結하고 民主諸黨派·無黨派의 民主人士 및 各民族의 愛國的 勢力과 團結하여 모든 社會主義 勤勞者, 社會主義를 支持하는 愛國者, 祖國統一을 支持하는 愛國者로 構成된 가장 廣範한 愛國統一戰線을 加一層 發進시키고 이를 擴大한다. 臺灣同胞, 「홍콩」·「마카오」同胞 및 海外華僑同胞를 包含하는 全國人民과 함께 祖國統一의 大業을 達成하여야 한다.

國際關係에 대한 中國共產黨의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堅持하고,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階級·被壓迫民族·被壓迫人民 및 平和를 愛好하고 正義를 支持하는 모든 組織·人士와의 團結을 堅持하여 共同으로 帝國主義·霸權主義·植民地主義에 反對하며, 世界平和를 守護하고 人類의 進歩를 促進한다. 主權·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相互內政不干涉, 互惠平等,

平和共存의 5個原則을 基礎로 하여 우리나라와 世界各國과의 關係를 發展시킨다. 「마르크스」主義의 基礎위에 自主獨立, 完全平等, 相互尊重, 內部事業(內政)의 相互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우리黨과 各國의 共產黨 其他 勞動者階級政黨과의 關係를 發展시킨다.

中國共產黨이 全國의 各民族 人民을 指導하여 社會主義現代化의 壯大한 目標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黨의 建設을 強化하고 黨의 優秀한 傳統을 發揚하며 黨의 戰鬥力을 向上시키고 다음 3個項의 基本的 要求를 確固히 實現하여야 한다.

첫째, 思想 및 政治面에서 高度의 團結을 할 것. 中國共產黨은 共產主義의 實現을 最高 綱領으로 하여 모든 共產黨員은 반드시 이를 위하여 終身 奮闘하여야 한다. 現段階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길을 堅持하고 人民民主主義獨裁를 堅持하며, 黨의 指導를 堅持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毛澤東思想을 堅持하며, 힘을 集中시켜 社會主義現代化建設을 進行하는 것은 全黨의 團結·統一의 政治的 基礎이다. 黨의 思想路線은 어떠한 것도 實際에서 出發하고 理論과 實際를 結合시키며, 實事求是의 態度를 취하고 實踐中에 眞理를 檢證하여 眞理를 發展시키는 것이다. 全黨은 반드시 이러한 思想路線에 依據하여 歷史的 經驗을 科學的으로 總括하고 現實의 狀況을 調査·國際關係에서 提起된 새로운 問題를 解決하고 一切의 『左』와 『右』의 잘못된 傾向에 反對하여야 한다.

둘째, 誠心誠意껏 人民에 奉仕할 것. 黨은 勞動者階級과 가장 廣範한 人民大衆의 利益外에는 自身의 特殊한 利益이 없다. 黨의 綱領과 政策은 곧 勞動者階級과 가장 廣範한 人民大衆의 根本的 利益을 科學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黨은 大衆을 指導하여 共產主義의 理想을 實現하기 위하여 奮闘하는 全過程에서 始終 大衆과 同苦同樂하고

가장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며, 어느 黨員도 大衆에서 離脫하거나 大衆의 머리 위에 君臨하는 것을 許容하지 아니 한다. 黨은 共產主義思想으로 大衆을 教育시키는 것을 堅持함과 同時に 自己의 活動에 있어서 大衆路線을 實行하며 어떠한 것도 大衆을 위하여, 大衆에 依據하여, 黨의 正確한 主張이 大衆의 自覺的인 行動으로 옮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 民主集中制를 堅持할 것. 黨內에 民主를 充分히 發揚시키고 民主的 基礎위에 高度의 集中을 實行하며, 組織性和 規律性を 強化하고 全黨의 行動一致를 保障하며 黨의 決定이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貫徹, 實行되도록 保障한다. 黨은 自己의 政治生活中 批判과 自我批判을 正確하게 展開하고 原則的인 問題에 있어서 思想鬭爭을 行하며, 眞理를 堅持하고 過誤를 是正한다. 黨의 規律앞에서는 누구나 平等하다는 原則을 實行하고 規律에 違反한 黨員에 대하여는 應分の 批判, 또는 處分을 加하며, 黨에 反對하고 黨에 危害를 加하는 者는 반드시 黨에서 一掃하여야 한다.

黨의 指導는 主로 政治·思想 및 組織面에서의 指導이다. 黨은 반드시 正確한 路線·方針·政策을 制定·實行하고 黨의 組織活動과 宣傳教育活動을 完遂하며 全黨員이 모든 活動과 社會活動에 있어서 先鋒이 되어 模範的인 役割을 發揮하도록 하여야 한다. 黨은 반드시 憲法과 法律의 範圍內에서 活動하여야 한다. 黨은 반드시 國家의 立法·司法·行政機關, 經濟·文化組織 및 人民團體가 積極的이고 主動的이며, 獨自的으로 責任을 지고, 一致 協力하여 活動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黨은 반드시 工會(註: 勞動組合)·共產主義青年團·婦女聯合會 등의 大衆組織에 대한 指導를 強化하여 그들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시켜야 한다. 共產黨員은 全國 人口의 少數에 不過하

나 窮極的으로 共產主義를 實現하기까지, 반드시 黨外의 大衆과 緊密히 協力하고 또한 社會主義祖國이 날로 繁榮하고 強大하여 지도를 促進하여야 한다.

第1章 黨 員

第1條 滿18歲에 達한 中國의 勞動者·農民·軍人·知識人 其他 革命分子로서 黨의 綱領과 規約을 認定하고 黨의 1個 組織에 參加하며, 그 組織에서 積極的인 活動을 하며 黨의 決議를 實行하고, 期限내로 黨費를 納付할 것을 希望하는 者는 中國共產黨에의 加入을 申請할 수 있다.

第2條 ① 中國共產黨의 黨員은 中國勞動者階級の 共產主義的 自覺을 가진 先鋒戰士이다.

② 中國共產黨의 黨員은 반드시 全心全力으로 人民에 奉仕하고 個人의 모든 것을 犧牲하는 것을 哀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共產主義의 實現을 위하여 終身 奮闘하여야 한다.

③ 中國共產黨의 黨員은 永遠히 勤勞人民의 平凡한 一員이다. 모든 共產黨員은 制度和 政策에 規定된 範圍에서 個人의 利益과 職務上의 權限外에 어떠한 私的 利益과 特權도 追求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條 黨員은 다음의 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1. 眞摯하게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學習하고 黨의 基本知識 및 黨의 路線·方針·政策과 決議를 學習하며 科學·文化 및 業務를 學習한다.
2. 어디까지나 黨과 人民의 利益을 最高에 두어 個人의 利益을 黨과 人民의 利益에 服從시킨다는 原則을 堅持하고, 남보다

먼저 고생하고 남보다 늦게 즐거움을 보며, 自己를 抑制하여 公에 奉仕하며, 絶對로 公을 憑藉하여 私腹을 채우고 公을 害치면서 私利를 圖謀하지 아니한다.

3. 百折不屈 黨의 決定을 實行하고 組織의 配置에 服從하며 積極的으로 黨의 任務를 完遂하고 自覺을 가지고 黨의 規律과 國家의 法律을 遵守하며, 黨과 國家의 機密을 嚴守하고, 黨과 國家의 利益을 確固히 保護한다.
4. 黨의 團結과 統一을 守護하고 派閥性에 斷乎히 反對하며, 모든 分派組織과 小集團의 活動에 反對하고 겉으로는 服從하면서도 속으로는 服從하지 아니하는 兩面的인 行爲와 모든 陰謀·僞計에 反對한다.
5. 黨에 대하여 忠誠·誠實하고 言行을 一致하며, 自身의 政治觀點을 隱蔽하거나 欺瞞하지 아니하고 事實의 真相을 歪曲하지 아니한다. 또한 批判과 自我批判을 確實하게 展開하고 活動中の 缺點과 過誤를 勇敢하게 摘發·是正하며, 好人·好事를 支持하고 惡人·惡事에 反對한다.
6. 大衆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大衆에 黨의 主張을 宣傳하며, 일이 생긴 때에는 大衆과 相談하고 大衆의 意見과 要求를 虛心坦懷하게 聽取함과 同時에 이를 遲滯없이 黨에 反映시킨다. 大衆이 自覺을 높일 수 있도록 協助하고 大衆의 正當한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7. 生産·活動·學習 및 社會生活 가운데에서 先鋒으로서의 模範的인 役割을 하고 率先하여 社會秩序를 維持·保護하며, 社會主義의 새로운 氣風을 發揚하고 共產主義의 道德을 提唱한다.

8. 祖國과 人民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어떠한 困難과 危險에 直面하여서도 率先하여 앞장서서 勇敢하게 鬪爭하고, 苦難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는 精神을 發揚한다.

第 4 條 ① 黨員은 다음의 權利를 享有한다.

1. 黨의 關係會議에 參加하고 黨의 關係文書를 閱讀하며 黨의 教育和 訓練을 받는다.
2. 黨의 會議 또는 黨의 新聞·雜誌를 통하여 黨의 政策問題에 대한 討議에 參加한다.
3. 黨의 活動에 대하여 建議 및 提案을 한다.
4. 黨의 어떠한 組織과 어떠한 黨員에 대하여도 黨의 會議에서 根據있는 批判을 하고, 黨의 어떠한 組織과 어떠한 黨員의 法律·規律에 違反한 事實에 대하여도 責任지고 黨에 摘發·告發하며, 黨에 대하여 法律·規律에 違反한 黨員의 處分을 要求하고, 職務에 不適切한 幹部의 罷免 또는 更迭을 要求한다.
5. 表決權과 選舉權을 行使하며 被選舉權을 가진다.
6. 黨組織이 黨員에 대한 規律處分을 討議·決定하거나 評定할 경우 本人은 參席하여 辯明할 權利를 가지며, 其他의 黨員은 그를 위하여 證言 및 辯護할 權利를 가진다.
7. 黨의 決議와 政策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 그 決議와 政策을 確固히 實行한다는 前提下에 自己意見의 留保를 聲明할 수 있으며 또한 黨의 上級組織 내지 黨中央에까지 이를 提出할 수 있다.
8. 黨의 上級組織 내지 黨中央에까지 要求·訴願 및 告訴를

提出하며 또한 關係組織에 대하여 責任 있는 回答을 要求한다.

② 黨의 어떠한 段階의 組織 내지 中央에도 모든 黨員의 上記한 權利를 剝奪할 權限은 없다.

第 5 條 ① 黨員을 擴大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黨支部를 통하여 個人別로 吸收한다는 原則을 堅持한다. 어떠한 方式으로도 黨員의 條件을 具備하지 아니한 者를 黨內에 끌어들이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黨員의 條件을 具備한 者의 入黨을 拒否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入黨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入黨志願書를 記入하고 正式黨員 2 名의 推薦을 받아 黨支部大會에서의 可決과 上級 黨組織의 承認을 거쳐야 하며 또한 豫備期間의 查察을 통하여 비로소 正式黨員이 될 수 있다.

③ 推薦者는 申請者의 思想·品性 및 經歷을 眞摯하게 把握하고, 申請者에게 黨의 綱領과 規約을 解說하고 黨員의 條件, 義務 및 權利를 說明하며 또한 黨組織에 대하여 責任 있는 報告를 하여야 한다.

④ 黨의 支部委員會는 入黨申請者에 대하여 黨內외의 關係 있는 大衆의 意見을 注意깊게 綜合하고 嚴格한 審査를 하여 適格을 認定한 後에 支部大會의 討議에 부쳐야 한다.

⑤ 上級 黨組織은 申請者의 入黨을 承認하기 前에 擔當者를 指定하여 本人과 面談시키고 狀況을 加一層 把握함과 同時에 入黨申請者의 黨에 대한 認識을 높이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⑥ 特殊한 狀況下에서는 黨中央과 省·自治區·直轄市 委員會는 黨員을 直接 吸收할 權限을 가진다.

第 6 條 豫備黨員은 반드시 黨旗를 向하여 入黨宣誓를 하여야 한다.

宣誓는 다음과 같다. “本人은 中國共產黨에 加入할 것을 志願하

며 黨의 綱領을 擁護하고 黨規約을 遵守하며, 黨員의 義務를 履行하고 黨의 決定을 實行하며, 黨의 規律을 嚴守하고 黨의 機密을 지키며, 黨에 忠誠하고 積極的으로 活動하며, 共產主義를 위하여 終身토록 奮闘하고 언제라도 黨과 人民을 위하여 모든 것을 犧牲할 用意가 있으며 永遠히 黨을 背反하지 않을 것을 宣誓합니다.”

第7條 ① 豫備黨員의 豫備期間은 1年으로 한다. 黨組織은 豫備黨員에 대하여 眞摯하게 教育和 查察을 하여야 한다.

② 豫備黨員의 義務는 正式黨員과 同一하다. 豫備黨員의 權利는 表決權 및 選舉權·被選舉權이 없는 것 外에는 正式黨員과 同一하다.

③ 豫備黨員의 豫備期間이 滿了되면 黨支部는 그가 正式黨員이 될 資格이 있는가의 與否를 遲滯없이 討議하여야 한다. 黨員의 義務를 眞摯하게 履行하고 黨員의 條件을 具備한 者에 대하여는 規定된 時期에 正式黨員으로 하여야 한다. 繼續하여 查察하고 教育할 必要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豫備期間을 延長할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은 1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黨員의 義務를 履行하지 못하고 黨員의 條件을 具備하지 못한 것이 確實한 者에 대하여는 豫備黨員의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豫備黨員에서 正式黨員이 될 경우 또는 豫備期間을 延長할 경우 또는 豫備黨員의 資格을 取消할 경우에는 모두 黨支部에서 討議, 可決하고 上級 黨組織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豫備黨員의 豫備期間은 支部大會가 豫備黨員이 된 것을 可決한 날로 부터 起算한다. 黨員의 黨歷은 豫備期間이 滿了되어 正式黨員이 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8條 모든 黨員은 職務의 高下를 莫論하고 반드시 黨의 1個 支

部, 1個의 班 또는 其他 特定組織에 編入되어 黨의 組織生活에 參加하며 黨內·黨外 大衆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黨의 組織生活에 參加하지 아니하고 黨內·黨外 大衆의 監督을 받지 아니하는 特殊 黨員의 存在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第 9 條 ① 黨員은 脫黨의 自由를 가진다. 黨員이 脫黨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支部大會에서 討議에 부친 後 除籍함과 同時에 上級 黨組織에 報告하여 記錄에 保存한다.

② 黨員으로서 革命의 意志가 不足하고 黨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며, 黨員의 條件에 合致되지 아니하고 數次의 教育을 통하여도 變化가 없는 者에 대하여는 脫黨을 勸告하여야 한다. 黨員에 대한 脫黨의 勸告는 支部大會에서 討議, 決定함과 同時에 上級 黨組織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만약 脫黨勸告를 받은 黨員이 끝까지 脫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支部大會의 討議에 부쳐 期限을 定하여 過誤를 是正케 할 것인가 또는 除籍을 宣言할 것인가를 決定함과 同時에 上級 黨組織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黨員으로서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 以上 繼續하여 黨의 組織生活에 參加하지 아니하고 또한 黨費를 納付하지 아니하며, 또는 黨에서 賦與한 任務를 行하지 아니하는 者는 黨에서 自動적으로 離脫한 것으로 看做한다. 支部大會는 그러한 黨員의 除籍을 決定함과 同時에 上級 黨組織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章 黨의 組織制度

第10條 黨은 黨의 綱領과 規約에 根據하고 民主集中制에 의하여 組織된 統一體이다. 黨은 高度의 民主的 基礎위에서 高度의 集中을 實行한다. 黨의 民主集中制의 基本原則은 다음과 같다.

1. 黨員 個人은 黨의 組織에 服從하고,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組織은 上級組織에 服從하고, 全黨의 모든 組織과 黨員은 黨의 全國代表大會와 中央委員會에 服從한다.
2. 黨의 各級 指導機關은 그가 派遣한 代表機關 및 黨外組織에 있어서의 黨組(註: 黨「그룹」)를 除外하고는 모두 選舉에 의하여 構成된다.
3. 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의 全國代表大會와 그에 의하여 選出된 中央委員會이다. 黨의 地方各級指導機關은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와 그에 의하여 選出된 委員會이다. 黨의 各級委員會는 同級代表大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한 活動을 報告한다.
4. 黨의 上級組織은 항상 下級組織과 黨員大衆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하고 그들이 提出한 問題를 遲滯없이 解決하여야 한다. 黨의 下級組織은 上級組織에 指示를 求하고 그 活動을 報告하여야 하며 또한 獨自적으로 責任지고 職權範圍內的 問題를 解決하여야 한다. 上級組織과 下級組織은 相互情報를 交換하고 支持하며 監督하여야 한다.
5. 黨의 各級委員會는 集團指導와 個人分擔責任制를 結合한 制度를 實行한다. 重大問題는 모두 黨委員會에서의 民主的 討議를 거쳐 決定하여야 한다.

6. 黨은 어떠한 形態의 個人崇拜도 禁止한다. 黨指導者의 活動이 黨과 人民의 監督下에 行하여지도록 保障하여야 하며, 또한 黨과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모든 指導者의 威信을 維持하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第 11 條 ① 黨의 各級代表大會의 代表와 委員會의 選出은 選舉人의 意志를 具現하는 것이어야 한다. 選舉는 無記名投票의 方式을 採擇한다. 候補者名簿는 黨組織과 選舉人에 의한 充分한 準備와 討議를 거쳐야 한다. 豫備選舉를 거쳐 候補者名簿를 確定한 後 正式選舉를 實施할 수 있다. 또한 豫備選舉를 거치지 아니하고 候補者를 被選者보다 많게하는 方法으로 選舉를 實施할 수도 있다. 選舉人은 候補者의 狀況을 알 權利와 候補者의 更迭을 要求할 權利를 가지며, 어느 候補者도 選出하지 아니하거나 別途로 다른 者를 選出할 權利도 가진다. 어느 組織과 個人도 如何한 方式에 의하여 選舉人에게 特定한 者를 選出하거나 選出하지 아니하도록 強制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의 選舉에서 만약 黨規約에 違反하는 狀況이 일어날 경우, 次上級 黨委員會는 調査·確認한 後 選舉의 無效와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取하는 決定을 내림과 同時에 次上級 黨委員會에 報告하여 再審査와 承認을 받은 後 正式으로 그 執行을 宣言한다.

第 12 條 黨의 縣級以上の 委員會는 必要할 경우 代表會議를 召集하여 即時 解決하여야 할 重大問題를 討議, 決定할 수 있다. 代表大會 代表의 定數와 그 選出方法은 代表大會를 召集한 委員會가 決定한다.

第 13 條 ① 黨組織의 新設 또는 既存 黨組織의 廢止는 반드시 上級

黨組織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② 黨의 縣級 및 縣級以上の 委員會는 代表機關을 派遣할 수 있다.

③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 上級 黨組織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 下級 黨組織의 責任者를 轉勤시키거나 派遣할 수 있다.

第 14 條 黨의 各級指導機關은 下級組織과 關聯된 重要問題에 대하여 決定을 할 경우 一般的인 狀況下에서는 下級組織에 意見을 求하여야 하며, 下級組織의 正常的인 職權行使를 保障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下級組織이 處理하여야 할 問題에 대하여는 特別한 狀況이 없는 限, 上級 指導機關은 이에 干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5 條 ① 全國에 關係되는 重大한 政策問題에 대하여는 黨中央만이 決定할 權限을 가지며, 各部署·各地方의 黨組織은 中央에 대하여 建議를 提出할 수 있으나 任意대로 決定을 내리거나 黨外에 主張을 發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黨의 下級組織은 반드시 上級組織의 決定을 確固히 實行하여야 한다. 下級組織은 上級組織의 決定이 當該 地區와 當該 實情에 合致되지 아니한다고 認定할 경우 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 만약 上級組織이 原來의 決定을 堅持할 경우, 下級組織은 반드시 實行하여야 하고 公開發表的으로 異議를 發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시 次 上級 黨組織에 報告할 權利를 가진다.

③ 黨의 各級組織의 新聞·雜誌 其他의 宣傳手般은 반드시 黨의 路線·方針·政策과 決議를 宣傳하여야 한다.

第 16 條 ① 黨組織은 問題를 討議·決定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少數가 多數에 服從한다는 原則을 實行하여야 한다. 少數者의 異議에 대하여는 眞摯하게 考慮하여야 한다. 만약 重要問題에 대하여

論爭이 일어나고 贊反者의 數가 비슷한 경우에는 緊急한 狀況下에서 多數의 意見에 따라 實行하여야 하는 때 外에는 決定을 暫時 留保하고 加一層 調査, 研究하고 意見을 交換하여 다음에 다시 討議하여야 한다. 만약 여전히 決定을 내릴수 없을 경우에는 論爭의 狀況을 上級組織에 報告하고 裁決을 要請하여야 한다.

② 黨員 個人이 黨組織을 代表하여 發表한 主張이 黨이 이미 내린 決定의 範圍를 超越할 경우에는 所屬 黨組織이 이를 討議에 부쳐 決定하거나 上級 黨組織에 指示를 求하여야 한다. 어느 黨員도 職務의 高下를 莫論하고 單獨으로 重大問題를 決定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緊急한 狀況下에서 單獨으로 決定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事後에 迅速히 黨組織에 報告하여야 한다. 어느 指導者일지라도 個人이 獨斷專行하거나 個人을 組織의 위에 君臨시키는 것은 許容하지 아니한다.

第 17 條 黨의 中央·地方 및 基層(註: 末端) 組織은 반드시 黨의 建設을 重視하고 黨의 宣傳活動·教育活動·組織活動·規律檢査活動·大衆活動·統一戰線活動 等に 대하여 항상 討議, 點檢하여야 하며 黨內·黨外의 思想·政治狀況의 檢討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第 3 章 黨의 中央組織

第 18 條 ① 黨의 全國代表大會는 5 年마다 1 回 開催하고 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中央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3 分の 1 以上の 省級組織의 要求가 있으면 全國代表大會를 早期 開催할 수 있다. 非常의 경우가 아니면 開催를 延期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全國代表大會 代表의 定數와 그 選出方法은 中央委員會가 決定

한다.

第 19 條 黨의 全國代表大會의 職權은 다음과 같다.

1. 中央委員會의 報告를 聽取, 審査한다.
2. 中央顧問委員會·中央規律檢査委員會의 報告를 聽取, 審査한다.
3. 黨의 重大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4. 黨規約을 改正한다.
5. 中央委員會를 選出한다.
6. 中央顧問委員會와 中央規律檢査委員會를 選出한다.

第 20 條 ① 黨의 中央委員會의 任期는 1 期 5 年으로 한다. 全國代表大會가 早期 또는 延期되어 開催될 경우 中央委員會의 任期는 그 에 따라 變更된다. 中央委員會의 委員과 委員候補는 5 年 以上の 黨歷을 가져야 한다. 中央委員會의 委員과 委員候補의 定數는 全國代表大會가 決定한다. 中央委員會의 委員에 缺員이 생길 때에는 中央委員會의 委員候補中에서 得票數에 따라 順次로 補充한다.

② 中央委員會 全體會議는 中央政治局이 召集하고 每年 적어도 1 回 開催한다.

③ 中央委員會는 全國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 全國代表大會의 決議를 實行하는 黨의 活動 全般을 指導하며 對外的으로 中國共產黨을 代表한다.

第 21 條 ① 黨의 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中央書記處와 中央委員會 總書記는 中央委員會 全體會議가 選出한다. 中央委員會 總書記는 반드시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 委員中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② 中央政治局과 그 常務委員會는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의 閉會期

間中, 中央委員會의 職權을 行使한다.

③ 中央書記處는 中央政治局과 常務委員會의 指導下에 中央의 日常活動을 處理한다.

④ 中央委員會 總書記는 中央政治局의 會議과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의 會議을 責任지고 召集하며 또한 中央書記處의 活動을 主宰한다.

⑤ 黨의 中央軍事委員會의 構成員은 中央委員會가 決定한다.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은 반드시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의 委員中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⑥ 每期の 中央委員會가 選出한 中央의 指導機構 및 指導者는 次期 中央委員會가 새로운 中央의 指導機構 및 指導者 選出할 때까지는 次期 全國代表大會 開會期間中에도 繼續 黨의 日常活動을 主宰한다.

第 22 條 ① 黨의 中央顧問委員會는 中央委員會의 政治面에 있어서의 助手이며 參謀이다. 中央顧問委員會의 委員은 반드시 40 年以上の 黨歷을 가지고 黨에 그에 相當하는 貢獻을 한 바 있고 比較的 豊富한 指導經驗이 있으며 또한 黨內·黨外에서 信望이 두터운 者라야 한다.

② 中央顧問委員會의 1 期の 任期는 中央委員會와 同一하다. 그 常務委員會 및 主任·副主任은 中央顧問委員會 全體會議에서 選出하고 또한 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는다. 中央顧問委員會 主任은 반드시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의 委員中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中央顧問委員會 委員은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 列席(註: 會議에 參席하여 發言權은 있으나 表決權은 없음) 할 수 있다. 副主席은 中央政治局 全體會議에 列席할 수 있다. 中央政治局이 必

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中央顧問委員會의 常務委員도 中央政治局全體會議에 列席할 수 있다.

③ 中央顧問委員會는 中央委員會의 指導下에 活動하며 黨의 方針·政策의 制定과 實行에 대하여 建議을 提出하고 諮問을 받는다. 또한 中央委員會에 協力하여 重大問題를 調查·處理하고, 黨內·黨外에 黨의 重大한 方針과 政策을 宣傳하며, 中央委員會가 委託한 其他의 任務를 擔當한다.

第 23 條 中國人民解放軍의 黨組織은 中央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活動한다. 中國人民解放軍 總政治部는 中央軍事委員會의 政治活動機關이며 軍隊에 있어서 黨의 活動과 政治活動의 管理에 責任을 진다. 軍隊에 있어서 黨의 組織體制와 機構에 대하여는 中央軍事委員會가 規定한다.

第 4 章 黨의 地方組織

第 24 條 ① 黨의 省, 自治區, 直轄市, 區를 設置하고 있는 市, 自治州의 代表大會는 5 年마다 1 回 開催한다.

② 黨의 縣(旗), 自治縣, 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市, 市管轄區의 代表大會는 3 年마다 1 回 開催한다.

③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는 同級 黨委員會가 召集한다. 特殊한 狀況下에서는 次上級委員會의 承認을 거쳐 早期 또는 延期하여 開催할 수 있다.

④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 代表의 定數와 그 選出方法은 同級 黨委員會가 決定하며, 또한 次上級 黨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는다.

第 25 條 ①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의 職權은 다음과 같다.

1. 同級 委員會의 報告를 聽取, 審議한다.
2. 同級 規律檢査委員會의 報告를 聽取, 審議한다.
3. 當該 地區 範圍內에서의 重大問題를 討議하고 決議를 採擇한다.
4. 同級 黨委員會와 同級 黨規律檢査委員會를 選出하고 上級 黨代表大會에 出席할 代表를 選出한다.

② 黨의 省·自治區, 直轄市 代表大會는 同級 黨顧問委員會를 選出하고 또한 그의 報告를 聽取, 審議한다.

第 26 條 ① 黨의 省·自治區, 直轄市, 區를 設置하고 있는 市, 自治州의 委員會의 任期는 1 期 5 年으로 한다. 이들 委員會의 委員과 委員候補는 5 年 以上의 黨歷을 가져야 한다.

② 黨의 縣(旗), 自治縣, 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市, 市管轄區 委員會의 任期는 1 期 3 年으로 한다. 이들 委員會의 委員과 委員候補는 3 年 以上의 黨歷을 가져야 한다.

③ 黨의 地方各級代表大會가 早期 또는 延期되어 開催될 경우 同大會에서 選出되는 委員會의 任期는 이에 따라 變更된다.

④ 黨의 地方各級委員會의 委員과 委員候補의 定數는 次上級 委員會가 決定한다. 黨의 地方各級委員會의 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委員候補中에서 得票數에 따라 順次로 補充한다.

⑤ 黨의 地方各級委員會 全體會議는 每年 적어도 1 回 開催한다.

⑥ 黨의 地方各級委員會는 代表大會의 閉會期間中, 上級 黨組織의 指示와 同級 黨代表大會의 決議를 執行하며, 當行 地方의 活動을 指導하고 上級 黨委員會에 定期的으로 活動을 報告한다.

第 27 條 黨의 地方各級委員會 全體會議는 常務委員會 및 書記·副

書記를 選出하며, 또한 上級 黨委員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黨의 地方各級常務委員會는 委員會 全體會議의 閉會期間中, 委員會의 職權을 行使하며 새로운 常務委員會가 選出될 때까지는 次期 代表大會 開會期間中에도 繼續 日常活動을 主宰한다.

第 28 條 ① 黨의 省·自治區·直轄市 顧問委員會는 同級 黨委員會의 政治面에서의 助手이고 參謀이며, 同級 黨委員會의 指導下에 本黨規約 第 22 條의 關係規定을 參照하여 活動한다. 그 構成員의 條件에 대하여는 同級 黨委員會가 本黨規約 第 22 條의 關係規定을 參照하고 또한 當該 地方의 實情에 따라 規定한다. 그 1 期의 任期는 同級 黨委員會와 同一하다.

② 省·自治區·直轄市 顧問委員會의 常務委員會 및 主任·副主任은 顧問委員會의 全體會議가 選出하고 同級 黨委員會의 可決을 거쳐 中央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承認을 얻는다. 그 構成員은 同級 黨委員會의 全體會議에 列席할 수 있고 主任·副主任은 同級 黨常務委員會의 會議에 列席할 수 있다.

第 29 條 黨의 地區委員會 및 地區委員會에 相當하는 組織은 一部 縣·自治縣·市の 範圍에서 黨의 省·自治區 委員會가 派遣한 代表機關으로서, 省·自治區 委員會가 賦與한 權限에 依據하여 當該 地區의 活動을 指導한다.

第 5 章 黨의 基層組織

第 30 條 ① 工場·商店·學校·機關·居住區·人民公社·合作社(註: 協同組合)·農場·鄉·鎮·人民解放軍中隊 其他 基層單位는 正式黨員 3 名以上을 가지면 모두 黨의 基層組織을 構成하여야 한다.

② 黨의 基層組織은 活動의 必要와 黨員數에 따라 上級 黨組織의 承認을 얻어 黨의 基層委員會·總支部委員會·支部委員會를 各各 設立한다. 基層委員會는 黨員大會 또는 代表大會에 의하여 選出되며, 總支部委員會 및 支部委員會는 黨員大會에 의하여 選出된다.

第 31 條 ① 委員會를 두고 있는 基層組織의 黨員大會 또는 代表大會는 普通 每年 1 回 開催한다. 總支部의 黨員大會는 普通 每年 2 回 開催한다. 支部의 黨員大會는 普通 3 個月에 1 回 開催한다.

② 基層委員會는 그 任期를 1 期 3 年으로 하고 總支部委員會 및 支部委員會는 그 任期를 1 期 2 年으로 한다. 基層委員會·總支部委員會·支部委員會가 選出한 書記·副書記에 대하여는 上級 黨組織에 報告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2 條 黨의 基層組織은 社會의 基層組織에 있어서 黨의 戰鬥的 堡壘이다. 그의 基本的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黨의 路線·方針·政策을 宣傳·實行하고 黨中央·上級組織 및 當該 組織의 決議를 宣傳·實行하며, 黨員의 先鋒으로서의 模範的인 役割을 充分히 發揮시키며, 黨內·黨外의 幹部와 大衆을 結集·組織하고 當該 單位가 責任져야 할 任務의 完遂에 努力한다.
2. 黨員을 組織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眞摯하게 學習하고 黨의 基本知識과 黨의 路線·方針·政策을 學習하며, 科學·文化와 業務를 學習한다.
3. 黨員을 教育·管理하고 黨의 組織生活를 嚴格히 하며, 黨員이 確實히 業務를 履行하고 規律을 遵守하도록 監督하고 黨員의 權利가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保障한다.
4. 大衆과 緊密하게 結合하고 항상 黨員과 黨의 活動에 대한

大衆의 批判과 意見을 傾聽하며, 大衆과 專門家의 知識 및 合理的提案을 尊重하고 大衆의 正當한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며 그들이 物質·文化面의 生活을 改善하도록 關心을 가지고 支援하며, 大衆에 대한 思想·政治工作을 完遂하여 그들의 自覺을 提高한다. 大衆 가운데의 잘못된 意見과 不良한 氣風에 대하여는 妥當한 方法으로 이를 是正하여야 하며 大衆 가운데의 矛盾에 대하여는 適切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5. 黨員과 大衆의 積極性과 創造性을 充分히 發揮시키고 그들 가운데 先進的 人物과 社會主義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其他의 人材를 發掘하여, 그들이 活動을 改善하고 革新과 創造를 行하도록 激勵·支持한다.
6. 黨員을 吸收하고 黨費를 徵收하며, 黨員을 審査·評定하고 黨員中의 模範的 實績을 表彰하며 黨의 規律을 維持·實行한다.
7. 批判과 自我批判을 展開하며 活動中의 缺點과 過誤를 摘發하고 이를 是正한다. 黨員·幹部 其他 모든 公職者에 대하여 그들이 國家의 法律·行政規律을 嚴守하고 國家의 財政經濟規律과 人事制度를 嚴守하며, 國家·集團과 大衆의 利益을 侵害하지 못하도록 教育·監督한다. 當該 單位의 財務會計要員과 法律을 執行하는 各種 專門要員이 法을 執行하는 몸으로 法律에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監督하고 또한 그들이 侵害나 報復을 받음이 없이 法律에 의하여 獨立하여 職權을 行使하도록 保障한다.
8. 黨員과 大衆에 대하여 革命의 警覺心을 높여 反革命分子 其

他 破壞分子의 犯罪活動에 斷乎히 鬪爭하도록 教育한다.

第 33 條 ① 企業·事業體에 있어서 黨의 基層委員會 및 基層委員會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總支部委員會 또는 支部委員會는 當該 單位의 活動을 指導한다. 이들 黨의 基層組織은 重大한 原則的문제에 대하여 討議, 決定하고 同時에 行政責任者가 自己의 職權을 充分히 行使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야 하며 그의 일을 獨占하여 行代하여서는 아니된다. 基層委員會의 指導下에 있는 總支部委員會와 支部委員會는 特殊한 狀況 外에는 當該 單位의 生産任務와 業務活動이 正確히 完遂될 수 있도록 保障하고 監督하는 機能만을 遂行한다.

② 各級 黨·政府機關에 있어서 黨의 基層組織은 當該 單位의 業務活動을 指導하지 아니한다. 이들 基層組織은 行政責任者를 包含한 各 黨員의 黨의 路線·方針·政策의 實行, 規律·法律의 遵守, 大衆과의 結合 및 黨員의 思想·作風·道德·品性 等の 面에서의 狀況에 대하여 監督하여야 한다. 또한 行政指導部가 業務를 改善하고 能率을 높이며 官僚主義를 克服하는 것에 協助함과 同時에 機關의 業務上의 缺點과 問題에 대하여 知得한 內容을 行政責任者에게 通知하거나 黨의 上級組織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6 章 黨의 幹部

第 34 條 ① 黨의 幹部는 黨 事業의 骨幹이며 人民의 公僕이다. 黨은 才德兼備의 原則에 따라 幹部를 選拔하며 能力爲主의 任用을 堅持하고 情實에 의한 任用을 反對한다. 또한 幹部隊列의 革命化·年少化·知識化 및 專門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② 黨의 幹部는 반드시 黨의 教育과 訓練을 받으며 黨의 查察과 審査를 받아야 한다.

③ 黨은 女性幹部와 少數民族幹部의 育成·選拔을 重視하여야 한다.

第 35 條 黨의 各級 指導幹部는 반드시 本 黨規約 第 3 條 各號에 規定된 黨員의 義務를 模範的으로 履行함과 同時에 다음에 記載된 基本條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1.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에 대한 一定한 理論的·政策的 水準에 達하고 社會主義의 길을 確固하게 堅持하여 社會主義를 破壞하는 敵對勢力과 鬪爭하고 黨內·黨外의 갖가지 잘못된 傾向과 鬪爭할 수 있어야 한다.
2. 自己가 指導하는 活動을 誠實히 調査·研究하고 實際에서 出發하며 黨의 路線·方針·政策을 正確하게 實行한다.
3. 旺盛한 革命的 使命感과 政治的 責任感을 가지고 指導活動에 임하는 組織能力·教養水準 및 專門知識을 具備한다.
4. 民主的 作風을 具備하고 大衆과 緊密한 連繫를 가지며 黨의 大衆路線을 正確하게 實行하고 黨과 大衆의 批判과 監督을 意識的으로 받아들이며 官僚主義에 反對한다.
5. 自己의 職權을 正確하게 行使하고 黨과 國家의 制度를 遵守·擁護하며, 職權을 濫用하거나 私利를 圖謀하는 行爲와도 鬪爭한다.
6. 黨의 原則을 堅持하는 基礎위에 自己와 다른 意見을 가진 同志를 包含한 廣範한 同志와 團結하여 함께 일한다.

第 36 條 ① 黨의 幹部는 非黨員 幹部와 協力하여 함께 일하고 그들을 尊重하며 謙虛하게 그들의 長點을 學習하여야 한다.

② 黨의 各級組織은 眞實로 才能과 學問을 兼備한 非黨員 幹部를 發掘, 指導的 地位에 推薦함과 同時에 그들이 職務에 따른 權限을 가지고 그들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第 37 條 ① 黨의 各級 指導幹部는 民主的 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者나 指導機關에 의하여 任命된 者를 莫論하고 그의 職務는 終身 擔當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移動 또는 罷免할 수 있다.

② 年齡과 健康狀態上 業務를 繼續 遂行하는데 不適當한 幹部는 國家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休養하거나 退職休養하여야 한다.

第 7 章 黨의 規律

第 38 條 ① 共產黨員은 自覺을 가지고 黨의 規律에 의한 拘束을 받아야 한다.

② 黨組織은 黨의 規律에 違反한 黨員에 대하여 懲前懲後·治病救人 (註: 過去의 잘못을 教訓삼아 將來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고 善意의 批評으로 남의 잘못이나 缺點을 고침)의 精神에 立脚하여 過誤의 性格과 情狀의 輕重에 따라 批判, 教育하거나 規律處分을 加하여야 한다.

③ 行政規律과 國家의 法律에 違反한 黨員에 대하여는 반드시 行政機關 또는 司法機關이 行政規律 또는 法律에 根據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過度하게 刑法에 違反한 黨員에 대하여는 반드시 黨에서 除名하여야 한다.

第 39 條 ① 黨의 規律處分에는 警告, 嚴重警告, 黨內職務의 罷免과 黨外組織에의 建議를 통한 黨外職務의 罷免, 黨籍保留下의 觀察, 除名의 5種이 있다.

② 黨籍保留下의 觀察期間은 길어도 2年을 超過할 수 없다. 黨員은 黨籍保留下의 觀察期間 中에는 表決權,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지 못한다. 黨籍保留下의 觀察을 통하여 過誤를 是正한 黨員에

게는 黨員으로서의 權利를 回復시켜야 하며 頑強하게 過誤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者는 除名하여야 한다.

③ 除名은 黨內에서 最高의 處分이다. 各級 黨組織은 黨員의 除名을 決定 또는 承認할 경우 關係資料와 意見을 全般的으로 檢討하고 매우 慎重한 態度를 取하여야 한다.

④ 黨內에서는 黨憲과 國家의 法律에 違背되는 手段으로 黨員에 對處하는 것을 嚴禁하며, 打擊·報復을 加하고 誣告하여 謀陷하는 言行을 禁止한다. 이러한 規定에 違反하는 組織 또는 個人은 반드시 黨의 規律과 國家의 法律에 의하여 追窮을 받는다.

第 40 條 ① 黨員에 대한 規律處分은 반드시 支部大會의 討議·決定을 거쳐 黨의 基層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關聯된 問題가 比較的 重要하거나 複雜한 경우 또는 黨員에게 除名處分을 내릴 경우에는 각각 다른 狀況에 따라 縣級 또는 縣級以上の 黨規律檢查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審査·承認을 받아야 한다. 特殊한 狀況下에서는 縣級 및 縣級以上の 各級 黨委員會와 規律檢查委員會가 直接 黨員에 대한 規律處分을 決定할 權限을 가진다.

② 黨의 中央委員會와 地方各級委員會의 委員 및 委員候補에 대하여 黨內 職務의 罷免, 黨籍保留下의 觀察 또는 除名の 處分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本人이 所屬한 委員會의 全體會議의 3分の2 以上の 多數로 決定하여야 한다. 地方各級委員會의 委員 및 委員候補에 대한 上記의 處分은 上級 黨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過度하게 刑法에 違反한 中央委員會의 委員 및 委員候補에 대하여는 中央政治局이 그의 除名을 決定한다. 過度하게 刑法에 違反한 地方各級委員會의 委員 및 委員候補에 대하여는 同級 委員會의 常務委員會가 그의 除名을 決定한다.

第 41 條 黨組織은 黨員에 대한 處分의 決定을 내릴 경우 實事求是의 態度로 事實을 分明하게 調查하여야 한다. 내려야 할 處分의 決定 및 그 根據로 한 事實資料는 반드시 本人에게 明示하고 本人의 事情 說明과 辯明을 聽取하여야 한다. 處分이 決定된 後 本人이 不服한다면 訴願할 수 있으며 關係있는 黨組織은 반드시 責任지고 이를 處理하거나 迅速히 移管하여야 하며 이를 默殺하여서는 아니된다. 잘못된 意見과 不當한 要求를 固執하는 것이 確實한 者에 대하여는 批判, 教育을 行하여야 한다.

第 42 條 ① 黨의 規律을 確固히 守護하는 것은 모든 黨組織의 重要한 責務이다. 黨의 規律을 守護하는 面에서 黨組織이 職責을 疏忽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追窮하여야 한다.

② 黨의 規律에 過度하게 違反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是正하지 않는 黨組織에 대하여 次上級 黨委員會는 事實을 調查·確認한 後 情狀의 輕重에 따라 組織改編 또는 解散의 決定을 내림과 同時에 다시 次上級 黨委員會에 報告하고 그의 審査·承認을 얻어 正式으로 實行을 宣言하여야 한다.

第 8 章 黨의 規律檢査機關

第 43 條 ① 黨의 中央規律檢査委員會는 黨 中央委員會의 指導下에 活動한다. 黨의 地方各級規律檢査委員會는 同級 黨委員會 및 上級規律檢査委員會의 2種指導下에 活動한다.

② 黨의 中央과 地方各級の 規律檢査委員會의 1期의 任期는 同級 黨委員會와 同一하다.

③ 黨의 中央規律檢査委員會 全體會議는 常務委員會 및 書記·副

書記를 選出하고 또한 黨 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黨의 地方各級 規律檢查委員會 全體會議은 常務委員會 및 書記·副書記를 選出하고 同級 黨委員會에서 可決된 後 上級 黨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는다. 黨의 中央規律檢查委員會의 第1書記는 반드시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의 委員中에서 選出하여야 한다. 黨의 基層委員會에 規律檢查委員會를 設置할 것인가, 아니면 規律檢查委員을 둘 것인가는 次上級 黨組織이 具體的인 狀況에 따라 決定한다. 黨의 總支部委員會와 支部委員會에는 規律檢查委員을 둔다.

④ 黨의 中央規律檢查委員會는 活動上 必要에 따라 中央의 黨과 國家機關에 黨의 規律檢查組 또는 規律檢查員을 派遣하여 駐在시킬 수 있다. 規律檢查組 組長 또는 規律檢查員은 當該 機關의 黨指導組織의 關係會議에 列席할 수 있다. 그의 活動은 반드시 當該 機關의 黨指導組織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

第44條 ① 黨의 中央과 地方各級の 規律檢查委員會의 主要한 任務는 黨規約 其他 重要한 規則·制度를 守護하고 黨委員會에 協力하여 黨風을 整頓하며 黨의 路線·方針·政策 및 決議의 實行狀況을 點檢하는 것이다.

② 中央과 地方各級の 規律檢查委員會는 항상 黨員에 대하여 規律遵守의 教育을 實施하고 黨의 規律守護에 대한 決定을 내려야 한다. 또한 黨의 規約·規律 및 國家의 法律·法令에 違反하는 黨員과 黨組織의 比較的 重大하거나 複雜한 案件을 點檢·處理하고 이들 案件에 있어서 黨員에 대한 處理를 決定 또는 撤回하여야 하며 黨員의 告發과 訴願을 受理하여야 한다.

③ 中央과 地方各級の 規律檢查委員會는 特別히 重要하거나 複雜

한 案件의 處理에 있어서는 問題點과 處理結果를 同級 黨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同時에 黨의 地方各級規律檢查委員會도 上級 規律檢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 中央規律檢查委員會는 中央委員會 構成員이 黨의 規律에 違反한 行爲를 하였음을 發見한 경우 中央委員會에 告發할 수 있으며 中央委員會는 遲滯없이 이를 接受하여야 한다.

第 45 條 ① 上級 規律檢查委員會는 下級 規律檢查委員會의 活動을 點檢할 權限을 가지며 또한 下級 規律檢查委員會가 案件에 대하여 내린 決定을 承認 또는 變更할 權限을 가진다. 變更되어야 할 當該 下級 規律檢查委員會의 決定이 이미 그의 同級 黨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경우 그 變更은 반드시 次上級 黨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黨의 地方各級規律檢查委員會는 同級 黨委員會의 案件處理의 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경우 次上級 規律檢查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同級 黨委員會 또는 그의 構成員에게 黨의 規律과 國家의 法律·法令에 爲反한 行爲가 있음을 發見하였으나 同級 黨委員會가 解決하지 아니하거나 正確히 解決하지 아니할 경우 上級 規律檢查委員會에 訴願을 提出하여 處理에 協力을 要求할 權限을 가진다.

第 9 章 黨 組

第 46 條 中央과 地方의 國家機關·人民團體·經濟組織·文化組織 또는 其他 黨外組織의 指導機關에는 黨組를 둔다. 黨組의 任務는 주로 責任을 지고 黨의 方針·政策의 實現을 期하고, 非黨員幹部와 大

衆을 結集시켜 黨과 國家가 賦與한 任務를 完遂하며 機關內黨組織의 活動을 指導하는 것이다.

第 47 條 ① 黨組의 構成員은 黨組의 成立을 承認한 黨委員會가 이를 指名한다. 黨組에는 書記와 副書記를 둔다.

② 黨組는 반드시 그 設立을 承認한 黨委員會의 指導에 服從하여야 한다.

第 48 條 管轄 下級單位에 대하여 高度의 集中과 統一的 指導를 實行할 必要가 있는 國家業務部署에 있어서 黨組의 職權· 活動任務 및 이들 部署의 黨組를 黨委員會로 改造시킬 것인가의 與否는 中央이 別途로 定한다.

第 10 章 黨과 共產主義青年團과의 關係

第 49 條 共產主義青年團은 中國共產黨이 指導하는 先進的인 青年의 大衆組織이고 廣範한 青年이 實踐中에서 共產主義를 學習하는 學校이며, 黨의 助手 및 豫備軍이다. 共靑團 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의 指導를 받는다. 共靑團의 地方各級組織은 同級 黨委員會의 指導를 받음과 同時에 共靑團 上級組織의 指導를 받는다.

第 50 條 ① 黨의 各級委員會는 共靑團에 대한 指導를 強化하고 共靑團 幹部의 選拔과 育成· 訓練에 注意을 기울여야 한다. 黨은 共靑團이 廣範한 青年의 特徵과 必要에 따라 生氣있고 創造的으로 活動을 展開하도록 確固히 支持하여야 하며 突擊隊的 役割 및 廣範한 青年을 連結시키는 橋梁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시켜야 한

다.

② 共靑團의 縣級 및 縣級以下의 各級委員會 書記와 企業·事業體의 共靑團委員會 書記는 黨員일 경우 同級 黨의 委員會 및 常務委員會의 會議에 列席할 수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自治法

(1984 年 5 月 31 日, 第 6 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2 次會議에서 採擇)

(1984 年 5 月 31 日,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 13 號로 公布)

前 文

中華人民共和國은 全國 各民族의 人民이 共同으로 創建한 統一된 多民族國家이다. 民族區域自治는 中國共產黨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運用하여 우리나라의 民族問題를 解決하는 基本政策이며 國家의 重要한 政治制度이다.

民族區域自治란 國家의 統一的 指導下에 各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方에 區域自治를 實施하여 自治機關을 設置하고 自治權을 行使하게 하는 것이다. 民族區域自治의 實施는 國家가 各 少數民族이 當該 民族의 内部事務를 管理하는 權利를 充分히 尊重하고 保障한다는 精神을 具現하였으며 國家가 各民族의 平等·團結 및 共同繁榮을 堅持한다는 原則을 具現하였다.

民族區域自治의 實施는 各民族의 人民이 主人公이라는 積極性を 發揮하고, 平等·團結·相互援助의 社會主義的 民族關係를 發展시키며, 國家의 統一을 鞏固히 하고, 民族自治地方과 全國의 社會主義建設事業의 發展을 促進하는데 重大한 役割을 遂行하였다. 今後 民族區域自治制度는 國家의 社會主義的 現代化過程에서 더욱 큰 役割을 發揮할 것이다.

實踐을 통하여 證明되었듯이 民族區域自治를 繼續 實施해 나가는 데는 民族自治地方이 現地の 實情에 따라 國家의 法律과 政策을 貫徹·執行하도록 保障하여야 하며, 少數民族의 各級 幹部, 各種 專

門人材 및 技術勞動者를 大量으로 養成하여야 하고, 民族自治地方은 自力更生·刻苦奮鬪의 精神을 發揚하여 當該 地方의 社會主義建設事業의 發展에 힘을 기울이고 國家의 建設에 貢獻하여야 하고, 國家는 國民經濟 및 社會發展計劃에 根據하여 民族自治地方의 經濟·文化發展을 加速하는데 全力을 다하여 支援하며 民族의 團結을 守護하기 위한 鬪爭에서 大民族主義, 主로 大漢族主義를 反對하여야 하며 地方民族主義도 反對하여야 한다.

民族自治地方의 各民族 人民은 全國의 人民과 함께 中國共產黨의 指導를 받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의 引導下에 人民民主主義獨裁를 堅持하고 社會主義의 길을 堅持하며 힘을 集中하여 社會主義現代化를 推進하고 民族自治地方의 經濟·文化의 發展을 加速시키며 各民族의 共同繁榮을 위하여, 祖國을 高度로 文明化되고 民主的인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기 위하여 努力·奮鬪하여야 한다.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은 憲法에 規定된 民族區域自治制度를 實施하는 基本法이다.

第1章 總 則

第1條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은 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 根據하여 制定한다.

第2條 ① 各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方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은 自治區·自治州·自治縣으로 나눈다.

③ 各 民族自治地方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不可分의 一部이다.

第3條 ① 民族自治地方에는 自治機關을 設置한다. 自治機關은 國

家の 1 級 地方政權機關이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民主集中制의 原則을 實行한다.

第 4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憲法 第 3 章 第 5 節에 規定된 地方國家機關의 職權을 行使함과 同時에 憲法과 本法 및 其他 法律에 規定된 權限에 依據하여 自治權을 行使하며, 當該 地方의 實情에 根據하여 國家의 法律·政策을 貫徹·執行한다.

② 自治州의 自治機關은 區·縣을 두고 있는 市의 地方國家機關의 職權을 行使함과 同時에 自治權을 行使한다.

第 5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반드시 國家의 統一을 守護하고, 當該 地方에서의 憲法과 法律의 遵守·執行을 保證하여야 한다.

第 6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民族의 人民을 指導하고 힘을 集中하여 社會主義現代化를 推進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狀況에 따라 憲法과 法律에 違背되지 아니한다는 原則下에 特別한 政策과 彈力的인 措置를 講究하여 民族自治地方의 經濟·文化事業의 發展을 加速할 수 있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計劃의 指導下에 實際에서 出發하여 勞動生産性和 經濟效率을 不斷히 向上시키며 社會的 生産力을 發展시키고 漸次 各民族 人民의 物質生活水準을 向上시킨다.

④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民族文化의 優秀한 傳統을 繼承, 發揚시키며 民族의 特性을 가진 社會主義的 精神文明을 建設하고 各民族 人民의 社會主義的 自覺과 科學·文化水準을 不斷히 向上시킨다.

第 7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모든 利益을 最優先에 두고 上級國家機關이 賦與한 任務를 積極 完遂하여야 한다.

第 8 條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自治權을 行使하도록 保障하며 또한 民族自治地方의 特性和 要求에 依據하여 民族自治地方이 社會主義建設事業의 發展을 加速하도록 全力을 다하여 支援한다.

第 9 條 上級 國家機關 및 民族區域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民族의 平等·團結·相互援助의 社會主義的 民族關係를 擁護, 發展시킨다. 어느 民族에 對한 差別과 抑壓도 禁止하며, 民族의 團結을 破壞하고 民族의 分裂을 助長하는 行爲를 禁止한다.

第 10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各民族이 自己들의 言語·文字를 使用하고 發展시킬 自由, 自己들의 風俗·習慣을 維持 또는 改革할 自由를 保障한다.

第 11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民族 公民의 信教의 自由를 保障한다.

② 어떤 國家機關·社會團體나 個人도 公民이 宗教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도록 強制하지 못하며, 宗教를 믿는 公民과 믿지 아니하는 公民을 差別하지 못한다.

③ 國家는 正常的인 宗教活動을 保護한다. 어느 누구도 宗教를 利用하여 社會秩序를 破壞하고, 公民의 身體·健康에 害를 미치며, 國家의 教育制度를 妨害하는 活動을 하지 못한다.

④ 宗教團體와 宗教事務는 外國勢力의 支配를 받지 아니한다.

第 2 章 民族自治地方의 設置 및 自治機關의 構成

第 12 條 ①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方에는 現地의 民族關係, 經濟

發展 等의 條件에 根據하고 또한 歷史的인 狀況을 參酌하여 1 個 또는 數個의 少數民族集居區를 基礎로 한 自治地方을 設置할 수 있다.

② 民族自治地方內의 其他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方에는 이에 相應하는 自治地方 또는 民族鄉을 設置할 수 있다.

③ 民族自治地方에는 當該 地方의 實情에 依據하여 一部 漢族 또는 其他 民族의 居住區와 都市가 包含될 수 있다.

第 13 條 民族自治地方의 名稱은 特別한 狀況을 除外하고는 地方名, 民族名, 行政上 地位의 順으로 하여 編成한다.

第 14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設置, 區域境界線의 劃定, 名稱의 編成은 上級 國家機關과 關係地方의 國家機關이 共同으로 關係民族의 代表와 充分한 協議를 거쳐 決定하며 法律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國務院에 報告하여 承認을 求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區域境界線이 一旦 確定되면 이를 任意로 變更시켜서는 아니된다. 變更이 必要할 때에는 上級 國家機關의 關係 部署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間의 充分한 協議를 거쳐 決定하고 國務院에 報告하여 承認을 求한다.

第 15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이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政府는 同級 人民代表大會와 次上級 國家 行政機關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同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한 業務를 報告한다. 各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政府는 모두 國務院의 統一的 指導를 받는 國家 行政機關으로서 國務院에 服從한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의 組織과 業務는 憲法과 法律에 根據

하여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條例 또는 單行條例에 定한다.

第 16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의 代表外에 當該 行政區域內에 居住하는 其他 民族도 適當數의 代表를 가져야 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에 있어서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과 其他 民族 代表의 定數와 比率은 憲法에 定한 原則에 따라 省·自治區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決定하고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에 報告하여 登錄한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서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의 公民이 主任 또는 副主任을 擔任하여야 한다.

第 17 條 ① 自治區 主席·自治州 州長·自治縣 縣長은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의 公民이 擔任한다.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의 人民政府의 其他 構成員中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과 其他 少數民族의 人員을 最大限 配置하여야 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政府는 自治區 主席·自治州 州長·自治縣 縣長의 職務責任制를 實施한다. 自治區 主席·自治州 州長·自治縣 縣長은 各各 同級 人民政府의 業務를 主宰한다.

第 18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傘下 業務部署의 幹部中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과 其他 少數民族의 人員을 最大限 配置하여야 한다.

第 3 章 自治機關의 自治權

第 19 條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는 現地 民族의 政治·經濟·文化의 特性에 따라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를 制定할 權限을 가진다.

自治區의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任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自治州·自治縣의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는 省 또는 自治區의 人民代表大會 常任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後에 效力을 發生하며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 登錄하여야 한다.

第 20 條 上級 國家機關의 決議·決定·命令·指示가 民族自治地方의 實情에 符合되지 아니하는 경우 自治機關은 上級 國家機關의 承認을 얻어 彈力的으로 執行하거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 21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職務를 執行할 때에는 當該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條例의 規定에 따라 現地에서 適用되는 1種 또는 數種의 言語·文字를 同時에 使用하여야 한다. 數種의 言語·文字를 同時에 使用하여 職務를 執行할 경우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民族의 言語·文字를 爲主로 할 수 있다.

第 22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社會主義建設의 必要에 따라 各種 措置를 講究하여 現地 民族中에서 各級 幹部, 各種 科學技術·經營管理 等の 專門人力 및 技術勞動者를 大量으로 養成하고 그들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시키며 또한 少數民族 婦女中에서 各級 幹部 및 各種 專門技術人材를 養成하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特別한 措置를 講究하여 各種 專門家가 自治地方의 各種建設活動에 參加하는 것을 優待·獎勵하여야 한다.

第 23 條 民族自治地方의 企業·事業體는 人員을 蒐集·採用할 때에 少數民族의 人員을 優先적으로 募集·採用하여야 한다. 또한 農村 및 牧畜地區의 少數民族人口中에서 募集·採用할 수 있다. 自治州·自治縣이 農村 및 牧畜地區의 少數民族人口中에서 募集·採用한

人員에 대하여는 반드시 省 또는 自治區의 人民政府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4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軍事制度和 現地の 實際的 必要에 따라 國務院의 承認을 얻어 社會治安을 維持할 當該 地方의 公安部隊를 組織할 수 있다.

第 25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計劃의 指導下에 地方의 經濟建設事業을 自主的으로 組織·管理한다.

第 26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計劃의 指導下에 當該 地方의 特性和 要求에 根據하여 經濟建設의 方針·政策 및 計劃을 策定한다.

第 27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社會主義原則을 堅持한다는 前提下에 法律의 規定과 當該 地方의 經濟發展의 特性에 根據하여 生産關係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經濟管理體制를 改革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根據하여 當該 地方內의 牧草地와 森林의 所有權과 使用權을 確定한다.

第 28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따라 當該 地方의 自然資源을 管理·保護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草原과 森林을 保護·建設하며 植樹·種草를 計劃·獎勵한다. 그 어느 組織 또는 個人이 어떠한 手段으로 草原 또는 森林을 破壞하는 것을 禁止한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法律의 規定과 國家의 統一的 計劃에 根據하여 當該 地方에서 開發할 수 있는 自然資源에 대하여 優先的, 合理的으로 開發·利用한다.

第 29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計劃의 指導下에 當該 地方의 財源·物資 其他의 條件에 根據하여 地方의 基本建設 「프

로젝트」를 自主的으로 配定한다.

第 30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에 從屬된 企業·事業體를 自主的으로 管理한다.

第 31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計劃收買·上納調達任務를 達成하는 以外의 工·農業生産物과 其他 特産品을 自主的으로 配定·利用한다.

第 32 條 ① 民族自治地方은 國家의 規定에 따라 對外貿易活動을 行할 수 있으며, 國務院의 承認을 얻어 貿易港을 開設할 수 있다.

② 外國과 境界를 接하고 있는 民族自治地方에서는 國務院의 承認을 얻어 國境貿易을 行할 수 있다.

③ 民族自治地方은 對外貿易活動을 行함에 있어서 外貨保有 等の 面에서 國家의 優待를 받는다.

第 33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財政은 1 級 財政이며 國家財政의 一部이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地方財政 管理의 自治權을 가진다. 國家財政體制에 의하여 民族自治地方에 歸屬되는 財政收入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自主的으로 配定·使用하여야 한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財政收入과 財政支出의 項目은 國務院이 民族自治地方 優待의 原則에 따라 定한다.

④ 民族自治地方은 國家財政體制의 規定에 따라 財政收入이 財政支出보다 많은 경우 一定額을 上級 財政機關에 上納하며, 上納額은 一定하게 數年間 不變으로 할 수 있다. 收入이 支出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上級 財政機關이 補助한다.

⑤ 民族自治地方의 財政豫算支出에는 國家의 規定에 따라 臨時資金을 設置하며 豫算에 대한 豫備費 比率은 一般地區보다 높게 한다.

⑥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豫算執行過程에서 收入의 超過分과 支出의 節約에 의한 剩餘資金을 自體的으로 配定·使用한다.

第 34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各種 支出의 基準·割當額에 대하여 國家가 定한 原則에 根據하고 當該 地方의 實情과 結合하여 補充規定 및 具體的인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自治區에서 制定한 補充規定 및 具體的인 規則은 國務院에 登錄하며, 自治州·自治縣에서 制定한 補充規定 및 具體的인 規則은 반드시 省 또는 自治區의 人民政府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5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國家의 稅法을 執行할 때에는 國家가 統一的으로 審査·承認한 租稅의 減免項目 以外에 地方財政收入에 屬하며 稅收面에서의 配慮 및 獎勵가 必要한 一部 項目에 대하여는 減稅 또는 免稅를 할 수 있다. 自治州·自治縣이 減稅 또는 免稅를 決定할 경우에는 반드시 自治區의 人民政府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6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教育方針에 根據하고 法律의 規定에 따라 當該 地方의 教育計劃, 各級·各種 學校의 設立·學制·運營方式·教授內容·教授言語 및 學生募集方法을 決定한다.

第 37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民族教育을 自主的으로 發展시켜 文盲을 退治하고 各種 學校를 設立·運營하며 初等義務教育을 普及하고 中等教育을 發展시킨다. 또한 民族師範學校·民族中等專門學校·民族職業學校를 設立·運營하여 各 少數民族의 專門人材를 養成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少數民族의 牧畜地區 및 經濟的으로 貧困하여 居住가 分散되어 있는 少數民族의 山間地區를 위하여

寄宿舍와 獎學金을 爲主로 運營하는 公立의 民族小學校와 民族中學校를 設立할 수 있다.

③ 少數民族 學生을 主로 募集하는 學校는 條件을 갖출 경우 少數民族의 文字로 된 教科書를 採用하고 또한 少數民族의 言語로써 教授하여야 한다. 小學校의 高學年 또는 中學校에는 漢文課程을 設置하여 全國的으로 通用되는 標準語를 普及한다.

第 38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民族의 形式과 特色을 가진 文學·藝術·新聞·出版·放送·映画·TV 等 民族文化事業을 發展시킨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民族의 古籍을 蒐集·整理·翻譯·出版하고 民族의 名勝古蹟, 貴重한 文化財 其他 重要한 歷史的 文化遺産을 保護한다.

第 39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科學技術發展計劃을 自主的으로 決定하고 科學技術知識을 普及한다.

第 40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醫療衛生事業의 發展計劃을 自主的으로 決定하고 現代醫藥과 民族의 傳統醫藥을 發展시킨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地方病의 豫防·治療 및 婦女·幼兒의 衛生保健을 強化하고 衛生條件을 改善한다.

第 41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體育事業을 自主的으로 發展시키며 民族의 傳統體育活動을 展開하고 各民族 人民의 體位를 向上시킨다.

第 42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其他 地方과의 教育·科學

技術·文化藝術·衛生·體育 등分野의 交流와 協力を 行한다.

② 自治區·自治州의 自治機關은 國家의 規定에 따라 外國과 教育·科學技術·文化藝術·衛生·體育 등分野의 交流를 行할 수 있다.

第 43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根據하여 流動人口의 管理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44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根據하고 當該地方의 實情과 結合하여 計劃出産의 實行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45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生活環境과 生態環境을 保護·改善하며 汚染 其他 公害를 防除한다.

第 4 章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

第 46 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은 同級의 人民代表大會와 그 常務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檢察院은 또한 上級 人民檢察院에 대하여도 責任을 진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法院의 裁判事務는 最高人民法院과 上級 人民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檢察院의 事務는 最高人民檢察院과 上級 人民檢察院의 指導를 받는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의 指導要員과 職員中에는 區域自治를 實施하는 民族의 人員이 包含되어야 한다.

第 47 條 民族自治地方의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은 現地에서 通用되는 言語를 使用하여 檢察活動을 行하고 事件을 審理하여야 하며, 各民族의 公民이 當該 民族의 言語·文字를 使用하여 訴訟을 할 權

리를 保障한다. 現地에서 通用되는 言語·文字에 通하지 아니하는 訴訟參加人에 대하여는 通譯·翻譯의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法律文書에는 實際의 必要에 따라 現地에서 通用되는 1種 또는 數種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第5章 民族自治地方의 民族關係

第48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內에서 各民族이 平等한 權利를 享有하도록 保障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民族의 幹部와 大衆을 團結시켜 그들의 積極性을 充分히 發揮시키고 民族自治地方을 共同으로 建設토록 한다.

第49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民族의 幹部가 相互 言語·文字를 學習하도록 教育하고 獎勵한다. 漢族의 幹部는 現地 少數民族의 言語·文字를 學習하여야 하며 少數民族의 幹部는 當該 民族의 言語·文字를 學習·使用함과 同時에 全國에서 通用되는 標準語와 漢文을 學習하여야 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國家公務員으로서 現地에서 通用되는 2種 以上の 言語·文字를 能熟하게 使用할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報獎을 하여야 한다.

第50條 ①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에 集居하고 있는 其他 少數民族이 相應하는 自治地方 또는 民族鄉을 建立하는 것을 支援한다.

②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各民族이 經濟·教育·科學·文化·衛生·體育事業을 發展시키는 것을 支援한다.

③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에 散居하는 民族의 特性과 要求를 配慮한다.

第 51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의 各 民族에 關係되는 特殊問題를 處理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代表와 充分히 協議하고 그들의 意見을 尊重하여야 한다.

第 52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內의 各 民族 公民의 權利를 享有하도록 保障하며 또한 그들이 公民으로서 다하여야 할 義務를 履行하도록 教育한다.

第 53 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祖國·人民·勞動·科學·社會主義를 사랑하는 公衆道德을 提唱하고 當該 地方內의 各 民族 公民에 대하여 愛國主義·共產主義 및 民族政策의 教育을 實施한다. 各 民族의 幹部와 大衆이 相互 信賴하고 相互 尊重하며 國家의 統一과 各 民族의 團結을 共同으로 擁護하도록 教育한다.

第 6 章 上級 國家機關의 指導와 支援

第 54 條 上級 國家機關의 民族自治地方에 관한 決議·決定·命令 및 指示는 民族自治地方의 實情에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

第 55 條 ① 上級 國家機關은 財政·物資·技術 等の 面에서 各 民族自治地方의 經濟·文化事業의 急速한 發展을 支援한다.

② 上級 國家機關이 國民經濟 및 社會發展計劃을 策定할 때에는 民族自治地方의 特性과 要求를 配慮하여야 한다.

第 56 條 ① 國家는 各種 特別資金을 設置하여 民族自治地方의 經濟·文化事業의 發展을 支援한다.

② 國家가 設置한 各種 特別資金과 臨時的인 民族補助 特定費目에

대하여는 어느 部署도 이를 削減, 橫領, 流用할 수 없으며 民族自治地方의 正常的인 豫算收入으로 轉用할 수 없다.

第 57 條 上級 國家機關은 國家의 民族貿易政策에 根據하여 民族自治地方의 商業, 購買·販賣 및 醫藥企業에 대하여 配慮를 하여야 한다.

第 58 條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의 財政收入 및 支出의 基準을 合理的으로 審査·決定하거나 調整한다.

第 59 條 ① 上級 國家機關은 生産手段과 生活手段을 分配할 때 民族自治地方의 要求를 配慮하여야 한다.

②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과 生産者의 利益을 配慮하여 合理的인 上納調達の 基準 또는 收買·留保의 比率를 確定하여야 한다.

第 60 條 上級 國家機關은 投資·融資·租稅 및 生産·供給·運送·販賣 등의 面에서 民族自治地方이 現地의 資源을 合理的으로 利用하여 地方工業을 發展시키고 交通·「에너지」産業을 發展시키며 少數民族이 特別히 必要로 하는 製品과 傳統 手工業品の 生産을 發展, 改善시키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第 61 條 上級 國家機關은 經濟發達地區와 民族自治地方間의 經濟·技術協力を 組織, 支持하고 民族自治地方의 經營管理水準과 生産技術水準의 向上을 支援하고 促進하여야 한다.

第 62 條 ① 國家는 民族自治地方이 資源을 開發하고 建設을 行할 때 民族自治地方의 利益을 配慮하고 民族自治地方의 經濟建設에 有利한 按配를 하며 現地 少數民族의 生産과 生活를 配慮하여야 한다.

② 上級 國家機關에 從屬된 民族自治地方內의 企業·事業體는 人員을 募集·採用할 때 現地 少數民族의 人員을 優先적으로 募集·

採用하여야 한다.

③ 上級 國家機關에 從屬된 民族自治地方內의 企業·事業體는 現地 自治機關의 自治權을 尊重하고 現地 自治機關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第 63 條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 自治機關의 同意없이는 民族自治地方 所屬企業의 從屬關係를 變更시켜서는 아니된다.

第 64 條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이 現地 民族中에서 各級 幹部, 各種 專門人材와 技術勞動者를 養成하는 것을 支援하며 民族自治地方의 要求에 根據하여 各種의 形式으로써 適當한 數의 教師, 醫師, 科學技術 및 經營管理要員을 派遣하여 民族自治地方의 事業에 參加케 하며 그들의 生活과 待遇에 대하여는 適當히 配慮를 한다.

第 65 條 ① 上級 國家機關은 民族自治地方에서 教育事業의 發展을 加速하고 現地 各民族人民의 科學·文化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을 支援한다.

② 國家는 民族學院을 設立하고 大學·高等專門學校에는 民族班·民族豫科를 設立하여 少數民族의 學生을 專門적으로 募集하며 또 한 一定方向의 募集·分配의 方法을 取할 수도 있다. 大學·高等專門學校 및 中等專門學校가 新入生을 募集할 때에는 少數民族의 受驗生에 대하여 採用基準 및 條件을 適當히 緩和할 수 있다.

第 66 條 上級 國家機關은 各民族의 幹部와 大衆에 대하여 民族政策의 教育을 強化하고 民族政策과 關係 法律의 遵守·執行을 恒常 檢査하여야 한다.

第7章 附 則

第 67 條 本法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採擇된 後 1984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年 7月 1日,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에서 採擇)

(1979年 7月 8日,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委員長令 第7號로 公布)

第 1 條 中華人民共和國은 國際經濟協力과 技術交流를 擴大하기 위하여 外國의 會社·企業 其他 經濟組織 또는 個人 (以下 “外國側合營者” 라 略稱한다) 이 平等互惠의 原則에 따라 中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中華人民共和國 內에서 中國의 公司·企業 其他 經濟組織 (以下 “中國側合營者” 라 略稱한다) 과 共同으로 合營企業을 設立하는 것을 許可한다.

第 2 條 ① 中國政府는 外國側合營者의, 中國 政府의 認可를 받은 協定·契約·定款에 의한 合營企業에서의 投資, 取得하여야 할 相應한 利益 其他 合法的인 權益을 法律에 의하여 保護한다.

② 合營企業의 모든 活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法令 및 關聯條例의 規定을 遵守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 3 條 合營 當事者間에 締結한 協定·契約 및 定款은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同 委員會는 3個月 以內에 이에 대한 認可 또는 不認可를 決定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은 認可를 받은 경우, 中華人民共和國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하고 營業認可證을 交付받아 營業을 開始한다.

第 4 條 ① 合營企業의 形態는 有限責任會社로 한다. 合營企業의 登錄資本中 外國側合營者의 投資比率은 一般的으로 100 分의 25 를 不廻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合營者는 각각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利益을 分配하고 危險과 缺損을 分擔한다.

③ 合營者의 登錄資本을 讓渡할 때에는 반드시 相對方 合營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5 條 ① 合營企業의 各 當事者는 現金, 現物, 工業所有權 等으로 投資할 수 있다.

② 外國側合營者가 投資로 한 技術 또는 設備는 반드시 中國側이 必要로 하는 技術 또는 設備이어야 한다. 故意로 落後된 技術과 設備로 欺瞞하여 損害를 입힌 때에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③ 中國側合營者의 投資에는 合營企業의 經營期間中에 提供하는 土地使用權을 包含할 수 있다. 土地使用權을 中國側合營者의 投資의 一部로 하지 아니하는 때 合營企業은 中國政府에 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上記한 各項의 投資에 대하여는 合營企業의 契約 및 定款에 定하여야 한다. 그 價格(다만, 土地에 대하여는 除外한다)은 合營當事者間에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 6 條 ① 合營企業에는 理事會를 두고 그 人員과 構成은 合營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며 契約과 定款에 明記한다. 또한 合營當事者가 各各의 理事의 選任과 解任을 行한다. 理事會에는 中國側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長 1 名과 外國側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1 名 또는 2 名의 副理事長을 둔다. 理事會가 重要問題를 處理할 때에는 合營當事者가 平等互惠의 原則에 따라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② 理事會의 職權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다. 理事會는 企業發展計劃, 生産經營活動案, 豫算의 收入·支出, 利益의 分配, 勞動賃金計劃, 營業의 停止 및 社長·副社長·技師長·總理部長·會計監查部長의 任命 또는 招請, 그 職權과 待遇 等 合營企業의 모든 重

要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③ 社長 및 副社長 (또는 工場長 및 副工場長) 은 合營 當事者가 各各 分擔하는 것으로 한다.

④ 合營企業의 從業員의 雇用 및 解雇는 法律에 의하여 合營 當事者間의 協定 및 契約에 의하여 定하는 것으로 한다.

第 7 條 ① 合營企業의 總利益에서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에 의하여 이 에 課稅된 合營企業所得稅를 納付한 後 다시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 準備基金, 從業員獎勵 및 福祉基金, 企業發展基金을 控除하여 取得한 純利益은 合營 各當事者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配當되는 것으로 한다.

② 世界의 先進技術水準을 갖춘 合營企業은 利益을 내기 始作한 最初의 2 年 乃至 3 年間은 所得稅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外國側合營者가 取得한 純利益을 中國 國內에 再投資할 때에는 既納付한 所得稅의 一部 還給을 申請할 수 있다.

第 8 條 ① 合營企業은 中國銀行 또는 中國銀行의 同意를 얻은 銀行에 去來口座를 開設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의 外貨에 관한 事項은 『 中華人民共和國外換管理條例』를 遵守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 合營企業은 그 經營活動에 있어서 外國銀行으로부터 直接 資金을 調達할 수 있다.

④ 合營企業의 各種 保險은 中國保險公司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 9 條 ① 合營企業의 生産經營計劃은 主管部署에 提出하여 公簿에 올리며 또한 經濟契約에 定하였던 方式에 의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原材料·燃料 및 附帶設備 등은 中國에서 優先的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다만, 合營企業 自體가 調達한 外貨에 의하여 直接 國際市場에서 購買할 수도 있다.

③ 合營企業이 中國 國外에 製品을 販賣하는 것을 獎勵한다. 合營企業은 直接 또는 關聯 委託機關을 통하여 輸出用 製品을 國外市場에 販賣할 수 있으며 또는 中國의 對外貿易機關을 통하여 販賣할 수도 있다. 合營企業의 製品은 中國市場에서 販賣할 수도 있다.

④ 合營企業이 必要로 할 때에는 中國 國外에 그 支社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0 條 ① 外國側合營者가 法律, 協定 및 契約에 規定된 義務의 履行後에 取得한 純利益, 合營企業의 期間滿了 또는 解散時에 取得한 資金 및 其他의 資金은 合營企業의 契約에 定하여진 通貨에 의하여 中國銀行을 통하고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② 外國側合營者가 送金할 수 있는 外貨를 中國銀行에 預入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 11 條 合營企業의 外國籍 從業員의 賃金所得 其他 正當한 所得은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에 의하여 個人所得稅를 納付한 後 中國銀行을 통하여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第 12 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은 營業의 種別 또는 各各의 狀況에 따라 合營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여 定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後에 當事者 雙方이 同意하고 또한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을 경우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契約期間 延長의 申請은 契約期間 滿了 6 個月 以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3 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前에 重大한 缺損, 契約 및 定款에 規定된 義務의 一方的 不履行 또는 不可抗力 등이 發生한 때 合營 當事者는 協議에 의한 同意에 의하여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고 또한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할 경우 契約을 早期 終了할 수 있다. 契約違反에 의한 損害가 發生한 때 契約違反 當事者는 經濟的 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 14 條 合營 當事者間에 紛爭이 發生하고 理事會의 協議에 의한 解決이 不可能한 때에는 中國의 仲裁機關이 調停 또는 仲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合營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其他의 仲裁機關이 仲裁할 수도 있다.

第 15 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法의 修正 및 改正權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屬한다.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1983年 9月 20日, 國務院 公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以下“中外合資企業法”이라 略稱한다)의 順調로운 實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特別히 本 條例를 制定한다.

第 2 條 中外合資企業法에 의하여 中國 國內에서의 設立을 認可받은 中外合資經營企業(以下“合資企業”이라 略稱한다)은 中國의 法人이며 中國 法律의 管轄과 保護를 받는다.

第 3 條 中國 國內에 設立된 合資企業은 中國의 經濟發展과 科學技術水準의 向上을 促進하고 社會主義現代化建設에 寄與하여야 한다. 合資企業의 設立을 認定하는 主要 業種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開發, 建築材料工業, 化學工業, 冶金工業
2. 機械製造工業, 機器·計器工業, 海洋石油採掘設備의 製造業
3. 電子工業, 計算機工業, 通信設備의 製造業
4. 輕工業, 紡織工業, 食品工業, 醫藥品 및 醫療用機器工業, 包裝工業
5. 農業, 牧畜業, 養殖業
6. 觀光 및 「서어비스」業

第 4 條 設立을 申請하는 合資企業은 經濟的 效果를 重視하고 다음의 1個號 또는 數個號의 要求에 合致되어야 한다.

1. 先進的 技術設備과 科學的 管理方法을 採用하여 製品의 品種을 增加시키고 製品의 品質과 生産量을 提高시키며 「에너지」

와 材料를 節約할 수 있을 것

2. 企業의 技術改善에 有利하고 적은 投資로써 빠른 效果가 나타나며 큰 收益을 얻을 수 있을 것
3. 製品輸出을 擴大하고 外貨收入을 增加시킬 수 있을 것
4. 技術者와 經營管理者를 育成·訓練시킬 수 있을 것

第 5 條 設立을 申請하는 合營企業이 다음의 1 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設立을 認可하지 아니한다.

1. 中國의 主權을 損傷시키는 경우
2. 中國의 法律에 違反하는 경우
3. 中國의 國民經濟發展의 要求에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
4. 環境汚染을 發生시키는 경우
5. 締結된 協定, 定款이 明確히 不公平한 것으로서 合營者 一方의 權利·利益에 損害를 미치는 경우

第 6 條 ① 別途로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中國側合營者의 政府主管部署는 合營企業의 主管部署 (以下 “企業主管部署” 라 略稱한다) 이다. 合營企業의 中國側合營者가 둘 以上이고 또한 다른 部署 또는 地域에 所屬하는 때에는 關係있는 部署 또는 地域에서 協議에 의하여 1 個의 企業主管部署를 決定한다.

② 企業主管部署는 合營企業에 대하여 指導·支援·監督의 責任을 진다.

第 7 條 合營企業은 法律·法規 및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範圍內에서 自主적으로 經營管理를 行할 權限을 가진다. 關係 各部署는 이를 支持, 協力하여야 한다.

第 2 章 設立과 登記

第 8 條 ① 中國 國內에 合營企業을 設立할 때에는 中華人民共和國 對外經濟貿易部 (以下 “對外經濟貿易部” 라 略稱한다) 의 審査· 認可를 받아야 한다. 對外經濟貿易部는 認可後 認可證書를 發給한다.

② 다음의 條件을 具備한 경우, 對外經濟貿易部는 關係있는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 또는 國務院의 關係 部· 局 (以下 “受託機關” 이라 略稱한다) 에 認可를 委託할 수 있다.

1. 投資總額이 國務院이 定하는 金額內이며 中國側合營者의 資金 調達先이 이미 確保되어 있는 것

2. 國家에 의한 原材料의 追加支給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고 燃料, 動力, 交通· 輸送, 輸出割當 等の 全國的 調整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③ 受託機關의 合營企業의 設立을 認可한 後 對外經濟貿易部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리는 것으로 하며 對外經濟貿易部는 認可證書를 發給한다 (以下 對外經濟貿易부와 受託機關을 “認可機關” 이라 統稱한다)

第 9 條 ① 合營企業을 設立할 때에는 다음의 手續을 取한다.

1. 中國側合營者가 企業主管部署에 대하여 外國側合營者와 合營企業을 設立하겠다는 事業의 建議書 및 初步的 企業化調查 (Pre-feasibility study) 報告를 提出한다. 同建議書와 初步的 企業化 調查報告가 企業主管部署의 審査· 同意를 받고 또 한 認可機關에 送付되어 認可된 後 各 當事者는 비로소 企業化調查 (feasibility study) 를 中心으로 하는 諸作業을 行할

수 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協議한 後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定款을 締結한다.

2. 合營企業의 設立을 申請할 때에는 中國側合營者가 責任을 지
고 다음의 正式書類를 提出한다.

- (1) 合營企業 設立의 申請書
- (2) 合營當事者가 共同으로 作成한 企業化調查報告
- (3) 合營當事者의 授權代表가 署名한 合營企業의 協定·契約 및
定款
- (4) 合營當事者가 指名한 合營企業의 理事長·副理事長·理事
의 名簿
- (5) 中國側合營者의 企業主管部署 및 合營企業所在地의 省·自
治區·直轄市 人民政府가 當該 合營企業의 設立에 대하여
記述한 意見

② 上記한 各 書類는 中國語로 記入하여야 한다. 其中 (2), (3), (4)
의 書類는 同時에 各當事者가 協定한 1 個의 外國語로 記入할 수
도 있다. 2 種의 文字로 記入된 書類는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第 10 條 認可機關은 本 條例의 第 9 條 第 2 項에 定하는 全書類를 受
取한 날로부터 3 個月以內에 認可 또는 不認可를 決定한다. 認可
機關은 上記 書類에서 不適切한 點을 發見한 경우 期限付 修正을
要求하여야 하며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認可하지 아니한다.

第 11 條 申請者는 認可證書를 受取한 後 1 個月 以內에 『中華人民
共和國中外合資經濟企業登記管理規則』의 規定에 따라 認可證書를
所持하고 合營企業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工商行政管理局(以
下 “登記管理機關”이라 略稱한다)에서 登記手續을 取하여야 한
다. 合營企業의 營業許可證이 交付된 날을 當該 合營企業의 創立

일로 한다.

第 12 條 外國投資家が 中國에서 合營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나 中國側의 具體的인 協力相對가 없는 경우에는 合營企業의 基礎方案을 提出하고 中國國際投資公司 또는 關係省·自治區·直轄市の 信託投資機關 및 關係 政府部署, 民間組織에 委任하여 協力相對를 紹介 받을 수 있다.

第 13 條 ① 本章에서 “合營企業協定”이라 함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 設立의 一部 要點 및 原則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作成한 書類를 말한다.

② “合營企業契約”이라 함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設立을 위하여 相互의 權利·義務關係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作成한 書類를 말한다.

③ “合營企業定款”은 合營企業契約에 定하는 原則에 따라 各 當事者의 一致된 同意를 거쳐 合營企業의 目的·組織原則 및 經營管理方法 等の 事項을 定하는 書類이다.

④ 合營企業協定과 合營企業契約이 抵觸되는 때에는 合營企業契約에 準據한다.

⑤ 各 當事者의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合營企業協定을 作成하지 아니하고 合營企業契約 및 定款만을 作成할 수 있다.

第 14 條 ① 合營企業契約에는 다음의 主要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各 當事者의 名稱·登記國·法定所在地 및 法定代表의 姓名·職務·國籍
2. 合營企業의 名稱·法定所在地·目的·經營範圍 및 規模
3. 合營企業의 投資總額·資本金, 各 當事者의 出資額·出資比率·出資方式·出資拂入期間 및 出資額의 未納·讓渡에 관

한 規定

4. 各 當事者의 利益分配 및 缺損分擔의 比率
5. 合營企業理事會의 構成, 理事定員의 配分 및 社長·副社長
其他 高級管理者의 職責·權限·招請方法
6. 採用하는 主要 生産設備·生産技術과 그 調達先
7. 原材料購買와 製品販賣의 方式, 製品의 中國 國內와 國外에
서의 販賣比率
8. 外貨資金의 收支計劃
9. 財務·會計·監査의 處理原則
10. 勞務管理·賃金·福祉·勞動保險 等の 事項에 관한 規定
11. 合營企業의 期間, 解散과 清算의 手續
12. 契約違反의 責任
13. 各 當事者間의 紛爭을 解決하는 方式과 手續
14. 契約의 本文에 採用하는 文字와 契約發效의 條件

② 合營企業契約의 添附書類는 合營企業契約과 同等한 效力을 가
진다.

第 15 條 合營企業契約의 締結·效力·解釋·執行 및 그 紛爭의 解決
에는 모두 中國의 法律을 適用한다.

第 16 條 合營企業定款에는 다음의 主要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合營企業의 名稱 및 法定所在地
2. 合營企業의 目的·經營範圍 및 合營期間
3. 各 當事者의 名稱·登記國·法定所在地, 法定代表의 姓名·
職務·國籍
4. 合營企業의 投資總額·資本金, 各 當事者의 出資額·出資比
率·出資額의 讓渡規定, 利益分配와 缺損分擔의 比率

5. 理事會의 構成·職權 및 議事規則, 理事의 任期, 理事長·副理事長의 職責
6. 管理機關의 配置·執務規則, 社長·副社長 其他 高級管理者의 職責과 任免方法
7. 財務·會計·監査制度의 原則
8. 解散 및 清算
9. 定款의 改正節次

第 17 條 合營企業의 協定·契約 및 定款은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은 後 效力을 發生한다. 그 改正時에도 마찬가지이다.

第 18 條 認可機關과 登記管理機關은 合營企業의 契約·定款의 執行에 대하여 監督·檢査의 責任을 진다.

第 3 章 組織形態와 資本金

第 19 條 ① 合營企業은 有限責任會社로 한다.

② 各 當事者의 合營企業에 대한 責任은 各各 負擔한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第 20 條 合營企業의 投資總額 (企業借入金을 包含한다)이라 함은 合營企業契約·定款에 定하는 生産規模에 따라 投下할 必要가 있는 基本建設資金과 生産·運轉資金의 總計를 말한다.

第 21 條 ① 合營企業의 資本金이라 함은 合營企業 設立을 위하여 登記管理機關에 登記한 資本總額을 말하며 各 當事者가 負擔한 出資額의 合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合營企業의 資本金은 一般的으로 人民元으로 表示하여야 하나 各 當事者가 約定한 外國通貨로 表示할 수도 있다.

第 22 條 合營企業은 合營期間中 資本金을 減少시켜서는 아니된다.

第 23 條 ① 一方의 當事者가 出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第 3 者에게 讓渡할 경우에는 相對方 當事者의 同意를 얻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一方이 出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할 때 相對方은 先買權을 가진다.

③ 一方이 第 3 者에게 出資額을 讓渡하는 條件은 相對方에게 讓渡하는 條件보다 優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上記의 規定에 違反한 경우 그 讓渡는 無效로 한다.

第 24 條 合營企業의 資本金의 增額·讓渡 또는 其他方式에 의한 處置는 理事會에서 議決하고 또한 原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 原登記管理機關에서 變更登記의 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第 4 章 出 資 方 式

第 25 條 合營者는 通貨로써 出資할 수도 있으며 建築物, 工場建物,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權, 技術「노하우」, 土地使用權 등을 評價하여 出資할 수도 있다. 建築物, 工場建物,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權, 技術「노하우」로 出資할 경우 그 評價는 各 當事者가 公平合理의 原則에 따라 協議·決定하거나 各 當事者가 同意하는 第 3 者에게 評價를 依賴한다.

第 26 條 ① 外國側合營者가 出資하는 外國通貨는 拂入日에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外換管理局 (以下 “國家外換管理局” 이라 略稱한다) 이 發表한 換率에 따라 人民幣元으로 換算하거나 또는 約定한 外國通貨로 算入한다.

② 中國側合營者が 出資한 人民元の 現金을 外國通貨로 換算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拂入日에 國家外換管理局이 發表한 換率에 의한다.

第 27 條 外國側合營者が 出資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는 다음의 各 條件에 合致되어야 한다.

1. 合營企業의 生産에 不可缺한 것일 것
2. 中國에서 生産할 수 없는 것 또는 生産할 수는 있으나 價格이 높거나 技術性能 및 供給時期에 있어서 必要를 充足시킬 수 없는 것
3. 評價는 同種의 機械設備 其他 物料의 그 時點에서의 國際市場價格을 上廻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28 條 外國側合營者が 出資하는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는 다음 條件의 1 에 合致되어야 한다.

1. 中國에서 緊急히 必要한 新製品 또는 需要가 많은 輸出品을 生産할 수 있는 것
2. 既存製品의 性能·品質을 顯著히 改善하고 生産能率을 向上시킬 수 있는 것
3. 原材料·燃料·動力을 顯著히 節約할 수 있는 것

第 29 條 外國側合營者が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로 出資할 때에는 合營契約의 添附書類로서 當該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의 關係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이것에는 特許證書 또는 商標登錄證書의 寫本, 有效성과 그 技術의 特性, 實用價值, 評價計算의 根據, 中國側合營者と 締結한 評價協定 等의 關係書類가 包舍된다.

第 30 條 外國側合營者が 出資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

權 또는 技術「노하우」는 中國側合營者의 企業主管部署의 審査·同意를 받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31 條 各 當事者는 契約에 定한 期限에 各各의 出資額의 拂入을 完了하여야 한다. 期間을 經過하고도 拂入하지 아니하거나 拂入을 完了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規定에 따라 延滯利子를 支拂하거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 32 條 各 當事者가 出資額을 拂入한 後에는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가 이를 檢證하고 出資檢證報告를 發行한다. 合營企業은 이에 根據하여 出資證明書를 發給한다. 出資證明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記한다. 合營企業의 名稱, 合營企業의 創立年月日, 合營者의 名稱 (또는 姓名) 과 그의 出資額·出資年月日, 出資證明書의 發給年月日

第 5 章 理事會와 經營管理機關

第 33 條 理事會는 合營企業의 最高權力機關이며 合營企業의 모든 重大問題를 決定한다.

第 34 條 ① 理事會의 成員은 3 人을 下廻하여서는 아니된다. 理事會의 定員配分은 各 當事者가 出資比率을 參照하여 決定한다.

② 理事는 各 當事者가 指名한다. 理事長은 中國側合營者가 指名하고 副理事長은 外國側合營者가 指名한다.

③ 理事의 任期는 4 年으로 하며, 各 當事者가 繼續 指名할 경우에는 連任할 수 있다.

第 35 條 ① 理事會는 每年 적어도 1 回 開催하며 理事長이 召集 및 主宰한다. 理事長이 召集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長이 副理事長 其

他 理事에게 召集·主宰를 委任한다. 3 分の 1 以上の 理事의 提議가 있을 경우 理事長은 臨時理事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 理事會는 3 分の 2 以上の 理事가 出席하여야만 開催할 수 있다. 出席할 수 없는 理事는 委任狀을 提出하여 他人에게 出席과 表決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理事會는 一般的으로 合營企業의 法定所在地에서 開催하여야 한다.

第 36 條 ① 다음의 事項은 理事會에 出席한 理事의 全員一致에 의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1. 合營企業定款의 改正
2. 合營企業의 中途解散과 解散
3. 合營企業의 資本金의 增額·讓渡
4. 合營企業과 他 經濟組織과의 合併

② 其他의 事項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明記된 議事規則에 의하여 議決할 수 있다.

第 37 條 理事長은 合營企業의 法定代表이다. 理事長이 職責을 履行할 수 없는 때에는 副理事長 其他의 理事에게 合營企業을 代表하는 權限을 賦與하여야 한다.

第 38 條 合營企業은 經營管理機關을 設立하여 企業의 日常經營管理를 擔當케 한다. 經營管理機關에는 社長 1 名, 副社長 若干名을 둔다. 副社長은 社長의 職務를 補佐한다.

第 39 條 社長은 理事會의 諸議決을 執行하고 合營企業의 日常經營管理를 組織·指導한다. 社長은 理事會로부터 賦與받은 權限內에서 對外的으로 合營企業을 代表하고 對內的으로 部下職員을 任免하며 理事會에서 賦與받은 其他의 職權을 行使한다.

第 40 條 ① 社長·副社長은 合營企業의 理事會가 招請하며 中國公民이 擔當하거나 外國公民이 擔當할 수도 있다.

② 理事會의 招請이 있을 경우 理事長·副理事長·理事는 合營企業의 社長·副社長 其他의 高級管理職을 兼任할 수 있다.

③ 社長은 重要問題를 處理할때 副社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社長 또는 副社長은 他 經濟組織의 社長 또는 副社長을 兼任하여서는 아니되며 他 經濟組織의 自企業과의 商業競爭에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41 條 社長·副社長 其他의 高級管理者에게 不正行爲 또는 重大한 職務怠慢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隨時로 解任할 수 있다.

第 42 條 合營企業이 外國 및 「홍콩」·「마카오」에 支社(販賣機構를 包含한다)를 設立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對外經濟貿易部の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章 技 術 導 入

第 43 條 本章에서 技術導入이라 함은 合營企業이 技術移轉의 方式에 의하여 第 3 者 또는 合營者로부터 必要한 技術을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第 44 條 合營企業이 導入하는 技術은 實用的·先進的인 것으로서 그 製品이 國內에서 顯著한 社會的 經濟效果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國際競爭力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第 45 條 技術移轉協定을 締結할 때에는 반드시 合營企業이 獨立하여 經營管理를 行할 權利를 保護하고 또한 本條例 第 29 條의 規定

에 의하여 技術讓渡側에 關係資料의 提供을 要求하여야 한다.

第 46 條 ① 合營企業이 締結한 技術移轉協定은 企業主管部署의 審査·同意를 얻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技術移轉協定은 다음의 規定에 合致되어야 한다.

1. 技術使用料는 公平하고 正當하여야 하며 一般的으로 割引方式으로 支拂할 것.
割引方式에 의하여 技術使用料를 支拂할 때 割引率은 通常의 國際的 水準을 上廻하여서는 아니된다. 割引率은 當該技術에 의하여 生産된 製品의 純賣上高에 따라 또는 雙方이 協定한 其他의 合理的인 方式에 의하여 計算한다.
2. 別途로 雙方의 協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技術讓渡側은 技術引受側에 製品의 輸出地域·數量·價格을 制限하여서는 아니된다.
3. 技術移轉協定の 期間은 一般的으로 10 年을 超過하지 아니한다.
4. 技術引受側은 技術移轉協定の 期間滿了後에도 繼續 當該技術을 使用할 權利를 가진다.
5. 技術移轉協定을 締結한 雙方에 의한 改善技術의 相互交換條件은 對等하여야 한다.
6. 技術引受側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調達先으로부터 必要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및 原材料를 購入할 權利를 가진다.
7. 中國의 法律·法規로 禁止된 不當한 制限條項을 包含시켜서는 아니된다.

第7章 土地使用權과 그 費用

第47條 合營企業은 土地使用에 있어서 節約의 原則을 貫徹하여야 한다. 必要한 土地는 合營企業이 所在地의 市(縣)級 土地管理部署에 申請하고 審査·許可를 받은 後 契約을 締結하여 土地使用權을 取得한다. 契約에는 土地의 面積·場所·用途, 契約期間, 土地使用權의 費用(以下 “土地使用料”라 略稱한다), 雙方의 權利와 義務, 契約違反의 罰則 等を 明記하여야 한다.

第48條 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土地의 使用權을 이미 中國側合營者가 가지고 있는 경우, 中國側合營者는 이를 合營企業에 出資할 수 있다. 그 評價額은 同種의 土地使用權을 取得하는데 支拂되는 使用料와 同一하여야 한다.

第49條 土地使用料基準은 當該 土地의 用途, 地理·環境條件, 土地收用·退去費用 및 基礎施設에 대한 合營企業의 要求 等の 要素에 根據하여 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가 定하고 또한 對外經濟貿易부와 國家의 土地主管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第50條 ① 農業·牧畜業에 從事하는 合營企業은 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의 同意를 얻어 合營企業의 營業收入의 百分率에 의하여 土地使用料를 所在地의 土地主管部署에 納付할 수 있다.

② 經濟未發達地域에서 開發事業에 從事하는 때에는 所在地人民政府의 同意를 얻을 경우 土地使用料에 대하여 特別히 優待할 수 있다.

第51條 ① 土地使用料는 使用을 開始하고부터 5年間은 調整하지

아니한다. 그 後 經濟의 發展, 需給狀況의 變化 및 地理·環境條件의 變化에 따라 調整이 必要한 때에도 調整의 間隔은 3年보다 짧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土地使用料를 中國側合營者의 投資로 할 경우에는 當該 契約期間內에는 調整할 수 없다.

第 52 條 合營企業이 本 條例 第 47 條에 의하여 土地使用權을 取得한 때 그 土地使用料는 契約에 定한 使用期間이 開始된 때부터 年度別로 納付하는 것으로 하며 第 1 曆年의 使用期間이 半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半年으로 計算하고 半年 未滿인 경우에는 免除한다. 契約期間內에 土地使用料가 調整된 경우에는 調整된 年度부터 새로운 費用基準으로 納付하여야 한다.

第 53 條 合營企業은 使用이 許可된 土地의 使用權만 가지며 所有權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 使用權은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8 章 計劃·購買 및 販賣

第 54 條 合營企業의 基本建設計劃(施工陣, 各種 建築材料, 물, 電氣, 「가스」 등을 包含한다)은 承認된 企業化調查報告에 依據하여 作成하고 또한 企業主管部署의 基本建設計劃에 包含시키는 것으로 하며 企業主管部署는 이를 優先시켜 그 實施를 保證하여야 한다.

第 55 條 合營企業의 基本建設資金은 合營企業의 口座開設銀行이 統一的으로 管理한다.

第 56 條 ① 合營企業이 合營契約에 定하는 經營範圍와 生産規模에 따라 策定한 生産經營計劃은 理事會에서 承認되고부터 執行하며 또

한 企業主管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② 企業主管部署 및 各級의 計劃管理部署는 合營企業에 대하여 指示的 生産經營計劃을 下達하지 아니한다.

第 57 條 合營企業은 必要한 機械設備·原材料·燃料·附屬品·輸送手段 및 事務用品 等(以下“物資”라 略稱한다)을 中國에서 購入할 것인가 外國에서 購入할 것인가를 獨自的으로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同等한 條件下에서는 可能한 限 優先的으로 中國에서 購入하여야 한다.

第 58 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購入하는 物資의 供給經路는 다음과 같다.

1. 計劃分配에 屬하는 物資는 企業主管部署의 供給計劃에 包含시키며 物資·商業部署 또는 生産企業이 契約에 따라 供給을 保證한다.
2. 物資·商業部署가 取扱하는 物資는 關係있는 物資取扱單位로부터 購入한다.
3. 市場의 自由流通에 屬하는 物資는 生産企業 또는 仲介販賣·代理販賣機構로부터 購入한다.
4. 對外貿易公司가 取扱하는 輸出物資는 關係있는 對外貿易公司로부터 購入한다.

第 59 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購入하는 必要한 事務·生活用品은 制限을 받지 아니하고 必要量에 따라 購入할 수 있다.

第 60 條 中國政府는 合營企業이 製品을 國際市場에서 販賣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 61 條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이 中國에서 緊急히 必要하거나 또는 輸入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인 경우에는 國內市場에서의

販賣를 주로 할 수 있다.

第 62 條 合營企業은 그 製品을 獨自的으로 輸出할 權限을 가진다.

또한 外國側合營者의 販賣機構 또는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 代理 販賣 또는 仲介販賣를 委託할 수도 있다.

第 63 條 ① 合營企業이 合營契約에 定하는 經營範圍內에서 當該 企業의 生産에 必要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原材料·燃料를 輸入할 때, 國家가 輸入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每年 1回 計劃을 作成하고 半年에 1回 許可를 申請한다. 外國側合營者가 現物出資로 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資는 認可機關의 認可書類에 依據하여 直接 輸入許可證을 取得하여 輸入할 수 있다. 合營契約에 定하는 範圍를 超越하여 輸入하는 物資로서 國家가 輸入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은 別途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이 生産한 製品은 獨自的으로 輸出할 수 있지만 國家가 輸出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當該 企業의 年度輸出計劃에 따라 半年에 1回 許可를 申請한다.

第 64 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製品을 販賣할 때에는 다음의 方法에 의한다.

1. 計劃分配에 屬하는 物資는 企業主管部署를 통하여 物資管理部署의 分配計劃에 包含시키고 計劃에 따라 指定된 需要家에게 販賣한다.
2. 物資·商業部署가 取扱하는 物資는 物資·商業部署에 發注한다.
3. 上記 2種의 物資의 計劃收買外의 部分 및 上記 2種에 屬하지 아니하는 物資에 대하여 合營企業은 獨自的으로 販賣하

거나 關係單位에 代理販賣를 委託할 權限을 가진다.

4. 合營企業이 輸出하는 製品이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서 輸入하여야 하는 物資인 경우 合營企業은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 販賣하고 外貨를 受取할 수 있다.

第 65 條 合營企業이 國內에서 購入하는 物資 및 必要로 하는 「서어비스」의 價格은 다음의 規定에 의한다.

1. 輸出製品의 生産에 直接 使用하는 金·銀·白金·石油·石炭·木材 等 6 種의 原料는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對外貿易部署가 發表하는 國際市場價格으로 計算하고 外貨 또는 人民元으로 支拂한다.
2. 中國의 對外貿易公司가 取扱하는 輸出商品 또는 輸入商品을 購入할 때에는 供給者·需要者 雙方이 國際市場價格을 參考하고 協議하여 價格을 決定하며 外貨로 支拂한다.
3. 中國 國內에서 販賣되는 製品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燃料用炭·車輛用油, 本條 1, 2 號에 記載한 以外の 物資를 購入할 때의 價格 및 合營企業에 水·電氣·「가스」·熱·貨物輸送·勞務·工事設計·相談「서어비스」·廣告 等を 提供할 때의 費用은 國營企業과 同等하게 待遇하며 人民元으로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第 66 條 ① 合營企業이 中國 國內에서 販賣하는 製品에 대하여는 物價管理部署의 許可를 얻어 國際市場價格을 參照하여 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國家가 定한 價格에 依據하여 品質에 따라 價格을 決定하며 人民元으로 受取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이 決定한 製品販賣價格은 企業主管部署와 物價管理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② 合營企業의 輸出製品價格은 合營企業이 獨自的으로 決定하고 企業主管部署와 物價管理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第 67 條 合營企業과 中國의 其他 經濟組織과의 經濟去來에서는 關係法の의 規定 및 雙方이 締結한 契約에 따라 經濟的 責任을 지며 契約紛爭을 解決한다.

第 68 條 合營企業은 關係規定에 따라 生産·供給·販賣의 統計表를 作成하고 企業主管部署·統計部署 其他의 關係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第 9 章 稅 務

第 69 條 合營企業은 中華人民共和國의 關係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 하여 各種의 稅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 70 條 合營企業의 從業員은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에 따라 個人所得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71 條 ① 合營企業이 다음의 物資를 輸入할 때에는 關稅와 工商 統一稅를 免除한다.

1. 契約의 規定에 따라 外國側合營者의 現物出資로 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 (其他의 物料라 함은 合營企業의 工場<作業場>建設 및 機械의 設置·固定에 必要한 材料를 말한다. 以下 同一하다)
2. 合營企業이 投資總額內의 資金으로 輸入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
3.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 合營企業이 增資하여 輸入한 國內에서 生産·供給을 保證할 수 없는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

4. 合營企業이 輸出製品의 生産을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輸入한 原材料·補助材料·素子·部品·包裝材料

② 上記한 免稅輸入物資가 許可를 얻어 中國 國內에서 轉賣되거나 中國 國內에서 販賣하는 製品으로 轉用될 때에는 規定대로 稅金を 納付 또는 追加하여야 한다.

第72條 ①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輸出製品은 國家가 輸出을 制限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中華人民共和國 財政部の 許可를 얻어 工商統一稅를 免除할 수 있다.

②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國內販賣製品에 대하여는 開業 初期에 納稅가 困難한 경우 工商統一稅의 一定期間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第10章 外換管理

第73條 合營企業의 外換에 관한 모든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外換管理暫定條例』와 關係管理規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74條 ① 合營企業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工商行政管理局이 發給한 營業許可證을 基礎로 하여 中國銀行 또는 其他의 指定銀行에 外貨預金口座와 人民幣預金口座를 開設하며, 口座開設銀行이 受·取·支拂을 監督한다.

② 合營企業의 모든 外貨收入은 口座開設銀行의 外貨預金口座에 預入시키며 모든 外貨支出은 그 外貨預金口座로부터 支拂되어야 한다. 預金金利는 中國銀行이 發表한 利率에 의한다.

第75條 合營企業의 外貨收支는 通常 收支의 均衡을 保持하여야 한다. 認可된 合營企業의 企業化調查報告, 契約에 의하여 製品의 國

內販賣를 주로 하기 위하여 外貨의 均衡을 期할 수 없는 경우에는 關係 省·市·自治區 人民政府 또는 國務院 主管部署가 留保外貨 中에서 調整·解決하며, 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對外經濟貿易 部가 中華人民共和國 國家計劃委員會와 合同으로 審查한 後 計劃에 包含시켜 解決한다.

第 76 條 合營企業이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의 銀行에 外貨預金口座를 開設할 때에는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의 許可를 얻고 또한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에 受取·支拂狀況을 報告하며 銀行殘高票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 77 條 合營企業이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에 設立한 支社는 現地에 中國銀行이 있는 경우 中國銀行에 口座를 開設하여야 한다. 그 年度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는 合營企業을 통하여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78 條 合營企業은 經營業務의 必要에 따라 『中國銀行의 中外合資經營企業에 대한 貸付暫定規則』에 따라 中國銀行에 外貨貸付, 人民幣貸付를 申請할 수 있다. 合營企業에 대한 貸出金利는 中國銀行이 發表한 利率에 의한다. 合營企業은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의 銀行으로부터 外貨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다만,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第 79 條 合營企業의 外國籍 및 「홍콩」·「마카오」從業員의 賃金 其他의 正當한 收益은 法律에 依據하여 納稅한 後, 中國 國內에서 使用하는 經費를 控除한 殘餘部分을 中國銀行에 申請하여 全額 送金할 수 있다.

第 11 章 財務와 會計

第 80 條 合營企業의 財務·會計制度는 中國의 關係法律, 財務·會計制度의 規定에 依據하고 合營企業의 事情을 考慮하여 定하고 또 한 現地 財政部署·稅務機關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第 81 條 合營企業은 總會計士를 두어 社長을 도와 企業의 財務·會計를 責任지고 主宰케 한다. 必要한 때에는 副總會計士를 둘 수도 있다.

第 82 條 合營企業은 會計檢査士를 두어 (小企業은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合營企業의 財務收支와 會計計定을 審査·檢査케 하여 理事會와 社長에게 報告케 한다.

第 83 條 合營企業의 會計年度는 曆年制를 採用하고 陽曆 1 月 1 日부터 12 月 31 日까지를 1 會計年度로 한다.

第 84 條 合營企業의 會計에서는 國際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發生主義와 貸借記帳法을 採用하여 記帳한다. 私製의 證憑·帳簿·報告書는 모두 中國語로 記入하여야 한다. 同時에 各 當事者가 約定한 1 個의 外國語로 記入할 수도 있다.

第 85 條 合營企業은 原則的으로 人民元을 記帳의 本位貨幣로 하나 各 當事者가 約定하고 있는 1 個의 外國通貨를 本位貨幣로 할 수도 있다.

第 86 條 ① 合營企業의 計定은 記帳本位貨幣에 의하여 記錄하는 外에 現金, 銀行預金 其他의 貨幣費目 및 債權·債務, 收益, 費用등이 記帳本位貨幣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히 收納·支拂 通貨에 의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② 外國通貨로 記帳하는 合營企業은 外國通貨에 의한 會計報告書

를 作成하는 外에 別途로 人民元으로 換算한 會計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③ 換率의 差異에 의하여 發生한 換損益은 實數를 基準으로 하여 當期 損益으로서 帳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記帳換率이 變하는 경우 外貨關係計定の 帳簿殘高는 모두 調整하지 아니한다.

第 87 條 合營企業이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에 따라 納付한 後의 利益分配의 原則은 다음과 같다.

1. 豫備基金, 從業員獎勵·福祉基金, 企業發展基金을 控除한다. 控除比率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2. 豫備基金은 合營企業의 缺損의 補填에 使用하는 外에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 當該 企業의 增資·生産擴大에 使用할 수도 있다.
3. 本條 第 1 號의 規定에 따라 3 個의 基金을 控除한 後의 分配利益은 理事會가 分配를 確定한 경우 各 當事者의 出資比率에 따라 分配하여야 한다.

第 88 條 前年度의 缺損이 補填되지 아니한 때에는 利益을 分配하여서는 아니된다. 前年度에 分配되지 아니한 利益은 當該年度의 利益에 包含시켜 分配할 수 있다.

第 89 條 ① 合營企業은 各 當事者, 現地 稅務機關, 企業主管部署 및 同級의 財政部署에 4 分期 및 年度會計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年度會計報告書는 그 寫本을 原認可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90 條 合營企業의 다음의 書類·證明書·報告書는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의 檢證을 받고 證明을 取得하여야만 有效하다.

1. 各 當事者의 出資證明書(物料·土地所有權·工業所有權·技術「노하우」로 出資하는 경우에는 各 當事者가 署名·同意한 財産評價明細書 및 그 協定書類를 包含하여야 한다)

2. 合營企業의 年度會計報告書

3. 合營企業의 清算會計報告書

第 12 章 從 業 員

第 91 條 合營企業從業員의 募集·招請·辭任·辭職·賃金·福祉·勞動保險·勞動保護·勞動法規 等の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勞動管理規定』에 依據하여 處理한다.

第 92 條 合營企業은 從業員이 生産·管理技能面에서 現代的 企業의 要請에 副應할 수 있도록 業務·技術訓練을 強化하고 嚴格한 考課制度를 確立하여야 한다.

第 93 條 合營企業의 賃金·獎勵制度는 勞動에 따라 分配하고 많이 일하면 報酬도 많다는 原則에 合致되게 하여야 한다.

第 94 條 正·副社長·正·副技師長, 正·副總會計士, 會計檢査士等의 高級管理者의 賃金·待遇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 13 章 勞 組

第 95 條 合營企業의 從業員은 『中華人民共和國勞組(譯註:原語는 工會)法』(以下“中國勞組法”이라 略稱한다.) 및 『中國勞組規約』의 規定에 의하여 末端 勞組組織을 設立하여 勞組活動을 할 權利를 가진다.

第 96 條 合營企業의 勞組는 從業員의 利益을 代表하며, 從業員을 代表하여 合營企業과 勞組契約을 締結하고 또한 契約의 執行을 監視

할 權限을 가진다.

第 97 條 合營企業 勞組의 基本的 任務는 法律에 의하여 從業員의 民主的 權利와 物質的 利益을 擁護하는 것, 合營企業에 協助하여 福祉·獎勵基金을 決定하고 合理的으로 使用하는 것, 從業員의 政治·業務·科學·技術·業務知識의 學習을 組織하고 文藝·「스포츠」活動을 展開하는 것, 勞動規律을 遵守하고 企業의 經濟諸任務의 達成에 努力하도록 從業員을 教育하는 것이다.

第 98 條 ① 合營企業의 理事會가 合營企業의 發展計劃·生産經營活動 等の 重大事項을 討議할 때 勞組의 代表는 會議에 參席하고 從業員의 意見과 要求를 反映시킬 權限을 가진다.

② 理事會가 從業員에게 關係있는 賞罰, 賃金制度, 生活福祉, 勞動保護·保險 等の 問題를 檢討·決定할 때 勞組의 代表는 會議에 參席할 權限을 가지며, 理事會는 勞組의 意見을 聽取하고 勞組의 協力を 求하여야 한다.

第 99 條 合營企業은 自企業 勞組의 活動을 積極 支持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은 『中國勞組法』의 規定에 따라 勞組組織에 必要한 建物과 設備을 提供하여 事務, 會議, 從業員의 集團福祉·文化·體育事業에 使用케 하는 것으로 한다. 合營企業은 每月 從業員의 實質賃金總額의 2%를 勞組經費로 하며, 企業勞組는 이를 中華全國總工會가 制定한 勞組經費管理規則에 따라 使用한다.

第 14 章 期間·解散 및 清算

第 100 條 合營企業의 合營期間은 各各의 業種과 事業의 具體的 狀況에 따라 各 當事者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一般事業의 合營期間

은 原則적으로 10年 乃至 30年으로 한다. 投資가 크고 工期가 길며 資本利率이 낮은 事業은 合營期間을 30年 以上으로 할 수도 있다.

第 101 條 ① 合營企業의 合營期間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協定 契約·定款中에 規定한다. 合營期間은 合營企業의 營業許可證 交付日로부터 起算한다.

② 各 當事者가 合營期間의 延長에 同意한 경우에는 合營期間 滿了의 6個月前에 各 當事者의 授權代理가 署名한 合營期間 延長의 申請書를 認可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認可機關은 申請書를 受取한 날로부터 1個月內에 回答을 하여야 한다.

③ 合營企業은 合營期間 延長을 認可받은 後『 中華人民共和國 合資經營企業登記管理規則』의 規定에 따라 變更登記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第 102 條 ① 合營企業은 다음의 경우에 解散한다.

1. 合營期間이 滿了한 경우
2. 企業에 重大한 缺損이 發生하여 經營을 繼續할 수 없는 경우
3. 合營의 一方이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業務를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企業이 經營을 繼續할 수 없게 된 경우
4. 自然災害·戰爭 等の 不可抗力에 의하여 重大한 損害가 發生하여 經營을 繼續할 수 없는 경우
5. 合營企業이 그 經營目的을 達成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將來의 展望이 없는 경우
6. 合營企業의 契約·定款에 規定된 其他 解散의 原因이 發生한 경우

② 上記 2,3,4,5,6 號의 事態가 發生한 때에는 理事會가 解散申

請書를 提出하고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本條 第1項 3號의 경우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業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一方의 當事者는 이에 의한 合營企業의 損害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 103 條 合營企業이 解散을 宣言하는 때에는 理事會는 清算의 手續, 原則 및 清算委員會의 人選을 提出하고 企業主管部署의 認可 및 清算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第 104 條 ① 清算委員會의 構成員은 一般的으로 合營企業의 理事中에서 選任하는 것으로 한다. 理事가 清算委員會의 構成員을 擔任할 수 없거나 또는 擔任에 適合하지 아니한 때 合營企業은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辯護士를 招請할 수 있다. 認可機關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사람을 派遣하여 監督케 할 수 있다.

② 清算費用 및 清算委員會 構成員의 勞動報酬는 合營企業의 現財産中에서 優先적으로 支給하는 것으로 한다.

第 105 條 ① 清算委員會의 任務는 合營企業의 財産·債權·債務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調査하고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財産評價와 計算의 根據로 提出하며 清算案을 定하고 理事會에서 採擇된 後 執行하는 것이다.

② 清算期間中 清算委員會는 當該 合營企業을 代表하여 提訴·應訴를 擔當한다.

第 106 條 ① 合營企業은 그 全財産을 債務에 負擔한다. 合營企業이 債務를 辨濟한 後의 剩餘財産은 各 當事者의 出資比率에 따라 分配한다. 다만,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는 除外한다.

② 合營企業이 解散할 때 그 資産殘高 또는 剩餘財産中 資本金을 超過하는 部分은 利益으로 보지 아니하며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

를 納付하여야 한다. 外國側合營者가 分配된 資産殘高 또는 剩餘 財産中에서 出資額을 超過하는 部分을 外國에 送金할 때에는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107 條 合營企業의 清算이 終了된 後 清算委員會는 清算終了報告를 提出하여 理事會에서 採擇된 後 原認可機關에 報告하며, 또한 原登記管理機關에서 登記抹消手續을 行하고 營業許可證을 返還한다.

第 106 條 合營企業의 解散 後 諸帳簿 및 書類는 中國側合營者가 保管하는 것으로 한다.

第 15 章 紛爭의 解決

第 109 條 合營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을 解釋 또는 履行하는 때 紛爭이 發生한 경우에는 可能한 限 友好的 協議 또는 調停을 통하여 解決하여야 한다. 協議 또는 調停이 없는 경우에는 仲裁 또는 司法에 의한 解決을 求한다.

第 110 條 各 當事者는 仲裁에 관한 書面協定에 依據하여 仲裁를 求한다.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對外經濟貿易仲裁委員會에서 仲裁하고 同 會의 仲裁手續·規則에 따를 수 있다. 各 當事者가 同意한 경우에는 申請을 받은 側의 所在國 또는 第 3 國의 仲裁機關에서 仲裁하고 當該 機關의 仲裁手續·規則에 따를 수 있다.

第 111 條 各 當事者間에 仲裁의 書面協定이 없는 경우 紛爭을 일으킨 어느 一方도 法律에 의하여 中國人民銀行에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 112 條 紛爭解決期間中 紛爭事項을 除外하고는 各 當事者는 繼

續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其他의 諸條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第 16 章 附 則

第 113 條 合營企業의 外國籍從業員 및 「홍콩」·「마카오」의 從業員 (그의 家族을 包含한다) 이 通常的으로 中國에 出入國할 必要가 있는 경우 「비자」主管機關은 手續을 簡略化하여 便宜를 提供할 수 있다.

第 114 條 合營企業의 中國人從業員이 業務上 必要에 의하여 視察·商談·學習 또는 研修를 위하여 出國할 경우에는 企業主管部署가 出國을 申請하고 出國手續을 行한다.

第 115 條 合營企業의 外國籍從業員 및 「홍콩」·「마카오」의 從業員은 必要한 交通手段 및 事務用品을 搬入할 수 있으나 規定에 따라 關稅 및 工商統一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116 條 經濟特區에 設立된 合營企業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또는 國務院이 採擇·承認한 法律·法規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第 117 條 本 條例의 解釋權은 對外經濟貿易部에 屬한다.

第 118 條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實施한다.

中華人民共和國經濟契約法

(1981年12月13日,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會議에서 採擇)

(1981年12月13日,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委員長令 第12號로 公布)

第1章 總 則

第1條 經濟契約當事者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고 社會經濟秩序를 保持하며, 經濟效率을 向上시키고 國家計劃의 執行을 保證하며, 社會主義現代化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特別히 本法을 制定한다.

第2條 經濟契約이란 特定한 經濟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相互間의 權利·義務關係를 明確하게 한 法人¹⁾間의 合意이다.

第3條 經濟契約은 即時 決濟될 경우를 除外하고는 書面의 形式을 取하여야 한다. 當事者가 協議를 통하여 同意한 契約改定에 관한 文書, 電報 및 圖表도 契約의 一部이다.

第4條 經濟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家의 法律을 遵守하고 國家의 政策과 計劃에 合致시켜야 한다. 어느 單位²⁾나 個人도 契約을 利用하여 違法活動을 行하고 經濟秩序를 紊亂하게 하며, 國家計劃을 破壞하고 國家의 利益과 社會公共의 利益을 侵害하며 不法의인 收入을 取得할 수 없다.

第5條 經濟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는 互惠平等·協議一致·等價有

1) 一定한 組織機構가 獨立財産 또는 獨立豫算을 가지고 自己의 名義로써 經濟活動을 營爲하며 法定節次에 의하여 設立된 企業, 農村人民公社· 生産大隊· 生産隊, 國家機關, 事業體 및 社會團體 等を 말함.

2) 國家機關, 國營企業 其他 集團의 生産·流通組織을 包含함.

償의 原則을 貫徹하여야 한다. 어느 一方도 自己의 意思를 相對方에게 強要할 수 없으며 어느 單位나 個人도 不法的으로 介入할 수 없다.

第 6 條 法律에 의하여 成立된 經濟契約은 法的 拘束力을 가진다. 當事者는 반드시 契約에 規定된 義務를 全面的으로 履行하여야 하며 어느 一方도 任意로 契約을 變更 또는 解除할 수 없다.

第 7 條 ① 다음의 經濟契約은 無效이다.

1. 法律, 國家의 政策·計劃에 違反된 契約
2. 詐欺, 脅迫 等の 手段에 의하여 締結된 契約
3. 代理人이 代理權限을 超越하여 締結한 契約, 또는 代理人이 自己 또는 自己가 代理하고 있는 其他의 者와 締結한 契約
4. 國家의 利益 또는 社會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契約

② 無效의 經濟契約은 締結된 때부터 法的 拘束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經濟契約의 一部 無效가 確認되어도 他 部分에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部分은 繼續 有效하다.

③ 經濟契約의 確認權은 契約管理機關³⁾과 人民法院에 屬한다.

第 8 條 賣買, 建設工事請負, 加工受注, 貨物運送, 電氣供給·使用, 倉庫保管, 財産貸借, 貸付, 財産保險, 科學技術協力 其他의 經濟契約에는 모두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3) 各 業種別 主管部署 및 各級 工商行政管理部署를 말함.

第 2 章 經濟契約의 締結 및 履行

第 9 條 當事者의 雙方이 法律에 의하여 經濟契約의 主要條項에 대하여 協議가 一致할 경우 經濟契約은 成立한다.

第 10 條 經濟契約의 代理締結은 반드시 事前에 委囑單位의 委任狀을 受領하고 授權範圍內에서 委囑單位의 名義로써 締結하여야만 비로소 委囑單位에 直接 權利와 義務가 發生한다.

第 11 條 國家의 指令性計劃⁴⁾에 屬하는 製品 및 項目의 經濟去來는 반드시 國家가 下達한 指標에 依據하여 經濟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意見의 一致를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雙方의 上級 計劃主管機關이 處理한다. 國家의 指導性計劃⁵⁾에 屬하는 製品 및 項目의 經濟去來는 國家가 下達한 指標를 參照하고 當該 單位의 實情에 따라 經濟契約을 締結한다.

第 12 條 ① 經濟契約에는 다음의 主要條項을 具備하여야 한다.

1. 對象⁶⁾ (財貨·勞務·工事項目 등을 말한다)
2. 數量과 品質
3. 代金 또는 報酬
4. 履行의 期限·場所 및 方法

4) 生産·建設·流通·分配 등 部門에서의 國家經濟와 人民生活에 直結되는 重要한 指標와 項目으로 指令, 下達된 國家計劃. 그 中 制限의 으로 定한 國家의 計劃·指標에 대하여는 超過를 嚴禁하며 變更의 경우에는 반드시 上級 主管部署의 承認을 要함.

5) 指令性計劃 以外의 國家計劃. 이 計劃內 指標·項目에 대하여 關係 執行單位는 同 單位의 實情과 市場需要에 따라 變更하고 自體計劃을 調整할수있음

6) 原語는 標的. 經濟契約 當事者 雙方의 權利 및 義務가 共通으로 指向하는 對象. 賣買契約에서는 어떤 種類의 製品, 貸付契約에서는 金錢이 各各의 契約의 對象임.

5. 違約責任

②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經濟契約의 性質에 따라 具備하여야 할 條件 및 當事者의 一方이 規定하도록 要求한 條件도 經濟契約의 主要條項이다.

第13條 ① 經濟契約에 있어서 通貨로써 義務를 履行할 때에는 法律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人民幣로 計算하여 支拂하여야 한다.

② 國家의 現金에 의한 義務의 履行을 許可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銀行을 통하여 代替決濟하여야 한다.

第14條 ① 當事者의 一方은 相對方에게 契約保證金⁷⁾을 交付할 수 있다. 經濟契約을 履行한 後에는 契約保證金を 回收하거나 代金의 一部로 充當하여야 한다.

② 契約保證金を 受領한 者가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契約保證金の 倍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15條 經濟契約의 當事者 一方이 保證⁸⁾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保證單位가 擔保할 수 있다. 保證單位는 當事者 一方의 契約履行을 保證하는 關係者이다. 保證받는 當事者가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保證單位가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第16條 ① 經濟契約의 無效가 確認된 後 當事者가 當該 契約에 의하여 取得한 財産은 相對方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過失이 있었던 當事者는 이에 의하여 相對方이 받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雙

7) 原語는 定金. 일종의 事前給付로서 先金 및 擔保의 性格을 가짐. 주로 農産物, 副業生産物의 收買契約에 利用되고 있음.

8) 일종의 擔保形式으로 一部 科學技術契約에 대하여 單位保證을 採用하고 있음

方에 모두 過失이 있었던 경우에는 各 相應의 責任을 져야 한다.

② 國家의 利益 또는 社會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契約이 雙方 모두의 故意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雙方이 이미 取得하였거나 約定되어 있는 財産을 追徵하여 國庫에 歸屬시켜야 한다. 一方의 故意에 의한 경우에는 故意가 있었던 當事者가 相對方으로부터 取得한 財産을 相對方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故意가 없었던 當事者는 相對方으로부터 取得하였거나 取得하기로 約定되어 있는 財産을 國庫에 歸屬시켜야 한다.

第17條 賣買契約 (供給, 購入, 豫約購入, 賣買結合 및 協業·調整 등의 契約을 包含한다)에 있어서 製品의 數量·品質, 包裝의 質, 製品의 價格 및 納期는 다음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한다.

1. 製品의 數量은 國家와 上級 主管部署가 承認한 計劃에 따라, 國家와 上級 主管部署가 承認한 計劃이 없는 경우에는 賣渡人·買受人 雙方이 協議하여 約定한다. 製品數量의 計量方法은 國家 또는 主管部署의 規定에 따라, 國家 또는 主管部署에 그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賣渡人·買受人 雙方이 協議하여 決定된 方法에 의한다.

2. 製品의 品質과 包裝의 質은 國家基準 또는 特別基準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고, 國家基準과 特別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主管部署의 基準에 따라 約定한다. 當事者의 特別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雙方이 協議하여 約定한다.

賣渡人은 반드시 製品의 品質과 包裝의 質에 責任을 져야 하며 檢査에 必要한 技術資料 또는 見本을 提供하여야 한다.

製品의 品質檢査, 檢疫方法은 國務院이 承認한 關係規定에 의하여 執行한다.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 雙方이 協

議하여 確定한다.

3. 製品의 價格은 各級 物價主管部署가 規定하는 價格(公定價格, 變動價格을 包含한다)에 따라 約定한다. 政策上 協定價格이 認定되는 것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公定價格에 의한 경우, 契約에 定한 納期內에 公定價格이 調整된 때에는 納期時의 價格에 의하여 計算한다. 納期가 經過하여 物品을 引渡할 경우, 價格이 上昇된 때에는 當初의 價格에 따르며 下落된 때에는 新價格에 따른다.

納期를 經過하여 物品을 引受하거나 代金을 支拂할 경우, 價格이 上昇된 때에는 新價格에 따르며 下落된 때에는 當初의 價格에 따른다. 變動價格, 協定價格에 의한 경우에는 契約에 定한 價格에 따른다.

4. 物品의 引渡(또는 引受)期限은 契約의 規定에 따라 履行하여야 한다. 어느 一方이 物品의 引渡(또는 引受)期限의 短縮 또는 延長을 要求할 때에는 반드시 事前에 協議하고 그 合意에 의하여 執行하여야 한다.

第18條 ① 建設工事의 請負契約은 반드시 國家가 定한 節次와 國家가 承認한 投資計劃, 計劃任務書 等の 文書에 依據하여 締結하여야 한다.

② 實地調査·設計·建築·架設 等を 包含하는 建設工事請負는 總括請負單位와 發注單位가 個別的으로 契約을 締結할 수도 있다.

③ 實地檢査·設計契約에는 實地調査·設計의 基礎資料, 設計文書(豫算見積을 包含한다)의 提出期日, 設計上의 質的 要求 其他 協力要件 等の 條項을 雙方이 規定하여야 한다.

④ 建築·架設工事契約에는 工事範圍, 工期, 中間에 引渡한 工事

의 着工 및 竣工期日, 工事의 質, 工事費, 技術資料의 提出期日 材料와 設備의 供給責任, 代金支拂과 決済, 引渡檢査, 雙方의 相互協力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⑤ 建設工事의 竣工檢査는 施工圖, 說明書 및 國家가 公布한 施工 檢査規範과 品質檢査基準에 準據하여야 한다.

第19條 ① 加工受注契約은 發注者가 提出하는 品名, 項目, 品質에 대한 要求 및 受注者의 加工·受注製作·修理能力에 따라 締結하여야 한다. 受注者는 契約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반드시 自己의 設備·技術 및 勞動으로써 加工·受注製作·修理任務의 主要 部分을 完成하여야 하며, 發注者의 同意없이는 引受한 任務를 第3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發注者는 受注者가 完成한 製品 또는 作業成果를 引受하고 報酬를 支拂하여야 한다.

② 受注者는 發注者가 提供한 原材料에 대하여 適時에 檢査를 實施하고 契約의 規定에 違反된 경우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發注者에게 通知하여 交換하거나 補充하게 하여야 한다. 受注者는 發注者가 提供한 原材料를 任意로 交替하지 못하며 또한 修理한 製品의 部品을 交替하지 못한다. 이에 違反한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져야 한다.

③ 受注者가 家屋을 修理하거나 規格에 未達한 製品을 大量으로 加工할 경우 發注者는 必要한 檢査와 監督을 行하여야 한다. 다만, 發注者는 受注者의 正常的인 活動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受注者가 受注한 複製·設計·翻譯 및 製品의 性能試驗과 檢査 等の 任務에 대하여 發注者가 秘密維持를 要求한 경우에는 이를 嚴守하여야 한다.

④ 發注者가 引受期限을 6個月 超過하고도 發注物을 引受하지 아

니할 경우 受注者는 發注物을 轉賣하고 그 代金에서 報酬와 保管料를 控除 後 發注者의 名義로써 銀行에 豫置할 權利를 가진다.

第20條 ① 貨物運送契約은 貨物調達計劃, 運送能力 및 運送計劃에 의하여 締結한다. 混載貨物運送契約은 國家의 運送關係規定에 의하여 締結한다.

② 中繼運送인 경우에는 雙方 또는 複數 當事者의 責任과 受領·引渡方法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③ 運送貨物이 規定에 의하여 包裝을 必要로 하는 경우 送荷人은 國家主管機關이 定한 基準에 따라 包裝하여야 한다. 包裝基準에 관한 統一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貨物運送의 安全을 保證한다는 原則에 의하여 包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運送人은 運送을 拒否할 權利를 가진다.

第21條 電氣供給·使用契約은 電氣使用者의 需要 및 電氣의 供給能力에 의하여 締結한다. 契約에는 電力·電壓·電氣使用時間 및 違約責任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第22條 ① 倉庫保管契約은 任置人의 委託任置計劃 및 受置人의 倉庫收容能力에 의하여 雙方이 協議하여 締結한다. 混載貨物의 任置에 대하여는 倉庫任置의 關係規定에 의하여 締結한다.

② 倉庫保管契約에는 任置物의 品名, 規格·數量·保管方法, 檢査의 項目과 方法, 入庫·出庫節次, 毀損基準과 毀損處理, 費用負擔과 決濟方法, 違約責任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③ 受置人은 契約에 定한 包裝의 種別 및 貨物의 種類·品質·數量에 따라 入庫物品에 대한 檢査를 實施하여야 하며 入庫物品이 契約의 規定과 合致되지 아니함을 發見한 경우에는 遲滯없이 任置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受置人이 檢査를 完了한 後 物品의 種

類·品質·數量이 契約의 規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受置人이 賠償責任을 진다.

④ 任置人은 受置人에게 必要한 物品檢査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物品의 種類·品質·數量이 契約의 規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 受置人은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23條 ① 財産賃貸借契約에는 賃貸借財産의 名稱·數量·用途, 賃貸借期間, 借賃과 借賃支拂期限, 賃貸借期間中の 財産保存·修理責任 및 違約責任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② 賃貸人은 契約에 定한 期日 및 基準에 따라 賃貸財産을 賃借人에게 引渡하여 使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賃貸人이 財産保有權을 第三者에게 讓渡한 때 賃貸借契約은 財産의 새 所有者에 대하여 繼續 效力을 가진다.

③ 賃借人은 業務上 必要에 의하여 賃借物을 第三者에게 轉貸할 수 있으나 事前에 반드시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借賃의 基準은 國家의 統一的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統一的인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 雙方이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24條 ① 貸付契約은 國家가 承認한 信用貸付計劃⁹⁾ 및 關係規定에 의하여 締結한다. 契約에는 貸出金額·用途·期間·金利·決濟方法 및 違約責任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② 貸出金利는 國家가 規定하고 中國人民銀行이 統一的으로 管理한다.

9) 國家計劃에 의하여 擔保를 必要로 하지 않음.

第25條 ① 財産保險契約은 保險證書 또는 保險證券의 方式으로써 締結한다.

② 保險契約에는 保險의 對象·所在場所 (또는 輸送手段과 航程), 保險金額·保險責任, 免責, 賠償方法, 保險料納付方法 및 保險期間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③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財産의 安全을 保護하여야 한다. 保險者는 被保險財産의 安全에 대한 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不安全한 要素를 發見한 경우에는 迅速히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여 이를 除去시켜야 한다.

④ 被保險財産의 損害에 대하여 第3者에게 賠償責任이 있는 경우 保險契約者가 保險者에게 請求하는 때에는 保險者가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먼저 賠償할 수 있다. 다만, 保險契約者는 賠償請求權을 保險者에게 반드시 讓渡함과 同時에 保險者와 協力하여 第3者에게 賠償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26條 ① 科學技術協力契約 (科學研究·試作·成果普及·技術移轉 技術相談「서어비스」等を 包含한다) 은 上級 主管部署 또는 關係部署의 計劃에 의하여 締結한다. 計劃이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 雙方이 協議하여 締結한다.

② 科學技術協力契約에는 科學技術의 協力項目, 經濟上의 技術效果, 進度¹⁰⁾, 協力方式, 經費와 物資의 見積, 報酬, 違約責任 等の 條項을 明確히 規定하여야 한다.

10) 契約達成의 段階的 日程目標

第3章 經濟契約의 變更 및 解除

第27條 ① 다음에 記載한 事由의 1이 發生한 경우에는 經濟契約의 變更 또는 解除를 許可한다.

1. 當事者의 雙方이 協議를 거쳐 同意하고 또한 이로 因하여 國家利益에 損害를 미치지 아니하고 國家計劃의 執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經濟契約締結의 根據가 된 國家計劃이 修正 또는 取消된 때

3. 當事者의 一方이 閉鎖, 操業停止, 生産轉業으로 因하여 經濟契約의 履行不能이 確實하게 된 때

4.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또는 當事者의 一方이 過失은 없지만 防止할 수 없는 外因으로 因하여 經濟契約을 履行할 수 없게 된 때

5. 一方의 違約으로 因하여 經濟契約의 履行이 不必要하게 된 때

② 當事者의 一方이 經濟契約의 變更 또는 解除를 要求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經濟契約의 變更 또는 解除로 因하여 一方이 損害를 받는 경우, 法律에 의하여 免責할 수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責任이 있는 者가 賠償責任을 져야 한다.

③ 當事者의 一方이 合併 또는 獨立한 때 變更後의 當事者는 契約履行의 義務를 全擔 또는 分擔하며 正當한 權利를 享受한다.

第28條 經濟契約을 變更 또는 解除하는 通知나 合意는 書面의 形式(文書, 電報 등을 包含한다)을 取하여야 한다. 合意가 成立되기 以前에는 原來의 經濟契約이 繼續 效力을 가진다.

第29條 經濟契約의 變更 또는 解除가 國家의 指令性計劃에 의한 製品이나 項目에 關聯된 경우에는 合意에 到達하기 前에 當該計劃을 下達한 業務主管部署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0條 經濟契約의 變更 또는 解除에 대한 建議의 承諾은 雙方이 合意한 期間內 또는 關係 業務主管部署가 定한 期間內에 行하여야 한다.

第31條 經濟契約의 締結後에는 責任者 또는 法定代表人의 變動을 理由로 하여 變更 또는 解除할 수 없다.

第4章 經濟契約違反의 責任

第32條 ① 當事者 一方의 過失에 의하여 經濟契約의 履行이 不能 또는 不完全하게 된 경우에는 過失이 있었던 當事者가 違約責任을 진다. 雙方의 過失에 의한 경우에는 實情에 따라 雙方이 各各 違約責任을 分擔한다.

② 職務怠慢·瀆職 또는 其他 違法行爲에 의하여 重大한 事故·損害가 招來된 경우 直接의 當事者 個人에 대하여는 經濟·行政責任 乃至는 刑事責任까지 追窮하여야 한다.

第33條 上級 指導機關 또는 業務主管部署의 過失에 의하여 經濟契約의 履行이 不能 또는 不完全하게 된 경우에는 上級 指導機關 또는 業務主管部署가 違約責任을 져야 한다. 契約에 違反한 當事者가 먼저 規定에 따라 相對方에게 違約金 또는 賠償金을 支拂한 後 責任을 져야 하는 上級 指導機關 또는 業務主管部署가 責任을 지고 處理한다.

第34條 當事者の一方이 不可抗力의 事由로 因하여 經濟契約을 履行할 수 없는 경우에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經濟契約을 履行할 수 없는 理由 또는 履行延期, 一定延期가 必要한 理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關係主管部署의 證明을 얻은 後 履行延期, 一部履行 또는 不履行을 認定하며 또한 狀況에 따라 違約責任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다.

第35條 當事者の一方이 經濟契約에 違反한 경우에는 相對方에게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違約에 因하여 相對方에게 입힌 損害가 違約金을 上廻하는 경우에는 賠償과 同時に 그 不足分을 補償하여야 한다. 相對方이 契約의 繼續履行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繼續履行하여야 한다.

第36條 違約金·賠償金에 대하여 企業은 企業基金·利潤留保金 또는 損益請負의 分配金中¹¹⁾에서 支出하여야 하며 이를 原價에 算入할 수 없다. 行政單位와 事業體는 豫算請負의 剩餘經費에서 支出하여야 한다.

第37條 違約金·賠償金은 責任의 所在가 明確하여진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支拂延滯로 하여 處理한다. 어느 一方도 任意로 發送貨物 또는 商品代金を 控除하여 이에 充當할 수 없다.

11) 原語는 盈虧包幹分成. 生産·經營에 대한 企業의 關心을 促進하고 利潤增大·缺損減少를 期하기 위하여 一部 利潤企業에 대하여「利潤을 請負, 利潤增加分은 分配」하고 一部 缺損企業에 대하여「缺損을 請負, 缺損減少分은 分配」하는 方法

第38條 賣買契約 違反의 責任

1. 賣渡人의 責任

- (1) 製品의 種類·規格·數量·品質 및 包裝의 質이 契約의 規定에 合致하지 아니하거나 契約에 定한 期限대로 物品을 引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違約金·賠償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 (2) 製品의 到着地 또는 受領單位(人)를 틀리게 發送한 경우에는 契約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到着地 또는 受領單位(人)에 責任지고 運送하는 外에 이로 因하여 超過支出된 運送諸經費를 負擔한다. 物品의 引渡가 遲滯된 경우에는 物品引渡의 遲滯에 대한 違約金을 支拂한다.

2. 買受人의 責任

- (1) 中途에 返品하는 경우에는 違約金·賠償金을 支拂한다.
- (2) 契約에 定한 期限대로 代金を 支拂하지 아니하거나 物品을 引受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違約金을 支拂한다.
- (3) 到着地의 誤記 또는 到着地點의 臨時變更으로 因하여 超過支出된 費用을 負擔한다.

第39條 建設工事請負契約 違反의 責任

1. 請負者의 責任

- (1) 實地調査, 設計의 粗雜 또는 期限대로 實地調査·設計文書를 提出하지 않음으로 因한 工事遲延의 損害에 대하여는 實地調査·設計單位는 設計를 完結하는 外에 實地調査·設計費를 減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損害를 賠償한다.
- (2) 工事의 質이 契約의 規定에 合致되지 아니할 경우 發注者는 期限附 無償修理 또는 再工事, 改築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修理 또는 再工事, 改築에 의하여 引渡의 遲延이 發生한 경우 請負者는 遲延에 대한 違約金을 支拂한다.

(3) 引渡期日이 契約의 規定에 合致되지 아니할 경우 期限遲延에 대한 違約金을 支拂한다.

2. 發注者의 責任

(1) 契約에 定한 期日과 要求에 따라 原材料·設備·場所·資金·技術資料 등을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工事日程을 順延시킬 수 있는 外에 이로 因한 作業停止, 作業不振 등 請負者의 實質的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2) 工事が 中斷, 延期된 경우에는 損害를 補填하거나 減少시키는 措置를 取함과 同時에 이로 因한 作業停止, 作業不振, 經營不振, 機械設備의 移轉, 材料和 部屬材料의 放置 등 請負者의 損害와 實際費用을 賠償하여야 한다.

(3) 計劃의 變更, 提供資料의 不正確 또는 期限內에 必要한 調査·設計作業의 條件을 提示하지 아니함으로써 調査設計의 再作業, 作業停止 또는 設計修正이 不可避하게 된 경우 請負者의 實際作業量에 따라 費用을 增額하여 支拂한다.

(4) 工事に 대한 檢査가 終了되기 前에 早期 使用함으로써 質에 대한 瑕疵가 發生한 경우에는 發生者 自身이 責任을 진다.

(5) 契約에 定한 期日을 經過하여 檢査를 實施하거나 工事費를 支拂한 경우 遲延에 대한 違約金을 支拂한다.

第40條 加工受注契約 違反의 責任

1. 受注者의 責任

(1) 保管의 不備에 의하여 發注者가 提供한 材料 및 品質을 毀

損, 滅失시킨 경우에는 賠償의 責任을 진다.

- (2) 契約에 定한 品質·數量에 따라 發注者가 注文한 일을 完成하지 아니한 경우 無償으로 修理하고 數量을 補充하며 또는 그것을 考慮하여 報酬를 減額하여야 한다. 일의 成果에 重大한 缺陷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賠償의 責任을 져야 한다.

2. 發注者의 責任

- (1) 期日, 品質, 數量대로 受注者에게 原材料를 提供하지 않음으로써 作業이 遲延된 경우에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 (2) 規定된 期限을 經過하여 注文 또는 修理한 物品을 受領한 경우에는 受注者에게 期限遲延에 대한 保管料를 支拂하여야 한다.
- (3) 契約에 定한 期限을 經過하여 代金を 支拂한 경우에는 延滯에 대한 違約金を 支拂한다.

第41條 貨物運送契約 違反의 責任

1. 運送人의 責任

- (1) 運送契約에 定한 期日과 要求에 따라 配車(船)하여 發送하지 아니한 경우 送荷人에게 違約金を 支拂한다.
- (2) 貨物の 到着地 또는 受荷人을 틀리게 한 경우에는 無償으로 契約에 定한 到着地 또는 受荷人에게 運送하여야 한다. 貨物이 延着된 경우에는 物品의 引渡遲滯에 대한 違約金を 支拂한다.
- (3) 輸送過程에서 貨物の 滅失, 不足, 變質, 汚染, 毀損된 경우에는 貨物の 實質損害(包裝費, 運送諸經費를 包含한다)를 賠償한다.

(4) 中繼運送貨物에 滅失, 不足, 變質, 汚染, 毀損이 發生하여 運送人이 賠償責任을 져야 할 경우 最終段階의 運送人이 먼저 規定대로 賠償한 後, 다시 最終段階의 運送人이 責任을 져야하는 其他의 運送人에게 追徵賠償시킨다.

(5) 法律 및 契約에 定한 條件에 合致된 運送에서 다음中 1의 原因에 의하여 貨物의 滅失, 不足, 變質, 汚染, 毀損을 招來한 경우 運送人은 違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㉔ 不可抗力

㉕ 貨物自體의 自然的 性質

㉖ 貨物의 合理的 損耗

㉗ 送荷人 또는 受荷人 自身の 過失

2. 送荷人의 責任

(1) 運送契約에 定한 期日과 要求대로 託送貨物을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 運送人에게 違約金을 支拂한다.

(2) 一般貨物 中에 危險貨物을 夾帶, 隱匿하고도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重量貨物의 報告를 虛僞로 하는 等으로 起重裝置의 損壞, 貨物의 破損, 起重機의 顛倒, 爆發, 腐蝕 等の 事故를 招來한 경우 賠償의 責任을 진다.

(3) 貨物包裝의 缺陷에 의하여 破損이 發生하고 其他의 貨物 또는 運送手段, 機械設備를 汚染, 腐蝕, 損壞시키며 人身의 死傷을 招來한 경우 賠償의 責任을 진다.

(4) 送荷人의 專用線 또는 港·驛의 公共專用線, 專用鐵道에서 送荷人이 積載한 貨物이 到着 後 내린 때에 損壞, 不足이 發見된 경우 車輛의 封印이 完全하거나 異狀이 없는 때에 受荷人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5) 「탱크」車로 貨物을 發送할 경우 車輛에 規格品質證明 또는 化學試驗報告가 添附되지 않음으로써 受荷人이 貨物을 내릴 수 없게 된 때에는 運送人에게 貨物을 내릴 때까지의 保管料 및 違約金을 支拂한다.

第42條 電氣供給·使用契約 違反의 責任

1. 電氣供給者의 責任

電氣供給者는 國家가 定한 電氣供給基準과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하게 電氣를 供給하여야 한다. 어떠한 理由로 電氣使用을 制限할 경우에는 事전에 電氣使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正當한 理由없이 電氣使用을 制限하거나 電氣供給者의 責任으로 電氣供給을 中斷한 경우에는 이로 因한 電氣使用者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2. 電氣使用者의 責任

電氣使用者는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를 使用하여야 한다. 特別한 事情으로 電氣使用量을 超過할 必要가 있거나 規定된 時間에 電氣를 使用할 수 없는 때에는 事전에 電氣供給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正當한 理由없이 電氣使用量을 超過하거나 規定된 時間에 電氣를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3. 물의 供給·使用契約, 「가스」의 供給·使用契約에 違反한 경우의 責任에 대하여는 本條의 規定을 類推 適用한다.

第43條 倉庫保管契約 違反의 責任

1. 受置人의 責任

- (1) 貨物保管期間中에 保管의 不備에 의하여 貨物의 滅失, 不足, 變質, 毀損이 發生한 경우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包裝이 契約의 規定에 合致되지 아니하거나 有效保管期間을 經過함으로써 貨物의 毀損, 變質이 發生한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2) 危險物 및 腐敗性貨物에 대하여 規定에 따라 操作하지 아니하거나 適切히 保管하지 아니함으로써 毀損된 경우에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 (3) 受置人의 責任에 의하여 出庫 또는 入庫될 수 없는 경우에는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任置人의 運送費를 賠償하고 또한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 (4) 受置人이 發送할 責任을 지는 貨物에 대하여 期限內에 發送할 수 없는 경우에는 任置人에게 貨物의 引渡遲延에 대한 損害를 賠償한다. 틀린 到着地에 發送한 경우에는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到着地에 無償으로 運送하는 外에 이로 因하여 發生한 任置人의 實質的 損害를 賠償한다.

2. 任置人의 責任

- (1) 可燃性·爆發性·有毒性危險物과 腐敗性物品은 반드시 契約에 明記하고 또한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貨物의 毀損 또는 人身의 死傷이 招來된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刑事責任까지도 져야한다.
- (2) 約定한 貯藏量을 超過하여 貯藏하거나 期間을 經過하고도 受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管料를 支拂하는 外에 違約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第44條 財産貸借契約 違反의 責任

1. 賃借人의 責任

- (1) 使用, 保管 또는 維持·補修가 不適切함으로 因하여 賃借 財産이 毀損, 滅失된 경우에는 原狀復舊 또는 賠償의 責任을 진다.
- (2) 家屋, 設備, 器具 等の 財産을 任意로 解體, 改造할 경우 이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3) 賃貸借財産을 任意로 轉貸하거나 不法活動에 使用한 경우 賃貸人은 契約을 解除할 權利를 가진다.
- (4) 期間을 經過하고도 賃貸借財産을 返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租賃을 追加 支拂하는 外에 違約金を 支拂하여야 한다.

2. 賃貸人의 責任

- (1) 契約에 定한 期間대로 賃貸財産을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 違約金を 支拂하여야 한다.
- (2) 契約에 定한 質에 따라 賃貸財産을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因하여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3)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設備, 附屬裝置 等を 提供하지 아니함으로써 賃借人이 期間대로 正常的으로 使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規定에 따라 日數대로 補充하는 外에 違約金を 支拂하여야 한다.
- (4) 船舶, 車輛 等の 大型交通手段을 賃貸한 경우 賃貸人의 不適切한 操作 또는 「서어비스」要員의 過失에 의하여 賃貸借期間이 遲延된 때에는 契約 또는 關係規定에 의하여 賃借人에게 違約金を 支拂한다.

第 45 條 貸付契約 違反의 責任

1. 債權者의 責任

人民銀行·特殊銀行·信用協同組合이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適時에 貸出하지 아니한 경우 違約金を 支拂하여야 한다.

2. 債務者の 責任

債務者が 契約의 規定대로 貸出金を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關係規定에 의하여 利子를 追加 納入하여야 하며 또한 債權者는 貸出金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期限前에 回收할 權利를 가진다.

第 46 條 財産保險契約 違反의 責任

1. 保險者의 責任

保險事故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와 費用에 대하여는 保險金額의 範圍內에서 賠償責任을 진다. 被保險者가 保險責任의 範圍內에서 損害를 避하거나 減少시키기 위해서 行하는 救濟, 保護, 整理, 訴訟 等に 支出된 合理的인 費用은 契約의 規定에 의하여 支拂한다. 適時에 支拂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違約責任을 져야 한다.

2. 保險契約者의 責任

保險契約者가 被保險財産의 實際狀況을 隱蔽한 경우 保險者는 契約을 解除하거나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할 權利를 가진다. 保險契約者가 被保險財産에 대하여 危險한 狀況이 있음을 發見하고도 그것의 解消措置를 取하지 아니함으로써 發生한 事故에 의한 損失에 대하여는 自己가 責任을 지며 保險者는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 47 條 科學技術協力契約 違反의 責任

1. 受託者 또는 技術移轉者의 責任

受託者 또는 技術移轉者가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具體的 狀況에 따라 委託者 또는 技術導入者가 支拂한 委託費나 移轉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返還하여야 한다. 進도가 遲延된 경우에는 이로 因한 規定 外의 費用을 支拂하여

야 한다.

2. 委託者 또는 技術導入者의 責任

委託者 또는 技術導入者가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支拂한 委託費 또는 移轉費를 回收할 수 없으며 또한 受託者 또는 技術移轉者가 善後處理를 위하여 支出한 諸費用을 支拂하여야 한다.

第 5 章 經濟契約紛爭의 調停 및 仲裁

第 48 條 經濟契約에 대하여 紛爭이 發生한 경우 當事者는 迅速히 協議하여 解決하여야 한다.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一方도 國家가 定한 契約管理機關에 調停 또는 仲裁를 申請하거나 直接 人民法院에 起訴할 수 있다.

第 49 條 調整을 통하여 合意에 到達한 경우 當事者는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仲裁로써 裁定할 경우에는 國家가 定한 契約管理機關이 仲裁裁定書를 作成한다.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仲裁에 不服할 경우에는 仲裁裁定書를 受取한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人民法院에 起訴할 수 있다. 期限까지 起訴하지 아니한 경우 裁定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第 50 條 經濟契約의 當事者가 契約管理機關에 調停 또는 仲裁를 申請할 경우에는 權利侵害를 알거나 또는 알아야 할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期限을 經過하는 경우에는 通常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第 6 章 經濟契約의 管理

第 51 條 各級の 業務主管部署와 工商行政管理部署는 關聯된 經濟契約에 대하여 監督, 檢査하고 必要한 管理制度를 確立하여야 한다. 또한 各級 業務主管部署는 企業의 經濟契約履行狀況을 經濟指標의 하나로서 考察·審査하여야 한다.

第 52 條 ① 人民銀行, 特殊銀行, 信用協同組合은 信用管理¹²⁾, 決濟管理¹³⁾를 통하여 經濟契約의 履行을 監督하여야 한다.

② 人民銀行, 特殊銀行, 信用協同組合은 決濟制度의 規定에 의하여 決濟를 行하고 또한 支拂의 承認, 拒絕 및 未納代金の 收納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③ 經濟契約의 當事者가 調停書, 仲裁裁定書 또는 法院의 判決에 規定된 期限內에 自發的으로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人民銀行, 特殊銀行, 信用協同組合은 人民法院의 執行協力通知書를 受取한 後 當事者의 口座에서 支拂에 必要한 金額을 控除하거나 代替하여야

12) 銀行은 販路가 確實하고 品質이 優秀한 製品을 生産하는 企業의 生産·購入資金을 支援하고 그렇지 못한 企業에 대하여는 貸出을 抑制, 禁止함. 特히 盲目的으로 生産, 購入하고 貸出制度和 契約의 規定에 違反한 企業에 대하여는 貸出金利 引上, 新規貸出 中止, 全部 또는 一部 貸出金の 早期回收 法律에 의한 貸出擔保物 또는 抵當物의 押留, 處分 등의 裁制를 加하고있음

13) 經濟契約에 委託支拂決濟方式을 使用하기로 明記한 경우 賣渡人은 반드시 契約의 規定에 따라 貨物을 發送한 후에야 委託銀行에서 貨物貸金을 受取할 수 있으며 買受人은 반드시 決濟制度의 規定에 따라 貨物貸金 支拂의 義務를 履行해야 함. 만약 賣渡人이 經濟契約에 違反하여 貨物을 發送한 경우 買受人은 代金의 一部 또는 全部 支拂을 拒絕할 수 있음. 買受人이 理由없이 代金의 支拂을 拒絕한 경우 銀行은 賣渡人을 代身, 強制 收納할 수 있음. 買受人이 一時的으로 支拂할 代金を 갖지 못한 경우 銀行은 代金支拂을 延期시켜주는 外에 延期日數에 따라 代金支拂延期에 대한 違約金을 收納함.

한다.

第 53 條 虛偽의 經濟契約 締結, 經濟契約의 轉賣¹⁴⁾ 또는 經濟契約을 利用한 投機去來, 下請의 利益과 收入, 不法讓渡, 賂物授受 및 國家의 利益과 社會公共의 利益에 危害를 加하는 其他 違法行爲에 대하여는 工商行政管理部署가 責任을 지고 刑事責任을 追窮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司法機關에 移送하여 處理한다.

第 7 章 附 則

第 54 條 個人經營者, 農村人民公社員과 法人과의 經濟契約 締結은 本法을 類推 適用하여야 한다.

第 55 條 涉外經濟去來契約¹⁵⁾ 條例는 本法의 原則과 國際慣例를 參照하여 別途로 制定한다.

第 56 條 國務院의 關係部署와 各省·市·自治區의 人民政府는 本法에 根據하여 實施條例를 制定하고 國務院의 承認을 얻어 施行한다.

第 57 條 本法은 1982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14) 原語는 倒賣. 當事者 本人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음에도 不拘, 契約을 締結하고 그 契約을 第3者, 即 契約內容의 實現者에게 賣却하여 利益을 얻는 것.

15) 中共의 公司, 企業 其他 經濟機構 等 法人이 外國의 會社, 企業 其他 經濟機構 또는 個人과 締結하는 合資經營, 投資, 加工, 求償貿易, 物品賣買, 技術移轉 等の 契約.

中華人民共和國經濟契約仲裁條例

(1983年8月22日,國務院承認·公布)

第1章 總 則

第1條 經濟契約紛爭을 正確히 處理하고 當事者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며 社會의 經濟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中華人民共和國經濟契約法』의 規定에 根據하여 特別히 本 條例를 制定한다.

第2條 經濟契約仲裁機關은 國家工商行政管理局 및 地方의 各級 工商行政管理局이 設置하는 經濟契約仲裁委員會로 한다.

第3條 仲裁機關은 그 職種의 範圍內에서 經濟契約紛爭을 處理하고 1次判斷制度를 實行한다.

第4條 仲裁機關은 受理한 經濟契約紛爭事件에 대하여 調查·研究를 堅持하고 事實을 分明하게 調查하며, 國家의 法律·行政法規 및 政策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하고 法律의 適用에 있어서는 當事者 雙方을 一律적으로 平等하게 取扱하며 當事者의 對等한 權利行使를 保障하여야 한다.

第5條 少數民族이 集居하거나 多民族이 雜居하고 있는 地域에서는 現地民族에 通用되는 言語·文字로써 調停·仲裁를 行하고 또는 調停書·仲裁判斷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現地 民族의 言語·文字에 通하지 아니하는 當事者에게는 通譯·翻譯의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6條 仲裁機關에의 仲裁의 申請은 當事者가 權利의 侵害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다만, 權

利侵害者에게 債務保證의 意思가 있는 경우에는 時效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 7 條 當事者, 法定代表者는 1 내지 2 名을 委任하여 訴訟을 行하게 할 수 있다. 他人에게 訴訟을 委任하는 때에는 仲裁機關에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委任狀에는 委任事項 및 權限을 明記하여야 한다.

第 8 條 本 條例는 法人間의 經濟契約紛爭에 適用되며 또한 經濟契約法에 準하여 締結된 個人經營者·農村人民公社員과 法人間의 經濟契約紛爭에도 適用된다.

第 2 章 管 轄

第 9 條 ① 經濟契約紛爭事件은 通常 契約履行地 또는 契約締結地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執行에 있어서 困難이 있는 경우에는 被訴된 側 所在地의 仲裁機關에서 管轄할 수도 있다.

② 建設工事請負契約紛爭은 建築物 所在地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鐵道·自動車·水上의 貨物輸送 및 中繼貨物輸送中에 發生한 經濟契約紛爭은 當該 分野의 調査·處理를 擔當하는 運輸管理機關 所在地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③ 航空運送中에 發生한 經濟契約紛爭은 契約締結地, 運送의 開始地, 目的地 또는 事故發生地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第 10 條 經濟契約紛爭事件은 縣(市)·市管轄區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定한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1. 比較的 큰 影響을 가지거나 係爭金額이 500 萬元을 超過, 1,000 萬元까지인 經濟契約紛爭事件은 省管轄市·地區·自

治州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2. 큰 影響을 가지거나 係爭金額이 500 萬元을 超過, 1,000 萬元까지인 經濟契約紛爭事件은 省·直轄市·自治區의 仲裁機關이 管轄한다.

3. 全國적으로 큰 影響을 가지거나 省·市·自治區間, 中央部署와 省·市·自治區間, 中央各部署間의 係爭金額이 1,000 萬元을 超過하는 經濟契約紛爭事件은 國家工商 行政管理局의 經濟契約仲裁機關이 管轄한다.

第11條 ① 上級の 仲裁機關은 下級の 機關이 管轄하는 事件을 取扱할 權限을 가지며, 또한 上級の 仲裁機關이 管轄하는 事件을 下級仲裁機關에 移送하여 處理하게 할 수도 있다.

② 下級の 仲裁機關이 管轄하는 事件을 上級仲裁機關에서 處理하여야 한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上級仲裁機關에 處理를 請求할 수 있다.

第12條 2 個 以上の 仲裁機關에 管轄權이 있는 事件은 最初에 訴願書를 接受한 側이 受理한다.

第13條 管轄權으로 爭議가 發生한 때에는 雙方이 協議하여 解決하고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通의 上級仲裁機關이 管轄을 指定한다.

第 3 章 組 織

第 14 條 ① 各級 工商行政管理局의 經濟契約仲裁委員會는 主任 1 名, 副主任 1 名 내지 2 名 및 委員 若干名으로 構成한다. 主任 副主任 및 委員은 業務經驗과 專門知識을 가진 者가 擔當하여야 한다.

② 經濟契約仲裁委員會에는 經濟契約紛爭事件을 處理하는 專任 仲裁員 若干名을 둔다.

第 15 條 ① 各級 仲裁機關은 事件處理의 必要에 따라 社會의 著名 人士·專門技術者·法律關係者를 招請하여 兼任 仲裁員으로 할 수 있다. 兼任 仲裁員과 專任 仲裁員은 仲裁職務의 執行에 있어서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② 兼任 仲裁員의 職務遂行에 있어서 原單位는 이를 支援하여야 한다.

第 16 條 ① 仲裁機關에 의한 經濟契約紛爭事件의 處理는 仲裁員 2 名과 仲裁委員會가 指名하는 首席仲裁員 1 名이 仲裁體를 組織하여 行한다.

② 仲裁體의 事件評議에 있어서는 少數는 多數에 服從한다는 原則을 實行한다. 評議는 記錄을 作成하고 仲裁體의 成員이 署名하는 것으로 한다. 評議에 있어서 異議는 事實대로 記錄하여야 한다.

③ 難解한 事件의 處理는 仲裁委員會의 討議에 부쳐 決定할 수 있다. 仲裁體는 仲裁委員會의 決定을 執行하여야 한다.

④ 簡單한 經濟契約紛爭은 仲裁員 1 名을 指名하여 仲裁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 仲裁體의 構成員이 當該 事件을 處理하는 것이 不適切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自進하여 回避申請을 하여야 한다. 當事者는 仲裁體의 成員이 當該 事件과 關係가 있음을 發見한 때 口頭 또는 書面에 의하여 그의 忌避를 申請할 權利를 가진다.

第18條 ① 首席仲裁員의 回·忌避는 仲裁委員會가 決定하고 仲裁員의 回·忌避는 仲裁委員會의 主任 또는 副主任이 決定한다.

② 仲裁機關이 回·忌避의 決定을 한 때에는 口頭 또는 書面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告知할 수 있다.

第4章 節 次

第19條 ① 仲裁機關에 仲裁를 申請할 때에는 本 條例의 規定에 따라 申請書를 提出하고 또한 被訴人의 數에 따라 副本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記하는 것으로 한다.

1. 訴願人의 名稱·住所, 法定代表者의 姓名·職務
2. 被訴人의 名稱·住所, 法定代表者의 姓名·職務
3. 申請의 理由 및 要求
4. 證據, 證人의 姓名과 住所

第20條 ① 仲裁機關은 申請書를 接受한 後 審査를 마치고 本 條例의 規定에 合致되는 경우에는 7日 以內에 立件하여야 한다. 規定에 合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7日 以內에 訴願人에게 不受理를 通知하고 또한 理由를 說明하여야 한다.

② 事件受理後, 5日 以內에 申請書의 副本을 被訴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被訴人은 申請書의 副本을 受取한 後 15日 以內에

答辯書 및 關聯證據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 被訴인이 期限대로 答辯書を 提出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答辯書を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事件의 處理에는 影響이 없다.

第21條 ① 仲裁員은 申請書·答辯書を 眞摯하게 審査하고 調査·研究를 行하며 證據를 蒐集하여야 한다.

② 仲裁機關은 調査와 證據蒐集을 위하여 關係單位에 있어서 事件과 關係있는 公文書·資料 및 原證票를 閱覽할 수 있다. 關係單位는 遲滯없이 材料를 提供하고 調査에 協力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證明書を 發行하여야 한다.

③ 仲裁機關은 國家의 機密에 屬하는 證據에 대하여 秘密을 保持하여야 한다.

第22條 ① 現場을 檢證하거나 技術鑑定을 行할 때에는 當事者 및 關係者에게 通知하여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必要한 때에는 關係單位에 사람을 보내 協力하여 주도록 要請할 수 있다. 檢證記錄 및 技術鑑定書에는 日時, 場所, 檢證, 鑑定の 結論을 明記하고 檢證·鑑定에 參加한 職員이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② 仲裁機關이 關係單位에 囑託하여 技術鑑定을 行할 때 受託單位는 囑託받은 項目, 基準 等の 要素에 따라 眞摯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第23條 地方의 仲裁機關에 調査를 囑託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明確한 項目과 要求를 提示하여야 한다. 受託仲裁機關은 眞摯하게 處理하고 또한 囑託의 範圍內에서 自發적으로 調査를 補充하고 適時에 回答하여야 한다. 事情으로 因하여 調査囑託書を 受取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調査를 完了할 수 없는 경우에는 囑託側

에 告知하고 또한 調査를 繼續하여 完了하고 適時에 回答하여야 한다.

第24條 ① 事件의 處理에 있어서 財産의 一層 重大한 損害를 避하기 위하여 仲裁機關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保全措置의 決定을 할 수 있다. 保全措置는 仲裁申請의 範圍 또는 當該 事件과 關係있는 財物에 限한다.

② 仲裁機關은 保全措置의 決定을 할 때 申請人에게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으며, 提供을 拒否한 경우에는 申請을 却下한다.

③ 申請人이 敗訴한 경우에는 被申請人이 保全措置가 取하여 짐으로써 입은 財産上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④ 保全措置로써는 契約履行의 中止, 物品의 封印 및 押留, 保存하기 困難한 物品을 賣却하여 代金を 保存하는 것, 被申請人에게 擔保提供을 命하는 것, 또는 法律로써 許可된 其他의 方法을 採用할 수 있다.

第25條 仲裁機關은 事件處理에 있어서 먼저 調停을 行하여야 한다. 調停은 1名의 仲裁員으로 行할 수도 또는 仲裁體에서 行할 수도 있다.

第26條 ① 仲裁機關은 事實을 明確히 調査하여 責任을 明確히 한後, 調停을 行하고 當事者의 相互理解, 合意達成을 督促하여야 한다.

② 調停에 의한 合意의 達成은 雙方의 自由意思에 의하여야 하며 強制하여서는 아니된다. 合意의 內容은 法律·行政法規·規則 및 政策에 違背되어서는 아니되며 公共의 利益과 他人의 利益을 損傷시켜서는 아니된다.

第27條 調停으로써 合意에 到達한 경우에는 調停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調停書에는 當事者의 名稱·住所·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姓名, 職務外에 紛爭의 主要한 事實, 責任, 合意內容 및 費用의 負擔에 대하여 明記하여야 한다. 調停書에는 當事者가 署名하고 仲裁員·書記員이 署名하며 또한 仲裁機關의 印章을 押捺한다.

第28條 調停書가 送達된 경우 當事者 雙方은 自發的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第29條 調停이 合意에 到達하지 아니하거나 調停書의 送達前에 一方 또는 雙方이 翻意한 경우 仲裁體는 仲裁를 行하여야 한다.

第30條 仲裁體는 開廷에 앞서 開廷의 日時·場所를 書面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當事者가 2回의 通知에 의하여도 正當한 理由없이 出廷을 拒否한 경우에는 缺席仲裁를 할 수 있다.

第31條 ① 仲裁體의 開廷時에는 首席仲裁員이 仲裁員·書記員의 姓名을 朗讀하고 當事者에게 忌避申請의 與否를 質問한다.

② 仲裁體는 當事者의 陳述과 辯論을 眞摯하게 聽取하고 關係證據를 展示한 後 訴願人, 被訴人의 順序로 雙方의 最終意見を 聽取하고 다시 調停을 行할 수 있다. 調停이 合意에 致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仲裁體의 評議後 判斷을 한다.

第32條 ① 仲裁判斷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記하여야 한다.

1. 訴願人과 被訴人의 名稱·住所 및 그의 代表者 또는 代表人의 姓名·職務
2. 申請의 理由, 係爭의 事實 및 要求
3. 判斷으로써 認定한 事實, 理由 및 適用한 法律
4. 判斷의 效果 및 仲裁費用의 負擔
5. 判斷에 不服할 경우 訴를 提起하는 期間

② 仲裁判斷書에는 仲裁員이 署名하고 仲裁機關의 印章을 押捺 한다.

第33條 當事者の 一方 또는 雙方이 仲裁에 不服할 경우에는 仲裁判斷書를 受取한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人民法院에 提起하는 것으로 한다. 期間을 滿了하고도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경우 仲裁判斷書는 法的 效力을 發生한다.

第34條 ① 經濟契約仲裁委員會의 主任·副主任은 當該 委員會의 이미 法的 效力을 發生한 仲裁判斷에 대하여 確實히 錯誤가 있어 다시 處理할 必要가 있음을 發見할 경우 經濟契約仲裁委員會의 討議·決定에 付될 수 있다.

② 上級仲裁機關은 下級仲裁機關의 이미 法的 效力을 發生한 仲裁判斷에 대하여 確實히 錯誤가 있음을 發見할 경우 原判斷을 取消하고 命令할 權限을 가진다.

③ 事件의 再判斷은 別途로 仲裁體를 組織하여 行하여야 한다.

第35條 經濟契約의 當事者는 이미 送達된 調停書 및 法的 效力을 發生한 仲裁判斷書를 規定된 期間에 따라 自發的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一方이 期間을 經過하고도 履行하지 아니한 때 다른 一方은 管轄權이 있는 人民法院에 執行을 申請할 수 있다.

第5章 附 則

第36條 ① 訴訟當事者는 仲裁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仲裁料에는 事件受理料 및 事件處理料가 包含된다.

② 事件處理料(鑑定料·檢證料·測定料·旅費·出張費 및 證人の 休業手當 등이 包含된다)는 實費를 徵收한다.

③ 事件受理料는 訴願人이 豫定納付한다.

④ 事件處理가 終了된 때 仲裁料는 敗訴人이 負擔한다. 當事者
가 一部勝訴한 경우에는 比例에 따라 分割하여 負擔한다.

⑤ 仲裁料의 徵收 基準은 國家工商行政管理局이 定한다.

第37條 仲裁體에서 調停이 成立된 때 仲裁料는 當事者 雙方이 協
議하여 分擔한다.

第38條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各級人民政府, 國務
院의 各 部署가 以前에 公布한 經濟契約仲裁關係의 規定은 同時
에 廢止한다.

